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III

－ 正祖代(1787~1794) －

(下)

발 간 사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과 국정 운영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오갔던 말과 일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사회의 움직임을 그날그날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는 조선후기 개혁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로, 지방에 대한 통치와 관심도 두드러졌던 때입니다. 이 시기 제주에 대한 기록은 제주 지역의 행정과 민생,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그동안 제주의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1차 사료인 고문서 조사 연구 등 제주 지역사 정리에 힘써 왔습니다. 이번 《승정원일기》 정조대(1782-1794) 제주기사 자료집은 정조 6년부터 정조 18년까지의 제주 관련 기사 1,532건을 모아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달아 정리 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단지 방대한 사료를 정리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기록물 속에서 지방, 특히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가 어떻게 인식되고 통치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주는 단서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 하나 하나는 당대 제주에서 일어난 행정적 조치, 인사 문제, 민원 처리, 재해 대응 등 구체적 삶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에 더욱 가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려면 제주 안에서 남겨진 기록뿐 아니라, 중앙에서 남긴 제주 관련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정사(正史) 자료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할 기초 자료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와 독자들이 18세기 후반 제주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에도 자료집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일기 원문을 발췌하느라 애쓴 고수미, 노우정 선생님과 늘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힘써주신 문숙자,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문과 주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하느라 애쓴 우리 센터 임승희, 김우리 연구원과 양미혜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출간하기까지 오랜 시간 편집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주콤 출판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자료집 후속편 발간과 함께 정사(正史)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리를 통해 제주사 연구의 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2025년 9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완 병

□ 일러두기

1.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발간하고 있다.
3. 본서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82~1794)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1) 백종진: 1782년(정조 6) 1월 12일 ~ 1786년(정조 10) 3월 16일
 - 2) 문숙자: 1786년(정조 10) 4월 2일 ~ 1789년(정조 13) 11월 29일
 - 3) 오창명: 1790년(정조 14) 1월 10일 ~ 1794년(정조 18) 12월 30일

8. 《승정원일기》 정조대(1782~1794) 제주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제어별 중복된 기사를 포함하면, 1,811건이나 279건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총 1,532건에 대해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 분량: 총 1,532건

주제어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비고
건수	617건	85건	796건	255건	58건	1,532건	중복 기사 제외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정조 6년 (1782)	60	6(6)	35(13)	25(10)	3(2)	129(31)
정조 7년 (1783)	56	6(4)	119(4)	121(73)	5(3)	307(84)
정조 8년 (1784)	27	7(4)	124(4)	88(54)	2(1)	248(63)
정조 9년 (1785)	47	4(3)	118(4)	2(1)	3(2)	174(10)
정조 10년 (1786)	53	4(3)	136(10)	10(2)	3(2)	206(17)
정조 11년 (1787)	41	5	68(2)	2(1)	4(2)	120(5)
정조 12년 (1788)	48	8(4)	15(4)	1	3	75(8)
정조 13년 (1789)	29	5(3)	125(1)	1	2(2)	162(6)
정조 14년 (1790)	37	3(1)	30(3)	2(1)/1	3(2)	75(7)
정조 15년 (1791)	35	6(4)	11(2)	1	2(1)	55(7)
정조 16년 (1792)	28	5(2)	3(1)	0	4(2)	40(5)
정조 17년 (1793)	48	20(7)	5(4)	1(1)/0	11(7)	85(19)
정조 18년 (1794)	108	6(5)	7(6)	1	13(6)	135(17)
소계	617	85(46)	796(58)	255(143)	58(32)	1,811(279) /1,532

목 차

발 간 사	i	11年 2月 21日(己未)	1056
해 제	iii	11年 2月 27日(乙丑)	1057
일러두기	iv	11年 2月 27日(乙丑)	1058
		11年 3月 6日(甲戌)	1059
正祖		11年 3月 10日(戊寅)	1061
		11年 3月 10日(戊寅)	1062
		11年 3月 13日(辛巳)	1063
1787年		11年 3月 13日(辛巳)	1064
11年 1月 3日(壬申)	1034	11年 3月 17日(乙酉)	1065
11年 1月 3日(壬申)	1035	11年 3月 20日(戊子)	1066
11年 1月 4日(癸酉)	1037	11年 3月 21日(己丑)	1067
11年 1月 11日(庚申)	1039	11年 3月 26日(甲午)	1068
11年 1月 12日(辛巳)	1040	11年 3月 27日(乙未)	1069
11年 1月 12日(辛巳)	1041	11年 3月 27日(乙未)	1070
11年 1月 17日(丙戌)	1042	11年 4月 9日(丙午)	1071
11年 1月 17日(丙戌)	1043	11年 4月 10日(丁未)	1072
11年 1月 22日(辛卯)	1044	11年 4月 19日(丙辰)	1073
11年 1月 22日(辛卯)	1045	11年 4月 21日(戊午)	1074
11年 1月 23日(壬辰)	1046	11年 4月 21日(戊午)	1075
11年 1月 23日(壬辰)	1048	11年 4月 23日(庚申)	1076
11年 1月 25日(甲午)	1049	11年 4月 25日(壬戌)	1077
11年 1月 25日(甲午)	1050	11年 4月 27日(甲子)	1078
11年 1月 27日(丙申)	1051	11年 4月 28日(乙丑)	1079
11年 2月 10日(戊申)	1052	11年 4月 28日(乙丑)	1080
11年 2月 14日(壬子)	1053	11年 5月 2日(戊申)	1081
11年 2月 15日(癸丑)	1054	11年 5月 2日(戊申)	1082
11年 2月 19日(丁巳)	1055		

11年 5月 5日(辛未)	1083	11年 7月 2日(丁卯)	1115
11年 5月 27日(癸巳)	1084	11年 7月 3日(戊申)	1116
11年 6月 1日(丁酉)	1085	11年 7月 3日(戊申)	1117
11年 6月 6日(壬寅)	1086	11年 7月 4日(己巳)	1118
11年 6月 6日(壬寅)	1087	11年 7月 4日(己巳)	1119
11年 6月 7日(癸卯)	1088	11年 7月 5日(庚午)	1120
11年 6月 8日(甲辰)	1090	11年 7月 5日(庚午)	1121
11年 6月 8日(甲辰)	1092	11年 7月 9日(甲戌)	1122
11年 6月 9日(乙巳)	1093	11年 7月 9日(甲戌)	1124
11年 6月 10日(丙午)	1094	11年 7月 10日(乙亥)	1125
11年 6月 12日(戊申)	1095	11年 7月 12日(丁丑)	1126
11年 6月 13日(己酉)	1096	11年 7月 20日(乙酉)	1127
11年 6月 14日(庚戌)	1097	11年 7月 23日(戊子)	1128
11年 6月 15日(辛亥)	1098	11年 7月 24日(己丑)	1129
11年 6月 16日(壬子)	1099	11年 7月 25日(庚寅)	1130
11年 6月 16日(壬子)	1100	11年 7月 26日(辛卯)	1131
11年 6月 16日(壬子)	1101	11年 7月 27日(壬辰)	1132
11年 6月 17日(癸丑)	1102	11年 7月 28日(癸巳)	1133
11年 6月 19日(乙卯)	1103	11年 8月 6日(辛丑)	1134
11年 6月 19日(乙卯)	1104	11年 8月 6日(辛丑)	1135
11年 6月 19日(乙卯)	1105	11年 8月 6日(辛丑)	1137
11年 6月 22日(戊午)	1106	11年 9月 17日(辛巳)	1138
11年 6月 22日(戊午)	1107	11年 10月 18日(壬子)	1139
11年 6月 23日(己未)	1108	11年 10月 18日(壬子)	1140
11年 6月 23日(己未)	1109	11年 10月 22日(丙辰)	1141
11年 6月 24日(庚申)	1110	11年 11月 2日(乙丑)	1142
11年 6月 24日(庚申)	1111	11年 11月 4日(丁卯)	1143
11年 6月 25日(辛酉)	1112	11年 11月 4日(丁卯)	1144
11年 6月 25日(辛酉)	1113	11年 11月 4日(丁卯)	1145
11年 7月 2日(丁卯)	1114	11年 11月 4日(丁卯)	1146

11年 11月 5日(戊申)	1147
11年 11月 5日(戊申)	1148
11年 11月 5日(戊申)	1149
11年 11月 9日(壬申)	1150
11年 11月 10日(癸酉)	1152
11年 11月 10日(癸酉)	1153
11年 11月 12日(乙亥)	1154
11年 12月 1日(甲午)	1155
11年 12月 22日(乙卯)	1156
11年 12月 29日(壬戌)	1157

1788年

12年 1月 5日(戊申)	1160
12年 1月 19日(壬午)	1162
12年 2月 25日(戊午)	1163
12年 2月 27日(庚申)	1164
12年 3月 1日(癸亥)	1165
12年 3月 6日(戊申)	1166
12年 3月 6日(戊申)	1167
12年 3月 6日(戊申)	1168
12年 3月 6日(戊申)	1169
12年 3月 10日(壬申)	1170
12年 3月 18日(庚申)	1171
12年 4月 5日(丁酉)	1172
12年 4月 5日(丁酉)	1173
12年 4月 18日(庚戌)	1175
12年 4月 19日(辛亥)	1176
12年 5月 23日(甲申)	1177
12年 6月 12日(癸卯)	1178
12年 6月 21日(壬子)	1179

12年 6月 28日(己未)	1181
12年 6月 29日(庚申)	1183
12年 6月 29日(庚申)	1184
12年 6月 29日(庚申)	1185
12年 6月 29日(庚申)	1186
12年 7月 4日(甲子)	1188
12年 7月 8日(戊申)	1189
12年 7月 9日(己巳)	1190
12年 8月 5日(甲午)	1191
12年 8月 7日(丙申)	1192
12年 8月 7日(丙申)	1193
12年 8月 18日(丁未)	1194
12年 8月 18日(丁未)	1196
12年 9月 9日(丁卯)	1197
12年 9月 9日(丁卯)	1199
12年 9月 30日(己巳)	1200
12年 10月 8日(丙申)	1202
12年 10月 8日(丙申)	1203
12年 10月 8日(丙申)	1204
12年 10月 8日(丙申)	1205
12年 10月 8日(丙申)	1206
12年 10月 8日(丙申)	1207
12年 10月 8日(丙申)	1209
12年 10月 9日(丁酉)	1210
12年 10月 9日(丁酉)	1212
12年 10月 9日(丁酉)	1213
12年 10月 9日(丁酉)	1214
12年 10月 10日(戊戌)	1215
12年 10月 10日(戊戌)	1216
12年 10月 11日(己亥)	1218

12年 10月 14日(壬寅)	1219
12年 10月 15日(癸卯)	1220
12年 10月 19日(丁未)	1221
12年 10月 28日(丙辰)	1222
12年 10月 29日(丁巳)	1223
12年 10月 29日(丁巳)	1224
12年 10月 29日(丁巳)	1225
12年 11月 7日(乙丑)	1226
12年 11月 15日(癸酉)	1227
12年 11月 17日(乙亥)	1228
12年 11月 17日(乙亥)	1229
12年 12月 3日(庚寅)	1230
12年 12月 4日(辛卯)	1232
12年 12月 4日(辛卯)	1233
12年 12月 5日(壬辰)	1234
12年 12月 6日(癸巳)	1235
12年 12月 7日(甲午)	1236
12年 12月 10日(丁酉)	1237
12年 12月 23日(庚戌)	1239

1789年

13年 1月 11日(戊申)	1242
13年 1月 12日(己巳)	1244
13年 1月 12日(己巳)	1245
13年 1月 17日(甲戌)	1246
13年 1月 19日(丙子)	1248
13年 1月 21日(戊寅)	1249
13年 1月 22日(己卯)	1250
13年 1月 23日(庚申)	1251
13年 1月 23日(庚申)	1252

13年 1月 24日(辛巳)	1253
13年 1月 24日(辛巳)	1254
13年 1月 25日(壬午)	1255
13年 1月 25日(壬午)	1256
13年 1月 27日(甲申)	1257
13年 1月 27日(甲申)	1258
13年 1月 28日(乙酉)	1259
13年 2月 2日(己丑)	1260
13年 2月 9日(丙申)	1261
13年 2月 10日(丁未[丁酉])	1262
13年 2月 16日(癸酉[癸卯])	1263
13年 2月 17日(甲辰)	1264
13年 2月 17日(甲辰)	1265
13年 2月 30日(丁巳)	1266
13年 3月 7日(甲子)	1267
13年 3月 7日(甲子)	1268
13年 3月 12日(己巳)	1269
13年 3月 12日(己巳)	1270
13年 3月 13日(庚午)	1271
13年 3月 14日(辛未)	1272
13年 3月 14日(辛未)	1273
13年 3月 15日(壬申)	1274
13年 3月 16日(癸酉)	1275
13年 3月 16日(癸酉)	1276
13年 3月 18日(乙亥)	1277
13年 3月 18日(乙亥)	1278
13年 3月 19日(丙子)	1279
13年 3月 19日(丙子)	1280
13年 3月 20日(丁丑)	1281
13年 3月 21日(戊寅)	1282

13年 3月 22日(己卯)	1283	13年 5月 25日(庚子[辛巳])	1322
13年 3月 26日(癸未)	1284	13年 5月 25日(庚子[辛巳])	1323
13年 4月 1日(丁亥)	1285	13年 5月 28日(甲辰[甲申])	1324
13年 4月 1日(丁亥)	1286	13年 5月 29日(乙巳[乙酉])	1325
13年 4月 2日(戊子)	1287	13年 閏5月 8日(癸巳)	1326
13年 4月 4日(庚寅)	1288	13年 閏5月 11日(丙申)	1327
13年 4月 8日(甲午)	1289	13年 閏5月 11日(丙申)	1328
13年 4月 10日(丙申)	1290	13年 閏5月 12日(丁酉)	1329
13年 4月 11日(丁酉)	1291	13年 閏5月 12日(丁酉)	1330
13年 4月 11日(丁酉)	1292	13年 閏5月 13日(丙戌)	1331
13年 4月 11日(丁酉)	1293	13年 閏5月 14日(己亥)	1332
13年 4月 12日(戊戌)	1296	13年 閏5月 14日(己亥)	1333
13年 4月 13日(己亥)	1297	13年 閏5月 15日(庚子)	1334
13年 4月 17日(癸卯)	1299	13年 閏5月 15日(庚子)	1335
13年 4月 17日(癸卯)	1300	13年 閏5月 16日(辛丑)	1336
13年 4月 18日(甲辰)	1301	13年 閏5月 16日(辛丑)	1337
13年 4月 18日(甲辰)	1302	13年 閏5月 17日(壬寅)	1338
13年 4月 19日(乙巳)	1303	13年 閏5月 17日(壬寅)	1339
13年 4月 20日(丙午)	1304	13年 閏5月 18日(癸卯)	1340
13年 4月 20日(丙午)	1307	13年 閏5月 19日(甲辰)	1341
13年 4月 22日(戊申)	1308	13年 閏5月 22日(丁未)	1342
13年 4月 27日(癸丑)	1309	13年 閏5月 25日(庚戌)	1343
13年 4月 29日(乙卯)	1310	13年 閏5月 28日(癸丑)	1344
13年 5月 5日(辛酉)	1312	13年 閏5月 29日(甲寅)	1345
13年 5月 6日(壬戌)	1313	13年 閏5月 29日(甲寅)	1346
13年 5月 12日(戊申)	1315	13年 6月 11日(乙丑)	1347
13年 5月 12日(戊申)	1316	13年 6月 12日(己亥[丙寅])	1348
13年 5月 22日(戊寅)	1319	13年 6月 12日(己亥[丙寅])	1349
13年 5月 22日(戊寅)	1320	13年 6月 13日(庚子[丁卯])	1350
13年 5月 22日(戊寅)	1321	13年 6月 14日(戊申)	1351

13年 6月 21日(乙亥)	1352
13年 6月 23日(己巳)	1353
13年 6月 24日(戊寅)	1354
13年 6月 25日(己卯)	1355
13年 7月 12日(丙申)	1356
13年 7月 14日(戊戌)	1357
13年 7月 23日(丁未)	1358
13年 7月 25日(己酉)	1359
13年 8月 4日(辛未[丁巳])	1360
13年 8月 10日(癸亥)	1361
13年 10月 15日(丁卯)	1362
13年 10月 15日(丁卯)	1363
13年 10月 16日(戊申)	1364
13年 10月 16日(戊申)	1365
13年 10月 17日(己巳)	1366
13年 10月 17日(己巳)	1367
13年 10月 19日(辛未)	1368
13年 10月 24日(丙子)	1369
13年 10月 24日(丙子)	1370
13年 10月 24日(丙子)	1371
13年 10月 24日(丙子)	1372
13年 10月 27日(己卯)	1373
13年 10月 27日(己卯)	1374
13年 10月 28日(庚申)	1375
13年 10月 28日(庚申)	1376
13年 10月 29日(辛巳)	1377
13年 10月 29日(辛巳)	1378
13年 10月 30日(壬午)	1379
13年 10月 30日(壬午)	1380
13年 11月 1日(癸未)	1381

13年 11月 1日(癸未)	1382
13年 11月 1日(癸未)	1384
13年 11月 2日(甲申)	1386
13年 11月 2日(甲申)	1387
13年 11月 6日(戊子)	1388
13年 11月 6日(戊子)	1389
13年 11月 7日(己丑)	1390
13年 11月 7日(己丑)	1391
13年 11月 8日(庚寅)	1392
13年 11月 8日(庚寅)	1393
13年 11月 9日(辛卯)	1394
13年 11月 9日(辛卯)	1395
13年 11月 17日(己亥)	1396
13年 11月 17日(己亥)	1397
13年 11月 19日(辛丑)	1398
13年 11月 20日(壬寅)	1399
13年 11月 21日(癸卯)	1400
13年 11月 28日(庚戌)	1401
13年 11月 29日(辛亥)	1402
13年 11月 29日(辛亥)	1403

1790年

14年 1月 10日(辛卯)	1406
14年 1月 19日(庚子)	1408
14年 1月 20日(辛丑)	1409
14年 1月 20日(辛丑)	1410
14年 1月 24日(乙巳)	1411
14年 1月 24日(乙巳)	1412
14年 1月 24日(乙巳)	1413
14年 1月 25日(丙午)	1414

14年 1月 27日(戊申)	1415	14年 4月 29日(己卯)	1447
14年 1月 29日(庚戌)	1416	14年 5月 2日(壬午)	1448
14年 2月 5日(丙辰)	1417	14年 5月 9日(己丑)	1449
14年 2月 13日(甲子)	1418	14年 5月 22日(壬寅)	1450
14年 2月 13日(甲子)	1419	14年 6月 11日(庚申)	1451
14年 2月 18日(己巳)	1421	14年 6月 11日(庚申)	1452
14年 2月 19日(庚午)	1422	14年 6月 24日(癸酉)	1453
14年 2月 22日(癸酉)	1423	14年 6月 25日(甲戌)	1454
14年 2月 26日(丁丑)	1424	14年 7月 4日(壬午)	1455
14年 3月 10日(庚寅)	1425	14年 7月 5日(癸卯)	1456
14年 3月 11日(辛卯)	1426	14年 7月 10日(戊子)	1457
14年 3月 20日(庚子)	1427	14年 7月 11日(己丑)	1458
14年 3月 22日(壬寅)	1428	14年 7月 12日(庚寅)	1459
14年 3月 27日(丁未)	1429	14年 7月 17日(乙未)	1460
14年 3月 27日(丁未)	1430	14年 7月 19日(丁酉)	1461
14年 3月 27日(丁未)	1431	14年 7月 19日(丁酉)	1462
14年 3月 27日(丁未)	1432	14年 7月 20日(戊戌)	1463
14年 3月 28日(戊申)	1434	14年 7月 26日(甲辰)	1464
14年 4月 4日(甲寅)	1435	14年 8月 1日(己酉)	1465
14年 4月 4日(甲寅)	1436	14年 8月 5日(癸丑)	1466
14年 4月 10日(庚申)	1437	14年 10月 4日(辛亥)	1467
14年 4月 10日(庚申)	1438	14年 10月 4日(辛亥)	1468
14年 4月 11日(辛酉)	1439	14年 10月 14日(辛酉)	1469
14年 4月 11日(辛酉)	1440	14年 11月 16日(壬辰)	1470
14年 4月 13日(癸亥)	1441	14年 11月 17日(癸巳)	1471
14年 4月 18日(戊申)	1442	14年 11月 26日(壬寅)	1472
14年 4月 21日(辛未)	1443	14年 11月 27日(癸卯)	1473
14年 4月 26日(丙子)	1444	14年 12月 14日(庚申)	1474
14年 4月 27日(丁丑)	1445	14年 12月 20日(丙寅)	1475
14年 4月 28日(戊寅)	1446	14年 12月 21日(丁卯)	1476

1791年

15年 1月 3日(壬寅[戊寅])	1478
15年 1月 9日(甲申)	1479
15年 1月 19日(甲午)	1480
15年 2月 5日(庚戌)	1481
15年 2月 6日(辛亥)	1482
15年 2月 13日(戊午)	1483
15年 2月 18日(壬戌[癸亥])	1484
15年 2月 20日(乙丑)	1485
15年 2月 20日(乙丑)	1488
15年 3月 28日(壬寅)	1492
15年 3月 28日(壬寅)	1493
15年 4月 18日(壬戌)	1494
15年 4月 25日(己巳)	1495
15年 5月 4日(戊寅)	1496
15年 5月 5日(己卯)	1497
15年 5月 12日(丙戌)	1498
15年 5月 12日(丙戌)	1499
15年 5月 12日(丙戌)	1500
15年 5月 22日(丙申)	1501
15年 5月 22日(丙申)	1502
15年 5月 22日(丙申)	1503
15年 6月 27日(庚午)	1504
15年 7月 17日(庚寅)	1505
15年 7月 20日(癸巳)	1506
15年 7月 21日(甲午)	1507
15年 7月 21日(甲午)	1508
15年 7月 24日(丁酉)	1509
15年 7月 25日(戊戌)	1510

15年 7月 27日(庚子)	1512
15年 8月 5日(丁未)	1513
15年 8月 10日(壬子)	1514
15年 8月 10日(壬子)	1515
15年 8月 12日(甲寅)	1517
15年 8月 26日(戊申)	1518
15年 8月 28日(庚午)	1519
15年 9月 16日(戊子)	1520
15年 10月 2日(癸卯)	1521
15年 10月 8日(己酉)	1522
15年 10月 9日(庚戌)	1523
15年 10月 10日(辛亥)	1524
15年 10月 14日(戊申[乙卯])	1525
15年 10月 16日(丁巳)	1526
15年 11月 2日(癸酉)	1527
15年 11月 9日(庚申)	1528
15年 12月 1日(辛丑)	1529
15年 12月 10日(庚戌)	1531
15年 12月 10日(庚戌)	1534
15年 12月 14日(甲寅)	1536

1792年

16年 1月 29日(己亥)	1538
16年 2月 10日(己酉)	1539
16年 2月 10日(己酉)	1540
16年 2月 10日(己酉)	1541
16年 2月 11日(庚戌)	1543
16年 2月 11日(庚戌)	1544
16年 2月 11日(庚戌)	1545
16年 2月 11日(庚戌)	1546

16年 2月 30日(己巳)	1547	17年 2月 14日(丁丑)	1580
16年 4月 23日(辛酉)	1548	17年 2月 14日(丁丑)	1581
16年 閏4月 17日(乙酉)	1549	17年 2月 18日(癸巳)	1582
16年 閏4月 21日(己丑)	1550	17年 2月 30日(癸巳)	1583
16年 5月 11日(戊申)	1551	17年 3月 23日(丙辰)	1585
16年 5月 12日(己酉)	1552	17年 4月 8日(庚午)	1586
16年 5月 27日(甲子)	1553	17年 4月 15日(丁丑)	1587
16年 6月 3日(庚午)	1554	17年 4月 17日(己卯)	1588
16年 6月 19日(戊子[丙戌])	1555	17年 4月 19日(辛巳)	1590
16年 7月 3日(庚子)	1556	17年 4月 28日(庚寅)	1591
16年 7月 4日(辛丑)	1557	17年 4月 28日(庚寅)	1592
16年 7月 16日(癸丑)	1559	17年 5月 4日(乙未)	1593
16年 7月 16日(癸丑)	1560	17年 5月 5日(丙申)	1594
16年 7月 19日(丙辰)	1561	17年 5月 6日(丁酉)	1595
16年 8月 8日(甲戌)	1562	17年 5月 22日(癸丑)	1596
16年 8月 9日(乙亥)	1564	17年 5月 22日(癸丑)	1597
16年 9月 3日(己亥)	1565	17年 5月 23日(甲寅)	1598
16年 11月 9日(甲辰)	1566	17年 5月 29日(庚申)	1599
16年 11月 24日(己未)	1567	17年 5月 30日(辛酉)	1600
16年 12月 1日(乙丑)	1568	17年 6月 24日(乙酉)	1601
16年 12月 1日(乙丑)	1569	17年 6月 25日(丙戌)	1602
16年 1月 29日(己亥)	1571	17年 7月 4日(己未[乙未])	1603
16年 12月 3日(丁卯)	1572	17年 7月 13日(甲辰)	1604
16年 1月 29日(己亥)	1573	17年 7月 16日(丁未)	1605
16年 12月 24日(戊子)	1574	17年 7月 22日(癸丑)	1606
16年 12月 29日(癸巳)	1575	17年 7月 22日(癸丑)	1607
16年 12月 29日(癸巳)	1576	17年 7月 26日(丁巳)	1608
		17年 8月 5日(乙丑)	1610
		17年 8月 27日(丁亥)	1611
		17年 9月 1日(辛卯)	1612
1793年			
17年 2月 8日(辛未)	1578		

17年 9月 21日(辛亥) 1613
 17年 11月 11日(庚子) 1614
 17年 11月 11日(庚子) 1618
 17年 11月 12日(辛丑) 1620
 17年 11月 12日(辛丑) 1621
 17年 11月 12日(辛丑) 1622
 17年 11月 12日(辛丑) 1623
 17年 11月 13日(壬寅) 1624
 17年 11月 13日(壬寅) 1627
 17年 11月 13日(壬寅) 1628
 17年 11月 13日(壬寅) 1629
 17年 11月 13日(壬寅) 1630
 17年 11月 13日(壬寅) 1631
 17年 11月 14日(癸卯) 1632
 17年 11月 14日(癸卯) 1633
 17年 11月 14日(辛未) 1634
 17年 11月 16日(乙巳) 1636
 17年 11月 17日(丙午) 1637
 17年 11月 18日(丙午) 1638
 17年 11月 21日(庚戌) 1639
 17年 11月 21日(庚戌) 1640
 17年 11月 21日(庚戌) 1641
 17年 11月 22日(辛亥) 1642
 17年 11月 23日(壬子) 1643
 17年 11月 24日(癸丑) 1644
 17年 11月 24日(癸丑) 1645
 17年 11月 24日(癸丑) 1648
 17年 11月 24日(癸丑) 1649
 17年 11月 24日(辛未) 1650
 17年 11月 24日(癸丑) 1651

17年 11月 25日(甲寅) 1652
 17年 11月 25日(甲寅) 1653
 17年 12月 1日(庚申) 1654
 17年 12月 1日(庚申) 1655
 17年 12月 14日(癸酉) 1658

1794年

18年 1月 1日(己丑) 1660
 18年 1月 8日(丙申) 1661
 18年 2月 21日(己卯) 1662
 18年 2月 21日(己卯) 1663
 18年 2月 21日(己卯) 1664
 18年 2月 21日(己卯) 1665
 18年 2月 22日(庚申) 1666
 18年 2月 22日(庚申) 1667
 18年 2月 22日(庚申) 1668
 18年 2月 22日(庚申) 1669
 18年 2月 26日(甲申) 1671
 18年 3月 1日(戊子) 1672
 18年 3月 2日(己丑) 1673
 18年 3月 2日(己丑) 1676
 18年 3月 2日(己丑) 1677
 18年 3月 2日(己丑) 1678
 18年 3月 2日(己丑) 1679
 18年 3月 2日(己丑) 1680
 18年 3月 2日(己丑) 1681
 18年 3月 2日(己丑) 1682
 18年 3月 3日(庚寅) 1683
 18年 3月 6日(癸巳) 1684
 18年 3月 7日(甲午) 1685

18年 3月 8日(乙未)	1688	18年 5月 22日(戊申)	1731
18年 3月 14日(辛丑)	1691	18年 6月 1日(丙辰)	1732
18年 3月 14日(辛丑)	1693	18年 6月 1日(丙辰)	1733
18年 3月 17日(甲辰)	1695	18年 6月 10日(乙丑)	1735
18年 3月 27日(甲寅)	1696	18年 6月 20日(乙亥)	1737
18年 3月 27日(甲寅)	1697	18年 6月 20日(乙亥)	1738
18年 4月 5日(辛酉)	1698	18年 7月 1日(丙戌)	1739
18年 4月 19日(乙亥)	1699	18年 7月 12日(丁酉)	1740
18年 4月 19日(乙亥)	1700	18年 7月 12日(丁酉)	1741
18年 4月 19日(乙亥)	1701	18年 7月 26日(辛亥)	1742
18年 4月 19日(乙亥)	1702	18年 7月 26日(辛亥)	1743
18年 4月 21日(丁丑)	1703	18年 7月 26日(辛亥)	1744
18年 4月 21日(丁丑)	1704	18年 7月 29日(甲寅)	1745
18年 4月 21日(丁丑)	1705	18年 8月 4日(戊午)	1746
18年 4月 22日(戊寅)	1707	18年 8月 9日(癸亥)	1748
18年 4月 22日(戊寅)	1708	18年 8月 11日(乙丑)	1749
18年 4月 22日(戊寅)	1710	18年 8月 13日(丁卯)	1750
18年 4月 24日(庚申)	1711	18年 8月 17日(辛未)	1751
18年 4月 25日(辛巳)	1713	18年 8月 23日(丁丑)	1752
18年 4月 27日(癸未)	1715	18年 9月 10日(甲午)	1753
18年 4月 27日(癸未)	1717	18年 9月 11日(乙未)	1754
18年 4月 28日(甲申)	1718	18年 9月 11日(乙未)	1755
18年 4月 28日(甲申)	1720	18年 9月 11日(乙未)	1756
18年 5月 4日(庚戌[庚寅])	1721	18年 9月 12日(丙申)	1759
18年 5月 4日(庚戌[庚寅])	1722	18年 9月 12日(丙申)	1760
18年 5月 4日(庚戌[庚寅])	1723	18年 9月 12日(丙申)	1761
18年 5月 7日(癸巳)	1724	18年 9月 12日(丙申)	1762
18年 5月 11日(丁酉)	1726	18年 9月 15日(己亥)	1763
18年 5月 12日(戊戌)	1728	18年 9月 17日(辛丑)	1764
18年 5月 12日(戊戌)	1729	18年 9月 17日(辛丑)	1765

18年 9月 17日(辛丑)	1768	18年 10月 24日(戌寅)	1798
18年 9月 17日(辛丑)	1774	18年 11月 15日(己亥)	1800
18年 9月 25日(己酉)	1776	18年 11月 15日(己亥)	1801
18年 10月 1日(乙卯)	1777	18年 11月 15日(己亥)	1803
18年 10月 2日(丙辰)	1778	18年 11月 18日(壬寅)	1804
18年 10月 3日(丁巳)	1780	18年 11月 22日(丙午)	1805
18年 10月 3日(丁巳)	1781	18年 11月 23日(丁未)	1808
18年 10月 11日(乙丑)	1783	18年 11月 24日(戊申)	1813
18年 10月 12日(丙寅)	1784	18年 12月 9日(壬戌)	1815
18年 10月 15日(己巳)	1786	18年 12月 9日(壬戌)	1817
18年 10月 21日(乙亥)	1787	18年 12月 11日(甲子)	1819
18年 10月 21日(乙亥)	1788	18年 12月 14日(丁卯)	1820
18年 10月 22日(丙子)	1789	18年 12月 14日(丁卯)	1821
18年 10月 22日(丙子)	1790	18年 12月 16日(己巳)	1822
18年 10月 22日(丙子)	1791	18年 12月 25日(戌寅)	1823
18年 10月 23日(丁丑)	1792	18年 12月 29日(壬午)	1825
18年 10月 23日(丁丑)	1793	18年 12月 30日(癸未)	1826
18年 10月 23日(丁丑)	1796		

1787年

(정조 11)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三日 壬申

- 洪義榮,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具純, 濟州牧減死定配, 罪人曹學臣, 遠地定配事, 承傳, 啓下矣. 罪人具純, 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書吏, 着行次枷, 嚴禁雜人押送配所, 而到配後, 各別防守, 俾無疎虞之意, 行會于該道道臣及該牧使處, 罪人曹學臣, 咸鏡道明川府, 遠地定配, 而亦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3일(임신)

- 죄인 구순(具純)을 승전에 따라 제주목(濟州牧)에 감사정배(減死定配) 하기 위해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보고
- 홍의영(洪義榮)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구순(具純)을 제주목(濟州牧)에 감사정배(減死定配)하고 죄인 조학신(曹學臣)을 원지정배(遠地定配)하라는 승전(承傳)을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죄인 구순에 대해 승전 내에 쓰인 말뜻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즉시 의금부 서리를 보내 칼을 씌워 길에 오르고, 잡인을 엄금하여 배소(配所)로 압송하겠습니다. 배소에 당도한 후에는 각별히 지켜 소홀히 할 우려가 없도록海道(該道) 관찰사와 해당 목사에게 알리겠습니다. 죄인 조학신은 함경도 명천부(明川府)로 원지정배하되, 또한 승전 내에 쓰인 말뜻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즉시 의금부 서리를 보내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구순, 감사정배, 홍의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三日 壬申

- 丁未正月初三日辰時，上御春塘臺。犒饋入侍時，行都承旨具廩，行左承旨李在學，右承旨洪仁浩，左副承旨趙衍德，右副承旨金魯淳，同副承旨洪義榮，假注書張錫胤·李德鉉，記事官李相瓚·金祖淳，直閣鄭大容，待教尹行任，以次侍立訖，…… 又命書傳教曰，…… 具純·曹學臣之再昨齋所舉措，不可但以痛惡言之，承史侍衛諸臣，亦皆在傍環聽，至有伊日承宣之筵奏，又有今日兵判之請勘，到今亦不可但以一廳事言之，初意首唱之具純，快施懸首之律，以懲渠輩，以礪諸弁，而特以闕中，非用律之地，三軍亦且未會，雖不得不姑且咨且，朝家於純，前後曲庇生成之澤，凡幾遭矣。今番所爲，已塗人耳目，此而容貸，其可曰國有法乎？渠輩，又何以知哉？…… 罪人具純，限死決棍三十度，濟州牧減死定配，勿揀赦典，…….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3일(임신)

- 임금이 전교를 내려 구순(具純)을 제주목(濟州牧)에 감사정배(減死定配)할 것을 명함
- 정미년 1월 초3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갔다. 특별히 호궐(犒饋)하는 자리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구익(具翼), 행 좌승지 이재학(李在學), 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조연덕(趙衍德), 우부승지 김노순(金魯淳), 동부승지 홍의영(洪義榮), 가주서 장석운(張錫胤)·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직각 정대용(鄭大容), 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시위하여 섰다. <중략> 또 명하여 전교(傳教)를 쓰게 하기를, “<중략> 구순(具純)·조학신(曹學臣)이 그제 재소(齋所)에서 한 거조(舉措)는 통악(痛惡)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승지·사관 등 제신(諸臣) 또한 모두 곁에서 들었고, 승선(承宣)은 이날 연석에서 품주하기에 이르렀다. 또 오늘 병판(兵判)은 헤아려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또한 한 청사(廳事)라고만 말하기 어렵다. 처음 뜻은 수창(首唱)한 구순에 대해 머리를 베어 달아놓는 법을 시원하게 시행하여 그 무리를 징치하고 면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궐 안에서 그 율(律)을 쓸 수는 없고 삼군 또한 아직 모이지 않아 부득불 잠시 주저하다가 조가(朝家)에서 구순에게 곡진히 비호하고 생성해주는 은택을 입은 것이 여러 차례였다. 이번 행위는 이미 사람들 이목이 집중하였으니 이렇고도 용서한다면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 무리는 또한 탐욕을 멈출 줄 알겠는가? <중략> 죄인 구순에게 죽지 않을 만큼 곤장 30

도(度)를 친 후 제주목(濟州牧)에 감사정배(減死定配)하고 물간사전(勿撻赦典)하라.
〈중략〉”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구순, 감사정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四日 癸酉

- 丁未正月初四日辰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左承旨李在學，假注書李德鉉，事變假注書金致正，記事官李相璜·金祖淳，領議政金致仁，左議政李福源，右議政金煜，行禮曹判書李命植，行司直金華鎮，左參贊金魯鎮，開城留守李性源，行副司直徐有寧·徐有慶，延豐君李垺，行副司直李敬懋·徐有大，江華留守趙鼎鎮，校理趙弘鎮，以次進伏訖。…… 致仁曰，頃因全羅監司沈頤之狀啓，耽羅移粟時，土產雜物，移納于羅州濟民倉便否，更爲詳問於羅州等諸邑，論理狀聞之意，覆奏行會矣。卽見其狀啓，則枚舉羅州等十九邑牒報，以爲今此涼藿移俸[移捧]之舉，特軫島民涉險之苦，而既無穀物糶糴，只有涼藿分俵，則在本州無設始之難，在屬邑，無轉輸之勞，倉廩不煩新創，穀物依前散置，少無更張施設之撓，則不必以年荒爲拘，且雜物分俵，既有已例，臨陂屬邑，曾不爲苦，羅州傍近，亦豈有弊乎？移倉一款，更令廟堂，稟旨，分付矣。今此涼藿移捧之議，蓋軫島民涉險之苦，而觀於道臣狀啓，羅州諸邑，元無弊端，至以不必以年荒爲拘云爾，則列邑物情之樂從，概可知也。在島陸，實爲兩便之道，自今爲始，耽羅土產雜物之出來者，許令分俵於羅州等邑，以爲分數換賣事，分付道臣，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4일(계유)

- ☐ 탐라(耽羅)에 곡물을 옮길 때 나주 제민창에 토산을 갖다 바치는 일의 편부(便否)에 대한 전라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
- 정미년 1월 초4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행좌승지 이재학(李在學),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사변가주서 김치정(金致正),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복원(李福源), 우의정 김익(金煜), 행 예조판서 이명식(李命植), 행사직 김화진(金華鎮), 좌참찬 김노진(金魯鎮), 개성유수 이성원(李性源), 행부사직 서유령(徐有寧)·서유경(徐有慶), 연풍군 이갑(李垺), 행부사직 이경무(李敬懋)·서유대(徐有大), 강화유수 조정진(趙鼎鎮), 교리 조홍진(趙弘鎮)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치인이 말하기를, “지난번 전라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로 하여 탐라(耽羅)에 곡물을 옮길 때에 토산(土產)의 여러 물건을 나주(羅州)의 제민창(濟民倉)으로 가져다 바치는 일의 편의 여부를 다시 나주 등 여러

고을에 자세히 물어 의견을 붙여 장문하도록 복주(覆奏)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그 장계를 보니 나주 등 19읍의 보고를 일일이 들며 이번에 양곽(涼藿)을 옮겨 수봉(收捧)하는 일은 섬 백성이 위험을 무릅쓰는 고통을 특별히 배려한 일이나 곡물을 방출 수납하는 일이 없고 다만 양곽을 배분하기만 하므로 본 고을에 있어서는 새로이 시작하는 어려움이 없고, 속읍(屬邑)에 있어서는 운송하는 노고가 없으며 창고(倉庫)는 번거롭지 않아 새로이 생산한 곡물을 전처럼 나누어 두더라도 조금도 다시 시설(施設)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 굳이 흉년이라 해서 구매할 것이 없습니다. 또 여러 물건을 배분함에 전례가 있어 임피(臨陂) 속읍이 일찍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니 나주 부근에서도 어찌 폐단이 있겠습니까? 창고를 옮기는 문제를 다시 묘당에서 뜻을 여쭙어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양곽을 옮겨 수봉하는 논의는 대체로 섬 백성이 위험을 무릅쓰는 고통을 배려해서입니다. 그러나 도신(道臣)의 장문 내용을 보면 나주 등 여러 고을에는 원래 폐단이 없어 굳이 흉년이라 해서 구매할 것이 없다고까지 하였으니 여러 고을의 물정(物情)이 즐겨 따름을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섬이나 육지에 있어 실로 양쪽이 모두 편익한 방도이니 지금부터 위시해서 탐라 토산의 여러 물건으로서 나오는 것을 나주 등 고을에 배분하도록 하여 바꾸어 팔도록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³⁵⁷⁾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탐라, 제민창, 토산, 심이지.

357) 《비변사등록》 정조 7년 1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十一日 庚辰

- 持平任希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正言金載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11일(경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다시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임희원(任希遠) 등의 계
- 지평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김재익(金載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희원, 김재익.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十二日 辛巳

- 掌令崔景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島配罪人趙時偉, 亟令王府, 拿鞠嚴問, 期於得情. 措辭見上 答曰, 不允. 末端事, 院批悉諭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12일(신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최경악(崔景岳)의 계
- 장령 최경악(崔景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도배(島配)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간원에 내린 비답에 모두 유사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도배, 최경악.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十二日 辛巳

- 正言柳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12일(신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유경(柳畊)의 계
- 정언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경, 하익룡.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十七日 丙戌

- 持平任希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17일(병술)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임희원(任希遠)의 계
- 지평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희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十七日 丙戌

- 正言金載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17일(병술)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재익(金載翼)의 계
- 정언 김재익(金載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재익.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二日 辛卯

○ 持平任希遠所啓, 講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2일(신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임희원(任希遠)의 계
- 지평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희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二日 辛卯

- 正言金載翼所啓，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答院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2일(신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재익(金載翼)의 계
- 정언 김재익(金載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재익.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三日 壬辰

- 丁未正月十九日辰時，上御明政門。朝參入侍時，行都承旨沈豐之，左承旨李亨元，右承旨李祖承，左副承旨洪仁浩，右副承旨洪義榮，同副承旨金魯永，假注書尹光顏·李德鉉，記事官李相瓚·金祖淳，檢校直閣徐龍輔，待教尹行任，以次侍立訖。…… 師濂起伏曰，此府啓也。仍奏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載翼等起伏曰，此院啓也。仍奏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依律處斷。…… 致仁曰，趙時偉減死島配事，命下矣。耽·黑·楸三島，非特教則自下例不得定配所，而此罪人則異他，三島中舉行，恐宜矣。上曰，耽有宇鎮，黑有寧鎮，楸有李普行，他島中定配所事，分付，可也。【出學條】……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3일(임진)

-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헌부 및 사간원의 계와, 조시위(趙時偉)를 탐라(耽羅) 등 섬에 정배하라는 김치인(金致仁)의 계
- 정미년 1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명정문(明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우승지 이조승(李祖承),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홍의영(洪義榮), 동부승지 김노영(金魯永), 가주서 윤광안(尹光顏)·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검교직각 서용보(徐龍輔), 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시위하고 섰다. <중략> 이사람(李師濂)이 일어났다가 부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사헌부의 계(啓)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대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재익(金載翼) 등이 일어났다가 부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사간원의 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대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조시위(趙時偉)를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탐라(耽羅)·흑산·추자(楸子) 세 섬은 특교(特教)가 아니면 밑에서 아무렇지 않게 배소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다른 예와는 다르므로 세 섬 중에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에 김우진

(金字鎭)이 있고, 흑산에 김영진(金寧鎭)이 있으며, 추자에 이보행(李普行)이 있으니 다른 섬 중에서 배소를 정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탐라, 추자, 김수현, 조시위, 김우진, 이보행.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三日 壬辰

- 金魯永, 以漢城府言啓曰, 丙午年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人口摠數, 已爲入啓, 而濟州三邑戶口摠, 今始上來, 故依例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3일(임진)

- 제주(濟州) 삼읍의 호구 총수가 당도하여 이를 서울 및 팔도의 총수에 추가로 기록 하겠다는 한성부의 보고
- 김노영(金魯永)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병오년의 민수(民數)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서울 및 팔도(八道)의 원호(元戶)에 대한 인구 총수는 이미 입계(入啓)되었으나, 제주(濟州) 삼읍의 호구(戶口) 총수가 이제 비로소 도착하였으니 규례대로 추가로 기록해 넣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삼읍, 호구 총수, 민수, 김노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五日 甲午

○ 持平任希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5일(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임희원(任希遠)의 계

○ 지평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희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五日 甲午

- 正言金載翼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命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5일(갑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재익(金載翼)의 계
- 정언 김재익(金載翼)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하익룡, 흥양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正月 二十七日 丙申

- 洪文泳, 以吏曹言啓曰, 觀此全羅道濟州牧老人狀本, 則無一人今年年滿九十者, 以昨年已授資人, 又爲抄啓, 事是不察, 有違定式, 該牧使推考, 原狀啓勿施, 何如? 傳曰, 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월 27일(병신)

- 제주목(濟州牧)의 노인(老人) 장본(狀本)에 따라 적절치 못한 이를 초계한 제주목사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추고하라고 건의한 이조의 보고
- 홍문영(洪文泳)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노인(老人) 장본(狀本)을 보니 한 사람도 나이가 90에 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자급을 준 이를 또 초계(抄啓)한 것은 매우 살피지 못한 것이고, 정식(定式)에 어긋납니다. 해당 목사를 추고(推考)하고 원래 장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노인 장본, 제주목사.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十日 戊申

- 丁未二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致仁, 左參贊金魯鎮, 仁陵君李在協, 行副司直徐有隣, 兵曹判書金履素, 行副司直李柱國, 漢城判尹鄭昌順, 吏曹判書尹蕃東, 行副司直李敬懋·金持默, 大司諫金翊休, 掌令李永穆, 正言金載翼, 副校理洪義浩, 修撰嚴思憲, 左承旨李亨元, 假注書趙台榮, 事變假注書張錫胤, 記事官李相瓚·金祖淳, 以次進伏訖. …… 永穆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 翊休等所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10일(무신)

- 대신이 입시한 자리에서 사간원, 사헌부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함
- 정미년 2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참찬 김노진(金魯鎭), 인릉군 이재협(李在協), 행 부사직 서유린(徐有隣), 병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한성판윤 정창순(鄭昌順), 이조판서 윤시동(尹蕃東), 행 부사직 이경무(李敬懋)·김지묵(金持默), 대사간 김익휴(金翊休), 장령 이영목(李永穆), 정언 김재익(金載翼), 부교리 홍의호(洪義浩), 수찬 엄사헌(嚴思憲),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사변 가주서 장석운(張錫胤),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영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익휴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영목, 김익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十四日 壬子

- 李亨元, 以吏曹言啓曰, 因承政院啓辭, 守令薦不薦人, 令該曹, 察推事, 允下矣. 仁陵君李在協, 判敦寧金鍾正, …… 濟州牧使李命俊, 綾州牧使林重遠, …… 俱爲應薦而不薦, 竝依定式,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今番飭教之後, 文宰則多有追薦人, 武臣則將臣外, 尙無爲之者, 豈或未及聞知而然乎? 姑不處分, 自本曹查實論罪, 可也.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14일(임자)

- ☐ 수령으로 추천해야 하나 아직 하지 않은 이를 추고하라고 이조에서 건의함
- 이형원(李亨元)이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따라 수령으로 추천해야 하나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해조(該曹)에서 살펴 추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인릉군 이재협(李在協), 판돈녕 김종정(金鍾正),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 능주목사 임중원(林重遠), 〈중략〉 모두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정식(定式)에 따라 추고하여 꾸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이번 칙교(飭教)한 뒤에 문재(文宰)는 추천(追薦)한 사람이 많았지만 무신(武臣)은 장신(將臣) 외에는 아직 누구도 하지 않았다. 혹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우선 처분하지 말고 본조(本曹)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논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이형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十五日 癸丑

- 李亨元, 以兵曹言啓曰, 因承政院啓辭, 今丁未年例, 邊將應薦不薦人員, 令該曹察推事, 允下矣. 知事尹東暹·趙時敏·姜世晃, …… 濟州牧使李命俊, 綾州牧使林重遠, …… 俱爲應薦而不薦, 竝依定式,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今番飭教之後, 文宰多有追薦人, 武臣則將臣外, 尙無爲之者, 豈或未及聞知而然乎? 姑不處分, 自本曹, 查實論罪, 可也.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15일(계축)

- 변장을 추천해야 하나 아직 추천하지 않은 이를 추고하라는 병조의 계
- 이형원(李亨元)이 병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따라 지금 정미년에 연례(年例)로 변장(邊將)에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추천하지 않은 인원을 해조(該曹)에서 살펴 추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사 윤동섬(尹東暹)·조시민(趙時敏)·강세황(姜世晃),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 능주목사 임중원(林重遠), 〈중략〉 모두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정식(定式)에 따라 추고하여 꾸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이번 직교(飭教)한 뒤에 문재(文宰)는 추천한 사람이 많았지만 무신(武臣)은 장신(將臣) 외에는 아직 누구도 하지 않았다. 혹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우선 처분하지 말고 본조(本曹)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논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이형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十九日 丁巳

- 獻納柳匡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19일(정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유광천(柳匡天)의 계
- 헌납 유광천(柳匡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광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二十一日 己未

- 獻納柳匡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役鞠[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21일(기미)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유광천(柳匡天)의 계
- 헌납 유광천(柳匡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광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二十七日 乙丑

- 掌令吳鵬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新啓新除授執義宋銓, 時在京畿富平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27일(을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오봉남(吳鵬南)의 계
- 장령 오봉남(吳鵬南)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새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집의 송전(宋銓)이 지금 경기 부평(富平)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오봉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二月 二十七日 乙丑

- 正言金履成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2월 27일(을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이성(金履成)의 계
- 정언 김이성(金履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이성.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六日 甲戌

- 丁未三月初六日申時, 上詣摛文院. 齋宿入侍時, 行都承旨李致中, 左承旨李祖承, 右承旨曹允大, 左副承旨李鼎運, 右副承旨李勉兢, 同副承旨白師謹, 記事官金孝建, 假注書李德鉉, 記事官李相璜·金祖淳, 待教尹行任, 以次侍立訖. …… 上命字鎮押去假都事入侍. 賤臣承命出, 與洪龍運偕入進伏. 上曰, 罪人如何? 龍運曰, 臣之押去字鎮也, 罪人初在禁府聽傳教時, 乍有涕泣之意矣. 仍出門外, 越果川至柳川站, 則罪人有虛氣之症云, 故得一器飯許給, 則熱水潑飯盡食, 自振威至康津, 朝夕飯善食, 而對飯, 輒以不如在家時饌品爲歎, 時時索薑茶, 渡海時索飲鷄膏, 而正月二十一日, 越海至大靜縣, 二十二日, 荇棘於東門外民人家, 而與煥程荇棘之家, 相距數百步矣. 上命龍運退出.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6일(갑술)

- 임금이 홍용운(洪龍運)을 불러 김우진(金宇鎭)을 대정현(大靜縣) 배소로 압송한 과정을 보고받음
- 정미년 3월 초6일 신시에 임금이 이문원(摛文院)으로 나아갔다. 재숙(齋宿)하는데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이치중(李致中), 좌승지 이조승(李祖承), 우승지 조윤대(曹允大), 좌부승지 이정운(李鼎運), 우부승지 이면공(李勉兢), 동부승지 백사근(白師謹),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 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시위하고 섰다. <중략> 임금이 명령하여 김우진(金宇鎭)을 압송하러 갔던 가도사(假都事)를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신하가 명을 받고 나갔다가 홍용운(洪龍運)과 함께 들어와서는 나아가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은 어떠했는가?”라고 하였다. 홍용운이 말하기를, “제가 압송해 간 것은 김우진입니다. 죄인이 처음 의금부에서 전교를 들었을 때는 잠깐 눈물을 흘릴 듯 했습니다. 그대로 문밖으로 나와 과천(果川)을 지나 유천참(柳川站)에 이르자 죄인이 허기(虛氣)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을 얻어서 먹게 했더니 뜨거운 물을 뱉으며 밥을 다 먹었습니다. 진위(振威)에서 강진(康津)에 이르러 아침과 저녁밥을 잘 먹었으나, 밥을 대하고는 집에서의 찬품(饌品)과 같지 않다고 탄식했습니다. 때때로 생각차를 찾더니 바다를 건널 때는 닭고기 삶은 곰국을 찾아 마셨습니다. 1월 21일, 바다를 건너 대정현(大靜縣)에 이르렀고, 22일에 동문 밖 민가에 천극(荇棘)³⁵⁸하였습니다. 송

환정(宋煥程)을 천극한 집과는 거리가 서로 수백 보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홍용운에게 물러날 것을 명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우진, 홍용운, 천극.

358) 천극(荐棘): 유배(流配)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 배소(配所)의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와 격리(隔離)하는 것을 말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十日 戊寅

- 府啓, 持平金熙采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徐秉德, 時在忠清道大興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措辭見上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10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 지평 김희채(金熙采)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서병덕(徐秉德)이 지금 충청도 대흥(大興)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희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十日 戊寅

- 院啓, 獻納柳匡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李錫穆, 時在慶尙道尙州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10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 헌납 유광천(柳匡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이석목(李錫穆)이 지금 경상도 상주(尙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광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十三日 辛巳

○ 府啓, 掌令吳鵬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13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 장령 오봉남(吳鵬南)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오봉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十三日 辛巳

- 院啓, 獻納柳匡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13일(신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 헌납 유광천(柳匡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광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十七日 乙酉

- 刑曹啓目, 粘濟州放未放, 依啓聞施行,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 俞德純放送事, 分付.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17일(을유)

- 제주(濟州) 방·미방(放未放) 시행에 대하여 형조에서 보고함
- 형조 계목(啓目)에 이르기를, “제주(濟州) 방·미방(放未放)은 계문(啓聞)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여 계하하기를,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고, 유덕순(俞德純)을 풀어주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미방, 계문.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二十日 戊子

- 丁未三月二十日卯時，上御熙政堂。晝講入侍時，知事鄭好仁，特進官鄭昌順，參贊官金魯永，侍讀官金履翼，檢討官趙鎮宅，正言鄭來百，假注書李德鉉，記事官金珍恪，記注官承膺祚，宗臣安川君桂，武臣李潤禧，以次進伏訖。…… 上命臺臣進前。來百進前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20일(무자)

- 주장에 입시한 자리에서 정언 정래백(鄭來百)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함
- 정미년 3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장(晝講)에 입시켰을 때 지사 정호인(鄭好仁), 특진관 정창순(鄭昌順), 참찬관 김노영(金魯永), 시독관 김이익(金履翼), 검토회관 조진택(趙鎭宅), 정언 정래백(鄭來百),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김진각(金珍恪),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종신 안천군(安川君) 계(桂), 무신 이윤희(李潤禧)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대신(臺臣)에게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였다. 정래백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래백.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二十一日 己丑

- 丁未三月二十一日卯時，上御熙政堂。朝講入侍時，領事李在協，知事徐有隣，特進官洪秀輔·柳義養，參贊官洪仁浩，侍講官金履翼，檢討官趙鎮宅，正言鄭來百，持平韓永運，假注書李德鉉，記注官承膺祚，記事官金祖淳，以次進伏訖。……永運起伏曰，此府啓也。仍奏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21일(기축)

- ☐ 주장에 입시한 자리에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올린 사헌부의 계
- 정미년 3월 21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장에 입시켰을 때 영사 이재협(李在協), 지사 서유린(徐有隣), 특진관 홍수보(洪秀輔)·유의양(柳義養), 참찬관 홍인호(洪仁浩), 시강관 김이익(金履翼), 검토회 조진택(趙鎭宅), 정언 정래백(鄭來百), 지평 한영운(韓永運),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한영운이 일어났다가 부복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사헌부의 계(啓)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영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二十六日 甲午

- 濟州防禦使狀啓, 三殿討逆陳賀加封箋文, 中間漂流, 愆期至此, 惶悚待罪事, 傳于李亨元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26일(갑오)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가 토역 진하 전문이 늦게 당도한 것 때문에 대죄한다는 장계를 올림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가 장계를 올리기를, “삼전(三殿)께서 역적을 토벌한 것에 대한 하례로 가봉(加封)한 전문(箋文)이 중간에 표류되었다가 시기를 놓쳐 이곳에 이르렀으니, 황공하여 대죄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형원(李亨元)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가봉 전문, 이형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二十七日 乙未

○ 府啓, 掌令李太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27일(을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 장령 이태형(李太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三月 二十七日 乙未

- 院啓, 司諫呂萬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3월 27일(을미)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계(啓)에 사간 여만영(呂萬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여만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九日 丙午

- 丁未四月初九日酉時，上御誠正閣。召對・詣臺臺臣同爲入侍時，檢校直提學李秉模，參贊官洪仁浩，侍讀官金履翼，檢討官洪樂貞，假注書李德鉉，記事官李相璜・金祖淳，獻納尹行履，持平金鎔，以次進伏訖。……鎔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9일(병오)

- ☐ 소대(召對) 자리에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사헌부에서 건의함
- 정미년 4월 초9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소대(召對)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이 함께 입시했을 때, 검교 직제학 이병모(李秉模), 참찬관 홍인호(洪仁浩), 시독관 김이익(金履翼), 검토관 홍낙정(洪樂貞),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 헌납 윤행리(尹行履), 지평 김용(金鎔)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용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용.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十日 丁未

- 丁未四月初十日未時，上御熙政堂。召對・詣臺臺臣同爲入侍時，參贊官曹允大，侍讀官金履翼，檢討官洪樂貞，待教尹行任，假注書李德鉉，記事官李相璜・金祖淳，執義李師濂，以次進伏訖。…… 上命臺臣進前。師濂進前，奏府啓。上曰，只舉末端，可也。師濂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10일(정미)

- ☐ 소대(召對) 자리에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사헌부에서 건의함
- 정미년 4월 초10일 미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소대(召對)에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이 함께 입시했을 때, 참찬관 조운대(曹允大), 시독관 김이익(金履翼), 검토관 홍낙정(洪樂貞), 대교 윤행임(尹行任), 가주서 이덕현(李德鉉),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 집의 이사렴(李師濂)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대신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 이사렴이 앞으로 나아가 사헌부의 계(啓)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단(末端)만 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사렴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十九日 丙辰

○ 執義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19일(병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집의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一日 戊午

- 執義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持平朴載淳, 時在忠清道陰城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1일(무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집의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지평 박재순(朴載淳)이 지금 충청도 음성(陰城)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중략>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一日 戊午

- 正言崔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1일(무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훤(崔烜)의 계
- 정언 최훤(崔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훤.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三日 庚申

○ 執義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3일(경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집의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五日 壬戌

- 司諫李師濂啓,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5일(임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 이사렴(李師濂)의 계
- 사간 이사렴(李師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七日 甲子

- 院啓, 司諫李師濂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命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7일(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계(啓)에 사간 이사렴(李師濂)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하익룡, 이사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八日 乙丑

- 執義李思祚，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亟令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 答府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8일(을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이사조(李思祚)의 계
- 집의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四月 二十八日 乙丑

- 正言宋民載，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請爲奴罪人河翼龍，亟命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 …… 答院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4월 28일(을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송민재(宋民載)의 계
- 정언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송민재.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五月 二日 戊辰

- 府啓, 執義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5월 2일(무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 계(啓)에 집의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五月 二日 戊辰

- 院啓. 正言崔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5월 2일(무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계(啓)에 정언 최환(崔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五月 五日 辛未

- 正言宋民載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答院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5월 5일(신미)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송민재(宋民載)의 계
- 정언 송민재(宋民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송민재.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五月 二十七日 癸巳

- 曹允大, 以義禁府言啓曰, 因京畿監司徐有防啓本, 劇逆緣坐罪人等, 逮囚月日馳啓事, 諸囚各令該府該曹, 應坐者發配事, 命下矣. 啓本中衿川罪人好石, 乃是本府所管, 而已於昨冬, 以靈巖郡楸子島爲奴, 令刑曹押送之意, 草記, 蒙允, 其外諸罪人, 非本府所管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5월 27일(계사)

- ☐ 죄인 호석(好石)에 대해 추자도(楸子島)의 노(奴)로 삼기로 하고 압송한 경위를 보고한 의금부의 계
- 조윤대(曹允大)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의 계본(啓本)으로 인해 극역(劇逆)의 연좌죄인 등의 옥에 갇힌 날짜를 보고할 것, 여러 죄수에 대해 각각 해부(該府)·해조(該曹)로 하여금 연좌를 적용해야 할 자를 배소로 보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계본 중 금천(衿川) 죄인 호석(好石)은 본 의금부 소관이고, 이미 작년 겨울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의 노(奴)로 삼기로 하고 형조가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여러 죄인은 의금부 소관이 아니라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호석, 연좌.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一日 丁酉

- 以咸鏡監司狀啓，罪人金麟三嚴囚事，傳于洪文泳曰，嚴刑三次，濟州牧爲奴事，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일(정유)

- 김인삼(金麟三)을 제주목(濟州牧)의 노(奴)로 삼으라는 전교를 내림
- 함경감사가 장계(狀啓)로 죄인 김인삼(金麟三)을 엄히 가둘 것을 보고하였다. 홍문영(洪文泳)에게 전교하기를, “엄히 세 차례 형문하고 제주목(濟州牧)의 노(奴)로 삼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인삼, 홍문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六日 壬寅

- 府啓, 掌令白仁煥, 持平李鼎德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鄭益祚, 時在京畿仁川地, 持平韓光植, 時在原春道原州地. 請玆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6일(임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 계(啓)에 장령 백인환(白仁煥), 지평 이정덕(李鼎德)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정익조(鄭益祚)가 지금 경기도 인천(仁川) 땅에, 지평 한광식(韓光植)이 지금 원춘도(原春道) 원주(原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중략> 하유하라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백인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六日 壬寅

- 院啓. 正言李洪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呂萬永, 時在京畿廣州地, 正言鄭來百, 時在南陽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6일(임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 정언 이홍재(李洪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여만영(呂萬永)이 지금 경기 광주(廣州) 땅에, 정언 정래백(鄭來百)이 지금 남양(南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홍재.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七日 癸卯

- 丁未六月初七日戌時，上御重熙堂。坐直承旨入侍時，同副承旨洪仁浩，假注書趙台榮，記注官承膺祚，記事官李相璜，以次進伏訖。……命書傳教曰，今見耽羅狀本，麥事失稔，至請羅里鋪穀物。大抵本島儲穀，自有元數，以穀計口，無異排比。若念湖南民邑之貽弊，持難於所請，則唉彼島中生靈，於何仰哺？言念及此，豈勝矜憫？俄遣史官，已議領相，即令廟堂，所請穀物許施一款，草記稟處。輸致之方，務得其宜，使南民無或一毫受困。惟是海運之利涉，尤所憧憧，穀物姑捨是，人命最關心，擇船與督運之際，不可不盡心，期於萬全，以此意，一體措辭，申飭該道伯。……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7일(계묘)

- 보리농사의 흉년으로 나리포의 곡물을 청한 탐라(耽羅)의 장본을 들어주라는 전교(傳敎)
- 정미년 6월 초7일 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직 승지가 입시했을 때 동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상황(李相璜)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지금 탐라(耽羅)의 장본(狀本)을 보면 보리농사가 흉년이어서 나리포(羅里鋪)의 곡물을 청하기까지 하였다. 대체로 본도(本島)의 비축 곡물은 본래의 수가 있으나 곡물을 인구로 계산하면 여러 몫으로 나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호남의 민읍(民邑)에 폐단을 끼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청에 주저는 되지만 아, 저 섬의 생명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가엾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좀 전 사관(史官)을 보내 영상과 상의하였다. 곧 묘당에서 요청한 곡물을 시행토록 하는 문제를 초기하여 품처하게 하되, 실어가는 방법에 있어 그 편의에 힘써 남민(南民)이 혹 조금의 곤란이라도 받는 일이 없게 하라. 해운(海運)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은 더욱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일이다. 곡물은 접어두고 인명이 가장 관심이다. 배를 선정하고 운송을 독려할 때 마음을 다하여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당해 관찰사에게 신칙하라.”라고 하였다.³⁵⁹⁾ <하략>.

△ 주제어: 탐라, 장본, 나리포.

359) 《비변사등록》 정조 7년 6월 7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八日 甲辰

○ 權職，以備邊司言啓曰，濟州牧使李命俊請穀狀啓，有草記稟處之命矣。取見其狀本，則以爲本島麥農，已判大無，民情遑遑。每當麥歉之時，還上之請退，穀物之請得，多有已例。十分酌量，隨其被災淺深，夏捧新還，尤甚里折半停退，之次里三分一停退，平役米五斗內，尤甚里減二斗，之次里減一斗，待秋捧上。而及至七八月，將未免填壑之患，故今方竭力鳩聚，出陸貿穀，次次救活計料，而其所接濟之策，無出還分。三邑人口，壯弱竝六萬二千二百十三口，壯一口一日米五合，弱一口一日米三合式，自七月初，至八月晦，間十日排六巡磨鍊，則折米爲八千一百石零。本州三邑各倉見在穀中，計除停退・種子・應下公料，則所餘只爲五千七十三石零。其所不足，爲三千二十七石零。羅里舖，卽爲本島設置者，該倉所儲，雖或不足，亦多有沿海邑推移區劃之例，一依狀請數爰，自其邑地土船，別定監色，趁卽入送，以爲及期補賑事。請令廟堂稟處矣。本島農務，多尙牟麥，而歉荒此極，還賑難繼，乃有五月請穀之舉，船粟往哺，在所不已。但折米三千餘石，以皮穀則多至六千餘石，而大靜一邑，旣云稍實，則似不免過於分數。且湖南沿邑，纔經大賑，庫儲罄竭，辦出之難，不言可想。所當就其中，酌量裁減，使島陸衆民，均被惠澤，而今此十行絲綸，眷眷於島中生靈，至以持難所請，於何仰哺爲教，其在仰體之道，宜施拔例之政。本道沿邑中，牟四千石，米五百石，太五百石，準折米三千之數，特爲許劃，仍令本道，以精實準斛者，逐邑分排。擇取完固船，量宜裝載，鱗次入送，而督運之節，道臣・守令，殫竭奉行，則不煩繡衣，自可利涉，依近例，以沿邑守令，別定領運差使員，着意董飭，期於無弊輸送。時當南風，去船不如來船，覘候裝發之方，另加審慎，海氛不調，則必令深藏於港口，浪勢克順，則莫敢逗留於洋中，毋疾毋徐，惟風是視，使穀物人名，俱出萬全，以副丙枕憂勤之念事，申飭分付於該道道臣。涼藿換貿，法意甚嚴，而挽近以來，專不致念，羅舖儲留，有名無實，一有島荒，輒煩沿穀，事之寒心，莫此爲甚。今番則趁期措備，如數出送，俾無如前之弊，船隻到泊形止，隨卽登聞，無或遲滯。所劃穀物，不以準劃而濫費，必思均表而節用，留作儲置，以備不虞事，嚴飭濟州牧。夏捧新還停退，平役米分數量減，待秋捧上等事，竝依狀請施行之意，一體分付，何如？傳曰，允。道內守令中，另擇定差員，觀勢轉運，昨日傳教亦言之。自此至畢輸，無非朝家爲南民憧憧之時，令道伯，克體此意，毋或泛忽事，措辭行會，可也。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8일(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이 곡물을 청하며 올린 장계에 대해 그 처리방안을 보고한 비변사의 계

○ 권엄(權嚴)이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³⁶⁰의 곡물을 청하는 장계에, 초기하여 품처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장본에 본섬의 보리농사는 이미 큰 흉년으로 판단이 났고 민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늘 보리 흉년이 들 때마다 환자를 물리도록 청하였고 곡물을 얻기를 청함은 많은 예가 있습니다. 심분 참작하여 그 재해가 얕고 깊음에 따라 여름에 수봉할 새 환자로 우심리(尤甚里)는 절반을 물리고, 지차리(之次里)는 3분의 1을 물릴 것이며 평역미(平役米) 5두 안에서 우심리는 2두를 경감하고 지차리는 1두를 경감하되 가을에 가서 수봉하도록 할 것입니다. 7, 8월에 가서는 구렁에 쓰러질 걱정이 있으므로 현재 힘을 다하여 주워 모아 육지로 나아가 곡물을 무역해서 차차 구제할 생각이나 그 구제할 방책으로는 환자를 나누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삼읍의 인구는 장(壯)과 약(弱)을 아울러 62,213명이요, 장(壯) 1명에 1일 쌀 5홉, 약(弱) 1명에 1일 쌀 3홉씩 7월 초부터 8월 그믐까지 10일 간격으로 6차례 마련하여 쌀로 환산하면 8,100석입니다. 본 고을 삼읍 각 창고에 현재 있는 곡물에서 정지하고 물린 종자와 지출해야 할 공료(公料)를 계산하여 제하면 남는 것은 5,073석이고, 그 부족은 3,027석입니다. 나리포(羅里鋪)는 곧 본섬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바가 혹 부족하더라도 또한 연해읍(沿海邑)에서 마련하여 구획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장청(狀請)한 수효에 따라 그 고을의 지토선(地土船)에 감색(監色)을 따로 정하여 곧 들여보내 제때 구호할 수 있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섬의 농사는 대부분 모맥(牟麥)을 숭상하여 힘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도의 흉년을 만나 환자와 구호곡을 잇대기 어려워 5월에 곡물을 청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배에 곡물을 실어다 먹여주는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쌀 3천여 석을 겉곡식으로 따지면 6천여 석입니다. 그러나 대정(大靜) 한 고을은 초실(稍實)이라고 하였으니 분수(分數)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듯싶습니다. 또 호남의 연해읍은 막 큰 진휼을 치렀으므로 창고의 비축이 다하여 마련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작, 감축해서 섬과 물의 백성들이 고르게 혜택을 입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10줄 전교는 섬 백성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어 요청에 주저한다면 어찌 먹여주기를 바라겠느냐는

360) 이명준(李命俊): 본관은 전주(全州). 제주목사(재임: 1786. 4.~1788. 3.) 역임

하교까지 하시니 우러러 받드는 도리에 있어 특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 하겠습니다. 본도의 연해읍 가운데에서 보리 4천 석, 쌀 5백 석, 콩 5백 석을 쌀로 환산하여 3천 석을 특별히 획급하되, 이어 본도에서 알차고 두곡(斗斛)에 맞는 것으로 고을마다 배정하게 하고 완고한 배를 선택하여 알맞게 실어 차례로 들여보내게 할 것입니다. 운송을 독려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신과 수령이 정성을 다하여 봉행하면 수의(繡衣)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잘 건넌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에 의하여 연해읍의 수령을 특별히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으로 정하여 착실히 독려하여 폐단 없이 수송하도록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풍이 부는 때를 맞이하여 가는 배가 오는 배만 못하니 날씨를 보아 실어 보내는 방도에 특별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서 기상(氣象)이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항구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풍랑이 순조로우면 바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빠르거나 더딤이 없이 오직 바람에 따라 곡물과 인명이 모두 만전하게 해서 밤중에 걱정하시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해도 도신에게 신칙,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곽(涼藿)의 교환 무역은 법의 뜻이 매우 엄중하나 요즘에 와서 전혀 뜻을 두지 않아 나리포의 비축이 유명무실해져 섬에 흉년이라도 있게 되면 곧 연변읍의 곡물을 번거롭게 하니 일이 한심스러움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 때에 조치해서 수에 맞추어 내보내 전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고 배가 도착한 전말을 곧 장문하게 하되 혹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획급된 곡물은 획급된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나치게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고 고르게 나누어주고 절약해 사용하여 남겨두었다가 뜻하지 않은 일에 대비할 것을 생각하라고 제주목사에게 엄중 신칙할 것이며 여름에 수봉할 새 환자의 물립과 평역미(平役米)를 분수해서 감축시킨 것을 가을에 가서 수봉하는 일 등을 아울러 장정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도내 수령 가운데 특별히 차사원을 선정하여 형편을 보아가며 수송하게 하되 어제의 전교도 말하라. 이로부터 수송을 마칠 때까지 모두 조정에서 남쪽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는 때이니 관찰사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³⁶¹⁾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 나리포, 이명준, 양곽.

361)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6월 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八日 甲辰

- 丁未六月初八日辰時，上御誠正閣。都承旨與領議政入侍時，行都承旨李秉模，假注書李羲觀，記事官李相璜·金祖淳，領議政金致仁，以次進伏訖。…… 上曰，濟州請得羅里浦穀物事，將何以處之？致仁曰，在前亦有六月請得之例矣。上曰，何時事也？致仁曰，似是庚子間事也。既有前例，今亦不可不許也。…….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8일(갑진)

- ☐ 임금이 제주(濟州)에서 나리포(羅里浦)의 곡물을 요청한 건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정미년 6월 초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영의정과 함께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이병모(李秉模), 가주서 이희관(李羲觀),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나리포(羅里浦)의 곡물을 얻고자 청한 일은 장차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전에도 6월에 얻고자 청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언제 일인가?”라고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경자년 즈음의 일인 듯합니다. 이미 이전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나리포, 김치인.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九日 乙巳

- 丁未六月初九日卯時，上御誠正閣。左承旨入侍時，左承旨權禰，假注書趙台榮，記事官李相瓚·金祖淳，以次進伏訖。…… 萬永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9일(을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을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여만영(呂萬永)의 계
- 정미년 6월 초9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좌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승지 권엄(權嚴),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여만영(呂萬永)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을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여만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日 丙午

- 正言趙鎮宅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致. …… 答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0일(병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치하라는 정언 조진택(趙鎭宅)의 계
- 정언 조진택(趙鎭宅)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치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택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二日 戊申

- 持平沈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掌令姜世綸, 時在慶尙道尙州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 下諭事依啓. 正言趙鎭宅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2일(무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와 지평 심수(沈銖)의 계
- 지평 심수(沈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새로 제수한 장령 강세륜(姜世綸)이 지금 경상도 상주(尙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중략>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정언 조진택(趙鎭宅)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수, 조진택.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三日 己酉

- 掌令李太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獻納李普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3일(기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와 장령 이태형(李太亨)의 계
- 장령 이태형(李太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헌납 이보천(李普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이보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四日 庚戌

- 持平沈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答曰, 不允. 田文顯事, 迄可休矣. …… 正言徐邁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4일(경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와 지평 심수(沈銖) 등의 계
- 지평 심수(沈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의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수, 서매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五日 辛亥

- 掌令成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答曰, 不允. 田文顯事, 迄可休矣. …… 司諫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5일(신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성정진(成鼎鎭) 등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정진, 송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六日 壬子

- 沈豐之, 以吏曹言啓曰, 今日本曹開圻[開圻]坐起時, 考見諸道褒貶啓本, 則會寧府使金相玉, 以裨僚不飭, 妓鬻招謗爲目, 順川郡守李晦植, 以勉在典守, 無大疵謬爲目, 金化縣監李萬運, 以文士爲吏, 宜其或疎爲目, 平安都事李宗烈, 以疎錯難恕爲目, 參禮察訪金致光, 以益勉馬政爲目, 則竝宜置下考而置諸中考, 慶興府使安櫨, 以姑恕浮謗, 益勉修飭爲目, 濟州判官鄭鍊, 以剛克不足, 柔善有餘爲目, 則竝宜置中考而置諸上考, 殊無嚴明殿最之意. 四道道臣, 當該牧使, 推考警責, 四邑守令·都事·察訪, 竝罷黜, 濟州判官鄭鍊, 中考施行, 何如? 傳曰, 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6일(임자)

- 전최 계본을 토대로 전최가 엄격하고 분명하게 되지 않은 제주판관(濟州判官) 정련(鄭鍊)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보고한 이조의 계
- 심풍지(沈豐之)가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오늘 본 이조에서 문서를 뜯어보기 위해 출근했을 때 여러 도에서 올라온 포폄에 관한 계본을 보니, 회령부사 김상옥(金相玉)에 대해서는 ‘비장(裨將)과 겸종(兼從)은 제대로 신칙하지 않았고 기생과 놀고 사냥을 다닌 일로 비방을 받았다.’로 제목을 작성하였고, 순천군수 이회식(李晦植)은 ‘국가의 재물을 맡아 지키는 데는 힘써야 하나 크게 잘못된 일은 없었다.’로 제목을 작성하였고, 금화현감 이만운(李萬運)은 ‘문사로서 관리가 되었으니 간혹 소홀할 수도 있다.’로 제목을 작성하였고, 평안도사李宗烈(李宗烈)은 ‘일 처리를 소홀히 하고 착오를 범한 것은 용서해 주기 어렵다.’로 제목을 작성하였고, 삼례찰방 김치광(金致光)은 ‘마정(馬政)은 더욱 힘써야 한다.’로 제목을 작성하였으니, 모두 하고(下考)에 두어야 하는데 중고(中考)에 두었습니다. 경흥부사 안숙(安櫨)은 ‘떠도는 비방은 우선 용서하니 몸가짐을 단속하는 데는 더욱 힘써야 한다.’로 제목을 작성하였고, 제주판관(濟州判官) 정련(鄭鍊)은 ‘강단 있게 다스리는 것은 부족하나 유순함은 충분하다.’로 제목을 작성하였으니, 모두 중고에 두어야 하는데 상고(上考)에 두었습니다. 전최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는 뜻이 전혀 없으니 4도(道)의 도신과 해당 목사는 모두 추고하고 경책하며, 4읍의 수령·도사·찰방은 모두 파출하고, 제주판관 정련은 중고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³⁶²⁾

△ 주제어: 제주판관, 정련, 전최, 포폄.

362) 《일성록》 정조 11년 6월 15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六日 壬子

- 執義鄭益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正言徐邁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6일(임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와 집의 정익조(鄭益祚) 등의 계
- 집의 정익조(鄭益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의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익조, 서매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六日 壬子

- 丁未六月十六日巳時，上御重熙堂。右承旨入侍時，右承旨鄭東浚，記事官金孝建·李相璜·金祖淳，以次進伏訖。上曰，都承旨入侍。賤臣承命出，與行都承旨沈豐之偕入進伏。上曰，今日勿爲申退，在賓廳舉行。招致濟州人民，問其疾苦及年事，給其回糧之意，曉諭，可也。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6일(임자)

- 임금이 도승지에게 제주인민(濟州人民)을 불러 농사 현황과 불만을 청취하겠다는 뜻을 전함
- 정미년 6월 16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승지 정동준(鄭東浚), 기사관 김효건(金孝建)·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지는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신하가 명을 받들고 나가 도승지 심풍지(沈豐之)와 함께 들어와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신시에 퇴청하지 말고 빈청에 있으면서 거행하라. 제주인민(濟州人民)을 불러들여 고통스러운 점과 농사에 대해 묻고, 돌아갈 식량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깨우쳐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물리날 것을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 나갔다.

△ 주제어: 제주 인민, 심풍지.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七日 癸丑

- 掌令李太亨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司諫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7일(계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와 장령 이태형(李太亨) 등의 계
- 장령 이태형(李太亨)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의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송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九日 乙卯

- 以全羅監司狀啓, 濟州牧補賑穀運送事, 傳于李亨元曰, 島民亦吾民, 急於救急, 爲此船粟往哺之舉, 而本道民勢, 瘡痍之餘, 又當轉輸, 言念及此, 予豈食甘而寢甘? 若聞利運還泊之報, 庶可弛心, 爲道臣·守宰者, 若知分憂之義, 寧或歇後? 更以此意, 申飭道伯, 使之申諭差員, 俾各悉心於分輸之時, 竭誠於領運之際, 無使水陸民人, 一毫爲俱困之患. 裝發形止, 利運形止, 竝與無事還泊形止, 陸續狀聞事, 分付, 萬一弊歸沿民, 侵及船卒, 則當有摘發勘罪之道, 竝須知悉事, 一體分付, 亦欲從近發送解事備郎, 潛行考其守宰勤慢, 亦令知悉.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9일(을묘)

- 제주목(濟州牧)에 대한 보진곡(補賑穀) 운송에 성의를 다해 백성의 근심을 없애라는 전교(傳敎)
- 전라감사가 장계로 제주목(濟州牧)에 보진곡(補賑穀) 운송하는 일에 대해 보고하자 이형원(李亨元)에게 전교하기를, “섬 백성도 역시 나의 백성이다. 구급(救急)에 급하여 배로 곡물을 실어다 먹이는 일이 있게 되었으나 본도 백성들의 형편은 지친 나머지 또 옮겨 실어 보내는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내 어찌 먹는 것이 달고 잠자리가 달겠는가? 잘 수송하고 돌아왔다는 보고를 듣는다면 아마도 마음은 느긋해질 것이다. 관찰사·수령이 된 자가 근심을 나누는 의의를 안다면 어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는가? 다시 이러한 내용으로 관찰사에게 신칙하여 차사원(差使員)에게 효유하게 해서 각각 나누어 수송할 때 마음을 다하게 하고, 맡아 운송할 때는 성의를 다하여 물에서나 물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곤궁한 근심이 없게 하라. 그리고 실어 발송한 전말과 잘 운송한 전말, 무사히 돌아온 전말을 아울러 계속하여 장문하라고 분부하라. 만일 폐단이 연변(沿邊)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선졸(船卒)에게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적발하여 처벌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알게 할 것을 일체 분부하라. 역시 곧 일을 잘 보는 비변사 낭청을 내보내 은밀히 수령의 근만(勤慢)을 점검하려고 하니 역시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³⁶³⁾

△ 주제어: 제주목, 보진곡, 이형원.

363)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6월 19일자 기사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九日 乙卯

○ 府啓, 持平沈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9일(을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 계(啓)에 지평 심수(沈銖)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十九日 乙卯

- 院啓, 正言徐邁修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19일(을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계(啓)에 정언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노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서매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二日 戊午

- 四度, 以徐有升爲司饗直長[司饗直長], …… 吳允國爲旌義縣監, 黃泰彦爲甲山府使, ……
十一度, 以吳泰彦爲禮曹佐郎, 金正淳爲掌苑別提.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2일(무오)

- ☐ 정사(政事)를 실시하여 오윤국(吳允國)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4도(度), 서유승(徐有升)을 사옹원 직장으로, 〈중략〉 오윤국(吳允國)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황태언(黃泰彦)을 감산부사로 제수하였다. 〈중략〉 11도(度), 오테언(吳泰彦)을 예조좌랑으로, 김정순(金正淳)을 장원별제(掌苑別提)로 제수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오윤국.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二日 戊午

- 丁未六月二十二日寅時，上御誠正閣。吏兵房承旨入侍時，左承旨李亨元，右副承旨洪億，假注書趙台榮，記事官金祖淳，記注官承膺祚，記事官李宗烈，以次進伏訖。……
蓍東曰，旌義縣監李甲龍，限麥秋仍任，差代時遞付京職事，有下教矣。今政窠窄，依例送西，待窠調用，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2일(무오)

- 이조판서 윤시동이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의 옮겨갈 직임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함
- 정미년 6월 22일 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이병방(吏兵房) 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우부승지 홍억(洪億),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김조순(金祖淳),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종렬(李宗烈)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윤시동(尹蓍東)이 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을 맥추(麥秋)까지 그대로 재임하게 하고 차대(差代)할 때 경직(京職)에 부쳐주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번 정사(政事)에는 빈자리가 적으므로 예(例)에 따라 서반직에 보내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調用)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이갑룡, 서반직, 경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三日 己未

- 院啓, 司諫洪聖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依律處斷. ……
請新除授正言朴師默, 時在原春道原州地, 司憲府持平曹霖, 時在京畿富平地, 請竝斯速
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3일(기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계(啓)에 사간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정언 박사묵(朴師默)이 지금 원춘도(原春道) 원주(原州) 땅에 있고, 사헌부 지평 조림(曹霖)이 지금 경기 부평(富平)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성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三日 己未

- 丁未六月二十三日卯時, 上御誠正閣. 都承旨 · 右承旨 · 吏兵房承旨, 與守令 · 邊將初仕復職人入侍時, 行都承旨沈豐之, 左承旨李亨元, …… 利城縣監鄭達新, 旌義縣監吳允國, …… 守門將李思燧 · 韓性敬 · 閔宅永 · 李弘弼, 以次進前訖. …… 命書傳教曰, 有句管事, 兵曹判書金履素牌招, 使之行公.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3일(기미)

-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 등 수령 · 변장에 임명된 이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교를 내림
- 정미년 6월 23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도승지 · 우승지 · 이병방승지가 수령 · 변장에 초사(初仕) 또는 복직(復職)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더불어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중략> 이성현감(利城縣監) 정달신(鄭達新),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 <중략> 수문장 이사익(李思燧) · 한성경(韓性敬) · 민택영(閔宅永) · 이홍필(李弘弼)이 차례로 앞으로 나아갔다. <중략> 명하여 전교(傳教)를 쓰게 하기를,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병조판서 김이소(金履素)가 패초(牌招)하여 행공(行公)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물러나라고 명하자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 주제어: 정의현감, 오윤국, 김이소.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四日 庚申

- 府啓, 持平金聖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答曰, 不允. 田文顯事, 如是持難, 極爲未妥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4일(경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서 지평 김성준(金聖準)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 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성준.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四日 庚申

- 院啓, 司諫洪聖淵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4일(경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 계(啓)에서 사간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성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五日 辛酉

- 府啓, 持平柳頤玄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答曰, 不允. 田文顯事, 如是持難, 極爲未妥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5일(신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서 지평 유이현(柳頤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 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이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六月 二十五日 辛酉

- 丁未六月二十五日卯時，上御熙政堂。左承旨·右副承旨與下直守令入侍時，左承旨李亨元，右副承旨李謙煥，假注書趙台榮，…… 利城縣監鄭達新，旌義縣監吳允國，英陽縣監李永瑗，麟蹄縣監吳彥謨，以次進前訖。…… 允國進伏。上曰，何年入仕乎？允國曰，辛丑六月政，以取才居首爲之矣。上曰，本島設賑方張，爾其從速下去，善爲調賑，可也。仍命讀宣諭·別諭訖。命退。…….

❖ 정조 11년(1787) 정미년 6월 25일(신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 등이 임금께 나아가 하직함
- 정미년 6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좌승지·우부승지가 하직 수령과 함께 입시했을 때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우부승지 이겸환(李謙煥),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중략> 이성현감(利城縣監) 정달신(鄭達新),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 영양현감 이영원(李永瑗), 인제현감 오언모(吳彦謨)가 차례로 앞으로 나아갔다. <중략> 오윤국이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해에 입사(入仕)했는가?”라고 하였다. 오윤국이 말하기를, “신축년[1781, 정조 5년] 6월 정사에서 취재로 1등을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섬은 진휼(賑恤)을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으니 너는 속히 내려가서 진휼을 잘 하도록 힘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대로 선유(宣諭)·별유(別諭)를 읽으라 명하고 마치고는 물러날 것을 명했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오윤국, 진휼.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日 丁卯

- 執義鄭萬始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答府曰, 不允. 田文顯事, 如是持難, 極爲未妥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일(정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정만시(鄭萬始)의 계
- 집의 정만시(鄭萬始)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하는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운허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日 丁卯

- 正言張至冕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正言徐郁修, 時在平安道泰川縣任所,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일(정묘)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단해 줄 것을 청하는 정언 장지면(張至冕) 등의 계
- 정언 장지면(張至冕)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정언 서욱수(徐郁修)가 지금 평안도 태천현(泰川縣) 임소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三日 戊辰

- 掌令崔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新,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措辭現上 答府曰, 不允. 田文顯事, 如是持難, 極爲未妥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3일(무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최烜(崔烜)의 계
- 장령 최烜(崔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烜.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三日 戊辰

- 獻納李庚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命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3일(무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경운(李庚運)의 계
- 헌납 이경운(李庚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노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경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四日 己巳

- 掌令鄭景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措辭現上 答府曰, 不允. 田文顯事, 如是持難, 極爲未安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4일(기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정경조(鄭景祚)의 계
- 장령 정경조(鄭景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있으니 매우 편치 않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정경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四日 己巳

- 司諫李思祚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4일(기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 이사조(李思祚)의 계
- 사간 이사조(李思祚)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사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五日 庚午

- 持平柳頤玄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請別軍職田文顯, 亟命汰去. 措辭現上 答府曰, 不允. 田文顯事, 如是持難, 極爲未安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5일(경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유이현(柳頤玄)의 계
- 지평 유이현(柳頤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청컨대 별군직 전문현(田文顯)을 태거(汰去)하도록 속히 명을 내리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전문현의 일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있으니 매우 편치 않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이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五日 庚午

- 正言張至冕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答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5일(경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장지면(張至冕)의 계
- 정언 장지면(張至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장지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九日 甲戌

- 丁未七月初九日辰時，上御重熙堂。右承旨入侍時，右承旨趙衍德，假注書趙台榮，記事官李崑秀·金祖淳，原任直提學徐有防，原任直閣鄭東浚·徐鼎修，待教尹行任，以次進伏訖。…… 命書傳教曰，耽羅麥事告歉，纔令船粟往哺，此時此島凡係息肩之方，宜有拔例軫念之舉，貢馬聞下陸已久云。雖難停免，今因例貢，招問領納人，亦有慰諭者，貢果係是薦獻物種，依例封進，而各殿進上則竝減半，其餘月令進上及方物各司納，竝限明年麥秋蕩減，內寺奴貢當年條，亦爲蕩減，浦作之弊，曾所稔聞，如是鑄貢之後，不可無實惠之下究，魚鰔之已捉已採者，如難還給，使之從便充貢於明年，明年條停減，如癸卯湖南停貢例事，令廟堂措辭行會。又命書傳教曰，既承慈教，殿宮貢獻，依各殿宮例爲之事，一體行會。又命書傳教曰，濟州進上領來人，承旨招問疾苦，仍問本州年事，別回糧，依年前特教例題給後，令該廳草記。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9일(갑술)

- 탐라(耽羅)의 보리 흉황으로 인해 진상을 줄이고 방물(方物)을 탕감하는 등의 조처를 전교(傳敎)를 통해 내림
- 정미년 7월 초9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곤수(李崑秀)·김조순(金祖淳), 원임 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원임 직각 정동준(鄭東浚)·서정수(徐鼎修), 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탐라(耽羅)의 보리농사가 흉년이 들어 겨우 배에 곡식을 싣고 가서 구제하게 하였다. 이런 때에 이 섬은 어깨를 펴게 할 수 있는 온갖 방도를 전례를 끌어다 진념하는 거조가 있어야 하겠다. 공마(貢馬)는 들으니 물에 내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다. 비록 정지시키기는 어려우나 지금은 예공(例貢)으로 인하여 물고 온 사람을 불러서 위유(慰諭)한 바가 있어야 하겠다. 공과(貢果)는 천헌(薦獻)하는 물종(物種)이므로 전례대로 올리게 하되 각전(各殿)의 진상은 모두 절반을 줄인다. 그 나머지의 진상과 각사(各司)에 바치는 방물(方物)은 모두 내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탕감하며, 내사노(內寺奴)의 당년조 신공(身貢)도 탕감하라. 포작(鮑作)의 폐단은 일찍이 익히 들은 바이다. 이렇게 역(役)을 견감한 뒤에 실혜(實惠)가 아래에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어복(魚鰔)을 이미 잡거

나 탄 것은 도로 주기는 어려우나 형편대로 채워서 내년에 올리게 하고, 내년에는 정감(停減)하기를 계묘년(癸卯年) 호남공(湖南貢)의 사례대로 하도록 묘당에서 조사(措辭)하여 행회(行會)하라.”라고 하였다. 또 명하여 전교를 쓰게하기를,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전궁(殿宮)의 공헌(貢獻)을 각 전궁의 예대로 하라고 일체로 행회하라.”라고 하였다. 또 명하여 전교를 쓰게하기를, “제주(濟州)의 진상을 가지고 온 사람을 승지가 불러서 백성의 질고(疾苦)와 본주(本州)의 농사현황을 물어보고 별회량(別回糧)을 이전의 특교 예대로 제공한 뒤에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초기(草記)하게 하라.”라고 하였다.³⁶⁴⁾ 물러날 것을 명하자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 주제어: 탐라, 제주, 보리농사, 진상, 공마, 예공, 포작.

364)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7월 9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九日 甲戌

- 丁未七月初九日申時，上御重熙堂。坐直承旨入侍時，右承旨趙衍德，假注書趙台榮，記事官尹行任·金祖淳，以次進伏訖。…… 上曰，濟州民人等，當於協陽門，率史官來坐，以爲勞問，而今聞都承旨，坐於政院房內，循例曉諭云，事甚可怪，此後無得如是之意，分付，可也。…….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9일(갑술)

- 제주민인(濟州民人)들이 협양문에서 문안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분부함
- 정미년 7월 초9일 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직 승지가 입시켰을 때 우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민인(濟州民人)들이 협양문(協陽門)에서 사관을 데리고 와 앉아서 문안하는데, 지금 도승지에게 들으니 정원(政院) 방 안에 앉아서 관례에 따라 효유(曉諭)했다고 한다. 일이 매우 괴이하니 이 이후에는 이리저리 말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민인, 협양문.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十日 乙亥

- 徐鼎修, 以賑恤廳言啓曰, 傳曰, 濟州進上領來人, 承旨招問疾苦, 仍問本州年事, 別回糧, 依年前特教例題給後, 令該廳草記事, 命下矣. 濟州進上領來人, 本州公文中所載二十八名, 回糧米各三斗式, 依年前特教例,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10일(을해)

- 전교에 따라 제주(濟州)의 진상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회량미(回糧米)를 분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서정수(徐鼎修)가 진휼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진상을 가지고 온 사람을 승지가 불러서 백성의 질고(疾苦)와 본주(本州)의 농사현황을 물어보고 별회량(別回糧)을 이전의 특교 예대로 제급한 뒤에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초기(草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주의 진상을 가지고 온 사람은 본주의 공문 중에 28명이 올라 있으므로, 회량미(回糧米) 각 3두(斗) 씩 이전의 특교 예에 따라 분급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 회량미, 서정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十二日 丁丑

- 洪仁浩,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李甲龍遞任, 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兩馬俱爲孱劣, 事極駭然. 當該封進旌義前縣監李甲龍,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12일(정축)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이 봉진한 체임 진상마가 매우 잔약하므로 종중추고할 것을 건의한 사복시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의 체임 진상마 2필이 지금 겨우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例)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습니다. 하지만 진헌(進獻)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말 2필이 모두 잔약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이번에 봉진한 전 정의현감 이갑룡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훗날의 경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 전 정의현감, 이갑룡, 진헌.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日 乙酉

- 以濟州牧使狀啓, 漂流人康萬允等, 無事生還事, 傳于李翼晉曰, 意謂漂溺矣. 今聞生還, 極爲多幸, 方以本道運粟之果皆利涉, 爲用心之端矣. 申飭道伯, 未運數爻, 期於無餘畢泊後, 形止狀聞事, 下諭于全羅監司, 盡爲領受, 形止亦卽狀聞事, 牧使處, 一體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0일(을유)

- ☐ 표류인(漂流人)이 생환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받고, 곡식의 운송을 잘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며 내린 전교(傳敎)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표류인(漂流人) 강만윤(康萬允) 등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다고 보고하니 이익진(李翼晉)에게 전교하기를, “생각하기로는 빠져 죽은 줄로 여겼는데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을 들었으니 극히 다행이다. 바야흐로 본도(本道)에서 운송하는 곡식이 과연 잘 건너게 될지 마음이 쓰인다. 관찰사에게 신칙하여 운송하지 못한 수량을 기어코 남김없이 다 도착시킨 뒤에 형지(形止)를 장문(狀聞)하라고 전라감사에게 하유하라. 다 받은 뒤에는 형지를 즉시 장문하라고 목사에게도 일체로 회유(回諭)하라.”³⁶⁵⁾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표류인, 강만윤, 이익진.

365)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7월 20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三日 戊子

- 李祖源,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乙巳年停退條三名日進上馬六十匹, 歲貢馬二百匹, 合三百二十匹內, 十二匹船中故失, 十三匹到中路故失, 三匹到衿川病留, 實納馬二百九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3일(무자)

- 제주(濟州)에서 온 삼명일진상마 등의 상황을 보고한 사복시의 계
- 이조원(李祖源)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 뒤에 운반해 온 삼명일진상마 60필, 을사년[1785, 정조 9년] 정퇴조(停退條) 삼명일 진상마 6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합 320필 중 12필은 배 안에서 죽거나 잃어버렸고, 13필은 중로(中路)에 죽거나 잃어버렸으며, 3필은 금천(衿川)에 당도한 후 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실제 바친 말은 292필로,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마, 세공마.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四日 己丑

- 以全羅監司狀啓, 濟州移轉船隻移泊事, 傳于趙衍德曰, 雖有船粟之命, 憧憧一念, 未嘗少弛. 十六船隻, 利泊於五日之內, 誠非細幸, 以差員代行領運, 既出於除弊之意, 而及今利泊之後, 賞典一款, 豈或踰日? 依年前例, 該差員閔廷桓, 特爲加資. 勿以利泊弛心, 嚴飭差員, 更加候風慎發, 畢還泊後, 形止星火狀聞, 以紓宵旰之念事, 令廟堂卽爲行會. 仍以別加申飭, 善爲出送之意, 該牧使處, 一體申飭行會.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4일(기축)

- 제주(濟州)로 곡식을 옮긴 선척(船隻)이 무사히 당도하였으니 차원(差員)에게 상전을 베풀라는 전교를 내림
- 전라감사가 장계로 제주(濟州)로 곡식을 옮긴 선척(船隻)이 정박한 일에 대해 보고하였다. 조연덕(趙衍德)에게 전교하기를, “비록 곡물을 선운(船運)하라고 명은 내렸으나 안절부절하는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다. 16척의 배가 5일 이내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다. 차원(差員)으로 대신 영운(領運)케 한 것은 폐단을 없애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지금 무사히 도착한 후인데 어찌 상전(賞典)을 하루라도 넘기겠는가? 이전 해의 예(例)에 따라 차원 민정환(閔廷桓)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무사히 도착했다고 마음을 해이하게 갖지 말도록 차원에게 엄히 신칙하라. 다시 순풍을 기다려 조심하여 출발하고 다 회박(回泊)한 뒤에는 형지를 성화같이 장문하여 나의 소간(宵旰)³⁶⁶의 걱정을 풀라고 묘당에서 즉시 행회(行會)하게 하라. 이어서 특별히 신칙하여 잘 내보내라는 뜻으로 해당 목사에게 일체로 신칙하여 행회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조연덕, 선운, 민정환.

366) 소간(宵旰): 소의 간식(宵衣旰食)을 줄여서 쓴 말. 임금이 나랏일을 걱정하여 밤에도 옷을 입고 자고 점심은 저물녘에야 먹는다는 뜻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五日 庚寅

- 南鶴聞,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歲貢馬二百匹, 凶咎驚駘二十匹, 乙巳年停退條年例進上馬八匹, 凶咎驚駘二十匹, 合二百五十六匹內, 十匹船中故失, 十一匹到中路故失, 實納馬二百三十五匹, 禾毛色別單書入, 而馬匹率多體少品劣, 已是可駭. 而其中年例馬所重, 尤爲自別, 則盡誠擇封, 事理當然, 亦未免玄黃骨立, 所見駭異, 揆以事體, 誠極駭然. 當該封進濟州牧使, 爲先從重推考, 至於痠瘠病傷, 中路淹滯, 專由於沿路各邑不善喂養, 趁不替軍之致. 此弊亦不可不嚴飭, 三道沿邑守令, 竝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5일(경인)

- 제주(濟州)에서 선운(先運)하여 봉진한 진상마 등의 현황과 상태를 보고하고, 마필을 제대로 관리하여 봉진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처벌하라는 사복시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선운(先運)하여 연례적으로 올리는 진상마 8필, 세공마 200필, 홍구노태마 20필, 을사년 정퇴조(停退條)로 연례 진상마 8필, 홍구노태마 20필, 도합 256필 중에 10필은 배 안에서 죽고 잃어버렸고 11필은 중도에 죽고 잃어버렸으므로 실제로 바치는 말은 235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마필(馬匹)이 대부분 체구가 작고 품질이 나빠 매우 놀랍습니다. 그 중 연례마가 중요하고 더욱 특별하니 모두 골라 봉진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한데, 역시 누렁고 검으며 뼈만 남았으니 매우 이상하며 일의 체모에 비추어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봉진한 해당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우선 종중추고하고, 야위고 병들고 중도에 지체된 것은 오로지 연로(沿路) 각 고을이 잘 먹이고 기르지 않은 것 때문이며 제때 충군하여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폐단 역시 엄히 신칙해야 할 것이니, 3도 연읍 수령을 모두 추고하여 꾸짖고 문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 선운, 연례마, 진상마, 세공마, 홍구노태마.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六日 辛卯

- 正言徐有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致. …… 新除授司諫李身晦, 時在全羅道全州地, …… 持平吳彦教, 時在竹山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6일(신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이신회(李身晦)가 지금 전라도 전주(全州) 땅에 있고, <중략> 지평 오언교(吳彦教)가 지금 죽산(竹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서유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七日 壬辰

- 正言徐有鍊所啓，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答院曰，不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7일(임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서유련(徐有鍊)의 계
- 정언 서유련(徐有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서유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七月 二十八日 癸巳

- 以原春監司狀啓，罪人松大等定配事，傳于南鶴聞曰，更查鎮璧不足責，海州定配，世復北靑定配，松大濟州牧島配事，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7월 28일(계사)

- ☐ 죄인 김송대(金松大)를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하라고 전교함
- 원춘감사(原春監司)가 장계로 죄인 김송대(金松大) 등을 정배할 것을 보고하였다.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다시 조사해 보아도 정진벽(鄭鎭璧)은 책망할 것이 못 되니 해주(海州)에 정배하고, 권세복(權世復)은 북청(北靑)에 정배하며, 김송대는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하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³⁶⁷⁾

△ 주제어: 제주목, 김송대, 도배.

367) 《일성록》 정조 11년 7월 2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八月 六日 辛丑

- 傳于洪仁浩曰, 濟州回榜人子入侍.

❖ 정조 11년(1787) 정미년 8월 6일(신축)

- 제주(濟州)의 회방인(回榜人) 자식을 입시하게 하는 전교를 내림
- 홍인호(洪仁浩)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회방인(回榜人) 자식은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회방인.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八月 六日 辛丑

- 丁未八月初六日卯時，上御熙政堂。同副承旨·左承旨與入格儒生入侍時，行左承旨黃昇源，同副承旨南鶴聞，假注書趙台榮，記事官李相瓚·金祖淳，幼學金履喬，進士沈厚鎮·姜履元，以次進伏訖。…… 垺曰，文武大小科及生進回榜人，令京兆及該道，歲首訪問，草記或狀聞事，曾有特教定式矣。濟州通政安後，以去丁未年武科出身，今當回榜之年，年爲八十八歲。渠則以老病，末由越海，其子出身尙燁，持其父紅牌而來，請得新紅牌·賜花。此是該道所當舉行者，而渠既上京，連爲呼訴，故敢此，仰達矣。上曰，耽島人之回榜，似必初有之事，聞甚稀異。花牌今日內造給於其子處，使之齎傳。仍令本牧，優給宴需衣資，牧使進往設樂以侑之，以示朝家尊高年之意，可也。垺曰，年前定式時，回榜人，仍令該曹，特加一資事，亦有下教矣。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1년(1787) 정미년 8월 6일(신축)

- 제주(濟州)의 회방인(回榜人) 안후(安後)에게 새로운 홍패와 사화를 지급하라는 전교
- 정미년 8월 초6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좌승지가 입격한 유생과 더불어 입시했을 때 행 좌승지 황승원(黃昇源),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유학 김이교(金履喬), 진사 심후진(沈厚鎮)·강이원(姜履元)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갑(李垺)이 말하기를, “문무 대소과 및 생진(生進) 회방인(回榜人)에 대해 한성부 및海道(該道)에 명하여 세수(歲首)에 방문하고 초기(草記) 또는 장문(狀聞)으로 보고하라고 일찍이 특교를 내리고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제주(濟州)의 통정(通政) 안후(安後)는 지난 정미년[1727, 영조 3년] 무과 출신으로 지금 회방 연도가 되었고 나이는 88세입니다. 그는 노병으로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그 아들인 출신 안상엽(安尙燁)이 그 아버지의 홍패를 들고 와서는 새로운 홍패와 사화(賜花)를 요청했습니다. 이는海道에서 마땅히 거행할 일인데, 그가 이미 상경하여 연달아 호소하므로 이에 감히 우러러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 섬 사람이 회방을 맞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듯하다. 들으니 매우 놀랍고 기이하다. 사화와 홍패는 오늘 안으로 만들어 그 아들에게 지급하여 가져다 전달하게 하라. 그리고 제주목(濟州牧)으로 하여금 연수(宴需)와 옷감을 넉넉히 주게 하고, 목사가 가서 음악을 베풀어 연주하게 하여 조정에서 나이

많은 이를 존송하는 뜻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갑이 말하기를, “몇 년 전 정식을 만들 때 회방인에게는 해조(該曹)에서 특별히 한 자급씩 가자 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 회방인, 안후, 안상업, 흥패, 사화.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八月 六日 辛丑

- 丁未八月初六日未時，上御誠正閣。兵曹判書與回榜人入侍時，右副承旨洪仁浩，假注書趙台榮，記事官李相瓚·金祖淳，兵曹判書李埤，濟州出身安尙燁，以次進伏訖。……命書傳教曰，今日召見濟州回榜人安後子出身尙燁，年近九十，聞其子孫，亦甚衆多。既有造給花牌之命，亦因兵判所奏，依定式加資，付同樞一款，亦依徐挺文例爲之。因此聞之，徐挺文，今年又是重試回榜云，造給花牌，使之謝恩。…….

❖ 정조 11년(1787) 정미년 8월 6일(신축)

- 제주(濟州)의 무과 출신 안상엽(安尙燁)을 불러 회방(回榜)을 맞은 부친 안후(安後)에게 흥패와 사화를 지급하고 가자(加資)할 것을 알리는 전교
- 정미년 8월 초6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병조판서가 회방인(回榜人)과 함께 입시했을 때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병조판서 이갑(李埤), 제주(濟州)의 출신(出身) 안상엽(安尙燁)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명하여 전교(傳教)를 쓰게 하기를, “오늘 제주의 회방인 안후(安後)의 아들 출신 안상엽(安尙燁)을 불러 보았다. 나이가 거의 90이고 들으니 그 자손이 매우 많았다. 이미 흥패와 사화를 만들어 주라는 명을 내렸고, 또한 병조판서가 아뢴 바에 따라 정식(定式)에 의거 가자(加資)하라. 동지중추부사에 부직하는 한 조목 역시 서정문(徐挺文)의 예로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들어보니 서정문은 금년에 중시(重試) 회방이라 한다. 사화와 흥패를 만들어주고 사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회방인, 안후, 안상엽, 가자, 사화, 흥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九月 十七日 辛巳

- 以濟州牧使狀啓，農形馳啓事，傳于南鶴聞曰，一自舡粟往哺之後，耿耿一念，未嘗不往來於島民契活，觀此狀辭，今年島農，可謂無前之豐云。賑餘民生，必當奠業息肩，其爲喜幸，曷可勝喻？且見蠲惠狀本，舉行極爲纖悉，據此，卿之治務之，瞭然可以知之，此後，益可惕念懷保事，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9월 17일(신사)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대해 풍년을 치하하고 섬 주민을 편히 돌보라는 취지로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장계에서 농사 형편을 치계(馳啓)한 일로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한번 배에 곡식을 싣고 가서 나눠 먹인 뒤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민(島民)의 결활(契濶)에 왕래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다. 이 장사(狀辭)를 보니 금년 섬 농사는 전에 없는 풍년이라 할 만하다. 진흙한 뒤의 민생(民生)이 필시 생업(生業)에 안도(按堵)하고 어깨를 쉬겠으니 그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또 견면(蠲免) 시혜(施惠)한 장본(狀本)을 보니 거행이 극히 섬실(纖悉)하니 이에 의거하여 경(卿)의 치무(治務)가 요연(瞭然)함을 알 수 있다. 이 뒤로도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도민을 편히 보호하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³⁶⁸⁾

△ 주제어: 제주목사, 견면, 남학문.

368)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9월 17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月 十八日 壬子

- 以濟州牧使狀啓畢賑形止馳啓事，傳于趙衍德曰，卿之前後狀辭，極甚該詳，調賑始末，歷如指掌，治績之綜明，亦可推知，甚可尙也。所請亦甚得宜，依此施行事，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0월 18일(임자)

- 진휼을 마친 형지(形止)를 치계(馳啓)한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에 대해 치하하며 요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내려준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진휼을 마친 형지(形止)를 치계(馳啓)한 일로 조연덕(趙衍德)에게 전교하기를, “경(卿)의 전후 장사(狀辭)는 극히 해박하고 상세하여 진휼의 시말(始末)이 손바닥을 굽어보듯 역력하여 치적(治績)의 증명(綜明)함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심히 가상하고 요청한 바도 매우 마땅하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³⁶⁹⁾

△ 주제어: 제주목사, 진휼, 조연덕.

369) 《비변사등록》 정조 11년 10월 1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月 十八日 壬子

- 賑恤廳啓目, 粘連濟州牧使李命俊, 畢賑加資賞典, 令該曹稟處, 何如? 判付啓, 觀於狀辭, 參以舉行, 賑政之外, 治蹟可知, 前此回諭, 屢示褒嘉之意者, 此也. 畢賑後加資, 便成前例, 何靳於此倅? 該牧使李命俊加資, 若此則豐基事, 必因襲謬, 足可寬貰, 原啓目中論罪一款分揀事, 分付爲良如教.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0월 18일(임자)

- ☐ 진휼을 마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에게 가자(加資)를 명한 전교
- 진휼청이 계목(啓目)을 올리고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이 진휼을 마무리한 공으로 가자(加資)하고 상(賞)을 내리는 일을 점련하여 해조(該曹)가 품처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보고한 내용을 보고 거행한 바를 살펴보니 진휼 외에도 치적을 가히 알 수 있다. 이전에 회유(回諭)하고 여러 차례 칭찬하고 포상하려는 뜻을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진휼을 마친 후 가자(加資)하는 것은 이전 사례에 따를 것이니 어찌 이 수령에게만 인색하게 하겠는가? 해당 목사 이명준에게 가자하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풍기(豐基)의 일은 잘못된 전례를 답습한 것 때문이니 족히 관대히 용서할 수 있겠다. 원래 계목 중 논죄하라는 한 조목을 분간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진휼, 가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月 二十二日 丙辰

- 有政. 吏批, 判書李埤, 參判金文淳, 參議李集斗, 右承旨尹行元進. 以李羽晉爲校理, …… 濟州牧使李命俊, 今加嘉善, 加資事承傳.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0월 22일(병진)

- ☐ 정사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을 가선(嘉善)으로 가자(加資)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갑(李埤), 참판 김문순(金文淳), 참의 이집두(李集斗), 우승지 윤행원(尹行元)이 나왔다. 이우진(李羽晉)을 교리로 삼고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을 지금 가선(嘉善)으로 가자(加資)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들었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가선, 가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二日 乙丑

- 丁未十一月初二日巳時，上御誠正閣。大臣·有司堂上入時時，左副承旨曹允大，假注書李貞運，記事官李相瓚·金祖淳，左議政李在協，有司堂上徐有隣·李在簡·李秉模，以次進伏訖。…… 上曰，濟州之貢，越海上來，其情可矜，此亦以錢給代，則何如？有隣曰，內司雖或難之，而在民誠爲便好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2일(을축)

- 바다를 건너 올라오기 어려우므로 제주(濟州)의 공(貢)을 돈으로 대신하면 어떨지 논의함
- 정미년 11월 초2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유사당상이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조운대(曹允大),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좌의정 이재협(李在協),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이재간(李在簡)·이병모(李秉模)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공(貢)은 바다를 건너 올라오니 그 정상이 가히 불쌍하니 또한 이를 돈으로 대신하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서유린이 말하기를, “내사(內司)는 비록 어려울지 모르나 백성에게는 참으로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공, 서유린.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四日 丁卯

- 以濟州牧使狀啓, 大靜縣監洪繼善公廨修繕論賞事, 傳于南鶴聞曰, 觀於狀辭, 可知其實績, 加資事, 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4일(정묘)

- 대정현감(大靜縣監) 홍계선(洪繼善)의 관아 수리에 대해 논상할 것을 청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대정현감(大靜縣監) 홍계선(洪繼善)의 공해(公廨) 수선에 대해 논상(論賞)하는 문제를 보고하자,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장계의 내용을 보니 그 실적을 잘 알겠다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홍계선, 공해 수선.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四日 丁卯

- 南鶴聞,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進上領來人李光普等七名, 回糧米各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4일(정묘)

- 제주(濟州)의 진상(進上)을 가져온 이광보(李光普) 등에게 회량미(回糧米)를 분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하신 바에 따라 제주(濟州)의 진상(進上)을 가져온 이광보(李光普) 등 7명에게 회량미(回糧米) 각 3두(斗) 씩을 예에 따라 분급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 회량미, 이광보.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四日 丁卯

- 丁未十一月初四日巳時, 上御重熙堂. 戶房承旨入侍時, 左承旨趙衍德, 記事官金孝建 · 尹行任 · 金祖淳, 以次進伏訖. 上曰, 政官牌招開政. 衍德曰, 今日濟州人民勞問時, 本州儒生金錫鑑以爲, 今年卽渠父胤胄回榜之年, 將校金錫興又以爲, 今年渠父繼鏡回榜之年, 而該牧使狀啓, 中路遺失, 只持紅牌上來云, 故敢此仰達矣. 上曰, 聞極稀貴. 今日政竝加資下批, 令禮曹造給花牌, 仍使該牧使優給宴需以侑之, 以示朝家尊高年之意, 可也.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4일(정묘)

- 제주(濟州)의 회방인에게 가자(加資)하고 연수(宴需)를 지급하게 하는 전교
- 정미년 11월 초4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호방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 윤행임(尹行任) ·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었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개정(開政)하라.”라고 하였다. 조연덕이 말하기를, “오늘 제주인민(濟州人民)을 위문할 때 본주(本州) 유생 김석감(金錫鑑)이 금년은 그 아버지 김윤주(金胤胄)의 회방(回榜) 연도라고 하였습니다. 장교 김석흥(金錫興) 또한 금년이 그 아버지 김계경(金繼鏡)의 회방 연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사의 장계를 도중에 잃어버리고 흥패만 가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매우 희귀한 일이다. 오늘 정사에서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하비(下批)하라. 그리고 예조로 하여금 사화와 흥패를 만들어 지급하게 하고, 해당 목사에게 연수(宴需)를 넉넉히 주어 즐기게 하여 조정이 나이 많은 이를 존중하는 뜻을 보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 나왔다.

△ 주제어: 제주인민, 회방, 김석감, 김윤주, 김계경, 흥패, 가자.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四日 丁卯

- 丁未十一月初四日巳時，上御重熙堂。左承旨入侍時，左承旨趙衍德，假注書趙台榮，記事官尹行任·金祖淳，以次進伏訖。…… 衍德曰，濟州民人，今方待令，何以爲之乎？上曰，承旨坐於延英門，招問年事與疾苦，襦衣·回糧，自戶曹·宣惠廳分給事，分付。…….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4일(정묘)

- 임금이 제주민인(濟州民人)들에게 농사 현황과 질고(疾苦)를 묻고 유의(襦衣)와 회량(回糧)을 지급하라고 명함
- 정미년 11월 초4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윤행임(尹行任)·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조연덕이 말하기를, “제주민인(濟州民人)들이 지금 대령하고 있는데 어찌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연영문(延英門)에 있으니 불러서 농사 현황과 질고(疾苦)를 묻고 유의(襦衣)와 회량(回糧)을 호조와 선혜청이 분급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민인, 유의, 회량.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五日 戊辰

- 尹行元, 以吏批言啓曰, 大靜縣監洪繼善加資事, 命下矣. 雖已資窮, 未經準職, 何以爲之? 敢稟. <傳曰>, 營將窠, 今日政備擬, 其代以善治守令中, 亦令今日政擇差下送.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5일(무진)

- 대정현감(大靜縣監) 홍계선(洪繼善)이 자궁(資窮)이므로 가자(加資) 대신 그에 준하는 자리를 주기 위해 이비(吏批)와 논의함
- 윤행원(尹行元)이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홍계선(洪繼善)을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록 이미 자궁(資窮)이지만 아직 이에 준하는 직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장(營將) 자리는 오늘 정사에서 후보를 갖추었으니 그 대신 선치수령(善治守令) 중에서 오늘 정사에 골라서 내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홍계선, 가자, 자궁.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五日 戊辰

○ 吏批, 再政. 以張漢喆爲大靜縣監.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5일(무진)

□ 장한철(張漢喆)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의 2차 정사에서 장한철(張漢喆)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장한철, 이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五日 戊辰

- 丁未十一月初五日未時，上御誠正閣。同副承旨與下直守令入侍時，同副承旨南鶴聞，假注書趙台榮，記事官李相瓚·金祖淳，金城縣令李敬魯，以次進伏訖。…… 賤臣承命出傳。上曰，濟州判官瓜滿與否知來。賤臣承命出，回奏曰，已瓜滿云矣。上曰，濟州判官，今日政差出事，分付。…….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5일(무진)

- ☐ 임기만료한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오늘 정사에서 뽑으라는 임금의 분부
- 정미년 11월 초5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하직 수령과 함께 입시했을 때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금성현령 이경로(李敬魯)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신하가 명을 받들어 전교를 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의 임기가 만료했는지 알아보고 오라.”라고 하였다. 신하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돌아와 아뢰기를. “이미 만료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판관을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임기 만료, 정사.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九日 壬申

- 丁未十一月初九日午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致仁, 左議政李在協, 行司直金華鎮, 戶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徐有寧, 禮曹判書金履素, 行副司直鄭好仁, 吏曹判書李埤, 刑曹判書李在簡, 兵曹判書鄭昌順, 漢城判尹李文源, 兼都承旨沈豐之, 開城留守閔鍾顯, 行副司直李敬懋, 吏曹參判金文淳, 行副司直李秉模·徐有大, 刑曹參判洪秀輔, 漢城左尹蔡弘履, 江華留守趙鼎鎮, 行副司直金持默, 副校理徐配修, 左副承旨曹允大, 假注書李貞運, 事變假注書張錫胤, 記事官李相瓚·金祖淳, 以次進伏訖. …… 致仁曰, 此濟州牧使李命俊災實分等狀啓也. 以爲三邑穡事, 可謂無前之豐, 而纔經大賑, 新舊還上, 一時竝督, 其勢誠難. 舊還姑爲停退, 新還及今夏停退條, 期於限內準捧, 各寺奴婢身貢米, 每一口二斗內減一斗, 男丁大同米每口五升, 全數蕩減, 軍兵操鍊, 今姑停退, 逃老故病頃之數, 隨闕充定, 待明春從附近哨司鍊. 凡係蠲減·停退等事, 固當一一稟旨, 恭俟處分, 而一番往來, 動費累朔, 姑先舉行, 事涉擅便, 誠極惶悚爲辭矣. 右陳諸條, 先舉行後狀聞, 乃是本州事例, 今亦依狀請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9일(임신)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고하고 제주목사의 요청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계
- 정미년 11월 초9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재협(李在協), 행사직 김화진(金華鎭),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서유령(徐有寧), 예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 부사직 정호인(鄭好仁), 이조판서 이갑(李埤), 형조판서 이재간(李在簡), 병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한성판윤 이문원(李文源), 겸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개성유스 민중현(閔鍾顯), 행 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이조참판 김문순(金文淳), 행 부사직 이병모(李秉模)·서유대(徐有大), 형조참판 홍수보(洪秀輔), 한성좌윤 채홍리(蔡弘履), 강화유수 조정진(趙鼎鎭),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부교리 서배수(徐配修), 좌부승지 조운대(曹允大),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사변 가주서 장석운(張錫胤),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었드렸다. <중략>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

俊)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삼읍의 농사는 전에 없는 풍작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제 막 큰 진흙을 베풀었으므로 신구(新舊)의 환자를 일시에 아울러 독징(督徵)하는 것은 사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환자는 우선 정퇴(停退)하고 신환자와 올여름 정퇴조(停退條)만 기어코 기한 내에 준봉(準捧)해야 합니다. 각 시(各寺)의 노비 신공미(身貢米)는 매 1구(口) 3두(斗)에서 1두를 감하고, 남정미(男丁米) 매 구 5승(升) 전량을 탕감하겠습니다. 군병의 조련은 우선 정퇴하고 도(逃)·로(老)·고(故)·병탈(病頓) 등의 숫자는 꺾(闕)이 생기면 바로 충정(充定)하였다가 내년 봄에 가장 가까운 초사(哨司)에서 조련하겠습니다. 무릇 견감·정퇴하는 일 등은 일일이 보고하여 공손히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하지만 한번 왕래하려면 으레 몇 달씩이 걸리므로 먼저 거행하였습니다. 일이 제멋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극히 황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아뢴 여러 조목은 먼저 거행하고 뒤에 장문(狀聞)하는 것이 본주(本州)의 사례이니 이번에도 장청(狀請)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락〉.

△ 주제어: 제주목사, 재실분등장계, 이명준, 환자, 신공미, 남정미.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十日 癸酉

- 有政. 吏批, 判書李埤進, 參判金文淳進, 參議李集斗牌不進, 右承旨尹行元進. 以李性源爲知經筵, …… 金鳳吉爲濟州判官. 【止】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10일(계유)

- ☐ 정사에서 김봉길(金鳳吉)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갑(李埤)이 나왔고, 참판 김문순(金文淳)이 나왔고, 참의 이집두(李集斗)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우승지 윤행원(尹行元)은 나왔다. 이성원(李性源)을 지경연(知經筵)으로 삼고, <중략> 김봉길(金鳳吉)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그쳤다】

△ 주제어: 제주판관, 김봉길, 이비.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十日 癸酉

- 丁未十一月初十日辰時，上御重熙堂。左承旨入侍時，左承旨趙衍德，記事官金孝建·尹行任·金祖淳，檢校直閣徐鼎修，以次進伏訖。…… 命書傳教曰，政官牌招開政。上曰，濟州判官瓜滿代，今日政差出事，分付。……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10일(계유)

- 임기 만료된 제주판관(濟州判官)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라고 분부함
- 정미년 11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기사관 김효건(金孝建)·윤행임(尹行任)·김조순(金祖淳), 검교직각 서정수(徐鼎修)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므로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一月 十二日 乙亥

- 丁未十一月十二日辰時, 上御誠正閣. 戶·惠堂入侍時, 止右承旨尹行元, 右副承旨洪仁浩, 假注書趙台榮, 記事官李相瓚·金祖淳, 戶曹判書徐有隣, 宣惠廳堂上李在簡·李文源, 有司堂上李秉模, 戶曹正郎鄭東教·尹光心, 宣惠廳郎廳金思義, 以次進伏訖. 上曰, 奴婢案及免稅抄出冊子, 昨已覽閱, 而只憑此冊, 未可以究竟矣. 僉曰, 然矣. …… 上曰, 給復事, 亦何以爲之乎? 在簡曰, 貢案名色中, 以雜物備納者, 特許給復矣. …… 上曰, 濟州則雜物何以爲定耶? 有隣曰, 本島既不用錢貨, 只以土產納貢, 甚好矣.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1월 12일(을해)

- 임금이 공안(貢案)과 복호(復戶)에 대한 논의 도중 제주(濟州)의 공물에 대해 문의함
- 정미년 11월 1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호(戶)·혜당(惠堂)이 입시했을 때 우승지 윤행원(尹行元),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선혜청 당상 이재간(李在簡)·이문원(李文源), 유사당상 이병모(李秉模), 호조정랑 정동교(鄭東教)·윤광심(尹光心), 선혜청 낭청 김사의(金思義)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비안 및 면세초출책자(免稅抄出冊子)를 어제 이미 보았으나 이 책 만으로는 귀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복호(復戶)를 주는 일은 또 어찌 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재간(李在簡)이 말하기를, “공안(貢案) 명색(名色) 중에서 잡물을 갖추어 바친 자에게 특별히 복호를 허락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잡물을 무엇으로 정하는가?”라고 하였다. 서유린이 말하기를, “이 섬은 원래 전화(錢貨)를 쓰지 않으니 토산(土產)으로 공물을 바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공안, 토산, 복호.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二月 一日 甲午

- 趙衍德, 以漢城府言啓曰, 今此丁未年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人口摠數, 抄錄合啓, 而濟州三邑民數, 迄未上來, 海島遲速, 未可豫料故, 京外已磨鍊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2월 1일(갑오)

- 인구 총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주(濟州) 삼읍의 보고가 늦어지자 추후에 첨부할 것을 건의한 조연덕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정미년에 백성 수를 올릴 때 서울과 8도의 원호(元戶)의 인구 총수를 초록하여 합하여 입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오는 것이라 늦어질지 미리 헤아릴 수 없으므로 경외(京外)의 이미 마련된 호구총수를 우선 써서 들이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추가로 써 넣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삼읍, 민수, 인구 총수.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二月 二十二日 乙卯

- 以濟州牧使狀啓，貢果敗船待罪事，傳于南鶴聞曰，進上船隻之既漂還泊，雖極可幸，未泊船之不聞去處，亦甚關心，遠近浦口，申飭瞭察，待報來，卽爲狀聞，還泊，歸之漸被之澤，漂失引爲誠淺之罪者，誠果矣。若使海波不揚，安有還泊與未還泊之歎，卿則勿待罪事，回諭。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2월 22일(을묘)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공과(貢果) 운송 선척의 패선(敗船)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함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공과(貢果)를 운송하던 배가 패선(敗船)한 일에 대해 대죄하자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진상 선척이 표류했다가 돌아와 정박한 것은 비록 매우 다행이나, 정박하지 못한 배가 간 곳을 모르니 또한 매우 마음이 간다. 멀거나 가까운 포구에 잘 살펴보라고 신칙하고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장문하게 하라. 돌아와 정박한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은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며, 표실(漂失)은 낮은 죄로 인식할 것이다. 만약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않는다면 어찌 돌아와 정박하고 정박하지 못하는 탄식이 있겠는가? 경은 대죄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공과, 패선.

❖ 乾隆 五十二年 丁未 十二月 二十九日 壬戌

○ 丁未十二月二十九日午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在協, 行漢城府判尹鄭昌聖, 戶曹判書徐有隣, 行副司直徐有寧, 吏曹判書吳載純, 刑曹判書鄭好仁, 禮曹判書李埤, 兵曹判書鄭昌順, 行副司直李柱國, 行副司直李文源, 兼都承旨沈豐之, 行副司直李秉模, 刑曹參判洪秀輔, 漢城府左尹蔡弘履, 行副司直金持默, 校理沈興永, 右副承旨洪仁浩, 假注書李貞運 · 趙台榮,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相璜, 以次進伏訖. …… 在協曰, 今番都政, 巨濟府使許堦, 只經縣監, 資歷甚淺, 而遽擬此職, 其末望崔鎮衡, 則以白徒賞加, 只經僉使, 則守令非所可論, 而直擬於府使之望, 亦極駭然, 柒谷府使, 本是堂上窠, 而以堂下差出, 亦涉不察, 兩邑新除人員, 竝改差. 當該政官,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許堦之資淺, 雖如卿言, 而大靜亦守令, 且疏通節目成出之後, 銓曹之一不收用者, 已駭然. 卿云不知渠面, 人之堪與不堪, 亦無可言, 在渠輩, 又爲權輿之階梯, 然則成憲爲重, 政格次之, 何必改差乎? 此則置之, …….

❖ 정조 11년(1787) 정미년 12월 29일(임술)

- 도목정사에서 허서(許堦)를 거제부사로 의망한 것이 적합한지 좌의정 이재협이 묻자, 임금이 대정현감(大靜縣監)에 빗대어 의견을 말함
- 정미년 12월 29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 ·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이재협(李在協), 행 한성부 판윤 정창성(鄭昌聖),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서유령(徐有寧), 이조판서 오재순(吳載純),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이갑(李埤), 병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행 부사직 이문원(李文源), 검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행 부사직 이병모(李秉模), 형조참판 홍수보(洪秀輔), 한성부 좌윤 채홍리(蔡弘履),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교리 심흥영(沈興永),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상황(李相璜)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재협이 말하기를, “이번 도목정사에서 거제부사 허서(許堦)는 단지 현감을 역임했을 뿐 품계와 경력이 매우 짧은데도 이 직임에 의망되었고, 말망(末望) 최진형(崔鎮衡)은 백도(白徒)로 상가(賞加)하여 첨사를 거쳤을 뿐이어서 수령에는 논할 바가 아닌데도 곧바로 부사 후보로 의망되었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칠곡부사는 본래 당상직인데 당하관을 차출했으니

이 또한 불찰입니다. 두 고을에 새로 제수된 사람을 모두 개차(改差)하고, 해당 정관(政官)을 종종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 된 대로 하라. 허서가 품계가 낮은 것은 경이 말한 바와 같으나, 대정(大靜) 또한 수령이며 또한 소통절목(疏通節目)이 완성되어 나온 뒤로 전조(銓曹)에서 한번도 수용(收用)하지 않은 것이 매우 놀랍다. 경이 그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그들에게는 또한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성문화된 법이 제일 중요하고 정사의 규정은 그다음이다. 어찌 굳이 개차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그대로 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 거제부사, 수령, 소통절목, 현감.

1788年

(정조 12)



❖ 乾隆 五十三年 戊申 正月 五日 戊辰

○ 戊申正月初五日辰時，上御熙政堂。常參兼行次對入侍時，領議政金致仁，判府事徐命善，領敦寧洪樂性，判府事李福源·金煜，左議政李在協，兼工曹判書具允鉦，錦城尉朴明源，行漢城判尹鄭昌聖，右參贊金魯鎮，戶曹判書徐有隣，吏曹判書吳載純，禮曹判書李垺，行副司直徐有寧·李柱國，刑曹判書鄭好仁，兵曹判書鄭昌順，江華留守宋載經，兼都承旨沈豐之，西清君煜，開城留守閔鍾顯，刑曹參判洪秀輔，同知李敬倫，漢城左尹蔡弘履，行副司直金持默，校理宋祥濂·沈興永，副校理洪義浩，修撰李敬五·李洪載，副修撰李鼎德，檢校直提學李秉模，檢校直閣金憲·徐鼎修·鄭東浚，直閣鄭大容，待教尹行任，左承旨趙衍德，右承旨尹行元，左副承旨曹允大，右副承旨洪仁浩，同副承旨南鶴聞，記事官金孝建，假注書李貞運，記事官李相璜·金祖淳，兵曹正郎徐有鍊，工曹正郎金重燮，戶曹佐郎禹拓夏，禮曹佐郎朴興福，刑曹佐郎徐貞輔，監察金載恒，司錄高應觀，大司諫宋鏐，正言閔師宣，以次進伏訖。……致仁曰，戊申殉節人事，頃日既承下教，而其時義兵將之最有功者，莫如故府使朴敏雄。蓋嶺賊先陷清州，兵聲大張，都下震動，而敏雄，以一介書生，首倡義旅，收復本州，使賊勢挫沮，王師踴躍，卒成安竹之勳者，雖謂之敏雄與有功，亦可也。當此歲甲重回，聖心起感之時，朴敏雄，合施褒贈之典。敏雄事蹟，則朝廷登時聞知，屢加獎用，且載於勘亂錄中，……上曰，朴敏雄，亦有子孫乎？在協曰，其孫朴興世，曾經大靜縣監，而居在清州矣。……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월 5일(무진)

□ 상참 자리에서 무신년에 순절한 박민웅(朴敏雄)의 포증(褒贈) 방안을 논의함

○ 무신년 1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상참 겸 차대를 행하는 데에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판부사 서명선(徐命善), 영돈녕 홍낙성(洪樂性), 판부사 이복원(李福源)·김익(金煜), 좌의정 이재협(李在協), 겸 공조판서 구윤옥(具允鉦),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행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우참찬 김노진(金魯鎮),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이조판서 오재순(吳載純), 예조판서 이갑(李垺), 행 부사직 서유령(徐有寧)·이주국(李柱國), 형조판서 정호인(鄭好仁), 병조판서 정창순(鄭昌順), 강화유수 송재경(宋載經), 겸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서청군 성(煜), 개성유수 민중현(閔鍾顯), 형조참판 홍수보(洪秀輔), 동지 이경륜(李敬倫), 한성좌윤 채홍리(蔡弘履),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교리 송상

럽(宋祥濂)·심흥영(沈興永), 부교리 홍의호(洪義浩), 수찬 이경오(李敬五)·이홍재(李洪載), 부수찬 이정덕(李鼎德), 검교 직제학 이병모(李秉模), 검교직각 김희(金憲)·서정수(徐鼎修)·정동준(鄭東浚), 직각 정대용(鄭大容), 대교 윤행임(尹行任),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우승지 윤행원(尹行元), 좌부승지 조윤대(曹允大),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 기사관 김효건(金孝建),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병조정랑 서유련(徐有鍊), 공조정랑 김중섭(金重燮), 호조좌랑 우척하(禹拓夏), 예조좌랑 박흥복(朴興福), 형조좌랑 서정보(徐貞輔), 감찰 김재항(金載恒), 사록 고응관(高應觀), 대사간 송영(宋鏐), 정언 민사선(閔師宣)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치인이 말하기를, “무신년 순절한 인사에 대해 지난날 이미 하교(下敎)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병장으로서 가장 공이 있는 자로 고(故) 부사 박민웅(朴敏雄) 만한 이가 없습니다. 영적(嶺賊)이 먼저 청주(淸州)를 함락하여 전투가 크게 일어나 도하(都下)를 진동하게 했으나, 박민웅은 일개 서생으로서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본주(本州)를 수복했습니다. 적의 기세를 꺾어 수그러들게 하고 왕사(王師)를 용약(踴躍)하게 하여 끝내 안죽(安竹)의 공을 이루어냈으니, 박민웅에게 공이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60년이 지나 성심(聖心)에 감동이 일어나는 때이니 박민웅에게 포증(褒贈)하는 전례를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박민웅의 사적(事蹟)은 조정에서도 들어서 알고 여러 번 장려하여 등용하였고, 또 《감란록(勘亂錄)》에도 수록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박민웅은 자손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재협이 말하기를, “그 손자 박흥세(朴興世)는 일찍이 대정현감(大靜縣監)을 역임했으며 청주(淸州)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박흥세, 박민웅, 감란록, 포증, 무신년 순절.

❖ 乾隆 五十三年 戊申 正月 十九日 壬午

- 趙衍德,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民數, 今始上來, 故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월 19일(임오)

- ☐ 호구총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 보고가 뒤늦게 당도했으니 추가로 기록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추가로 기록해 넣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수, 호구.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二月 二十五日 戊午

- 戊申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致仁, 左議政李性源, 右議政蔡濟恭, 右參贊金魯鎮, 行漢城判尹鄭昌聖, 吏曹判書吳載純, 兵曹判書鄭好仁, 行副司直李在簡·李柱國, 知事鄭昌順, 江華留守宋載經, 開城留守閔鍾顯, 刑曹參判洪秀輔, 行副司直蔡弘履, 吏曹參判李在學, 戶曹參判洪秉纘, 行副司直金持默, 副校理李太亨, 右承旨尹行元, 左副承旨曹允大, 假注書李貞運, 事變假注書申澱, 記事官李相璜·金祖淳, 以次進伏訖. …… 致仁曰, 濟州牧使李命俊, 三年絕海, 年迫七耄, 自經昨年大賑, 累狀乞遞, 且聞病勢沈痼, 惟願生還云, 參究其情, 有難強令察任, 今姑許遞,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2월 25일(무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교체를 건의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의 계
- 무신년 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우참찬 김노진(金魯鎭), 행 한성판윤 정창성(鄭昌聖), 이조판서 오재순(吳載純),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행 부사직 이재간(李在簡)·이주국(李柱國), 지사 정창순(鄭昌順), 강화유수 송재경(宋載經), 개성유수 민종현(閔鍾顯), 형조참판 홍수보(洪秀輔), 행 부사직 채홍리(蔡弘履), 이조참판 이재학(李在學), 호조참판 홍명찬(洪秉纘),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부교리 이태형(李太亨), 우승지 윤행원(尹行元), 좌부승지 조윤대(曹允大),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사변 가주서 신서(申澱),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치인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은 3년을 절해(絶海)에서 있었고 나이도 70세가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진흙을 겪고부터는 누차 사장(辭狀)을 올리고 교체해 달라고 청했으며, 또 들으니 병세가 매우 깊어 오직 살아서 돌아가기만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 정상을 헤아려보면 억지로 일을 살피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니, 지금 우선 교체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사장.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二月 二十七日 庚申

○ 備邊司薦望, 以金廷遇爲濟州牧使.

❖ 정조 12년(1788) 무신년 2월 27일(경신)

□ 김정우(金廷遇)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김정우(金廷遇)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정우, 비변사, 천망.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一日 癸亥

- 有政. 吏批, 判書吳載純進, 參判李在學牌不進, 參議李集斗, 同副承旨南鶴聞進. 以鄭萬始爲應教, 柳文養爲兵曹佐郎, …… 濟州牧使單金廷遇 …… 四政, 以李之淳爲順陵參奉.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1일(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김정우(金廷遇)를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오재순(吳載純)은 나왔고, 참판 이재학(李在學)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으며, 참의 이집두(李集斗)와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이 나왔다. 정만시(鄭萬始)를 응교로 삼고, 유문양(柳文養)을 병조좌랑으로 삼았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망(單望)으로 김정우(金廷遇)가 되었다. <중략> 사정(四政)에서 이지순(李之淳)을 순릉참봉(順陵參奉)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정우, 이비, 단망.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六日 戊辰

- 曹允大,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金廷遇呈狀, 則以爲水土所傷, 左眼失明, 右目赤膜, 幾盡遮瞳, 實有盲廢之慮, 以此病狀, 海防重地, 無以強赴, 入啓遞改云矣. 臣亦目覩來見之時, 則病狀果如狀辭, 以公以私, 實難強令赴任,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今番則除老病實故, 以當赴人擬入, 俾無頻改之弊, 可也.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6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정우(金廷遇)가 수토병(水土病)으로 부임하기 곤란하므로 교체할 것을 건의한 비변사의 계
- 조윤대(曹允大)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정우(金廷遇)의 정장(呈狀)을 보니 이르기를 ‘수토병(水土病)에 손상되어 왼쪽 눈은 실명(失明)되고 오른쪽 눈은 망막(網膜)이 붉게 핏발이 서서 동자(瞳子)를 거의 다 가렸으므로 실로 맹폐(盲廢)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상(病狀)으로는 해방(海防)의 중요한 지역에 억지로 부임할 수 없으니 입계(入啓)하여 체개(遞改)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 저도 직접 보았는데, 병상이 과연 장사(狀辭)와 같았습니다. 공(公)으로 보나 사(私)로 보나 억지로 부임하게 하기는 어렵겠으니 지금은 우선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한다. 이번에는 노병(老病)과 실고(實故)를 제외하고 꼭 부임할 사람을 의망하여 들어서 자주 바꾸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정우, 수토병.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六日 戊辰

○ 備邊司薦望, 以洪仁默爲濟州牧使.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6일(무진)

□ 홍인묵(洪仁默)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의 천망(薦望)으로 홍인묵(洪仁默)³⁷⁰⁾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홍인묵, 천망.

370) 홍인묵(洪仁默): 제주목사(재임: 1788. 3.~1788. 10.) 역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六日 戊辰

- 有政. 吏批, 判書吳載純進, 參判李在學病, 參議李集斗, 右副承旨洪仁浩進. 以徐配修爲校理, …… 濟州牧使單洪仁默. 再政, 以李秉模爲藝文提學.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6일(무진)

- ☐ 홍인묵(洪仁默)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오재순(吳載純)이 나왔고, 참판 이재학(李在學)은 병(病)이며, 참의 이집두(李集斗)와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가 나왔다. 서배수(徐配修)를 교리로 삼고, 〈증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망으로 홍인묵(洪仁默)이 되었다. 두 번째 정사에서 이병모(李秉模)를 예문제학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홍인묵, 이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六日 戊辰

- 戊申三月初六日辰時，上御誠正閣。諸承旨持公事入侍時，左承旨趙衍德，左副承旨曹允大，右副承旨洪仁浩，同副承旨南鶴聞，假注書李貞運·趙台榮，記事官李相瓚·金祖淳，待教尹行任，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政官牌招開政，濟州牧使，今日政下批，前守遞改，既出軫念，新拜使，待下批，使之從近辭朝，前守，期於暑熱前還朝。…….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6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차출하여 하비(下批)하게 하라는 전교(傳敎)
- 무신년 3월 초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여러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했을 때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좌부승지 조운대(曹允大),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 가주서 이정운(李貞運)·조태영(趙台榮),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대교 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또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政事)를 열어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여 하비(下批)하게 하라. 전 목사의 체개(遞改)는 이미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새로 제수된 목사는 하비를 기다려 속히 사조(辭朝)하게 하라. 그리고 전 목사는 더워지기 전에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였다.³⁷¹⁾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정사, 하비.

371)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3월 6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十日 壬申

- 曹允大啓曰, 新除授濟州牧使洪仁默, 時在忠清水使任所, 而既有除朝辭赴任之命, 所佩密符, 以前所受密符仍佩, 諭書則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10일(임신)

-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을 조속히 부임하도록 조치하라는 조윤대(曹允大)의 계
- 조윤대(曹允大)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이 지금 충청수사 임소(任所)에 있습니다. 이미 조사(朝辭)를 생략하고 부임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차고 다닐 밀부(密符)는 이전에 받은 밀부를 그대로 차고 유서(諭書)는 원리(院吏)로 하여금 가져가서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홍인묵, 조사, 밀부.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三月 十八日 庚辰

- 以濟州牧使狀啓，賑監軍官李彝煥請賞事，傳于南鶴聞曰，何必回啓？依例加資，此意知悉事，回諭。

❖ 정조 12년(1788) 무신년 3월 18일(경진)

- ☐ 진감군관(賑監軍官)에게 상을 내려달라는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에 답하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진감군관(賑監軍官) 이이환(李彝煥)에게 상을 줄 것을 청한 일에 대해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어찌 반드시 회계(回啓)를 하겠는가? 예(例)에 따라 가자(加資)하고, 이 뜻을 잘 알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진감군관, 이이환, 가자.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四月 五日 丁酉

-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今日動駕時, 中部居良人趙養元, 擊錚於衛外, 故取考其諺書原情, 則以爲渠父命稷, 渠叔得豐, 以罪人夢麟之甥姪, 定配濟州者, 七年于茲矣, 乞蒙有還之典云矣. 蓋夢麟罪犯凶逆, 關係甚重, 而渠輩俱以其至親, 因臺啓罪止島配, 則不思縮伏, 縱子煩籲, 誠極痛惡. 此等無嚴之類, 不可以事係爲父, 有所容貸, 原情勿施, 其罪狀, 自臣曹, 照法嚴勘,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4월 5일(정유)

- 제주(濟州)에 정배된 조명직(趙命稷) 등을 풀어달라는 원정에 대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자고 건의한 형조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어가(御駕)가 거동할 때 중부(中部)에 사는 양인 조양원(趙養元)이 시위(侍衛) 밖에서 격쟁(擊錚)하기에 그 한글로 쓴 원정(原情)을 취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그 아버지 조명직(趙命稷), 그 숙부 조득풍(趙得豐)이 죄인 이몽린(李夢麟)의 생질로 제주(濟州)에 정배된 지 7년이 되었으니 용서하여 돌려보내주는 은전을 입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몽린은 흉악한 역적 행위를 저지른 자로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 지친(至親)으로서 대간의 계에 힘입어 도배(島配)하는 정도에 그친 것인데 조심하려고 하지 않고 멋대로 번거롭게 호소하니 참으로 극악합니다. 이런 무엄한 부류는 부친에 관계된 일이라 해서 용서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말고 그 죄상은 형조에서 법률에 비추어 엄히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몽린, 조명직, 조득풍, 조양원.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四月 五日 丁酉

- 戊申四月初五日卯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李性源，右議政蔡濟恭，右參贊金魯鎮，戶曹判書徐有隣，吏曹判書吳載純，兵曹判書鄭好仁，禮曹判書李埤，行副司直李在簡·徐有大，兼都承旨沈豐之，開城留守洪秉纘，行副司直金持默，副校理沈晉賢，右副承旨洪仁浩，假注書李貞運，事變假注書申淑，記事官李相璜·金祖淳，以次進伏訖。…… 性源曰，此濟州前牧使李命俊狀啓也。以爲昨年進上蠲減價米，爲三百二十石，今無歸屬處，故新設一倉，名曰覃恩庫，臣亦拮据各穀二千二百四十二石，積貯倉中。麥事或判，則平均分給，而雖值災年，無敢裁減停退，若當設賑之年，則各鄉民人，以其所納數文，竝爲受食，後來之人，隨其所辦，每年添補，則庶救島民一時之急，作爲備局句管，俾絕其停減轉換之弊爲辭矣。特蠲之米，善爲區處，俾實惠下究，自備之穀，多般拮据，俾貧民有恃，臨歸措劃，誠意可尙。依狀請，自備局句管，俾有實效，何如？上曰，右相之意，何如？濟恭曰，其所創設區劃，鑿鑿有條理，後來者若從多少，每每添補，無廢前人之規，則似當有實效矣。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2년(1788) 무신년 4월 5일(정유)

- 진상을 견감하여 마련한 쌀의 처리와 향후 구관(句管)에 대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장계를 놓고 대신과 논의함
- 무신년 4월 초5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우참찬 김노진(金魯鎭),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이조판서 오재순(吳載純),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예조판서 이갑(李埤), 행 부사직 이재간(李在簡)·서유대(徐有大), 겸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개성유수 홍명찬(洪秉纘),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부교리 심진현(沈晉賢),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사변가주서 신서(申淑),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성원이 말하기를, “이는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장계입니다. 이르기를 ‘작년에 진상(進上)을 견감한 가미(價米)가 320석이나 되는데 지금 귀속(歸屬)한 곳이 없으므로 새로 창(倉) 하나를 만들어 담은창(覃恩倉)이라 칭하고 저도 각곡(各穀) 2,242석을 조판(措辦)하여 곳집 안에 쌓아 두었습니다. 보리농사가 혹 흉년으로 판가름이 나면 골고루 나눠주되 아무리 흉년이

라 해도 재감(裁減)하거나 정퇴(停退)하지 않으며, 진휼을 베푸는 해를 당하면 각 고을 백성들이 모두 자기가 낸 만큼의 수량을 받아먹게 하고, 뒤에 관장(官長)으로 오는 사람이 계속하여 자기가 조판한 대로 매년 보태게 하면 도민(島民)의 일시 구급(救急)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변사의 구관(句管)으로 만들어 정퇴 또는 재감하거나 전용(轉用)하는 폐단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견감해 준 쌀을 잘 구처(區處)하여 실제 혜택이 아래에 미치게 하였으며 자비곡(自備穀)을 다방면으로 요리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하였고, 돌아올 즈음에 구관을 청한 것은 그 성의가 가상합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비변사에서 구관하여 실효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말하기를, “창설하고 구획함에 착착 조리가 있으니 뒤에 오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매년 보태서 앞사람의 규모를 폐추(廢墜)하게 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뵈되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³⁷²⁾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명준, 진상, 재감, 정퇴.

372) 《비변사등록》 1788년(정조 12년) 4월 6일 기사에 동일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四月 十八日 庚戌

- 曹允大,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鄭鍊,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4월 18일(경술)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정련(鄭鍊)의 체임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조윤대(曹允大)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정련(鄭鍊)의 체임 진상마 3필이 지금 겨우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판관, 정련, 체임 진상마.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四月 十九日 辛亥

- 南鶴聞,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言啓曰, 大靜前縣監洪繼善,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4월 19일(신해)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홍계선(洪繼善)의 체임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홍계선(洪繼善)의 체임 진상마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 전 대정현감, 홍계선, 체임 진상마.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五月 二十三日 甲申

- 李亨元,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李命俊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5월 23일(갑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체임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이형원(李亨元)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체임 진상마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 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제주목사, 이명준, 체임 진상마.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十二日 癸卯

- 馬政修舉之議. 物有雖微而寔係國家之重計者, 豈非馬哉? 養馬, 所以備武事而壯王室也. …… 馬政之不修, 未有甚於近日, 訪之南土, 則耽羅之畜, 無四歲留者, 駿產殆絕, 訪之牧場, 則牧官瘵職, 牧吏偷損, 輒取人家駢駢駢駒, 必充其額, 至若列邑之分養馬, 不過疲癯款段而已, 則此不但地用靡需, 騎士闕乘, 將何以急難之用也? …… 從今以往, 監牧之官, 各別擇差, 亦依守令殿最, 自本道考其勤慢, 嚴其黜陟, 其尤著者爲守宰, 不職者必流竄, 則大有其效矣.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12일(계묘)

□ 마정(馬政)에 관한 비변사의 계

- 마정(馬政)을 닦아서 거행하는 일에 관한 의론입니다. 물건은 비록 미미한 것이나 실제로는 국가의 중요한 계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어찌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기르는 것은 무력을 갖추는 일이며 왕실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마정이 정비되지 못한 것이 요사이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남쪽 땅을 찾아갔더니 탐라(耽羅)에서 기르는 것이 네 해를 유지하는 것이 없으며, 준마의 생산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목장에서는 목관(牧官)이 직책을 비우고, 목리(牧吏)는 흠쳐서 손실을 입히고, 번번이 인가(人家)에서 머리를 내두르는 하룻망아지를 끌어다가 액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읍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한 말은 지치고 파리하고 느린 말에 지나지 않으니 장차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중략> 지금 이후로는 감목관(監牧官)을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고 또 수령의 전최(殿最)에 따라 본도에서 근만(勤慢)을 고찰하여 더욱 현저한 자와 수재(守宰)로서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를 귀양 보낸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략>.

△ 주제어: 탐라, 마정, 목관, 목리, 감목관.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二十一日 壬子

○ 副司直李命俊疏曰, 伏以日月迅邁, 文孝世子終祥奄過, 仰惟止慈之聖念, 何以堪忍? 必報之讎未復, 共誅之賊莫討, 臣民之冤號痛隕, 益復如新. 仍伏念, 臣姿性譴劣, 最居人下, 而濫蒙洪造, 忝叨從班, 內外歷踐, 罔非踰分, 居恒愧懼, 如集于木. 頃當耽羅待罪之日, 仰體分憂之聖意, 粗效賑飢之微分, 惟以獲免罪戾爲幸, 不意恩言鄭重, 袞褒隆摯, 繼而有陞資之命, 沿路聾聽, 島民動色, 臣雙擎恩誥, 百拜感泣, 殆不知措躬之所也. 千里滄溟, 五雲入望, 每依危樓, 徒切戀闕之忱, 那知微臣去就, 至煩聖慮, 乃以未熟前還朝爲教, 顧此螻蟻之賤, 何以得此於聖明也? 穩涉鯨濤, 歸伏私次, 莫非聖恩攸暨, 日夕攢祝, 圖報無地, 迺者揔府新命, 遽下此際, 臣惝恍震惕, 感惶交切, 其在分義, 宜卽竭蹶趨承, 以伸叨謝之忱, 而第念罔功之賞, 采增悚慙, 命德之秩, 決難僥冒, 反復揣量, 承膺無路, 茲敢略暴肝膈之懇, 仰瀆駐纘之下. 伏乞聖慈, 俯垂鑑察, 亟命收還臣新授職秩, 以重官方, 以安微分, 千萬幸甚.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行公.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21일(임자)

□ 사직을 요청하는 부사직 이명준(李命俊)의 상소

○ 부사직 이명준(李命俊)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문효세자(文孝世子) 대상(大祥)이 훌쩍 지났으니, 자애로운 성상께서 어찌 감내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를 아직 갚지 못하고, 함께 죽어야 할 적을 토벌하지 못하여 신민(臣民)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갈수록 새롭습니다.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저는 자질이 변변찮은 가장 못난 사람인데 분에 넘치는 크나큰 은혜를 입어 종반(從班) 직임을 얻고 내외직을 두루 거쳤으니,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항상 부끄러워 나무 위에 아슬아슬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날 탐라(耽羅)에서 대죄(待罪)할 때 나라의 근심을 분담하려는 성상의 뜻으로 부족한 정성이지만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미미한 직분을 얻었음을 알았으니 오직 죄와 허물을 면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중한 말씀으로 밝게 칭찬하고 포용해 주셨으며, 이어서 승자(陞資)하는 명을 내리셨으니 연로(沿路)에서 들은 섬 주민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에 두 손으로 은혜로운 고명(誥命)을 받들고, 백배(百拜)하며 감읍하면서 몸 둘 바를 모

르겠습니다. 〈중략〉 옆드려 비오니 성상께서 특별히 굵어살피셔서 저에게 새로 제수한 자리를 거둬들여 관직의 기강을 무겁게 하고 미천한 분수를 편안케 해주신다면 천번 만번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卿)은 사직하지 말고 행공(行公)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이명준, 승자, 고명.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二十八日 己未

- 戊申六月二十八日卯時，上御重熙堂. 推考房承旨入侍時，右副承旨洪仁浩，假注書趙台榮，記注官金鳳顯，記事官金祖淳，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教曰，大小剖決，大小登聞，道伯有故，假都事替行，雖曰不易之常例，至於貶目，無論兵水營，或濟州防營，係是道伯與該帥該倅同議磨勘，則昨見濟州貶目，拔却同議之規，以假都事姓名封啓，甚至假都事書等第，其所違格，比諸兵水營兵水使自書等第，爲尤甚，有例無例，問于該曹，亦曰無是，然則前伯之使假都事替封，不但可駭，都事之聽從，亦甚疎忽，政院則以貶目，必自該道已頒揭，亦難還下送，以何以爲之微稟，政院言亦然，以此意，問于廟堂，使之論理草記覆奏. 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28일(기미)

- 제주(濟州)의 도백(道伯)이 부재(不在)하다는 이유로 가도사(假都事)가 편목에 등제(等第)를 쓰고 마감한 처사를 꾸짖고 복주(覆奏)를 명하는 전교(傳敎)
- 무신년 6월 28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형방 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또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크고 작은 처결과 크고 작은 등문(登聞)은 도백이 사고가 있으면 가도사(假都事)가 대행(代行)하는 것은 비록 흔치 않은 상례(常例)라 하겠으나, 편목(貶目)에 있어서는 병영(兵營)·수영(水營)과 제주(濟州) 방영(防營)을 막론하고 도백과 해수(該帥)·해쉴(該倅)가 함께 상의하여 마감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제주의 편목을 보니 함께 상의하는 규례는 무시해 버리고 가도사의 성명으로 봉계(封啓)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가도사가 등제(等第)도 썼으니 격식에 위배된 바가 병·수영에서 병·수사가 직접 등제를 쓰는 것에 비해 더욱 심하다.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조에 물어보니 해조에서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 도백이 가도사로 하여금 대봉(代封)하게 한 것은 해괴할 뿐만 아니라 가도사가 그 말에 따른 것은 매우 소홀한 처사이다. 승정원에서는 편목을 필시 해도(該道)에서 게시(揭示)하였을 것이므로 도로 내려보내기는 어렵다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미품(微稟)하였는데 승정원의 말도 옳다. 이러한 내용으로 묘당에 물

어보고 이치를 논한 후 초기하여 복주(覆奏)하게 하라.”라고 하였다.³⁷³⁾ 물리날
것을 명하자 승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제주, 도백, 편목, 가도사, 등제.

373)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6월 2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二十九日 庚申

- 以全羅假都事, 濟州三邑守令褒貶啓本, 傳于南鶴聞曰, 新除後卽見, 已悶之, 辭陞時筵臣, 亦有所奏, 而以試可之意, 不得不含垢, 果然貶目如此. 今雖點下, 如不以有材幹者, 拔例差送, 烏在其另擇之意乎? 今日政, 勿拘堂上·堂下, 各別擇差事, 申飭銓曹.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29일(경신)

- 임금이 제주(濟州) 삼읍 수령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본 후 한 번의 점수로 판단하지 말고 각별히 뽑았다는 뜻에 주목하라는 전교를 냄
- 전라 가도사(假都事)의 제주(濟州) 삼읍 수령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으로 인해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새로 제수한 후 즉시 보는 것이 이미 민망한데 하직할 때 연신(筵臣)이 아뢴 바가 있었다. 그래서 옳은지 시험하는 뜻으로 함구(含垢)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폄목(貶目)이 이와 같았다. 지금 비록 하(下)를 받았더라도 만약 재간이 없다고 해서 관례를 버리고 차송(差送)한다면 각별히 뽑는다는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늘 정사는 당상·당하에 구애받지 말고 각별히 골라서 정하도록 전조(銓曹)에 신칙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삼읍, 포폄계본, 폄목.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二十九日 庚申

○ 吏批再政. 以趙鼎鎮爲承旨, 申大年爲旌義縣監.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29일(경신)

□ 신대년(申大年)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가 2차 정사를 하였다. 조정진(趙鼎鎭)을 승지로 삼고, 신대년(申大年)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정의현감, 신대년, 이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二十九日 庚申

- 南鶴聞, 以吏曹言啓曰, 今日本曹開坼時, 考見全羅道濟州褒貶啓本, 則旌義縣監吳允國題目, 既是貶語, 宜置下考, 而置諸中考, 致勤點下, 殊無嚴明殿最之意, 該牧使, 推考警責, 旌義縣監吳允國, 依定式, 下考施行,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29일(경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의 전최 결과에 대한 이조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오늘 이조가 업무를 열었을 때 전라도 제주(濟州)의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보았습니다.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의 제목은 이미 폄어(貶語)로 되어 있어 마땅히 하고(下考)³⁷⁴를 주어야 하는데 중고(中考)를 주었고 수고롭게 점을 찍었으니, 엄격하고 분명하게 전최(殿最)³⁷⁵하는 뜻이 없습니다. 해당 목사를 추고하여 문책하고, 정의현감 오윤국은 정식(定式)에 따라 하고(下考)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오윤국, 포폄계본, 전최.

374) 하고(下考): 고과(告課)할 때 성적이 하등(下等)에 있는 것을 말함.

375) 전최(殿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하여 매기는 일. 상(上)이면 최(最), 하(下)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이 전최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六月 二十九日 庚申

- 洪仁浩, 以備邊司言啓曰, 傳曰, 大小剖決, 大小登聞, 道伯有故, 假都事替行, 雖曰不易之常例, 至於貶目, 無論兵水營或濟州防營, 係是道伯與該帥該倅同議磨勘, 則昨見濟州貶目, 拔却同議之規, 以假都事姓名封啓, 甚至假都事書等第, 其所違格, 比諸兵水營兵水使自書等第, 爲尤甚, 有例無例, 問于該曹, 亦曰無是, 然則前伯之使假都事替封, 不但可駭, 都事之聽從, 亦甚疎忽, 政院, 則以貶目, 必自該道已頒揭, 亦難還下送, 以何以爲之微稟, 政院言亦然. 以此意, 問于廟堂, 使之論理草記覆奏事, 命下矣. 道臣有故之時, 假都事之替行營務, 蓋出於不得已, 而至於貶目同議, 法意嚴重, 有非假都事替封替書者, 則具由登聞, 待新伯磨勘, 恐合變例, 而今既自該道頒揭之後, 還爲下送, 亦涉如何, 貶目則施行, 道臣方在譴削中, 當該假都事, 雖非自由, 疎忽則甚,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6월 29일(경신)

- 제주(濟州)의 도백(道伯)이 부재(不在)하다는 이유로 가도사(假都事)가 평목(等第)을 쓰고 마감한 처사에 대해 가도사를 종종추고하라는 비변사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크고 작은 처결(處決)이나 크고 작은 등문(登聞)에 도백이 연고가 있으면 가도사(假都事)가 대행(代行)하는 것은 비록 변경할 수 없는 상규(常規)라 하지만 평목(貶目)에 있어서는 병·수영(兵水營)과 제주(濟州) 방어영(防禦營)을 막론하고 도백과 당해 수신(帥臣), 당해 수령이 함께 상의하여 마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제주의 평목을 보니 함께 상의하는 규례를 무시하고 가도사의 명의(名義)로 봉계(封啓)하고 심지어 가도사가 등제(等第)를 쓰기까지 하였다. 격례(格例)에 위배됨이 병·수영에서 병·수사(兵·水使)가 직접 등제를 쓰는 것보다도 더욱 심하다. 그리하여 그러한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조(該曹)에 물어보니 해조에서도 그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 도백이 가도사를 시켜 대신 봉계하게 한 것이 놀라울 뿐 아니라 도사가 청종(聽從)한 것도 심히 소홀한 일이다. 승정원에서는 평목을 필시 해도(該道)에서 이미 계시(揭示)하였을 터이므로 도로 내려보내기도 어려우니 어떻게 할 것인지 미품(微稟)하였는데 정원의 말도 옳다. 이러한 내용으로 묘당에 물어 이치를 논해 초기(草記)하고 복주(覆奏)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니다. 도신에게 연고가 있을 때 가도사가 감영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대체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조치입니다. 하지만 편목을 함께 상의함에 있어서는 법의(法意)가 엄중하여 가도사가 대신 봉계하고 대신 쓰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사유를 갖추어 등문하고 새 도백이 마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변례(變例)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해도에서 제시한 뒤이므로 도로 내려보내는 것도 어색하니 편목은 시행하고, 도신이 지금 죄삭(罪削) 중에 있으므로 당해 가도사는 하고 싶어 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홀함이 심하였으니 종종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³⁷⁶⁾

△ 주제어: 제주, 편목, 가도사, 등제.

376)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6월 2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七月 四日 甲子

- 南鶴聞啓曰, 卽伏見全羅假都事朴知源濟州三邑守令今春夏等褒貶啓本, 則旌義縣監吳允國題目, 宜置下考, 而置諸中考, 致勤點下, 殊無嚴明殿最之意,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7월 4일(갑자)

- 정의현감(旌義縣監)에 대한 포폄의 책임으로 전라 가도사(假都事) 박지원(朴知源)을 종종추고하라는 남학문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가도사(假都事) 박지원(朴知源)의 제주(濟州) 삼읍 수령에 대한 금년 춘하등(春夏等)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의 제목(題目)이 마땅히 하고(下考)를 주어야 하는데 중고(中考)를 주고 수고롭게 점까지 찍었습니다. 이는 엄격하고 분명하게 전최(殿最)하는 뜻이 아니니 추고하고 문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정의현감, 오윤국, 전라 가도사, 박지원, 포폄계본, 전최.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七月 八日 戊辰

- 戊申七月初八日卯時，上御誠正閣。藥房入診入侍時，都提調金煜，提調沈豐之，副提調尹行元，假注書李貞運，記注官金鳳顯，記事官金祖淳，待教尹行任，醫官徐命緯·金光國·李春敷·李翊臣·卞觀海，以次進伏訖。…… 上曰，左承旨與下直守令入侍。賤臣承命出，與左承旨趙鼎鎭，旌義縣監申大年偕入進伏。上曰，今者除拜，出於來頭欲用之意。當此炎天，遠涉重溟，雖曰擇差，而不可謂好行矣。瘳疾之道，亦在暝眩之藥，往須盡心吏事，可也。…….

❖ 정조 12년(1788) 무신년 7월 8일(무진)

- 임금이 새로 제수한 정의현감(旌義縣監)에게 마음을 다해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함
- 무신년 7월 초8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入診)하는 데에 입시했을 때 도제조 김익(金煜), 제조 심풍지(沈豐之), 부제조 윤행원(尹行元),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김조순(金祖淳), 대교 윤행임(尹行任), 의관 서명위(徐命緯)·김광국(金光國)·이춘부(李春敷)·이익신(李翊臣)·변관해(卞觀海)가 차례로 나아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좌승지는 하직 수령과 함께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고 나갔다가 좌승지 조정진(趙鼎鎭), 정의현감(旌義縣監) 신대년(申大年)과 함께 들어와 나아가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제수한 것은 앞으로 쓰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였다. 지금 극심한 무더위에 멀리 깊은 바다를 건너는 것은 비록 골라서 파견한다고는 하나 가기 편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병을 낫게 하는 방도는 또한 명현(暝眩)의 약에 있으니 가서 마음을 다해 행정을 돌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신대년, 하직 수령.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七月 九日 己巳

- 以濟州防禦使狀啓，六月朔所封烏賊魚，終未免品劣，極爲惶恐待罪事，傳于南鶴聞曰，勿待罪事，回諭.

❖ 정조 12년(1788) 무신년 7월 9일(기사)

- 진상한 오징어의 품질 때문에 대죄한다는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의 장계에 대해 대죄하지 말도록 회유하라고 전교함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가 장계로 6월 삭(朔)에 봉진한 오징어[烏賊魚]의 품질이 끝내 졸렬함을 면치 못한 것에 대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오징어, 장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八月 五日 甲午

- 趙鼎鎮, 以司僕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 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8월 5일(갑오)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연례진상마 등 88필에 대한 사복시의 보고
- 조정진(趙鼎鎮)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로부터 먼저 운송한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홍구노태마 20필, 도합 88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마.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八月 七日 丙申

- 趙衍德,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繼喆, 丁未戊申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二匹俱爲體少品劣, 事極駭然. 當該封進監牧官金繼喆, 分付牧使, 待用刑從重決棍,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8월 7일(병신)

- 제주(濟州)에서 봉진한 말의 품질 문제로 산마 감목관 김계철(金繼喆)에게 형을 집행할 것을 건의한 사복시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계철(金繼喆)이 정미·무신 양년조(兩年條)로 봉진한 말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2필 모두 몸체가 작고 품질이 나쁘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을 봉진한 해당 감목관 김계철에 대해 목사에게 분부하여 형(刑)을 대신 써서 종중결곤(從重決棍)하여 훗날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산마 감목관, 김계철.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八月 七日 丙申

- 趙衍德, 以司僕寺官員, 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二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實納馬一百九十七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8월 7일(병신)

- 제주(濟州)에서 온 세공마(歲貢馬)의 현황에 대해 보고한 사복시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온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중 2필은 배 안에서 죽거나 잃어버렸고, 1필은 도중에 길에서 죽거나 잃어버려 실제로 바친 말은 197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공마, 사복시.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八月 十八日 丁未

○ 李在學, 以備邊司言啓曰, 取見右通禮禹禎圭疏陳冊子, 則其一, 馬政修舉之議也. 以爲養馬, 所以備武士壯王室也, 而馬政之不修, 未有甚於近日, 耽羅之畜無四歲留者, 駿產殆絕, 牧場則牧官癩職, 牧吏偷損, 輒取人家駢駢駢駒, 必充其額, 列邑之分養馬, 不過疲癯款段, 則將何以急難之用也? 凡任牧之官, 全事肥己, 剝割牧民, 罔有紀極, 而至於駟牡駢牝之美, 未嘗屑爲, 則馬政之不修, 其勢然矣. 從今以往, 監牧之官, 各別擇差, 亦依守令殿最, 自本道考其勤慢, 尤著者爲守宰, 不職者必流竄, 則大有其效云矣. 養馬, 國之大政, 而疎虞莫甚近日, 其所條陳, 儘得其弊, 駿骨之產, 素稱耽羅, 而貢駒, 舉皆玄黃, 水草之養, 專靠牧場, 而土地反歸耕作, 騎卒借蠶操鍊, 不成貌樣, 駟路就殘, 命令幾乎壅闕. 至於分養之有名無實, 牧官之徒事肥己, 種種弊端, 難以毛舉, 此非法制之不美, 實由有司之不勤. 此後則耽羅歲貢之極擇, 牧場犯耕之論勘, 騎卒備乘之道, 駟路蘇瘼之方, 另加嚴飭, 俾無如前稽忽之弊, 牧官差遣, 各別選擇, 而本司殿最, 勿全以稅納多寡, 先觀其畜產繁損, 以之嚴黜陟行賞罰事, 分付太僕本道, 同議一款令出多門, 易致生弊, 今姑置之, 何如? 傳曰, 允. 馬政有國重事, 近來牧官, 卽一偶官, 何補於馬政乎? 此後畜產多寡, 牧養數爻, 每歲末令該寺, 一件別單書入考績, 以此定其高下, 來頭繡行, 亦令察其勤慢事, 仍自本司, 齎去, 事目中, 此一段添入, 可也.

❖ 정조 12년(1788) 무신년 8월 18일(정미)

□ 탐라(耽羅) 마정(馬政)의 정비를 요청한 비변사의 계

○ 이재학(李在學)이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통례(右通禮) 우정규(禹禎圭)가 상소로 진달한 책자를 가져다 보니 그 하나는 마정(馬政)을 닦아서 거행하는 일에 관한 의론입니다. 그 책자에 이르기를, ‘말을 기르는 것은 무력을 갖추는 일이며 왕실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정이 정비되지 못한 것이 요사이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탐라(耽羅)에서 기르는 것이 4세(歲)를 유지하는 것이 없으며, 준마의 생산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목장에서는 목관(牧官)이 직책을 비우고, 목리(牧吏)는 훔쳐서 손실을 입히고, 번번이 인가(人家)에서 머리를 내두르는 하룻망아지를 끌어다가 액수를 채웁니다. 여러 읍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한 말은 지치고 파리하고 느린 말에 지나지 않으니 장차 위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목관은 오로지 살찌우는 데만 힘쓸

뿐이어서 목축하는 백성을 수탈하는데 한이 없고 살찌고 키가 큰 흰칠한 암수 말도 일찍이 달갑게 여긴 적이 없으니, 마정이 정비되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감목관(監牧官)을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고 또 수령의 전최(殿最)에 따라 본도에서 근만(勤慢)을 고찰하여 더욱 현저한 자와 수재(守宰)로서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를 귀양 보낸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양마(養馬)는 나라의 큰 정사인데 소홀하기가 근래처럼 심한 적이 없습니다. 조목조목 아뢴 내용이 그 폐단을 다 말하였습니다. 준마의 산지로는 평소 탐라를 일컬으나 공납한 말의 대부분이 비루먹었으며, 물과 꼴로 기르는 것을 오로지 목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지는 경작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기졸(騎卒)은 말을 빌려서 조련에 임하여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역로는 쇠잔해져서 명령이 거의 막히고 맙니다. 나누어 기르게 한 것이 유명무실해지고 목관이 한갓 살찌우는 것만 일삼는 이런 갖가지 폐단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제(法制)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로 유사(有司)가 부지런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후로는 탐라의 세공(歲貢)을 극진히 가리는 것과 목장의 범경(犯耕)을 논감(論勘)하는 것, 기졸이 말을 빌려 타는 방도와 역로의 폐단을 없애는 방법을 더욱 엄중 신칙하여 전과 같이 소홀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목관을 차임하여 보내는 것을 각별히 선택하고 본 비변사의 전최는 전혀 세납(稅納)의 다과로 하지 않고 먼저 축산의 번식과 감손을 살펴서 출척(黜陟)을 엄격하게 하고 상벌을 시행하는 일을 태복시(太僕寺)에 분부하여 본도와 함께 의논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영이 나오는 문이 많으면 폐단이 생기기 쉬우니 지금은 잠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마정은 나라의 중대사이다. 근래 목관은 하나의 우관(偶官)인데 마정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이후 축산의 다과와 목양(牧養)의 수효는 매해 말에 해시(該寺)에서 한 건의 별단(別單)을 써서 들고 성적을 상고하여 이것으로 그 고하(高下)를 정하라. 다음번 보낼 어사에게도 그 근만을 감찰하게 하도록 본사에서 가져 갈 사목(事目)에 이 한 가지를 써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³⁷⁷⁾

△ 주제어: 탐라, 마정, 세공, 목관, 목리, 범경.

377)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8월 1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八月 十八日 丁未

○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 尙衣院驄匠洪德智, 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渠等以至殘至微, 數十餘匠手, 上奉國役, 而本無應料受價之事. 惟是外方驄物, 主管賣買者, 以其關西·關北·濟州·加德之物爲業, 將至屢百餘年之久, 而元無是非之端. 床廬市民輩, 忽生權利兼竝之計, 辛丑年潛自挾書於平市署市案, 遽然若自己之業, 凡於物種, 各有其主, 名色亦有判異, 彼廬之物, 此廬不得賣買, 各廬通行之規, 而廬人之如是橫占, 其果成說乎? …… 傳曰, 似此么麼之事, 焉敢擊錚? 民習可駭, 令該院查出懲憑人, 移送本曹, 嚴勘, 可也.

❖ 정조 12년(1788) 무신년 8월 18일(정미)

□ 상의원 총장(驄匠) 홍덕지(洪德智)가 격쟁을 통해 자신들의 업(業)을 상전(床廬)에 빼앗겼다는 내용의 원정(原情)을 올림

○ 홍인호(洪仁浩)가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어제 어가가 거동할 때 상의원 총장(驄匠) 홍덕지(洪德智)가 위외(衛外)에서 격쟁을 하였으므로 그 원정(原情)을 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정에 이르기를, 그들은 지극히 미천한 수십 여 장수(匠手)로, 위로 국역(國役)을 받들고 있으나 본시 그에 상응하는 수가(受價)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외방의 총물(驄物)을 주관하여 매매하는 자는 그 관서·관북·제주(濟州)·가덕(加德)의 물건을 업으로 삼은 자가 장차 수백년이나 되었으나, 원래 시비를 일으킬 단서가 없었습니다. 상전시민(床廬市民)들이 홀연 권리를 검병할 계책을 만들어 신축년에 몰래 평시서(平市署) 시안(市案)에 문서를 끼워 넣고는 마치 자기의 업(業)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무릇 물종(物種)에는 각기 그 주인이 있고 명색도 판이합니다. 그쪽 전(廬)의 물건을 이쪽 전에서 매매할 수 없고, 각 전에는 통행의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인(廬人)이 이와 같이 횡점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중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런 작은 일로 어찌 감히 격쟁을 한단 말인가? 민습이 가히 놀랍다. 해원(該院)에 명해 종용한 사람을 조사해 내고, 형조로 이송하여 엄히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총물, 상전, 상전시민.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九月 九日 丁卯

- 李敏輔, 以刑曹言啓曰, 再昨日動駕時, 全羅道濟州居將校文雲彩, 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靈光·茂長兩邑貢作米一百四十石, 自朝家劃給濟州, 以爲將士養享之需矣. 去甲辰春, 濟州監色高泰岑·康世甫出來輸送, 而自春至秋, 杳無入送之舉. 故渠奉官令, 出來探知, 則茂長居郭通健·羅五采·金尙得·崔恒斗·鄭石履等, 甘誘本州監色, 貢作米九十六石, 幻弄作戲, 互相貿販. 故二十七石督捧輸送, 當初茂長米百石, 載送於韓貴同船隻. 本縣權校郭通健, 奸吏羅五采·張大益等, 作奸分食後, 歸咎於渠, 誣訴勒徵, 世間寧有是事乎? 今正月呈訴刑曹, 發關巡營, 而適值本官上京之時, 分付鄉廳, 各人等使之頭面以處矣. 不意官屬輩, 誣囑官家, 終不查處, 乞令道臣, 嚴覈處決云矣. 曾以此事, 呈于臣曹, 行關本道, 使之查處, 則設有稱冤之端, 更呈法司或巡營, 猶或可也, 而肆然呼籲, 極爲猥越. 原情勿施, 考律勘處, 何如? 傳曰, 民習可駭. 遠涉重溟, 有此呼籲, 嚴飭該道, 斯速推給, 俾無呼冤之弊, 可也.

❖ 정조 12년(1788) 무신년 9월 9일(정묘)

- 제주(濟州)의 장교(將校) 문운채(文雲彩)의 원정을 토대로 제주에 획급할 공작미(貢作米)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간 사건을 보고한 형조의 계
- 이민보(李敏輔)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그제 어가가 거동할 때 전라도 제주(濟州)에 사는 장교(將校) 문운채(文雲彩)가 위외(衛外)에서 격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원정(原情)을 취해서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광(靈光)·무장(茂長) 두 읍의 공작미(貢作米) 140석은 조정에서 제주에 획급하여 장사(將士)를 위해 공양할 물자로 삼는 것입니다. 지난 갑진년 봄, 제주 감색(監色) 고태잠(高泰岑)·강세보(康世甫)가 나와서 수송(輸送)하였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들여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령을 받들어 알아보려고 나왔더니, 무장(茂長)에 사는 곽통건(郭通健)·나오채(羅五采)·김상득(金尙得)·최항두(崔恒斗)·정석리(鄭石履) 등이 본주(本州)의 감색을 달게 꼬여서 공작미 96석에 대해 농간을 부려 서로 팔아먹었기에 27석을 독촉하여 받아내서는 수송하였습니다. 당초 무장의 쌀 100석을 한귀동(韓貴同)의 선척(船隻)에 실어 옮겼는데, 본현의 권교(權校) 곽통건과 간리(奸吏) 나오채·장대익(張大益) 등이 작간하여 나눠먹은 후 그에게 허물을 돌리고는 무고로 고소하여 억지로 받아낸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

이 있단 말입니까? 올해 1월에 형조에 정소(呈訴)하여 순영에 관문을 보냈으나 마침 본관(本官)이 상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향청에 분부하여 각자가 머리 싸매고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관속(官屬)들이 관가에 거짓으로 부탁하여 끝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도신(道臣)에게 빌어 엄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이 일을 형조에 올리자, 본도(本道)에 관문을 보내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혹 원통한 단서가 있다면 다시 법사(法司)나 혹 순영(巡營)에 올린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격쟁으로 호소하는 것은 매우 외람됩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민습이 매우 놀랍다. 멀리 바다를 건너 이렇게 호소하다니, 엄히 해당 도에 신칙하여 속히 추급하게 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문운채, 공작미.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九月 九日 丁卯

- 李敏輔, 以刑曹言啓曰, 再昨日動駕時, 京畿麻田居李召史, 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其夫東彬, 與物故罪人揆明爲同壻, 而橫被揆明之誣訴, 竄配楸子島, 伏蒙生成之澤云矣. 李女夫東彬, 乃以揆明之同壻, 緊入揆明之獄事, 尙保首領, 亦係失刑. 渠焉敢反生倖望, 縱妻呼籲乎? 其在嚴隄防杜後弊之道, 不可以爲夫訟冤, 置而勿論. 原情勿施, 李女猥越之罪, 自臣曹考律重勘,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9월 9일(정묘)

- 걱쟁을 통해 추자도(楸子島)로 찬배(竄配)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이조이[李召史]의 사연을 보고하며 그 처리방침을 건의한 형조의 계
- 이민보(李敏輔)가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그제 어가가 거동할 때 경기 마전(麻田)에 사는 이조이[李召史]가 위외(衛外)에서 걱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원정(原情)을 취해 보았더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남편 동빈(東彬)은 사망한 죄인 규명(揆明)과 동서지간인데, 규명의 무소(誣訴)로 인해 추자도(楸子島)로 찬배(竄配)되었으니 살려주는 은택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녀(李女)의 남편 동빈은 규명의 동서로 규명의 옥사(獄事)에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또한 여태껏 목을 달고 있으니, 나라에서 형법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가 어찌 감히 도리어 요행을 바라고 처(妻)가 호소하는 것을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그 훗날의 폐단을 엄히 방지하는 방도로 본다면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불가하니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이녀의 외람된 죄를 형조로 하여금 올문을 따져 무겁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이소사, 동빈, 규명, 무소.

❖ 乾隆 五十三年 戊申 九月 30日 己巳

- 以濟州牧使狀啓, 本島三邑癘疫寢息緣由馳啓事, 傳于李敏輔曰, 其在一視之意, 島民亦吾民也, 遭癘而扎瘥, 至於此多, 聞甚驚惻. 五月以後, 雖曰稍息, 其前數朔, 因病廢農, 可推而知, 不惟農事爲然, 本島專尙鮑作之利, 如是之際, 漁業亦豈能如意乎? 大抵本島進貢物種, 如魚鰔等品, 在御供別無所關, 在島民徒滋苦瘼, 每見來貢之物目, 輒先蹙眉, 未暇念及於味之適口與否, 今年因病死亡之類, 別加存恤. 其貧無依窮不聊, 而或未收瘥者, 自官助給葬酬. 且其因病, 失農業者失漁業者, 特竝量減稅額, 每朔物膳, 追鰔引鰔烏賊魚等種, 切勿以擅便爲拘, 準此減稅數爰, 須卽減封, 俾朝家一視之澤, 無有遐邇之別事, 令廟堂三懸鈴行會.

❖ 정조 12년(1788) 무신년 9월 30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토대로 여역(癘疫)으로 피해 입은 제주 섬 주민에게 감세(減稅) 혜택을 주고 구휼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본도(本島) 삼읍의 여역(癘疫)이 사그라진 연유를 치계한 일로 올린 장계에 대해 이민보(李敏輔)에게 전교하기를, “온 백성을 한결같이 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섬 백성도 나의 백성이다. 여역을 만나고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나 많다니 매우 놀랍고 측은하다. 5월 이후에는 비록 조금 사그라졌다고 하나 그전 몇 달간 병 때문에 폐농(廢農)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오직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도에서는 오로지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여 파는 것을 이익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업(漁業)인들 어찌 뜻대로 되었겠는가? 대체로 본도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의 종류 가운데 어복(魚鰔) 등의 물품은 어공(御供)에는 별로 관계되는 바가 없고, 섬 백성들에게는 한갓 고통과 폐해만을 더할 뿐이다. 매양 오는 공물의 물목(物目)을 볼 때마다 먼저 이맛살이 찌푸려져 맛이 입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금년에 병으로 인해 사망한 무리들은 각별히 위로하여 구휼하고, 가난하나 의지할 곳이 없고 곤궁하나 힘입을 곳이 없어서 수습하여 물어주지 못한 자들은 관청에서 장례물자를 도와주라. 또 병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했거나 고기잡이를 하지 못한 자들은 특별히 사정을 참작해 세액(稅額)을 감해 주라. 그리고 매월 바치는 물선(物膳) 가운데 추복(追鰔)·인복(引鰔)·오징어[烏賊魚] 등의 종류는 절대로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죄에 구애받지 말고 이에 준하여 세액을 감하고 수효도 즉시 줄여 봉진(封進)하게 하여 원근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을 한결같이 대하는 조정의 은택을 입게 하도록 묘당에서 삼현령에게 행회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여역, 공물, 어복, 추복, 인복, 오징어.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有政. 吏批, 判書鄭昌順, 參判洪秉纘, 參議曹允大進, 同副承旨南鶴聞進. 李晩榮爲典籍, 李端亨爲假監役, 申翊寧爲大靜縣監.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 신익령(申翊寧)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정창순(鄭昌順), 참판 홍병찬(洪秉纘), 참의 조윤대(曹允大)가 나왔고,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이 나왔다. 이만영(李晩榮)을 전적으로 삼고, 이단형(李端亨)을 가감역으로 삼고, 신익령(申翊寧)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대정현감, 신익령.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備邊司, 白師謹爲濟州牧使.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백사근(白師謹)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에서 백사근(白師謹)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백사근.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南鶴聞, 以義禁府言啓曰, 大靜縣監張漢喆, 爲先拿問嚴勘事, 傳旨啓下矣. 張漢喆,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한철(張漢喆)을 나장을 보내 붙잡아 오겠다는 의금부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한철(張漢喆)을 우선 잡아다 형문하고 엄히 처리하라는 전지(傳旨)를 내리셨습니다. 장한철이 지금 임소(任所)에 있으니 예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교대(交代) 후 붙잡아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장한철.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備邊司, 李一曾爲濟州牧使.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이일증(李一曾)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에서 이일증(李一曾)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일증.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南鶴聞, 以義禁府言啓曰, 開城府留守李致中查啓據, 刑曹粘目內, 濟州前判官韓有樞, 卽令該府, 拿問嚴處事允下矣. 韓有樞, 今方待命, 卽爲拿囚之意, 敢啓. 傳曰, 保放.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한유추(韓有樞)를 붙잡아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개성부 유수 이치중(李致中)의 사계(査啓)에 의거하여 형조가 점련하여 올린 계목에 대해,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한유추(韓有樞)를 즉시 해부(該府)로 하여금 붙잡아다 형문하고 엄히 처분할 것을 윤허하셨습니다. 한유추는 지금 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즉시 붙잡아 가두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보방(保放)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제주판관, 한유추.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今十月初八日巳時，上御誠正閣。左議政入侍時，左承旨李亨元，假注書李貞運，記注官金鳳顯，記事官金祖淳，左議政李性源，以次進伏訖。上曰，今日何爲請對耶？性源曰，昨夕烽火時，隣洞居喪人金觀鎮，忽請見曰，濟州人方來傳字賊之書，書中，請換錢百五十，不勝驚駭，捉置其人，執其書而來告云，凶賊之自棘中，通書於京洛，敢要換送錢貨者，是何等變怪，何等凶惡，已承服罪人之尙不伏法，一向假息於島中者，已是萬萬失刑，況舉國悲憤，瀝血雪涕之章，堆積公車，而天聽愈邈，王章不加，臣民憤痛，三載如一日，而今茲換錢之書，本罪之外，尤可見其跳踉縱恣，締結排布之跡，若不及今拿致嚴覈，則絕海窮島，實有難言之憂，發遣金吾郎，卽卽拿來，先問換錢之因何事用何處，其前後窮凶情節，締結陰謀，一一覈出，夫正已款之罪，亟施久追之章，何如？上曰，伊時處分，意有所在，不必如是煩請矣。性源曰，字鎮是何等凶逆，而敢自棘中，通書京洛，地方官，若有嚴畏國法之心，安敢一任其縱恣跳踉，乃至於此？牧使，摠治一島，常時若能檢束，寧有如許變怪？當該地方官，爲先拿問，牧使，一體罷職，何如？上曰，依爲之。性源曰，金觀鎮之所捉納傳書者，濟州人二名爲先出付捕廳，窮覈其傳書情節及換錢委折，一一取服，何如？上曰，爲先令刑曹，嚴覈得情，可也。【出學條】……。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이 제주(濟州) 사람이 역적 김우진(金宇鎭)의 편지를 전한 사실을 임금께 보고하고 그 처리 방안을 함께 논의함
- 이번 10월 초8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의정이 입시켰을 때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김조순(金祖淳),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무슨 일로 청대(請對)를 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성원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 봉화(烽火) 때 이웃 마을에 사는 상인(喪人) 김관진(金觀鎭)이 갑자기 만날 것을 청하고는 말하기를, ‘제주(濟州) 사람이 방금 와서 우적(宇賊)³⁷⁸⁾의 편지를 전했는데, 편지 중에 돈 150냥을 환전해 달라는 청이 있어서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 두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함

378) 우적(宇賊): 역신(逆臣) 김우진(金宇鎭)을 가리킴. 원상(院相)을 지낸 김상철(金尙喆)의 아들로 대역죄인 상계군(常溪君) 이담(李湛)과 내통한 죄로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임.

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흥한 역적이 감옥에서 서울로 편지를 보내 감히 바뀌달라며 돈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변괴이고, 얼마나 흉악한 일입니까? 〈중략〉 금오랑을 보내 즉시 붙잡아와서 우선 환전(換錢)은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고,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를 묻고, 그 전후의 흉악한 정상과 체결한 음모를 낱낱이 조사해 내어 이미 적용한 죄를 시원스레 바로잡고 오래도록 피해 왔던 조문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 처분한 뜻이 있으니 이렇게 번거롭게 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성원이 말하기를, “김우진(金宇鎭)이 얼마나 흉악한 역적인데 감히 감옥에서 서울에 편지를 보내며, 지방관이 만약 국법을 엄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마음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두어 이 지경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목사는 온 섬을 총괄하여 다스리는데, 평상히 능히 검속(檢束)했다면 어찌 이런 변괴가 있겠습니까? 해당 지방관을 우선 붙잡아 형문하고, 목사는 일체 파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성원이 말하기를, “김관진(金觀鎭)이 붙잡은, 이른바 편지를 전해준 제주 사람 2명을 우선 포도청에 보내고, 그 편지를 전해준 사정과 환전(換錢)한 곡절을 끝까지 알아내 낱낱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형조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사정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우적, 김관진, 김우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八日 丙申

- 戊申十月初八日酉時，上御重熙堂。坐直承旨入侍時，左副承旨趙衍德，假注書白慶楷，記注官金鳳顯，記事官金祖淳，以次進伏訖。…… 又命書傳教曰，更思，新除之人，方在外邑，等待其上來，不但曠官可悶，徒有迎送之弊。舒川前郡守白師謹，仍任前職，濟州牧使之代，更爲議薦事，言于廟堂。…….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8일(병신)

- ☐ 백사근(白師謹)의 제주목사직(濟州牧使職) 제수를 취소하고 후임을 다시 천거할 것을 명하는 전교
- 무신년 10월 초8일 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좌직 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부승지 조연덕(趙衍德), 가주서 백경해(白慶楷),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또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다시 생각건대, 새로 제수한 사람이 지금 외읍(外邑)에 있어 모두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벼슬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민망할 뿐 아니라 영송(迎送)의 폐해가 있다. 전 서천군수(舒川郡守) 백사근(白師謹)을 이전 직임에 그대로 있게 하고, 제주목사(濟州牧使) 후임을 다시 의논하여 천거하도록 묘당(廟堂)에 이야기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서천 전 군수, 백사근.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九日 丁酉

- 司諫院行大司諫臣嚴思晩, 司諫臣金復休, 司憲府掌令臣趙武範, 持平臣吳泰彦, 司諫院獻納臣申禹相, 正言臣朴載綽, 正言臣柳憲等, 伏以臣等, 卽伏見畫紙所出者, 以大靜縣荐棘罪人宇鎮通書事, 至有大僚筵奏之舉, 臣等聚首相看, 不覺驚駭之至. 噫嘻, 痛矣. 渠之罪犯, 是何等劇逆, 而尙今假息, 已是失刑, 乃敢肆然通書, 求換錢貨, 不知將欲何用, 而渠若有一分嚴畏之心, 焉敢若此? …… 而所謂觀鎮, 則渠雖有發告之舉, 旣以宇鎮之親族, 不能以大義滅親, 交通書札, 接應凡事, 其平日綢繆和應之狀, 據此可知, 知情之律, 烏得免也? 臣等謂金觀鎮, 先治黨與之律宜矣. 取進止. 答曰, 省筭具悉. 勿煩.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9일(정유)

- 대정현(大靜縣)에 안치된 죄인 김우진(金宇鎭)이 편지를 내통한 사건에 대해 사헌부, 사간원이 올린 차자
- 사간원 대사간 신(臣) 엄사만(嚴思晩), 사간 신 김복휴(金復休), 사헌부 장령 신 조무범(趙武範), 지평 신 오탈언(吳泰彦), 사간원 헌납 신 신우상(申禹相), 정언 신 박재준(朴載綽), 정언 신 유숙(柳憲) 등이 아뢰기를, “삼가 말씀드리건대 저희가 지금 주지(畫紙)³⁷⁹⁾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김우진(金宇鎭)이 편지를 보낸 일로 대소신료가 경연에서 주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도 머리를 모아 살펴보고는 문득 놀랍고 괴이했습니다. 아아, 애통합니다. 그가 범한 죄가 얼마나 극악한 역절인데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미 실형(失刑)인데 감히 제멋대로 편지를 보내 전화(錢貨)를 바꾸려 했고, 장차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중략> 소위 김관진(金觀鎭)은 비록 발고(發告)했다고는 하나 이미 김우진의 친족입니다. 대의(大義) 때문에 친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편지를 내통하고 범사에 접응(接應)한 것을 보면 평상시에 서로 결탁하여 호응한 정황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정(知情)의 율(律)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말씀드리

379) 주지(畫紙): 관청의 소식을 모두 모아 다음날 아침에 알리는 것을 조보(朝報) 또는 기별(奇別)이라 하는 것에 대비하여 양사에서 당일애 조금 늦게 먼저 기별을 보는 것을 말함.

건대, 김관진을 우선 당여(黨與)를 모조리 제거하는 율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우진, 김관진, 지정의 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九日 丁酉

- 南鶴聞,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洪仁默, 一體拿問事, 傳旨啓下矣. 洪仁默, 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9일(정유)

- 의금부 서리를 보내 임소에 있는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을 붙잡아 오겠다는 의금부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을 모두 붙잡아 형문하라는 전지(傳旨)를 계하하셨습니다. 홍인묵이 지금 임소(任所)에 있으므로 예에 따라 의금부 서리를 보내 교대 후 붙잡아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제주목사, 홍인묵.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九日 丁酉

- 大司憲趙煥疏曰, 嗚呼近年以來, 誅討太寬, 隄防不嚴, 逆孽凶徒, 無所畏戢, 至於今者, 宇賊換錢之變而極矣. …… 且宇賊, 既貽書於金觀鎮, 則觀鎮之於宇賊, 其情志之相通, 明若觀火, 渠雖先爲發告, 而第其書中所言, 若是陰祕, 則非至切至密之間, 而夫豈有遠地書托之理哉? 其平日和應之跡, 昭不可掩, 亦卽究覈, 施以當律. 至若濟州兩漢之潛通劇賊, 受來私書, 固已萬萬痛惡, 而事既綻露, 跡又凶祕, 揆以獄體, 不可付諸秋曹, 請依大僚所奏, 移送捕廳, 一一究問, 期於得情, 斷不可已也云云. 答曰, 省疏具悉. 堂批悉言之矣. 附陳金觀鎮事, 渠既登時往言左相, 似無同情之跡, 當觀查事出場矣.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9일(정유)

□ 죄인 김우진(金字鎭) 사건에 관한 대사헌 조환(趙煥)의 상소

- 대사헌 조환(趙煥)이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아아, 근년 이래 주토(誅討)에 크게 관대하고 방비가 엄하지 않아 역적 흉도(凶徒)가 꺼리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더니, 지금 역적 김우진(金字鎭)이 환전(換錢)하려던 변고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중략> 또 김우진은 이미 김관진(金觀鎭)에게 편지를 써 보냈으니, 김관진은 김우진에 대해 그 정지(情志)를 서로 통했음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가 비록 먼저 발고(發告)했지만 그 편지에서 한 말이 이처럼 음흉하고 비밀스러우니 극히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찌 원지(遠地)에서 편지로 청탁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가 평상시 화응(和應)한 흔적을 가릴 수 없으니, 또한 즉시 조사하여 마땅한 율(律)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주(濟州)의 두 놈이 몰래 역적과 내통하여 사적인 편지를 받아온 것은 참으로 매우 분통하고 극악합니다. 일이 이미 탄로났고 자취가 또한 훤히 보이고 비밀스러우며, 옥체(獄體)에 비추어보면 형조에 부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소신료가 주달한 바에 따라 포도청으로 이송하고 낱낱이 심문하여 사정을 알아내는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당비(堂批)에서 상세히 말하였다. 부진(附陳)한 김관진의 일은 그가 이미 일이 일어났을 때 좌상에게 가서 말했고, 동조한 흔적은 없는 듯하다. 조사한 것을 보고 출장(出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김우진, 김관진, 환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九日 丁酉

- 掌令鄭景祚疏曰, …… 臣謂凶賊字鎮, 亟命王府, 拿來嚴囚, 前後窮凶情節, 一一盤覈, 私書之任自相通, 換錢之用於何處, 竝皆鞫覈, 夫正王法, 斷不可已也. 觀鎮, 以逆宇之至親, 書札之往復, 錢貨之交通, 既是萬萬放恣無嚴, 逆宇情跡, 必無不知之理, 爲先捉致該曹, 嚴覈得情, 待宇賊拿來, 更加質問宜矣. 地方官之不能防守, 該牧使之不能糾察, 已因大僚之請罪, 雖已或拿或罷, 大抵濟州一島, 素多凶賊輩竄配, 其所防守之嚴, 糾察之密, 非比尋常, 如宇賊之至妖大惡, 猶且任其通書於京洛, 則日後之弊, 難言之慮, 有不可勝言, 竝即拿覈, 嚴施當律焉云云. 答曰, 省疏具悉. 勿煩.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9일(정유)

□ 죄인 김우진(金宇鎭) 사건에 관한 장령 정경조(鄭景祚)의 상소

- 장령 정경조(鄭景祚)가 상소하기를, “〈중략〉 신(臣)은 이르건대 흥적 김우진(金宇鎭)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붙잡아다 엄히 가두고 전후의 흥악한 정상을 낱낱이 조사하게 하고, 사적으로 편지를 몇대로 유통하여 환전(換錢)한 것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아울러 모두 국문하여 조사하여 시원하게 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김관진(金觀鎭)은 역적 김우진의 지친으로 서찰을 왕복하고 전화(錢貨)를 교통(交通)했으니 이미 방자하고 무엄하기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적 김우진의 사정과 족적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 우선 해조(該曹)로 잡아들여 엄히 조사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김우진을 붙잡아 오기를 기다려 다시 대질하고 심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방관으로서 능히 예방하지 못한 해 목사가 능히 규찰하지 못한 것은 이미 대소신료가 죄를 청했으니, 비록 이미 붙잡았거나 혹은 파직했어야 합니다. 대개 제주(濟州) 한 섬은 본디 흥적(凶賊)들을 찬배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防守)의 엄격함과 규찰의 비밀스러움은 다른 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역적 김우진처럼 매우 요사하고 사특한 이가 서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내버려 두었으니 훗날 폐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즉시 붙잡아 심문하고, 엄히 마땅한 율문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김우진, 김관진, 정경조.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十日 戊戌

○ 備邊司, 李喆模爲濟州牧使.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10일(무술)

□ 이철모(李喆模)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에서 이철모(李喆模)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十日 戊戌

○ 戊申十月初十日辰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致仁，左議政李性源，右議政蔡濟恭，戶曹判書徐有隣，右參贊鄭好仁，延豐君李垺，行副司直李柱國，兵曹判書李文源，行副司直尹蓍東·金尙集，漢城判尹徐有防，兼都承旨沈豐之，刑曹判書李秉模，行副司直徐有大·朴祐源·李在學，吏曹參判洪秉纘，行副司直金持默，行副護軍趙心泰，副校理沈興永，右承旨李亨元，假注書李貞運，事變假注書李義觀，記事官李相璜·金祖淳，以次進伏訖。…… 濟恭曰，宇賊逆節，在於臣蟄伏之時，而其窮凶極逆之狀，舉國皆憤，臣亦豈不聞知乎？王章不用假息海島，臣常仰屋竊歎，而又有今番事出矣。伏見玉堂批旨，猶以秉彝，責之於渠，渠若知有父，則其逆節豈至於此乎？使渠若有一分嚴畏之心，以承款戴頭之蹤，又安敢通書京洛，換用錢貨乎？千里重溟之中，暗地排布之狀，推此可驗，本來逆節之外，又有此見捉，則國人之憤痛，尤倍於前。伏願誕降俞音，窮覈情節，夫正王法焉。上曰，當初酌處之時，頭緒未定，而猶且貸死，況今番事，不過換錢，則何必如是煩請乎？…… 致仁等曰，…… 且見刑曹草供，則濟州之人，呼之以令監云，渠之縱恣無嚴，即此可知，此非但錢貨交通之爲罔赦而已。…… 致仁曰，濟州牧使李一曾，聞有篤老之親，不可強令赴任，改差，何如？上曰，依爲之。【出擧條】……。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10일(무술)

□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일증(李一曾)의 개차를 청함

○ 무신년 11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우참찬 정호인(鄭好仁), 연풍군 이갑(李垺),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병조판서 이문원(李文源), 행 부사직 윤시동(尹蓍東)·김상집(金尙集), 한성판윤 서유방(徐有防), 겸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형조판서 이병모(李秉模),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박우원(朴祐源)·이재학(李在學), 이조참판 홍명찬(洪秉纘),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행 부호군 조심태(趙心泰), 부교리 심흥영(沈興永), 우승지 이형원(李亨元),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사변가주서 이희관(李義觀),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앞드렸다. <중략> 채제공이 말하기를, “김우진(金宇鎭)의 역적 행절은 제가 칙거

하던 시절의 일이나 그의 흉악한 역적 행적은 온 나라를 분개하게 했으니 제가 어찌 들어 알지 못하겠습니까? 왕장(王章)이 섬에서 잠시도 쉬지 못한 것처럼 저도 지붕을 우러러보며 몰래 탄식하였는데, 또한 이번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옥당에 내린 비지(批旨)를 보니, 오직 천성을 논하며 그를 질책했으니 그가 만약 부모가 있음을 알았다면 그 역절(逆節)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엄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머리 들고 종적을 자복했을 것인데, 또한 어찌 감히 서울에 편지를 보내 전화(錢貨)를 바꾸어 쓴단 말입니까? 천리 무겁고 어두운 가운데 몰래 배포한 상황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역절 외에 이것으로 붙잡힌다면 나라 백성의 분통함은 배가될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유음(兪音)을 내리셔서 정상을 끝까지 조사하고 시원하게 왕법대로 처리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유배에 처할 때 두서를 확정하지 못해 사형을 면했다. 하물며 이번 일은 환전한 것에 불과하니 어찌 이렇게 번거롭게 청하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김치인 등이 말하기를, “<중략> 또 형조의 초공(草供)을 보니 제주(濟州) 사람이 그를 영감이라 불렀다고 하니 그가 방자하고 무엄하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전화(錢貨)를 서로 유통하여 용서할 수 없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치인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일증(李一曾)은 듣건대 나이 많은 부모가 계신다 하니 강제로 부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제주목사, 이일증, 개차, 전화, 김우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十一日 己亥

- 李時秀, 以左邊捕盜廳言啓曰, 因刑曹判書李秉模所達, 濟州罪人昌純四寸李昌甲, 捉來究覈, 而昌純父宗裕, 居生於昌甲家, 故一體捉來, 捧草供以入之意, 敢啓. 傳曰, 別無更問之端, 竝放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11일(기해)

- 제주(濟州) 죄인 이창순(李昌純) 등의 처리에 대한 포도청의 계
- 이시수(李時秀)가 좌변 포도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형조판서 이병모(李秉模)가 말한 바에 따라 제주(濟州) 죄인 이창순(李昌純)의 4촌 이창갑(李昌甲)을 붙잡아 와서 심문하되, 이창순의 아버지가 이창갑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함께 붙잡아 와서 공초를 받아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특별히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풀어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 죄인, 이창순, 이창갑.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十四日 壬寅

- 有政. 吏批, 判書鄭昌順牌不進, 參判洪秉纘進, 參議曹允大牌不進, 同副承旨南鶴聞進. …… 以尹蓍東爲知敦寧, 丁範祖爲禮曹參議, …… 濟州牧使單李喆模, 舒川郡守白師謹, 仍任事, 承傳.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14일(임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철모(李喆模)를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정창순(鄭昌順)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판 홍병찬(洪秉纘)은 나왔으며, 참의 조윤대(曹允大)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동부승지 남학문(南鶴聞)은 나왔다. <중략> 윤시동(尹蓍東)을 지돈녕으로 삼고, 정범조(丁範祖)를 예조참의로 삼고,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망으로 이철모(李喆模)를 제수하고, 서천군수 백사근(白師謹)을 잉임하라는 전교를 받들었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이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十五日 癸卯

- 傳于趙衍德曰, 三政方張, 此時守令, 不可一刻曠官, 未下直守令, 濟州三守令外, 皆令待明朝辭朝.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15일(계묘)

- ☐ 제주(濟州) 수령 외에 하직하지 않은 수령에게 내일 아침 사조(辭朝)하라는 전교를 내림
- 조연덕(趙衍德)에게 전교하기를, “삼정(三政)이 지금 한창인 이때 수령 자리를 잠시라도 비워둘 수 없다.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은 제주(濟州)의 세 수령 외에는 모두 내일 아침에 사조(辭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수령, 사조, 삼정.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十九日 丁未

- 前大靜縣監朴尙春疏曰. …… 卽伏見禁髭髻聖教下者, 特以由奢入儉四字, 爲十行中要語, 頒示中外, …… 嗚呼, 今此昭儉之教, 雖均爲八域救弊之本, 而最關北道者, 大矣. …… 今我殿下, 特軫北道之歉荒, 爰命閣臣, 敷以慰諭之澤, 畀以往哺之恩, 凡係貢上, 一竝蠲下, 或慮一民庚癸之戚, 益切九重乙丙之憂, 而至有捐帑別貿, 以饋餼迓, 惟彼蚩蠹之肥瘠, 何關國家之損益, 而又以飢飽困安, 若已有之爲教, 綸音之頒, 至及微臣, 拜稽奉讀, 不覺感激兢惶, 嗚咽涕泗, …… 而獨北民之遭歉益艱, 實有北民不務本之罪, 而其弊不一, …… 答曰, 省疏具悉. 爾以疎逃之蹤, 陳此北路矯俗之策, 極爲可嘉, 苟無憂國愛君之誠, 豈能辦此? 原疏下廟堂, 使卽稟處.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19일(정미)

- 북도의 흉년과 그에 따른 구휼의 문제 등을 언급한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의 상소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이 상소하기를, “〈중략〉 삼가 다리 엮는 것을 금지하는 성상의 전교를 보니 ‘사치에서 검소로 들어간다[由奢入儉]’는 네 글자를 요어(要語)로 삼으시고 중외에 반포하셨습니다. 〈중략〉 아아, 이번에 검소를 밝히신 전교가 비록 똑같이 8도의 폐단을 구제하는 근본이 된다 하더라도 북도에 관계된 것이 가장 큼니다. 〈중략〉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북도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가서 먹이도록 하시고, 공상(供上)에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모두 감면하시고, 내탕금(內帑金)을 내어 따로 곡식을 무역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셨으며, 백성들의 주림과 배부름과 곤궁함과 편안함을 자신이 그런 것처럼 여기셨으니, 어지신 뜻이 미치는 곳에 누가 감읍(感泣)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북도 백성들이 만난 흉년은 실로 근본을 힘쓰지 않은 데서 연유한 죄로, 그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네가 멀리 있는 몸으로 북도의 풍속을 바로잡을 계책을 진술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없다면 어찌 능히 이렇게 하겠는가? 원소(原疏)를 묘당에 내려서 즉시 품쳐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박상춘.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二十八日 丙辰

- 戊申十月二十八日辰時，上御誠正閣。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李洪載，假注書白慶楷，記事官李相璜·金祖淳，以次進伏訖。…… 賤臣承命出，與安岳郡守李昌漢，旌義縣監趙元珣，偕入進伏。上曰，下直守令進前，各奏職姓名，可也。昌漢·元珣，以次進奏。上曰，下去須善爲之也。命洪載宣諭訖。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28일(병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이 하직함

- 무신년 10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켰을 때 동부승지 이홍재(李洪載), 가주서 백경해(白慶楷),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안악군수 이창한(李昌漢),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과 함께 들어와서는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직 수령은 앞으로 나와 각각 직(職)과 성명을 아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창한·조원순이 차례로 나아가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서 잘 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이홍재에게 명하여 선유(宣諭)하도록 하고 마쳤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나 나왔다.

△ 주제어: 정의현감, 조원순, 하직 수령.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二十九日 丁巳

- 李亨元啓曰, 濟州前牧使洪仁默拿來事, 禁府草記, 允下矣. 奪符次, 宣傳官當爲下去, 標信密匣, 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29일(정사)

- 이형원(李亨元)이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의 병부(兵符)를 빼앗고 붙잡아 오기 위한 방안을 보고함
- 이형원(李亨元)이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을 붙잡아오겠다는 의금부 초기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병부(兵符)를 빼앗아 오기 위해 선전관이 마땅히 내려가서 표신(標信)과 밀갑(密匣)을 내오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제주목사, 홍인묵, 병부, 표신, 밀갑.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二十九日 丁巳

○ 吏曹口傳政事, 大靜縣監辛翊寧, 沃溝縣監李昌會, 相換事, 承傳.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29일(정사)

□ 대정현감(大靜縣監) 신익령(辛翊寧)을 옥구현감(沃溝縣監)과 바꾸는 전교를 받들

○ 이조에서 구전(口傳)으로 정사(政事)를 처리하여 대정현감(大靜縣監) 신익령(辛翊寧)과 옥구현감(沃溝縣監) 이창회(李昌會)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전교를 받들었다.

△ 주제어: 대정현감, 옥구현감, 신익령, 이창회.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月 二十九日 丁巳

○ 戊申十月二十九日申時, 上御誠正閣. 召對入侍, 坐直承旨, 與下直守令入侍時, 檢校直提學徐有防, 參贊官李亨元, 侍讀官沈興永, 檢討官閔昌赫, 同副承旨李洪載, 假注書李貞運, 記事官李相瓚·金祖淳, 成川府使黃昇源, 濟州牧使李哲模, 大靜縣監辛翊寧, 以次進伏訖. 上曰, 守令以次進前. 昇源等, 進奏職姓名訖. 上教翊寧曰, 爾年幾何? 翊寧曰, 六十二歲矣. 命書傳教曰, 其人極了了, 不患不堪任, 而問其年過回甲, 又有年矣. 磨勘於島邑可惜, 隆冬越海, 別有不堪任之慮, 大靜縣監辛翊寧道內守令中, 令該曹, 今日內口傳相換, 與相換守令, 竝令除朝辭赴任.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0월 29일(정사)

□ 하직 수령을 맞이한 자리에서 대정현감(大靜縣監) 신익령(辛翊寧)을 도내의 다른 수령과 상환하도록 명함

○ 무신년 10월 29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소대에 입성한 좌직 승지가 하직 수령과 더불어 입시했을 때 검교 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참찬관 이형원(李亨元), 시독관 심흥영(沈興永), 검토관 민창혁(閔昌赫), 동부승지 이홍재(李洪載),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기사관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 성천부사 황승원(黃昇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哲模), 대정현감(大靜縣監) 신익령(辛翊寧)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황승원 등이 나아가 직(職)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신익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몇인가?”라고 하였다. 신익령이 말하기를, “62세입니다.”라고 하였다. 명하여 쓰게 하고 전교(傳敎)하기를, “사람이 매우 명료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할 것은 없으나, 나이를 물었더니 회갑이 넘어 또한 나이가 있으니 도읍(島邑)에서 마감하는 것이 애석하다. 한겨울에 바다는 건너 특별히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 대정현감 신익령을 도내 수령 중 해조(該曹)에 명하여 오늘 안에 구전(口傳)으로 상환(相換)하라. 그리고 상환한 수령과 함께 조사(朝辭)를 생각하고 부임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이철모, 신익령.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一月 七日 乙丑

- 備忘記, 濟州牧使李喆模, 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1월 7일(을축)

- ☐ 하직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에게 비망기를 내려 물품을 사급함
- 비망기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가 하직하였으니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비망기, 사급.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一月 十五日 癸酉

- 李亨元,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吳允國,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廄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兩馬俱爲孱劣, 瘦瘠特甚, 事極駭然. 當該封進旌義前縣監吳允國,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1월 15일(계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이 올린 체임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이형원(李亨元)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윤국(吳允國)의 체임진상마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 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例)에 따라 내구(內廄)에서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두 말이 모두 잔열(孱劣)하고 매우 파리하니 일이 극히 놀랍습니다. 봉진한 당해 전 정의현감 오윤국을 추고 하여 문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오윤국, 체임 진상마.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一月 十七日 乙亥

- 以全羅監司狀啓, 大靜縣監李昌會, 以親年, 法不當往赴, 令該曹稟處事, 傳于李祖承曰, 意或有老親, 伊時望單留中, 問于承宣, 而曰以不然云, 故使之啓下矣. 觀此狀辭, 該曹事, 難免不審, 該堂推考, 前縣監李昌會仍任, 時縣監辛翊寧, 道內他邑, 卽爲相換, 竝令除朝辭赴任事, 分付, 仍以此意, 回諭.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1월 17일(을해)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창회(李昌會)가 부임할 수 없다는 전라감사의 장계에 대한 조처를 지시한 전교
- 전라감사가 장계로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창회(李昌會)가 부모의 나이 때문에 법적으로 마땅히 가서 부임할 수 없으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이승조(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혹 노친(老親)이 있는지 그때 의망단자를 보류해 둔 채 승선에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 계하(啓下)하도록 하였다. 이 장사(狀辭)를 보니 해조(該曹)의 일이 잘 살피지 못했음을 면하기 어렵다. 해당(該堂)을 추고하고, 전 현감 이창회는 잉임(仍任)하며, 현재 현감 신익령(辛翊寧)은 도내 타읍과 즉시 상환(相換)하여 모두 조사(朝辭)를 생략하고 부임하도록 분부하라. 그리고 이 뜻으로 그대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창회, 신익령, 이승조, 잉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一月 十七日 乙亥

○ 吏曹口傳政事, 大靜縣監辛翊寧, 咸平縣監沈錫相換, 沃溝縣監李昌會, 仍任事, 承傳.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1월 17일(을해)

□ 대정현감(大靜縣監) 신익령(辛翊寧) 등에 대한 이조의 구전 정사

○ 이조가 구전(口傳)으로 정사(政事)를 하였다. 대정현감(大靜縣監) 신익령(辛翊寧)과 함평현감 심석(沈錫)을 상환(相換)하고, 옥구현감 이창회(李昌會)는 잉임(仍任)하라는 전교를 받들었다.

△ 주제어: 대정현감, 신익령, 이창회, 구전 정사.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三日 庚寅

- 戊申十二月初三日未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判府事金燧·俞彥鎬, 左議政李性源, 右議政蔡濟恭, 行司直金華鎮, 行知中樞鄭昌聖, 戶曹判書徐有隣, 右參贊鄭好仁, 延豐君李埤, 禮曹判書李在簡, 知訓鍊李柱國, 行副司直鄭昌順, 兵曹判書李文源, 行副司直金尙集, 漢城判尹徐有防, 兼都承旨沈豐之, 行副司直李秉模·沈頤之·徐有大, 開城留守李致中, 行副司直李在學·金持默, 行副護軍趙心泰, 左承旨李亨元, 右副承旨李祖源, 假注書李貞運, 事變假注書申星模, 記事官李相璜·金祖淳, 以次進伏訖. …… 性源曰, 此濟州前牧使洪仁默災實分等狀啓也, 旌義置之尤甚, 本州置之之次, 大靜置之稍實, 仍以爲三邑新還, 丐乞戶三分一, 尤甚戶四分一, 之次戶五分一, 限麥秋停退, 今秋當捧之穀, 從便代納, 寺奴身貢米減半, 男丁大同米減二升, 各班除番米每口一斗式, 亦令停退, 舊還停退, 軍兵操鍊, 依近例姑令停退, 凡此舉行事, 當啓稟, 恭俟處分, 而候風往來, 動費數朔, 故敢援前例, 先舉行後啓聞, 事涉擅便, 不勝惶恐爲辭矣. 本州是候風之地, 自前先行後狀聞, 便成已例, 竝依狀請許施,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3일(경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고한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의 계
- 무신년 12월 초3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판부사 김익(金燧)·유언호(俞彦鎬),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행 사직 김화진(金華鎭), 행 지중추 정창성(鄭昌聖),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우참찬 정호인(鄭好仁), 연풍군 이갑(李埤), 예조판서 이재간(李在簡), 지 훈련 이주국(李柱國), 행 부사직 정창순(鄭昌順), 병조판서 이문원(李文源), 행 부사직 김상집(金尙集), 한성판윤 서유방(徐有防), 겸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행 부사직 이병모(李秉模)·심이지(沈頤之)·서유대(徐有大), 개성 유수 이치중(李致中), 행 부사직 이재학(李在學)·김지묵(金持默), 행 부호군 조심태(趙心泰),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우부승지 이조원(李祖源),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사변 가주서 신성모(申星模),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성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정의(旌義)는 우심읍, 본주(本州)는 지차읍, 대정(大靜)은 초실읍에 두었으며, 이 세 고을의 새 환곡은 개결호(丐乞戶)는 3분의 1, 우심호는 4분의 1, 지차호는 5분의 1을 보리가을까지 정퇴하였고, 금년 가을에 봉납해야 할 곡식은 편리한 대로 대납하게 했으며, 사노(寺奴)의 신공미(身貢米)는 반을 감하고, 남정(男丁)의 대동미는 2되[升]를 감하고, 각 반(班)의 제번미(除番米)는 매 구(口) 1두(斗) 씩을 역시 정퇴하게 하였고, 묵은 환곡의 정퇴와 군병의 조련은 근례에 따라 잠시 정퇴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거행한 일은 마땅히 계품(啓稟)하고 공손히 처분을 기다려야 하나 바람을 기다려서 왕래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므로 감히 전례를 원용하여 먼저 거행하고 나중에 계문(啓聞)하는 것입니다. 일이 멋대로 처리함에 관계된 것이어서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주는 바람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라 전부터 먼저 거행하고 나중에 장문하는 것이 이미 관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청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정의, 대정, 제주목사, 홍인묵, 재실분등장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四日 辛卯

- 趙衍德, 以禮曹言啓曰, 今此冬至諸道方物中, 濟州牧所封方物, 前牧使洪仁默, 雖在拿命中, 而以越海之地, 預爲封進上來矣. 一體看品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4일(신묘)

- 동지에 제주목(濟州牧)이 봉진하는 방물을 미리 봉진해 올려보내게 하고, 이를 간품하여 받아들이겠다는 예조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이번 동지(冬至)에 여러 도에서 올린 방물(方物) 중 제주목(濟州牧)이 봉진하는 방물은 전 목사 홍인묵(洪仁默)에 대해 붙잡아오라는 명이 내려져 있지만, 바다를 건너야 하는 땅으로 미리 봉진하여 올라오게 하고 일체를 간품(看品)하여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홍인묵, 방물, 봉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四日 辛卯

- 李祖原, 以漢城府言啓曰, 今此戊申年獻民數時, 京中及八道元戶人口摠數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迄未上來, 海島遲速, 未可預科, 故京外已磨勘戶口摠數, 爲先入錄, 濟州三邑, 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4일(신묘)

- 인구총수를 입계(入啓)하되 제주(濟州) 삼읍의 경우 올라오는 대로 추가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이조원(李祖原)이 한성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이번 무신년 호구 숫자를 제출할 때 서울 및 8도의 원호(元戶) 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入啓)하오나,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섬이라 언제 올라올지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경외(京外)의 이미 마감한 호구총수를 우선 입록(入錄)하고 제주 삼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려 추후에 추가로 기록하여 올리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삼읍, 민수, 인구총수.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五日 壬辰

- 趙衍德, 以義禁府言啓曰, 罪人兪彥鎬, 絶島圍籬安置事, 命下矣. 罪人兪彥鎬,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圍籬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都事, 押送配所, 與地方官, 眼同圍籬安置,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5일(임진)

- ☐ 죄인 유언호(兪彦鎬)를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기 위한 절차를 보고한 의금부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죄인 유언호(兪彦鎬)를 절도(絶島)에 위리안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죄인 유언호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하되, 승전(承傳)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즉시 의금부 도사를 파견하여 배소로 압송하고, 지방관과 더불어 힘을 합쳐 위리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유언호, 위리안치.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六日 癸巳

- 大司諫李洪載, 執義李濟萬, 司諫尹行履, 應教韓用龜, 掌令沈興永, 掌令朴錕, 持平徐邁修, 獻納姜垣, 校理閔昌燦, 副校理徐配修, 正言鄭來百, 正言尹悌東, 修撰申大尹, 副修撰李顯默, 副修撰李益運等劄曰, …… 噫嘻, 痛矣. 惟彼俞彥鎬, 本以狠愎之性, 兼之回邪之行, 荷聖朝拂拭之恩, 而罔念報效之道, 益肆憑恃之習, 爲世之指目, 厥惟久矣. 迺者尹蕃東疏語關係何如, 負犯何如, 而爲今日北面於殿下者, 莫不崩心痛骨, 如不欲生, 渠獨何心? 旣聞二字之後, 全無驚動之意, 偃然在家, …… 臣等誠意淺薄, 昨陳按法之論未蒙允許之音, 達宵繞壁, 益不勝憤鬱之至. 伏願聖上, 亟加三思, 廓揮乾斷, 大靜縣圍籬安置罪人俞彥鎬, 依律處斷, 少洩臣民之憤焉.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6일(계사)

- 大靜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유언호(俞彦鎬)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이홍재(李洪載), 집의 이제만(李濟萬), 사간 윤행리(尹行履), 응교 한용귀(韓用龜), 장령 심흥영(沈興永), 장령 박황(朴錕), 지평 서매수(徐邁修), 헌납姜垣, 교리 민창혁(閔昌燦), 부교리 서배수(徐配修), 정언 정래백(鄭來百), 정언 윤제동(尹悌東), 수찬 신대운(申大尹), 부수찬 이현묵(李顯默), 부수찬 이익운(李益運) 등이 상차하기를, “〈중략〉 아아, 분통합니다. 저 유언호(俞彦鎬)는 본디 이리 처럼 사나운 성품에다가 간사한 행동까지 겸하였으므로 죄명을 씻어주신 성상의 은덕을 입고도 보답할 방도는 생각지 않고 의뢰하는 버릇을 더욱 자행하여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지난번 윤시동(尹蕃東)의 상소 내용에 관계된 바가 어떠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한 것이 어떠했습니까? 이에 오늘의 신하된 이들이 모두 가슴이 무너지고 통한이 골수에까지 사무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이 하였는데, 저는 오직 무슨 마음인지 두 글자를 듣고 난 후에도 전혀 놀라는 뜻이 없이 편안히 집에 있었습니다. 〈중략〉 저희는 참으로 뜻이 천박하여 어제 아뢴 법을 상고해 달라는 논의가 윤희를 받지 못하였으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더욱 분통하고 울적해지는 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더욱 과감히 결단을 내리시어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 죄인 유언호를 율문에 따라 처단하고, 신민(臣民)의 분통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유언호, 위리안치.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七日 甲午

- 大司諫李洪載, 執義李濟萬, 司諫尹行履, 應教韓用龜, 掌令沈興永·朴錡, 持平徐邁修·朴載淳, 校理閔昌燾, 副校理徐配修, 正言尹悌東, 修撰申大尹, 副修撰李顯默·李益運等筭曰, 伏以臣等, 昨以兪彥鎬·金致仁等事, 聯陳加律之請矣, 及承批旨, 不惟不賜允兪, 必誅之罪, 欲以大臣而典貸, 罔赦之辜, 歸之老昏而參恕臣等相顧愕眙, 實不勝抑菀憂歎之至, 噫嘻, 痛矣. 兪彥鎬之今番罪惡, 已悉於前筭, …… 伏願聖上, 廓揮乾斷, 大靜縣圍籬安置罪人兪彥鎬, 亟令攸司, 按律處斷焉.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7일(갑오)

- ☐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兪彦鎬)를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대사간 이홍재(李洪載), 집의 이제만(李濟萬), 사간 윤행리(尹行履), 응교 한용귀(韓用龜), 장령 심흥영(沈興永)·박황(朴錡), 지평 서매수(徐邁修)·박재순(朴載淳), 교리 민창혁(閔昌燾), 부교리 서매수(徐配修), 정언 윤제동(尹悌東), 수찬 신대윤(申大尹), 부수찬 이현묵(李顯默)·이익운(李益運)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저희가 어제 유언호(兪彦鎬)·김치인(金致仁) 등의 일로 연명으로 상소하여 가율(加律)하라는 청을 드렸습니다. 비지(批旨)를 받아보니 윤희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목 베어야 할 죄를 대신이라고 해서 관대히 하려고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노혼(老昏)하다고 용서하려 합니다. 저희는 서로 돌아보며 눈이 휘둥그레진 채 실로 억울하고 근심스러운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아, 분통합니다. 유언호의 이번 죄악은 이미 이전 상차(上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략> 엮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결단을 내려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를 속히 유사(攸司)로 하여금 올문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위리안치, 유언호.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十日 丁酉

- 戊申十二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性源, 右議政蔡濟恭, 行司直金華鎮, 行知中樞鄭昌聖, 戶曹判書徐有隣, 左參贊鄭好仁, 右參贊李埤, 行副司直李在簡, 知訓練李柱國, 知敦寧金尙集, 漢城判尹徐有防, 兼都承旨沈豐之, 行副司直李秉模·沈頤之·徐有大, 開城留守李致中, 行副司直李在學, 江華留守尹承烈, 行副司直金持默, 行副護軍趙心泰, 校理徐配修, 左承旨李亨元, 假注書李貞運, 記事官李相璜·金祖淳, 以次進伏訖. …… 上曰, 嶺南穀, 今當北運矣. 督運時御史, 差員中便否, 卿等各陳所見. 性源曰, 穀物裝發時, 道臣則只遣親裨申飭而已, 守令差員則各邑舉行, 恐不如御史之督運, 些少廚傳之弊, 不必拘矣. 濟恭曰, 督運係是莫大之政, 道臣雖不親往, 自當嚴飭不必別遣御史, 貽弊廚傳, 臣意則擇守令中有資歷有風力者, 委以督運之任, 似合事宜矣. 上曰, 以隣近守令中另擇, 定差員督運, 雖以領運言之, 濟州船粟, 猶以守令騎船, 北關何異? 亦以守令中定差員騎船事, 分付, 可也. 【出舉條】 …… 配修曰, 俞彥鎬·金致仁加律之請, 三司爭執, 尙斬允俞. 噫嘻, 彥鎬之罪, 豈可一刻容貸乎? 頃當宸衷震惕, 洞諭將下而力抗召命者, 已無臣分, 及至登筵承教, 了無驚痛, 今日廷臣, 不能致討於彥鎬, 則尙何以抗顏於朝著乎? 臣謂大靜縣荐棘罪人俞彥鎬, 依律處斷. …….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10일(정유)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영남의 곡식을 북쪽으로 운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겸하여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를 처단하라는 의견을 들음
- 무신년 12월 초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행사직 김화진(金華鎭), 행 지중추 정창성(鄭昌聖),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좌참찬 정호인(鄭好仁), 우참찬 이갑(李埤), 행 부사직 이재간(李在簡), 지 훈련 이주국(李柱國), 지 돈녕 김상집(金尙集), 한성판윤 서유방(徐有防), 겸 도승지 심풍지(沈豐之), 행 부사직 이병모(李秉模)·심이지(沈頤之)·서유대(徐有大), 개성유수 이치중(李致中), 행 부사직 이재학(李在學), 강화유수 윤승렬(尹承烈),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행 부호군 조심태(趙心泰), 교리 서배수(徐配修), 좌승지 이형원(李亨元), 가주서 이정운(李貞運), 기사관 이상황(李相璜)·김조순(金祖淳)이 차례

로 나아가 었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영남의 곡식을 지금 마땅히 북쪽으로 운반해야 할 것이다. 운반을 감독할 때 어사와 차원(差員) 가운데에서 편리함 여부를 경들은 각각 소견을 아뢰라.”라고 하였다. 이성원이 말하기를, “곡물을 배에 실어 보낼 때 도신은 다만 친비(親裨)만 파견하여 신칙하고, 수령과 차원이 각 고을에서 거행하는 것은 아마도 어사가 운반을 감독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사소한 주전(廚傳)의 폐단은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말하기를, “운반 감독은 막대한 정사입니다. 도신이 비록 직접 가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엄중 신칙하여야 하며, 따로 어사를 파견하여 주전의 폐를 끼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수령 가운데에서 자급(資級)과 경력이 있고, 기품과 힘이 있는 자를 뽑아서 운반 감독의 책임을 맡긴다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근의 수령 가운데 별도로 차원을 뽑아 정하여서 운반을 감독한다면 비록 운반을 영솔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제주(濟州)에서 곡식을 배로 운반할 때도 오히려 수령이 배에 타는데 북관에서 어떻게 달리 하겠는가? 또한 수령 가운데에서 차원을 정하여 배에 타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서배수가 말하기를, “유언호(兪彦鎬)·김치인(金致仁)에 대해 가율(加律)하라는 청을 삼사가 다투어 올렸으나 윤택받지 못했습니다. 아아, 유언호의 죄를 어찌 일시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임금의 마음에 송구스럽게 아랫사람에게 하유하였으나 힘써 소명(召命)에 항거한 것은 이미 신하의 명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연에 올라 전교를 받들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는데, 오늘 신하들이 능히 유언호의 죄를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조정에서 얼굴을 들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건대,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를 올문에 따라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대정현, 위리안치, 유언호, 주전.

❖ 乾隆 五十三年 戊申 十二月 二十三日 庚戌

- 金履正, 以刑曹言啓曰, 月前濟州人李顯大, 潛入宇賊荐棘之內, 受來換錢書札, 又受貞喆之書簡罪, 兩罪人, 保授主人等, 自本道捉致營獄, 嚴加究覈後狀聞事, 覆啓蒙允後今十月初十日發關, 而今已過限, 尙不查啓, 當該道臣, 爲先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2년(1788) 무신년 12월 23일(경술)

- 역적 김우진(金字鎭)에게 잠입하여 서찰을 받아온 제주(濟州) 사람 이현대(李顯大) 등을 조사하는 문제로 올린 형조의 계
- 김이정(金履正)이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몇 달 전 제주(濟州) 사람 이현대(李顯大)가 역적 김우진(金字鎭)이 위리안치된 곳에 몰래 들어가 환전(換錢)에 관한 서찰을 받아왔습니다. 또 조정철(趙貞喆)의 서간을 받아온 죄가 있습니다. 두 죄인은 주인(主人) 등을 보수(保授)하고 본도로부터 영옥(營獄)으로 잡아들여 엄히 구핵(究覈)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라고 복계(覆啓)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그 후 이번 10월 초 10일에 관문을 보냈으나, 지금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계(査啓)하지 않았습니다. 당해 도신(道臣)을 우선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현대, 김우진, 보수, 조정철.

1789年

(정조 13)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十一日 戊辰

○ 己酉正月十一日卯時, 上御熙政堂. 常參兼行次對入侍時, 左議政李性源, 右議政蔡濟恭, 行左參贊金華鎮, 兼工曹判書具允鉳, 戶曹判書徐有隣, 吏曹判書李埤, 漢城判尹李在簡, 禮曹判書沈豐之, 昌城尉黃仁點, 安春君煥, 行司直鄭昌聖·鄭好仁, 知訓鍊李柱國, 兵曹判書李文源, 知敦寧金尙集, 行副司直徐有防, 刑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徐有大·李獻慶, 江華留守尹承烈, 行副司直鄭昌順, 校理李太亨, 修撰金啓洛, 副修撰閔昌燮, 行都承旨具庠, 左承旨趙衍德, 右承旨朴天衡, 左副承旨洪仁浩, 右副承旨李書九, 同副承旨韓晚裕, 假注書趙台榮·白慶楷,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相璜, 持平李顯道, 掌苑別提李可運, 宣惠郎廳朴宗珪, 戶曹佐郎安秀民, 兵曹正郎李益運, 行四拜禮訖. …… 顯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烏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學條】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11일(무진)

□ 상참 및 차대 자리에서 지평 이현도(李顯道)가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기유년 1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상참에 차대를 겸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행 좌참찬 김화진(金華鎮), 겸 공조판서 구윤옥(具允鉳),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이조판서 이갑(李埤), 한성판윤 이재간(李在簡), 예조판서 심풍지(沈豐之), 창성위 황인점(黃仁點), 안춘군 옹(煥), 행 사직 정창성(鄭昌聖)·정호인(鄭好仁), 지 훈련 이주국(李柱國), 병조판서 이문원(李文源), 지 돈녕 김상집(金尙集), 행 부사직 서유방(徐有防),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이헌경(李獻慶), 강화유수 윤승렬(尹承烈), 행 부사직 정창순(鄭昌順), 교리 이태형(李太亨), 수찬 김계락(金啓洛), 부수찬 민창혁(閔昌燮), 행 도승지 구상(具庠),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우승지 박천형(朴天衡),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이서구(李書九), 동부승지 한만유(韓晚裕), 가주서 조태영(趙台榮)·백경해(白慶楷),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상황(李相璜), 지평 이현도(李顯道), 장원별제 이가운(李可運), 선혜낭청 박종규(朴宗珪), 호조좌랑 안수민(安秀民), 병조정랑 이익운(李益運)이 사배

례를 행하였다. <중략> 이현도가 말하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하는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현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十二日 己巳

- 洪仁浩,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靈巖郡楸子島島配罪人兪岳柱量移事, 舉條啓下矣. 兪岳柱, 順天府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羅將, 自楸子島執捉, 仍令押付于順天府配所, 何如? 傳曰, 以牙山量移.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12일(기사)

- 추자도(楸子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유악주(兪岳柱)의 양이(量移)에 관한 의금부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라도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유악주(兪岳柱)를 양이(量移)하라고 조목을 들어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유악주를 순천부(順天府)로 양이하되 이전의 죄목을 그대로 잇고 예에 따라 의금부 나장을 보내 추자도에서 붙잡아 그대로 순천부 배소로 압송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산(牙山)으로 양이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유악주, 도배, 양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十二日 己巳

- 己酉正月十二日卯時，上御熙政堂。晝講入侍，詣臺臺臣，同爲入侍時，知事徐有隣，特進官李秉鼎，參贊官韓晚裕，侍讀官李遇濟，檢討官徐配修，待教金祖淳，假注書白慶楷，記注官金鳳顯，記事官李相瓚，武臣白東浚，持平金鎔，正言韓啓玉，以次進伏訖。…… 啓玉曰，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么麼宦寺，交結士夫，終爲凶賊之根柢，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究厥罪惡，萬戮猶輕，情節未盡究覈，輿情莫不憤惋，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12일(기사)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단해 줄 것을 청하는 사간원의 계
- 기유년 1월 12일 묘시에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주강에 입시하고 대각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지사 서유린(徐有隣), 특진관 이병정(李秉鼎), 참찬관 한만유(韓晩裕), 시독관 이우제(李遇濟), 검토관 서배수(徐配修), 대교 김조순(金祖淳), 가주서 백경해(白慶楷),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상황(李相瓚), 무신 백동준(白東浚), 지평 김용(金鎔), 정언 한계옥(韓啓玉)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한계옥이 말하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한계옥.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十七日 甲戌

○ 己酉正月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性源, 右議政蔡濟恭, 左參贊金華鎮, 戶曹判書徐有隣, 漢城判尹李在簡, 行副司直鄭昌順, 兵曹判書李文源, 判敦寧金尙集, 行副司直徐有防·李秉模, 刑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徐有大·金思穆, 行都承旨金載瓚, 行副司直金持默, 行副護軍趙心泰, 副校理李魯述, 持平李聖輪, 右承旨朴天衡, 假注書徐有聞, 事變假注書劉師珮, 記注官金鳳顯, 記事官李相璜, 以次進伏訖. …… 上曰, 臺臣進前. 聖輪進前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實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學條】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17일(갑술)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올린 사헌부의 계

○ 기유년 1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한성판윤 이재간(李在簡), 행 부사직 정창순(鄭昌順), 병조판서 이문원(李文源), 판돈녕 김상집(金尙集), 행 부사직 서유방(徐有防)·이병모(李秉模),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김사목(金思穆), 행 도승지 김재찬(金載瓚),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행 부호군 조심태(趙心泰), 부교리 이노술(李魯述), 지평 이성륜(李聖輪), 우승지 박천형(朴天衡), 가주서 서유문(徐有聞), 사변 가주서 유사평(劉師珮),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상황(李相璜)이 차례로 나아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이성륜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 통하는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

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十九日 丙子

- 刑曹啓目, …… 又啓目, 戶曹小關僞造罪人濟州金鍾輔更推云云. 前後情狀, 節節痛惋, 更加各別嚴訊取服, 以爲如法勘斷之地爲白乎旆, 張漢錫段, 鍾輔誣引之狀, 旣已破綻無餘, 則別無更訊之端, 分揀放送, 何如? 判付啓, 依允爲旆. 金鍾輔段, 待拷訊限滿, 更良嚴刑取招爲良如教.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19일(병자)

- ☐ 위조죄인(僞造罪人) 제주(濟州)의 김종보(金鍾輔)를 다시 추고하는 건에 대한 형조의 계
- 형조의 계목(啓目)에, <중략> 또 계목에 이르기를, “호조가 조금 관여되어 있는 위조죄인(僞造罪人) 제주(濟州)의 김종보(金鍾輔)를 다시 추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후의 사정이 구구절절 아프고 한탄스러우니 다시 각별히 엄히 신문하여 자복을 받아내고, 법을 적용하여 단죄할 수 있도록 할 일입니다. 장한석(張漢錫)은 김종보가 거짓으로 끌어들인 사정이 이미 탄로났으니 따로 다시 신문할 단서가 없습니다. 분간하여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여 계하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으며, “김종보는 고문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 다시 엄히 형문하여 초사를 받으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김종보, 위조 죄인, 장한석.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一日 戊寅

- 持平崔重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新除授執義盧廷良時在全羅道南原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1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최중교(崔重敎)의 계
- 지평 최중교(崔重敎)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노정량(盧廷良)이 지금 전라도 남원(南原)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는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교.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二日 己卯

- 持平李聖輪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2일(기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 등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이성륜(李聖輪)의 계
- 지평 이성륜(李聖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성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三日 庚辰

- 持平李聖輪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3일(경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이성륜(李聖輪)의 계
- 지평 이성륜(李聖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조어(措語)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성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三日 庚辰

- 正言崔時淳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3일(경진)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최시순(崔時淳)의 계
- 정언 최시순(崔時淳)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四日 辛巳

- 持平崔重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4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최중규(崔重圭)의 계
- 지평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四日 辛巳

- 正言姜文會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措辭見上】
…… 答院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4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문회(姜文會)의 계
- 정언 강문회(姜文會)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증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강문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五日 壬午

- 持平崔重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5일(임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최중규(崔重圭)의 계
- 지평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五日 壬午

- 正言崔時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5일(임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시순(崔時淳)의 계
- 정언 최시순(崔時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증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시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七日 甲申

- 掌令趙星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7일(갑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조성규(趙星逵)의 계
- 장령 조성규(趙星逵)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성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七日 甲申

- 正言崔時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7일(갑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시순(崔時淳)의 계
- 정언 최시순(崔時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증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시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正月 二十八日 乙酉

- 以濟州牧使狀啓漂人問情事，傳于李書九曰，厚給衣糧，從願候風發送之意，令廟堂嚴飭，分付.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월 28일(을유)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표류인에 대해 보고한 장계에 대해 처리 방안을 지시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표류인에게 문정(問情)한 일을 보고한 장계(狀啓)에 대하여 이서구(李書九)에게 전교하기를, “옷과 식량을 넉넉히 주고 원하는 대로 순풍을 기다렸다가 떠나보내라고 묘당에서 엄중 신칙하고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표류인, 장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二日 己丑

- 韓晩裕, 以兵曹言啓曰, 因承政院啓辭, 邊將薦應薦不薦人, 令該曹察推事, 允下矣. 行副司直鄭一祥, 右參贊權導, 行副司直宋載經·趙宗鉉·李敬養, 敦寧都正黃槲, 全羅兵使沈堦, 濟州牧使李喆模, …… 咸從府使李周鳳, 俱爲應薦而不薦, 竝依定式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2일(기축)

- 변장(邊將)을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이들을 추고하고 문책하라고 건의한 형조의 계
- 한만유(韓晩裕)가 병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승정원 계사(啓辭)로 인해 변장(邊將)을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은 사람을 해조(該曹)에서 살펴 추고하도록 윤허하셨습니다. 행 부사직 정일상(鄭一祥), 우참찬 권도(權導), 행 부사직 송재경(宋載經)·조종현(趙宗鉉)·이경양(李敬養), 돈녕도정 황욱(黃槲), 전라병사 심성(沈堦),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 <중략> 함중부사 이주봉(李周鳳)은 모두 응당 천거해야 하나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정식(定式)에 따라 추고하고 문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천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九日 丙申

- 李儒敬,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漢人, 候風發送之意, 因傳教, 已爲行會矣. 待其發送狀啓來到, 令槐院撰出咨文, 別定禁軍, 騎撥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北京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9일(병신)

-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한인(漢人)을 떠나보낸 후 북경에 자문(咨文)을 보내도록 건의한 비변사의 계
- 이유경(李儒敬)이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표류해 온 한인(漢人)을 순풍을 기다렸다가 떠나보내라는 뜻을 전교에 따라 이미 통지하였습니다. 떠나보냈다는 장계가 오면 승문원에서 자문(咨文)을 지어내게 하여 별도로 금군을 기발(騎撥)로 정해 의주부(義州府)에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여 북경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³⁸⁰⁾

△ 주제어: 제주, 표류, 한인, 자문.

380) 《비변사등록》 정조 13년 2월 9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十日 丁未[丁酉]

- 禁府啓目, 旌義前縣監申大年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 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啓, 依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10일(정미[정유])

-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신대년(申大年)의 형추에 대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에 이르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신대년(申大年)의 원정(原情)에서 운운하고 문목(問目) 안의 사연에 범연스럽게 지만(遲晚)한다고 일컬으니 마땅히 형추할 것을 청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시종(侍從)을 역임하여 형추를 청하지 말라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에 계하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 신대년, 지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十六日 癸酉[癸卯]

- 以濟州牧使啓本，應資老人姓名馳啓事，傳于趙衍德曰，絕海之地，老人之事，有不可知，今日政加資下批，三懸鈴下送完伯，使卽申飭傳給，形止狀聞.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16일(계유[계묘])

- 제주(濟州)의 노인에게 가자(加資)하는 문제로 내린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계본(啓本)으로 응당 자급을 줄 노인의 성명을 치계한 일에 대하여 조연덕(趙衍德)에게 전교하기를, “외딴 바다에 있는 지방의 노인에 관한 일이니 알 수 없다. 오늘 정사에서 가자(加資)하도록 하비(下批)하고, 삼현령(三懸鈴)을 전라감사에게 내려보내 즉시 신칙하고 전급(傳給)한 후 형지를 장문(狀聞)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가자, 조연덕.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十七日 甲辰

○ 李在學啓曰, 漢城府郎廳來言, 濟州三邑獻民數請出矣,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17일(갑진)

□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를 내주겠다는 이재학(李在學)의 계

○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한성부 낭청이 와서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를 내겠다고 청하기에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 삼읍, 이재학, 민수.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十七日 甲辰

- 李祖承,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戊申年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17일(갑진)

- ☐ 제주(濟州) 삼읍의 민수(民數)를 입록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삼읍의 무신년 민수(民數)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예에 따라 입록(入錄)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 삼읍, 민수.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二月 三十日 丁巳

○ 掌令朴錡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2월 30일(정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박황(朴鎬)의 계

○ 장령 박황(朴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황.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七日 甲子

○ 掌令朴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7일(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박황(朴鎬)의 계

○ 장령 박황(朴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황.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七日 甲子

○ 正言李顯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7일(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이현도(李顯道)의 계

○ 정언 이현도(李顯道)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현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二日 己巳

- 義禁府啓目, 前大靜縣監張漢喆原情云云. 傳旨問目內辭緣, 泛稱遲晚,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除刑推議處, 仍爲照律爲良如教.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2일(기사)

-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한철(張漢喆)의 형추에 대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에 이르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한철(張漢喆)의 원정(原情)에서 운운하고 전지문목(傳旨問目) 안의 사연에 범연스럽게 지만(遲晚)한다고 일컬으니, 형추하여 사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에 계하하기를, “형추는 생략하고 의논하여 처리하고, 그대로 올문에 비추어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장한철, 지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二日 己巳

- 持平趙恪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新除授執義徐郁修，時在京畿抱川地，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曰，不允. 下諭事，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2일(기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조각(趙恪)의 계
- 지평 조각(趙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서옥수(徐郁修)가 지금 경기 포천(抱川)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각.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三日 庚午

- 禁府照目, 濟州前牧使洪仁默矣, 渠既按察一島, 則罪人防守之節, 固當另加嚴飭, 而宇鎮·貞喆通書京洛之狀, 不能登時摘發, 揆以紀綱, 極爲可駭, 雖與配所之官, 煞有間焉. 常時不能檢飭之罪, 在所難免, 以此照律罪, 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 私罪奉教依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3일(경오)

-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에 대한 조율 결과를 보고한 의금부 조목
- 의금부 조목(照目)에 이르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默)에 대한 것 입니다. 그가 이미 온 섬을 안찰(按察)하였으니 죄인 방수(防守)에 관한 절차는 마땅히 더욱 엄히 신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우진(金字鎭)·조정철(趙貞喆)이 서울에 편지를 보낸 상황을 당시 적발하지 못했으니 기강에 비추어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비록 배소(配所)의 관아와는 차이가 있지만 평상시에 검칙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죄를 조율하여 장(杖) 80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 3등을 빼앗되 사죄(私罪)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뢴 대로 하라는 전교를 받들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홍인묵, 김우진, 조정철.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四日 辛未

- 持平趙恪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設鞫得情, 夫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4일(신미)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조각(趙恪)의 계
- 지평 조각(趙恪)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각.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四日 辛未

- 正言尹悌東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朴聖泰, 時在忠清道定山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措辭見上】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4일(신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윤제동(尹悌東)의 계
- 정언 윤제동(尹悌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박성태(朴聖泰)가 지금 충청도 정산(定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제동.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五日 壬申

- 獻納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5일(임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윤행진(尹行晉)의 계
- 헌납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행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六日 癸酉

○ 掌令李柱延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6일(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이주연(李柱延)의 계
- 장령 이주연(李柱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주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六日 癸酉

- 獻納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6일(계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윤행진(尹行晉)의 계
- 헌납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행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八日 乙亥

- 掌令李柱延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8일(을해)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이주연(李柱延)의 계
- 장령 이주연(李柱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주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八日 乙亥

- 獻納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處置事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8일(을해)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윤행진(尹行晉)의 계
- 헌납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처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행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九日 丙子

- 掌令李柱延〈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9일(병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이주연(李柱延)의 계
- 장령 이주연(李柱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주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十九日 丙子

- 獻納尹行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19일(병자)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윤행진(尹行晉)의 계
- 헌납 윤행진(尹行晉)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처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행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二十日 丁丑

- 持平朴思機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院正言丁志元 · 姜文會, 時在京畿楊州地. 請玆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20일(정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박사기(朴思機)의 계
- 지평 박사기(朴思機)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원 정언 정지원(丁志元) · 강문회(姜文會)가 지금 경기 양주(楊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 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사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二十一日 戊寅

○ 掌令成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21일(무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성정진(成鼎鎭)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정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二十二日 己卯

- 掌令李柱延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22일(기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이주연(李柱延)의 계
- 장령 이주연(李柱延)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주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三月 二十六日 癸未

- 申耆,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張漢喆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厩立養之意, 敢啓. 傳曰, 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3월 26일(계미)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한철(張漢喆)의 체임 진상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신기(申耆)가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장한철(張漢喆)의 체임진상마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厩)에서 기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 전 대정현감, 장한철, 체임 진상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一日 丁亥

- 掌令成鼎鎭啓曰, 妖宦壽賢之締結, 一種嗜利之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일(정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성정진(成鼎鎭)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흥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一日 丁亥

- 正言丁志元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顯[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일(정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정지원(丁志元)의 계
- 정언 정지원(丁志元)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二日 戊子

- 己酉四月初二日辰時，上御熙政堂。抄啓文臣親試課講入侍時，右副承旨李書九，同副承旨申耆，假注書柳師模·洪樂敏，記事官李宗烈，記注官金鳳顯，原任提學李性源，一提學金鍾秀，檢校直提學徐有防，原任直閣金載瓚·徐鼎修，直閣李晚秀，率應製文臣韓致應等入就位，行四拜禮後，以次陞殿進伏訖。…… 朴思機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姜文會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2일(무자)

- 초계문신을 친히 시험하는 자리에서 대신들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고 건의함
- 기유년 4월 초2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초계문신에게 친히 과강(課講)을 시험하는 자리에 임시켰을 때 우부승지 이서구(李書九), 동부승지 신기(申耆), 가주서 유사모(柳師模)·홍낙민(洪樂敏), 기사관 이종렬(李宗烈),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원임제학 이성원(李性源), 일제학 김종수(金鍾秀),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원임직각 김재찬(金載瓚)·서정수(徐鼎修), 직각 이만수(李晚秀)가 응제(應製)한 문신 한치응(韓致應) 등을 데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수행한 후, 차례로 전(殿)에 올라 나아가 앞드렸다. <중략> 박사기(朴思機)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강문회(姜文會)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형문하게 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사기, 강문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四日 庚寅

- 濟州牧使狀啓, 橘果進上船漂流, 終至關封, 惶恐待罪事, 傳于金光默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4일(경인)

-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배가 표류하여 귤과(橘果)를 진상하지 못했다고 장계를 올림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장계로 귤과(橘果)를 진상하는 배가 표류하여 끝내 궐봉(關封)에 이르렀으니 황공하여 대죄하겠다고 하니, 김광묵(金光默)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귤과, 궐봉.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八日 甲午

- 掌令任希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許啞, 時在京畿振威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8일(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울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임희원(任希遠)의 계
- 장령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울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허질(許啞)이 지금 경기 진위(振威)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희원.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日 丙申

- 掌令任希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持平趙恪, 時在忠清道舒川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0일(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임희원(任希遠)의 계
- 장령 임희원(任希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지평 조각(趙恪)이 지금 충청도 서천(舒川)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임희원.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一日 丁酉

- 持平權中憲，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亟令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 答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1일(정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권중헌(權中憲)의 계
- 지평 권중헌(權中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권중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一日 丁酉

- 正言曹喜有,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獻納李周顯, 時在全羅道全州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1일(정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조희유(曹喜有)의 계
- 정언 조희유(曹喜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헌납 이주현(李周顯)이 지금 전라도 전주(全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희유.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一日 丁酉

○ 己酉四月十一日申時，上御重熙堂。左副承旨入侍時，左副承旨李書九，假注書李海隣，記注官李宗烈，記事官金鳳顯，原任提學吳載純，檢校直提學徐有防，原任直閣徐鼎修，直閣李晚秀，待教金祖淳，以次進伏訖。上曰，禮房承旨入侍。【出榻教】上曰，俄者所下吳鼎源處分傳教，還入，可也。上曰，檢校提學，何不入來乎？…… 檢校提學吳載純，追後進伏。上曰，卿本醇實，父在邇班，未嘗有些子欺隱之事。向來以掌試都事事，有所俯詢，而亦皆舉實仰奏，予庸嘉尙。今番吳鼎源之得參堂錄，果何委折也？…… 載純曰，臣只聞公議，稱其可合，故果有完圈矣。…… 載純曰，臣別無受人囑托之事。堂錄前日，偶到政院，與金光默，有所酬酢矣。…… 上曰，卿欲借金光默之口而言之，何也？卿須自陳也。載純曰，徐配修來見臣弟，亦稱鼎源之可合云矣。上曰，卿俄以金光默爲言，今又以徐配修爲言，極爲未安矣。堂錄取捨，必出於主張世道者之手，卿既博採物議，則又當以如此者之言取信，如金光默之塗說，徐配修之公誦，何足爲有無輕重，而信而不疑乎？雖以吳載紹言之，頃當賊勢熾盛，儲位孤危之時，一二宮僚，同心衛護，渠亦職參春坊，朝夕周旋，參聞諸論，而出直之日，輒與養厚及申大年輩，晝宵追逐，盃酒團欒，至以禁中所聞，一一漏通於賊徒，…… 至於申大年，則姓名昭載於明義錄中，凡爲今日廷臣者，孰無若浼之心？況守禦使則自己秉執，便是明義錄主人，其所嚴斥，宜倍他人，而反加吹噓，必欲湔滌，前後筵席，屢發此說，其意誠未可曉，故向來旌義之特除，亦是予微意也。…… 仍命書九書傳教曰，諺云，此筵難舞，政謂前都廳金履成事處分矣。再昨筭本，以受侮爲添引，故履成卽施譴罷之典。然又再送銓堂，更尋辭筭，其說又及於朝體，不得已加等勘律矣。…… 前都廳金履成，給牒敘用，仍任營建之役，仍令該曹口傳付軍職，牌招仕進。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1일(정유)

□ 김이성(金履成)을 변호한 오재순(吳載純) 등을 질책하고 재차 전교를 내림

○ 기유년 4월 11일 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이서구(李書九), 가주서 이해린(李海隣), 기주관李宗렬(李宗烈),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원임제학 오재순(吳載純), 검교 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원임직각 서정수(徐鼎修), 직각 이만수(李晚秀), 대교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방승지는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어

전에서 하교를 났] 임금이 말하기를, “아까 내린 오정원(吳鼎源)에 대한 처분 전교를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검교제학은 어찌가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검교제학 오재순(吳載純)이 추후에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본래 독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으로 근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조금도 속이거나 숨기는 일이 없었다. 지난번 장시도사(掌試都事)의 일을 물은 적이 있는데, 또한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기에 나는 가상하게 여겼다. 이번 오정원이 당록(堂錄)에 오른 것은 과연 무슨 곡절인가? <중략>”라고 하였다. 오재순이 말하기를, “저는 단지 공의(公議)가 합당하다고 한 말만 들었을 뿐이고, 과연 완권(完圈)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오재순이 말하기를, “저는 따로 타인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당록(堂錄) 전날 우연히 정원(政院)에 이르렀다가 김광묵(金光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김광묵의 입을 빌어 말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경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오재순이 말하기를, “서배수(徐配修)가 저의 아우에게 와서 오정원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아까는 김광묵이 말했다 하고, 지금은 또 서배수의 말을 하니 참으로 마땅치 않다. 당록의 취사(取捨)는 필시 세도(世道)를 주장하는 자의 손에서 나왔을 것이다. 경이 논의를 널리 했다면 또한 마땅히 이러한 말을 취해서 믿어야 했다. 그런데 김광묵의 도설(塗說), 서배수의 공송(公誦)을 어찌 유무경중(有無輕重)을 따지지 않고 의심 없이 믿었던 말인가? 비록 오재소(吳載紹)로 말하더라도, 요새 적세(賊勢)가 치성하여 세자의 지위가 외롭고 위태로운 때이니, 한 두 명의 궁료(宮僚)라도 한마음으로 위호(衛護)해야 마땅하다. 그 또한 춘방(春坊)의 직임에 참여한 이로서 아침저녁으로 주선하고 여러 논의를 듣는데, 출직(出直)한 날에는 윤양후(尹養厚) 및 신대년(申大年)의 무리와 함께 밤낮으로 단란하게 술을 마시고 껌안에서 들은 것을 날날이 적도(賊徒)에게 누설하였다. <중략> 신대년은 성명이 명의록(明義錄)에 분명하게 올라있는데, 범범하게 오늘날 정신(廷臣)이 되었으니 누군들 더럽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하물며 수어사(守禦使)는 스스로 잡은 것이니, 명의록 주인이라면 엄하게 배척하는 바가 타인보다 배나 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더욱 부추겨 씻어내려고 한 것이다. 전후 경연 자리에서 이 말을 계속 발설했는데도 그 뜻을 진실로 깨우치지 못하고 지난번 정의현감(旌義縣監)에 특별히 제수하였으니, 또한 이는 나의 어리석은 뜻이었다. <중략>”라고 하였다. 그대로 이서구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 “속담에 ‘이 곳에는 춤추기 어렵다[此筵難舞]’는 말이 있다. 바로 전

도청(都廳) 김이성(金履成)에 대한 처분이 이런 것이다. 그제 차자(箭子)에서 모욕을 받았다고 한 것을 끌어다 부쳤으므로 김이성을 즉시 견파(譴罷)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또 전당(銓堂)에 보내고 다시 차자의 말을 살펴보고, 조정의 체모에 비춰보니 등급을 더 높여 감죄(勘罪)해야 할 상황이다. 〈중략〉 전 도청 김이성에게 직첩을 돌려주고 서용하여 영건(營建)하는 역(役)에 잉임하라. 그리고 해조(該曹)가 구전으로 군직에 부쳐서 패초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였다. 물러날 것을 명하자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 나왔다.

△ 주제어: 정의현감, 김이성, 오재순, 신대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二日 戊戌

- 正言曹喜有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2일(무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조희유(曹喜有)의 계
- 정언 조희유(曹喜有)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희유.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三日 己亥

- 全羅道幼學朴必元·趙璣·安衡七 …… 鄭永祚等疏曰, 伏以禋享俎豆, 寔出於士林尊賢之誠, 而頒降恩額, 允合於昭代尙德之義矣. 從古朝家賜額之典, 厥或以道學之名世, 厥或以功德之及民, 厥或以名節之表異, 豈不以樹風聲裨世教, 大本實在是歟? 乃若故判中樞府事贈諡貞武公臣奇虔, 兼此三者, 垂範後人, 建院妥靈, 今幾百年, 而尙未蒙華額之揭, 是固朝家之欠典, 而其爲公議之抑鬱, 當如何哉? 臣等茲敢不避猥越, 冒瀆崇聽, 惟聖明裁察焉. 仍伏念, 貞武公臣奇虔, 卽國朝名臣之最著者, 而世所稱生六臣之一也. …… 其出宰延安也, 府有池產鮒, 弊及小民, 虔, 居官六載, 未嘗食鮒. 其牧濟州也, 見州民採鮒之苦, 平生不啗鮒, 且耽羅舊俗, 不葬其親, 死輒委之於壑, 虔使備棺槨, 教以竊埋, 州之葬其親, 自此而始, 一境歎服, 教化大行. …… 故相臣金堉撰海東名臣錄, 別立虔傳而表揚之, 耽羅誌亦備述其居官時嘉政遺化, 而至今立祠祀之. …… 伏乞聖明, 軫百年未遑之闕典, 追世祖贈諡之德意, 煥賜恩額, 昭揭寵章, 以光聖德, 以幸斯文焉. 答曰, 省疏具悉. 疏辭下該曹稟處.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3일(기해)

- 기건(奇虔)을 향사하는 서원에 대해 사액의 은전을 청하는 전라도 유림의 상소
- 전라도 유학 박필원(朴必元)·조발(趙璣)·안형칠(安衡七) 〈중략〉 정영조(鄭永祚)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정성스러운 제사는 실로 사람이 현자(賢者)를 존숭하는 정성에서 나오니, 사액을 내려주는 것은 시대를 밝히고 덕을 숭상하는 의리에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부터 조정에서 사액해 주는 은전은 도학(道學)으로 세상에 명성이 있거나, 혹은 공덕이 백성에게 미쳤거나, 혹은 명예와 절조가 도드라지는 경우에 시행되었습니다. 어찌 문교를 세워 세상 교화를 돕지 않고서 대본(大本)이 여기 있겠습니까? 고(故) 판중추부사 증시(贈諡) 정무공(貞武公) 기건(奇虔)은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으로, 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 서원을 세워 모신 것이 지금 거의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액의 은전을 받지 못했으니 참으로 조정의 흠결이고, 공의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바이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이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번거로움을 끼치는 바이니 오직 성명(聖明)께서 살펴 판단해 주십시오. 정무공(貞武公) 기건은 국조명신(國朝名臣) 중 가장 드러난 분으로, 세상에서 칭하는 생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중략〉 연안(延安) 수령으로 나갔을 때 연안부에 연못에서 잉어를 길렀는데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자, 기건은 6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잉어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주목(濟州牧)에 부임해서는 주민들이 전복을 캐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고 평생 전복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탐라(耽羅)의 옛 풍속이 부모를 장사 지내지 않고 죽은 다음 골짜기에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건은 관곽을 마련하게 하고 구덩이를 파서 매장하는 것을 가르쳤으니, 고을에서 부모를 장사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온 경내가 탄복하고 교화가 크게 행해졌습니다. 〈중략〉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堧)이 찬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별도로 건전(虔傳)을 마련하여 표양(表揚)하였고, 《탐라지(耽羅誌)》 또한 관직에 있을 때의 좋은 정사와 교화를 갖추어 서술해 놓았으며 지금까지 사우를 세워 향사하고 있습니다. 〈중략〉 옆드려 바라건대 백년 동안 은전이 미치지 못한 것을 세조(世祖)가 시호를 내린 큰 뜻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액하는 은전을 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표창을 밝게 내걸게 해 주십시오. 이로써 성덕이 빛나고 사문(斯文)에는 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상소를 해조(該曹)에 내려보내 품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탐라, 탐라지, 기건, 정무공, 사액.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七日 癸卯

- 掌令成鼎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7일(계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성정진(成鼎鎭)의 계
- 장령 성정진(成鼎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정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七日 癸卯

- 同諫金復休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命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7일(계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 김복휴(金復休)의 계
- 사간 김복휴(金復休)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청컨대 노가 된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복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八日 甲辰

- 傳于李敏采曰, 所犯雖極無狀, 曹學臣既敘用, 濟州牧定配罪人具純, 出陸量移事, 分付.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8일(갑진)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구순(具純)을 양이(量移)하라는 전교
- 이민채(李敏采)에게 전교하기를, “범한 바가 비록 매우 추악하나 조학신(曹學臣)은 이미 서용했으니,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된 죄인 구순(具純)을 육지로 나와 양이(量移)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구순, 정배, 양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八日 甲辰

- 李敏采,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減死定配罪人具純, 出陸量移事, 命下矣. 具純, 全羅道長城府出陸量移, 而仍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 自濟州牧執捉, 仍令押付于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8일(갑진)

- 제주목(濟州牧)에 정배되었던 죄인 구순(具純)을 전라도 장성부로 양이(量移)한다는 의금부의 계
- 이민채(李敏采)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면하고 정배된 죄인 구순(具純)을 육지로 나와 양이(量移)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순을 전라도 장성부(長城府)로 출륙(出陸)하여 양이하되, 이전 죄목 그대로 예에 따라 의금부 서리를 보내 제주목(濟州牧)에서 붙잡아 배소로 압송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구순, 장성부, 출륙, 양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十九日 乙巳

- 己酉四月十九日卯時，上御誠正閣。召對入侍，詣臺臺臣同爲入侍時，參贊官李敏采，侍讀官韓光植，檢討官朴奎淳，閣臣李晚秀，假注書李海隣，編修官曹亨壽，記注官金鳳顯，持平權中憲，正言沈鏞，以次進伏訖。…… 中憲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19일(을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권중헌(權中憲)이 건의함
- 기유년 4월 19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소대(召對)에 입시하고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참찬관 이민채(李敏采), 시독관 한광식(韓光植), 검토관 박규순(朴奎淳), 각신 이만수(李晚秀), 가주서 이해린(李海隣), 편수관 조형수(曹亨壽),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지평 권중헌(權中憲), 정언 심집(沈鏞)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권중헌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권중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二十日 丙午

○ 金思穆，以備邊司言啓曰，前因部將金益喆所懷，島中平役廳及四苦役之弊，往復該牧，論理狀聞後稟處之意，覆啓分付矣。卽見全羅前監司沈頤之狀啓，則枚舉濟州前牧使李命俊牒報，以爲本州四役之苦，實爲島民之弊，而當初平役之設廳，專爲四役之例下，行之已久，則今以募民收米，謂之偏苦，乃有革罷之議，而四般苦役，俱是不可一日無者，則革罷之後，其將歸屬何處乎？顧今矯救之策，莫若仍其舊貫，減其冗食，隨其苦歇，務歸節約。而就其收米言之，一民之當納十斗，初已過重，依癸未例減定八斗，春秋分捧，以爲息肩之道，以例下言之，牧子鮑作之前後添給，轉至二十二斗，視他軍保之例，則濫矣。依辛丑以前例，以十六斗減數上下，山馬牧子，爲役稍歇，而以四斗，轉爲十四斗者，亦涉冗費，減其六斗，定以八斗，牛島牧子，均是一般牧子，四斗給料，既在年久，則到今永減，實爲可矜，仍前置之。查漢遺軍，自是辛丑創始，給料者爲役，不至四苦之比，就其公下中稍濫處，斟酌損益，從便助給，則亦無向隅之嘆。軍丁代頃之規，役米出納之節，專在該牧，禁飭操切，俾有實效，則庶可爲一分救弊之道，而海島事情，終難瞭然，更問該牧，永爲定式，實合事宜，竝請令廟堂稟處矣。海外事情，雖難遙度，今以金益喆所懷，參互道守臣之所論，則庶可領略其一二。蓋本島，無公用劃給，如陸邑儲置之例，故諸般公下，責出於民役。初則收布以用，往在戊午，以其有弊，罷收布而創收米，此所以爲平役廳，而成節目啓下者也。所謂四苦役，本是渠輩身役，而爲役最苦，故吏輩之欲免者，納米於官，永作遊民，此爲平役廳收米之本也。今以納米者之避苦趨歇，遽有革罷之論，則公下，將無區處之道，不得不更有斂民之舉，眞所謂祛弊生弊，反不如仍舊之爲得也。目下蘇救之策，惟在於四役，則擇其富實，使貧窮之民，舉免偏苦之患，上下則量役苦歇，使疲羸之類，均被霑溉之效而已。依前牧使李命俊所陳，復用癸未減捧之例，十斗當納者，減爲八斗，而春秋分捧，則庶可爲息肩之道。斗數既減，則需用，亦當隨減，然後可無狼狽之患，四苦役應食之類，辛丑加給之數，一竝收還，以補其數者，似爲目下一分釐弊之道。而至於代頃軍保，收捧役米之際，許多弊端之嚴防痛革，專在本牧，操束吏輩，不敢容奸而已。使該牧使，依此成節目施行，而或有窒礙難便之端，更爲往復本司，從長釐正之意，竝爲分付，何如？傳曰，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20일(병오)

- 제주(濟州)의 전 목사 이명준(李命俊)의 첩보(牒報)에 근거하여 제주의 평역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쌀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비변사의 계

○ 김사목(金思穆)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앞서 부장(部將) 김익철(金益喆)의 소회(所懷)로 인하여 섬 안 평역청(平役廳) 및 네 가지 고역(苦役)의 폐단을 당해 목사(牧使)와 협의하고 이치를 논하여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겠다고 복계하고 분부하였습니다. 전 전라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를 보면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의 첩보(牒報)를 하나하나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본 고을 네 가지 역의 고됨은 실로 섬 백성들의 폐단이 됩니다. 당초 평역청의 설치는 오로지 네 가지 역을 위해 예하(例下)하는 것으로서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을 모집하여 쌀을 거두는 것을 치우친 괴로움이라 하여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 네 가지 고역은 모두 하루도 없어서는 아니 될 일로서 폐지한 뒤에 어느 곳에 귀속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시정 책은 예 그대로 두되 쓸데없이 먹는 것을 감축하고 그 고되고 수월함에 따라 절약에 힘쓰는 것만 못합니다. 쌀 거두는 일로 말하면 한 백성이 10두를 바쳐야 하는 것은 애초에 과중한 일입니다. 계미년의 예에 의하여 8두로 감축하고 봄·가을로 나누어 수봉(收捧)하는 것이 힘을 덜어주는 방도입니다. 예하(例下)로 말하면 목자(牧子)와 포작(鮑作)에게 앞뒤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23두에까지 이르니 다른 군보(軍保)의 예와 비교하면 지나칩니다. 계축년 이전의 예에 의하여 16두로 수를 감하여 지출하고 산마목자(山馬牧子)는 역이 좀 수월하나 4두를 14로 한 것은 역시 쓸 데 없는 비용이니 6두를 감하여 8두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도(牛島)의 목자도 다 같은 일반 목자인데 4두의 요(料)를 지급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어서 이제와서 아주 감한다는 것은 실은 가없는 일이니 전처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답한(沓漢)과 유군(遺軍)은 곧 신축년에 창설된 것으로서 요를 지급받는 자가 역을 하는데 네 고역에 견줄 일이 아니니 그 공적인 지출 가운데 좀 지나친 곳을 참작하여 덜거나 보태어 편의에 따라 도와주면 역시 별을 보지 못한다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군정(軍丁)의 탈을 대신하는 규례와 역미(役米)를 출납하는 일은 오로지 당해 목사가 금지하고 조절해서 실효가 있게 해야만 조금이나마 폐단을 시정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가운데의 섬 사정을 분명히 알기가 어려우니 다시 당해 목사에게 물어 규칙으로 영구히 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겠습니다.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밖 사정을 비록 멀리에서 헤아릴 수 없으나 지금 김익철의 소회와 도신과 수신(守臣)이 논한 바를 참고하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와 둘은 대체로 본도에는 공용(公用)을 그어주는 일이 물 고을의 저치례(儲置例)처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하(公下)를 민역(民役)에서 나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베를 거두어 사용하였으나 지난 무오년에 폐단이 있었으

므로 베 거두는 일을 폐지하고 쌀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평역청을 설치하게 되었고, 절목을 만들어 계하한 이유입니다. 이른바 네 가지 고역이란 본래 그들의 신역(身役)으로서 역이 가장 고됩니다. 그러므로 이속(吏屬)으로서 면하려는 자가 관에 쌀을 바치고 유민(流民)이 되니 이것이 평역청에서 쌀을 거두게 된 장본(張本)입니다. 지금 쌀을 바치고 고역을 피하여 수월한 역에 나아가는 일에 갑자기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공하를 조처할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정 이를 일러한 폐단을 제거하였으나 한 폐단이 생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예대로 두는 것만 못합니다. 목하 폐단을 구제할 방법은 오직 네 가지 역에 있습니다. 부(富)하고 실한 자를 택하여 가난하고 궁한 백성에게 지나치게 고된 근심에서 면하게 하고 지출은 역의 고되고 수월함을 헤아려 허약한 부류들이 고르게 혜택을 입는 효과가 있게 할 뿐입니다. 전 목사 이명준의 아뢰 바에 의하여 다시 계미년에 경감하여 수봉한 예를 인용하여 10두 바쳐야 할 것을 8두로 감하되 봄·가을로 나누어 수봉하면 아마도 힘을 덜어주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斗]의 수를 감축하면 수용도 따라서 감축해야 낭패할 우려가 없습니다. 네 고역에서 먹어야 할 부류로부터 신축년에 더 지급한 수를 모두 환수하여 그 수를 보충하면 조금이라도 폐단을 시정하는 방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군보(軍保)의 탈을 대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역미를 수봉할 즈음에 허다한 폐단을 엄격히 막고 개혁하는 일은 오로지 본 목사에게 있으니 이속들을 단속하여 감히 간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게 할 뿐입니다. 당해 목사에게 이 절목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혹 장애가 있어 불편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본사와 협의하고 좋은 방도로 시정하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도, 전 목사, 이명준, 심이지, 평역청.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二十日 丙午

○ 己酉四月二十巳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李性源, 左參贊金華鎮, 戶曹判書徐有隣, 兵曹判書鄭好仁, 吏曹判書李埤, 禮曹判書李在簡, 知中樞府事李柱國, 行副司直鄭民始, 漢城判尹李文源, 行副司直金尙集 · 徐有防, 刑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徐有大 · 李漢豐, 開城留守李致中, 行副司直李獻慶, 江華留守尹承烈, 行副司直金持默, 司諫金復休, 掌令成鼎鎮, 行左承旨金思穆, 假注書沈能迪, 事變假注書金膺著, 編修官曹亨壽, 記注官金鳳顯, 以次進伏訖. …… 鼎鎮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學條】 …… 復休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學條】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20일(병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기유년 4월 20일 사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 ·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이조판서 이갑(李埤), 예조판서 이재간(李在簡), 지중추부사 이주국(李柱國), 행 부사직 정민시(鄭民始), 한성판윤 이문원(李文源), 행 부사직 김상집(金尙集) · 서유방(徐有防),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 · 이한풍(李漢豐), 개성유수 이치중(李致中), 행 부사직 이헌경(李獻慶), 강화유수 윤승렬(尹承烈),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사간 김복휴(金復休), 장령 성정진(成鼎鎭), 행 좌승지 김사목(金思穆), 가주서 심능적(沈能迪), 사변 가주서 김응저(金膺著), 편수관 조형수(曹亨壽),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앞드렸다. <중략> 성정진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중략> 김복휴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성정진, 김복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二十二日 戊申

- 正言姜文會，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答院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22일(무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강문회(姜文會)의 계
- 정언 강문회(姜文會)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강문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二十七日 癸丑

- 掌令申匡堯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司諫許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27일(계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신광요(申匡堯) 등의 계
- 장령 신광요(申匡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 허질(許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의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신광요, 허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四月 二十九日 乙卯

○ 己酉四月二十九日辰時，上御誠正閣。都承旨入侍時，行都承旨金光默，假注書金羲淳，編修官曹亨壽，記注官金鳳顯，以次進伏訖。…… 秉鼎曰，臣有滿腔悲憤之忱，而軍銜陳章，猥越是懼，尙此泯默，今適登筵，敢此仰達矣。…… 臣愚死罪，我殿下於宇·偉·醫媼，則雖爲姑息之仁，而大違於刑一懲萬之義。從此常憲不明，人心狃安，殆不知王法之可畏，作逆之必誅，雖謂之亂臣賊子，其將接跡而起，可也。如是而凶徒顧惜之習，何以遏之，盤結之勢，何以破之乎？伏願殿下，廓揮乾斷，夬施典章，以復一天之讎，以洩舉國之憤焉。上曰，宇鎮，非但妖惡忒甚，聞發配時，過柳川後討食而去云，此豈可以人責之耶？時偉，則自是凶頑，自處戚里，虛張聲勢，猶屬薄物細故，而雖以諱慶一事言之，渠則雖曰無證，而以渠心跡，昭然無疑，而但挈來，則渠必限死抵賴，杖斃漫漶，極爲可慮，予豈一分惜之而不思處分乎？果欲移配濟州，而頃日筵中，有以嚴鞫齊請之時不可移配之論，故止之矣。……

❖ 정조 13년(1789) 기유년 4월 29일(음묘)

□ 김우진·조시위 등을 다시 심문하여 처단하라는 대신들의 계

○ 기유년 4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가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김광묵(金光默), 가주서 김희순(金羲淳), 편수관 조형수(曹亨壽),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병정(李秉鼎)이 말하기를, “저는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군함(軍銜)을 띠고 아뢰입니다. 외람될까 두려워 지금껏 조용히 있었으나 지금 마침 경연에 올랐으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뢰고자 합니다. <중략> 저는 죽을 죄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하께서 우(宇)·위(偉)·의원(醫員)·유온(乳媼)에게 내리신 것은 비록 고식지인(姑息之仁)은 되겠지만 한 사람을 처단하여 많은 이를 징계하는 의리에는 크게 어긋납니다. 이에 따른다면 상헌(常憲)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인심은 해이해질 것이며, 왕법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며 역적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어 비록 난신적자(亂臣賊子)라도 장차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흉악한 무리를 돌아보고 아까워하는 습속을 어떻게 없애며, 결탁한 세력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전장(典章)을 흔쾌히 허락하여, 불구대천의

원수에 보복하고 온 나라가 울분을 씻어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우진(金字鎭)은 요악(妖惡)할 뿐만 아니라 배소로 보낸다는 것을 들었을 때, 유천(柳川)을 지난 후 먹을 것을 찾고 갔다 한다. 이 어찌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꾸짖겠는가? 조시위(趙時偉)는 흉악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척리(戚里)를 자처하면서 허장성세를 하였으니, 하찮거나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휘경(諱慶) 한 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그는 비록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 심증은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잡아오면 그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불복할 것이고, 장폐(杖斃)하여 말을 얼버무릴 것이 매우 염려하였다. 내 어찌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처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과연 제주(濟州)로 이배(移配)하고자 하였으나 지난날 경연 중 엄히 국문하라고 일제히 청할 때 이배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멈춘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이배, 김우진, 조시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五日 辛酉

- 己酉五月初五日辰時，上御熙政堂。抄啓文臣親試課講入侍時，左副承旨申耆，假注書柳師模，編修官曹亨壽，記注官金鳳顯，以次進伏訖。…… 掌令李晚秀曰，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爛熳和通之狀，渠既明白納招，則豈可一曰容貸於覆載之間乎？今此酌處之命，雖出好生之德意，而三尺至嚴，不可島縣爲奴而止。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出擧條】……。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5일(신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기유년 5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초계문신에게 과강(課講)을 친히 시험하는 자리에 입시켰을 때 좌부승지 신기(申耆), 거주서 유사모(柳師模), 편수관 조형수(曹亨壽),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옆드렸다. <중략> 장령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만수.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六日 壬戌

- 趙衍德, 以備邊司言啓曰, 前大靜縣監朴尙春北道弊瘼上疏覆啓批旨內, 每於本道邊倅事, 欲一詢問定式而未果. 在前則銓官, 猶多恢公之人, 故間有爲官擇人之效, 近來反是, 了了武弁有勢閥者之差送北邊者, 卿等果見之乎? 吏才雖不關於勢閥, 而其慎前程顧身名, 必勝於迫年限至單寒之類. 此後本道邊地守令武臣窠, 別樣擇差, 必令準瓜, 而屢考居最, 間無貶題, 則直陞防禦, 著而爲式似好, 而自某某岐出送, 方可謂擇差乎? 連上準瓜陞擬一款, 亦果何如乎? 卿等問于銓官·武將, 仍具意見論理, 指一草記稟處事, 命下矣. …… 自今以後, 一遵古制, 必以文武之有履歷有地望者, 另擇交差, 輒準瓜限, 而治績之超出等夷者, 令道臣別具狀聞, 特加擢用, 則各自奮礪, 不至謀避. 以此定式, 俾有實效, 何如? 傳曰, 當初防禦直擬, 非不知此多彼寡. 以七窠防禦, 雖欲議擬於本道邊地, 猶有多寡之別者乎? 然嚴其考績, 則連上而準瓜者絕罕, 定以某岐, 則文武, 當間差或分差故耳. 今見收議, 諸說之矛盾, 俱有所據, 此等事, 不必務求更張之效, 惟在銓曹仍舊貫潤色變通之如何, 後日次對時, 令吏判指一稟處. 萬一依前糊塗, 焉用銓長爲哉? 以此嚴飭, 可也.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6일(임술)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이 올렸던 상소를 기반으로 변장을 차임하는 방도에 대해 건의한 비변사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이 북도의 폐막을 상소하여 복계(覆啓)한 것에 대한 비지(批旨)에 이르기를, ‘매번 본도 변방 수령의 일로 한번 물어서 규식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 이전에는 전관(銓官)이 도량이 넓고 마음이 공정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간혹 관직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이와 정반대이다. 무변(武弁)으로서 세벌(勢閥)이 있는 자를 북도 변방으로 차송(差送)하는 것을 경들을 과연 보았는가? 이재(吏才)가 비록 세벌과 관계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를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연한(年限)이 거의 다 된 단한(單寒)보다는 낫다. 이후로는 본도 변방 수령 중 무신을 임명하는 자리에는 특별히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여 반드시 기한을 채우도록 하고, 여러 차례의 고과(考課)에서 최(最)를 차지하고 그 사이에 폄제(貶題)된 일이 없으면 곧바로 방

어사로 승진시킬 것을 드러내어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어찌 아무아무 갈래를 거쳐 보낸 뒤에야 비로소 가려서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과에서 연거푸 상등이고 기한을 채운 사람을 승진시켜 의망(擬望)하는 한 가지 사안은 과연 어떠한가? 경들이 전관(銓官)과 무장(武將)에게 물어 의견을 갖추어 이치를 논하여 초기하여서 품처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앞으로는 한결같이 고제를 좇아서 반드시 문무관으로서 이력이 있고 지망(地望)이 있는 자를 각별히 가려 뽑아서 교대로 차임하고 임기를 채우고 치적이 월등한 자를 도신에게 별도로 장문(狀聞)을 갖추어 특별히 발탁하여 쓰게 한다면 저마다 저절로 분발하고 회피를 도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규칙을 정하여 실효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당초에 방어사로 곧바로 올린 것은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적음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곱 자리의 방어사를 비록 본도의 변방 지역에 의망하려고 의논하고자 하나 오히려 많고 적은 구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과의 성적을 엄격하게 하면 연거푸 상등을 차지하고 임기를 채운 자는 매우 드물 것이다. 아무 갈래로 정하는 것은 문관과 무관을 당연히 사이사이에 차임하거나 나누어 차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수의(收議)를 보니 여러 설이 모순(矛盾)되어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런 일은 경장(更張)의 효과를 힘써 추구할 필요는 없다. 오직 전조에서 예전대로 윤색하고 변통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뒷날 차대 때에 이판(吏判)에게 하나를 가리켜 품처하게 하라. 만일 이전대로 흐리멍덩하다면 어디에 전장(銓長)을 쓰겠는가? 이것으로 엄중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³⁸¹⁾

△ 주제어: 대정현감, 박상춘, 편제, 고과, 무변.

381) 《비변사등록》 1789년(정조 13년) 5월 6일 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十二日 戊辰

- 洪仁浩, 以義禁府言啓曰, 金甲島島置罪人趙時偉, 姑先移配濟州, 施以加棘之典事, 命下矣. 罪人時偉, 卽爲發遣府都事, 自金甲島執捉, 仍令押送于濟州牧, 與地方官, 眼同荐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12일(무진)

- ☐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이배하라는 임금의 명에 따라 제주목(濟州牧)에 압송하고 위리안치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금갑도(金甲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우선 제주(濟州)로 이배하고, 가극(加棘)하는 형을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죄인 조시위에 대해 즉시 의금부 도사를 보내 금갑도에서 붙잡아 그대로 제주목(濟州牧)에 압송하고, 지방관과 아울러 힘을 합쳐 위리안치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목, 조시위, 이배, 가극.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十二日 戊辰

○ 己酉五月十二日戊時，上御誠正閣。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洪仁浩，假注書鄭履綏，編修官曹亨壽，記注官金鳳顯，以次進伏訖。……又命書傳教曰，如蛾如人，似勘似斬，寧有如許刑政乎？非不知早已處斷，而不鞫則無以正其律，鞫必先請證質，國言豈有證乎？然則無出於徑斃與還配，此所以尙今拖到不決者，衆口如沸之國言，雖難的指參聽，以渠之地處，得聞此說，卽此可謂斷案。爲人臣子，負此罪名，偃息於橫目之列，以尋常島置，殆作究竟然者，自有刑政以來所未聞，如是之際，疏章之堆集公車者，效顰者自歸塞責，逞私者若將網打，居然成一副當偏戰，一時偉之害，胡至此甚？論以生道殺人之義，渠之所犯，雖在可東可西之間，斷當付渠司敗，快正典刑，以贖無累之許多世臣，況上累下害，公私受病，乃至於未暇救藥者乎？此一款，比之本事，猶屬總功之察，其爲駭憤亦大矣。大抵不良不逞，自犯罔赦，而以國啓之未見許，因仍句勘於編配，終有乖於刑政。金甲島島置罪人趙時偉，姑先移配濟州，施以加棘之典。雖欲拿鞫，豈係於島棘與否？前此島棘處分，輒皆請寢，反涉如何？此意令該府知悉。敏采·仁浩，同爲起伏而奏曰，卽伏見島置罪人時偉濟州加棘處分，臣等實不勝愕眙抑塞之至。惟彼時偉，卽覆載難容之元惡大憝，臣民必報之至冤深讎，則設鞫得情，夫施典刑，不容小緩，而今者加棘之命，有若遽加勘斷者然，揆以刑政，寧有是耶？況此處分，在於今日，三司爭執，亦無其路，臣等死罪，不能無憾於天地之大也。臣等職忝出納，決難奉承，敢此仰達矣。上曰，爾等何敢發口乎？斯速頒布，可也。……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12일(무진)

□ 조시위(趙時偉)를 제주(濟州)로 이배하고 가극(加棘)하라는 전교를 내림

○ 기유년 5월 12일 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켰을 때 동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정이수(鄭履綏), 편수관 조형수(曹亨壽), 기주관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또 명하여 쓰게 하고 전교(傳敎)하기를, “처단한 듯하기도 하고 용서한 듯하기도 하여 감죄(勘罪)를 한 듯하기도 하고 감죄를 아낀 듯하기도 하니, 어찌 이런 형정(刑政)이 있단 말인가? 일찌감치 이미 처단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문을 하지 않고서는 율(律)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고 국문을 하자면 반드시 먼저 증거를 청할 것인데 나라 사람들의 말이 어찌 증거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지레 죽

어버리게 만들거나 환배(還配)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지금까지 끌여오면서 결단하지 못한 이유이다. 비등하는 나라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었으리라고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으나, 그의 처지로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단안(斷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하로서 이런 죄명(罪名)을 지고서 산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살고 있는데도 평범하게 섬에 안치한 것을 가지고서 거의 법을 끝까지 시행한 것으로 여기니, 형정이 있는 이래로 들어보지 못한 바이다. 이러한 즈음에 승정원에 쌓인 소장(疏章)으로 말하면 그중에 남이 올리니까 덩달아 올린 자들은 자연 책임이나 떼우려는 데로 돌아가고, 사감(私憾)을 풀려는 자들은 마치 일망타진하려는 듯이 하여, 현연히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하고 있다. 일개 조시위(趙時偉)의 해가 어찌하여 이렇게 심한 데까지 이르렀는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죄인을 죽이는 뜻으로 논하건대 저의 범죄가 비록 처단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단연코 형조로 보내어 시원하게 전형을 바꾸어 무죄한 많은 세신(世臣)들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위로 누를 끼치고 아래로 해를 끼쳐 공사(公私)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약으로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한 건(件)은 본래의 사건에 비하면 오히려 큰일은 버려두고 작은 일을 따지는 데 해당하니 놀랍고 분통한 마음 또한 크다. 대체로 불량(不良)하고 불령(不逞)한 자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는데도 국청(鞠廳) 열라는 계사(啓辭)가 윤허를 받지 못했다 하여 그대로 구차하게 편배(編配)로 감죄한다면 끝내 형정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금갑도(金甲島)에 안치한 죄인 조시위를 우선 제주로 이배(移配)하여 가극(加棘)의 전형을 실시하라. 앞으로 비록 잡아다가 국문하고자 하더라도 섬에 안치하여 가극한 여부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에 앞서 섬으로 귀양보내어 가극하는 처분에 대해 번번이 정지하기를 청했었는데 도리어 어쩔지 모르겠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민채(李敏采)·홍인호가 함께 일어나 부복하고 아뢰기를, “섬에 안치한 죄인 조시위를 제주(濟州)로 옮기고 가극하라는 처분을 지금 보고 저희는 실로 깜짝놀라 기가 막혔습니다. 저 조시위는 천지간에 용납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악인으로 신민(臣民)이 반드시 보복해야 할 지극히 원한이 있는 원수입니다. 그러니 국청을 설치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전형(典刑)을 시원하게 베푸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극하라는 명은 갑자기 죄를 더 심리해서 처단한 듯하니, 형정에 비추어보면 어찌 이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처분이 오늘 있었으니 삼사(三司)가 쟁집할 길이 없어 천지에 대해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출납의 자리에 있으므로 결코 받들기 어렵기에 감이 이와 같이 우러러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있는가? 속히 반포하는 게 옳다.”라고 하였다. <하락>.

△ 주제어: 제주, 이배, 금갑도, 조시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二日 戊寅

- 判義禁韓光會，同義禁尹師國等疏曰，…… 不意向者，有金甲島島置罪人時偉，移置濟州牧加棘之命，臣等相顧愕然，憂憤益激。…… 伏願聖明，俯循群情，廓揮乾斷，亟寢時偉移置之命，竝與宇鎮·醫·媼，一體拿來，嚴鞫得情，明正典刑，使王章伸而亂賊懲焉。臣等無任屏營之至。 答曰，省疏具悉。勿煩。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2일(무인)

- 판의금부사 한광희(韓光會) 등이 상소하여 조시위(趙時偉)의 제주목(濟州牧) 이배 조치를 거두라고 청함
- 판의금 한광희(韓光會), 동의금 윤사국(尹師國) 등이 상소하기를, “〈중략〉 뜻밖에 지난번 금갑도(金甲島) 도배(島配)된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제주목(濟州牧)에 이배하여 가극(加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돌아보며 경악했고 울분이 더욱 솟았습니다. 〈중략〉 엮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사람들의 뜻을 굽어살피고 확고히 결단하여 조시위를 이배하라는 명을 멈추고, 아울러 김우진(金玉鎭)·의원(醫員)·유온(乳媼)과 더불어 함께 잡아다가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형정(典刑)을 바로잡아 왕법이 펴지고 난적을 징치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는 무겁고 두려운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배, 저시위, 김우진, 가극, 금갑도, 한광희.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二日 戊寅

- 同義禁李獻慶疏曰, 伏以, 臣頃於時夜將分之後, 得伏見傳教下者, 有金甲島島置罪人時偉, 移置濟州牧加棘之命, 律非不加重也, 地非不加遠也. 前後諸臣之苦爭力請, 在於拿鞠, …… 伏願聖明, 恕其愚而諒其衷, 廓揮乾斷, 亟降明旨, 字·偉及醫·嫗諸賊, 一併拿致王獄, 嚴鞠得情, 夫行天誅, 使讎冤洩而亂逆懲焉. 臣無任屏營之至. 答曰, 省疏具悉. 勿煩.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2일(무인)

- 동의금부사 이헌경(李獻慶)이 상소하여 조시위(趙時偉)의 제주목(濟州牧) 이배 조처를 거두라고 청함
- 동의금 이헌경(李獻慶)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저는 지난날 밤이 자정을 넘기려 할 때 전교(傳敎) 내리신 것을 얻어 보았습니다. 금갑도(金甲島)에 도배(島配)한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제주목(濟州牧)으로 옮기고 가극(加棘)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형울을 가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위치가 멀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후로 여러 신하가 애써 청했던 것은 붙잡아다 국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엮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충심을 헤아려 확실하게 결단하고 밝은 전교를 내려 김우진(金宇鎭)·조시위 및 의원(醫員)·유온(乳嫗) 제적(諸賊)을 일거에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천벌을 내려 원수를 씻어내고 난역을 징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무겁고 두려운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조시위, 김우진, 금갑도, 가극.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二日 戊寅

- 修撰柳文養劄曰, 伏以, 卽伏見傳教下者, 有島置罪人時偉濟州牧移配加棘之命. 臣於此, 不勝愕眙, 抑塞之至. 噫, 以時偉之血冤深讎, 窮凶極惡之罪, 犯天地神人之所必誅, 君臣上下之所必報, 則亟宜設鞫嚴問, 夫伸王章, 而四載佯泄之餘, 忽下移配之命, 有若尋常罪謫之以此究竟者然, 此何舉也, 此何舉也? 揆以刑政, 萬萬乖當. 伏乞聖明, 特寢移配之命, 亟允設鞫之請, 以洩輿憤, 千萬幸甚. 取進止. 答曰, 省劄具悉. 勿煩.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2일(무인)

- 조시위(趙時偉)의 제주목(濟州牧) 이배 조처를 거두라는 유문양(柳文養)의 상차(上劄)
- 수찬 유문양(柳文養)이 상차(上劄)하기를, “삼가 내리신 전교(傳敎)를 얻어보았는데, 도배(島配)된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제주목(濟州牧)에 이배(移配)하고 가극(加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깜짝 놀라 기가 막혔습니다. 아아, 조시위가 피맺힌 깊은 원한으로 궁극의 악행을 저지른 죄는 천지신명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범한 것이며, 군신상하가 반드시 보복해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속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형문하고 속히 국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이나 방만히 하다가 갑자기 이배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심상(尋常)한 죄로 유배한 듯이 하여 이렇게 종결짓지 못한 것처럼 되었으니 이 무슨 거조입니까? 형정(刑政)에 비추어보면 매우 부당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이배하라는 명을 멈추고, 국청을 설치하라는 청을 속히 윤희하여 사람들의 울분을 씻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재결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잘 알았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조시위, 이배, 가극, 유문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五日 庚子[辛巳]

○ 大司諫尹曠疏曰, …… 此際伏見傳教下者, 有島配罪人時偉, 圍籬濟州之命, 噫嘻, 此何事也? 此賊干犯之僭毒, 罪惡之凶穉, 固不當暑刻容貸於覆載之間, 而不卽嚴鞫, 而尙稽天誅, 荏苒時月, 拖至今日. 遽然移棘之地, 又是逆宇所配之島中, 其不有潛通私應之變, 亦未可知, 伏未知聖明, 何爲而作此無前之舉也? 其或側失照察, 有此下教乎? 律雖加棘, 而其實則情節未究, 地雖絕島, 而其害則同惡相隣, 方來之憂, 更滋之患, 容有幾哉? 伏願殿下, 更加三思, 特寢成命, 仍使發去之金吾郎, 卽爲拿來, 窮覈就服, 夫正王法焉.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5일(경자[신사])

□ 도배(島配)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제주(濟州)에 위리안치하라는 명을 거두라는 대사간 윤호(尹曠)의 상소

○ 대사간 윤호(尹曠)가 상소하기를, “〈중략〉 이러한 때에 내려주신 전교(傳敎)를 보니 도배(島配) 죄인 조시위(趙時偉)를 제주(濟州)에 위리안치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아아,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 난적이 범한 죄의 참독(僭毒)함과 죄악의 흉하고 사나움은 참으로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즉시 엄히 국문하여 천벌을 내리지 않고 시일을 끌다가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이배하여 위리안치하라고 한 곳은 역적 김우진(金宇鎭)이 유배된 섬이니 몰래 통하고 사적으로 응대하는 변고가 있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금께서 어째서 전에 없던 거조를 행하신 것입니까? 혹 실수로 잘 살피지 못하고 이런 하교를 하신 것입니까? 형올로는 비록 가극(加棘)이라 했지만 실상은 사정을 알 수 없고, 유배지는 비록 절도(絶島)라 하나 그 해(害)는 동일한 악인(惡人)과 서로 이웃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근심과 다시 불어나는 걱정이 얼마이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두 번 세 번 생각하시어 특별히 명령하신 바를 멈추시고, 금오랑(金吾郎)을 보내 즉시 붙잡아오게 하여 끝까지 조사하고 자복하게 하여 시원하게 국법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조시위, 도배, 위리안치, 이배, 윤호.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五日 庚子[辛巳]

- 掌令安鼎大, 持平權中憲 · 朴瑞源, 正言俞鉉章等劄曰, …… 臣等伏見是月十二日所下特教, 有賊偉濟州牧荐棘之命, 固知我殿下, 洞燭偉賊之罪, 不容於覆載之間也. 大聖人處分, 臣等固欽仰之不暇, 而第以此賊移配海島, 有若磨勘者然, 此非臣等平日之所望於聖明者也. …… 臣等謂濟州牧荐棘罪人時偉, 具格拿來, 嚴鞫得情, 卽施邦刑, 而已遲晚之賊字, 受指揮之醫嫗, 一竝明正典刑, 使國讎得以小雪, 輿憤得以小洩焉. 臣等取進止. 無批答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5일(경자[신사])

- 조시위(趙時偉)의 제주목(濟州牧) 이배 조처를 거두라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차(上劄)
- 장령 안정대(安鼎大), 지평 권중헌(權中憲) · 박서원(朴瑞源), 정언 유현장(俞鉉章) 등이 상차(上劄)하기를, “〈중략〉 저희는 이달 12일에 내리신 특교(特敎)를 받아 보았는데, 역적 조시위(趙時偉)를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조시위의 죄를 잘 살펴보고 천지간에 용서할 수 없음을 알고도 성인과 같은 처분을 내리셨으나, 저희는 참으로 흠양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역적을 해도(海島)로 이배하고 마감한 듯 하는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성명(聖明)께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중략〉 저희는 말씀드리건대, 제주목에 위리안치한 죄인 조시위에 대해 격식을 갖추어 붙잡아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정을 알아내고 즉시 나라의 형벌을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만(遲晚)한 역적 김우진(金字鎭), 지휘를 받은 의원(醫員) · 유온(乳嫗)에게도 모두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여, 나라의 원수를 조금이라도 갚고, 사람들의 분통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결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비답이 없었음】

△ 주제어: 제주목, 조시위, 김우진, 유온, 지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八日 甲辰[甲申]

- 正言申大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大司諫李鼎揆, 時在慶尙道慶州地, 司諫李秀夏, 時在忠清道保寧地, 獻納姜垣, 時在溫陽地, 正言李之聃, 時在忠州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8일(갑진[갑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신대귀(申大龜)의 계
- 정언 신대귀(申大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이정규(李鼎揆)가 지금 경상도 경주(慶州) 땅에, 사간 이수하(李秀夏)는 지금 충청도 보령(保寧) 땅에, 헌납姜垣은 지금 온양(溫陽) 땅에 있으며, 정언 이지담(李之聃)은 지금 충주(忠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신대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五月 二十九日 乙巳[乙酉]

○ 己酉五月二十九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右承旨李集斗, 假注書鄭履綏·趙台榮, 記注官金健修·金鳳顯, 右議政蔡濟恭, 左參贊金華鎮, 戶曹判書徐有隣, 吏曹判書李埤, 禮曹判書李在簡, 漢城判尹鄭昌順, 行副司直李柱國·金尙集, 刑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李邦一·李漢豐, 行左承旨金思穆, 行副司直李獻慶, 校理李太亨, 正言申大龜, 同副承旨申耆, 課講試官吳載純·徐有防, 以次進伏訖. …… 大龜進伏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5월 29일(을사[을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기유년 5월 2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우승지 이집두(李集斗), 가주서 정이수(鄭履綏)·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좌참찬 김화진(金華鎮),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이조판서 이갑(李埤), 예조판서 이재간(李在簡), 한성판윤 정창순(鄭昌順),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김상집(金尙集),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이방일(李邦一)·이한풍(李漢豐), 행 좌승지 김사목(金思穆), 행 부사직 이헌경(李獻慶), 교리 이태형(李太亨), 정언 신대귀(申大龜), 동부승지 신기(申耆), 과강시관 오재순(吳載純)·서유방(徐有防)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신대귀가 나아가 부복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신대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八日 癸巳

- 正言朴宗正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侍,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正言張至冕, 時在京畿安山地, 司憲府執義李思祚, 時在原春道淮陽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8일(계사)

- 大靜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박종정(朴宗正)의 계
- 정언 박종정(朴宗正)이 아뢰기를, “大靜縣(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정언 장지면(張至冕)이 지금 경기 안산(安山) 땅에 있고, 사헌부 집의 이사조(李思祚)는 지금 원춘도 회양(淮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大靜縣, 김수현, 환시, 박종정.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一日 丙申

- 院啓, 正言朴宗正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1일(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서 정언 박종정(朴宗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종정.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一日 丙申

- 己酉閏五月十一日卯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蔡濟恭，行左參贊金華鎮，行大司憲李埤，行副司直李柱國，禮曹判書鄭昌順，刑曹判書沈頤之，行副司直金尙集·徐有防·李邦一·李漢豐，行左承旨徐有大，記事官徐有聞，事變假注書申星模，記注官金鳳顯，記事官李相璜，以次進伏訖。……上曰，臺臣進前傳啓，可也。埤進前奏曰，諫院不備，三司合啓，兩司合啓，不得爲之，只以府啓舉行矣。上曰，唯。埤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出學條】……。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1일(병신)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기유년 윤5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행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행 대사헌 이갑(李埤),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김상집(金尙集)·서유방(徐有防)·이방일(李邦一)·이한풍(李漢豐), 행 좌승지 서유대(徐有大), 기사관 서유문(徐有聞), 사변 거주서 신성모(申星模),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상황(李相璜)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은 앞으로 나와 전계(傳啓)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갑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간원(諫院)이 갖춰지지 않아 삼사합계(三司合啓), 양사합계(兩司合啓)는 할 수 없기에 부계(府啓)만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갑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二日 丁酉

○ 持平崔顯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2일(정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최현중(崔顯重)의 계

○ 지평 최현중(崔顯重)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현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二日 丁酉

- 獻納李魯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2일(정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노술(李魯述)의 계
- 헌납 이노술(李魯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노술.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三日 戊戌

○ 掌令沈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3일(병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심갱(沈鏗)의 계

○ 장령 심갱(沈鏗)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갱.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四日 己亥

- 掌令趙星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4일(기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조성규(趙星逵)의 계
- 장령 조성규(趙星逵)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성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四日 己亥

- 司諫李運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4일(기해)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 이운빈(李運彬)의 계
- 사간 이운빈(李運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운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五日 庚子

- 府啓, 持平朴思機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5일(경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서 지평 박사기(朴思機)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락〉.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사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五日 庚子

- 院啓, 司諫李運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5일(경자)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서 사간 이운빈(李運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운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六日 辛丑

- 府啓, 掌令沈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夫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6일(신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서 장령 심갱(沈鏗)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갱.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六日 辛丑

- 院啓, 獻納李魯述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6일(신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서 헌납 이노술(李魯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노술.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七日 壬寅

- 府啓, 掌令趙星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措辭見上】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7일(임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서 장령 조성규(趙星逵)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청컨대 흥양현(興陽縣) 노로 삼은 죄인 하익룡(河翼龍)에 대해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게 하여 사정을 캐내고 국법대로 시원하게 처형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성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七日 壬寅

- 院啓, 司諫李運彬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7일(임인)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의 계(啓)에서 사간 이운빈(李運彬)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운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八日 癸卯

- 府啓, 持平朴思機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8일(계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의 계(啓)에서 지평 박사기(朴思機)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사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十九日 甲辰

- 掌令沈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19일(갑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심갱(沈鏗)의 계
- 장령 심갱(沈鏗)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심갱.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二十二日 丁未

- 正言鄭沚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惟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獻納柳匡國, 時在忠清道木川地, 司憲府執義李身晦, 時在全羅道全州地, 掌令閔彝顯, 時在京畿驪州地, 持平姜碩龜, 時在慶尙道仁同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22일(정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정인(鄭沚)의 계
- 정언 정인(鄭沚)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헌납 유광국(柳匡國)이 지금 충청도 목천(木川) 땅에 있고, 사헌부 집의 이신회(李身晦)는 지금 전라도 전주(全州) 땅에 있으며, 장령 민이현(閔彝顯)은 지금 경기 여주(驪州) 땅에, 지평 강석귀(姜碩龜)는 지금 경상도 인동(仁同)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二十五日 庚戌

- 正言朴宗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憲府掌令高益擎, 時在全羅道長興地, 持平李升運, 時在忠清道新昌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25일(경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박종겸(朴宗謙)의 계
- 정언 박종겸(朴宗謙)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헌부 장령 고익경(高益擎)이 지금 전라도 장흥(長興) 땅에 있고, 지평 이승운(李升運)은 지금 충청도 신창(新昌)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종겸.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二十八日 癸丑

- 正言權儐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 答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28일(계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증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권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二十九日 甲寅

- 司諫李壽咸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29일(갑인)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원의 계
- 사간 이수함(李壽咸)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수함.

❖ 乾隆 五十四年 己酉 閏五月 二十九日 甲寅

○ 己酉閏五月二十九日卯時，上御誠正閣。左承旨·右副承旨入侍時，行左承旨李時秀，右副承旨申耆，記事官沈奎魯，記注官金健修·金鳳顯，以次進伏訖。……左副承旨洪文泳進伏。上曰，兵曹判書入侍。鳳顯承命出，與兵曹判書李文源，偕入進伏。文源曰，故統制使金永綬，庚子年濟州牧在任時，以本州判官慶來運，公廨改建一百五間，重修十三間，論啓請賞，而伊時永綬被拿，故本曹未及回啓，因循至此矣。慶來運修繕公廨，既滿百間，則今至年久，尙不論賞，有欠於獎勸之道，敢此，仰達矣。上曰，尙今遺漏，豈成說乎？原狀啓今日回啓，可也。【出舉條】……。

❖ 정조 13년(1789) 기유년 윤5월 29일(갑인)

□ 공해(公廨)를 개건(改建)하고 중수한 공로로 지난 제주판관(濟州判官) 경래운(慶來運)을 논상해야 한다는 병조의 계

○ 기유년 윤5월 29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승지·우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행 좌승지 이시수(李時秀), 우부승지 신기(申耆), 기사관 심규로(沈奎魯), 기주관 김건수(金健修)·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좌부승지 홍문영(洪文泳)이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판서는 입시(入侍)하라.”라고 하였다. 김봉현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병조판서 이문원(李文源)과 함께 들어와 나아가 엎드렸다. 이문원이 말하기를, “고(故) 통제사 김영수(金永綬)가 경자년 제주목(濟州牧)에 재임시 본주(本州) 판관 경래운(慶來運)이 공해(公廨) 105칸을 개건(改建)하고 13칸을 중수한 것을 가지고 상을 청하는 계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수가 붙잡혔으므로 본 병조에서 회계(回啓)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경래운이 공해를 수선한 것이 거의 100칸이고 지금 헛수가 오래되었으니, 아직도 논상(論賞)하지 않은 것이 장권(獎勸)하는 도리에 있어 오히려 흠결이 되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빠뜨렸다니 어찌 말이 되는가? 원장계를 오늘 회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제주판관, 경래운, 김영수, 공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十一日 乙丑

- 正言朴宗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11일(을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박종겸(朴宗謙)의 계
- 정언 박종겸(朴宗謙)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종겸.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十二日 己亥[丙寅]

- 持平李得休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12일(기해[병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이득휴(李得休)의 계
- 지평 이득휴(李得休)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흥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득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十二日 己亥[丙寅]

- 正言權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窮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鞠嚴問, 依律處斷.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12일(기해[병인])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권빈(權儐)의 계
- 정언 권빈(權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 하소서.”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권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十三日 庚子[丁卯]

○ 己酉六月十三日卯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蔡濟恭，左參贊金華鎮，行戶曹判書徐有隣，行副司直李柱國，禮曹判書鄭昌順，行副司直金尙集，漢城判尹徐有防，刑曹判書沈頤之，行副司直李漢豐，戶曹參判李獻慶，行副司直金持默，持平李得休，副修撰尹光顏，左副承旨洪仁浩，右副承旨曹遠振，假注書李海隣，事變假注書韓錫仁，記注官金鳳顯，記事官李相璜，以次進伏訖。…… 得休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13일(경자[정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이득휴(李得休)의 계

○ 기유년 6월 13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대신·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행 호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 부사직 이주국(李柱國),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행 부사직 김상집(金尙集), 한성판윤 서유방(徐有防),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이한풍(李漢豐), 호조참판 이헌경(李獻慶),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지평 이득휴(李得休), 부수찬 윤광안(尹光顏),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조원진(曹遠振), 가주서 이해린(李海隣), 사변가주서 한석인(韓錫仁), 기주관 김봉현(金鳳顯), 기사관 이상황(李相璜)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이득휴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득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十四日 戊辰

- 正言朴宗謙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鞠嚴問, 依律處斷. …… 新除司諫宋銓, 時在京畿富平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14일(무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박종겸(朴宗謙)의 계
- 정언 박종겸(朴宗謙)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송전(宋銓)이 지금 경기 부평(富平)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종겸.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二十一日 乙亥

- 正言沈鍊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又啓曰, 新除授獻納權恢時在忠清道結城地, 正言申暉時在忠州地, 司憲府執義申禹相時在京畿交河地, 持平李之聃時在忠清道忠州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何如?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21일(을해)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심집(沈鑣)의 계
- 정언 심집(沈鑣)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찮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 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헌납 권회(權恢)가 지금 충청도 결성(結城) 땅에 있고, 정언 신직(申暉)은 지금 충주(忠州) 땅에 있습니다. 사헌부 집의 신우상(申禹相)이 지금 경기 교하(交河) 땅에 있고, 지평 이지담(李之聃)은 지금 충청도 충주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 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二十三日 己巳

- 掌令朴錕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旣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正言沈鏤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23일(기사)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박황(朴鎭) 등의 계
- 장령 박황(朴鎭)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정언 심집(沈鑣)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박황, 심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二十四日 戊寅

- 執義朴長高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正言沈鏞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24일(무인)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박장설(朴長嵩) 등의 계
- 집의 박장설(朴長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심집(沈鎭)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장설, 심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六月 二十五日 己卯

- 持平朴道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正言沈鏞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6월 25일(기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박도상(朴道翔) 등의 계
- 지평 박도상(朴道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심집(沈鑰)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도상, 심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七月 十二日 丙申

- 洪仁浩,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先運, 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兵曹別啓請山屯馬一百九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二百九十七匹內, 三匹船中故失, 五匹到中路故失, 六匹到衿川病留, 實納馬二百八十三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7월 12일(병신)

- 제주(濟州)에서 나온 진상마 등의 나이와 털색 등을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선운(先運)한 연례 진상마 8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삼명일진상마 60필, 차비 진상마 80필, 병조에서 따로 계청한 산둔마 109필, 홍구노태마 20필, 도합 297필 중 3필은 배 안에서 죽거나 잃어버리고, 5필은 도중에 길에서 죽거나 잃어버렸으며, 6필은 금천(衿川)에 당도하여 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실제 바치는 말은 283필이며,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상마, 별단.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七月 十四日 戊戌

- 李夔,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 兵曹別啓請山屯馬九十一匹, 合二百九十一匹內, 五匹到中路故失, 七匹到果川病留, 實納馬二百七十九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7월 14일(무술)

- 제주(濟州)에서 운송된 세공마 등의 나이와 털색 등을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이기(李夔)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와서 후운(後運)한 세공마(歲貢馬) 200필, 병조에서 따로 계청한 산둔마 91필, 도합 291필 중 5필은 도중에 길에서 죽거나 잃어버렸고, 7필은 과천(果川)에 와서 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실제 바치는 것은 279필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공마, 산둔마, 이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七月 二十三日 丁未

- 正言崔重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請新除授獻納李周顯, 時在全羅道全州地, 正言金聖準, 時在京畿楊根地, 司憲府持平沈能翼, 時在咸鏡道明川府任所, 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7월 23일(정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중규(崔重圭)의 계
- 정언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헌납 이주현(李周顯)이 지금 전라도 전주(全州) 땅에 있고, 정언 김성준(金聖準)은 지금 경기 양근(楊根)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헌부 지평 심능익(沈能翼)은 지금 함경도 명천부(明川府) 임소(任所)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七月 二十五日 己酉

- 正言金聖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7월 25일(기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김성준(金聖準)의 계
- 정언 김성준(金聖準)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성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八月 四日 辛未[丁巳]

- 兵批, 判書具允鉦進, 參判趙鼎鎭入直進, 參議朴宗岳病, 參知洪文泳差祭, 右承旨李夔進. 以洪天範爲同知, 安鼎福爲僉知, …… 濟州監牧官單金德亨, …… 副總管單李敬玉.

❖ 정조 13년(1789) 기유년 8월 4일(신미[정사])

☐ 김덕형(金德亨)을 제주감목관(濟州監牧官)에 제수함

- 兵批(병비)에 판서 구윤옥(具允鉦)이 나왔고, 참판 조정진(趙鼎鎭)은 입직으로서 나왔고, 참의 박종악(朴宗岳)은 병중이며, 참지 홍문영(洪文泳)은 제관으로 차임 되었고, 우승지 이기(李夔)는 나왔다. 홍천범(洪天範)을 동지로 삼고, 안정복(安鼎福)을 첨지로 삼고, <중략> 제주감목관(濟州監牧官)에 단망으로 김덕형(金德亨)을 삼고, <중략> 부총관에 단망으로 이경옥(李敬玉)을 삼았다.

△ 주제어: 제주 감목관, 김덕형, 병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八月 十日 癸亥

- 洪仁浩,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衛外擊錚人黃州良女鄭召史, 其夫文光彩, 橫罹殺獄事也. 長淵良女金召史, 其夫片相奉, 以私掘露棺罪, 流配樂安, …… 楊州童女尹丹喜, 大靜緣坐定配罪人範中之女, 而渠之祖母, 身死已周年, 乞令通訃於其父事也. …… 今番鳴錚七名中, 事屬四件者, 只原情勿施, 其外如朴明龍猥雜之事, 童女及權義教等逆孽冒濫之類, 自臣曹, 從重嚴勘, 何如? 傳曰, 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8월 10일(계해)

□ 어가가 거동할 때 걱정한 이들의 사연을 요약하여 보고한 형조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어가가 거동할 때 위외(衛外)에서 걱정한 사람은 황주(黃州)의 양녀 정조이(鄭召史)로 그 남편 문광채(文光彩)가 살옥 사건에 걸려든 일입니다. 장연(長淵)의 양녀 김조이(金召史)의 사연은 그 남편 편상봉(片相奉)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서 관(棺)이 드러나게 한 죄로 낙안(樂安)에 유배되었다는 일입니다. <중략> 양주(楊州)의 동녀(童女) 윤단희(尹丹喜)는 대정현(大靜縣)에 연좌되어 정배된 죄인 윤범중(尹範中)의 딸인데, 조모(祖母)가 죽은 지 이미 1년이나 되었으니 그 아버지께 부음(訃音)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중략> 이번에 걱정한 7명 중에서 일이 사건사(四件事)³⁸²⁾에 속하는 자는 원정을 시행하지 말도록만 하고, 나머지 외람되고 잡된 일로 걱정한 박명룡(朴明龍)과 역적의 자식으로서 함부로 외람되게 걱정한 동녀(童女) 및 권의교(權義教) 등은 본조에서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³⁸³⁾

△ 주제어: 대정현, 연좌, 윤범중, 윤단희, 걱정.

382) 사건사(四件事):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4가지 사안. 자신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일, 아버지와 아들의 분별에 관한 일, 본처와 첩의 분별에 관한 일,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의 분별에 관한 일이 이에 해당함.

383) 《일성록》 정조 13년 8월 10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五日 丁卯

- 持平延東憲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李運彬, 時在京畿水原地, 持平李尙友, 時在楊根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5일(정묘)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연동헌(延東憲)의 계
- 지평 연동헌(延東憲)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이운빈(李運彬)이 지금 경기 수원(水原) 땅에 있고, 지평 이상우(李尙友)는 지금 양근(楊根)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관, 연동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五日 丁卯

- 正言李敬心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鉤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大司諫李鼎揆, 時在慶尙道慶州地, 司諫趙錫穆, 時在尙州地, 獻納姜垣, 時在忠清道溫陽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5일(정묘)

-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이경심(李敬心) 등의 계
- 정언 이경심(李敬心)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대사간 이정규(李鼎揆)가 지금 경상도 경주(慶州) 땅에 있고, 사간 조석목(趙錫穆)은 지금 상주(尙州) 땅에 있으며, 헌납姜垣은 지금 충청도 온양(溫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이경심.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六日 戊辰

- 掌令俞漢人, 持平延東憲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6일(무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유한인(俞漢人) 등의 계
- 장령 유한인(俞漢人), 지평 연동헌(延東憲)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한인, 연동헌.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六日 戊辰

- 正言李敬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6일(무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이경심(李敬心)의 계
- 정언 이경심(李敬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경심.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七日 己巳

- 傳于洪仁浩曰，竄配承旨，焉敢入稟？與申驥顯同爲竄逐，亦涉太輕，竝大靜縣定配.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7일(기사)

- 신기현(申驥顯)과 함께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라는 취지로 홍인호(洪仁浩)에게 내린 전교
- 홍인호(洪仁浩)에게 전교하기를, “찬배(竄配)된 승지가 어찌 감히 품의를 들이는가? 신기현(申驥顯)과 함께 찬축(竄逐)하는 것은 또한 너무 가벼우니 모두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배, 홍인호, 신기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七日 己巳

- 以承旨申耆·洪仁浩·李益運·尹行任大靜縣定配傳旨，傳于朴鏡曰，傳教既頒布，何必定配？竝置之。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7일(기사)

- ☐ 승지 신기(申耆) 등을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게 하고, 박황(朴鏡)에게는 이미 전교를 반포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가 없다는 취지로 전교함
- 승지 신기(申耆)·홍인호(洪仁浩)·이익운(李益運)·윤행임(尹行任)을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라는 전지(傳旨)로써 박황(朴鏡)에게 전교하기를, “전교를 이미 반포했는데 어찌 반드시 정배한단 말인가? 모두 그대로 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정배, 박황.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十九日 辛未

- 傳于朴鎰曰, 出付有命之後, 尤何敢抗命, 又或遲滯? 當濟州牧定配, 更爲嚴飭.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19일(신미)

- 제주목(濟州牧)으로 정배한다는 내용으로 박항(朴鎰)에게 내린 전교
- 박항(朴鎰)에게 전교하기를, “공문을 보내 명을 내린 후인데 어찌 감히 항명하고 또 혹 지체하려는가? 제주목(濟州牧)으로 정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시 엄히 신칙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배, 박항.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四日 丙子

- 李益運, 以義禁府言啓曰, 行司直李在簡施以絶島定配之典事, 承傳啓下矣. 李在簡, 全羅道濟州牧旌義縣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以珍島郡更定配所, 可也.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4일(병자)

- 행 사직 이재간(李在簡)을 정의현(旌義縣)으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행 사직 이재간(李在簡)을 절도(絶島)에 정배하는 일은 승전을 받들어 계하되었습니다. 이재간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되, 승전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어 예에 따라 의금부 도사를 보내 배소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진도군(珍島郡)으로 다시 배소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진도군, 이재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四日 丙子

- 李益運, 以義禁府言啓曰, 李在簡, 全羅道濟州牧旌義縣絶島定配事, 草記批旨內, 以珍島郡更定配所事, 命下矣. 李在簡, 珍島郡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4일(병자)

- 이재간(李在簡)의 배소를 정의현(旌義縣)에서 진도군(珍島郡)으로 바꾸라는 전교를 받들어 배소로 압송하겠는 의금부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재간(李在簡)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으로 절도(絶島) 정배하는 일은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진도군(珍島郡)으로 배소를 다시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재간을 진도군에 절도 정배하되, 승전의 내용에 따라 죄목을 갖추고 예에 따라 의금부 도사를 보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의현, 진도군, 절도 정배, 이재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四日 丙子

- 執義尹行履，掌令柳文養，持平鄭觀輝·崔顯重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不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4일(병자)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집의 윤행리(尹行履) 등의 계
- 집의 윤행리(尹行履), 장령 유문양(柳文養), 지평 정관휘(鄭觀輝)·최현중(崔顯重)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행리, 유문양, 정관휘, 최현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四日 丙子

- 獻納李太亨, 正言柳畊 · 金孝建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4일(병자)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태형(李太亨) 등의 계
- 헌납 이태형(李太亨), 정언 유경(柳畊) · 김효건(金孝建)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태형, 유경, 김효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七日 己卯

- 行大司憲李聖圭, 執義申禹相, 持平朴思機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掌令韓鼎運, 時在京畿通津地, 持平李日運, 時在忠清道瑞山地, 請竝斯速
乘駟上來事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7일(기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행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등의 계
- 행 대사헌 이성규(李聖圭), 집의 신우상(申禹相), 지평 박사기(朴思機)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장령 한정운(韓鼎運)이 지금 경기 통진(通津) 땅에 있고, 지평 이일운(李日運)은 지금 충청 서산(瑞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성규, 신우상, 박사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七日 己卯

- 正言尹悌東 · 鄭晚錫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洪彦喆, 時在原春道春川地, 獻納姜垣, 時在忠清道溫陽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7일(기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윤제동(尹悌東) 등의 계
- 정언 윤제동(尹悌東) · 정만석(鄭晚錫)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지금 원춘도(原春道) 춘천(春川) 땅에 있고, 헌납姜垣은 지금 충청도 온양(溫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윤제동, 정만석.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八日 庚辰

- 大司憲洪秀輔, 掌令沈晉賢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新除授執義李運彬, 時在京畿水原地, 掌令尹翊東, 時在長湍地, 持平朴孝成, 時在廣州地, 持平朴東俊, 時在忠清道忠州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8일(경진)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대사헌 홍수보(洪秀輔) 등의 계
- 대사헌 홍수보(洪秀輔), 장령 심진현(沈晉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이운빈(李運彬)이 지금 경기 수원(水原) 땅에 있고, 장령 윤익동(尹翊東)은 지금 장단(長湍) 땅에 있으며 지평 박효성(朴孝成)은 지금 광주(廣州) 땅에 있습니다. 지평 박동준(朴東俊)은 지금 충청도 충주(忠州) 땅에 있으니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홍수보, 심진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八日 庚辰

- 大司諫李命勳, 司諫許晔, 獻納崔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8일(경진)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대사간 이명훈(李命勳) 등의 계
- 대사간 이명훈(李命勳), 사간 허질(許晔), 헌납 최훤(崔烜)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명훈, 허질, 최훤.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九日 辛巳

- 行大司憲吳載純, 執義李思祚, 持平朴猷煥 · 韓興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新除授掌令金寅燮, 時在京畿陰竹地, 掌令安鼎大, 時在楊州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9일(신사)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행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등의 계
- 행 대사헌 오재순(吳載純), 집의 이사조(李思祚), 지평 박유환(朴猷煥) · 한흥유(韓興裕)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장령 김인섭(金寅燮)이 지금 경기 음죽(陰竹) 땅에 있고, 장령 안정대(安鼎大)는 지금 양주(楊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오재순, 이사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二十九日 辛巳

- 正言李顯道·張錫胤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29일(신사)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이현도(李顯道) 등의 계
- 정언 이현도(李顯道)·장석윤(張錫胤)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환, 이현도, 장석윤.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三十日 壬午

- 行大司憲李埤, 執義李運彬, 持平申大龜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持平申史澳, 時在全羅道珍山地, 請斯速乘駟上來事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30일(임오)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행 대사헌 이갑(李埤) 등의 계
- 행 대사헌 이갑(李埤), 집의 이운빈(李運彬), 지평 신대귀(申大龜)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 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지평 신사오(申史澳)가 지금 전라도 진산(珍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 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갑, 이운빈.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月 三十日 壬午

- 正言崔重圭·金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司諫洪彦喆, 時在原春道春川地, 獻納姜垣, 時在忠清道溫陽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0월 30일(임오)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중규(崔重圭) 등의 계
- 정언 최중규(崔重圭)·김용(金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지금 원춘도 춘천(春川) 땅에 있고, 헌납姜垣이 지금 충청도 온양(溫陽)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규, 김용.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一日 癸未

- 掌令安鼎大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1일(계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안정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一日 癸未

- 正言崔重圭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鉤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1일(계미)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정언 최중규(崔重圭)의 계
- 정언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최중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一日 癸未

○ 己酉十一月初一日巳時，上御熙政堂。原任大臣·閣臣承候入侍時，右副承旨李晚秀，假注書趙台榮，記注官白慶楷·金鳳顯，判府事徐命善·李福源·金煜·蔡濟恭，右議政金鍾秀，直提學金憲·金載瓚，檢校直閣徐鼎修·鄭東浚·鄭大容·尹行任，待教金祖淳，以次進伏訖。…… 尙春曰，臣年前待罪大靜縣時，目見邑弊民瘼之矜惻者，至今耿耿于懷，敢此仰達矣。本縣，以十室至殘之邑，有二堡鎮，三牧場，六果園，十煙臺，又有鮑作·山尺·畚漢等諸般苦役，無以填額，兒弱則自一歲，舉皆充役，老羸則至八十或未免役，而又多有闕額者，徵及隣族，嗷嗷一境，如在倒懸，而本縣民之避苦趨歇，投屬州役之不正名色者，至于八百餘名之多，今若割出此投屬者，盡數還給於大靜，使之填充諸般苦役，則庶可有切瘼矯救之道矣。如以州役之已屬者，一竝割給爲難，則一從三邑民總，從殘盛，分排釐正，定額多寡，更不得，任自低仰，然後必無本縣之偏被其害矣。所謂畚漢，則居在畚頭，然後可以作畚納米，而居在本縣者之填充濟州·旌義之畚漢者，或去家四五十里，百餘里之遠者，幾至于百餘名之多，此非居其土，應其役之法意也。此等痼弊，若不嚴飭變通，則本縣其將無民無邑而後已，哀彼大靜之民，是亦國家之赤子，而慘不忍見之，故敢此仰達矣。上曰，諸大臣各陳所見，可也。命善曰，耽羅民弊，前後繡衣之回奏，多所釐革，而今聞前倅之言，又復若此，此實守土者之責也。爲先行會於本牧，可以矯救之方，商量枚啓，自廟堂從長稟處，似好矣。福源曰，本邑民弊，聞甚矜惻，而矯救之道，不可遠外懸度，令本牧商確釐弊之方，論理狀聞，然後廟堂可以稟處矣。煜曰，大靜民瘼，專由於應役濟州之致云。然則以大靜之民，應濟州之役者，其委折問知，然後乃可議矯救釐正之道矣。濟恭曰，絕島殘邑，民弊如此，朝廷若不另加矯革，赴愬無處，寧不可矜？第念本邑之民，使不敢投托本牧，只應本州之役，自外面言之，不過爲片言指揮之事，而今聞八百餘名，各納十斗米於本牧，以爲避苦趨歇之計云。然則本牧所捧之米，必有歸宿，其爲私用與公用，必詳知，然後方可商量區處，關飭該牧使，具由報來，以爲從長矯救之地，恐宜矣。鍾秀曰，絕海民瘼，既已上徹朝家之後，固不可不及時變通，而其爲弊之源委，救弊之方略，須問於本牧，然後方可有措處之道矣。禮曹佐郎朴尙春大靜縣民瘼嚴飭變通事所懷批答 上曰，可知其切痼之瘼，聞甚矜惻，自廟堂關飭該牧，期於從長釐弊，可也。【出舉條】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1일(계미)

□ 박상춘(朴尙春)이 대정현(大靜縣)에 재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곳의 고역(苦役)을 변통할 방도에 대한 소회를 아뢰어 임금에 대신들과 논의함

○ 기유년 11월 초1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원임대신·각신이 문안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우부승지 이만수(李晩秀),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백경해(白慶楷)·김봉현(金鳳顯), 판부사 서명선(徐命善)·이복원(李福源)·김익(金煜)·채제공(蔡濟恭), 우의정 김중수(金鍾秀), 직제학 김희(金憲)·김재찬(金載瓚), 검교직각 서정수(徐鼎修)·정동준(鄭東浚)·정대용(鄭大容)·윤행임(尹行任), 대교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박상춘(朴尙春)이 말하기를, “제가 몇 해 전에 대정현(大靜縣)을 맡아 눈으로 읍폐(邑弊)와 민막(民瘼)의 안쓰러움을 보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맺혀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웁니다. 본현(本縣)은 십실(十室)의 지극히 조잔한 고을인데도 진보(鎭堡)가 둘, 목장이 셋, 과원(果園)이 여섯, 봉대(烽臺)가 열이나 있습니다. 또 포작간(鮑作干)·산척(山尺)·답한(畓漢) 등의 고된 역(役)이 있는데 액수(額數)를 채울 수가 없으므로 어린이는 한 살부터 거의 모두 충정(充定)하고 늙은이는 80세가 되도록 역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또 꺾액(闕額)이 많아 책징(責徵)이 이웃과 일족에게 미치므로 온 경내가 아우성이고 쪼들림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합니다. 그런데 이 고을 백성으로서 고된 역을 피하고 험한 역을 취하여 주역(州役)의 바르지 못한 명색에 투속(投屬)한 자가 8백 명이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만일 이들 투속한 무리를 가려내서 전부를 대정현에 도로 주어 제반 고역(苦役)에 충정하게 한다면 아마도 절실한 폐막을 바로잡을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번 주역에 소속된 자들을 모조리 내주기가 어렵다면 삼읍의 민총(民摠)에 따르고, 조잔한지 흥성한지에 따라 분배하여 많고 적고의 액수를 정하여 다시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지 못하도록 한 연후에야 본 현에서 편파하게 그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답한(畓漢)은 전답 머리에 살아야만 농사를 지어 쌀을 바치게 되는데 본 현에서 제주나 정의(旌義)의 답한으로 충정된 자는 혹 집까지 40~50리 혹은 100여 리나 된 자가 거의 100명이나 되니 이는 그 땅에 살면서 그 역에 응하는 법의 본 뜻과 다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폐해를 엄히 신칙하여 변통하지 않는다면 본 현은 앞으로 백성도 없고 고을도 없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애처로운 대정 백성도 역시 이 나라의 적자(赤子)인데 비참하여 차마 볼 수 없기에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대신도 각자 소견을 아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서명선이 말하기를, “탐라(耽羅)

의 민폐는 전후 어사의 회주(回奏)로 인하여 많이 고쳐졌으나 지금 전 수령의 말을 들으니 또 이와 같으니 이는 사실 수토관(守土官)의 책임입니다. 우선 본 목사(本牧使)에게 지시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방편을 헤아려서 날날이 장계하게 하여 묘당에서 가장 좋은 도리로 품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복원이 말하기를, “본 읍의 민폐는 듣기에 몹시 애처로우나 바로잡는 방편을 멀리에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본 목사로 하여금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를 잘 생각하여 이치에 맞게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묘당에서 품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익이 말하기를, “대정(大靜)의 민막(民瘼)은 오로지 제주에 응역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정현의 백성이 제주에서 응역하게 된 곡절을 물어서 안 연후에 비로소 바로잡고 고치고 하는 방편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말하기를, “외딴 섬의 조잔한 고을에서 민폐가 이와 같으니 조정에서 별반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호소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본 읍의 백성을 본목(本牧)에 투속하지 못하게 하고 본주(本州)에만 응역하게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 한마디로 지휘할 수 있는 일에 지나지 않은 것 같으나 지금 들으니 800여 명이 각각 10두(斗)의 쌀을 본목에 내고 고된 역을 피하고 험한 역을 취할 계책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본목에서 받은 쌀은 필시 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私用)인지 공용(公用)인지를 반드시 자세히 안 연후에라야 비로소 헤아려서 구처할 수가 있습니다. 본 목사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여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여 좋은 도리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종수가 말하기를, “절해(絶海)의 민막을 이미 조정에까지 상철(上徹)한 뒤에는 진실로 즉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폐단이 되는 본말(本末)과 폐단을 바로잡는 방략을 모름지기 본목(本牧)에 물어본 후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조좌랑 박상춘의 대정현(大靜縣) 민막을 엄히 신칙하여 변통하는 일에 대한 소회(所懷)에 비답을 내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급한 폐막임을 알았고, 들으니 매우 불쌍하다. 묘당에서 당해 목사에게 관문을 보내 신칙하고 좋은 도리로 바로잡도록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³⁸⁴⁾【거조(擧條)를 냄】 물러날 것을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대정현, 정의, 민막, 답한, 진보, 포작간, 민총, 박상춘.

384) 《비변사등록》 정조 13년 11월 2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日 甲申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일(갑신)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안정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日 甲申

- 正言崔重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일(갑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중규(崔重圭)의 계
- 정언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六日 戊子

- 持平李敬心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持平韓德厚, 時在忠清道瑞山地,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6일(무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지평 이경심(李敬心)의 계
- 지평 이경심(李敬心)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이익을 좇는 흉도에 연결되어 어울리고 내통한 상황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상을 참작하여 조처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德意)에서 나왔지만 삼척(三尺)의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니 도현(島縣)의 노(奴)로 삼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지평 한덕후(韓德厚)가 지금 충청도 서산(瑞山)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경심.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六日 戊子

- 獻納李普天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新除授正言申光祜, 時在原春道原州地, 請斯速乘駟上來下諭事. 答院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6일(무자)

-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처단하라는 헌납 이보천(李普天)의 계
- 헌납 이보천(李普天)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은 하참은 환시(宦寺)로 사대부와 가까이 사귀어 끝내 흉적의 뿌리가 되었고, 하물며 그 지극히 흉악한 말로 감히 난역의 마음을 몰래 퍼뜨렸습니다. 그 죄악을 살펴보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정절(情節)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민심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 노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붙잡아 엄중히 심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정언 신광호(申光祜)가 지금 원춘도(原春道) 원주(原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환시, 이보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七日 己丑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請新除授執義申禹相, 時在忠清道結城地, 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7일(기축)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신우상(申禹相)이 지금 충청도 결성(結城)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안정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七日 己丑

- 司諫宋銓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7일(기축)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사간 송전(宋銓)의 계
- 사간 송전(宋銓)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송전.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八日 庚寅

- 持平李敬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8일(경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지평 이경심(李敬心)의 계
- 지평 이경심(李敬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경심.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八日 庚寅

- 正言崔重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8일(경인)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최중규(崔重圭)의 계
- 정언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최중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九日 辛卯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9일(신묘)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안정대.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九日 辛卯

- 獻納李普天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9일(신묘)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헌납 이보천(李普天)의 계
- 헌납 이보천(李普天)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이보천.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十七日 己亥

- 正言張至冕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條辭見上】
…… 新除授司諫李運彬, 時在京畿水原地, 獻納崔烜, 時在果川地, 正言姜文會, 時在楊州地. 請竝斯速乘駟上來事, 下諭. …… 答院曰, 不允. 下諭事, 處置事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17일(기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장지면(張至冕)의 계
- 정언 장지면(張至冕)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새로 제수한 사간 이운빈(李運彬)이 지금 경기 수원(水原) 땅에 있고, 헌납 최烜(崔烜)은 지금 과천(果川) 땅에 있으며, 정언 강문회(姜文會)는 지금 양주(楊州)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장지면.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十七日 己亥

- 己酉十一月十七日辰時，上御熙政堂。朝講入侍，大臣·備局堂上，追後引見入侍時，領事金鍾秀，特進官鄭好仁·李聖圭，同知事沈頤之，大司諫李命勳，持平金翰東，侍讀官金啓洛，檢討官金熙朝，參贊官尹行任，假注書鄭謙，記注官白慶楷·金鳳顯，以次進伏訖。……翰東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上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17일(기해)

-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지평 김한동이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함
- 기유년 11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입시하고 대신·비변사 당상을 추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사 김종수(金鍾秀), 특진관 정호인(鄭好仁)·이성규(李聖圭), 동지사 심이지(沈頤之), 대사간 이명훈(李命勳), 지평 김한동(金翰東), 시독관 김계락(金啓洛), 검토회 김희조(金熙朝), 참찬관 윤행임(尹行任), 가주서 정협(鄭謙), 기주관 백경해(白慶楷)·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김한동이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김한동.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十九日 辛丑

- 己酉十一月十九日辰時，上御熙政堂。朝講入侍時，領事金鍾秀，知事徐有隣，特進官閔鍾顯·尹師國，參贊官李集斗，侍讀官尹光顏，檢討官李義觀，持平李儒修，正言俞漢寓，假注書鄭謙，記注官趙慶遠·白慶楷，以次進伏訖。……漢寓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問)，依律處斷。【條辭見上】上曰，不允。……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19일(신축)

- 조강에 입시한 자리에서 정언 유한우(俞漢寓)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단하라고 건의함
- 기유년 11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조강에 입시했을 때 영사 김종수(金鍾秀), 지사 서유린(徐有隣), 특진관 민종현(閔鍾顯)·윤사국(尹師國), 참찬관 이집두(李集斗), 시독관 윤광안(尹光顏), 검토회관 이희관(李義觀), 지평 이유수(李儒修), 정언 유한우(俞漢寓), 가주서 정협(鄭謙), 기주관 조경원(趙慶遠)·백경해(白慶楷)가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유한우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한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十日 壬寅

- 己酉十一月二十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金鍾秀, 左參贊金華鎮, 行司直徐有隣, 行戶曹判書金履素, 行禮曹判書鄭昌順, 行司直李文源, 兵曹判書金尙集, 刑曹判書沈頤之, 訓練都正徐有大, 行副司直李漢豐, 漢城左尹金思穆, 行副司直金持默, 校理尹光顏, 正言俞漢寓, 左副承旨申耆, 假注書鄭謙, 事變假注書任燦, 記注官趙慶遠 · 金鳳顯, 以次進伏訖. …… 漢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條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0일(임인)

-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정언 유한우(俞漢寓)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벌하도록 건의함
- 기유년 11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 ·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우의정 김종수(金鍾秀),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행사직 서유린(徐有隣), 행 호조판서 김이소(金履素), 행 예조판서 정창순(鄭昌順), 행 사직 이문원(李文源), 병조판서 김상집(金尙集),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훈련도정 서유대(徐有大), 행 부사직 이한풍(李漢豐), 한성좌윤 김사목(金思穆), 행 부사직 김지묵(金持默), 교리 윤광안(尹光顏), 정언 유한우(俞漢寓), 좌부승지 신기(申耆), 가주서 정렴(鄭謙), 사변 가주서 임엽(任燦), 기주관 조경원(趙慶遠) · 김봉현(金鳳顯)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유한우가 말하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유한우.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十一日 癸卯

- 己酉十一月二十一日, 上御春塘臺. 抄啓文臣·宣傳官射講入侍時, 行都承旨蔡弘履, 左承旨趙衍德, 右承旨李集斗, 左副承旨申耆, 右副承旨尹行任, 假注書洪樂敏, 記注官趙慶遠·金鳳顯, 提學金鍾秀, 檢校提學吳載純, 檢校直閣李晚秀, 漢城右尹李時秀, 刑曹參議李勉兢, 行副司直李益運·李書九·洪義浩, 訓練大將徐有大, 摠戎使金思穆, 率抄啓文臣沈晉賢等, 及宣傳官諸人等, 入就位行四拜禮, 以次進前訖. …… 漢寓進前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上曰, 不允. 【出學條】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1일(계묘)

- 대신들이 사강(射講)에 입시한 자리에서 유한우(兪漢寓)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올문에 따라 처벌하라고 건의함
- 기유년 11월 21일,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갔다. 초계문신·선전관이 사강(射講)에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채홍리(蔡弘履), 좌승지 조연덕(趙衍德), 우승지 이집두(李集斗), 좌부승지 신기(申耆), 우부승지 윤행임(尹行任), 가주서 홍낙민(洪樂敏), 기주관 조경원(趙慶遠)·김봉현(金鳳顯), 제학 김종수(金鍾秀), 검교제학 오재순(吳載純), 검교직각 이만수(李晚秀), 한성우윤 이시수(李時秀), 형조참의 이면금(李勉兢), 행 부사직 이익운(李益運)·이서구(李書九)·홍의호(洪義浩),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 총융사 김사목(金思穆)이 초계문신 심진현(沈晉賢) 등과 선전관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들어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갔다. 〈중략〉 유한우(兪漢寓)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올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사강.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十八日 庚戌

- 正言朴聖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8일(경술)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박성집(朴聖集)의 계
- 정언 박성집(朴聖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성집.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十九日 辛亥

- 掌令趙武範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新除授執義李運彬, 時在京畿水原地, 掌令金寅燮, 時在陰竹地, 持平李敬臣, 時在咸鏡道安邊地, 請玆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9일(신해)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장령 조무범(趙武範)의 계
- 장령 조무범(趙武範)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 〈중략〉 새로 제수한 집의 이운빈(李運彬)이 지금 경기 수원(水原) 땅에 있고, 장령 김인섭(金寅燮)은 지금 음죽(陰竹) 땅에 있으며, 지평 이경신(李敬臣)은 지금 함경도 안변(安邊) 땅에 있습니다. 청컨대 모두 조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하라고 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조무범.

❖ 乾隆 五十四年 己酉 十一月 二十九日 辛亥

- 正言朴聖集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3년(1789) 기유년 11월 29일(신해)

- ☐ 죄인 김수현(金壽賢)을 율문에 따라 처단하라는 정언 박성집(朴聖集)의 계
- 정언 박성집(朴聖集)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 노(奴)로 삼은 죄인 김수현(金壽賢)에 대해 다시 국청을 설치하게 하고 엄히 형문하여 율문에 따라 처단하소서.”라고 하였다.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박성집.

1790年

(정조 14)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十日 辛卯

- 大司憲洪秀輔, 副提學李秉鼎, 大司諫尹曠, 應教徐配修, 掌令李錫夏, 獻納魚錫齡, 修撰李晴·閔昌燦, 副修撰吳泰賢啓曰, …… 掌令李錫夏啓曰, 妖宦壽賢之締結, 一種嗜利之凶徒, 爛熳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酌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獻納魚錫齡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10일(신묘)

- 大靜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요청하는 대사헌 홍수보(洪秀輔) 등의 계
- 대사헌 홍수보(洪秀輔), 부제학 이병정(李秉鼎), 대사간 윤호(尹曠), 응교 서배수(徐配修), 장령 이석하(李錫夏), 헌납 어석령(魚錫齡), 수찬 이청(李晴)·민창혁(閔昌燦), 부수찬 오태현(吳泰賢) 등이 아뢰었다. <중략> 장령 이석하가 아뢰기를, “간악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이 동지로 체결한 것은 일종(一種)의 사리를 즐기는 흉악한 무리로, 화통한 정상이 난만(爛熳)한 데다가, 저놈은 이미 명백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작처(酌處)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지라도 국법이 지엄한 것이니, 도현(倒懸)에서 노(奴)로 삼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김수현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헌납 어석령이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김수현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김수현은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十九日 庚子

- 大司憲洪秀輔, 副提學李秉鼎, 大司諫尹曠, 應教徐配修, 掌令李錫夏, 獻納魚錫齡, 正言金聖準, 修撰閔昌燾·李晴, 副修撰吳泰賢啓曰, …… 掌令李錫夏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 正言金聖準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院曰, 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19일(경자)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대사헌 홍수보(洪秀輔) 등의 계
- 대사헌 홍수보(洪秀輔), 부제학 이병정(李秉鼎), 대사간 윤호(尹曠), 응교 서배수(徐配修), 장령 이석하(李錫夏), 헌납 어석령(魚錫齡), 수찬 이청(李晴)·민창혁(閔昌燾), 부수찬 오태현(吳泰賢) 등이 아뢰었다. <중략> 장령 이석하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언 김성준(金聖準)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은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日 辛丑

- 掌令申大尹 · 朴猷煥, 持平沈奎魯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0일(신축)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신대윤(申大尹) 등의 계
- 장령 신대윤(申大尹) · 박유환(朴猷煥), 지평 심규로(沈奎魯)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의금부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日 辛丑

- 獻納李秉喆, 正言鄭晚錫·沈鏞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壽賢, 更令王府, 設鞠嚴問, 依律處斷. 請爲奴罪人河翼龍, 亟命王府, 設鞠得情, 夫正王法. …… 答院曰, 不允. 第十一件事, 斯速停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0일(신축)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헌납 이병철(李秉喆) 등의 계
- 헌납 이병철(李秉喆), 정언 정만석(鄭晚錫)·심집(沈鏞)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律)에 따라 처단해야 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11건의 일은 신속히 논계(論啓)하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四日 乙巳

- 以濟州牧使啓本，應資老人開錄事，傳于南鶴聞曰，今日口傳下批加資官教，卽爲下送完伯處，嚴飭傳教，俾絕海老人加資，無或遲滯事，分付該曹，仍又下諭于道伯及牧使處.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4일(을사)

- 제주목(濟州牧)의 노인 가자(加資)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계본(啓本)에 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계본(啓本)으로 가자(加資)해야 할 노인들을 개록(開錄)한 일에 대해 남학문(南鶴聞)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구전(口傳)으로 노인들에게 가자하는 교지를 내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하비(下批)하였으니 즉시 완백(完伯)에게 내려보내게 하고, 전교를 엄칙하게 하여, 절해(絕海)에서 노인에게 가자하는 것을 시켜서, 혹시라도 지체(遲滯)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여 그대로 하게 하고, 또한 도백(道伯)과 목사(牧使)에게도 하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응자노인, 노인가자.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四日 乙巳

- 南鶴聞, 以司饗院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 去十一月令進上唐柚子, 今日來到本院, 而開櫝看品, 則元數二千二百二十三箇內, 腐傷至於三百七十三箇之多,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4일(을사)

- 제주목(濟州牧) 11월령 진상 당유자(唐柚子)에 대한 사옹원의 계
- 남학문(南鶴聞)이 사옹원 감선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소봉(所封)한, 지난 11월령으로 진상한 당유자(唐柚子)가 오늘 사옹원에 도착해서, 껍질을 열고 품질을 살펴보니, 원래의 수 2,223개 안에, 썩고 상한 것이 373개로 많습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 물품이라고는 하지만, 막중한 진상이라서 관례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전하의 뜻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받아들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11월령, 당유자.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四日 乙巳

- 庚戌正月二十四日午時，上御重熙堂。左副承旨入侍時，左副承旨李益運，假注書鄭文始，記注官趙慶遠·金鳳顯，以次進伏訖。上曰，濟州老人加資下批，斯速入之事，分付。賤臣承命出傳。上命益運書傳教曰，承旨前望單子入之，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4일(을사)

- 제주(濟州)의 노인 가자(加資)에 대한 하비(下批)를 논의함
- 경술년 정월 24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켰을 때,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 가주서 정문시(鄭文始), 기주관 조경원(趙慶遠)·김봉현(金鳳顯) 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노인 가자(加資)에 대해서 하비(下批)했으니, 신속히 들어가게 하는 일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와서 전하였다. 임금이 이익운에게 명하여 글로 써서 전교하기를, “승지는 전망단자(前望單子)³⁸⁵를 들이라.”라고 명하고 나가니, 승사(承史)도 차례로 퇴출하였다.

△ 주제어: 제주, 노인 가자, 하비.

385) 전망단자(前望單子): 전에 천거하였던 후보자의 명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五日 丙午

- 李晩秀,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李喆模災實分等狀啓, 則本州置之尤甚, 大靜置之之次, 旌義置之稍實. 仍以爲本州新還之次里之尤甚戶, 尤甚里之之次戶, 五分一, 之次里之乞丐戶, 尤甚里之尤甚戶, 四分一, 尤甚里之乞丐戶, 三分一, 限麥秋停退, 除番米一斗式停退, 寺奴身貢米, 減一斗, 男丁大同米減一升, 舊還, 屢歎之餘, 責納無路, 亦爲停退, 軍兵操練, 依近例停退, 凡此舉行, 事當啓稟, 恭俟處分, 而候風往來, 動費數朔, 故敢援前例, 先舉行後啓聞, 事涉擅便, 不勝惶恐爲辭矣. 右陳諸條, 先舉行後狀聞, 乃是本州事例, 今亦依狀請施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5일(병오)

- 제주(濟州) 고을 신환(新還)을 보릿가을 때로 정퇴(停退)할 것을 처하는 비변사의 계
- 이만수(李晩秀)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즉접하니, 이 고을(제주)에 놓인 것이 더욱 심하고, 대정(大靜)이 다음으로 심하고, 정의(旌義)에 놓인 것이 조금 실합니다. 인하여 이 고을의 신환(新還)은 지차리(之次里)를 우심호(尤甚戶)로 삼고, 우심리(尤甚里)를 지차호(之次戶)로 삼은 것이 5분의 1이고, 지차리를 걸면호(乞丐戶)로, 우심리를 우심호로 삼은 것이 4분의 1이고, 우심리를 걸면호로 삼은 것이 3분의 1이어서 보릿가을[麥秋] 때까지를 한도로 하여 기한을 뒤로 물리고, 제번미(除番米) 1말씩을 뒤로 물리고, 시노(寺奴) 신공미(身貢米)는 1말을 줄여주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1되를 줄여주십시오. 구환(舊還)은 누점(屢歎)의 여파로 공납(貢納)할 길이 없으니, 또한 기한을 뒤로 물려 주십시오. 군병(軍兵)의 조련(操練)도 근례(近例)에 따라 뒤로 물려 주십시오. 무릇 이러한 일을 거행하는 것은 마땅히 계품(啓稟)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손히 처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기다려야만 왕래할 수 있어서 걸핏하면 여러 달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감히 전례에 따라 원용하여 먼저 거행하고 나중에 계문하도록 하는 것을 제멋대로 하는 데에 관계가 될까 봐 황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앞에 여러 조로 아뢴 것을 먼저 거행하게 하고 나중에 장문(狀聞)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고을(제주)의 사례(事例)이니, 지금도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재실분등장계, 대정, 정의, 신환, 보릿가을, 정퇴.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七日 戊申

- 李晩秀啓曰, 卽見濟州牧使李喆模守令·邊將薦舉單子, 則可合三人之三字, 落漏不書, 列名之下, 添書際字, 俱違格例. 原單子, 所當還下送, 而期限已迫, 雖不得不捧入, 事體所在, 不可無警. 該牧使, 從重推考, 道臣之循例上送, 亦係不察, 全羅監司閔台燾, 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7일(무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수령(守令)·변장(邊將) 천거단자(薦舉單子)에 관한 이만수(李晩秀)의 계
-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수령(守令)·변장(邊將) 천거단자(薦舉單子)를 즉견하니, 3인이 마땅하다는 3자가 누락되어 적히지 않았고, 열명(列名) 아래에 끝자를 첨서(添書)하였는데, 다 격식에 맞지 않았으므로 원단자(原單子)는 마땅히 도로 내려보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期限)이 이미 박두했으니, 비록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체(事體)에 있어서 꾸짖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해당 목사는 종중추고 하고, 도신(道臣)의 순례(循例)에 따라 올라오게 하고, 또한 잘 살피지 않은 것과 관계된 전라감사 민태혁(閔台燾)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수령·변장 천거단자.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一月 二十九日 庚戌

○ 庚戌正月二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 · 備局堂上, 引見入侍時, 右副承旨尹行任, 假注書鄭文始, 事變假注書柳師模, 記注官趙慶遠 · 金鳳顯, 左議政蔡濟恭, 行左參贊金華鎮, 行禮曹判書徐有隣, 行司直鄭昌順, 行副司直鄭好仁, 兵曹判書李埤, 刑曹判書沈頤之, 訓練都正徐有大, 行副司直洪秀輔 · 李漢豐, 漢城右尹金思穆, 開城留守李致中, 行副司直李獻慶 · 金持默, 修撰韓光植, 以次進伏訖. …… 濟恭曰, 濟州牧使李喆模, 以前任陽德時, 公穀虧欠, 入於現告, 今當拿問, 而頃見分等狀聞, 本州亦被災, 所管兩邑, 有尤甚之次之分. 此時遞易, 恐不無絕島民弊, 其代待麥秋差出, 恐合事宜,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 【出舉條】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월 29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 분등장문(分等狀聞)과 체역(遞易)에 관해 논의함
- 경술년 정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대신 ·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기 위해 입시(入侍)했을 때, 우부승지 윤행임(尹行任), 가주서 정문시(鄭文始), 사변 가주서 유사모(柳師模), 기주관 조경원(趙慶遠) · 김봉현(金鳳顯),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행좌참찬 김화진(金華鎮), 행예조판서 서유린(徐有隣), 행사직 정창순(鄭昌順), 행부사직 정호인(鄭好仁), 병조판서 이갑(李埤), 형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훈련도정 서유대(徐有大), 행부사직 홍수보(洪秀輔) · 이한풍(李漢豐), 한성우윤 김사목(金思穆), 개성유수 이치중(李致中), 행부사직 이헌경(李獻慶) · 김지묵(金持默), 수찬 한광식(韓光植) 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중략> 채제공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가 전임(前任) 양덕(陽德: 양덕현감)에 있을 때, 공곡(公穀)을 축내고 현고(現告)³⁸⁶⁾에 들었으니, 지금 당장 붙잡아와서 문초해야 하나, 지난번 분등장문(分等狀聞)을 보건대, 이 고을(제주)도 피해(被災)하고, 관할하는 두 고을(정의와 대정)도 더욱 심한 곳이 있고, 다음 가는 곳도 있어서 나눕니다. 이런 때에 변장(邊將)을 체역(遞易)하면 절도(絶島)의 민폐(民弊)가 없을 수가 없으니, 그 대신에 맥추(麥秋)를 기다렸다가 차출(差出)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감달(敢達)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분등장문.

386) 현고(現告): 본인이 나와서 고발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五日 丙辰

- 金履翼, 以義禁府言啓曰, …… 李喆模以濟州牧使, 時在任所, 而因大臣陳達, 有待麥秋差代之命, 麥秋後, 拿問處之, 何如? 傳曰, 允. 已拿囚者, 考律草記勘放.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5일(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나문(拿問)에 관한 의금부의 계
- 김이익(金履翼)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이철모(李喆模)가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소에 있으나, 대신(大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맥추(麥秋)까지 기다렸다가 차대(差代)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맥추 이후에 나무(拿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이미 나수(拿囚)한 사람은 고율(考律)해서 초기(草記)를 해서 감방(勘放)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철모, 제주목사.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十三日 甲子

○ 持平李儒修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條辭見上】 答府曰, 不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13일(갑자)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이유수(李儒修)의 계

○ 지평 이유수(李儒修)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 【조사(條辭)가 위에 보임】 의 금부에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十三日 甲子

- 全羅道儒生幼學朴泰奎 · 閔鎮邦 · 朴必潤 · 韓東楨 · 崔鎮夏 · 朴壽民 …… 等疏曰, …… 臣等之道內扶安縣, 有道東書院, 卽麗朝文貞公金坵俎豆之所也. 此已創建於皇明嘉靖甲午, 而至于先朝丙午, 乃以贈領議政忠正公臣洪翼漢追配焉, 蓋以文貞公講學之鄉, 而杖履之所憩也, 忠正公佩符之邑, 而遺愛之所寓也. 然則本縣之置是院者, 豈等閑祭社之比哉? 臣等請舉其人道學忠節之盛, 而後及恩額之請可乎? 坵之道學文章, 輝映簡冊, 而平章功業, 卽其餘事, 蓋當勝國之際, 文教未敷, 異端肆行, 斯人獨能扶正斥邪, 溯源於洙泗, 尋緒於洛 · 閩, 扛耑斯文, 丕闡正學, 蔚然爲百世師表, 而伊時佛法寢盛, 舉國崇信, 權臣崔沆請跋圓覺經, 坵守正不撓, 詩以譏斥, 沆乃銜之., 終至左遷於濟州通判, 及爲吏部典書, 而胡元使价之出來也, 亂臣康允紹, 亦以胡服, 自比客使, 而見王不拜, 故坵劾之以夷狄之道, 此乃春秋攘夷之義也.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13일(갑자)

- 전라도 유생 박태규(朴泰奎) 등이 충정공 홍익한(洪翼漢)의 사액을 상소함
- 전라도 유생 유학 박태규(朴泰奎) · 민진방(閔鎮邦) · 박필운(朴必潤) · 한동정(韓東楨) · 최진하(崔鎮夏) · 박수민(朴壽民) 〈중략〉 등이 상소하기를, “〈중략〉 신들은, 전라도 부안현(扶安縣)에 도동서원(道東書院)이 있는데 바로 고려조(高麗朝)의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를 제사하는 곳입니다. 명(明)나라 가정(嘉靖) 갑오년(1534)에 창건하고, 선조(先朝: 영조) 병오년(1726)에 이르러 증 영의정 충정공(忠正公) 홍익한(洪翼漢)을 추배(追配)하였습니다. 대개 문정공이 생전에 머물러 살았던 곳이고, 충정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에 이 서원을 설치한 것이 어찌 제사(祭社)를 등한(等閑)히 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들이 청컨대, 그 사람이 도학(道學)의 충절(忠節)에 대한 성의를 들고서, 나중에 급기야 사액의 은전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구(坵: 김구)의 도학문장(道學文章)이 간책(簡冊)에 밝게 나타나고, 평장(平章)의 공업(功業)은 곧 그 나머지 일입니다. 대개 고려조 때, 문교(文教)가 널리 퍼지지 못하여 이단(異端)이 멋대로 횡행하는 시기를 당하여 홀로 유교를 추켜세우고 사교(邪教)를 배척하여, 수사(洙泗: 공자와 맹자)에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낙민(洛閩)에서 실마리를 찾고, 사문(斯文)을 마주 들어 매고, 정학(正學)을 천명(闡明)함

으로써 우뚝하게 백세(百世)의 사표(師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불법(佛法)이 침성(寢盛)하여 거국(擧國)으로 승신(崇信)하게 되었습니다. 권신(權臣) 최항(崔沆)이 《원각경(圓覺經)》의 발문(跋文)을 써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김구는 바른 도리를 지켜 굽히지 않고, 시(詩)를 지어 나무라고 꾸짖었는데, 최항이 이에 감정을 품게 되어, 끝내는 제주 통판(濟州通判)에 좌천(左遷)되었고, 급기야 이부전서(吏部典書)가 되었습니다. 원(元)나라의 사신 개지(价之)가 나왔을 때에는 난신(亂臣) 강윤소(康允紹)가 또한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나와 스스로 객사(客使)인 체 굴면서 임금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으므로, 김구가 그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적(夷狄)의 도(道)로써 한 것인데, 이것은 곧 춘추(春秋) 양이(攘夷)의 의리인 것입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疏)를 자세히 보았다. 첩액(疊額)은 이미 선조(先朝)에 금령(禁令)이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나서 학업을 닦으라.”라고 하였다.³⁸⁷⁾ <하략>.

△ 주제어: 홍익한, 제주통판.

387)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1790) 2월 13일 기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十八日 己巳

○ 執義洪樂淵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18일(기사)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집의 홍낙연(洪樂淵)의 계

○ 집의 홍낙연(洪樂淵)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 임금이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十九日 庚午

- 庚戌二月十九日辰時，上御熙政堂. …… 畊進前奏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不允. 畊曰，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亟命王府設鞫得情，夫正王法. 上曰，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19일(경오)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유경(柳畊)의 계
- 경술년 2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중략> 지평 유경(柳畊)이 앞으로 나와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二十二日 癸酉

- 庚戌二月二十二日辰時，上御誠正閣。…… 上曰，下直守令進前，奏職姓名，可也。大年進前奏職姓名。上曰，向時旌義差遣，不但以雖治擇差，亦無異於行遣，今此襄陽水土，雖云好矣。弊癘可謂不些，蓋自癸卯以後，僧弊民瘼，比前尤痼，瘡痍未蘇，釐革猝難云。下去後，與道伯商議善處，惕念封物，無負朝家特簡之意，可也。若文·光濩等，以次進前奏職姓名訖。命讀宣諭訖，命先退，大年等以次先退。……。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22일(계유)

□ 정의(旌義)에 차견(差遣)하는 건에 관한 논의함

- 경술년 2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하직(下直)할 수령(守令)은 앞으로 나와서 직(職)과 성명(姓名)을 아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신대년이 앞으로 나와서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앞으로 정의(旌義)에 차견(差遣)할 때는 비단 다스리는 것으로 택차(擇差)할 것이 아니라서, 또한 행견(行遣)³⁸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 양양(襄陽) 수토(水土)는 비록 좋기는 하다. 고치기 어려운 폐단은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대개 계묘년(1783) 이후부터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도 전에 비해 더욱 고질화되었고 한해(旱害)와 수재(水災)로 인한 고통이 회복되기도 전에 뜯어고쳐 정리하기는 갑자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하거(下去)한 뒤에, 도백(道伯)과 더불어 상의(商議)하여 잘 처리하고, 봉물(封物)을 경계하여 두려워하고, 조가(朝家)에서 특간(特簡)하는 뜻에 짐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문(文)·광호(光濩) 등과 같이 차례로 나와서 직과 성명을 아뢰는 것을 마쳤다. <하략>.

△ 주제어: 정의.

388) 행견(行遣): 유배를 감.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二月 二十六日 丁丑

- 持平朴奎淳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三司合啓曰, 不允. 【五字刀割】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2월 26일(정축)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박규순(朴奎淳)의 계
- 지평 박규순(朴奎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삼사(三司)의 합계(合啓)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5자가 도할(刀割) 됨】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十日 庚寅

- 副司直姜游疏曰, …… 至於各道沿海邑, 則有時相須於交濟倉及耽羅島, 而嶺隘關防之邑, 又以軍餉爲重, 雖穀多之邑, 不可用耗作錢之例, 以三分二留庫, 一以減半分之耗, 一以爲不時之需, 而若言耗作錢之規, 每年市直, 不同, 逐年有增減, 逐邑有異同, 則吏緣而幻弄, 民眩於舉行, 以寧失於民之意, 從廉價定式, 永爲頒布, 使之年豐而不至於病民, 歲歉則反歸於利民, 年年無所增減, 而開倉之時, 卽許耗條作錢, 則民皆以知數舉行, 無見欺之弊矣.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10일(경인)

□ 부사직 강유(姜游)의 상소

- 부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중략〉 각도(各道) 연해 고을에 이르러서는 때때로 교제창(交濟倉) 및 탐라(耽羅)에 서로 의뢰하기도 하겠으나, 재[嶺]로 가로막힌 요충 지역에는 군량(軍糧)이 중요하므로 이런 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분의 2를 창고에 남겨두어서, 1분으로는 절반의 모조(耗條)를 감해주고, 1분으로는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하소서. 작전(作錢)의 규례로 말하면, 매년 시장 가격이 같지 않은 데다가 아전들이 틈새를 비집고 농간을 부리는 통에 백성들은 거행함에 있어 어리둥절해합니다. 차라리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싼 가격을 따르는 것으로 규식을 정하여 영구히 반포(頒布)를 하고, 개창(開倉)을 할 때에 즉시 모조를 제(除)하고 작전하게 되면, 백성들은 수량을 알고 거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속임수를 당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⁸⁹⁾ 〈하략〉.

△ 주제어: 탐라.

389)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1790) 3월 10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十一日 辛卯

- 掌令許暎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11일(신묘)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허전(許暎)의 계
- 장령 허전(許暎)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日 庚子

- 持平李日運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0일(경자)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이일운(李日運)의 계
- 지평 이일운(李日運)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二日 壬寅

○ 持平朴東俊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2일(임인)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박동준(朴東俊)의 계

○ 지평 박동준(朴東俊)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七日 丁未

- 行右承旨洪明浩, 左副承旨洪聖淵啓曰, 臣等卽伏見義禁府赦文書, 有濟州牧園籬安置罪人俞彦鎬放送之命, 臣等相顧愕眙, 莫省所以也. 噫, 俞彦鎬之罪, 可勝誅哉? 渠之負犯何如, 關係何如, 而因一赦典, 忽有放釋之教, 有若尋常罪謫之遇赦蒙於者然, 此何舉也, 此何事也? 噫, 以渠罪犯, 當初之特貸一律, 已是失刑之大者, 王章未施, 輿憤尙激, 臣等職在惟允之地, 所當直爲繳還, 而飭教截嚴, 雖不得不頒布, 衷憤所激, 不容泯默, 不暇緩聲. 茲敢冒死聯籲. 伏乞聖明, 亟加三思, 特寢俞彦鎬放送之命, 千萬顯祝, 惶恐敢啓. 傳曰, 還給.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7일(정미)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俞彦鎬)를 방송(放送)하는 것에 대해 의논함
- 행우승지 홍명호(洪明浩), 좌부승지 홍성연(洪聖淵)이 아뢰기를, “신들이 엎드려서 의금부 사문서(赦文書)를 즉견하니,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俞彦鎬)를 방송(放送)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라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유언호의 죄를 어찌 다 주벌(誅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 죄가 어떠했습니까?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의 사전(赦典)으로 인해서, 갑자기 방석(放釋)하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마치 예사로 온 일로 귀양을 보냈다가 사유(赦宥)를 만나 곧 석방되는 것처럼 하였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것이고, 어떤 일입니까? 아! 그의 죄범(罪犯)은 당초에 특별히 일률(一律)을 용서한 것도 이미 큰 실형(失刑)인 것입니다. 왕법을 시행하지는 못한 것은 여분(輿憤)을 오히려 격분하게 하는 것이니, 신들의 직분은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어서, 마땅히 바로 되돌려 올려야 하겠으나 작환(繳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직하는 하교가 몹시 엄하여 부득불 반포를 하였습니다만, 충정에 격발된 바를 모른 채하고 있을 수 없고, 말을 완곡하게 아뢴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연명으로 하소연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도 속히 다시 더 생각하여, 특별히 유언호를 방송하라는 명을 취소하여 준다면 천만 공경히 축원함을 금할 수 없겠습니다.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되돌려 주라.”라고 하였다.³⁹⁰⁾

△ 주제어: 제주목, 유언호.

390)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1790) 3월 27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七日 丁未

- 以禁府赦文書，傳于洪聖淵曰，當待諸道放未放處分，而此事即早欲處分者，間因事端，未免中止。大抵外面看者，豈不曰，刑政之輕重倒置乎？雖從加倍之律，兼示大懲之意，而名以大官，則與庶僚自別，屢年絕海，亦足勘其罪。濟州牧圍籬安置罪人俞彥鎬，特爲放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7일(정미)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俞彦鎬)의 석방에 대해 임금이 전교함
- 금부(禁府)의 사문서(赦文書)로서 홍성연(洪聖淵)에게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도(道)에서 석방할 죄수와 석방해서는 안 될 죄수의 명단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일찍이 처분을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사단(事端)으로 인하여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대체로 겉면만을 보는 사람들은 어찌 형벌에 관한 정사가 경중이 뒤바뀌었다고 말들을 하지 않겠는가? 비록 갑절 더한 형벌을 적용하여 호되게 징계하는 뜻을 겸하여 보이기는 하였으나, 명색이 대관(大官)이니만큼 일반 관료와는 자별(自別)한 법이다.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진 섬에 있게 한 것만 하더라도 그 죄를 충분히 다스린 셈이니,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한 죄인 유언호(俞彦鎬)를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³⁹¹⁾

△ 주제어: 제주목, 유언호.

391)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1790) 3월 27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七日 丁未

- 掌令沈鏗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 亟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正言李奭濟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十一件事, 斯速停啓.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7일(정미)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심갱(沈鏗)의 계
- 장령 심갱(沈鏗)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을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정언 이석제(李奭濟)가 아뢰기를,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에 명령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제11건의 일은 신속히 정계(停啓)하고, 하유한 일을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七日 丁未

- 副校理金熙朝, 修撰徐配修劄曰, 伏以, 臣等即伏見傳教下者, 有濟州牧安置罪人俞彦鎬放送之命, 臣等於此, 誠不勝驚歎之至. 噫, 彦鎬之罪, 可勝言哉? 時當崩迫於聖心, 將欲洞諭於廷紳, 凡今日北面於殿下之庭者, 孰不痛心飲泣, 趨承召命, 而彼彦鎬者, 抑獨何心, 牢臥其家, 伊時廷臣之以書以伴, 絡續走報者, 不知其幾次, 而終不驚動, 晚到朝房, 此已萬萬痛駭. 及其紫衣之促召, 始乃文陛之強登, 而蹣跚之步, 難掩假飾, 緘結之狀, 不忍正視, 究厥罪狀, 決難容貸, 薄置海島, 曾未幾何而乃加全釋, 不少留難, 有若尋常罪謫之遇赦即放者然, 不知殿下何爲而有此舉也? 罪犯若是其深重, 而疏放若是其輕遽, 刑政之失當, 已無可言, 公議之憤惋, 去而愈激, 此而若不嚴懲, 其何以立君綱而勵臣分哉? 伏願聖明, 特加三思, 亟寢成命焉. 答曰, 省劄具悉. 勿煩.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7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안치 죄인 유언호(俞彦鎬)의 방송(放送)에 관한 부교리 김희조(金熙朝) 등의 차자(劄子)
- 부교리 김희조(金熙朝), 수찬 서배수(徐配修)가 차자(劄子)를 올려 아뢰기를, “엎드리건대, 신들이 엎드려서 전교를 내린 것을 즉시 보았는데, 제주목(濟州牧) 안치 죄인 유언호(俞彦鎬)를 방송(放送)하라는 명이 있습니다. 신들이 이에 참으로 놀랍고 탄식스러움에 다다른 것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 유언호의 죄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에 마땅히 성심(聖心)에 무너져서 어지럽게 흩어졌으니 장차 조정의 신하들에게 통유(洞諭)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릇 지금 전하의 뜰에서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들은 누가 마음이 아파서 울음을 삼키고, 달려와서 소명(召命)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언호라는 자는 무슨 심사로 그 집에 굳이 누워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때에 조정의 신하들은 글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잇따라 주보(走報)한 것은 몇 차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내 놀라워하지 않고, 느지막이 조방(朝房)에 다다랐으니, 이것은 이미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급기야 자의(紫衣)가 빨리 오도록 재촉하였는데, 비로소 문폐(文陛)³⁹²가 올라가서 비틀거리면서 걸으면서, 가식(假飾)을 가리기가 어렵고, 입을 다무는 상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죄상을 캐 보면 결코 용서해

392) 문폐(文陛): 천자나 제후의 어전 앞에 있는 섬돌로 양 끝에 문양이 새겨져 있음.

주기 어려워서 해도(海島)에 안치했다가, 얼마 안 가서 완전 석방을 더하시니,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않고, 마치 예사로운 일로 귀양을 보냈다가 사유(赦宥)를 만나 곧 석방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전하(殿下)가 어찌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범(罪犯)이 이와 같이 심중(深重)하고, 소방(疏放)³⁹³⁾도 이와 같이 경거(輕遽)한데, 형정(刑政)이 얼마나 잘못된 형정인지 이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공의(公議)의 분완(憤惋)은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그 어찌 군강(君綱)을 세우고 신하의 분수를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임금께서 특별히 다시 더 생각해 보고서 빨리 성명(成命)을 정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차자(笱子)를 살펴보고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유언호, 방송.

393) 소방(疏放):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하여 놓아주는 것.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三月 二十八日 戊申

- 洪聖淵,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大靜縣圍籬安置罪人兪彦鎬放送事, 承傳啓下矣. 兪彦鎬, 卽爲撤圍籬放送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3월 28일(무신)

- ☐ 대정현(大靜縣) 위리안치 죄인 유언호(兪彦鎬)의 방송(放送)에 관한 의금부의 계
- 홍성연(洪聖淵)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위리안치 죄인 유언호(兪彦鎬)의 방송(放送)에 대한 것은 승전(承傳)으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유언호를 즉시 가시울타리를 거두고 석방할 것을 명하여 해당도(道)의 도신(道臣)과 해당 목사(牧使)에게 분부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위리안치 죄인, 유언호, 방송.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四日 甲寅

- 持平朴聖集啓曰, 妖宦壽賢之締結一種嗜利凶徒, 爛漫和通之狀, 渠既明白納招, 則豈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乎? 今此的處之命, 雖出好生之德意, 而三尺至嚴, 不可島縣爲奴而止,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爲奴罪人河翼龍, 敢以罔測之說, 做作眞諺之書, 暗投宮禁之中, 欲售危逼之計, 究其所爲, 萬萬窮凶, 決不可一刻容貸於覆載之間, …… 答曰, 不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4일(갑인)

- 大靜縣(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박성집(朴聖集)의 계
- 지평 박성집(朴聖集)이 아뢰기를, “요사스러운 환관 김수현(金壽賢)은 일종의 이익을 좋아하는 흉악한 무리들과 체결(締結)하여 난만(爛漫)하게 화통(和通)한 상황은 거개(渠既) 명백(明白)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명은 비록 호생(好生)의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지만, 장오(贓汚)의 율(律)은 법이 지극히 엄하니, 도현(島縣)에서 노(奴)로 삼게 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로 삼게 한 김수현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四日 甲寅

- 庚戌四月初四日酉時，上御重熙堂。…… 思穆曰，各色所囚賊人，當爲發配於絕島，而楸·黑·耽羅，則非特教，不得發配，故敢此，仰達矣。上曰，楸子島則無官長，分排於黑山島·濟州等地，押送之時，各別申飭，無如春川事，可也。上曰，錦城尉葬事，合窆於坡州云，墓上閣，雖自地方官造給，而制度不可如前高大，務從輕便省弊之方，可也。…….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4일(갑인)

□ 절도(絶島)에 발배(發配)에 대한 경기감사 김사목(金思穆)의 계

- 경술년 4월 초4일 유시에 임금의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경기감사) 김사목이 아뢰기를, “각색(各色) 소수(所囚) 적인(賊人)은 마땅히 절도(絶島)에 발배(發配)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자도(楸子島)·흑산도·탐라(耽羅)는 특교(特教)가 없다면 발배(發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러한 것을 양달(仰達)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자도에는 관장(官長)이 없고, 흑산도·제주(濟州) 등지에는 분배(分排)하여 압송(押送)할 때에는 각별하게 신칙하여, 춘천의 일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성 위장(尉葬)의 일은 파주에 합정(合窆)했다고 한다. 묘상각(墓上閣)은 비록 절로 지방관(地方官)을 조급(造給)하였으나, 제도(制度)는 전과 같이 높고 크게 할 수 없다. 경편(輕便)하게 폐단을 더는 방도를 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 발배.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十日 庚申

- 掌令安鼎大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10일(경신)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안정대(安鼎大)의 계
- 장령 안정대(安鼎大)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을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十日 庚申

- 正言洪秉臣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10일(경신)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정언 홍병신(洪秉臣)의 계
- 정언 홍병신(洪秉臣)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로서, 사대부와 교결(交結)하고 마침내 흉적(凶賊)의 근저(根柢)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망하게도 그 궁흉극악(窮凶極惡)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서 노로 삼게 한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十一日 辛酉

○ 持平權儔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11일(신유)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권빈(權儔)의 계

○ 지평 권빈(權儔)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十一日 辛酉

- 庚戌四月十一日卯時，上御熙政堂. …… 天行進奏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更令王府，設鞫嚴問，依律處斷. 上曰，不允. 天行曰，請爲奴罪人河翼龍，亟命王府，設鞫得情，決正王法. 上曰，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11일(신유)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대사간 박천행(朴天行)의 계
- 경술년 4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대사간 박천행(朴天行)이 나와서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十三日 癸亥

- 掌令高應觀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13일(계해)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고응관(高應觀)의 계
- 장령 고응관(高應觀)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十八日 戊辰

- 掌令高應觀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18일(무진)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고응관(高應觀)의 계
- 장령 고응관(高應觀)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을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二十一日 辛未

- 持平崔重圭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21일(신미)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최중규(崔重圭)의 계
- 지평 최중규(崔重圭)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뢰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二十六日 丙子

- 掌令許映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26일(병자)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장령 허전(許
映)의 계
- 장령 허전(許映)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
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
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二十七日 丁丑

○ 持平李敬心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依律處斷. …… 答曰, 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27일(정축)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지평 이경심(李敬心)의 계

○ 지평 이경심(李敬心)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二十八日 戊寅

- 獻納柳雲羽啓曰,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更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答曰, 不允. 第九件事, 斯速停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28일(무인)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헌납 유운우(柳雲羽)의 계
- 헌납 유운우(柳雲羽)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律)에 따라 처단해야 합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제9건의 일은 신속하게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四月 二十九日 己卯

- 庚戌四月二十九日卯時，上御熙政堂. …… 泰賢曰，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依律處斷. 上曰，不允. 泰賢曰，請興陽縣爲奴罪人河翼龍，亟令王府，設鞫得情，快正王法. 上曰，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4월 29일(기묘)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오태현(吳泰賢)의 계
- 경술년 4월 2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오태현(吳泰賢)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을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五月 二日 壬午

- 獻納李彥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請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亟令王府, 設鞫嚴問, 依律處斷. …… 下諭.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5월 2일(임오)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헌납 이언우(李彦祐)의 계
- 헌납 이언우(李彦祐)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로서, 사대부와 교결(交結)하고 마침내 흉적(凶賊)의 근저(根柢)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망하게도 그 궁흉극악(窮凶極惡)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정현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을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하게 문초하여 율(律)에 따라 처단하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五月 九日 己丑

- 備邊司薦望, 以李鴻運爲濟州牧使.

❖ 정조 14년(1790) 경술년 5월 9일(기축)

- 이홍운(李鴻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으로 이홍운(李鴻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이홍운, 제주목사.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五月 二十二日 壬寅

-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李鴻運,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5월 22일(임인)

-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이홍운(李鴻運)을 단망(單望)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이홍운(李鴻運)을 단망(單望)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단망.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六月 十一日 庚申

- 備忘記, 濟州牧使李鴻運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14년(1790) 경술년 6월 11일(경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이 하직함

- 비망기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이 하직(下直)하였다. 장궁(長弓) 1장,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개,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하직.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六月 十一日 庚申

- 庚戌六月十一日卯時，上御重熙堂。…… 濟州牧使李鴻運，…… 以次進伏訖。上曰，守令以次奏職姓名，可也。鴻運進前，奏職姓名。上曰，本州處在絕域，近又荐歉，言念民事，丙枕何安？須體朝家軫念之意，惕意對揚，使島民得免顛連之苦，可也。樂淵進前，奏職姓名。上曰，下去善爲，可也。…….

❖ 정조 14년(1790) 경술년 6월 11일(경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하직에 따른 제주(濟州)에 대한 조치를 논의함
- 경술년 6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 <중략>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守令)은 차례로 직(職)과 성명(姓名)을 아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홍운이 앞으로 나와서,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고을(제주)은 절역(絶域)에 있어서, 천겸(荐歉) 또한 자주 있다. 백성의 일을 생각하노라면 잠자리가 어찌 편안하겠는가? 모름지기 조정에서 생각하는 뜻을 본받아 조심해서 대양(對揚)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六月 二十四日 癸酉

○ 傳于曹允大曰, …… 濟州尹範聖, …… 竝放.

❖ 정조 14년(1790) 경술년 6월 24일(계유)

□ 제주(濟州)에 있는 윤범성(尹範聖) 등을 석방하라는 전교

○ 조윤대(曹允大)에게 전교하기를, “〈중략〉 제주(濟州) 윤범성(尹範聖)을 〈중략〉 모두 석방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윤범성.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六月 二十五日 甲戌

- 趙衍德, 以義禁府言啓曰, …… 濟州尹範聖, …… 等, 竝放事, 命下矣. …… 傳曰, 既有先舉行後狀聞之命, 則豈可如是列書草記乎? 此草記勿施, 只以頒下別諭, 卽爲舉行後狀聞之意分付, 措辭爲之, 可也.

❖ 정조 14년(1790) 경술년 6월 25일(갑술)

- 제주(濟州) 윤범성(尹範聖) 등을 방송(放送)하라는 의금부의 계
- 조연덕(趙衍德)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 윤범성(尹範聖), 〈중략〉 등을 방송(放送)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거행했다면 나중에 장문하라는 명이 어찌 이와 같이 초기(草記)에 열서(列書)할 수 있습니까? 이 초기(草記)를 시행하지 마십시오. 다만 별유(別諭)를 반하(頒下)하여 즉시 거행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는 뜻을 분부하여, 조사(措辭)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윤범성.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四日 壬午

○ 親臨都目, 吏批, …… 李徽祚爲濟州判官,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4일(임오)

□ 이휘조(李徽祚)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친임도목(親臨都目)에 대한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이휘조(李徽祚)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는다. 〈중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휘조, 제주판관.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五日 癸未

○ 庚戌七月初五日辰時, 上御熙政堂. …… 濟州判官李徽祚, …… 以次進伏. 上曰,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5일(계묘)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를 면대(面對)한 일에 관한 건

○ 경술년 7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 〈중략〉 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이휘조.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十日 戊子

- 平安監司沈頤之疏曰, …… 以平安監司沈頤之上疏, 傳于柳文養曰, 其中一名, 豈欲煩諸文字者? 餘二名, 一則濟州被配之同罪, 疎放已久, 一則以法外已多疎放之人, 且以渠同生輩言之, 復一咸一, 次第蒙放, 則獨斷斷於健一, 亦不成說, 此上疏卽爲還下送, 只令舉行, 形止狀聞, 萬一遲滯, 當該道伯, 當重勘, 此意, 令政院空書目題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10일(무자)

- 제주(濟州)에 귀양 왔던 사람의 석방과 관련된 심이지(沈頤之)의 상소에 관한 전교
- 평안감사 심이지(沈頤之)가 상소하기를, <중략> 평안감사 심이지의 상소에 대해 유문양(柳文養)에게 전교하기를, “<중략> 그들 중 1명에 대해서야 어찌 글로 번거롭게 표현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나머지 2명에 대하여 말한다면, 1명은 같은 죄로 그와 동등한 죄를 짓고 제주(濟州)에 귀양 갔던 자가 풀려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또 나머지 1명은 그와 동등한 죄를 짓고도 법 밖의 일이라 하여 이미 풀려난 사람이 많다. 또 그들의 동생들로 말하더라도 복일(復一)과 함일(咸一)이 차례로 용서를 받았는데 유독 건일(健一)에게만 박절하게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장계를 도로 내려보내고 오직 그 집행한 결과만을 장계로 알리게 해야 한다. 만일 지체하면 해당 감사를 엄히 처벌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정원(政院)으로 영을 내려 공서목(空書目)으로 제송(題送)하게 하라.”³⁹⁴⁾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심이지, 윤문양.

394)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1790) 7월 10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十一日 己丑

- 李祖承啓曰, 未下直守令, 竝令當日辭朝事, 命下矣. …… 濟州判官李徽祚, …… 竝卽牌招, 以爲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11일(기축)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의 사조(辭朝)에 관한 이조승(李祖承)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아뢰기를, “하직하지 못한 수령은 모두 당일에 사조(辭朝)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증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 <증략>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여, 서경(署經)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이휘조.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十二日 庚寅

- 尹行任, 以義禁府刑曹言啓曰, 全羅道定配罪人等, 依別單書下, 珍島大阿只·朴瑀, 咸平福梅, 順天光浩, 興陽京, 蛇渡汶覺, 鹿島金聖欽, 黑山島命卜, 扶安九合, 古今島大何只, 楸子島順丁, 光陽弼模, 荏子島天渙, 淳昌直等, 竝放, …… 楸子島金龍成 …… 等, 竝永屬官奴婢, 徒流案更勿懸錄事, 分付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12일(경인)

- 추자도(楸子島) 유배인 순정(順丁)과 김용성(金龍成)에 관한 의금부와 형조의 계
- 윤행임(尹行任)이 의금부와 형조의 말을 아뢰기를, “전라도 정배죄인들을 별단(別單)의 서하(書下)에 따라, 진도(珍島)의 큰아기[大阿只]와 박우(朴瑀), 함평(咸平)의 복매(福梅), 순천(順天)의 광호(光浩), 흥양(興陽)의 경(京), 사도(蛇渡)의 문각(汶覺), 녹도(鹿島)의 김성흠(金聖欽), 흑산도(黑山島)의 명복(命卜), 부안(扶安)의 구합(九合), 고금도(古今島)의 큰아기[大阿只], 추자도(楸子島)의 순정(順丁), 광양(光陽)의 필모(弼模), 임자도(荏子島)의 천환(天渙), 순창(淳昌)의 직(直) 등을 모두 석방하십시오. <중략> 추자도의 김용성(金龍成) <중략> 등을 모두 영원히 관노비(官奴婢)에 소속시키고, 도류안(徒流案)을 다시 현록(懸錄)하지 말게 할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순정, 김용성.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十七日 乙未

- 李敬五,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三匹船中故失, 一匹到江頭病留, 實納馬一百九十六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17일(을미)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 세공마에 대한 사복시의 계

- 이경오(李敬五)가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오는 선운 세공마 200필 안에, 3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1필은 강두(江頭)에 도착하여 병으로 남겨서, 실납마(實納馬)는 196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別單)으로 서입(書入)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세공마.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十九日 丁酉

- 柳文養,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六匹到中路病留, 實納馬八十二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19일(정유)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연례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유문양(柳文養)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오는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노태마 20필을 합한 88필 안에, 6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하여 병으로 남겨서 실납마(實納馬)는 82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게 하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연례진상마.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十九日 丁酉

- 柳文養,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李喆模, 遞任進上馬三匹, 前判官金鳳吉, 遞任進上馬三匹及山馬監牧官金德亨, 己酉·庚戌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山馬監牧官封進馬匹, 不但體小, 名以封進, 焉敢若此? 若此則今之濟馬, 不得爲御乘乎? 該監牧官, 所當捉來決棍, 而姑爲參酌, 本牧各場中, 雌雄馬各二匹, 體大步捷, 極擇上送事, 分付該牧使及該牧官處, 待其上來, 卽爲待令. 如是特教之後, 若不以合於御乘者, 上送, 牧官及該牧使, 各別重勘, 以此嚴飭, 可也.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19일(정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와 김봉길(金鳳吉)의 체임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유문양(柳文養)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체임진상마 3필, 전 판관 김봉길(金鳳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과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덕형(金德亨)의 기유(己酉: 1789)·경술(庚戌: 1790) 양년조(兩年條) 봉진마(封進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산마감목관이 봉진한 말은 비단 체구가 작을 뿐만 아니라 명색이 봉진(封進)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은가? 만약 이것이 지금 제주마라면, 어승(御乘)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해당 감목관은 마땅히 착래(捉來)하여 결곤(決棍)하게 하고, 잠시 참작(參酌)하게 하라. 본목의 각 목장에 자마(雌馬)와 웅마(雄馬) 각 2필을, 체구가 크고 민첩한 것을 극택(極擇)하여 올려 보내게 할 일을 해당 목사와 목관에게 분부하고,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즉시 대령하게 하라. 이와 같은 특교(特教)를 내린 뒤에도 만약 어승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올려 보냈으면 목관과 해당 목사를 각별하게 중감(重勘)하고 이로써 엄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철모, 김봉길, 체임진상마.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二十日 戊戌

- 以濟州牧使李喆模狀啓, 琉球國人漂到問情事, 傳于柳文養曰, 依願卽爲還送, 而造給衣袴, 優給糧資, 以示朝家軫念之意, 此後漂到人之問情後, 從水路還歸者, 一邊發送後, 狀聞事, 回諭.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20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장계(狀啓)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의 장계(狀啓)의 ‘유구국(琉球國) 사람이 표도(漂到)하여 문정(問情)한 일’에 대해 유문양에게 전교하기를, “원하는 대로 즉시 환송(還送)하게 하고, 의고(衣袴)를 조급(造給)하게 하고, 양자(糧資)를 우급(優給)하여 줘서, 조가(朝家)에서 진념(軫念)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이후에도 표도인을 문정한 뒤에 뱃길을 따라 환귀(還歸)하게 하는 것을 일변(一邊) 발송(發送)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모, 유구국.

❖ 乾隆 五十五年 庚戌 七月 二十六日 甲辰

- 以全羅監司尹蓍東狀啓, 興陽縣漂到琉球國人發送時, 交付濟州一款, 切勿舉行, 依其願, 直爲指送事, 傳于洪義榮曰, 日前見耽羅狀本, 琉球國漂船一隻, 聞亦漂到, 已令從願還發此船之同行, 亦無不可, 申飭該水使及該牧使處, 各別顧恤, 斯速發送事, 回諭.

❖ 정조 14년(1790) 경술년 7월 26일(갑진)

- 제주(濟州)의 일관(一款)을 교부(交付)하는 건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전라감사 윤시동(尹蓍東)의 장계(狀啓)의, ‘흥양현(興陽縣) 표도(漂到)한 유구국(琉球國) 사람을 발송(發送)할 때, 제주(濟州) 일관(一款)을 교부(交付)하는 것을 일체 거행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지송(指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기를, “일전(日前)에 탐라(耽羅) 장본(狀本)에 유구국(琉球國) 표선(漂船) 1척에 대한 것을 봤는데, 또 표도하면 원하는 대로 이 배를 환발(還發)하게 하고 동행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다. 해당 수사(水使)와 해당 목사에게 신칙하여, 각별하게 고휰(顧恤)하게 하고 신속히 발송하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일관.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八月 一日 己酉

- 以全羅監司尹蓍東狀啓, 濟州漂船, 姑令停泊, 三島漂人, 卽令入送, 使之待風齊發事, 令廟堂稟旨分付事, 傳于李益運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 정조 14년(1790) 경술년 8월 1일(기유)

- 제주(濟州)의 표선(漂船) 처리에 관한 장계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전라감사 윤시동(尹蓍東)의 장계(狀啓)에, ‘제주(濟州) 표선(漂船)을 잠시 정박시키게 하고, 삼도(三島)의 표인(漂人)을 즉시 입송(入送)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로 하여금 대풍(待風)하여 제발(齊發)하게 할 일을 묘당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할 일’에 대해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표선.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八月 五日 癸丑

- 以全羅監司尹蓍東狀啓, 興陽縣漂到琉球國人, 入送濟州, 與該牧漂到船, 待風齊發之意, 更待籌司, 知委舉行事, 傳于柳文養曰, 依狀請, 卽爲從便發送事, 回諭.

❖ 정조 14년(1790) 경술년 8월 5일(계축)

- 흥양현(興陽縣)에 표도(漂到)한 유구국(琉球國) 사람의 제주(濟州) 입송(入送) 관련 장계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전라감사 윤시동(尹蓍東)의 장계(狀啓)에, ‘흥양현(興陽縣) 표도(漂到) 유구국(琉球國) 사람을 제주(濟州)로 입송(入送)하고, 더불어 해목(該牧)의 표도선(漂到船)은 대풍(待風)해서 제발(齊發)하게 할 일을 다시 주사(籌司)를 기다려서, 지위(知委)하여 거행(舉行)할 일’에 대해 유문양(柳文養)에게 전교하기를, “장청(狀請)에 따라 즉시 편의에 따라서 발송(發送)하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구국, 제주, 입송.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月 四日 辛亥

- 洪義浩, 以刑曹言啓曰, …… 今番赦典, 入於爲奴婢別單, 自在仍秩, 七月十一日別單, 更爲書入之時, 則濟州罪人元不舉論云矣.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0월 4일(신해)

□ 제주(濟州)의 죄인에 관한 형조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이번 사전(赦典)으로 노비별단(奴婢別單)에 들이게 하였는데, 저절로 잉질(仍秩)에 있는 7월 11일 별단은 다시 써서 들이게 할 때, 제주(濟州) 죄인은 원래 거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月 四日 辛亥

- 庚戌十月初四日辰時，上御誠正閣. …… 又命書傳教曰，今榜濟州武舉子三人，豈可只受紅牌還，涉重溟乎？三營哨官，加設啓下，此後，次次，以實職收用事，分付。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0월 4일(신해)

□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처리에 관한 논의

- 경술년 10월 초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지금 방(榜)에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3인은 어찌 홍패(紅牌)를 받아서 돌아갈 것인가,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는가? 삼영(三營: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초관(哨官)을 더 늘리라고 이미 계하하였으니, 차후에는 차차로 실직(實職)으로 수용(收用)하게 할 일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이어 명이 끝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月 十四日 辛酉

- 庚戌十月十四日辰時，上御重熙堂。…… 命耆書傳教曰，…… 至於黃魚，餘項魚名色，廟堂雖以貢膳體重，不爲舉論，魚非所欲，弊則滋大，依濟州鹽全鰓例，特許蠲貢，而道伯所進冊子中，生乾簞名色之朔膳與臘肉，已許代封，獨於物膳無特教，尙今仍舊云。事甚斑駁，物膳生簞，一體代封，乾簞與簞脯，不緊莫甚，竝爲除封事，分付。牛禁法典所在，除非享祀太牢宴禮大膳牛肉，牛肉皆不得用之，獨於本道貢獻，有片脯名色，此必襲謬而然，亦令自今除減事，分付。…….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0월 14일(신유)

□ 제주(濟州)의 절인 전복(全鰓)의 공납을 면제하는 건에 관한 논의

- 경술년 10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좌부승지 신기(申耆)에게 전교를 쓰라고 하기를, “<중략> 황어(黃魚)와 여항어(餘項魚)의 명색(名色)에 이르러서, 묘당에서는 비록 물선 공납의 사체가 중요한 것이라 하여 거론하지도 않았으나, 물고기는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은 점점 커지니, 제주(濟州)의 절인 전복(全鰓)의 실례대로 특별히 공납에서 면제하라. 그리고 감사가 바친 책자에 의하면 생노루 고기와 말린 노루 고기의 명목으로 달마다 바치는 물선은 납육(臘肉)과 함께 이미 대봉(代封)을 허락하였는데, 유독 물선에 대해서만 특별 지시가 없어 아직까지 이전대로 바치고 있다고 하니, 일이 몹시 고르지 못하다. 물선으로 바치는 생노루는 똑같이 대납하게 할 것이며, 말린 노루 고기와 장포(簞脯)는 별로 긴요하지 않으니 전부 봉진하지 말게 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³⁹⁵⁾

△ 주제어: 제주, 절인 전복.

395) 《정조실록》 권31, 정조 14년(1790) 10월 14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一月 十六日 壬辰

- 以禮曹單子, 濟州方物看品內入事, 傳于鄭大容曰, 筒箇之越海封進, 必有貽弊, 此後依馬粧例, 以每部代獐皮幾令, 量宜定式代捧事, 分付.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1월 16일(임진)

- 제주(濟州) 방물 통개(筒箇)의 대봉(代封)에 관한 전교
- 예조 단자로 제주(濟州) 방물을 간품(看品)하여 내입(內入)하는 일에 대해 정대용(鄭大容)에게 전교하기를, “통개(筒箇)를 바다를 건너서 봉진하는 것은 반드시 폐단을 끼치고 있을 것이니, 이후에는 마장례(馬粧例)의 전례에 따라, 매부(每部)를 대신하여 장피(獐皮) 몇 령으로 하는 것을 합당하도록 요량하여 규정을 정하게 하고 대봉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통개.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一月 十七日 癸巳

- 洪義浩,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李鴻運冬至方物封進單子判付內, 筒箇之越海封進, 必有貽弊, 此後依馬粧例, 以每部代獐皮幾令, 量宜定式代捧事, 分付事, 判下矣. 取考臚錄, 則孝廟朝甲午, 馬粧二部, 代弓帑·筒箇四部封進, 而弓帑·筒箇, 今因軫弊之特教, 又令以獐皮代捧, 則獐皮代捧之數, 當以馬粧二部代封數施行矣. 馬粧每部獐皮代捧爲五張, 依此定式, 此後則弓帑·筒箇四部, 代以獐皮十張封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1월 17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동지(冬至) 방물봉진단자(方物封進單子) 판부(判付)에 대한 예조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동지(冬至) 방물봉진단자(方物封進單子) 판부(判付) 안에, 통개(筒箇)를 바다를 건너 봉진하는 것에는 반드시 폐단을 끼칠 것이니 이후에는 마장(馬粧)의 전례에 따라, 매부(每部)를 대신하여 장피(獐皮) 몇 령으로 하는 것을 합당하도록 요량하여 규정을 정하게 하고 대봉(代捧)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고 판하(判下)하였습니다. 등록(臚錄)을 취고(取考)하니, 효묘조(孝廟朝) 갑오년(1654)에 마장 2부를 궁대(弓帑)·통개 4부로 대신 봉진했는데, 궁대·통개는 지금 진폐(軫弊)의 특교(特敎)로 인해 또 장피로 대봉하라고 하면 장피로 대봉하는 수를 당연히 마장 2부를 대신하여 봉진하는 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장은 매부는 장피 5장으로 대봉하게 하고, 이 정식에 따라 이후에도 궁대·통개 4부를 장피 10장으로 대신 봉진하게 하는 뜻으로 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동지, 방물봉진단자, 마장, 궁대, 통개, 장피.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一月 二十六日 壬寅

- 獻納權恢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請爲奴罪人金壽賢·河翼龍, 竝令王府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院曰, 不允.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1월 26일(임인)

-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헌납 권회(權恢)의 계
- 헌납 권회(權恢)가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노로 삼게 한 김수현과 하익룡(河翼龍)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一月 二十七日 癸卯

- 李儒敬, 以賑恤廳言啓曰, 因傳教, 宣傳官領付濟州柑子進上領來監官姜渭尙等一十七名, 回糧米各三斗式, 考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1월 27일(계묘)

- 제주(濟州) 감자(柑子) 진상 영래감관(領來監官) 강위상(姜渭尙) 등에게 회량미(回糧米)을 지급하는 건
- 이유경(李儒敬)이 진흥청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傳敎)로 인해, 선전관이 영부(領付)한 제주(濟州) 감자(柑子) 진상 영래감관(領來監官) 강위상(姜渭尙) 등 17명에게 회량미(回糧米) 각 3말씩을 전례를 고찰하여 분급해 줄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감자, 강위상, 회량미.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二月 十四日 庚申

○ 庚戌十二月十四日辰時，上御熙政堂。…… 濟恭曰，此濟州牧使李鴻運狀啓也，備陳三邑農形，快免失稔之狀，仍以爲，新舊還上，一時竝督，其勢誠難，舊還停退，各寺奴婢身貢米，二斗內減一斗，男丁大同米，五升內減一升，軍兵操鍊，其弊不貲，今姑停止，待明春，從附近哨司〈磨〉鍊，凡此舉行，固當稟旨，恭俟處分，而一番往來，動費數朔，依近例，姑先舉行，事涉擅便，誠極惶恐，爲辭矣。狀中所請，固宜稟旨舉行，而本州事勢，有難膠守常度，況近例亦有可據，所陳諸條，竝依狀辭許施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2월 14일(경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

○ 경술년 12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채제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입니다. 세 고을 농형(農形)을 갖춰 아뢰었습니다. 흔쾌히 흥년이 든 상황을 면하였으나, 그대로 신구환자(新舊還上)를 일시에 아울러 독책한다면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구환(舊還)은 잠시 물려주고, 각 시노비(寺奴婢) 신공미(身貢米)는 두 말인데 1말을 줄여주고, 남정(男丁)이 대동미(大同米)는 5되인데, 1되를 줄여주고, 군병의 조련도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지금 잠지 정지시켰다가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분근의 초사(哨司)를 쫓아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무릇 이것을 거행한 것은 응당 품지하게 하고 공순히 처분을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번 왕래하는 것은 비용과 여러 달이 허비되니, 근례(近例)에 따라 먼저 거행하게 하는 것이 제멋대로 하는 데에 관계될까 봐 진실로 지극히 황공스러운 말을 드립니다. 장중(狀中)의 소청(所請)은 마땅히 품지하여 거행해야 하나 본 고을(제주)의 사세(事勢)에 있어 상도(常度)를 융통성 있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근례(近例)도 또한 근거로 삼을 게 있으니, 소진(所陳)한 제조(諸條)는 모두 장사(狀辭)에 따라 허시(許施)하게 할 뜻으로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二月 二十日 丙寅

○ 親臨都政. 吏批, …… 許湜爲旌義縣監, …… 李麟臣爲大靜縣監, …….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2월 20일(병인)

□ 허식(許湜)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이인신(李麟臣)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친임도정(親臨都政)이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허식(許湜)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중략〉 이인신(李麟臣)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허식, 정의현감, 이인신, 대정현감.

❖ 乾隆 五十五年 庚戌 十二月 二十一日 丁卯

- 庚戌十二月二十一日辰時，上御熙政堂。吏·兵房承旨與守令·邊將入侍時，……旌義縣監許湜，……大靜縣監李麟臣，……，以次進伏。…….

❖ 정조 14년(1790) 경술년 12월 21일(정묘)

- ☐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과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인신(李麟臣)을 면대(面對)함
- 경술년 12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이방·병방 승지와 변장(邊將)이 입시했을 때,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인신(李麟臣) 〈중략〉 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허식, 대정현감, 이인신.

1791年

(정조 15)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一月 三日 壬寅[戊寅]

- 尹行任啓曰, 未下直守令, 皆令當日辭朝事, 命下矣. 仁同府使尹衡東, 高原郡守金得海, 永柔縣令徐弘輔, 旌義縣監許湜, 大靜縣監李麟臣, 憲府則既已署經, 而諫院則大司諫未差, 司諫林道浩傳旨未下, 正言朴孝成未署經, 獻納柳匡天, 正言尹在明俱在外, 不得舉行云, 何以爲之? 敢稟. 傳曰, 違牌及在外·未署經臺諫竝許遞, 前望單子入之, 待下批竝卽牌招署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월 3일(임인[무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인신(李麟臣)의 사조(辭朝)
- 윤행임(尹行任)이 아뢰기를, “하직하지 않은 수령은 다 당일에 사조(辭朝)³⁹⁶할 수 있게 할 일로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인신(李麟臣), <중략>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위패(違牌)³⁹⁷한 자와 재외(在外)에 있는 자, 서경(署經)하지 않은 대간(臺諫)을 모두 체직(遞職)을 허락하라. 전에 망단자(望單子)를 들이고, 하비(下批)를 기다렸다가 즉시 패초(牌招)하고 서경(署經)하게 하라.³⁹⁸”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허식, 대정현감, 이인신.

396) 사조(辭朝): 외직으로 부임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하직하던 일.

397) 위패(違牌): 승지가 왕명이 적힌 패를 가지고 신하를 불렀으나 어기고 오지 않는 것.

398) 서경(署經):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문벌(門閥)·이력(履歷)을 갖추어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一月 九日 甲申

- 領中樞府事徐命善劄曰, …… 臣之待罪本寺, 已踰十稔, 而馬政疎虞, 日甚一日, 耽羅之所貢, 各牧之所進, 舉皆疲殘, 驚駘不堪騎載, 或當分把之時, 謬襲貫用之例, 此固臣怠官溺職之致, 而伏況昨春申飭之教, 實出於省弊貢驛之聖念, 諄諄誨責, 不啻嚴截, 如使臣仰體德意, 別般經紀, 務盡責立之方, 克舉補把之政, 則豈至有今番臨時煩稟之事哉? …….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월 9일(갑신)

□ 탐라(耽羅)의 소공(所貢)에 관한 영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의 차자(劄子)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서명선(徐命善)이 차자(劄子)³⁹⁹⁾하기를, “〈중략〉 신이 사복사에서 대죄(待罪)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마정(馬政)이 소홀하기가 날이 갈수록 해이해져서 탐라(耽羅)에서 소공(所貢)한 것과 각목(各牧)에서 소진(所進)한 것은 거개가 피잔(疲殘)합니다. 노태(驚駘)한 것은 기재(騎載)를 견뎌내지 못하고, 혹 마땅히 분파(分把)했을 때도 세를 내어 쓰게 하는 전례가 유습(謬襲)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신이 직무에 태만하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러나 삼가 더군다나 지난봄에 신칙하는 전교가 있어서, 실제로 폐단을 줄이고 공역(貢驛)하는 성념(聖念)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순(諄諄)하게 깨우치고 책하고 엄중히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신(使臣)이 우러러 덕의(德意)를 체득하면, 별다른 경기(經紀)가 책립(責立)한 공에 무진(務盡)할 것이니, 지극히 보충하여 입파(入把)하는 정사를 펼 수 있으니, 어찌 이번에 임시로 번거로이 품할 일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소공.

399) 차자(劄子):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一月 十九日 甲午

- 正言鄭取行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將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答曰, 不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월 19일(갑오)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계정언 정취행(鄭取行)의 계
- 정언 정취행(鄭取行)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하지 못한 환시(宦寺)로서, 사대부와 교결(交結)하고 마침내 흉적(凶賊)의 근저(根柢)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망하게도 그 궁흉극악(窮凶極惡)한 말로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二月 五日 庚戌

- 洪明浩啓曰, 卽見濟州牧使李鴻運, 守令·邊將薦舉單子, 則居住邑名及長衡, 不當書而書之, 有違格例, 事甚未安, 原單子所當還下送, 而係是越海之地, 雖不得不捧入, 而該牧使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2월 5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수령(守令)·변장(邊將) 천거(薦舉) 단자에 관한 홍명호(洪明浩)의 계
-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수령(守令)·변장(邊將) 천거(薦舉) 단자를 즉견하니, 거주(居住) 읍명(邑名)과 장함(長衡)이 당연히 쓰지 않아야 하는데, 쓰여 있으니, 격례(格例)를 어긴 것입니다. 일이 매우 미안하니, 원래 단자는 당연히 환하(還下)하여 보내야 하나, 이것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관계되어, 비록 봉입(捧入)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해당 목사를 추고하여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천거 단자.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二月 六日 辛亥

- 以濟州牧使李鴻運狀啓，節果進上代封過限，惶恐待罪事，傳于趙鎮宅曰，勿待罪事，回諭。

❖ 정조 15년(1791) 신해년 2월 6일(신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狀啓)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狀啓)에 ‘절과(節果) 진상(進上)을 과한(過限)하여 대봉(代封)한 것이 황공하여 대죄(待罪)하는 일’에 대하여 조진택(趙鎭宅)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절과 진상.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二月 十三日 戊午

- 李洪載, 以義禁府言啓曰, 因濟州牧使李鴻運狀啓, 司僕寺覆啓內, 旌義縣監趙元珣, 令該府拿問處之事, 允下矣. 趙元珣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정조 15년(1791) 신해년 2월 13일(무오)

-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의 나문(拿問)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이홍재(李洪載)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狀啓)로 인해, 사복시의 복계(覆啓) 안에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라고 한 일로 윤허를 내렸습니다. 조원순은 당시 임소(任所)에 있다고 하니, 전례에 따라 부의 나장을 발견(發遣)하게 하고, 교대로 나래해 오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명(待命)을 기다렸다가 나수(拿囚)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정의현감, 조원순.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二月 十八日 壬戌[癸亥]

- 以濟州牧使李鴻運狀啓, 六條民弊論列事, 傳于洪明浩曰, 逖矣耽羅, 隔以重溟, 生民之利病, 朝家何從而知之乎? 然其所謂六苦役之弊, 聞之已飫矣. 以是之故, 御極之初, 先除折大全鰥之元貢, 年前又有若干軫弊矯瘼之舉, 此豈足爲一分蘇殘之階, 而斷斷此心, 在於有知之不欲置之也. 觀此狀本, 其役若前, 其苦尤甚. 上有減貢之名, 下無蒙惠之實, 荏苒歲月, 越視秦瘡, 而使海外民生, 籲告無從, 則予雖否德, 能無駢于面而汗于背乎? 以此狀本, 下廟堂, 別般論理稟處, 待回啓入徹, 亦當有批下者, 此意言于廟堂.

❖ 정조 15년(1791) 신해년 2월 18일(임술[계해])

- 제주(濟州)의 민폐(民弊)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로써, 6조(六條)의 민폐(民弊)를 논열(論列)한 일에 대해 홍명호(洪明浩)에게 전교하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탐라(耽羅)는 넓고 큰 바다로 막혀 있어서 백성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조가(朝家)에서 어찌 쫓아서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소위 6고역(六苦役)에 대한 폐단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극(御極)한 처음에 먼저 대전복(大全鰥)의 원공(元貢)을 제절(除折)해 주고, 연전(年前)에 또 약간의 진폐(軫弊)를 바로 잡고 폐단을 바로 잡았는데, 이 어찌 일 분의 소잔(蘇殘)하는 단계가 되어 만족하겠는가? 단단한 이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이 장본(狀本)을 보니, 그 역(役)도 전과 같이 고통이 매우 심하도다. 위에서는 감공(減貢)하는 명분이 있는 것이었으나, 아래로는 몽혜(蒙惠)하는 사실이 없었다. 세월이 지나도 손을 털고 물러서서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었다. 바다 밖 민생으로 하여금 그대로 내버려두고서 따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내가 비록 부덕(否德)하더라도 능히 얼굴이 붉어짐 없이 등 땀이 날 수 있겠는가? 이 장본을 묘당(廟堂)에 내려 별반논리(別般論理)로 품처(稟處)하게 하고, 회계를 기다렸다가 입철(入徹)하게 하라. 또한, 마땅히 비답을 내려야 할 것도 이 뜻으로 묘당에 말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홍운, 육고역.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二月 二十日 乙丑

- 李敏采,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頃因特教, 濟州封進馬, 更以直御乘者封進, 又或不合, 該牧使卽其地定配, 該牧官捉來嚴棍, 遠地充軍事, 命下矣. 濟州封進雄馬二匹, 雌馬二匹, 餘馬二匹合六匹, 今方上來, 故禾毛色別單書入, 而看審其馬匹, 則體樣步品, 孱劣特甚. 非但不堪擬議於御乘, 比諸初次封進馬, 少無優劣, 屢次飭教, 何等截嚴, 而全不愼擇, 又以不合馬匹, 肆然封進, 該牧使舉行之慢忽, 誠萬萬痛駭. 依初下教, 當該牧使李鴻運, 令該府, 卽其地定配, 該牧官, 亦爲捉來嚴棍, 遠地充軍, 何如? 傳曰, 馬政, 有國重事, 近來殆不成說之故, 非爲直御乘, 兼欲試之, 有特教別爲封進之命, 則觀此草記舉行, 極爲駭然. 然揆以事理, 豈有匿而不封之理乎? 信令自信令, 委折自委折, 卿其各別爲先嚴查, 更爲退限, 歲貢封進不遠, 待此時, 可合內廐乘馬者, 嚴飭封進, 其時又或不勤, 依初下教處分, 舉行, 可也.

❖ 정조 15년(1791) 신해년 2월 20일(을축)

□ 제주(濟州) 봉진마(封進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민채(李敏采)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번에 특교(特教)로 인해, 제주(濟州) 봉진마(封進馬)를 다시 바로 어승(御乘)할 수 있는 것으로 봉진한 것도 혹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목사를 즉시 그 땅에 정배하고, 해당 목관(牧官)은 착래(捉來)하여 엄곤(嚴棍)하고, 먼 땅으로 충군하게 하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제주에서 봉진한 웅마(雄馬) 2필, 자마(雌馬) 2필, 나머지 2필을 합하여 6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게 하고, 그 마필을 간심(看審)하니 체양(體樣)과 보품(步品)이 잔열(孱劣)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비단 어승(御乘)할 만한 것인지 의문뿐만 아니라, 여러 초차(初次) 봉진마에 비해서도 조금도 우열(優劣)이 없습니다. 여러 번 칙교(飭教)하였으나, 조금도 매우 엄하지 않는데, 전혀 신중하게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필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연(肆然)히 봉진하고 있으니, 해당 목사를 태홀(怠忽)로 다스려야 하니 참으로 너무나도 통탄스럽습니다. 첫 하교에 따라 해당 목사 이홍운(李鴻運)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즉시 그 땅에 정배하게 하고, 해당 목관도 착래하여 엄곤하고 먼 지방에 충군시키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마정(馬政)은 국가의 중사(重事)인데, 근래에 거의 말도 안 되

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바로 어승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껴하여 시험해보아야 한다. 특교가 있으니 특별히 봉진하라는 명이 있는데도 이 초기를 거행한 것을 보니, 극히 해괴한 일이다. 그러나 도리를 헤아려 보아도 어찌 숨기고 봉진하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신령(信令)하면 절로 신령할 수 있고, 위절(委折)이 있으면 절로 위절이 있는 것이니, 경(卿)이 그것을 각별하게 먼저 엄히 조사하고, 다시 기한을 물리고, 세공봉진(歲貢封進)도 멀지 않았으니, 이때를 기다려서, 내구(內廐)에서 승마(乘馬)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엄칙하여 봉진하게 하고, 그때도 혹 불근(不勤)하면, 처음 하교한 것에 따라 처분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봉진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二月 二十日 乙丑

○ 辛亥二月二十日辰時，上御熙政堂。……濟恭曰，濟州牧使李鴻運狀啓，有論理稟處之命矣。取見其狀本，則其一，牧子輩驅點之苦，此已可矜，而馬之故失者，使之徵代徵肉，則赤手難辦爲慮，徵馬之弊，自平役庫，每名有一石七斗例下之米，該吏頭目輩，百計幻弄，悉歸私橐。今後則例下米，都給該場馬監處，計除當年徵馬之價，餘米則自營勘簿，留儲該場，每於巡點，反庫考數，使不得任意出納，如當歉歲，以此爲濟活牧子之資事也。其一，鮑作之役，捨性命備辛苦，而至於撻引鰓，海民謀避是役，至於身犯屠牛而圖免，良亦感矣。進上之物，不可變通，而自官需用者，一切除之事也。其一，屯田之役，固出備荒，而到今反歸需米作納之資，無論豐歉，陳起水畚一斗落，白米十二斗，乾畚一斗落，白米六斗式捧稅，以爲營邑之排用，當初分畚，不無輕重相蒙之弊，如欲矯弊，莫若改量事也。其一，紙匠之役，營邑所用各樣紙地，舉皆責納，而狀啓紙外，許多日用紙，則必買陸產，其價過倍營邑，日用白紙，將近二千卷，一併蠲減，而覃恩庫折米一千五百石零，耗條則每石只以一斗加捧，添作元還，歲歲增加，來頭民不願受，必倍今日，耗條一百五十石，逐年除出，分布營邑，以爲買取日用之紙事也。其一，船格輩或多山民，故不知開舵轉帆之妙，船隻之致敗，種種相續，自今必以住水邊習櫓楫者填充事也。其一，遣軍一百八十名，各樣進上檣板，皆令斫納，官供汲水，亦使應役，若當番次，拋棄所業，如或雇立，雇價太重，漸至難支，若以遣軍，悉付除番，從他例收米十斗，檣板買用之資及輸運之費，以米隨價上下，至於汲水，則依陸地營邑例，專責於官婢事也。其一，六苦役之莫可矯救者，民情專由於避苦趨歇，諸般排番，今宜隨緊歇量減，校院生元額外，一竝汰付平役庫，而此外劇弊，即各班查正也。自今寺奴婢都案，年歲疤記，詳細錄置，生產死亡者，各使該邑里中尊位警民長牒報，添錄元案，閑丁則使各該班頭目，排望以納，試其才藝填差事也。濟州是絕域也，邑弊民情，臣未嘗有的然聞知，施罷之間，曰便曰否，實有隔靴爬癢之患，而第以該牧使狀辭言之，其所釐弊，恐不無後弊者，多矣。牧子例下米都給該場事，牧子以此爲願，則施之無妨，若牧子不願，而自官勒施之，則徒致怨言，後必有弊。此則必加十分詳慎而爲之之意，分付，鮑作之弊，自官除減則誠好矣。不必以此狀聞，屯田改量事，雖有意見，改量礪瘠，其結必減，此係官需所用，則見減者，將何以處之？此亦商量後日之有弊與否，而爲之之意分付，覃恩耗穀紙價事，本庫穀物，既甚零星，而若值歉荒，又必入於賑恤或停捧之中。若然則白紙二千卷之價，從何給代？此亦宜在所十分商量，船格事，必以水邊慣櫓者填差，無或以山民混充，此在守令誠心爲政之如何，不必狀請，然言則是矣。使之定式遵行，遣軍變通事，渠輩所願，在於除番收米，則從願許施，雖似便好，但汲水之役，使官婢替當，則官婢難支之弊，又安

知不如今日之遺軍乎? 此或近於見牛而未見羊, 更加方便之意分付, 排番量減事, 校院生元額外除汰事, 各班查正等事, 狀辭所論, 俱涉便好, 竝依狀請施行之意, 一體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

❖ 정조 15년(1791) 신해년 2월 20일(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에 대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계

- 신해년 2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狀啓)에 대하여 논리 있게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장본(狀本)을 취해서 보니, 하나. 목자배(牧子輩)가 구점(驅點)하는 고통으로, 이것은 몹시 불쌍하게 여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고실(故失)한 자는 그로 하여금 대신 추징하거나 고기를 하게 하는 것은 곧 적수(赤手)가 난판(難辦)하는 것이 염려되고, 징마(徵馬)하는 폐단은 평역고(平役庫)에서, 매 명에게 1섬 7말의 예하미가 있는데, 해당 이배(吏輩)와 두목배(頭目輩)가 백계(百計)로 환농(幻弄)하여 다 사탁(私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예하미를 도합(都給)하여 해당 목장의 마감에게 당년 징마 값을 계제(計除)하여 주고, 나머지 쌀은 영(營)에서 감부(勘簿)하여, 남아서 쌓인 것은 해당 목장을 매 순점(巡點)할 때, 번고(反庫)⁴⁰⁰하여 고수(考數)하고, 임의로 출납(出納)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겸세(兼歲)를 당하게 되면, 이것으로써 목자들이 제활(濟活)하는 물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 포작(鮑作)⁴⁰¹의 역(役)은 목숨을 내걸고 갖추어서 어려운 일에도 몹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복(槌鰓)⁴⁰²과 인복(引鰓)⁴⁰³에 있어서는 해민(海民)들은 이 역을 모피(謀避)하려고 합니다. 몸소 도우(屠牛)하려고 도면(圖免)하기도 하니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진상물은 변통할 수가 없어서, 관(官)에서 수용(需用)하는 것도 일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둔전(屯田)⁴⁰⁴의 역은 진실로 기근이나 흉년 따위를 겪어낼 준비

400) 번고(反庫): 창고의 물건을 일일이 조사함.

401) 포작(鮑作): 포작(浦作). 포작(鮑作). 보자기. 보재기.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따는 일을 하는 사람.

402) 추복(槌鰓): 잡은 전복을 납작하게 두드려가면서 말린 것.

403) 인복(引鰓): 잡은 전복을 잡아당겨서 말린 것.

404) 둔전(屯田):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 군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와 농민에게 경작시켜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음.

를 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수미(需米)를 작납(作納)하는 물자가 되어, 풍년과 흉년을 논하지 않고서, 묵은 땅을 일구어 만든 무논은 1마지기에 백미(白米)는 12말, 건답(乾畚)은 1마지기에 백미(白米)는 6말씩을 봉세(捧稅)하고, 씨 영읍(營邑)의 배용(排用)으로 삼았습니다. 당초의 분답(分畚)에는 경중이 뒤섞인 폐단이 없을 수가 없어서, 폐단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개량(改量)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 지장(紙匠)의 역(役), 영읍(營邑)에서 소용(所用)되는 각양(各樣)의 지지(紙地)는 거개가 공납(貢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계지(狀啓紙) 외에 허다하게 쓰이는 일용지(日用紙)는 반드시 육지 상품을 무역하는데, 그 값이 배가 넘습니다. 영읍에서 일용하는 백지(白紙)는 장차 거의 2천 권이 되는데, 똑같이 담은고(覃恩庫) 절미(折米) 1,500섬쯤을 견감(鋸減)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조(耗條)는 매 섬에 단지 1말을 가봉(加捧)하여 원환(元還)에 첨작(添作)하니, 해마다 늘어나서 앞으로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배가 될 것입니다. 금일 모조 150섬은 해마다 제출(除出)되어 영읍에 분포(分布)하는 것은 일용하는 종이를 무역해서 취해 쓰게 할 일입니다. 하나. 선격배(船格輩), 혹은 산민(山民)이 많으므로 배의 키[柁]를 열고 돛을 올려 돌리는 묘수를 알지 못하여 선척(船隻)이 치패(致敗)하는 경우가 종종 연달아 서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물가에 살게 하는 사람으로 노를 잡고 다룰 수 있게 연습시켜 전충(填充)할 일입니다. 하나. 유군(遺軍) 180명이 각양(各樣)의 진상 궤판(檣板)을 모두 작납(斫納)하게 시키고 있고, 관공(官供) 급수(汲水)도 응역(應役)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번(當番)하는 것도 포기(拋棄)하고 소업(所業)하게 하니, 만일 혹은 고립(雇立)하게 되면, 고가(雇價)가 태중(太重)하게 되어, 점점 지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일 유군을 다 제번(除番)에 붙이게 되면, 다른 예를 쫓아서 쌀 10말을 받아들여서, 궤판을 무용(貿用)하는 물자와 수운(輸運)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면, 쌀을 값대로 차하해 주고, 급수(汲水)에 이르면 육지의 영읍(營邑)의 예에 따라 전적으로 관비에게 책임을 지울 일입니다. 하나. 6고역(六苦役)을 바로잡을[矯救] 수가 없는 것은, 민정(民情)이 전적으로 괴로움을 피하여 험한 데로 나아가는 데 말미암은 것이다. 제반(諸般)의 배번(排番)은 지금 마땅히 긴급하고 험한 양에 따라서 감해주고, 교원생(校院生)의 원액(元額) 외에 한번 같이 평역고에 태부(汰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 극폐(劇弊)는 각반(各班)에서 조사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시노비의 도안(都案)은 연세가 파기(疤記)하여,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생산하고 사망한 것은 각 해당 고을과 마을 가운데, 존위(尊位)와 경민장(警民長)의 첩보(牒報)로 하여금, 원안(元案)에 첨록(添錄)하고, 한정(閑丁)은 각 해당 반의 두목(頭目)으로 하여금 배방(排望)하여 납부하게 하고, 그 재예(才藝)

를 시험하여 전차(填差)할 일입니다. 제주(濟州)는 본시 절역(絶域)이어서 고을 폐단과 민정에 관해, 신은 일찍이 분명히 들어서 알지 못하고 시파(施罷) 사이에 편한지, 불편한지 실로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발을 굽는 격의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해당 목사의 장사(狀辭)로 말하자면, 그것을 이폐(釐弊)하는 것은 뒤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 많습니다. 목자례(牧子例)로 내리는 쌀은 해당 목장에서 도급(都給)할 일입니다. 목자가 이것을 원하면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목자가 원하지 않으면 관(官)에서 능시(勒施)하게 하니, 원망하는 말이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폐단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더 심분 상신(詳愼)하여 하게 할 뜻으로 분부해야 합니다. 포박(鮑作)의 폐단은 관에서 제감(除減)해주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문이 필요하지 않은, 둔전(屯田)을 개량(改量)하는 일은 비록 의견이 있으면, 교척(矯瘠)을 개량(改量)하여, 그 결과로 반드시 줄여주고, 이것은 관수(官需) 소용(所用)에 관계된 것이니, 줄어드는 것을 보면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또한 후일에 폐단이 있을지의 여부(與否)를 상량(商量)하여 하게 할 뜻으로 분부해야 합니다. 담은(覃恩)의 모곡(耗穀)과 지가(紙價)의 일에 대해서는, 본고(本庫) 곡물이 이미 매우 영성(零星)하나, 만일 겸황(歉荒)을 만나면, 또 반드시 진홀에 들어가야 하거나, 혹은 정봉(停捧)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백지 2천 권의 값은 어디를 통하여 급대(給代)해야 합니까? 이것 또한 재소(在所)에서 심분(十分) 상량(商量)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격(船格)의 일은 반드시 수변(水邊)에서 관노(慣槽)하는 사람으로 전차(填差)하고, 혹 없다면 산민(山民)으로 섞어 충정해야 하나, 이곳에 있는 수령은 성심으로 정사를 참으로 펼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장청하지 말아야 하지만,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로 하여금 정식으로 준행(遵行)하였습니다. 유군을 변통(變通)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들이 제번에서 수미(收米)하는 것을 바라면 원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비록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물을 길는 역은 관비로 하여금 제당(替當)하게 하면 관비가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어찌 오늘날도 못한 유군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면 소는 보고 양은 보지 않았다[見牛而未見羊]⁴⁰⁵⁾는 말과 가까워, 다시

405) ‘경우이미양견(見牛而未見羊)’은 《맹자(孟子)》 ‘양혜왕 장(梁惠王章)’ 상(上)에 보인다. 제 선왕(齊宣王)이 혼중(饔鍾)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양(羊)으로 바꾸라고 하였는데, 제 선왕은 자신의 행동이 실상 양보다 소를 아까워한 것이 아닌데도 재물을 아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말하자, 맹자(孟子)가, ‘괴로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인술(仁術)입니다. 소는 보시고 양은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라고 하며, 제 선왕이 왕도(王道)를 행할 자질이 있음을 일깨워 준 대목을 인용한 것. 즉 눈앞에 당장 제기된 문제이니 동정심이 생겨,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나타낸

방편을 더할 뜻으로 분부해야 합니다. 배번하여 감량(量減)할 일, 교원생(校院生)⁴⁰⁶의 원액외(元額外)에 제태(除汰)⁴⁰⁷할 일, 각반(各班)에서 사정(査正)하는 등의 일은 장사에서 논한 바대로 갖추는 것은 편호(便好)한 데 관계되는 것이니, 아울러서 장청에 따라 시행하게 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흥운, 6고역.

말임.

406) 교원생(校院生): 향교와 서원에서 오래 근속해 유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상민.

407) 제태(除汰): 군인·하리(下吏)·하례(下隸) 따위의 칠반천역(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떼는 것.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三月 二十八日 壬寅

- 閔台爌, 以禁衛營言啓曰, 依傳教, 濟州武舉子出身洪範瑞, 本營哨官加設, 差下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3월 28일(임인)

-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출신인 홍범서(洪範瑞)를 금위영 초관(哨官)으로 임명함
- 민태혁(閔台爌)이 금위영의 말을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따라,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출신인 홍범서(洪範瑞)는 본영(本營)의 초관(哨官)을 가설(加設)하여 차하(差下)하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홍범서.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三月 二十八日 壬寅

- 閔台燾, 以御營廳言啓曰, 傳曰, 今榜濟州武舉子出身三人, 豈可只受紅牌, 還涉重溟乎? 三營哨官, 加設啓下, 此後次次以實職收用事, 分付該曹事, 命下矣. 依傳教, 濟州武舉子出身韓繼休, 本廳加設哨官單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3월 28일(임인)

-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출신(出身) 한계휴(韓繼休)를 어영청 초관(哨官)에 제수함
- 민태혁(閔台燾)이 어영청의 말을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금 방(榜)에 있는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출신(出身) 3인은 어떻게 홍패를 받고, 깊은 바다로 건너 돌아갈 것인가? 삼영(三營)에 초관(哨官)을 가설(加設)하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차차로 실직(實職)으로 수용할 일을 해조(該曹)에 분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전교에 따라, 제주 무거자 출신 한계휴(韓繼休)를 본청(本廳)에 가설 초관으로 단부(單付)하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한계휴.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四月 十八日 壬戌

- 辛亥四月十八日酉時，上御熙政堂. …… 至吳霑. 上曰，爾在濟州乎？霑曰，然矣. 上曰，何時上來乎？霑曰，昨年八月上來矣. …….

❖ 정조 15년(1791) 신해년 4월 18일(임술)

□ 제주(濟州) 출신 진사 오점(吳霑)을 대면하는 일

- 신해년 4월 18일 유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오점(吳霑)이 이르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제주(濟州)에 있는가?”라고 하였다. 오점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 올라왔는가?”라고 하였다. 오점이 아뢰기를, “작년 8월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오점.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四月 二十五日 己巳

- 徐美修,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沈錫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故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前後申飭之下, 以體小無才者, 循例封進, 事極駭然, 該縣監沈錫,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4월 25일(기사)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심석(沈錫)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서미수(徐美修)가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심석(沈錫)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으므로,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 입양(立養)하게 하고, 앞뒤로 신칙(申飭)하여 내렸는데도, 체구가 작고 재주가 없는 것을 예에 따라 봉진했으니, 일이 극히 놀랍습니다. 해당 현감 심석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 심석, 체임진상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四日 戊寅

- 以全羅監司鄭民始狀啓, 興陽居民秋化根·金得先等十八名, 漂到倭國, 生還故土, 淹死一名, 恤典題給事, 傳于徐美修曰, 十八名之生還, 極爲奇幸. 令地方官曉諭渠輩, 勿越過外洋獵採, 其外一名之淹死者, 生前如有還上身布, 竝勿徵. 此後諸道漂沒, 皆用此例事, 定式分付, 濟州, 一體知委. 因又此思之, 年前以漂海之多有故犯之跡, 別加申飭矣. 近又稍稍有之, 此狀則既有致死者, 豈可曰故犯, 而外此安知無復踵前習, 貽羞他國之弊乎? 沿海諸道, 令廟堂申加嚴飭.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4일(무인)

□ 표몰(漂沒)에 대한 처리에 관한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

-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狀啓)에, 흥양(興陽)에 사는 백성 추화근(秋化根)·김득선(金得先) 등 18명이 왜국(倭國)에 표도(漂到)했다가 고토(故土)로 생환(生還)하여, 물에 빠져 죽은 1명에게 홀전(恤典)을 제급(題給)해 줄 일이라 했는데, 서미수(徐美修)에게 전교하기를, “18명의 생환(生還)은 극히 기행(奇幸)한 것이다. 지방관(地方官)에게 저들에게 효유(曉諭)하게 하여, 외양(外洋)을 월과(越過)하여 엽채(獵採)하지 말게 하고, 그 외 1명이 엄사(淹死)한 것은 생전에 환자(還上)와신포(身布)가 있다면, 아울러 징납하지 말게 하라. 이후에는 모든 도(道)의 표몰(漂沒)에 대해서는 모두 이 예에 이용할 일을 정식으로 하여 제주(濟州)에 분부하고, 일체를 알리라. 또한 이로 인해 그것을 생각해보면, 연전(年前)에 표해(漂海)한 일이 많았는데 고의로 범한 흔적이 있으면, 특별히 더욱 신칙(申飭)하였다. 근래에도 초초(稍稍)히 있었다. 이 상황은 곧 이미 치사(致死)한 것이니, 어찌 고의로 범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외에 편안히 전일의 습관을 답습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타국에 수치스러운 폐단(他國之弊)을 끼친 것이 아니겠는가? 연해(沿海) 여러 도(道)는 묘당으로 하여금 더욱 엄칙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표몰.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五日 己卯

- 李祖承, 以御營廳言啓曰, 本廳哨官俞彦志改差, 代加設哨官濟州出身韓繼休, 陞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5일(기묘)

- 제주(濟州) 출신 한계휴(韓繼休)의 승실(陞實)에 관한 어영청의 계
- 이승조(李祖承)가 어영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本廳)의 초관(哨官) 유언지(俞彦志)의 개차(改差)는 대신 초간(哨官)을 가설하여 제주(濟州) 출신 한계휴(韓繼休)를 승실(陞實)⁴⁰⁸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한계휴, 승실.

408) 승실(陞實): 실무를 보는 벼슬로 올려 줌.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十二日 丙戌

- …… 傳曰, 捕校所爲, 萬萬痛惡. 過齋後移送刑曹嚴刑, 西北遠地充軍, 該醫女二名, 分等遠惡絕島, 限己身爲婢, 而醫女謀避者刑推, 濟州地定配, 卽藥院不易之法典, 而兩妓所犯, 比之尋常謀避之罪, 不啻十倍. 在京尙不自現者, 嚴刑, 濟州爲婢, 知機稱以下鄉者, 他絕島嚴刑爲婢. 若有逃禍上京之弊, 則地方官長, 當卽其地定配, 以此嚴飭. 捕校之行惡, 雖曰匪今斯今, 特教之下, 如是頑拒, 自有捕廳以來所未聞. 行首所任捕校等, 令兼察捕將, 過齋後捉來, 從重決棍, 可也.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12일(병술)

□ 모피(謀避) 의녀(醫女)의 형추(刑推)와 제주(濟州) 정배에 관한 전교

- <상략> 전교하기를, “포교(捕校)가 한 바는 한없이 통악하다. 재계(齋戒)가 지난 뒤에 형조로 이송하여 엄형(嚴刑)하게 하고, 서북(西北)의 원지(遠地)에 충군(充軍)하게 하라. 해(該) 의녀(醫女) 2명은 원악(遠惡)의 절도(絶島)에 분등(分等)하고, 한기신(限己身)으로 계집종으로 삼게 하고, 의녀(醫女)를 모피(謀避)한 자는 형추(刑推)하여, 제주 땅에 정배하게 하라. 장악원(掌樂院)은 바로 바꿀 수 없는 규례가 있으니, 양기(兩妓)가 범한 것은 심상(尋常)하게 모피한 죄에 비교되어, 10배나 될 뿐만이 아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수하지 않는 자는 엄형(嚴刑)하여 제주(濟州)에서 계집종으로 삼게 하고, 지기(知機)라 칭하며 고향으로 내려간 자는 다른 절도에서 엄형하여 계집종으로 삼게 하라. 만일 화를 피하여 상경하는 폐단이 있으면, 지방관장(地方官長)은 마땅히 곧 그 땅에 정배시키고, 이로써 엄칙하게 하라. 포교(捕校)의 행악(行惡)은 비록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특교(特教)를 내린 때도 이와 같이 완거(頑拒)했다고 하나, 포청(捕廳)이 있고부터 이후로 듣지 못한 것이다. 행수(行首) 소임(所任) 포교 등은 겸찰포장(兼察捕將)으로 하여금 재계(齋戒)가 지난 뒤에 착래(捉來)하여 중중결곤(從重決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의녀, 제주, 정배.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十二日 丙戌

- 李祖承, 以刑曹言啓曰, 依兵曹草記批旨, 前仕醫女丹蟾, 嚴刑一次後, 全羅道濟州牧, 爲婢定配, 卽爲押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12일(병술)

- 전사(前仕) 의녀(醫女) 단섬(丹蟾)의 엄형(嚴刑)과 제주(濟州) 정배에 관한 형조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병조의 초기(草記) 비지(批旨)로 인하여, 전사(前仕) 의녀(醫女) 단섬(丹蟾)은 1차 엄형(嚴刑)한 뒤에,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서 계집종으로 삼아서 정배하게 하고, 즉시 압송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사, 의녀, 단섬, 제주, 정배.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十二日 丙戌

- 司諫洪彦喆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請爲奴罪人金壽賢·河翼龍, 竝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12일(병술)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사간 홍언철(洪彦喆)의 계
- 사간 홍언철(洪彦喆)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노(奴)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하익룡(河翼龍)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二十二日 丙申

- 柳文養, 以義禁府言啓曰, 旌義前縣監趙元珣, 以所管屯馬闕失事, 因濟州牧使李鴻運狀啓, 司僕寺覆啓內, 拿問處之事, 允下, 而有待待命拿囚之命, 故知委上送之意, 行會本道矣. 趙元珣, 今方待命, 卽爲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22일(병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의 둔마(屯馬) 서실(闕失)과 처리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유문양(柳文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이 관할한 둔마(屯馬)가 서실(闕失)한 일은, 제주목사 이홍운(李鴻運)의 장계로 인해, 사복시 복계(覆啓) 안에, 나문(拿問)하여 처리할 일을 운하(允下)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拿囚)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 있으므로 속히 알려 올려보내도록 할 뜻으로 본도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조원순은 지금 바야흐로 대명하는 즉시 나수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조원순, 둔마, 서실.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二十二日 丙申

- 禁府啓目, 宣傳官柳星達原情云云. 傳旨內辭緣, 泛稱遲晚, 所當請刑是白乎矣, 宣傳官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啓, 持二馬牌者責立二馬, 固非可罪之端, 騎一匹之出於驛, 卜一匹之出於邑, 亦非宣傳官所知, 則爲道臣者, 以事實委折, 先卽查覈後狀聞, 事理卽然是去乙, 不此之爲, 徑先登啓, 雖有疎忽之失, 申飭之後, 與其當啓不啓有間, 特爲勿問, 此囚段, 放送爲良如教. 又啓目, 旌義前縣監趙元珣原情云云. 傳旨內辭緣, 泛稱遲晚,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考律勘放後, 草記爲良如教.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22일(병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의 원정(元情)에 관한 계목

- 또한 계목(啓目)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조원순(趙元珣)의 원정(原情)에 운운하기를, “전지(傳旨) 안의 사연(辭緣)은 공초할 때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고 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자, 판부하기를 “두 개의 마패를 가지고 있는 자가 2마리 말을 내놓으라 한 것은 실로 죄를 줄 만한 단서는 아니다. 역마 1필을 역에서 내어 1필이 고을에서 나온 것도 선전관(宣傳官)이 알 바는 아니니, 도신된 자는 사정을 먼저 조사하여 밝힌 후에 장계로 보고하라. 사리(事理)는 곧 이와 같은 것이니 이를 해야지 않고 지레 먼저 장계로 보고하면, 비록 소홀한 잘못이 있더라도 신칙한 뒤에는 계문(啓聞)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묻지 말고 죄수는 풀어 주라.”하였다. 또 계목에 전 정의현감 조원순이 원정에 운운하기를 “전지 내의 죄상에 대해 데면데면하게 지만(遲晚)이라 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자, 판부하기를, “을을 상고하여 감처하여 풀어준 뒤에 초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조원순, 원정.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五月 二十二日 丙申

- 柳文養,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趙元珣原情公事判付內, 考律勘放後, 草記事, 命下矣. 趙元珣, 濟州牧使李鴻運狀啓據, 司僕寺覆啓內, 本州馬政, 近漸解弛, 舉有耗縮之弊, 未聞繁息之效. 事之寒心, 莫此爲甚, 而旌義縣屯馬之闔馬, 至於二百八十三匹之多, 其罪狀, 令該府拿問處之. 罪取考律文, 則大典通編廐牧條有曰, 諸道牧場遺失馬一匹, 笞五十, 每一匹, 加一等, 罪止杖一百. 推斷條有曰, 犯私罪杖一百決杖, 告身盡行追奪. 雜令條有曰, 王府決杖者, 代以金贖矣. 趙元珣,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放送, 何如? 傳曰, 允. 如有功議, 各減一等.

❖ 정조 15년(1791) 신해년 5월 22일(병신)

- 정의현감(大靜縣監) 조원순(趙元珣)의 원정(原情) 공사(公事) 판부(判付)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유문양(柳文養)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시수(時囚) 죄인(罪人) 조원순(趙元珣)의 원정(原情) 공사(公事) 판부(判付) 안에, 고율(考律)하여 감방(勘放)한 뒤에 초기(草記)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조원순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의 장계에 의거한 사복시의 복계(覆啓) 안에, ‘본주의 마정(馬政)은 근래 전차 해이해져서, 거개가 모축(耗縮)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아직 번식(繁息)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이 한심하고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정의현(大靜縣) 둔마(屯馬) 가운데 서마(闔馬)한 것은 283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상에 대해서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게 하고 처리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율문(律文)을 취고(取考)해보니, 《대전통편(大典通編)》 구목(廐牧) 조에 말하기를, ‘여러 도 목장의 우실마(遺失馬) 1필에 태(笞) 50을 가하고, 매 1필에 가일등(加一等)하여 죄는 장 일백에 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추단(推斷) 조에 말하기를, ‘사죄(私罪)를 범하면 장(杖) 일백(一百)에 결장(決杖)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잡령(雜令) 조에 말하기를, ‘의금부가 결장(決杖)한 것은 대신하여 돈으로 속량(贖良)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원순은 장 일백에 수속(收贖)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追奪)하여 방송(放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만일 공의(功議)가 있으면 각 일등(一等)을 감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조원순, 원정 공사 판부.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六月 二十七日 庚午

- 以全羅監司鄭民始啓本，罪人婢終蟾，羅水牧黑山島到配事，傳于李祖承曰，雖是蟣蝨賤物，徒配以下皆宥，特配無異徒配，則豈可勿論？與濟州定配之物，移配陸地，男漢等，以徒配改錄事，分付.

❖ 정조 15년(1791) 신해년 6월 27일(경오)

- 제주(濟州) 정배한 천물(賤物)의 이배(移配)에 관한 정민시(鄭民始)의 계본
-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계본(啓本)에 따라, 죄인 계집종 종담(終蟾)을 나수목(羅水牧: 나주목)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到配)할 일을 이조승(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비록 이것이 하찮은 이 같은 천물(賤物)이라 하더라도 도배(徒配) 이하를 다 용서하라. 특배(特配)는 도배와 다름이 없는데, 어찌 논하지 않겠는가? 더불어 제주(濟州)에 정배한 천물은 육지로 이배하게 하고, 남한(男漢) 등은 도배로 개록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정배.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十七日 庚寅

- 以濟州牧使李鴻運狀啓, 本牧甲辰·戊申·乙亥各年, 緣坐奴婢娶妻作夫之類, 嚴刑懲勵, 所生子女, 令該府·該曹, 稟處事, 傳于李祖承曰, …… 原狀啓, 自政院還下送, 濟州牧吏李鴻運, 亟施削職之典.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17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운(李鴻運)의 삭직(削職)에 관한 건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운(李鴻運)의 장계에, 본목(本牧) 갑진년(1724)·무신년(1728)·을해년(1755) 각 해에, 연좌노비 취처(娶妻) 작부(作夫) 무리를 엄형(嚴刑)하여 징려(懲勵)하고, 소생의 자녀들은 해부(該府)·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일로, 이조승(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중략〉 원장계(原狀啓)는 정원(政院)에서 도로 하송(下送)하게 하고, 제주목사 이흥운은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흥운, 삭직.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二十日 癸巳

○ 備邊司, 以李運彬爲濟州牧使.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20일(계사)

□ 이운빈(李運彬)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에서 이운빈(李運彬)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이운빈, 제주목사.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二十一日 甲午

○ 傳于李昌會曰, 靈巖郡守 · 濟州牧使, 使之今日肅謝後, 來待.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21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숙사(肅謝)에 관해 임금이 이창회(李昌會)에게 전교함

○ 이창회(李昌會)에게 전교하기를, “영암군수 ·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오늘 숙사(肅謝)하게 한 뒤에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숙사.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二十一日 甲午

- 李昌會啓曰, 濟州牧使李運彬, 吏曹下批之前, 徑先來呈肅單, 臣之矇然捧入, 已不勝萬萬惶悚, 而該牧使, 不可無警, 從重推考, 原單子勿施, 何如? 傳曰, 昨日處分之後, 又焉敢如是率爾乎? 拿處, 卿則遞差.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21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운(李運彬)의 나처(拿處)와 체차(遞差)에 관한 이창회(李昌會)의 계
- 이창회(李昌會)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운(李運彬)에 이조에서 하비(下批)하기 전에 앞질러 먼저 와서 숙단(肅單)⁴⁰⁹을 올리니, 신이 몽영(矇然)히 받아들였으니, 이미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사를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고, 원단자(原單子)를 시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처분한 뒤에 또 어찌 감히 이와 같이 경솔할 수 있겠는가? 나처(拿處)하게 하고 경(卿)은 체차(遞差)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흥운, 나처, 체차.

409) 숙단(肅單): 임금에게 숙배할 사람의 이름을 적은 단자.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二十四日 丁酉

○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李潤彬, 延豐單李埤.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24일(정유)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윤빈(李潤彬)을 단망(單望)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이윤빈(李潤彬)으로 단망(單望)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윤빈, 단망.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二十五日 戊戌

○ 辛亥七月二十五日卯時，上御熙政堂。…… 上曰，守令入侍。賤臣承命出，與濟州牧使李運彬，谷山府使李昌漢，偕入進伏。上曰，守令，以次進奏職姓名，可也。運彬，仰奏職姓名訖。上曰，登科，今爲幾年乎？運彬曰，今爲十有九年矣。上曰，除拜已爲屢日，邑弊民瘼，皆已聞之否？運彬曰，雖有一二事所聞，而未及詳知矣。上曰，本牧僻在海島，視他自別，必須悉心爲治，毋蹈前倖之習，著聞蘇革之治然後，方可爲圖報特資之道矣。且懷保之政，惟在約己二字，餘何足加勉乎？大抵，前後牧使之初不畏憚者，按廉之行，雖有一二次往還，俱非晴行故也。今番則方欲別遣繡衣，另探實績，竝須知悉，無或犯科，可也。昌漢仰奏職姓名訖。……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25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의 직(職)과 성명(姓名)을 아뢴

○ 신해년 7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아왔다. 더불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과 곡산부사 이창한(李昌漢)이 다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차례대로 나와서 직(職)과 성명(姓名)을 아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운빈이 우러러서 직과 성명을 아뢰는 것을 마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등과(登科)한 지 올해 몇 년이 되었는가?”라고 하였다. 이운빈이 아뢰기를, “올해 19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배(除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구나!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모두 이미 들었는가?”라고 하였다. 이운빈이 아뢰기를, “비록 한두 개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목(本牧)은 벽지 해도(海島)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보기에 유별나서 반드시 모름지기 마음에 있는대로 다스려야 한다. 전취(前倖)의 습속을 답습하지 말고 드러나는 것을 듣고서 개혁하여 다스린 연후에 바야흐로 특자(特資)의 도리를 도보(圖報)할 수가 있다. 또한 감싸며 보호하는 정사는 오직 약기(約己) 2자에 있는 것이니, 나머지는 어찌 족히 더 힘쓸 것인가? 대저 전후 목사는 처음부터 꺼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안렴사의 행차가 비록 일·이차로 왕환(往還)했을지라도 모두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행차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바야흐로 특별히 수의

(繡衣)를 보내려고 했으니, 특별히 실적(實績)을 탐지하여 모두 모름지기 알고서
혹 범과(犯科)가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창한이 우려했다. 직과
성명을 아뢰는 것을 마쳤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운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七月 二十七日 庚子

- 正言鄭東愼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以玄磨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請爲奴罪人金壽賢·河翼龍, 竝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7월 27일(경자)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정언 정동신(鄭東愼)의 계
- 정언 정동신(鄭東愼)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노로 삼게 한 죄인 김수현·하익룡(河翼龍)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쾌히 바루기를 바랍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八月 五日 丁未

- 李翼晉,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驚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二匹到中路病留, 實納馬八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知[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8월 5일(정미)

□ 제주(濟州)에서 먼저 올라간 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익진(李翼晉)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에 먼저 올라간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三名日) 진상마(進上馬) 60필, 홍구노태마(凶咎驚駘馬) 20필 합 88필 안에, 2필은 중에 병이 들어서 남기고 실납마(實納馬) 86필에 대해서는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게 하는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연례진상마, 삼명일 진상마, 홍구노태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八月 十日 壬子

- 備忘記, 濟州牧使李運彬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15년(1791) 신해년 8월 10일(임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의 하직

- 비망기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이 하직하였다. 장궁(長弓) 1장,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 등을 사급(賜給)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운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八月 十日 壬子

- 李翼晉, 以司僕寺官員, 以一二提調意啓曰, 頃因特教, 濟州封進雄馬二匹雌馬二匹, 更爲退限, 歲貢封進不遠, 待此時可合內廐乘馬者, 嚴飭封進, 其時又或不勤, 依初下教處分舉行可也事, 命下矣. 今此濟州歲貢馬上來時, 封進雄馬二匹・雌馬二匹, 同爲上來, 故禾毛色別單書入, 而看審其馬匹, 則體樣步品, 孱劣特甚, 比諸兩次封進馬, 少無優劣, 不甚擬議於御乘, 屢次飭教, 何等截嚴, 而視若尋常, 全不慎擇, 又不合於御乘, 如或惕念舉行, 則豈無可合之馬匹, 而致此不勤, 該牧使慢忽之狀, 尤極痛駭, 依初下教, 當該牧使李鴻運, 令該府卽其地定配, 該牧官, 亦爲捉來嚴棍, 遠地充軍, 何如? 傳曰, 關問該道伯, 如果故犯, 依草記施行, 可也.

❖ 정조 15년(1791) 신해년 8월 10일(임자)

□ 제주(濟州) 봉진마(封進馬)의 잔열(孱劣)과 해당 관원의 처리

- 이익진(李翼晉)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번 특교(特教)로 인해, 제주(濟州) 봉진(封進) 웅마(雄馬) 2필, 자마(雌馬) 2필을 다시 기한을 물렸습니다. 세공(歲貢) 봉진이 멀지 않았는데, 이때를 기다려서 내구(內廐)의 승마(乘馬)로 적합할 만한 것을 이침하여 봉진하게 하고, 그때에도 혹 힘쓰지 않으면 첫 하교에 따라 처분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제주 세공마가 올라왔을 때, 봉진한 웅마 2필・자마 2필이 함께 올라왔으므로,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필을 간심(看審)한 즉 체양(體樣)과 보품(步品)이 잔열(孱劣)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두 번의 봉진마를 비교하니, 작아서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어승(御乘)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아서, 여러 차례 칙교(飭教)했는데 어떻게 절엄(截嚴)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기에 심상(尋常)하여 전적으로 신중하게 간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승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일 척념(惕念)해서 거행했다면 어찌 합당한 마필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이 힘쓰지 않았으니 해당 목사가 만홀(慢忽)하게 한 것은 더욱 참으로 통해(痛駭)합니다. 첫 하교에 따라서 마땅히 해당 목사 이홍운(李鴻運)을 해부로 하여금 즉시 그 땅에 정배하게 하고, 해당 목관도 착래하여 엄곤(嚴棍)하게 하고 먼 지방에 충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관련한 것은 해당 도백에게 물으니, 일부러 저지른 일

과 같으니, 초기(草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봉진마, 이흥운.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八月 十二日 甲寅

- 沈晉賢, 以司僕寺官員, 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七匹到中路故失, 實納馬一百九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8월 12일(갑인)

- 제주(濟州) 출래(出來)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심진현(沈晉賢)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올라간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안에, 1필은 배에서 고실(故失)하고, 7필은 중로(中路)에서 고실하여 실납마(實納馬) 192필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세공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八月 二十六日 戊辰

- 沈晉賢, 以內僕寺一二提調言啓曰, 臣等伏聞內寺待令濟州馬換出之事, 極爲驚駭, 使之嚴查, 則養馬洪尙圭, 受人錢貨, 私自換出云, 故洪尙圭, 捉來查問, 則尙圭言內, 聽巨達李景燁懲憑之言, 與巨達孫聖福, 受馬廩人金尙根·鄭師權賂物三兩餘錢, 分食而符同換出承實云, 查問於景燁·聖福·尙根·師權等, 則一如尙圭之言而無異辭矣. …….

❖ 정조 15년(1791) 신해년 8월 26일(무진)

□ 제주마(濟州馬)의 환출(換出)에 관한 심진현(沈晉賢)의 계

- 심진현(沈晉賢)이 내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신들이 엮드려서 내시에서 대령한 제주마(濟州馬) 환출(換出)의 일에 대해 듣고서, 매우 경해(驚駭)하였습니다. 그것을 엄사(嚴查)하게 하니 양마(養馬) 홍사규(洪尙圭)가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사적으로 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박상규(洪尙圭)를 착래(捉來)하여 사문(查問)하게 하니, 상규(尙圭)가 말한 것 안에, 거달(巨達) 이경엽(李景燁)의 중요(懲憑)하는 말을 듣고서, 거달 손성복(孫聖福)과 함께, 전인(廩人) 김상근(金尙根)·정사권(鄭師權)에게 뇌물(賂物) 3냥 남짓의 돈으로 수마(受馬)하고 분식(分食)하여 부동(符同)하여 환출하여 승실(承實)했다고 합니다. 경엽(景燁)·성복(聖福)·상근(尙根)·사권(師權) 등에게 조사하여 물으니, 상규의 말과 같아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八月 二十八日 庚午

- 正言朴吉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請爲奴罪人金壽賢·何翼龍, 竝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 정조 15년(1791) 신해년 8월 28일(경오)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정언 박길원(朴吉源)의 계
- 정언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노로 삼게 한 김수현과 하익룡(何翼龍)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승정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九月 十六日 戊子

- 正言張至顯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請爲奴罪人金壽賢·河翼龍, 竝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9월 16일(무자)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정언 장지현(張至顯)의 계

○ 정언 장지현(張至顯)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노로 삼게 한 김수현과 하익룡(何翼龍)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여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月 二日 癸卯

- 正言尹在明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請爲奴罪人金壽賢·河翼龍, 竝令王府, 設鞫得情, 決正王法. …… 答院曰, 不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0월 2일(계묘)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정언 윤재명(尹在明)의 계
- 정언 윤재명(尹在明)이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 청컨대,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과 하익룡(何翼龍)을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국청(鞠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왕법을 궤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승정원에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月 八日 己酉

- 以平安監司洪良浩狀啓, 濟州漂人出來事, 傳于林濟遠曰, 渠輩十五人, 萬死之餘, 得以生還, 極爲奇幸. 嚴飭沿路, 着念護送, 交付於原籍官事, 令廟堂卽爲分付.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0월 8일(기유)

- 제주(濟州)에서 표인(漂人)이 출래(出來)한 일에 관한 평안감사 홍양호(洪良浩)의 계
- 평안감사 홍양호(洪良浩)의 장계에, ‘제주(濟州)에서 표인(漂人)이 출래(出來)한 일’에 대해서, 임제원(林濟遠)에게 전교하기를, “저들 15인은 온갖 죽을 고비를 겪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대단히 기행(奇幸)이다. 연로(沿路)에 엄척하여, 착념(着念)하여 호송하게 하고, 원적관(原籍官)에 분부할 일로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분부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표인, 출래.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月 九日 庚戌

- 辛亥十月初九日辰時，上御熙政堂。…… 濟恭曰，濟州漂民出送咨文出來矣，今此節使，別伸謝愜之意，撰出回咨，別定禁軍，騎撥下送于灣府，使之傳給鳳城，轉致北京之地，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0월 9일(경술)

- 제주(濟州) 표민(漂民) 출송(出送) 자문(咨文)에 관한 채제공(蔡濟恭)의 계
- 신해년 10월 초9일 진시에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표류민에게 보낼 자문(咨文)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절사(節使)가 특별히 은총을 입게 하였으니, 회자(回咨)를 선출(撰出)하고, 특별히 금군(禁軍)을 정하여, 기발(騎撥)하여 만부(灣府)에 보내고 그것을 봉성(鳳城)에 전급(傳給)하게 하여, 북경(北京)으로 전치(轉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표민, 자문.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月 十日 辛亥

- 李亨元, 以訓練都監言啓曰, 濟州武舉子出身洪汝直, 今已上來, 謹依傳教, 本局哨官, 加設差下之意, 敢啓. 傳曰, 知道. 濟州人上京者, 此外又有幾人與此人? 卿其招見, 如有可合收用人, 草記, 可也.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0월 10일(신해)

- ☐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출신(出身) 홍여직(洪汝直)이 차하(差下)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 이형원(李亨元)이 훈련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 출신(出身) 홍여직(洪汝直)이 지금 올라왔으니, 삼가 전교에 따라, 본국(本局) 초감(哨官)을 가설(加設)하여 차하(差下)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제주인(濟州人)이 상경한 것은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이 사람뿐인가? 경(卿)은 그를 불러서 보고, 만일 마땅히 수용(收用)할 만한 사람인지 초기(草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출신, 홍여직, 제주인.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月 十四日 戊辰[乙卯]

- 李亨元, 以司僕寺官員, 以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李鴻運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故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前後申飭之下, 以體小瘦瘠者, 循例封進, 事極駭然, 該牧使李鴻運,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0월 14일(무진[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운(李鴻運)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형원(李亨元)이 사복시 관원으로서 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운(李鴻運)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으므로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게 하였습니다. 앞뒤로 신칙을 내렸으나, 체구가 작고 마른 것을 전례에 따라 봉진한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해당 목사 이흥운을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흥운, 체임진상마.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月 十六日 丁巳

- 李亨元, 以訓練都監言啓曰, 濟州出身洪汝直, 以加設哨官, 啓下矣. 今此哨官有關之代, 卽當陞實, 而馬兵哨官, 曾無出身填差之例, 步軍哨官中前虞候鄭宅興移差, 其代以洪汝直陞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0월 16일(정사)

- 제주(濟州) 출신(出身) 홍여직(洪汝直)을 초관(哨官)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는 훈련도감의 계
- 이형원(李亨元)이 훈련도감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출신(出身) 홍여직(洪汝直)에 대해서 초관(哨官)으로 가설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꺄원(闕員)인 초관에 대신할 자를 즉시 마땅히 승실(陞實)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병초관(馬兵哨官)은 일찍이 출신으로 전차(填差)한 예가 없습니다. 보군초관(步軍哨官) 중에 전 우후(虞候) 정택흥(鄭宅興)을 이차(移差)하고 그 개신으로 홍여직을 승실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출신, 홍여직, 초관.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一月 二日 癸酉

- 司諫李彦祐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賤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答曰, 不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1월 2일(계유)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사간 이언우(李彦祐)의 계
- 사간 이언우(李彦祐)가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사내종,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一月 九日 庚辰

- 申耆, 以刑曹言啓曰, 罪人崔敦行, 嚴刑一次後, 以誤入邪學, 捧遲晚, 全羅道靈巖郡楸子島, 定配所卽爲押送, 而到配時, 令該道臣加刑一次, 嚴飭該邑該島, 使之另加察飭, 俾無誑惑島民事, 一體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1월 9일(경진)

- 최돈행(崔敦行)을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함하는 건에 대한 형조의 계
- 신기(申耆)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최돈행(崔敦行)을 일차(一次)로 엄형(嚴刑)한 뒤에, 잘못하여 사학(邪學)에 들어서, 받드는 것을 지만(遲晚)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정배소(定配所)로 즉시 압송(押送)하게 했는데, 배소에 도착했을 때,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일차로 가형(加刑)하고, 해당 고을의 해당 섬에 엄칙하고, 그로 하여금 속히 더 찰칙(察飭)하고, 섬 백성들에게 광혹(誑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을 일체로 해당 도신에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최돈행, 추자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二月 一日 辛丑

- 正言尹悌東啓曰, 大靜縣爲奴罪人金壽賢, 以么麼宦寺, 交結士夫, 終爲凶賊之根柢, 而況其窮凶極惡之語, 敢欲潛售亂逆之心, 究厥罪惡, 萬戮猶輕, 情節未盡究覈, 輿情莫不憤惋. …… 答曰, 不允.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2월 1일(신축)

-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의 처단을 청하는 정언 윤제동(尹悌東)의 계
- 정언 윤제동(尹悌東)이 아뢰기를, “청컨대, 대정현(大靜縣)에서 노(奴)로 삼게 한 김수현(金壽賢)은 변변치 않은 환시(宦寺)로서, 사대부들과 사귀어 정을 맺고, 마침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根柢)가 되고, 더구나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감히 남몰래 난역(亂逆)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죄악을 구명하여 볼 때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운 듯합니다. 그 정절(情節)을 모두 캐어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그 여정(輿情)이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김수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二月 十日 庚戌

○ 有政。…… 沈晉賢，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濟州前牧使李鴻運，三次封進雄馬二匹，雌馬二匹，俱不合於御乘，故依初下教，該牧使，卽其地定配，該監牧官，捉來嚴棍，遠地充軍事，草記批旨內，關問該道伯，如果故犯，依草記施行可也事，命下矣。謹依下教，發關查問於該道伯處矣。卽接全羅監司鄭民始所報，則枚舉濟州牧使李運彬牒呈，以爲本州判官李徽祚，大靜縣監李麟臣，旌義縣監許湜，山馬監牧官金世珍牒報，及該監色所告內，莫重御乘馬，不善擇封，致勤查問之命，不勝惶懼，伏地埃勘。三次封進之際，國屯私養，一一看審，則毋論雌雄，無一可合，本道牧馬之法，異於陸地，放送山野，使之自飲自吃，則其盛其衰，似不在牧人之勤慢，而若有瘦病之馬，則設廄立養，自是馬政之緊節，而今則法久解弛，雖有設廄之名，而初無立養之事，冬寒雪積之時，故斃比前有倍。以閩失代徵之馬言之，不思擇封之道，惟以備數爲計，良種亦豈不殆盡乎？究厥弊源，非一朝一夕之故，到此惶悚，罔知攸措云。牧使到任屬耳，姑未知馬政之如何，而以報辭及該監色所告觀之，則良馬絕之，可以推知。若有一分可合者，則豈有匿而不封之理乎？以此推之，其非故犯之狀，可以洞燭。前牧使以罪名不改論報，至今稽滯，甚所惶悶，只憑邑報，枚舉馳報云。同州處在絕海之外，良馬之有無多寡，雖未的知，今以報辭觀之，則封進之馬，舉皆孱劣，似非前牧使之故犯，而從前以來，不勤申飭，以致良種之絕之，莫重封進，未免苟充，揆以事體，誠極寒心。着實攻駒，俾有實效之意，嚴關申飭於該牧使處云矣。本州馬政，近甚解弛，元摠則漸就耗縮，體品則舉皆孱劣，年例貢馬，不成貌樣，其來久矣，而至於今番，則特教封進，事體自別，該牧舉行之道，固當十分審慎，而屢次封進，連勤飭教，近來牧政，雖云凋弊，近萬馬匹，苟欲爲拔尤之政，何患無極擇之理，而由前由後，舉行若是慢忽，道臣查報，雖以非故犯爲辭，其在重事體徵後弊之道，不可置而毋論。依初下教，該牧使李鴻運，卽其地定配，監牧官金德亨，捉來嚴棍，遠地充軍，斷不可已，而雖以該道臣報辭見之，馬政緊節，無出喂養而廢却不行，閩失代徵，所當擇捧，而苟然充數，蓋其良種之絕乏，專由牧養之不誠，以此觀之，從前不勤，亦可推知。其在懲勵之道，不可不從重嚴治，前後不勤牧養之守令。監牧官，令該道臣詳查摘發，捧現告重勘，何如？傳曰，允。既有關問該道，如果故犯，卽其地定配之命，則配與不配間，不爲指一草記，故朝有飭教矣。觀此草記，旣云非故犯，該牧使用減一等律，牧官，令新牧使，嚴棍懲治，可也。

❖ 정조 15년(1791)辛亥년 12월 10일(경술)

□ 제주(濟州)의 마정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는 건

○ 정사가 있었다. <중략> 심진현(沈晉賢)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홍운(李鴻運)이 삼차(三次)로 봉진(封進)한 웅마[雄馬] 2필, 지마 2필 모두가 어승(御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교에 따라 해당 목사는 즉시 그 땅에 정배시키고, 해당 감목관(監牧官)은 붙잡아와서 엄곤(嚴梃)하고, 먼 땅에 충군(充軍)하게 할 일을 초기(草記)하고 비지(批旨) 안 관문(關問)에, 해당 도백(道伯)은 과연 일부러 저지른 것과 같아서, 초기(草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일을 명하였습니다. 삼가 하교에 따라 발관(發關)하고 해당 도백에게 발문(查問)하게 하였습니다. 즉시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 소보(所報)에 따라, 곧 매거(枚擧)한 제주목사 이운빈(李運彬) 첩정(牒呈)에, 이 고을 판관 이휘조(李徽祚), 대정현감 이인좌(李麟臣), 정의현감 허식(許湜),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세진(金世珍)의 첩보(牒報)와 해당 감색의 소고(所告) 내용에, 막중(莫重)한 어승마(御乘馬)를 잘 택봉(擇封)하지 못하여, 부지런히 사문(查問)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지없이 황공하여 얹드려 공손히 기다릴 뿐입니다. 3차로 봉진할 때에 군둔(國屯)에서 사양(私養)한 것을 일일이 간심(看審)하니, 암수를 말할 것 없이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도(本道)에서 목마(牧馬)하는 법은 육지(陸地)와 다름이 없이 산과 들판에 방송(放送)하고, 그로 하여금 절로 마시고 풀을 뜯게 하니, 그 성쇠가 목인(牧人)의 근만(勤慢)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수척하고 병든 말이 있으면 마구간을 설치하여 입양(立養)하니, 이때부터 마정(馬政)의 긴절(緊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오래 되어 해이해져서, 비록 마구간을 설치한다는 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입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어 추워져서 눈이 쌓였을 때 고흡(故斃)하는 것이 전에 비해 배가 되었습니다. 서실(闕失)한 것을 대징(代徵)하는 말에 대해 말하면 택봉(擇封)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갖추어진 수로 계산하여 양종(良種)도 어찌 거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폐단의 근원을 따져 본다면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황송하기에 이르러서, 몸 둘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도입하여 귀 기울여 들었지만, 잠시 아직 마정(馬政)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사(報辭)와 해당 감색 소고(所告)를 보니, 양마(良馬)가 끊어진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1푼이라도 합당한 것이 있다면 어찌 숨겨서 봉진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일부러 저지른 상황이 아니라, 통촉(洞燭)할 만한 것입니다.

전 목사가 죄명(罪名)을 고치지 않고 논보(論報)하고, 지금까지 지체하여 매우 황
 민(惶悶)한 바가 있으니, 단지 읍보(邑報)에만 의거하여 매거하여 치보(馳報)했다
 고 합니다. 같은 고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 밖에 있어서, 양마(良馬)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은 비록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지금 보사(報辭)를 보니, 봉진
 한 말 거개(學皆)가 잔열(孱劣)하여, 전 목사의 고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전(從前) 이래로 부지런히 신칙(申飭)하지 않아서, 양종(良種)이 거의 없어서,
 막중한 봉진하였으나, 구차하게 채우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사체(事體)를
 살펴보건대, 참으로 매우 한심합니다. 착실하게 공향(攻駟)하여, 다만 실효가 있
 게 하는 뜻을 엄관(嚴關)하여 해당 목사에게 신칙(申飭)했다고 합니다. 이 고을의
 마정은 근래에 매우 해이(解弛)해져서, 원충(元摠)은 점점 감소해 줄어들고, 체품
 (體品)은 거개가 잔열하여, 연례공마(年例貢馬)는 제대로 이루지 못해, 이어 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르기까지 특교(特敎)로 봉진하였는데, 사
 체가 자별(自別)하여, 해당 목에서 거행해야 하는 방도가 진실로 마땅히 십분(十
 分)으로 심신(審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봉진하는데 연이어 부지런히
 칙교(飭敎)하여 근래의 마정은 비록 조폐(凋弊)하다고 하더라도, 만여 필이 말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수한 것을 선발하는 정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걱정이
 없이 극택(極擇)하는 도리가 없겠습니까? 앞뒤가 같이 거행했는데 이와 같이 만
 흘(慢忽)하면, 도신이 사보(查報)합니다. 비록 일부러 저지르지 않은 것을 말로
 꾸미더라도 중한 사체에 있어서 나중에 생기는 폐단이 작아서 두고서 논한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하교에 따라 해당 목사 이홍운을 즉시 그 땅에 정배
 시키고, 감목관(監牧官) 김덕형(金德亨)은 붙잡아와서 엄곤하고, 먼 지방으로 충
 군(充軍)하여 처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라니 비록 해당 도신의 보사를 보건
 대, 마정은 긴절하여, 나가서 외양(喂養)하지 않아서 폐지되어 행해지지 않고 있
 습니다. 서실(闕失)한 것은 대징하여 마땅히 택봉(擇捧)해야 하니, 겨우 충수(充
 數)합니다. 대개 그 양종(良種)이 절핍(絕乏)하면 오로지 수양(牧養)이 불성(不誠)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이 보고를 보건대, 종전부터 불근(不勤)한 것도 미
 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 징려(懲勵)하는 도리에 있어서 종중(從重)하여 엄치(嚴
 治)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뒤로 수양에 힘쓰지 않은 수령과 감목관은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조사하여 적발하게 하고, 현고를 받들어 엄하게 감처
 (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미
 해도(該道)에 관문(關問)한 바가 있는데, 과연 고범과 같으니, 즉시 그 땅에 정배
 하라는 명이 내려진 것이다. 정배했는지 정배하지 않았는지 간에 하나로 확정지
 어 초기(草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칙교(飭敎)를 내린 것이다.

이 초기를 보건대, 이미 일부러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해당 목사는 한 등급을 감하는 율을 적용하고, 목관(牧官)은 새 목사로 하여금 엄곤하여 징치(懲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휘조, 대정현감, 이인좌, 정의현감, 허식, 산마감목관, 김세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二月 十日 庚戌

- 辛亥十二月初十日辰時，上御熙政堂。…… 濟恭曰，此濟州牧使李運彬災實分等狀啓也。以爲三邑農形，僅得免歉，而新舊還，一時竝督，其勢誠難，舊還停退，新還期於準捧，各司奴婢身貢米，每一口二斗內，減一斗，男丁米每口五升內，減一升，軍兵操鍊，今姑停止，逃老故病廢之類，隨闕充定，待明春，從附近哨司鍊，而凡此舉行，固當稟旨，恭俟處分，而一番往來，動費累朔，姑先舉行，事涉擅便，誠極惶悚，爲辭矣。分等，依狀請施行，其餘舊還停退，奴婢身貢與男丁米減給，逃老故充定後，待明春操鍊等諸條，若待稟旨蒙允後爲之，則絕海之外，必有未及之患，一竝依狀請舉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2월 10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빈(李運彬)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에 관해 의논함

- 신해년 12월 초10일 진시에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흥빈(李運彬)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세 고을의 농형(農形)은 거의 흉년을 면할 만하나,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일시에 병독(竝督)하건대,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환은 정퇴(停退)하고, 신환(新還)은 기어이 준봉(準捧)하였습니다. 각사노비(各司奴婢)의 신공미(身貢米)는 매 1구 2말 안에, 1말을 줄여주고, 남정미(男丁米)는 매 구(口) 5되 안에, 1되를 줄여주었습니다. 군병(軍兵)의 조련(操鍊)은 지금 잠시 정지(停止)시키고, 도망하거나 늙거나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결한 대로 충정(充定)하였습니다. 내년 봄을 기다려서 부근 초사(哨司)를 따라 훈련시켰습니다. 무릇 이것들을 거행하고 진실로 마땅히 품지(稟旨)하여, 공손하게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번 왕래(往來)하면 여러 달이 허비되곤 하니, 잠시 먼저 거행하는 것이 제멋대로 하는 데에 관계될까봐, 진실로 매우 황송하여 글을 씁니다. 분등(分等)은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고, 그 나머지 구환(舊還)은 정퇴(停退)하고, 노비 신공과 남정미는 줄여주고, 도망하고 늙고 죽은 병사는 충정한 뒤에, 내년 봄을 기다려서 조련하는 등의 제조(諸條)는 만약 품지(稟旨)를 기다려서 몽운(蒙允)한 뒤에 하니, 멀리 바다 밖이 반드시 미치지 못할 걱정이 있으니, 한꺼번에 아울러서 장청에 따라 거행하게 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넘】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흥빈, 재실분등장계.

❖ 乾隆 五十六年 辛亥 十二月 十四日 甲寅

- 下備忘記于徐有成曰，院相，卽摠攝國政之任也，其體貌與禮遇，果何如，而不幸間有事故者，盤劍未嘗輕加，此卽我朝敬大臣之家法也。此人亦然，年前臺論之峻發也，只施譴罷之典者，意豈徒爾？今聞其長逝，若無拔例之舉，烏在其別視院相之意乎？前領府事金尙喆，罪名蕩滌，以大臣禮葬舉行。情固可誅，三尺有時或屈者，蓋於常法之中，參以造化之，權化之，權也，其當不當，何足較看？濟州牧減死荐棘罪人宇鎮，特爲放送，卽許歸葬。

❖ 정조 15년(1791) 신해년 12월 14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천극죄인(荐棘罪人) 김우진(金宇鎭)의 방송(放送)에 관한 비망기
- 비망기를 서유성(徐有成)에게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중략〉 제주목(濟州牧) 감사(減死) 천극죄인(荐棘罪人) 김우진(金宇鎭)을 특별히 방송(放送)하고, 즉시 귀장(歸葬)을 허락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감사 천극죄인, 우진.

1792年

(정조 16)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一月 二十九日 己亥

- 左議政蔡濟恭劄曰, …… 臣於在水原時, 聞罪人字鎮拿到畿·湖之境, 昨又因備局公事, 見濟州牧謄報, 則逆字之越海而陸, 果已多日矣. …… 仍傳曰, 此批答遣史官傳諭, 更遣御醫看病.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월 29일(기해)

- 죄인 김우진(金宇鎭)에 대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차자(劄子)
-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차자(劄子)로 아뢰기를, “〈중략〉신이 수원(水原)에 있을 때, 죄인 김우진(金宇鎭)을 기호(畿湖) 지경에서 나도(拿到)하고, 어제 또 비국(備局)의 공사(公事)로 인해, 제주목(濟州牧)의 등보(謄報)를 보건대, 곧 김우진이 바다를 건넜다가 육지에 온 것은 과히 이미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그대로 전교하기를, “이 비답(批答)을 사관(史官)에게 보내어 전유(傳諭)하게 하고, 다시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看病)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우진.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日 己酉

○ 備邊司薦望, 以李喆運爲濟州牧使.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0일(기유)

□ 이철운(李喆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함

○ 비변사에서 이철운(李喆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하였다.

△ 주제어: 이철운, 제주목사, 천망.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日 己酉

- 前提學吳載純, 前直提學徐浩修·李秉模, 前直閣徐鼎修等疏曰, …… 我國偏小, 雖以耽羅之越海, 猶患其近, 況此喬桐, 卽在畿封之內, …… 使此賊置於此島, 謂以處分已定, 相率于于而退乎? …… 答曰, 省疏具悉. 西京法令, 務尙寬大, 如宇鎮者處地, 似難免無蜚, 而今番處分之一切拂群情, 非欲力戰公議也. …….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0일(기유)

- ☐ 역적 김우진(金字鎭)의 처지(處地)에 관한 전 제학 오재순(吳載純) 등의 상소
- 전 제학(提學) 오재순(吳載純), 전 직제학 서호수(徐浩修)·이병모(李秉模), 전 직각(直閣) 서정수(徐鼎修) 등이 상소하기를, “〈중략〉 우리나라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작은 나라로, 비록 탐라(耽羅)가 바다를 건너 곳이라 해도 그곳을 가까이 할 것이 염려됩니다. 하물며 이 교동(喬桐)은 기봉(畿封)의 안에 있으나, 〈중략〉 이 적을 이 섬에 두게 하는 조치를 이미 정하였는데 서로 이끌고 이끌어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상소를 자세히 살펴서 다 알고 있다. 서경(西京)의 법령(法令)은 일찍이 관대(寬大)하기에 힘썼으니, 만일 김우진(金字鎭)이란 자를 처지(處地)했다면, 탈이 없게 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처분(處分)의 일체를 군정(群情)으로 어겨서, 힘써 공의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탐라, 김우진.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日 己酉

○ 壬子二月初十日未時，上御誠正閣。諸承旨持公事入侍，大臣·閣臣·三司同爲入侍時，行都承旨趙尙鎮，行右承旨申大謙，左副承旨柳文養，右副承旨李喆模，假注書尹行直·鄭尙愚，記事官洪樂游·徐有聞，左議政蔡濟恭，一提學吳載純，檢校直提學徐浩修·李秉模·徐鼎修，行大司憲趙宗鉉，執義申禹相，掌令鄭景祚，持平高宅謙·李翊模，獻納朴瑞源，校理林道浩·成德雨，副校理李貞運，正言韓商新，副修撰宋民載，以次進伏訖。……命承旨讀公事，書判付，命書濟州牧使狀啓判付訖。……濟州牧使李運彬，卽令王府，拿來嚴刑，極邊減死違籬安置，以重命令，以杜後弊。又命書傳教曰，提調見有實病，許遞，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察任。又命書榻教曰，進御香橘茶，自今日一貼式，限三貼煎入。命書傳教曰，都承旨見有實蜚，許遞，右承旨亦爲許遞，前望單子入之，待下批牌招察任。又命書榻教曰，濟州牧使之代，今日議薦，仍令當日辭朝。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0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의 나래(拿來)와 엄형(嚴刑)에 관해 논의 함

○ 임자년 2월 10일 미시에 상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니, 대신(大臣)과 각시는 삼사(三司)가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행도승지 조상진(趙尙鎮), 행우승지 신대겸(申大謙), 좌부승지 류문양(柳文養), 우부승지 이철모(李喆模), 가주서 윤행직(尹行直)·정상우(鄭尙愚), 기사관 홍낙유(洪樂游)·서유문(徐有聞),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일제학 오재순(吳載純), 검교직제학 서호수(徐浩修)·이병모(李秉模)·서정수(徐鼎修), 행대사헌 조종현(趙宗鉉), 집의 신우상(申禹相), 장령 정경조(鄭景祚), 지평 고택겸(高宅謙)·이익모(李翊模), 헌납 박서원(朴瑞源), 교리 임도호(林道浩)·성덕우(成德雨), 부교리 이정운(李貞運), 정언 한상신(韓商新), 부수찬 송민재(宋民載)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승지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를 읽게 하고, 판부(判付)를 쓰게 하였다.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쓰고 판부(判付)하게 명하여 끝냈다. <중략> 또한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제주목사 이운빈(李運彬)은 즉시 의금부로 하여금 나래(拿來)하여 엄형(嚴刑)하게 하고, 극변(極邊)에 감사(減死)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게 하고, 중한 명령으로써,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전교를 쓰

라고 명하기를, “도승지는 실제 탈[蜚]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허체(許遞)하고, 우승지도 허체하라. 전의 망단자(望單子)을 들이게 하고, 하비(下批)를 기다렸다가 패초(牌招)를 찰임(察任)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 탑교(榻敎)를 쓰라고 명하기를, “제주목사를 대신하는 것은 오늘 의천(議薦)하고, 그대로 당일에 사조(辭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명을 물리고,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운빈.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一日 庚戌

○ 吏曹口傳政事, 濟州牧使單李喆運.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1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철운(李喆運)을 단망(單望)함

○ 이조에서 구전(口傳)으로 정사(政事)를 펼쳤는데,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철운(李喆運)을 단망(單望)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一日 庚戌

- 備忘記, 濟州牧使李喆運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 賜給.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1일(경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이 하직(下直)함

- 비망기에, “제주목사 이철운(李喆運)이 하직(下直)하자, 장궁(長弓) 1장,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부를 사급(賜給)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一日 庚戌

- 林濟遠,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李運彬, 卽令王府, 拿來嚴刑, 極邊減死圍籬安置事, 命下矣. 李運彬時在任所, 卽爲發遣府胥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1일(경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의 나래(拿來)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을 즉시 의금부로 하여금 나래(拿來)하여 엄형(嚴刑)하게 하고, 극변(極邊)으로 감사(減死)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이운빈은 당시 임소(任所)에 있으니, 즉시 부(府)의 서리(胥吏)를 발견(發遣)하여, 교대(交代)한 뒤에 나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운빈, 나래.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十一日 庚戌

- 領敦寧洪樂性筭曰，…… 顧今伸天討正王綱之道，惟有追施逆喆孥籍之典，亟正凶宇邦刑之律，小洩神人之憤，則耽羅遠配，尙不可議及，況彼喬桐，名雖海島，實是畿邑者耶？又況喬桐，…….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11일(경술)

- 흥우(凶宇) 김우진(金鎭宇)을 탐라(耽羅)에 원배(遠配)하길 청하는 흥낙성의 상소
- 영돈녕(領敦寧) 흥낙성(洪樂性)이 상소하기를, “〈중략〉 지금 하늘의 처벌을 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왕강(王綱)의 도리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직 역적 김상철에게 노적(孥籍)의 법률을 시행한 것을 되새겨서, 속히 흥우(凶宇) 김우진(金鎭宇)를 방형(邦刑)의 울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신과 인간들의 분개가 풀리게 해야 합니다. 탐라(耽羅)에 원배(遠配)하는 것은 오히려 의논할 수 없기는 합니다. 하물며 저 교동(喬桐)은 명색이 비록 해도(海島)라 하더라도 실로 기읍(畿邑)인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흥우, 김우진, 탐라.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二月 三十日 己巳

- 壬子二月三十日辰時，上御熙政堂。日次儒生殿講，大臣·備局堂上引見，抄啓文臣親試，同爲入侍時，行都承旨趙尙鎮，行左承旨閔台燾，右承旨趙衍德，左副承旨李晚秀，右副承旨申耆，同副承旨李百亨，假注書鄭尙愚·趙台榮，記事官洪樂游·徐有聞，以次進伏訖。……宗岳曰，爲先發配於濟州後，次論正法宜矣。上曰，臺啓既發之後，不得發配，卽三百年古例，豈可遽爾廢壞耶？濟恭曰，然矣。……

❖ 정조 16년(1792) 임자년 2월 30일(기사)

□ 제주(濟州)에 발배(發配)하는 건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함

- 임자년 2월 30일 진시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일차(日次) 유생(儒生)의 전강(殿講)에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를 위해 함께 입시했을 때, 행도승지 조상진(趙尙鎭), 행좌승지 민태혁(閔台燾), 우승지 조연덕(趙衍德), 좌부승지 이만수(李晩秀), 우부승지 신기(申耆), 동부승지 이백형(李百亨), 가주서 정상우(鄭尙愚)·조태영(趙台榮)·기사관 홍낙유(洪樂游)·서유문(徐有聞)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박종악(朴宗岳)이 아뢰기를, “우선 제주(濟州)에 발배(發配)한 뒤에, 차례로 정법(正法)을 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계(臺啓)를 기발(既發)한 뒤에는 발배할 수 없으니, 즉시 300년의 고례(古例)를 어찌 갑자기 네가 폐괴(廢壞)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四月 二十三日 辛酉

- 李晩秀,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李運彬, 今已拿囚, 依前下傳教內辭意, 嚴刑極邊, 減死圍籬安置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4월 23일(신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의 나수(拿囚)와 엄형(嚴刑)을 청하는 이만수의 계
- 이만수(李晩秀)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을 지금 이미 나수(拿囚)하였으니, 전에 내린 전교 안의 사의에 따라, 엄형(嚴刑)하고 극변(極邊)에 감사(減死)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를 거행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운빈, 나수.

❖ 乾隆 五十七年 壬子 閏四月 十七日 乙酉

- 李百亨, 以義禁府言啓曰, 因全羅道監司鄭民始狀啓, 司僕寺覆啓內, 濟州前判官全宇成 · 金再郁 · 鄭鍊, 旌義前縣監任光鉉 · 李甲龍等, 竝令該府拿問勘處事, 允下矣, 全宇成, 時在慶尙道醴泉地, 李甲龍, 時在丹城地, 任光鉉, 時在京畿楊根地云, 依例發遣府羅將竝拿來, 金再郁 · 鄭鍊, 已爲身故云, 罪名勿論,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윤4월 17일(을유)

- 제주판관(濟州判官)과 정의현감(旌義縣監)의 나문(拿問)과 감처(勘處)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이백형(李百亨)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라도 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로 인해, 사복시 복계 안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전우성(全宇成) · 김재방(金再郁) · 정간(鄭鍊),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임광현(任光鉉) · 이갑룡(李甲龍) 등을 아울러서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할 일’을 윤허하여 내렸습니다. 전우성은 당시 경상도(慶尙道) 예천(醴泉) 땅에 있었고, 이갑룡은 당시 단성(丹城) 땅에 있었고, 임광현은 당시 경기(京畿) 양근(楊根)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례에 따라 부(府)의 나장(羅將)을 발견(發遣)하여 모두 나래(拿來)하게 하고, 김재방(金再郁) · 정간(鄭鍊)은 이미 신고(身故)했다고 하므로 죄명(罪名)을 논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정의현감, 전우성, 김재방, 정간, 임광현, 이갑룡.

❖ 乾隆 五十七年 壬子 閏四月 二十一日 己丑

- 金孝建, 以義禁府言啓曰, 頃因全羅監司鄭民始狀啓, 司僕寺覆啓內, 旌義前縣監任光鉉, 拿問勘處事允下, 而時在京畿楊根地云, 故發送羅將, 使之拿來矣. 卽接楊根郡守宋啓來牒呈, 則任光鉉, 已爲身故云, 罪名勿論,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윤4월 21일(기축)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임광현(任光鉉)의 나문(拿問)과 감처(勘處)에 관한 의금부의 계
- 김효건(金孝建)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로 인해, 사복시 복계(覆啓) 안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임광현(任光鉉)을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는 일을 윤희하여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경기 양근(楊根) 땅에 있다고 했으므로, 나장(羅將)을 발송(發送)하여, 그로 하여금 나래(拿來)하게 하였습니다. 곧 양근군수(楊根郡守) 송계래(宋啓來)의 첩정(牒呈)을 접해보니, 임광현은 이미 신고(身故)했다고 하므로 죄명을 논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임광현, 나문, 감처.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五月 十一日 戊申

- 義禁府啓目, 定山前縣監李顯民原情云云. …… 又啓目, 旌義前縣監李甲龍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晚,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功議區別, 以草記考律勘放爲良如教.

❖ 정조 16년(1792) 임자년 5월 11일(무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의 원정(原情)에 관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정산현감(定山縣監) 이현민(李顯民)의 원정(原情)에 운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계목(啓目)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의 원정(原情)에 운운하였습니다. <중략> 문목(問目) 안의 사연(辭緣)에, 공초할 때 범범하게 지만(遲晚)이라고 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 어떻겠는지 판부(判付)를 계하하고 공의(功議)를 구별하여, 초기(草記)로써 고율(考律)하여 감방(勘放)하여야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이갑룡, 원정.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五月 十二日 己酉

- 徐榮輔,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李甲龍原情公事判府內, 功議區別, 以草記考律勘放事, 命下矣. 李甲龍, 全羅監司鄭民始狀啓據, 司僕寺覆啓內, 旌義縣甲辰年欠縮馬, 爲一百九十三匹, 欠縮之數, 旣如是夥多, 則其不勤監牧之罪, 在所難免, 雖已遞職, 不可置而不論, 令該府拿問勘處. 罪取考律文, 則大明律制書有違條, 有曰凡奉制書, 有所施行, 而違者杖一百, 大典通編推斷條, 有曰犯私罪, 杖一百決杖, 告身盡行追奪, 雜令條, 有曰王府決杖者, 代以金贖矣. 李甲龍,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而其十代祖濟, 開國功臣云, 功減一等, 杖九十收贖, 奪告身四等, 放送,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5월 12일(기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의 처단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서영보(徐榮輔)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때에 간혀 있는 죄인 이갑룡(李甲龍)의 원정(原情)에 대한 공사(公事) 판부(判府) 안에, 공의(功議)를 구별(區別)하여 초기(草記)로써 고율(考律)하여 감방(勘放)하게 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이갑룡은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에 의거한 사복시 복계 안에, 정의현(旌義縣) 갑진년(1784) 흠축마(欠縮馬)는 193필인데, 흠축(欠縮)한 수가 이미 이와 같이 과다(夥多)했으니, 그에 힘쓰지 못한 감목(監牧)의 죄는 재소(在所)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비록 이미 체직(遞職)했더라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 율문(律文)을 취고하니, 《대명률(大明律)》 제서유위(制書有違) 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라고 하고, 《대정통편(大典通編)》 추단(推斷) 조에, ‘사죄(私罪)를 범하면 장 1백에 결장(決杖)한다.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한다.’라고 하고, 잡령(雜令) 조에, ‘의금부에서 결장(決杖)한 자는 대신하여 돈으로써 속량(贖良)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갑룡은 장 1백에 소속(收贖)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게 해야 하나, 그 10대조 제(濟)가 개국공신(開國功臣)이라고 하니, 공으로 1등을 감하여, 장 9십에 소속(收贖)하고, 고신(告身) 4등을 탈(奪)하여 방송(放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이갑룡.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五月 二十七日 甲子

- 洪義榮, 以義禁府言啓曰, 頃因全羅監司鄭民始狀啓, 司僕寺覆啓內, 濟州前判官全宇成拿問處之事允下, 而時在慶尙道醴泉地云. 故發送羅將, 使之拿來矣. 宇成不在於本郡, 故羅將卽已回還, 而更爲發關於慶尙監司鄭大容處, 使之探訪, 則其牒報內, 全宇成, 居生於永川郡, 乙巳年分, 已爲身故云, 罪名勿論,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5월 27일(갑자)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전우성(全宇成)의 나문(拿問)과 처지(處之)에 관한 의금부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 장계에 대하여, 사복시 복계 안에,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전우성(全宇成)을 나문(拿問)하여 처지(處之)할 일을 윤하(允下)하였는데, 그는 때에 경상도 예천(醴泉) 땅에 있다고 했으므로 나장(羅將)을 발송(發送)하여, 그로 하여금拿來하게 했습니다. 전우성이 본군(本郡)에 있지 않았으므로 나장은 즉시 회귀(回還)하였습니다. 다시 경상감사 정대용(鄭大容)에게 발관(發關)하여 그로 하여금 탐방(探訪)하게 한즉, 그의 첩보(牒報) 안에, 전우성은 영천군(永川郡)에 거생(居生)하고 있다가, 을사년(1785) 즈음에 이미 신고(身故)하였다고 하니, 죄명을 논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전우성, 나문, 처지.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六月 三日 庚午

- 有政. 吏批, 判書金思穆, 參判朴祐源, 參議徐邁修, 行左承旨李得濟進. 以趙尙鎮爲承旨, 徐有隣爲刑曹判書, 金熙澤爲惠陵參奉, 鄭運躋爲大靜縣監, 故府使金由行贈吏參例兼, 學生金祐謙贈吏議, 進士金昌業贈僕正, 已上前忠淸監司金履翼三代追贈.

❖ 정조 16년(1792) 임자년 6월 3일(경오)

- ☐ 정운제(鄭運躋)를 대정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정운제(鄭運躋)를 대정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중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운제, 대정현감.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六月 十九日 戊子[丙戌]

- 李集斗, 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鄭民始狀啓內, 濟州牧使李喆運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李喆運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分揀.

❖ 정조 16년(1792) 임자년 6월 19일(무자[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처단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집두(李集斗)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 장계 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죄상(罪狀)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일’을 계하하였습니다. 이철운은 당시 임소(任所)에 있다고 해서, 전례에 따라 부(府)의 서리(書吏)를 발견(發遣)하여 교대(交代)한 뒤에 나래(拿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죄지은 형편을 보아서 용서하라[分揀].”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七月 三日 庚子

- 李家煥, 以刑曹言啓曰, 依下教, 別監徐敬植, 發問目嚴刑一次後, 定配於全羅道濟州牧, 徐敬一, 定配於咸鏡道吉州牧, 而押送于各該道, 仍令道臣各別嚴刑一次後, 竝即發配事, 發關分付. …….

❖ 정조 16년(1792) 임자년 7월 3일(경자)

- 별감 서경식(徐敬植)의 제주목(濟州牧) 정배에 관한 형조의 계
- 이가환(李家煥)이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하교(下教)에 따라 별감 서경식(徐敬植)은 문목(問目)을 내어 일차(一次)로 엄형(嚴刑)한 뒤에,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정배하게 하고, 서경일(徐敬一)은 함경도 길주목에 정배하게 하고, 각 해도(該道)로 압송(押送)하여 그대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별하게 일차로 엄형(嚴刑)하게 한 뒤에, 모두 즉시 발배(發配)할 일을 발관(發關)하여 분부(分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서경식, 제주목.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七月 四日 辛丑

- 李祖承, 以吏曹言啓曰, 新除授義城縣令李恒演呈狀內, 矣身老母, 今年八十四歲, 法不當遠離赴任云. 親年七十歲以上者, 勿差三百里外遠邑守令, 載在法典, 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昨命更擬之時, 以司謁口傳下教於政廳曰, 若有如前不審, 當遠補耽羅爲教, 仍令望筒書入, 然後肅命於外補, 則觀此草記, 卽衆所共知之應頃者, 銓堂雖或未知, 排擬之際, 若欲十分致慎, 則一問於曹吏輩, 亦可知之. 昨下嚴教之, 不能警聽, 可知矣. 駭然姑無論, 命令不可不信, 前判堂金思穆, 濟州牧使除授, 當日辭朝, 龜城外補傳教, 勿施, 俾諸臣少知朝廷有綱紀. 雖以參政卿等言之, 亦焉道重勘乎? 竝施刊削之典, 亞三銓卽爲議薦, 待下批牌招, 開政差出.

❖ 정조 16년(1792) 임자년 7월 4일(신축)

□ 김사목(金思穆)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는 건에 대한 이조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이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새로 제수(除授)한 의성현령 이항연(李恒演)의 정장(呈狀) 안에, 이몸[矣身]의 노모(老母)가 올해 나이 84세여서 법으로 마땅히 먼 곳으로 떠나 부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친부모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3백리 밖 먼 고을을 수령으로 차정하지 말라는 것이 법전에 들어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어제의 명을 고쳐서 의망(擬望)할 때, 사알(司謁)의 구전(口傳)으로써 정청(政廳)에 하교하기를, “만약 전과 같이 살피지 못하면, 마땅히 멀리 탐라(耽羅)에 보임해야 한다고 전교하였으니 그대로 망통(望筒)으로써 서들이게 한 뒤에 외보(外補)에 숙명(肅命)하였다. 곧 이 초기(草記)를 보건대, 즉시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은 응탈자(應頃者)는 전당(銓堂)이 비록 혹 알지 못하여 나누어 의의할 때에, 만약 십분 신중하게 하려 했으면 한번 조리배(曹吏輩)에게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다. 어제 내린 엄교(嚴教)를 잘 경청(警聽)하지 않은 것도 알겠도다. 해연(駭然)하게 잠시 논함이 없이 명령(命令)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전 판당(判堂) 김사목(金思穆)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除授)하고, 당일(當日)에 사조(辭朝)하여, 귀성(龜城)의 외보로 전교(傳教)하는 것을 시행하지 말라. 제신(諸臣)으로 하여금 조정에 강기(綱紀)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게 하고, 비록 참정(參政)으로써 경들에게 말하는 것도 어찌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모두 사적(仕籍)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라고 하령하라. 아전과 산전[亞三銓: 이조참판과 참의]은 즉시 의천(議薦)하고, 하비(下批)를 기다려서 초패(牌招)하고, 개정하여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사목, 제주목사, 제수.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七月 十六日 癸丑

- 李祖承,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世珍, 辛亥壬子兩年條, 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封進事體, 何等嚴重, 特教申飭, 又何等截嚴, 而上送馬匹, 俱爲體小品劣, 又復如前, 事極駭然. 當該監牧官金世珍, 分付該牧使, 從重決棍,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7월 16일(계축)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세진(金世珍)의 봉진마(封進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세진(金世珍)은 신해(1791)·임자(1792) 양년조(兩年條)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봉진(封進)한 사체(事體)가 어찌나 엄중한 것인지 특교(特教)를 내려 신칙(申飭)하게 하고, 또 실어 보내는 것도 어찌나 엄한 것인지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상송한 마필은 모두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하고, 또 전과 같이 반복되었으니 일이 매우 해연(駭然)합니다. 마땅히 해당 감목관 김세진을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여 종중(從重)하여 결곤(決棍)하게 하고, 이로써 일후에 징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산마감목관, 김세진, 봉진마.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七月 十六日 癸丑

- 李祖承,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 合三百四十匹內, 十四匹漂失, 八匹船中故失, 四匹到中路故失, 二匹到衿川病留, 實納馬三百十二匹, 禾毛色, 別單書入, 而前後申飭之下, 以體小品劣者, 苟充封進, 揆以事體, 誠極未安, 當該前牧使李喆運,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6년(1792) 임자년 7월 16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先運) 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조승(李祖承)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先運) 삼명일 진상마 60필, 차비진상마 80필, 세공마 200필을 합하여 344필 안에, 14필은 표실(漂失)하고, 8필은 배 안에 고실(故失)하고, 4필은 중로에서 고실(故失)하고, 2필은 금천(衿川)에 다다라서 병으로 남아서, 실납마(實納馬)는 312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에 대해서는 별단으로 써서 들였습니다. 앞뒤로 신칙(申飭)하여 내렸는데도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한 것을 구차하게 보충하여 봉진했으니, 사체를 살펴보건대 참으로 매우 미안합니다. 마땅히 해당 전 목사 이철운(李喆運)을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진상마.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七月 十九日 丙辰

- 申耆,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兵曹別啓請山屯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二百四十八匹內八匹漂失, 四匹船中故失, 十四匹到中路故失, 二匹到江頭病留, 實納馬二百二十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7월 19일(병진)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신기(申耆)가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연례진상마 8필, 별어승마 20필, 병조 별계청(別啓請) 산둔마 200필, 흥구노태마 20필을 합한 248필 안에, 8필이 표실(漂失)하고, 4필이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14필이 중로에서 고실(故失)하고, 2필이 강두(江頭) 이르러 병으로 남고, 실납마(實納馬) 220필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진상마.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八月 八日 甲戌

- 壬子八月初八日巳時，上御重熙堂。都承旨·右副承旨入侍時，都承旨徐邁修，右副承旨徐榮輔，記事官徐有聞，記事官洪樂游·林景鎮，以次進伏訖。…… 命榮輔書傳教曰，朴判府事家，遣御醫看病，江居必多齟齬，入處京第調攝事，招致樞郎傳諭，以濟州牧使李喆運農形狀啓，命書傳教曰，觀此狀本，風雨痒稼，極爲關念，此時牧守，難付生手，新補外之牧使，聞已越海云。而重臣之出補重溟之外者，豈可經歲許久乎？然則徒有數遞之弊，前牧使李喆運仍任，松政之重，何處不然，而湖南事最可悶，令廟堂講究適用之方，兼欲一番大加蘇弊釐瘼。金思穆，移除全羅右水使，仍令除辭朝赴任，密符以濟牧，辭朝時所佩者仍佩事，成送諭書，待還渡海齎傳事，該房知悉。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6년(1792) 임자년 8월 8일(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농형(農形)에 관한 장계(狀啓)

- 임자년 8월 8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도승지 우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도승지 서매수(徐邁修), 우부승지 서영보(徐榮輔), 기사관 서유문(徐有聞), 기사관 홍낙유(洪樂游)·임경진(林景鎮)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영보(徐榮輔)에게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라고 하기를, “박(朴) 판부사(判府事)가 집에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看病)하게 하고, 강거(江居)에는 반드시 조어(齟齬)가 많아서, 들어와서 서울의 집에 거처하고 조섭(調攝)할 일에 대해서, 구랑(樞郎)을 초치(招致)하여 전유(傳諭)하라.”라고 하였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농형(農形) 장계(狀啓)에 대하여, 전교를 쓰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이 장본(狀本)을 보건대, 풍우(風雨)가 곡식을 해쳐 매우 마음이 쓰인다. 이런 때에 목사를 서투른 자에게 맡기기 어렵다. 새로 보외(補外)한 목사가 이미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바다 건너로 출보(出補)한 중신(重臣)을 어찌 겨우 한 해 지난 것을 오래되었다고 하여 자주 체직하는 폐단이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전 목사 이철운을 그대로 보임시키라. 송정(松政)이 중함은 어느 곳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만 호남이 가장 민망하니, 겸하여 크게 소생시키고자 한다. 목사 김사목(金思穆)을 전라우수사로 옮겨 제수하되 조사(朝辭)를 면제하여 부임하게 할 것이며, 밀부(密符)는 제주목사로 사조할 때 차던 것을 그대로 차도록 유서(諭書)를 만들어

보내 바다를 건너오기를 기다려서 전하라⁴¹⁰)고 한 일을 해방(該房)에 알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명이 물러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농형 장계.

410)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1792) 8월 8일자 기사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八月 九日 乙亥

- 有政. 吏批, 判書李文源牌不進, 參判閔鍾顯進, 參議未差, 左承旨林濟遠進. 啓曰, 判書李文源牌招不進, 參議未差, 小臣, 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之. 以韓致應爲吏曹佐郎, 田佐顯爲監察, 權漢緯爲高山察訪, 濟州牧使李喆運, 保寧縣監吳正根, 以上仍任事承傳.

❖ 정조 16년(1792) 임자년 8월 9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이철운(李喆運)을 임임하라는 전지에 관한 이비의 계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문원(李文源)은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고, 참판 민종현(閔鍾顯)은 나왔다. 참의는 아직 차임되지 않고, 좌승지 임제원(林濟遠)은 나왔다. 계하기를, ‘판서 이문원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의는 아직 차임되지 않았는데, 소신이 홀로 정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한치응(韓致應)을 이조좌랑으로, 전좌현(田佐顯)을 감찰로, 권한위(權漢緯)를 고산찰방으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이철운(李喆運), 보령현감을 오정근(吳正根)을 임임(仍任)시키라는 전지(傳旨)를 받들었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 乾隆 五十七年 壬子 九月 三日 己亥

- 林濟遠, 以司僕寺言啓曰, 大靜前縣監李麟臣,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廄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9월 3일(기해)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인신(李麟臣)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사복시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인신(李麟臣)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내구(內廄)에서 입양(入養)하는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인신, 체임진상마.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一月 九日 甲辰

- 以李翼晉草供，傳于金孝建曰，注書之持去，渠當責挽等說，無難納招，而該府無難捧供，若此則傳教之下，注書不可持去乎？李翼晉嚴刑得情，斷不可已，爲先納供意思，另加窮覈以入。此供，若不拔例嚴問，當該堂上，當濟州牧安置，以此意嚴飭。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1월 9일(갑진)

- 이익진(李翼晉)을 엄형하여, 제주목(濟州牧) 안치에 안치하라는 전교
- 이익진(李翼晉) 초공(草供)과 관련하여 김효건(金孝建)에게 전교하기를, “주서(注書)가 가지고 가서 저놈을 마땅히 책만(責挽)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공초하였다. 그래서 해부(該府)에서 어려움 없이 봉초(捧供)했다. 만약 이것이 특교(傳教)를 내리게 한 것이면 주서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인가? 이익진을 엄형(嚴刑)하여 득정(得情)하는 것을 단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되니, 우선 납공(納供)하는 의사를 더욱 궁핵(加窮)하여 들이게 하고, 이 공초로 만약 특례로 엄문(嚴問)하지 않았다면 해당 당사(堂上)은 마땅히 제주목(濟州牧)에 안치하게 하고 이 뜻으로써 엄히 신칙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一月 二十四日 己未

- 李書九, 以義禁府言啓曰, 犯上, 大辟也. 知而不告減一等, 況知而告者乎? 特以告之後時, 欲用不告之律者, 自有微意在焉. 二死之減而爲流之文, 若爲渠設, 罪人申驥顯, 依此律舉行事, 命下矣. 罪人申驥顯, 全羅道濟州牧減死島配,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發遣府羅將, 當刻內押送配所, 而此特貸頭之一凶逆, 不可以尋常絕島舉行. 故雖未承下教, 以耽羅磨鍊以入, 而押去之時, 另加防守之意, 分付沿路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1월 24일(기미)

- 죄인 신기현(申驥顯)을 제주목(濟州牧)에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라는 의금부의 계
- 이서구(李書九)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범상(犯上)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알고서 고변하지 않은 자는 한 등급을 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알고서 고변까지 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다만 고변을 때늦게 했기 때문에 불고지율(不告之律)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은미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형 다음가는 등급으로 형벌을 감하여 삼천 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라고 한 법조문이 마치 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조문 같으니 죄인 신기현(申驥顯)을 그 형률대로 처리하라⁴¹¹⁾는 것을 명하였습니다. 죄인 신기현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 안의 사의로써 죄목(罪目)을 갖추어, 부(府)의 나장(羅將)을 발견하고, 마땅히 즉각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게 하여, 이 특대(特貸)가 두지(頭之)의 한 흉역(凶逆)을 심상하게 절도(絶島)에 거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직 하교를 받들지 못했더라도 탐라(耽羅)에 마련하여 들이게 하고 압거(押去)할 때에 더욱 방수(防守)할 뜻을 연로의 도신들에게 명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신기현, 제주목, 도배.

411)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1월 24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一日 乙丑

- 金翰東, 以漢城府言啓曰, 今壬子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及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2월 1일(을축)

- 제주(濟州) 세 고을의 호구(戶口) 총수(摠數) 보고에 관한 한성부의 계
- 김한동(金翰東)이 한성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금 임자년(1792)에 백성 수에 대해서 아될 때, 경중(京中)과 팔도(八道)의 호구(戶口) 총수(摠數)를 초록(抄錄)하여 입계(入啓)하였으나, 제주(濟州) 세 고을의 백성 수가 잠시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해도(海島)에서 왕래(往來)가 지속(遲速)하는 것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서, 일시에 마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것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호구.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一日 乙丑

○ 壬子十二月初一日午時，上御重熙堂。湖南句管堂上入侍時，右承旨金孝建，記事官徐有聞，記注官金良倜·承膺祚，湖南句管堂上徐有隣，以次進伏訖。……有隣曰，此，濟州牧使李喆運災實分等狀啓也，備盡三邑穡事歉荒之狀，仍以爲，本州四面七十八里內，稍實爲九里，之次爲六里，尤甚六十三里，大靜，三面二十八里內，稍實二里，之次七里，尤甚十三里，旌義，三面三十八里內，稍實五里，之次八里，尤甚二十五里。十分詳查，分爲四等，而各樣捧糴，酌量停減，留庫與當捧條中，計除應下及來春種子，計口磨鍊，賑資不足米爲五千八百二十石，而羅里鋪倉，今則移付羅州。濟民倉，丁未以後，更無移轉之舉，沿海各邑中，亦有推移區劃之例，一依狀請數爰，趁卽入送，然後可無賑事間斷之患。凡干舉行，固當一一稟旨，恭俟處分，而候風往來之際，每致後時之患，故一邊馳啓，一邊舉行，自是已例，不得不援例舉行，而停減諸條調賑凡節，條列于後，亦令廟堂稟處爲請矣。……上曰，……發船都會官及濟州到泊處海神，別爲設祭，以冀利涉穩旋，牲幣十分精備，卜日設行，祭文當親撰，以此分付道臣及牧使處，今日令句管堂上，召問濟州人，該島事情，尤可知之，該牧·判官滿瓜者，限麥秋仍任。濟州民人領運上來者，亦令賑廳，給回糧，該曹給襦衣，本牧朔饋·物饋方物，限麥秋停免，各司所納及各處奴貢當年條，並蕩減，至於榷子·白蠟，或用於祀典，或用於軍需，此則令牧使，從便貿取，公穀會減，過麥秋封進事，分付，可也。【出舉條】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2월 1일(을축)

□ 제주(濟州)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에 관해 논의 함

○ 임자년 12월 초1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호남 구관 당상이 입시할 때 우승지 김효건(金孝建), 기사관 서유문(徐有聞),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호남구관당상 서유린(徐有隣)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세 고을 농사의 겸황(歉荒) 상황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게 해야 합니다. 본 고을의 4면 70리 안에, 초실(稍實)은 9리이고, 지차(之次)가 6리이고, 우심(尤甚)이 63리입니다. 대정현(大靜縣)의 삼면 28리 안에, 초실이 2리이고, 지차가 7리이고, 우심이 13리이고, 정의현(旌義縣)의 삼면 38리 안에, 초실이 5리이고, 지차가 8리이고, 우심이 25리입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조사하니, 나누기를 4등으로 하고 각양(各樣)의 봉적(捧糶)은 작량(酌量)하여 정감(停減)하고, 유고(留庫)와 마땅한 봉조(捧條) 가운데, 지급할 것과 올봄의 종자를 계산하여 제하고 인구를 계산하여 마련한 진자(賑資) 중 부족한 쌀은 5,820섬입니다. 그러나 나리포창(羅里鋪倉)은 지금 나주(羅州)로 이부(移付)하였습니다. 제민창(濟民倉)은 정미년(1787) 이후에 다시 이전(移轉)한 일이 없었습니다. 연해의 각 고을 가운데 또 추이(推移)하여 구획(區劃)한 예가 있어서, 한결같이 장청(狀請)의 수효에 따라 즉시 들여보낸 연후에야 진사(賑事)가 잠시 끊어지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거행하는 과정에서 진실로 마땅히 일일이 품지(稟旨)하고, 처분을 공손히 기다렸어야 하는데 후풍(候風)하여 왕래할 때에, 번번이 때에 뒤지는 근심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변(一邊)으로 치계(馳啓)하고, 일변으로 거행(舉行)하게 한 것은 이미 전례로 있었던 것이니, 원례(援例)로 삼아 거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조(諸條)의 주진범절(賄賑凡節)을 정감(停減)하고, 조항별로 나열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중략> 도회관(都會官)과 제주(濟州) 도박처(到泊處)로 발선(發船)하고 해신(海神)에게 특별히 설제(設祭)하여, 동[冀]으로 이섭(利涉)하며 무사히 돌아오게 해서, 생폐(牲幣)를 십분 정갈하게 준비하여 날을 가려 설행(設行)하라. 제문(祭文)은 당연히 제문은 마땅히 내가 직접 지어서, 이것을 도신과 목사에게 분부할 것이다. 오늘 구관당상에게 제주인(濟州人)을 소문하게 하니, 해도(該島)의 사정(事情)을 더욱 알 수 있다. 해목(該牧)의 판관(判官)이 만과(滿瓜)했으면 맥추(麥秋)를 기한으로 하여 잉임(仍任)하라. 제주민인(民人)이 영운(領運)하여 올라 온 사람도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회량(回糧)을 주게 하고, 해조(該曹)에서 유의(儒衣)을 주게 하라. 본목(本牧)의 삭선(朔膳)·물선방물(物膳方物)은 맥추를 기한으로 하여 정면(停免)하고, 각사(各司)의 소납(所納)과 각처(各處) 노공(奴貢)의 당년조(當年條)는 모두 탕감하고, 비자(櫃子)·백랍(白蠟)과 같이 혹 사전(祀典)에 쓰이거나, 혹 군수(軍需)에 쓰이는 것은 목사로 하여금 편한 대로 무취(貿取)하게 하고, 비용은 관청 곡식으로 계산하게 하고, 맥추를 지나서 봉진할 일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물리가라고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인, 제주목사, 이철운, 재실분등장계.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三日 丁卯

- 金孝建,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貢果領來人四十二名處, 各回糧米三斗式, 考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再次領來者, 承旨, 一體招問農形後, 分給回糧, 可也.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월 29일(기해)

-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에 회량미(回糧米) 분급에 관한 진홀청의 계
- 김효건(金孝建)이 진홀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에 따라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 42명에게 각 회량미(回糧米) 3말씩을 전례를 살펴서 분급해줄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재차(再次) 영래(領來)한 것은 승지(承旨)하게 하고, 일체(一體)로 농형(農形)을 초문(招問)한 뒤에, 회량(回糧)을 분급(分給)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공과, 영래인, 회량미.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三日 丁卯

- 金翰東,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貢果領來人二十六名處, 各回糧米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限貢柑齊到, 皆依兩運例爲之事, 該房知悉.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2월 3일(정묘)

-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 26명에 회량미 분급에 관한 진홀청의 계
- 김한동(金翰東)이 진홀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하교에 따라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 26명에게 각각 회량미(回糧米) 3말씩을 전례에 따라 분급(分給)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감(貢柑)의 제도(齊到)를 기한으로 하여 모두 양운례(兩運例)에 따라 할 일을 해방(該房)에 알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공과, 영래인, 회량미, 공감.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十一日 乙亥

○ 李書九,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월 29일(기해)

□ 제주(濟州) 세 고을의 백성 수를 보고하여 입록한다는 이서구의 계

○ 이서구(李書九)가 한성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의 백성 수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으니, 전례에 따라 입록(入錄)할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 고을, 백성 수.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二十四日 戊子

- 以全羅監司鄭民始狀啓, 濟州移轉各裝載發送海祭香祝, 令該曹下送事, 傳于徐榮輔曰, 祝文待書下, 與香封同爲傳致, 係是御製, 香官傳于畿營, 自畿營次次定察訪齎傳, 湖西·湖南, 依此爲之事, 亦令畿營, 文移舉行. 香祝下去, 自當在歲後矣, 裝待處, 令地方官或差員, 歲時辦備酒食, 厚饋之, 以勞涉海之苦, 還泊後, 別定差員, 設樂饋酒食, 領運差使員處, 一體饋之事, 回諭. 發船日字, 到泊形止及還發還到泊緣由, 這卽狀聞事, 一體回諭.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2월 24일(무자)

□ 제주(濟州) 이전미(移轉米) 장재(裝載) 발송(發送)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에, ‘제주(濟州) 이전미(移轉米)는 각각 장재(裝載)하여 발송(發送)하고, 해제(海祭) 축향(香祝)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하송(下送)할 일’에 대해 서영보(徐榮輔)에게 전교하기를, “축문(祝文)을 서하(書下)하는 것을 기다려서 향(香)과 함께 봉동(封同)하여 전치(傳致)하는 것은 어제(御製)와 관계되는 것이다. 향관(香官)은 기영(畿營)에 전하여 기영에서 차차 찰방(察訪)을 정하여 재전(齎傳)하게 하고, 호서·호남은 이에 따라 할 일이고, 또 기영으로 하여금 문이(文移)하여 거행하라. 축향을 내려 보내면 마땅히 세후(歲後)가 될 것이다. 꾸려서 처리하는 것을 기다려서 지방관으로 하여금 혹 차원(差員)하게 하여, 세시(歲時)에 주식(酒食)을 판비(辦備)하여 후하게 음식을 먹이라. 힘써서 섭해(涉海)한 노고는 환박(還泊)한 뒤에 특별히 차원을 정하여, 음악을 베풀어 주식(酒食)을 대접하게 하라. 영운(領運)한 차사원(差使員)에게 일체를 대접할 일을 회유하라. 배가 출발하는 날짜와 정박한 상황, 도로 출발하여 돌아와 정박한 연유를 즉시 장문할 일을 일체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전미.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二十九日 癸巳

- 申耆, 以禮曹言啓曰, 濟州牧朔膳物膳方物, 限麥秋停免事, 因傳教行會矣. 關文未到之前, 大殿所封正朝方物, 已爲封進上來矣, 所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2월 29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방물에 관한 예조의 계
- 신기(申耆)가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방물(方物)은 맥추(麥秋)를 기한으로 하여 정면(停免)할 일에 대해 전교로 인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관문(關文)이 오기 전에 대전(大殿)에 소봉(所封) 정조(正朝) 방물(方物)은 이미 봉진하여 올려보냈습니다. 마땅히 도로 내려보내야 하나, 바다를 건넌 것도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받아들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삭선, 물선 방물.

❖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二月 二十九日 癸巳

- 李書九,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貢果領來人十二名處, 各回糧米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6년(1792) 임자년 12월 29일(계사)

-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 회량미 분급에 관한 진홀청의 계
- 이서구(李書九)가 진홀청의 말로써 아뢰기를, “하교에 따라 제주(濟州) 공과(貢果) 영래인(領來人) 12명에게 각각 회량미(回糧米) 3말씩을 전례에 따라 분급(分給)해 줄 뜻에 대해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공과, 영래인.

1793年

(정조 17)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二月 八日 辛未

- 傳于申耆曰, 向見耽羅運穀狀啓, 知風利齊發, 滿心欣幸, 而到泊形止之鱗次登聞, 夙宵一念, 方以此懸懸, 令廟堂分付該道, 嚴飭都會官, 使卽探問狀聞. 咸平船之先到越邊一款, 該伯之啓, 更無皁白, 身居分憂之列, 若體宵旰之心, 探何遲也? 新到之後, 譽無入聞, 怠反如許, 特畀之意, 果安在哉? 況賑民還民之俱困, 湖南爲甚云者乎? 全羅監司權職, 推考. 俄於新除備堂違牌事, 亦有下教, 而嶺伯卽亦含假中一人, 考其治績之能否, 先遣繡衣, 還曰否, 次遣之繡衣, 亦曰云然. 特從三思之義, 繡衣之第三遣者, 一兩日內當發程, 蓋欲憑兩說以驗之, 如欲乘駟踰嶺, 歸對前席, 益思贖罪之方事, 嶺伯處, 嚴飭.

❖ 정조 17년(1793) 계축년 2월 8일(신미)

□ 탐라(耽羅)의 운곡(運穀)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신기(申耆)에게 전교하기를, “지난번 탐라(耽羅) 운곡(運穀) 장계에, 풍리(風利)를 알고서 제발(齊發)하니, 만심(滿心)으로 흥행(欣幸)하였다. 그래서 도박(到泊) 형지(形止)를 잇달아 등문(登聞)하고, 밤낮으로 정성껏 생각하는 것이 바야흐로 이로써 염두에 두고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해도(該道)에 분부하게 하여 도회관(都會官)에 엄칙하라. 하여금 즉시 장문(狀聞)을 탐문하고, 함평(咸平)의 배가 먼저 월변(越邊) 일관(一款)에 도착하여, 해백(該伯)에게 알리고, 다시 가부(可否)를 가리지 않게 하라. 몸이 분우 지방관에 있는 예가 만약 몸이 소한(宵旰)⁴¹²하는 마음이라면 어찌 더뎠는지 탐문해야 하겠는가? 새로 도임(到任)한 경우에는 명예를 입문한 것이 없으니, 태만을 도리어 허락한 것과 같으니, 특별히 제수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진민(賑民)과 환민(還民) 모두가 곤란하니, 호남(湖南)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전라감사 권엄(權職)을 추고(推考)하라. 아까 새로 제수된 비변사 당상에 패초를 어긴 일에 대해서도 하교가 있었는데, 영백(嶺伯)은 역시 가중(假中: 假中軍) 1인을 포함하여, 그 치적(治績)의 능부(能否)를 살펴라. 먼저 암행어사를 보냈으나 파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자, 그 다음에 어사도 그렇게 말하였다. 특별히 거듭 숙고한 뜻을 좇아서 수의(繡衣)를 세 번째 파견한 자를 하루 이틀 안에 마땅히 출발하게 하

412) 소한(宵旰): 소의한식(宵衣旰食), 즉 정사(政事)에 부지런함.

는데, 이는 두 가지 설에 기대어 그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만일 역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 돌아와 어전(御前)에 나와 속죄할 방도를 더욱 생각하라는 일이니, 영백에게 엄히 신칙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운곡.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二月 十四日 丁丑

- 以濟州牧使李喆運狀啓, 移輸穀一萬三百石, 所載船二十六隻, 沙格三百十三名, 差使員興德縣監趙華錫領運, 正月十七日無事到泊事, 傳于申耆曰, 爲活耽羅民衆, 轉運萬包, 出於萬不獲已, 特遣宰臣·守令, 另具牲品, 製下祝文, 祈其利運於海神. 其間南顧之念, 徒勞寢夢, 卽見該牧狀本, 可謂一帆風穩到, 其爲奇幸, 難以形喻, 何待道臣之登聞乎? 領運差使員興德縣監趙華錫, 加資, 政官牌招開政下批, 教旨今日內成送, 道伯俾卽傳致於差員還到處.

❖ 정조 17년(1793) 계축년 2월 14일(정축)

- 제주(濟州) 이전곡(移輸穀)의 운반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장계에, ‘이전곡(移輸穀) 10,300섬을 실은 배는 26척, 사격(沙格)은 313명에, 차사원(差使員) 흥덕현감(興德縣監) 조화석(趙華錫)으로 영운(領運)하게 해서, 정월 17일에 무사히 도박(到泊)한 일’에 대해 신기(申耆)에게 전교하기를, “담라(耽羅)의 민중들을 살리기 위해 만포(萬包)의 곡식을 운반한 것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특별히 재신과 수령을 보내 별도로 희생 등 제물을 갖추게 하고 축문을 지어 내려보내서 해신(海神)에게 잘 운송시켜 줄 것을 빌게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남쪽으로 쏠리는 염려 때문에 한갓 꿈자리만 고달팠었는데, 이제 해당 목(牧)의 장계를 보니, 순풍에 돛을 달고 무사히 도착했다고 이를 만한지라, 그 신기하고 다행스러움을 말로 형용하기 어렵구나. 어찌 도신(道臣)의 등문(登聞)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운반을 맡은 차사원 흥덕현감 조화석을 가자하도록 하라.⁴¹³⁾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해 개정(開政)하여 하비(下批)하고, 교지는 오늘 안으로 성송(成送)하여, 도백(道伯)이 곧바로 차원(差員) 환도처(還到處)에 전치(傳致)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전곡.

413)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1793) 2월 14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二月 十四日 丁丑

- 癸丑二月十四日卯時，上御重熙堂。右承旨入侍時，右承旨申耆，假注書鄭文始，記注官金良倜·承膺祚，有司堂上沈頤之，以次進伏訖。上曰，濟州運穀船，皆已到泊云，爲民事甚喜幸矣。頤之曰，然矣。上曰，濟牧之狀已入來，而完伯之尙不登聞者，可怪矣。頤之曰，今番則聖慮憧憧於民事，故皆能無事，速往速來，莫非王靈攸暨也。上曰，完伯處行會，問其登聞支遲之故，可也。命書傳教曰，禮房承旨馳詣弘陵，奉審摘奸，局內諸陵，一體奉審以來。又命書傳教曰，右承旨馳詣宗廟·永寧殿·景慕宮，奉審摘奸以來。仍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2월 14일(정축)

- 제주(濟州) 운곡선(運穀船)에 관해 임금과 대신들이 의논함

- 계축년 2월 14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승지 신기(申耆), 가주서 정문시(鄭文始),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유사 당상 심이지(沈頤之) 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운곡선(運穀船)이 이미 정박했다고 하는데, 민사(民事)가 매우 기쁘고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완백(完伯)은 여전히 등문(登聞)하지 않는 것이 괴이하다.”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이번에는 성려(聖慮)가 민사를 근심하시는 것이므로 모두 능히 없게 할 수 있는 일이니, 속히 가고 속히 오는 것은 선대 임금의 신령이 돌봐준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완백에게 행회(行會)하게 하고, 그 등문을 지지(支遲)한 이유를 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예방승지 홍릉(弘陵)에 치예(馳詣)하여, 봉심(奉審)하여 적간(摘奸)하도록 하고, 국내(局內)의 제릉(諸陵)은 일체로 봉심해 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우승지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경모궁(景慕宮)에 치예하여 봉심하여 적간하여 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대로 물러가라고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운곡선.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二月 十八日 辛巳

- 以全羅監司權禰狀啓, 濟州移輸穀領運差使員, 趙華錫待埃事查問委折論勘計料事, 傳于申耆曰, 此狀本留中, 以待穩稅利泊矣. 去月十九已齊到, 該牧狀啓入來已久, 道臣則今至浹月, 尙無一言. 雖曰在巡路而然, 稽忽莫甚, 全羅監司權禰推考, 可謂責人則明, 差員別無論勘之事, 枚舉此意行會.

❖ 정조 17년(1793) 계축년 2월 18일(계사)

□ 제주(濟州) 이수곡(移輸穀) 영운(領運)과 관련한 임금의 전교

- 전라감사 권엄(權嚴)의 장계에, 제주(濟州) 이수곡(移輸穀) 영운(領運) 차사원(差使員) 조화석(趙華錫)의 일에 대한 사문(查問)한 것을 기다려서 위절(委折)을 논감(論勘)하여 계료(計料)할 일에 대하여 신기(申耆)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본(狀本)이 머무르는 가운데, 곡식을 걷어 모은 세를 기다리기 위해 배가 잘 닿았다. 지난달 19일에 이미 제도(齊到)하고, 해목(該牧)의 장계도 이미 올라온 지 오래되었으니, 도신(道臣)은 지금까지 1달 정도 되었는데도 오히려 한마디 말이 없었다. 비록 순로(巡路)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나, 소홀히 한 것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므로 전라감사 권엄을 추고(推考)하고, 남의 잘못을 책망하여 밝히고 차원(差員)은 특별히 논감(論勘)할 일이 없어서 이런 뜻을 하나하나 들어서 행회(行會)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수곡, 영운.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二月 三十日 癸巳

- 癸丑二月三十日辰時，上御熙政堂。…… 坪曰，兩湖民弊，適有及聞者，敢此，仰達矣。濟州貢馬上來時，元無牽軍定送之例，只使監色領來，而越海以後，則左右道各其邑，定給牽夫，陸民不閑於馴御生馬，每致中路橫逸。或走踏禾穀，或躍登山脊，無以制之，該邑將至生梗，故不得不斂錢民間，給稅於濟州驅馬來者，以爲牽送境內之地。蓋所謂驅馬來者，既非該牧定送之人，領馬監色，私自募民，與之分利者也。每年進貢爲三百匹，大次則間一年爲五百匹，馬匹既多，故斂錢之數，大邑或爲百餘金，小邑不下五六十兩，其爲弊端，不可勝言。自今爲始，馬幾匹牽軍幾名式，令該牧量宜定送，而本島素有六苦役之名，此則勿論其外營本官及兩邑，習馬軍中，輪回定送，似好矣。以此意出舉條申飭，該牧使處，何如？上曰，大臣之意，何如？履素曰，貢馬驅人之弊，誠爲沿路痼癘，或收斂民間，或自官辦備，以給耽羅監色，使之上納，已成規例。若自本牧定牽夫，直爲上納，不爲侵擾於兩湖，則其爲除弊，誠不少矣。上曰，令該道臣與該牧相議，從長釐弊，定式後狀聞，自今年依此施行，可也。【出舉條】…….

❖ 정조 17년(1793) 계축년 2월 30일(계사)

- 제주(濟州) 공마(貢馬) 구마(駙馬)와 폐단에 관해 임금이 대신들과 논의함
- 계축년 2월 3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우참찬 이갑(李岬)이 아뢰기를, “양호(兩湖)의 민폐(民弊)에 대해서 마침 소문이 있어서 이에 감히 양달(仰達)합니다. 제주(濟州) 공마(貢馬)가 올라왔을 때, 원래 견군(牽軍)이 없었습니다. 정송(定送)하는 예에는 다진 감색(監色)이 영래(領來)하고 월해(越海)한 뒤에는 좌도와 우도 각 고을에서 견부(牽夫)를 정급(定給)하였습니다, 육민(陸民)은 어승마(御生馬)를 길들이는 데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매번 종로에 이르러서 횡일(橫逸)하거나, 혹 화곡(禾穀)으로 주답(走踏)하거나, 혹 산등성마루를 약등(躍登)하여, 제지할 수가 없어서, 해읍(該邑)에 장차 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 돈을 거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구마(驅馬)해 온 사람에게 급세(給稅)하여 써 경내(境內)의 땅으로 경송(牽送)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소위 구마하여 온 사람은 이미 해목(該牧)에서 정송(定送)한 사람이 아니라서, 영마(領馬)하는 감색(監色)은 사사로이 절로 모민(募民)하니, 그와 더불어 이익을 나눕니다. 매년 진공(進貢)은 300필이 되는데, 대차(大次)는 1년

간격으로 5백 필이 되니, 마필이 이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염전(斂錢)의 수(數)의 경우, 큰 고을은 혹 100여 금(百餘金)이 되고, 작은 고을도 50, 60냥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폐단이 되고 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위시하여 말 몇 필에 견군 몇 명씩을 해목(該牧)으로 하여금 헤아려서 정송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본디부터 6고역(六苦役)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밖의 영에서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본관과 두 고을 습마군(習馬軍) 가운데 윤회(輪回)하여 정송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거조(舉條)를 내어서 해당 목사에게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공마 구인(驅人)들의 폐단은 참으로 연로(沿路)의 고막(痼癘)에 해당합니다. 혹 민간에서 수렴(收斂)하거나, 혹 절로 관에서 판비(辦備)하거나 하여, 탐라(耽羅)의 감색(監色)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상납하는 것이 이미 규례(規例)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본목(本牧)에서 견부(牽夫)를 정하여 바로 상납하게 하면 양호(兩湖)에 침우(侵擾)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없다면 참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도신(道臣)과 해당 목으로 하여금 상의하게 하여 좋은 것을 따라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고, 정식(定式)으로 삼은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고, 올해부터 이 예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탐라, 공마, 구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三月 二十三日 丙辰

- 癸丑三月二十三日辰時，上御重熙堂。…… 心泰曰，水原府軍制，今方釐正，而其中馬兵，雖云減數務精，終難如意振刷，此甚可悶。留府既是分司外營，便同京營，依京軍門禁軍馬兵之例，分給官馬，以備戰馬責實效，而第年例分養之馬，各有已定之數，將無以分數除出，而在前各軍門，曾有請得島馬之例，故敢此，仰達。濟州牧使所養之馬，限一百七十匹，各別極擇，七月貢馬便，一體上送之意，出舉條知委，何如？上曰，依爲之。【出舉條】 命書榻教曰，清河縣監除辭朝赴任。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3월 23일(병진)

□ 제주목(濟州牧)의 공마에 관해 조심태(趙心泰)의 계

- 계축년 3월 23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군제(軍制)는, 지금 바야흐로 이정(釐正)했으나, 그 가운데 마병(馬兵)은 비록 감수(減數)했다고 하나, 정한 데 힘써야 해서, 끝내는 이 뜻을 진쇄(振刷)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것은 심히 민망합니다. 유부(留府)는 이미 외영(外營)에 분사(分司)되어, 경영(京營)에 편동(便同)해서, 경군문(京軍門) 금군(禁軍)의 마병(馬兵)의 예에 따라 관마(官馬)를 분급(分給)하고, 전마(戰馬)를 갖추게 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연례에 따라 분양하는 말은 각각 이미 정해진 수가 있어서 장차 나누어진 수로 제출(除出)하게 하고, 전 각 군문에서도 일찍이 도마(島馬)를 청득한 예가 있으므로 감히 이에 양달(仰達)합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소양(所養)한 말은 170필을 한정하여 각각 특별히 극택(極擇)하게 하고 7월 공마(貢馬)는 편하게 일체를 상송하게 하는 뜻으로 거조(舉條)를 내어서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답교(榻敎)를 쓰라고 하기를 “청하현감(淸河縣監)은 사조(辭朝)를 제하고 부임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목, 제주목사, 공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四月 八日 庚午

- 以濟州防禦使李喆運狀啓，分賑及麥農形止馳啓事，傳于尹理相曰，船粟穩稅調飢若意，而冬春日候連爲調順云，瘡痍之回蘇可期，言念民事，萬萬多幸，畢賑後形止狀聞時，麥事民情，詳細附陳事，回諭.

❖ 정조 17년(1793) 계축년 4월 8일(경오)

- 제주(濟州) 방어사 이철운(李喆運)의 분진(分賑)과 맥농(麥農) 상왕에 관한 보고
- 제주(濟州) 방어사 이철운(李喆運)의 장계에, 분진(分賑)과 맥농(麥農) 상왕을 치계(馳啓)한 일에 대해서, 윤이상(尹理相)에게 전교하기를, “선속(船粟)이 아무 탈 없이 온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라서 주기(賙飢)가 만약 뜻대로 되면 동춘(冬春)에 이후(日候)에 연달아 조순(調順)했다고 하므로, 창이(瘡痍)의 회소(回蘇)를 기약할 수 있으니,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만만으로 다행이다. 필진(畢賑)한 뒤에 상왕을 장문(狀聞)할 때, 맥사(麥事)의民情을 상세하게 부진(附陳)할 일을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이철운.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四月 十五日 丁丑

- 以全羅監司權禰狀啓, 濟州歲貢馬上納時, 牽軍以習馬軍, 輪回牽送, 所經各邑侵懲之弊, 永爲革罷事, 傳于南公轍曰, 大臣造朝間, 凡係令廟堂稟處者, 姑竝以草記回啓, 俾無遲滯之弊事, 令廟堂知悉.

❖ 정조 17년(1793) 계축년 4월 15일(정축)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 상납에 관한 전라감사 권엄(權嚴)의 장계
- 전라감사 권엄(權嚴)의 장계에,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를 상납할 때, 견군(牽軍)을 습마군(習馬軍)으로 윤회(輪回)하여 견송(牽送)하게 하였는데, 지나가는 각 고을에 침징(侵懲)하는 폐단을 영원히 혁파할 일에 대하여, 남공철(南公轍)에게 전하기를, “대신이 조정에 나온 사이에, 무릇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은 잠시 모두 초기(草記)로써 회계(回啓)하게 하고,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알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공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四月 十七日 己卯

- 徐龍輔, 以備邊司言啓曰, 頃因前右參贊李埤所啓, 濟州貢馬上來時, 兩湖收斂之弊, 道臣·該牧, 相議釐革後, 狀聞之意行會矣. 卽見全羅監司權禰狀啓, 則枚擧濟州牧使李喆運牒呈, 以爲貢馬之數, 常年則爲二百八十八匹, 間一年大次, 則爲五百八十八匹, 而從前押領等各名色定送者, 不過十八名, 以此兼行牽軍, 其勢未由, 故不得已加定以送, 而今以馬五匹牽軍一名, 從略定額, 則常年五十八名, 大次一百十八名, 以習馬軍中, 自今年爲始, 輪回定送, 則陸地之多數供億, 殊涉難便. 常年大次, 人衆太濫, 宜有減省, 而該牧酌定, 必有爛講, 第令依此定式, 而至於龍仁·衿川兩邑, 則例出牽軍, 逐匹牽去者, 非但道路之多岐, 亦爲直納於太僕, 則今亦不可不依前舉行, 而有非本道所可講定者, 令廟堂, 稟旨分付于該道臣處, 俾爲定式遵行之地, 爲辭矣. 當初重臣筵奏, 蓋爲兩湖民弊, 而若如該牧所定, 以馬五匹出牽軍一名, 則常年爲五十八名, 間年爲一百十八名矣. 絕島許多人名, 千里駕海之勞, 已極矜閔, 而及其登陸之後, 供億徵索之弊, 必當十倍於監色領來時, 欲省一弊, 反添兩瘼, 實非朝家付之該道從長釐弊之本意. 道臣狀本中, 旣曰, 人衆太濫, 宜有減省, 又曰, 第令依此定式云者, 其在對揚之意, 殊欠誠實, 又若以此定式, 則龍仁·衿川兩邑牽軍之除減, 自當如兩湖諸邑, 其仍其罷, 不須更論, 而忽請令廟堂稟旨者, 事體所在, 萬萬未安. 全羅監司權禰爲先從重推考, 救弊旣無策, 則姑令仍舊貫施行, 恐合事宜, 狀啓內辭緣, 置之,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4월 17일(기묘)

□ 제주(濟州) 공마(貢馬)의 견마(牽馬)에 관한 서용보(徐龍輔)의 계

- 서용보(徐龍輔)가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지난번 전 우참찬 이갑(李埤)이 아뢴 바에, 제주(濟州) 공마(貢馬)가 올라왔을 때, 양호(兩湖)에서 수렴한 폐단을 도신(道臣)·해목(該牧)에 상의(相議)하여 이혁(釐革)한 뒤에, 장문(狀聞)하는 뜻을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즉견한 전라감사 권엄(權嚴)의 장계에, 매거(枚擧)한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첩정에, 써 공마한 수의 경우 상년(常年)에는 288필인데, 1년 사이로 대차(大次)에는 580필인데 전례에 따라 압령(押領) 등 각 고을에서 정송(定送)한 사람은 18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로써 행견군(行牽軍)을 겸하게 했으니, 그 형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가정(加定)하여 보내어서, 지금은 말 5필에 견군(牽軍)이 1명이니, 종략(從略)하여 정

액(定額)하면 상년에는 58명, 대차에는 118명인데, 습마군(習馬軍) 가운데, 지금부터 위시하여 윤회(輪回)하여 정송(定送)하면, 육지(陸地)의 다수 공역(供億)이 매우 딱합니다. 상년의 대차에는 인중(人衆)이 너무 넘쳐서 마땅히 줄여야 하니, 해목(該牧)이 작정(酌定)하여 반드시 세밀히 검토하여서, 차례로 이로 하여금 이 정식에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용인(龍仁)·금천(衿川) 두 고을에 도착하면 예로 견군(牽軍)을 내서, 필수대로 견거(牽去)하게 하고 단지 도로(道路)의 다기(多岐)에서만 아니라 또 바로 태복시에 납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례에 따라 거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도에서 구정(講定)할 만하지 않은 것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게 하여 정식으로 준행할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당초에 중신(重臣)이 연주(筵奏)할 때, 대개 양호에 민폐가 되니, 만일 해목(該牧)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말 5필에 견군 1명을 내게 되면, 상년(常年)에는 50명, 간년(間年)에는 118명이 필요합니다. 절도(絶島)의 허다한 인명이 천리 가해(駕海)하는 노고는 이미 매우 애처롭고 민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등륙(登陸)한 뒤에 공역(供億)하고 징색(徵索)하는 폐단이 반드시 마땅히 감색(監色)이 영래(領來)할 때보다 배가 되니, 하나의 폐단을 줄이고자 하면 도리어 두 개의 폐단이 첨가되어, 실로 조가(朝家)에서 해도가 좋은 것을 따라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본의가 아닌 것입니다. 도신(道臣)의 장본(狀本) 가운데, 이미 말했듯이, 인중(人衆)이 태람(太濫)해서 마땅히 줄여야 합니다. 또 말했듯이 차례로 이 정식에 따른다고 한 것이니, 왕명을 받드는 뜻에 있어서 성실이 매우 결여된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 정식으로써 용인·금천 두 고을의 견군을 제감(除減)하면, 절로 마땅히 양호 여러 고을과 같이, 그것을 그대로 두거나 그것을 혁파하거나 모름지기 다시 논의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홀연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청한 것은 사체(事體)에 있어서 만만으로 미안한 것입니다. 전라감사 권엄을 먼저 중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십시오. 구폐(救弊)라기에는 이미 대책이 없으니 잠시 그대로 옛 관습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사세에 맞을 듯하니, 장계 안의 사연은 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공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四月 十九日 辛巳

- 癸丑四月十九日卯時，上詣景慕宮。…… 民始曰，牧馬之方，先擇牝馬，然後可得良種，故詩亦稱駉牝三千，可驗牧政之必取於牝馬之良也。國初亦嘗廣取牝獐馬，分送濟州及各牧場，以爲取種之資，近來此法久廢，牧場之無良種，亦未必不由於此。如欲修舉馬政，則宜先廣取牝馬，而北關各樣禁條中，有牝獐馬勿許出送之規，故開市時，初不多貿，彼人亦知此而不爲持來，間或出來而亦甚稀貴，雖欲貿得取種馬，亦無其路。此後則北關牝馬禁條，特爲除去，使馬商輩，無所拘礙，優數貿來，則其於牧政，似當爲一助，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7년(1793) 계축년 4월 19일(신사)

□ 제주(濟州)의 목마(牧馬)에 관한 일제학 정민시(鄭民始)의 계

- 계축년 4월 19일 묘시에 임금이 경모궁에 나아갔다. <중략> 일제학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말을 치는 방법은 우선 암말을 고른 다음에야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경에도 이르기를 ‘큰 암말이 3천 필이다.’라 한 것이니, 말 치는 일은 반드시 좋은 암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국초에도 일찍이 빈달마(牝達馬)를 널리 구해다가 제주(濟州)와 각 목장에 나누어 보내서 종자를 받는 말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법이 오랫동안 폐해졌으니 목장에 좋은 종자가 없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연유된 것입니다. 북관개시(北關開市)의 여러 금지 조항 중에는 빈달마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때에 처음부터 많이 사들이지 않았고 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서 가져오지 않았거니와 간혹 가져오더라도 매우 희귀하였습니다. 북관 개시의 암말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말 장사꾼들이 구애 없이 사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⁴¹⁴⁾ 곧 그 목정(牧政)에 있어서, 마땅히 일조(一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양달(仰達)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목마.

414)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1793) 4월 19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四月 二十八日 庚寅

○ 有政. 吏批, …… 洪履祚爲濟州判官,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4월 28일(경인)

□ 홍이조(洪履祚)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홍이조(洪履祚)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이조, 제주판관.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四月 二十八日 庚寅

- 傳于俞漢寧曰，今日特點者・特除者，若有煩聒之舉，則當該銓堂，昨日補外地方，竝施遠竄之典，當該承旨，大靜縣定配，以此分付.

❖ 정조 17년(1793) 계축년 4월 28일(경인)

- ☐ 해당 승지의 대정현(大靜縣) 정배를 명하는 임금의 전교
- 유한녕(俞漢寧)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특별히 낙점한 자들에 대해서 만일 번거롭게 떠들어대는 일이 있을 경우 어제 지방관으로 보임했던 전당(銓堂)들에게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벌을 시행할 것이고, 해당 승지는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할 것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⁴¹⁵⁾

△ 주제어: 대정현.

415)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1793) 4월 2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四日 乙未

- 有政. 吏批, …… 崔擎柱爲旌義縣監, 學生金厚孫, 贈左承旨 · 司饗副提調例兼贈職事, 承傳.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4일(을미)

- ☐ 최경주(崔擎柱)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최경주(崔擎柱)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고 학생 김후손(金厚孫)에게 좌승지와 사옹원 부제조 예를 겸하여 증직할 일을 승전(承傳)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최경주, 정의현감.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五日 丙申

- 洪仁浩啓曰, 未下直守令, 皆令不多日內辭朝事, 命下矣. 河東府使李喜大, 固城縣令鄭宅昌, 求禮縣監洪浩源, 旌義縣監崔擎柱, 兩司俱未署經, 除在外外, 未肅拜呈告人員, 竝卽牌招, 以爲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5일(병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최경주(崔擎柱) 등을 패초(牌招)하여 서경할 것을 청하는 홍인호(洪仁浩)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아뢰기를,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은 다 가까운 시일 안에 사조(辭朝)하게 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하동부사 이희대(李喜大), 고성현령 정택창(鄭宅昌), 구례현감 홍호원(洪浩源), 정의현감(旌義縣監) 최경주(崔擎柱)를 양사(兩司)가 갖추어 아직 서경(署經)하지 않았으니, 외방에 있는 외를 제외하고, 아직 숙배(肅拜) 정고(呈告)하지 않은 이원(人員)은 다 즉시 패초(牌招)하고, 서경(署經)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최경주.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六日 丁酉

- 癸丑五月初六日卯時, 上御誠正閣. 左副承旨·下直守令, 同爲入侍時, 左副承旨洪仁浩, 假注書申龜朝, 記注官安經心·金良倜, 豐川府使柳甲基, 榮川郡守金命淳, 河東府使李喜大, 固城郡守黃宅昌, 永平縣監李敬心, 奉化縣監林宸遠, 求禮縣監洪浩源, 玄風縣監張錫周, 河陽縣監任希默, 漆原縣監金樂海, 眞寶縣監朴應煥, 濟州判官洪履祚, 松羅察訪韓在中, 金井察訪權聖應, 利仁察訪李五鎭, 輪城察訪李顯紀, 召村察訪金鼎鎭, 幽谷察訪金重行, 省峴察訪韓泰裕, 以次進伏訖. …… 洪履祚奏職姓名訖. 上曰, 守令幾次乎? 履祚曰, 曾未經守令, 而始除濟州判官矣. 上曰, 諸守令宣諭, 可也.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6일(정유)

□ 홍이조(洪履祚)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계축년 5월 초6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좌부승지와 하직하는 수령이 함께 입시하였다.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신귀조(申龜朝), 기주관 안경심(安經心)·김양척(金良倜), 풍천부사 유갑기(柳甲基), 영천군수 김명순(金命淳), 하동부사 이희대(李喜大), 고성군수 황택창(黃宅昌), 영평현감 이경심(李敬心), 봉화 현감 임취원(林宸遠), 구례현감 홍호원(洪浩源), 현풍현감 장석주(張錫周), 하양현감 임희묵(任希默), 칠원현감 김낙해(金樂海), 진보현감 박응환(朴應煥), 제주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 송라찰방 한재중(韓在中), 금정찰방 권성응(權聖應), 이인찰방 이오진(李五鎭), 수성찰방 이현기(李顯紀), 소촌찰방 김정진(金鼎鎭), 유곡찰방 김중행(金重行), 성현찰방 한태유(韓泰裕)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이조가 직(職)과 성명(姓名)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守令)은 몇 차례인가?”라고 하였다. 홍이조가 아뢰기를, “일찍이 수령을 지내지 않은 사람인데, 이번에 비로소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제수받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수령에게 선유(宣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홍이조.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二十二日 癸丑

- 以濟州牧使李喆運狀啓, 本島三邑畢賑事, 傳于申光履曰, 賑政告完, 民事萬幸, 觀此狀辭, 明月萬戶高漢祿之五百石願納補賑, 是豈海外殘邑鎮將, 所敢爲者哉? 極爲可嘉, 本牧地方滿瓜守令中, 口傳單付, 似已出代辭朝, 如未越海, 他窠收用事, 分付該曹, 亦令廟堂, 星火知委道伯處.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22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장계(狀啓)에 대한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장계(狀啓)에, 이 섬 세 고을에 필진(畢賑)한 일에 대해, 신광리(申光履)에게 전교하기를, “진휼하는 정사를 완결지었다고 하니, 민사(民事)가 만행(萬幸)이다. 이 장사(狀辭)를 보니, 명월만호(明月萬戶) 고한록(高漢祿)이 5백 섬 구제미를 자원하여 바쳤다고 하니, 이 어찌 바다 밖 쇠잔한 읍의 진장(鎭將)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매우 가상하다. 본 목 지방 만과(滿瓜) 수령 가운데, 구전(口傳)으로 단부(單付)하고, 이것을 대신하여 나가게 하고 사조(辭朝)하라. 만일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달리 다른 자리로 수용(收用)하게 할 일을 해조에 분부하는 것을 또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도백에게 알리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명월만호, 고한록.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二十二日 癸丑

○ 吏曹口傳政事, 旌義縣監單高漢祿.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22일(계축)

□ 정의현감(旌義縣監)에 고한록(高漢祿)을 단부(單付)함

○ 이조에서 구전(口傳)으로 정사(政事)를 펼쳤다. 정의현감(旌義縣監)에 고한록(高漢祿)을 단부(單付)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고한록.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二十三日 甲寅

- 吏曹啓目粘連, 濟州牧使李喆運, 似當施以表裏賜給之典, 濟州判官李徽祚, 旌義縣監許湜, 似當施以兒馬賜給之典, 大靜縣監鄭運躋, 置之, 而事係恩賞, 上裁,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旂. 濟州判官李徽祚, 旌義縣監許湜, 殘邑百石, 亦足當腴邑千包, 施以陞敘之典爲良如教.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23일(갑인)

□ 제주(濟州) 수령의 사급(賜給)과 승서(陞敘)에 관한 이조의 계목

- 이조에서 계목(啓目)으로 점련(粘連)하였다.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에게 표리(表裏)로써 사급(賜給)하는 은전을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에게 아마(兒馬)로써 사급(賜給)하는 은전을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거기에 두고서, 일이 은상(恩賞)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상재(上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판부(判付)하여 계하하고, 회계(回啓)에 따라 시행하게 하며, 제주판관 이휘조, 정의현감 허식은 쇠잔한 읍에서 백 섬이라도 풍족한 읍에서는 족히 마땅히 천 포(千包)에 달하는 것이니 승서(陞敘)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제주판관, 이휘조, 정의현감, 허식, 대정현감, 정운제.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二十九日 庚申

- 洪義榮, 以備邊司言啓曰, 因慶尙前監司鄭大容, 海稅釐正事狀啓. …… 進上全卜, 係是沿邑應貢之物, 則所產各邑, 自當措備, 何嘗使之必貿於濟州所產乎? 進獻事體, 至爲尊重, 而道臣之以此陳聞, 事極未安, 合施推考之典矣. …… 以此施行, 何如? 傳曰, 允. 隨其土產封進, 而勿拘大小, 既有湖南·關東釐弊之近例, 蔚鰓事, 依狀請施行, 道臣勿推, 可也.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29일(경신)

□ 제주산(濟州産) 전복 교역에 관한 비변사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 경상감사 정대용(鄭大容)이 해세(海稅)를 이정(釐正)한 일의 장계(狀啓)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진상하는 전복(全卜)은 연읍(沿邑)에서 응공(應貢)하는 물품에 관계된 것이라서, 각 고을에서 나는 것은 마땅히 조비(措備)하는데 어떻게 일찍이 그것을 반드시 제주(濟州)에서 나는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까? 진헌(進獻)의 사체(事體)는 지극히 존중한 것이니, 도신(道臣)이 이로써 진문(陳聞)했는데, 일이 매우 미안한 것이 마땅히 추고(推考)하는 법전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략> 이로써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토산물을 봉진하는 데는 대소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이미 호남과 관동에서 폐단을 바로잡았던 가까운 사례가 있으니, 울산의 전복에 대한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도신은 추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복.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五月 三十日 辛酉

- 癸丑五月三十日卯時，上御熙政堂。…… 文淳曰，新除授旌義縣監高漢祿，以本島明月萬戶，移拜見職，方在本鎮，本曹當請除朝辭赴任，而此是未署經之人，不得舉行，故敢此仰達矣。上曰，除朝辭，至於除署經，則未嘗無端開路，而此則海外之人，拔例何妨？特爲除署經，可也。【出舉條】…….

❖ 정조 17년(1793) 계축년 5월 30일(신유)

- ☐ 정의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의 하직 절차를 의논함
- 계축년 5월 30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중략>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정의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은 이 섬의 명월만호(明月萬戶)로, 현직에 이배(移拜)되었으므로 바야흐로 이 제주진에 있어서 본조(本曹)에서 마땅히 조정에 하직하는 절차를 면제하고 바로 부임하라고 하는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직 서경하지 못한 사람은 거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이로써 양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朝辭)를 면제하고, 서경(署經)을 면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곧 일찍이 무단(無端)으로 길을 열어준 적이 없다. 이는 곧 바다 밖에 있는 사람이니 전례를 뵈더라도 어찌 거리길 것이 있겠는가? 특별히 서경을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고한록.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六月 二十四日 乙酉

- 癸丑六月二十四日辰時, 上御重熙堂. 左副承旨·右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洪仁浩, 右副承旨李庚運, 假注書金錫泰, 記注官承膺祚, 記事官徐有聞,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教曰, …… 吏判之大靜外補, 兵判之旌義外補, 焉可已也, 竝以此意知悉. 又命書榻教曰, 未肅拜京畿都事改差. 又命書榻教曰, 新除授訓練大將牌招, 傳授命召.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6월 24일(을유)

□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외보(外補)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계축년 6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좌부승지·우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이경운(李庚運), 가주서 김석태(金錫泰),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서유문(徐有聞)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중략> 이판(吏判)은 대정(大靜)에서 외보(外補)⁴¹⁶하게 하고, 병판(兵判)은 정의(旌義)에서 외보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아울러 이 뜻을 성세하게 알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탑교(榻敎)를 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은 경기도사(京畿都事)를 개차(改差)하라.”라고 하였다. 또 탑교를 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새로 제수한 훈련대장(訓練大將)을 패초(牌招)하고, 명소(命召)를 전해 주도록 명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 외보.

416) 외보(外補): 외방에서 임금의 정치와 교화(教化)를 돕는 수령(守令)과 변장(邊將).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六月 二十五日 丙戌

- 傳于閔台燦曰雨露不擇地，用舍豈可只觀門閥？況遠人收攬之教，意在一視，而昨政未見對揚之效，我國之最遠，卽耽羅也。近見耽羅文臣中，仕宦兩人，人皆勝於京士大夫，或特除於詞訟，或見知於郵官，益知近來用道之太窄，今日之政，無異大政，則又何可佞泄乎？掌令呈告人許遞，忠清都事姜鳳瑞，陽德縣監邊景祐，除後牌招，使之行公。

❖ 정조 17년(1793) 계축년 6월 25일(병술)

- 탐라(耽羅)의 문신(文臣) 강봉서(姜鳳瑞)와 변경우(邊景祐)에 관한 임금의 전교
- 민채혁(閔台燦)에게 전교하기를, “비와 이슬은 땅을 가려 내리지 않는다. 등용하고 버리는 일에 어찌 문벌만을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먼 데 사람을 거두어 등용하라는 전교는 그 뜻이 사람을 차별 없이 보는 데에 있었는데, 어제의 정사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선양한 효험을 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은 바로 탐라(耽羅)이니,⁴¹⁷⁾ 근래 본 탐라의 문신(文臣) 가운데 사환(仕宦)한 두 사람[兩人: 강봉서와 변경우]은 사람이 다 경사대부(京士大夫)보다 낫다. 혹 특별히 사송(詞訟)을 면제하고, 혹 우관[郵官, 찰방(察訪)]에 견지(見知)하고 근래 용도하는 태착(太窄)을 더욱 알게 하라. 오늘의 정사는 대정(大政)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또 어찌 그냥 넘길 수 있겠는가? 장령(掌令)은 정고인(呈告人)을 허체(許遞)하고, 충청도사(忠淸都事) 강봉서(姜鳳瑞)와 양덕현감(陽德縣監) 변경우(邊景祐)를 나중에 패초(牌招)를 면제하고, 그로 하여금 공무를 집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문신, 강봉서, 변경우.

417)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1793) 6월 25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七月 四日 己未[乙未]

- 以吏曹侍從臣父, 姜時揚年七十加資別單, 傳于洪義榮曰, 耽羅侍從, 考之邑誌卽初有, 而其中一臺臣之父, 又有年近八十者, 今乃依例加資, 事涉稀貴, 掌令姜鳳瑞, 今日內許捧觀親呈辭, 使之歸觀老人懸玉之鬢.

❖ 정조 17년(1793) 계축년 7월 4일(기미[을미])

- ☐ 탐라(耽羅)의 시종신 가자(加資)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이조가 시종신(侍從臣)의 아버지 강시양(姜時揚)을 가자(加資)하여 별단(別單)하고,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기를, “탐라(耽羅)의 시종신은 읍지(邑誌)를 상고해 보아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 아비의 나이가 80에 가까워져 오니, 지금 전례에 따라 가자를 한다면 희귀한 일이 될 듯하다. 장령 강봉서(姜鳳瑞)에게 오늘 안으로 근친(覲親)하기 위하여 올린 휴가 신청을 허가하여 노인의 귀밑머리에 옥관자(玉貫子)를 다는 경사를 가서 보게 하라.”라고 하였다.⁴¹⁸⁾

△ 주제어: 탐라, 시종.

418)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1793) 7월 4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七月 十三日 甲辰

- 南公轍, 以壯勇營言啓曰, …… 新定之類, 難責立馬, 今年濟州別卜定馬中, 限一百四五匹分給, 而不足之數, 附近牧場中, 充數覓給,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7월 13일(갑진)

□ 제주(濟州) 지정마[卜定馬]에 관한 장용영(壯勇營)의 계

- 남공철(南公轍)이 장용영(壯勇營)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신정(新定)하는 유(類)는 입마(立馬)⁴¹⁹를 책임 지우기 어려우니, 올해는 제주(濟州)에서 특별히 지정한 말[卜定馬] 가운데 104, 5필을 한정으로 나누어 주게 하고 부족한 수는 부근 목장 가운데 충수(充數)를 구해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지정마.

419) 입마(立馬): 각역(各驛)에서 말[驛馬]을 길러서 대기시키던 일. 나라의 관마(官馬)를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馬田)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음.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七月 十六日 丁未

- 以全羅監司權職狀啓, 南原等邑祭享各處屋宇祭器修葺改備事, 傳于俞漢寧曰, 當待秋成, 或遣史官, 或遣禮郎·宣傳官, 抽牒考察勤慢, 慢者, 另當施以懲一之典, 卿其知此申令, 圖所以無犯之方事, 回諭. 至於濟州各品祀享, 隔以重溟, 其所修飭恪虔, 未必十分致精致慎, 而近來飭諭之下, 尙無繕葺形止之登聞者, 豈但該牧之稽忽? 專由卿不謹奉法, 爲先從重推考, 莫以怠心之已生於宦成, 益畏朝令, 俾免罪戾事, 一體, 回諭.

❖ 정조 17년(1793) 계축년 7월 16일(정미)

□ 제주(濟州) 사향(祀享) 물품에 관한 전라감사 권엄(權嚴)의 장계

- 전라감사 권엄(權嚴)의 장계에, 남원(南原) 등 고을의 제향(祭享) 각처(各處)의 옥우(屋宇)와 제기(祭器)를 수증(修葺)하고 개비(改備)하는 일에 대해, 유한녕(俞漢寧)에게 전교하기를, “마땅히 추성(秋成)을 기다렸다가, 혹은 사관을 보내고, 혹은 예랑(禮郎)·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추천하여 근만(勤慢)을 고찰하고, 태만한 자 각별히 마땅히 한 사람을 징계하여 백 사람을 격려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 경(卿)은 이처럼 명을 거듭 밝히는 것을 알리고, 도모하는 바에 무범(無犯)하는 방책으로 삼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라. 제주(濟州)에 이르는 각품(各品)의 사향은 증명(重溟)으로 떨어져 있어서, 수칙(修飭)하고 각진(恪虔)하는 바가 아직 반드시 십분(十分)으로 치정(致精)하고 치신(致慎)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칙유(飭諭)을 내린 것은 오히려 선증(繕葺: 수전)한 사정이 없이 등문(登聞)한 것은 어찌 단지 해당 목이 매우 소홀한 것 아닌가? 전적으로 말미는 경이 법을 삼가 받들지 않아서, 우선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고, 태만한 마음이 이미 환성(宦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 것이므로, 더욱 조령(朝令)을 두려워하면서, 단지 죄를 면하여 줄 일의 일체를 회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사향.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七月 二十二日 癸丑

- 俞漢寧,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驚駑馬二十匹合八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前後申飭, 不啻嚴明, 而年年所進, 每如是體小品劣, 揆以事體, 誠極未安, 當該封進牧使李喆運,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今年則軍馬別封, 貢馬之體小, 宜有分揀, 該牧使勿推, 可也.

❖ 정조 17년(1793) 계축년 7월 22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先運) 연례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유한녕(俞漢寧)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先運)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마와 노태마 20필을 합한 88필의 털 색과 나이를 별단으로 써서 들고, 앞뒤로 신칙하여 엄명(嚴明)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마다 진상하는바, 매번 이와 같이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하니, 일의 체모를 헤아리건대 참으로 매우 미안할 따름입니다. 마땅히 해당 봉진 목사인 이철운(李喆運)을 종중하여 추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하한다. 올해는 군마(軍馬)를 별봉(別封)하는 해인데, 공마(貢馬)의 체구가 작아서, 마땅히 분간함이 있어야 하니, 해당 목사를 추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연례진상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七月 二十二日 癸丑

- 俞漢寧,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李徽祚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廄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三匹馬俱爲體小無才, 事極駭然. 當該封進前判官李徽祚,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7월 22일(계축)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 체임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유한녕(俞漢寧)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휘조(李徽祚) 체임진상마 3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털 색과 나이를 별단으로 써서 들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廄)에서 입양(立養)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헌(進獻)한 사체(事體)가 어떻든 엄중(嚴重)한 것인데, 3필의 말은 모두 체구가 작고 재주가 없으니, 일에 있어서 매우 해괴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당 봉진관인 전 판관 이휘조를 종중하여 추고하게 하고 일후에 경책하는 것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판관, 이휘조, 체임진상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七月 二十六日 丁巳

- 癸丑七月二十六日卯時，上御誠正閣。…… 濟州文官之以諫官登筵者，可謂希貴之事也。年來島民荐飢，予之憧憧一念，夙宵靡已，遯矣遐土，王化不及，民間疾苦與島中痼瘼，必須一一陳達，可也。景祐曰，島民，厚蒙朝家如傷若保之至仁盛德，昨年歉荒，無一人捐瘠，舉皆安居奠業，無他疾苦之可言，至於島中弊瘼，臣於倉卒之際，未能指的，仰對矣。上曰，以遐土之人，今適登筵，何可無一言而退乎？須以平日所見聞於島中者，一一陳達，可也。景祐曰，朝家爲慮耽羅災年移轉之弊，出給本錢於臨陂縣，設羅鋪倉，使之年年取息，而若值耽羅歉歲，則自臨陂，以其利錢買米，而往哺島民，蓋有救荒之實效矣。年前濟州武臣金貴宅之仰陳所懷也，以移轉還納之時，船運臭載之患，多在於七山之洋，仰請直爲運納於羅州濟民倉，特蒙允許，則果無七山洋破船之弊，然而其本錢則未知歸於何處，而當其凶年，則自全羅監營，以各邑還上耗條移劃救荒，而舉皆皮牟不實之穀也。朝家給本錢設倉之本意，果安在哉？請分付本道監營，推其本錢，移羅州後，又自濟州牧，擇定監色，與羅州官眼同，使之給本錢取息，以爲島民救荒之資。上曰，令廟堂問于曾經道伯，草記稟處，可也。……

❖ 정조 17년(1793) 계축년 7월 26일(정사)

□ 제주(濟州) 문관(文官)의 연관(諫官) 등연(登筵)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계축년 7월 26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변경우(邊景祐)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제주(濟州) 문관(文官)이 연관(諫官)으로 등연(登筵)한 것은 희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해 전부터 제주 백성들이 계속되는 흉년으로 굶주린다고 하여, 나의 마음에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있다. 이 섬 백성들의 고충과 폐단을 날날이 진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경우가 아뢰기를, “섬에 사는 백성들은 조정에서 마치 다친 사람을 보살피듯 하는 지극한 은덕을 많이 입고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여윈 사람 없이 모두들 편안히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 사람이 마침 연석(筵席)에 올라왔는데 어찌 한마디의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모쪼록 평소에 듣고 본 것을 진술하라.”라고 하였다. 경우가 아뢰기를, “조정이, 제주도의 재해(災害)가 든 해에 육지로 옮겨가는 폐단을 염려하여 본전을 임피현(臨陂縣)에 내어주고 나리포창을 설치하여 해마다 그 이자를 취해서 육지에서

쌀을 사 가지고 가서 먹여주었습니다. 연전에 제주의 무신(武臣) 김귀택(金貴澤)이, 쌀을 실은 배가 칠산(七山) 앞바다에서 파선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여 곧장 나주(羅州)의 제민창(濟民倉)으로 운반하여 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가 특별 윤허를 받고부터는 배가 파선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본전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흉년을 당하면 전라 감영에서 각 고을에 푼 환자[還上]의 모조(耗條)를 떼어 주는데 거의 족정이니, 애당초 본전을 주어 창고를 설치했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도 감영에 분부하여 그 본전을 찾아내어 나주로 이송하고 또 제주목에서 감색(監色)을 뽑아 보내어 나주 관원과 함께 입회하여 돈을 나누어주고 이자를 받아 섬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는 밑천으로 삼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⁴²⁰⁾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일찍이 도백(道伯)을 거친 사람에게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문관, 연관, 등연.

420)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1781) 9월 1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八月 五日 乙丑

- 俞漢寧,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三匹船中故失, 四匹到中路故失, 七匹到江頭病留, 實納馬一百八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8월 5일(을축)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유한녕(俞漢寧)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안에, 3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4필은 중로(中路)에 이르러서 고실(故失)하고, 7필은 강두(江頭)에 이르러 병으로 남고, 실제 납마(納馬)는 186필로, 털 색과 나이를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세공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八月 二十七日 丁亥

- 徐有秉,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許湜遞任, 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前後申飭之下, 二匹馬俱爲品劣無步, 事極駭然. 當該封進前縣監許湜,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8월 27일(정해)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서유병(徐有秉)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식(許湜)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와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뒤로 신칙(申飭)을 내렸는데도, 2필의 말은 모두 품질이 열등하고 견지를 못하니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마땅히 봉진한 전 현감 허식을 종중하여 추고하게 하고 일후를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 허식, 체임진상마.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九月 一日 辛卯

- 徐有大, 以壯勇營言啓曰, 臣與提調臣鄭民始, 訓練大將臣趙心泰, 善騎別將臣趙圭鎮, 出往馬場里, 濟州別卜定馬一百五十七匹, 京畿各牧場馬四十七匹, 水原武士二百四人處, 一一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9월 1일(신묘)

- 제주(濟州)의 지정마[卜定馬]에 관한 장용영(壯勇營)의 계
- 서유대(徐有大)가 장용영(壯勇營)의 말로 아뢰기를, “신(臣)과 신 제조(提調) 정민시(鄭民始), 신 훈련대장(訓練大將) 조심태(趙心泰), 신 선기별장(善騎別將) 조규진(趙圭鎮)이 마장리(馬場里)에 나가서, 제주(濟州)에서 특별히 지정[卜定]한 말 157필, 경기 각 목장의 말 47필, 수원(水原) 무사(武士) 204인에게 일일이 나누어 줄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 乾隆 五十八年 癸丑 九月 二十一日 辛亥

- 洪明浩啓曰, 以濟州防禦使李喆運啓本, 風雲雷雨壇移安祭香祝下送事, 令該曹稟處, 莫重朝令, 不卽舉行, 惶恐待罪事. 傳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7년(1793) 계축년 9월 21일(신해)

- ☐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이안제(移安祭) 향축(香祝)과 관련한 홍명호(洪明浩)의 계
- 홍명호(洪明浩)가 아뢰기를,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철운(李喆運)의 계본(啓本)에,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이안제(移安祭) 향축(香祝)을 하송할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막중한 조령(朝令)을 곧 거행하지 못한 것으로, 황공스러워 죄를 기다리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풍운뇌우단, 이안제, 향축.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一日 庚子

- 南公轍，以備邊司言啓曰，掌令姜鳳瑞上疏批旨，有查勘之方，有司堂上就議，指一草記以聞，竝與該牧使李喆運，旌義縣監高漢祿等行查問，律名使之一體議奏之命矣。臣等依下教，就議于大臣，則領議政洪樂性以爲，賊吏之恣行不法，從古何限，而未有若李喆運之罪犯者也。以臺疏條列，觀之，則還上之濫捧精分，剩穀終無歸處，船粟之大斛小斗所剩，過千有餘。咸平牟之貿買涼鰓，海南穀之貿木貿紬，賑倉米之混置於民還災減之中，而三邑之二千饑口虛錄，爲四千名，拮据之三百穀數加錄，爲六百石。甚至於高漢祿之願納米租，不過百餘石，而以五百石，虛張登聞者，罔非不法無良之事，而此則猶係渠之賊污，國有常刑，自可如法勘斷。至於表裏賞典之下，以國事可笑之說，怫然發口於稠人之中，而渠乃肆然爲此，則其罪萬戮有餘。又若春夏以來，聖念憧憧於島饑，蠲恤之澤，船粟之惠，靡不容極，而民命顛壑，不知爲幾千名，則其爲驚慘，不可但以不法肥己之罪，論勘。事當卽速拿來，嚴覈得情，以法處斷，而第恐拿來之後，自知死罪，一辭發明，則萬里重溟，往復究覈，必當動費時月。且不可不質覈於參聽之稠人，且纔經大饑，今年又未免失稔，殿屎之慘，至於此極，則宜有慰諭奠接之舉，外此不法諸條，亦宜一一按查，得其情犯，發遣按覈御史，使之盤詰登聞，明正其罪。……李喆運先施本島定配之典，以待御史狀聞後，拿來施法。高漢祿賞典，爲先還收，其虛張石數，誣罔天聽之罪，拿問嚴勘，爲宜云，……傳曰，以此以彼，按覈安集之舉，不容少緩，而非繡衣，亦不可爲者，爲先以剛明可合人，無論使與御史，堂上三品及三司中，卽爲通融抄啓，而按覈之當爲於何處，勘律之當擬以何律，李喆運之行查前，姑先如何處之之當否，及外此疏中諸條之未及稟處者，時任大臣處，更爲就議。……其餘諸條之只舉梗概者，問于臺臣，然後可以知之，況彈丸之地，傳聞豈至於爽實乎？詳知然後，可以按查。掌令姜鳳瑞，令政院卽爲牌招，俾卽條陳耳聞目擊之事實以啓，李喆運·高漢祿，則爲先作闕，另擇擬薦，而政官，待開門牌招開政，發例擇差，待下批不多日內，使之下送，可也。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1일(경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과 정의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사감(查勘)에 관한 비변사의 계
- 남공철(南公轍)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장령 강봉서(姜鳳瑞)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지(批旨)에, 죄상을 조사하여 처리할 방도가 있는지 해당 당사관들이 논

의하여 의견 일치를 본 후 간단히 적어 보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당 목사 이철운(李喆運)과 정의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 등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적용할 법도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들이 하교대로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장리(贓吏)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철운 같은 죄를 지은 자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간의 상소로 조목조목 열거한 것을 보면, 환자(還上)를 함부로 거두어들인 것이 정분(精分)을 넘쳐서 남는 곡식이 끝내 돌아가 곳이 없게 되었으니, 배 속의 큰 곡식은 작은 두(斗)에서 남는 것이 천여 냥입니다. 함평리(咸平里)의 식량(識涼)과 양복(涼鰯)을 사 가지고 해남의 곡식으로 무명을 사서 주(紬)를 사 와 진흥청의 미(米)를 백성의 환재(還災)로 감해주는 대상에 섞어 넣었는데, 세 고을에서 2,700명의 굶주린 자들을 허록(虛錄)한 것이 4,000명, 백곡(百穀)의 수량을 채워 넣은 것이 600석입니다. 심지어 고한록(高漢祿)이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미(納米)는 100여 섬에 불과한데도 500섬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아뢰는 것은 모두 불법하고 불량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래도 그가 장오(贓汚)를 저지른 데에 관계되고 나라에 상형(常刑)이 있으면 법으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만 번 죽여도 충분합니다. 또 봄과 여름 이래로 성상의 염려가 섬에 기근을 걱정한 것과 백성을 구휼하는 은택과 선배(船累)의 혜택이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도 백성의 구렁에 빠져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였으니, 그 놀랍고 참혹한 것으로만 불법적으로 자기를 살찌우는 죄로 논단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잡아와서 엄히 조사하여 실정을 캐내어 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만, 다만 잡아온 뒤에 죽을죄임을 스스로 알고서 한목소리로 변명하였더니, 만리 먼 바다에서 왕래하며 끝까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백백이 모인 사람에게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큰 기근을 겪자마자 올해도 흉작을 면치 못하여 신음에 신음하는 참혹한 상황이 이런 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위유(慰諭)하여 안접(安接)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이 밖에 불법을 저지른 여러 조항들도 낱낱이 조사해 밝혀서 그 죄상을 알아내어 안핵어사(按覈御史)를 보내어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게 하여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게 해야 합니다. <중략> 이철운에게 먼저 본도(本島)에 정배(定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어사가 장계로 보고한 뒤에 잡아오게 하소서. 고한록의 상전(賞典)을 우선 환수하고 그 쓸데없이 수량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천청(天聽)을 무망(誣罔)한 죄를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전교하기를, “이것으로 보나 저로 보나 안핵하고 안집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고 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니, 우선 강

직하고 명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사를 막론하고 당상 3품 및 삼사(三司) 중에서 즉시 융통하여 초계(抄啓)하게 하되, 우선 강직하고 명석한 사람으로 감률(勘律) 하여 어떤 율(律)로 시행하고, 이철운이 조사 앞에 있을 때의 당부(當否)와 이 외의 상소 가운데 여러 조목 중에서 미처 나에게 물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임대신(時任大臣)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략> 그 나머지 여러 조목 가운데 다만 그 대강만을 거론한 것은 대신(臺臣)에게 물어본 뒤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탄환(彈丸) 같은 한 땅이 어찌 사실과 다르겠는가? 상세히 안 연후에 조사할 수 있다. 장령 강봉서를 승정원으로 하여금 즉시 패초하여, 즉시 귀로 들어서 눈으로 눈으로 본 사실을 조목조목 진술하게 하고, 이철운과 고한록을 우선 빈자리를 만들어 따로 가려서 천거하게 하고, 정관(政官)은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 하비하기를 기다려 안으로 내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정의현감, 고한록.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一日 庚子

○ 掌令姜鳳瑞疏曰，…… 噫，耽羅一島，邈在千里重溟之外，累值凶荒，民不支保者，久矣。前年秋事之大無，前所未有，而今年夏麥之又爲孔慘，則自冬春至夏，民人之饑死者，不知其幾千名，而民之所望者，只是秋穀之登稔矣。島氓又不幸，千萬意外，今八月二十一日，大風從東南起，拔屋折木，連日大作，旌義·大靜，殆同赤地，濟州右面左面，被災斯酷，中面十餘村里依風處，小有入稔，而三邑之民，聚而食之，則可謂太倉稊米。荐饑之餘，又值慘凶，公無儲積，私無瓶粟，若不船粟就哺，則來春呼饑，必倍於今年春夏之餓死，而況新舊還上及前後番米，一時竝督，則民何以支保哉？噫，島中凡百，無非牧使之主張，而至於糶糴一事，乃是爲民之大政也，而還上之濫捧者，斛上之高上，殆至數三斗，而及其分給也，民之所受一斗之穀，未免七八升，則濫捧精分，推此可知，而其所剩穀，終無歸屬，此豈荒政之本意哉？以言乎萬包移穀，則與他自別，固當拔例調賑，以盡接濟之道，而初以大斛捧之，終乃小斗分之，每石所剩，皆二斗，則合爲千有餘石，而咸平移轉三百餘石所載船，致敗於朝天浦者，不爲登聞，而拯出之後，其所欠縮，一百七十餘石。補欠之外，其餘八百餘石，船運于山底浦，貿買涼鰓，而海南移穀，未及載運，零數十一石，初不載運，送將校，作錢三十三兩於海南地，而貿木貿紬，則移粟救荒之意，固如是乎？當初請穀之際，賑倉米一千三百餘石在庫中者，混置于民還災減中，而不入於狀聞之中，則穀簿之那移，固無可言，而三邑抄飢白給之民，不過二千餘人，而狀聞中，以四千名云者，何其虛錄之多，而拮据穀數爰，不過三百石，而以六百石登聞者，或可文簿之不審歟？前明月萬戶高漢祿之願納米六十石，租六十石，而以五百石登聞者，抑亦何意哉？蓋漢祿之願納，徒廣德山之田庄，只是營屬之肥己，而非貧民之糊口者也，而畢賑之後，自以爲功，意望甚高矣。及其啓下高漢祿之爲旌義縣監，而牧使之惟有表裏之賞典，則怫然發口於稠人之中曰，國事可笑。嘻噫，此豈爲官長者之所可道哉？嗟乎，字牧之官，晝夜昏醉，不顧民隱，難以責任災邑之政，臣謂濟州牧使李喆運，爲先施以削職之典，斷不可已也。虛張文簿，圖得官職，旌義縣監高漢祿，亟施勿施之典，宜矣。臣無任屏營祈懇之至。答曰，省疏具悉。耽羅遯矣，隔以重溟，王化未暨，民隱難徹，牧守如不得其人，朝廷何以知無辜島氓之坐受荼毒乎？去年饑民之顛壑，爾既言其數，看來良欲無言。陸民之轉而之他，猶且期於還集，隨現嚴懲道伯，況島中顛壑之不知爲幾千名云者，可謂前未聞後未聞。雖使數爰，風傳稍爽，千之減者爲百，百又減而爲十，十亦豈可罪歲，一猶若已推諸，本牧若有守土之臣，此言豈出於爾口乎？外此虐民竊穀之許多罪過，俱係罔赦，無法則已，似此牧守，其可不卽明覈情犯，亟施大懲創之典，爲先另行查勘，在所不已，查亦有許多般，爾疏下廟堂，其所查勘之方，有司堂上就議，指一草記

以聞. 竝與該牧使李喆運, 旌義縣監高漢祿等行查間律名, 使之一體議奏. 城化雖有等分, 爾之職名, 卽臺臣, 臺臣之責, 自袞闕許令論說, 則何論城化, 且況事實之查處, 又在於批答以後事乎? 此所以如是優批者也, 爾其勿辭察職. 仍傳于南公轍曰, 臺臣疏中, 亦言來春接濟之策, 船粟非難, 所切矜者, 湖南民也. 在朝家一視之心, 豈可無別般兩便之方? 令廟堂分付道臣, 待新倅赴任, 從長講究, 卽爲狀聞, 俾無緩忽之弊.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1일(경자)

□ 제주(濟州)의 흉황(凶荒) 상황, 제주목사(濟州牧使) 삭직(削職)과 정의현감(旌義縣監)의 물시(勿施)에 관한 장령 강봉서(姜鳳瑞)의 상소

○ 장령 강봉서(姜鳳瑞)가 상소하기를, “〈중략〉 아! 탐라(耽羅) 한 섬은 아득히 천 리 깊은 바다 밖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흉황(凶荒)을 만나서, 백성들이 지보(支保)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농사의 큰 흉년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보리 또한 공참(孔慘)하니,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이번 추곡(秋穀)이 등임(登稔)하는 것입니다. 섬 백성들도 불행하지만, 천만(千萬) 의외(意外)로, 올 8월 21일에 큰바람이 동남쪽에서 일어나서 집을 날려버리고 나무를 꺾어 버리고, 연일 크게 일어났습니다. 정의(旌義)·대정(大靜)은 거의 적지(赤地)나 다름이 없고, 제주(濟州) 우면(右面)과 좌면(左面)은 흑심한 재해를 입었고, 중면(中面) 10여 마을을 바람 부는 곳에 의지하여 조금 입임(入稔)할 듯합니다. 그러나 세 고을 백성들이 모여서 먹게 되면 큰 창고 속의 돌피 하나와 같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슬프도다, 이 어찌 관장(官長)된 자가 할 말입니까? 아, 목민관은 밤낮없이 술에 취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니. 재읍(災邑)의 정사를 책임지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을 우선 삭직(削職)하는 형을 실시하여, 결코 말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짓 문서를 꾸며, 관직을 얻으려고 도모하였습니다. 정의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은 물시(勿施)하는 형을 빨리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臣)은 신은 숨을 죽이며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소를 자세히 보았다. 탐라는 먼 곳인데다가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백성의 고통이 위에까지 알려지기 어려우므로, 만일 목사가 책임자가 아닐 경우 조정이 어떻게 무고한 섬사람

들이 앉아서 받는 혹심한 괴로움을 알겠는가. 작년에 굶어 죽은 백성의 수를 네가 말하였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육지의 백성들이 굶주려 전전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어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 살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대로 도백(道伯)을 엄중히 징계하고 있는데 더구나 섬 안에서 굶어 죽은 자가 몇천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니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들어보지 못할 일이라고 하겠다. 설령 소문으로 전하는 말이 사실과 틀려서 천이 줄어 백이 되고 백이 또 줄어 십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흉년을 타할 일이겠는가. 마치 내가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심정이다. 본 제주목에 목사다운 신하가 있었던들 이런 말이 어찌 너의 입에서 나왔겠는가. 그것 말고도 백성들을 학대하고 나라의 곡식을 도둑질한 따위의 허다한 죄과는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나라에 법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그와 같은 목사를 즉시 그 범죄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여 크게 징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너의 상소는 묘당에 내려보내 죄상을 조사하여 처리할 방도를 해당 당사관들이 논의하여 의견 일치를 본 후 간단히 적어 보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당 목사 이철운과 정의 현감 고한록 등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적용할 법도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할 것이다. 성주와 백성과는 비록 신분의 차이가 있다지만 너의 직책은 바로 사헌부 관원으로서 그 직책이 임금의 잘못까지도 다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주와 백성과의 관계를 따질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한 하물며 사실(事實)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답(批答)이 있는 뒤의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로 비답을 내리는 것이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남공철에게 전교하기를, “대신(臺臣)의 소(疏) 가운데도 올봄에 접제(接濟)할 방안을 말했는데, 선속(船粟)은 어렵지 않은데, 매우 가궁한 자는 호남(湖南) 백성이다. 조가(朝家)가 한 번 보이는 마음에 있어서, 어찌 별반의 양편(兩便)의 방책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는 것을 기다려서, 좋은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즉시 장문(狀聞)하게 하여, 완홀(緩忽)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목사, 정의현감, 이철운, 고한록.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二日 辛丑

○ 備邊司薦望, 以李一曾爲濟州牧使.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2일(신축)

□ 이일증(李一曾)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였는데, 이일증(李一曾)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 주제어: 이일증, 제주목사.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二日 辛丑

- 吏批, 有政. 判書金思穆進, 參判未差, 參議鄭大容進, 行都承旨沈煥之進. 以丁範祖爲吏曹參判, 柳師模爲旌義縣監, 兵曹參議尹弘烈, 參知李師濂, 濟州牧使李一曾單付.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2일(신축)

- 유사모(柳師模)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고,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일증(李一曾)을 단부(單付)함
- 이비(吏批)에서 정사가 있었다. 판서 김사목(金思穆)이 나아왔으나, 참판(參判)으로 차임하지 않았다. 참의 정대용(鄭大容)이 나아오고, 행도승지 심환지(沈煥之)가 나아왔다. 정범조(丁範祖)를 이조참판으로 삼고, 유사모(柳師模)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병조참의 윤홍렬(尹弘烈), 참지 이사렴(李師濂),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일증(李一曾)을 단부(單付)하였다.

△ 주제어: 유사모, 정의현감, 제주목사, 이일증.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二日 辛丑

○ 再政. 以柳憲周爲旌義縣監.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2일(신축)

□ 유헌주(柳憲周)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다시 정사가 있었다. 유헌주(柳憲周)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유헌주, 정의현감.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二日 辛丑

- 癸丑十一月十二日辰時，上御誠正閣。藥房入診，禮房承旨 左承旨 有司堂上同爲入侍時，藥房提調徐有防，副提調沈煥之，行左承旨林濟遠，同副承旨徐有秉，假注書宋知濂·鄭文始，記注官金良倜·承膺祚，檢校直閣鄭大容，有司堂上鄭民始·沈頤之·尹行任，以次進伏訖。…… 民始曰，前縣監柳師模，方以御製李忠武公神道碑篆額草圖書官舉行，訖役尙遠，而移除旌義縣監，所管書役，事體甚重，則畢役前，不可出送，姑爲改差，何如？上曰，依爲之。其代更卽差出，可也。【出舉條】 仍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2일(신축)

□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이제(移除)에 관해 임금이 대신들과 논의함

- 계축년 11월 1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고 예방승지·좌승지·유사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약방제조 서유방(徐有防), 부제조 심환지(沈煥之), 행 좌승지 임제원(林濟遠), 동부승지 서유병(徐有秉), 가주서 송지렴(宋知濂)·정문시(鄭文始),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검교직각 정대용(鄭大容), 유사당상 정민시(鄭民始)·심이지(沈頤之)·윤행임(尹行任)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민시가 아뢰기를, “전 현감 유사모(柳師模)가 바야흐로 어제(御製) 이충무공(李忠武公) 신도비(神道碑) 전액(篆額) 초(草)와 도서(圖書) 관작[官]을 거행하게 하고, 역을 끝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이제(移除)하고 소관(所管)하는 서역(書役)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하니 역을 마치기 전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잠시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를 대신하는 것은 다시 즉시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정의현감, 이제.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三日 壬寅

- 林濟遠, 以備邊司言啓曰, 本司草記批旨內, 按覈之當爲於何處, 勘律之當擬以何律, 李喆運之行查前姑先如何處之之當否及外此疏中諸條未及稟處者, 時任大臣處, 更爲就議, 原任大臣處, 發遣備郎詳問草記事, 命下矣. 臣等就議于時任大臣, 則領議政洪樂性以爲, 李喆運之恣行不法, 肥己虐民之罪, 非不關係極律, 而視諸國事可笑之說, 猶屬第二件, 此說之有無虛實, 先爲查得, 然後他餘諸條, 可以次第究覈, 昨日草記, 以此歸重, 至以發遣御史嚴覈施法之意, 有所陳達矣. 伏承批旨, 更加商確, 雖以臺疏中論列諸條言之, 白給饑口之登聞於畢賑啓本者, 三邑爲二千六百口, 而臺臣以爲, 實數二千餘, 虛張四千口云者, 自歸搆捏. 順天牟之水沈, 畢竟無事到泊, 而其時亦已狀聞, 則臺疏中順天·咸平之邑名互換, 已是疑怪, 而不爲狀聞之說, 尤未免爽實. …… 傳曰, 原任兩相, 昨今收議中, 惓惓於城化界限者, 政合疏批中微意, 而當待結末矣. 李喆運事, 朝廷處分, 當以幾千名顛壑之越視而不救, 爲歸重, 貪污與所謂悖說, 皆屬第二件, 繡衣則不可不差送, 另行按查, 與臺言無錯, 則死者設壇以酹之, 賊吏按法正其罪, 卽不可已之舉. 前校理沈樂洙, 濟州大靜·旌義等邑按覈御史差下, 不多日內辭朝, 該倅差代間, 權行牧使之事. 至於喆運之悖說一款決處事, 依領府事議施行, 而以嚴鞫爲名, 則爲設鞫之獄, 鞫名, 依領相金判府議施行. 但於頭面之際, 或涉難便, 終當觀勢, 更有處分, 爲先令政院, 牌招掌令姜鳳瑞於接待廳, 以聞於喆運傳於臺臣者姓名誰某, 使之條對然後, 仍令王府, 拿覈喆運. 聞者傳者, 亦令道伯執捉, 上送于該曹事, 分付, 而聞與傳者中, 或入於顛壑事應問之秩, 則先爲盤問後上送事, 一體分付御史處, 可也.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3일(임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처리와 안핵어사 심낙수(沈樂洙) 파견에 관한 논의
- 임제원(林濟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안핵할 것을 마땅히 어느 곳에 시행하고 감률(勘律)하여 어떤 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철운(李喆運)을 조사하기 전에 우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와 이외의 상소 가운데 여러 조항들을 미처 품처하지 못한 것은 시임대신(時任大臣)에게 다시 나아가 의논하고, 원임대신(原任大臣)에게 비변사 낭청을 보내어 상세히 물어 초기(草記)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들이 시임대신에게 가서 의논하였

더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이철운이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를 살찌우고 백성을 학대하는 죄가 극물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국사(國事)의 가소로운 말에 견주어 보면 오히려 부차적인 것에 속하고, 이 말의 유무(有無)와 허실(虛實)을 먼저 조사해 낸 뒤에야 다른 여러 조목에 대해 차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나, 어제의 초기(草記)에 이를 증시하여 심지어 어사를 보내어 엄히 조사하여 법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삼가 비지(批旨)를 받들어 보니 다시 더 상의해 보니, 비록 대간의 상소 가운데 논열(論列)한 여러 조항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진흙을 마친 뒤에 진흙 계본에 보고한 것에 등문(登聞)한 것은 3천 6백 구(口)인데 대신(臺臣)이 실수(實數)가 2천여 명이고 거짓으로 4천구를 부과했다고 한 것은 스스로 날조한 것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순천모(順天牟)가 물에 잠긴 것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 일이 없이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장계로 보고하였으니, 대간의 상소 가운데 순천(順天)·함평(咸平)의 고을 이름을 서로 바꾼 것만도 이미 의심스럽고 괴이한데, 장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은 더욱 사실과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두 원임 정승이 성주와 고을 백성과의 신분 관계에 대해 마음을 쓴 것은 비답 중의 은미한 뜻과 바로 일치하고 있지만 의당 결말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철운(李喆運) 문제에 대한 조정의 처분은 당연히 몇천 명이 굶어 죽었는데도 그것을 남의 나라 일 보듯 하고 손쓰지 않은 것을 중점으로 다루어야지 탐관오리 노릇을 한 것이나 패설 따위는 다 둘째 문제로 쳐야 할 것이다. 어사는 뽑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니 별도로 조사를 하여 대관의 말과 틀림이 없으면 죽은 사람에게는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주어야 할 것이고 장물을 취득한 관리는 법에 따라 그 죄를 다스리는 일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전 교리 심낙수(沈樂洙)를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등 고을의 안핵어사로 임명하여 며칠 이내로 현지로 떠나게 하고 해당 수령을 임명하여 보내는 동안 목사 임무를 임시 대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철운의 패설 부분은 영부사의 논의대로 처리하되 이름을 엄국(嚴鞫)으로 하면 추국청을 설치해야 하는 사건이 될 터이니 국문의 명칭은 영상의 논의대로 하도록 하라. 다만 대질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혹간 난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형편을 보아 가면서 다시 처분이 있을 것이다. 정원으로 하여금 장령 강봉서(姜鳳瑞)를 접대청으로 패초(牌招)하여 이철운에게 그 말을 듣고 대관에게 전한 사람의 성명이 누구인가를 조목조목 대답하게 한 다음 이어 의금부로 하여금 이철운을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고, 들은 자와 전한 자도 도백이 잡아서 해조로 올려보내게 할 일을 분부하라. 그리고 들은 자와 전한 자 가운데 혹 전학(顛壑)한 일을 응문(應問)하는

질(秩)에 들게 하고, 먼저 반문(盤問)한 뒤에 상송(上送)할 일 일체(一體)를 어사에게 분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철운, 심낙수, 강봉서.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三日 壬寅

- 林濟遠啓曰, 濟州御史沈樂洙,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3일(임인)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어사 명호에 관한 임제원(林濟遠)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는 당시 직명(職名)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군직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三日 壬寅

- 林濟遠啓曰, 濟州御史沈樂洙, 時在京畿坡州地, 斯速乘駟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允.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3일(임인)

-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를 승일(乘駟)하여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임제원(林濟遠)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는 당시 경기 파주 땅에 있었는데, 신속하게 승일(乘駟)하여 올라오게 할 일을 하유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三日 壬寅

○ 傳于沈煥之曰, 旌義縣監留待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3일(임인)

□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유대(留待)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심환지(沈煥之)에게 전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은 남아서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유대.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三日 壬寅

- 癸丑十一月十三日辰時，上御重熙堂。…… 又教曰，旌義縣監，使之卽爲肅命，可也。良倜承命出傳。上命書備局草記批旨。又命書傳教曰，新除濟州牧使，時在關東云，不但等待之差遲，遽然差代，終涉如何，未肅拜牧使李一曾改差，更待下教差代。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3일(임인)

-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숙명(肅命)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일증(李一曾)의 개차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계축년 11월 13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또 전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은 그로 하여금 즉시 숙명(肅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양척(金良倜)이 명을 받들고 나와서 전하였다. 임금이 비국(備局)에게 초기와 비지를 쓰라고 명하였다. 또 전교를 쓰라고 하고 말하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는 당시 관동(關東)에 있다고 하니, 단지 등대(等待)가 차지(差遲)하지 않고, 거연(遽然)히 차대(差代)하면 끝내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은 목사 이일증(李一曾)을 개차(改差)하여 다시 하교(下教)를 기다려서 차대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가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정의현감, 숙명, 이일증, 개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三日 壬寅

- 癸丑十一月十三日未時，上御重熙堂。…… 又命書傳教曰，濟州前牧使李喆運，既有拿來之令，所佩密符，發遣宣傳官奪符後，依近例傳于御史，使之權佩事，成送諭書於御史處，兵符照此施行。上曰，雖值齋日，公事之關係民事者，皆令如例稟達也。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3일(임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나래(拿來)에 관한 논의
- 계축년 11월 13일 미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또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이미 나래(拿來)하라는 명이 있었고, 차고 있는 밀부를 선전관을 보내어 빼앗게 한 뒤에, 근례(近例)에 따라 어사에게 전교하여, 그로 하여금 임시 바꾸어 찰 일을, 어사에게 유서로 작성하여 보내게 하고, 병부(兵符)는 이에 비추어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재일(齋日)과 상치되더라도 공사(公事)는 민사(民事)와 관계되는 것은 다 전례와 같이 품달(稟達)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가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전 목사, 이철운, 나래.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四日 癸卯

○ 傳于金履成曰, 有司堂上 · 濟州御史 · 旌義縣監入侍.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4일(계묘)

□ 제주어사(濟州御史) ·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입시(入侍)하라는 임금의 전교

○ 김이성(金履成)에게 전교하기를, “유사당상(有司堂上) · 제주어사(濟州御史) ·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정의현감, 입시.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四日 癸卯

○ 吏批有口傳政, 以南涑爲旌義縣監.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4일(계묘)

□ 남속(南涑)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구전(口傳) 정사가 있었다. 남속(南涑)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남속, 정의현감.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四日 癸卯

○ 癸丑十一月十四日辰時，上御誠正閣。…… 濟州御史·旌義縣監同爲入侍時，…… 濟州御史沈樂洙，旌義縣監柳憲周，以次進伏訖。…… 上教頤之曰，耽羅御史事目，詳考臚錄，添入諸條，以爲齎去之地也。上曰，昨日姜鳳瑞問啓後，李喆運四字之說，今旣脫空矣。大抵近來彈駁無聞，而所謂彈章，皆是此等文字，鳳瑞之效嚙，亦由於此，渠何足責？此朝廷之差也。然其疏中餓殍幾千口云者，何等驚心處乎？地是海外絕域，宵旰之念，尤爲憧憧不弛，而自聞此言之後，夜不安寢矣。…… 上曰，御史先退，旌義縣監進前。憲周奏職姓名。上曰，年幾何？憲周曰，五十九歲矣。上教履素曰，見甚衰憊，難責其涉海遠赴矣。履素曰，耽羅荐經災荒，民事多可悶云，此時三邑守令，當以年富力强之人，差遣，而旌義縣監柳憲周，近頗病衰，目下所見，實難強策其越海赴任，今姑改差，令該曹各別擇差，何如？上曰，依爲之。勿拘三司，令該曹更爲口傳擇差，可也。【出舉條】……。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4일(신미)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 정의현감(旌義縣監) 유헌주(柳憲周)가 입시하여 임금과 독대함

○ 계축년 11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제주어사(濟州御史)·정의현감(旌義縣監)이 함께 입시했을 때 〈중략〉 제주어사 심낙수(沈樂洙), 정의현감 유헌주(柳憲周)가 차례대로 나아왔다. 〈중략〉 임금이 심이지(沈頤之)에게 전교하기를, “탐라어사(耽羅御史) 사목(事目)을 상고하여 등록(臚錄)하고 제조(諸條)를 첨입(添入)하여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강봉서(姜鳳瑞)를 문계(問啓)한 뒤에 이철운(李喆運)의 네 글자로 된 패설은 이제 이미 죄명을 완전히 벗었다. 대체로 요즘 와서는 탄핵의 소리가 없었지만 흑간 있다 하여도 거의가 강봉서와 같은 류들이니 그것이 조정의 수치다. 그러나 그의 상소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 한 것은 그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인가. 그곳은 바다 밖의 아주 먼 지역이라서 밤낮으로 더욱 마음이 놓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뒤부터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⁴²¹⁾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御史)는 먼저 물러나라. 정의현감은 앞

421)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1793) 11월 14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으로 나아오라.”라고 하였다. 유현주가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하였다. 유현주가 아뢰기를, “59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김이소(金履素)에게 전교하기를, “보기에 매우 쇠비(衰憊)한데, 바다를 건너서 멀리 부임하여 책임을 맡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하였다. 김이소가 아뢰기를, “탐라(耽羅)는 거둑하여 재황(災荒)을 겪어서, 민사(民事)가 많이 가련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세 고을 수령은 마땅히 나이가 젊고 힘이 좋은 사람을 차견(差遣)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현감 유현주는 가까이서 보면 병으로 쇠잔한 듯한데, 지금 소견으로는 실로 바다를 건너서 부임하고 강력한 방책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잠시 개차(改差)하고, 해조로 하여금 각별하게 택차(擇差)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삼사(三司)에 구매하지 말고,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택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정의현감, 유현주.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六日 乙巳

- 癸丑十一月十六日辰時, 上御誠正閣. …… 頤之曰, 濟州御史, 例有慰諭·巡撫·試才等名目, 令番按覈御史事目, 添入幾條乎? 上曰, 竝爲添入, 可也.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6일(을사)

-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명목(名目)에 관한 심이지(沈履之)의 계
- 계축년 11월 1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심이지(沈履之)가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는 전례에 위유(慰諭)·순무(巡撫)·시재(試才) 등의 명목(名目)으로 제수하는데, 이번 안핵어사(按覈御史)의 사목(事目)은 몇 조를 첨입(添入)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첨입(添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어사, 안핵어사.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七日 丙午

- 林濟遠,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齎去事目,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7일(병오)

-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명목(名目)에 관한 임제원(林濟遠)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위유(慰諭)·안핵(按覈)·순무(巡撫)·시재(試才) 어사(御史)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어사.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十八日 丁未

- 南公轍,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李喆(運)拿來得情事, 傳旨啓下矣. 李喆運時在任所, 所當交代後拿來, 而既有御史權行牧.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18일(병오)

-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나래(拿來)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남공철(南公轍)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을 나래(拿來)하고 득정(得情)할 일에 대해,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철운은 당시 임소(任所)에 있으니, 마땅히 교대하게 한 뒤에 나래하게 하고, 이미 어사가 목사(牧使) 일을 대신하여 행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목사, 이철운, 나래.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一日 庚戌

- 以濟州牧使李喆運狀啓, 災實分等, 一邊馳啓, 一邊舉行, 惶恐待罪事, 傳于南公轍曰, 竝依狀請施行, 勿待罪事, 回諭. 接濟之策, 待御史下去, 論理狀聞事, 分付. 涼藿一船之臭載, 豈可還徵於島民? 特爲蕩減事, 令廟堂分付.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1일(경술)

□ 재실분등(災實分等)에 대한 이철운(李喆運)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장계에, 재실분등(災實分等)은 한 편으로 치계(馳啓)하게 하고, 한 편으로 거행(舉行)하게 하고, 황공스럽게도 대죄할 일에 대해, 남공철(南公轍)에게 전교하기를, “모두 장계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게 하고, 죄를 기다리게 하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 접제(接濟)하는 방법은 어사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논리대로 장문(狀聞)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 양곽[涼藿: 양태와 미역]은 일반으로 취재(臭載)⁴²²하였으니, 어찌 섬 백성들에게 도로 징수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탕감(蕩減)해 줄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재실, 분등, 양곽.

422) 취재(臭載): 짐을 실은 배가 얹어져 가라앉은 상태를 의미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一日 庚戌

- 林濟遠, 以兵曹言啓曰, 濟州試射規矩單子, 依例書入, 而事目則規矩落點後, 磨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1일(경술)

- ☐ 제주(濟州) 시사(試射) 규구단자(規矩單子) 마련을 청하는 병조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시사(試射) 규구단자(規矩單子)는 전례에 따라 써서 들이게 하고, 사목(事目)은 규구를 낙점(落點)한 뒤에, 마련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시사, 규구단자.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一日 庚戌

- 癸丑十一月二十一日午時，上御重熙堂。…… 上命書傳教曰，濟州御史使名，向因坐齋，有從當下教之命，而政院尙不稟旨，該曹以巡撫試才等事，不待文跡，徑先書入，當該承旨・禮兵曹判堂推考。廟堂節目，徑先頒布，致此做錯，該堂亦爲推考。使名，以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稱號事，分付。命書公事判付訖。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1일(경술)

□ 제주어사(濟州御史) 사명(使名)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계축년 11월 21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사명(使名)은 지난번에 좌재(坐齋)에 따라 종당(從當)에 하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정원(政院)은 아직도 품지(稟旨)하지 않았으니, 해조(該曹)가 순무(巡撫)와 시재(試才)의 일로 문적(文跡)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글로 써서 들이게 하였으니 마땅히 해당 승지와 예조와 병조 판당(判堂)⁴²³을 추고하라. 묘당(廟堂)은 절목(節目)을 우선 반포(頒布)하게 하고, 이런 착오를 빚게 하였으니, 해당 당상도 추고하라. 사명은 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호칭하는 일을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공사(公事) 판부(判付)를 쓰라고 명하고 끝나자, 물러가라고 했다.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어사, 사명.

423) 판당(判堂): 당상(堂上)인 판서(判書)와 판윤(判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二日 辛亥

- 林濟遠, 以兵曹言啓曰, 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 御史齎去試才規矩事目, 參考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2일(신해)

-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사목에 관한 병조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가 가지고 가는 시재(試才) 규구사목(規矩事目)을 참고하기 위해 마련하여 들이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사목.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三日 壬子

○ 有政. 吏批, …… 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單沈樂洙.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3일(임자)

□ 심낙수(沈樂洙)를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단부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심낙수(沈樂洙)를 단부(單付)하였다.

△ 주제어: 심낙수.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丑

- 傳于林濟遠曰, 耽羅繡衣, 今日下去云, 明日次對進定於今日, 使之卽爲來會.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4일(계축)

□ 탐라(耽羅) 수의(繡衣)의 차대(次對)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임제원(林濟遠)에게 전교하기를, “탐라(耽羅)의 수의(繡衣)가 오늘 내려간다고 하는데, 내일 차대(次對)할 것을 오늘로 진정(進定)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즉시 내회(來會)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수의, 차대.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丑

○ 諭濟州大小民人等書曰，咨爾耽羅大小民人，水陸幾千餘里，乘危而涉險來往，動以時月計，甚哉遼矣，爾等謂予於爾等，以其遼矣而或之忽歟？遠吾民也，近吾民也，均吾民也，何遠何近，而眷眷之心，有時乎遠或加於近，蓋以艱難疾苦之無由數數聞，而聞輒垂念故耳，故橘包登盤，則想爾等之辛勤栽培，馬群來庭，則想爾等之奔走畜牧，每當北風颼颼，雪花翩跹，則慮到貢船，惺惺不寐，爾等知予心眷眷否乎？予聞之，島之黎庶，勤儉淳庠，有唐俗瞿瞿遺風，他州之所莫及，星有老人，出地燭天，黃耆鮐背，村村扶醉，依斗望京，爭獻眉壽，勅子弟善事官長，服勞趨令，如捍頭目，儒武吏胥，各習其藝，農漁工商，各安其業，俗亦可謂善矣。第其地勢确而斥，橫縱田畝，以石戴土，原隰無別，備無俱損，通計三邑，多歉少穰，日用契活，專資乎貿遷，予之視之，非陸民比，去歲萬斛之哺，特濟爾等頤頤之急，而方其泛舟也，申諭於道伯，徼福於海神，風靜浪恬，其還如往。逮夫春晷載陽，調賑伊始，則無非予爲爾等憧憧之日，而直到仲夏，獲接告竣之啓，南顧憂虞，爲之少紓。迺者臺言出，而疑信多端，民之云苦，若已推諸，茲命弘文館校理沈樂洙爲御史，往哉汝覈，有罪無罪，無漏無濫。俾既厥事，又思之，耽羅之見繡衣，在十有二年之後，抑闊矣。於其行也，衆瘼詢咨也，苦役釐革也，庶獄伸理也，人才搜訪也，高年宴樂也，善惡彰瘡也，文武試取也。田政・浦政・戎政・馬政之飭勵也，邑守・鎮帥之臧否黜陟也。爰命籌司之臣，條列齎其行，其在于爾等，時哉時哉，爾等知予心眷眷否乎？噫，一陽肇生，萬品將蘇，爾等其能畢糴於倉，息肩於室，爲酒食以養父母，爲衣褐以及童稚歟？來弊之在在大熟，舟楫之人人利涉，深有祝於爾等，咨爾耽羅大小民人。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4일(계축)

□ 탐라(耽羅) 백성에게 내린 윤음

○ 제주(濟州)의 대소민인(大小民人)에게 내린 윤음에, “아, 너희 제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물길과 물길 몇천 리나 되는 곳을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길을 내왕할 때 걸핏하면 몇 달이 걸리니 너무나도 멀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멀리 있다고 혹시라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는가. 먼 곳에 살아도 나의 백성이며, 가까운 곳에 살아도 나의 백성이니 똑같이 나의 백성이다. 어찌 멀고 가까운 차이가 있겠는가마는 잊지 못하는 마음이 때로는 가깝게 사는 백성보다 먼 곳에 사는

백성에게 더하기도 한다. 그것은 어렵고 괴로운 생활을 자주 들을 길이 없는데 다 듣기만 하면 곧 마음이 쏠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굴이 소반에 올라오면 애써 재배한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말 때가 궁궐 뜰에 오면 분주하게 기른 너희들의 고초를 상상하는 것이다. 언제나 북풍이 뽕뽕 불어오고 함박눈이 펄펄 날리면 공물 실은 배가 염려되어 정신이 초롱초롱해지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잊지 못하는 나의 이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듣건대 섬의 백성들이 근검하고 순박하여 즐기면서도 늘 자신을 경계하는 예스런 풍속을 다른 고을은 따라갈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한다. 노인성(老人星)이 땅을 비치고 하늘에 빛나 얼굴이 누르고 등이 굽은 노인들이 마을마다 부축을 받으며 술에 취하여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서울을 향해 앞을 다투어 장수를 기원하는 동시에, 자제들에게는 관장(官長)을 잘 섬기고 부역에 종사하며 명령을 수행하여 마치 자신의 머리나 눈을 감싸듯 보호하라고 훈계한다고 하며, 선비와 무사와 아전들은 제각기 자기 일을 익히고 농부·어부·장인·상인들도 각각 자기의 직업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니 그곳 풍속이 참으로 좋다고 하겠다. 다만 토지가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으며 가로 세로로 된 밭이랑에는 돌에 흙이 덮여있기에 높은 언덕 지대나 낮은 습지대 할 것 없이 비가 고른 해건 비가 없는 해건 모두 손상을 입으며 통계적으로 세 고을은 흉년이 많이 들고 풍년은 적게 들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적으로 사서 쓴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보는 마음이 육지 백성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지난해에 곡식 1만 섬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위급한 너희들을 특별히 구제하기는 하였지만 막 배를 띄우려 하면서 도백에게 거둬 당부하여 바다 신에게 복을 빌게 했더니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하여 내왕이 순조로웠다. 따뜻한 봄날에 기민 먹이는 일을 시작한 것은 내가 하루도 너희들을 마음에 잊지 못해서였는데 5월에 이르러 기민 먹이는 일이 끝났다는 보고를 접하고 나서야 남쪽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그런데 대간의 말이 나와 반신반의하던 끝에 백성들의 고통을 말할 때면 마치 내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 같은 심정에서 홍문관 교리 심낙수를 어사로 삼아 그곳에 가서 죄가 있고 없고를 빠뜨리지도 말고 과장됨도 없이 조사하여 일을 마치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또 생각해 보니 제주에서는 어사를 12년 만에 보게 되었으니 너무 뜨다고 하겠다. 어사가 가는 걸음에 갖가지 고질적 폐단을 알아보는 일, 고통스러운 신역을 바로잡아 없애는 일, 모든 옥사를 심리하는 일, 인재를 발굴하는 일, 노인에게 잔치를 열어 위로하는 일, 착한 사람을 표창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일, 문무과 시험을 보여 인재를 뽑는 일, 전지와 포구와 군사 문제 그리고 말에 관한 정책을 신척하고 격려하는 일, 고을 수

령과 진영 장수의 잘잘못에 따라 강등시키거나 올려주는 일 등에 대하여 비변사의 신하에게 명해 조목조목 열거해서 그가 가는 길에 가져가게 하였으니,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기회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못 잊어하는 나의 마음을 알거나 하는가. 아, 양(陽) 하나가 처음으로 생겨나서 만물이 장차 소생할 것인데 너희들은 고을 창고에 환곡을 모두 상환하고 집에서 부담 없이 쉬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갖가지 옷을 지어 아이들에게 입히고 있는가? 내년의 보리농사는 곳곳에 큰 풍년이 들고 바다에 나가는 배는 사람마다 잘 건너다녔으면 하고 너희들을 위해 축원하는 바이다. 아, 너희 제주의 모든 백성들아!”라고 하였다.⁴²⁴⁾

△ 주제어: 제주, 윤음.

424)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1793) 11월 24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丑

- 金履成, 以禮曹言啓曰, 今此冬至諸道方物中, 濟州牧所封方物, 今始上來, 而牧使李喆運, 雖在拿命中, 以越海之地, 其前已爲封進上來矣. 依例看品後, 具別單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4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방물(方物)의 간품(看品)에 관한 예조의 계
- 김이성(金履成)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이 동지(冬至)에 올라온 제도(諸道) 방물(方物) 가운데, 제주목(濟州牧)에서 소봉(所封)한 방물이 오늘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목사 이철운(李喆運)이 비록 나명(拿命)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야 하는 땅에서 전에 이미 봉진하여 올라왔습니다. 전례에 따라 간품(看品)한 뒤에 별단을 갖추어 봉입(捧入)하는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방물.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丑

- 禮曹單子, 濟州漢拿山設祭香祝幣, 磨鍊下送, 隨時卜日設行之意, 分付,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旆, 祭文, 令內閣知製教撰進, 香祝各別精備下送, 而設祭時拔例齋沐, 既有嚴明飭諭之故事, 載在籌司臚錄, 今番段置, 前期致齋虔誠行祀之意, 分付爲良如教.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4일(계축)

- 제주(濟州) 한라산(漢拿山)에 제를 올리는 것에 관한 예조의 단자
- 예조의 단자에, “제주(濟州) 한라산(漢拿山)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향축(香祝)과 폐백(幣帛)을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수시로 날짜를 잡아 설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판부(判付)하기를, 회계(回啓)에 따라 시행하며, 제문(祭文)은 내각(內閣)의 지제교(知製教)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고, 향축은 각 별히 치재(致齋)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되, 제사를 설행할 때에는 특례(特例)로 재계하고, 이미 칙유(飭諭)를 엄명(嚴明)했던 고사(故事)가 있고, 《주사등록(籌司臚錄)》에도 실려 있는데, 이번에도 기일에 앞서 치재하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거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부하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한라산, 설제.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丑

- 癸丑十一月二十四日辰時，上御誠正閣. …… 濟州御史沈樂洙，接慰官尹悌東以次進伏
訖. …… 上曰，御史進前. 昨因濟州綸音及御題事，殆同達宵，政院之以今日下直入稟，
何也? …… 上命履成書傳教曰，今下濟州齎去諭書，傳于御史，島中紙貴，依例令完營
印給事，分付內閣. 儒生則分三日試取，而第一日先試詩賦，第二日次試銘頌，第三日又
試論策之意，預令諸生知悉事，下諭于御史.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4일(신미)

- 제주(濟州)에 내리는 윤음을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에게 전할 것을 논의
함
- 계축년 11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제주어사(濟州御
史) 심낙수(沈樂洙), 접위관 윤제동(尹悌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는 앞으로 나오라. 어제 제주(濟州) 윤음(綸音)과 어제(御
題)에 대한 일은 거의 밤을 새운 것과 같다. 정원(政院)이 오늘 하직(下直)하게
하여 입품(入稟)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임제원(林濟遠)이 아뢰
기를, “잠깐 어사의 말을 들으니, 이조(吏曹)가 처음에 내문(來問)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이성(金履成)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라고 하기를,
“오늘 제주에 내려서 가지고 가게 한 유서(諭書)를 어사에게 전하고, 섬 안에는
종이가 귀하니, 전례에 따라 완영(完營)에서 인급(印給)하게 할 일을 내각에 분부
하라. 유생(儒生)은 3일로 나누어 시취(試取)하게 하고, 제1일에는 먼저 시(詩)와
부(賦)를 시험하게 하고, 제2일에는 명(銘)과 송(頌)을 시험하게 하고, 제3일에는
또 논(論)과 책(策)을 시험하게 하는 뜻을 미리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
는 일을 어사에게 하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심낙수, 윤음.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丑

- 癸丑十一月二十四日午時, …… 上曰, 濟州民人等處諭書, 使戶判飜譯矣. 果已爲之乎? 公轍曰, 俄已出草, 而今方正書矣.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4일(계축)

- 제주(濟州) 민인(民人)들에게 내린 유서(諭書)에 관한 임금의 물음
- 계축년 11월 24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민인(民人)들에게 내린 유서(諭書)는 호판(戶判)으로 하여금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라. 과연 이미 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아까 이미 출초(出草)해서 지금 바야흐로 정서(正書)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유서.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五日 甲寅

○ 傳于南公轍曰, 旌義縣監留待.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5일(갑인)

□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유대(留待)하라는 임금의 전교

○ 남공철(南公轍)에게 전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을 유대(留待)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유대.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一月 二十五日 甲寅

- 癸丑十一月二十五日未時, …… 上曰, 下直守令入侍. 良倜承命出, 與南陽府使李翼晉, 朔州府使盧尙樞, 旌義縣監南涑, 懷仁縣監李魯在偕入. …… 涑奏職姓名訖. 上曰, 往役爲重, 勿以爲路險邑薄, 克體擇遣之意也, 何當離發乎? 涑曰, 一兩日內欲下往矣.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1월 25일(갑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의 하직에 관한 건

- 계축년 11월 25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하직(下直)할 수령(守令)은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김양척(金良倜)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 남양부사 이익진(李翼晉), 삭주부사 노상추(盧尙樞),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 회인현감 이노재(李魯在)가 다 들어왔다. <중략> 남속이 나와서 직(職)과 성명(姓名)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왕역(往役)해야 할 곳은 중한 곳이다. 길이 험한 고을의 수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능히 몸 받아서 택견(擇遣)하는 뜻이 있다. 어찌 당연히 이발(離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남속이 아뢰기를, “하루 이틀 안에 내려가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남속.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二月 一日 庚申

- 洪仁浩, 以漢城府言啓曰, 今癸丑年獻民數 時京中八道戶口摠數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及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2월 1일(경신)

- 제주(濟州) 백성의 수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홍인호(洪仁浩)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한성부(漢城府)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계축년(1793)에 백성의 수를 바치는데, 당시 경중(京中)과 팔도(八道)의 호구(戶口) 총수(摠數)를 초록(抄錄)하여 입계(入啓)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濟州) 세 고을의 민수(民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바다 섬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지속(遲速)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득이 일시에 마감(磨勘)하고, 이것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첨록(添錄)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수[民數].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二月 一日 庚申

○ 癸丑十二月初一日，上御熙政堂。常參兼行次對吏兵房承旨持歲抄入侍，輪對官久任郎廳同爲入侍時，行都承旨洪明浩，左承旨李勉兢，右承旨洪仁浩，左副承旨李冕膺，右副承旨鄭大容，同副承旨宋銓，假注書鄭文始·洪樂游，記注官承膺祚，記事官徐有聞，東班，左議政金履素，左參贊李聖圭，右參贊洪秀輔，漢城判尹具庠，戶曹判書沈頤之，吏曹判書金思穆，禮曹判書閔鍾顯，大司憲林蕃喆，掌令李鎮宅，校理李錫夏，正言尹悌東，副修撰崔獻重，司僕僉正趙祥達，吏曹正郎朴吉源，戶曹正郎鄭東教·李始源，司僕判官韓大裕，軍器判官宋堯熙，禮曹佐郎金載聲，監察洪亮猷，典籍韓用鐸，漢城主簿徐謙淳，內膳主簿金濟萬，掌樂主簿趙基顯，西水庫別提辛漸，造紙別提洪疇九，瓦署別提韓師鎮，尙衣直長金龍淳，平市直長鄭元彬，軍資直長許默，養賢庫直長李宗直，掌苑奉事金相謙，廣興副奉事崔粹綱，禮賓參奉金尙弼，東學訓導禹錫龜，西班，判府事朴宗岳，西春君燁，綾城尉具敏和，行司直鄭昌順·鄭民始·李文源，判敦寧李敏輔，工曹判書邊得讓，兵曹判書鄭好仁，刑曹判書李致中，行副司直金持默·李敬懋，訓練都正趙心泰，行副司直李漢豐，漢城左尹沈煥之，副司直尹行任，僉知任希遠，兵曹正郎尹魯東·洪大協，刑曹正郎李潤明，工曹正郎申宅權，工曹佐郎李度翼，宣惠郎廳李廷恢·李憲儒·李潞秀·鄭國仁·宋持敬，中樞都事金宅和，訓練都監軍色從事官李相璜，訓練都監烏銑色從事官韓光傳，訓練都監火藥色從事官李台峻，訓練都監軍餉色把摠李厚在，禁衛營軍色從事官鄭尙愚，禁衛營糧餉色從事官柳和源，御營廳糧餉色從事官尹恒儉，備邊郎李成德·朴廷宅·尹之謙·白海鎮·李德純·柳春源·尹益儉，以次進伏訟 …… 鎮宅曰，懲貪之典，實爲今日急務，濟州前牧使李喆運之許多罪犯，果如姜鳳瑞之疏，則烹阿之典，不可不用，而第伏念官民之分，本自截然，況此耽羅一域，邈在海外，憑仗王靈，維繫民心者，賴有官長而已，使喆運雖伏贓污之律，在鳳瑞已有凌犯之罪，繡衣行查後，未知處分之如何，而其疏所云四字悖說，不待查問之舉，已屬誣罔之科，謀陷土主，自有當律，今若以遐遠蠢愚之故，而置而勿論，則遠島頑習，無以知戢，請前掌令姜鳳瑞，爲先施以刊削之典。上曰，所謂四字之說，亦不過一時妄發，渠於問啓之下，以此爲對，則與搆陷差間，其他事件，有行查之命，當待決末處分矣。【出舉條】 ……。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2월 1일(경신)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징계에 관해 임금이 대신들과 논의함

○ 계축년 12월 초1일에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갔다. 상참과 차대를 행하는 자리에 이방승지는 세초(歲抄)를 가지고 입시하고, 윤대관과 구임낭청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행도승지 홍명호(洪明浩), 좌승지 이면경(李勉競), 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이면응(李冕膺), 우부승지 정대용(鄭大容), 동부승지 송전(宋銓), 가주서 정문시(鄭文始)·홍낙유(洪樂游),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서유문(徐有聞), 동반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좌참찬 이성규(李聖圭), 우참찬 홍수보(洪秀輔), 한성판윤 구상(具庠),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 이조판서 김사목(金思穆),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대사헌 임시철(林蓍喆), 장령 이진택(李鎭宅), 교리 이석하(李錫夏), 정언 윤제동(尹悌東), 부수찬 최헌중(崔獻重), 사복 첨정 조상규(趙祥逵), 이조정랑 박길원(朴吉源), 호조정랑 정동교(鄭東敎)·이시원(李始源), 사복판관 한대유(韓大裕), 군기판관 송요희(宋堯熙), 예조좌랑 김재성(金載聲), 감찰 홍양유(洪亮猷), 전직 한용탁(韓用鐸), 한성주부 서겸순(徐謙淳), 내섬주부 김제만(金濟萬), 장락주부 조기현(趙基顯), 서빙고별제 신점(辛漸), 조지별제홍주구(洪疇九), 와서별제 한사진(韓師鎭), 상의직장 김용순(金龍淳), 평시직장 정원빈(鄭元彬), 군자직장 허묵(許默), 양현고직장李宗直(李宗直), 장원봉사 김상겸(金相謙), 광흥부봉사 최수경(崔粹綱), 예빈참봉 김상필(金尙弼), 동학훈도우석구(禹錫龜), 서반, 판부사 박종악(朴宗岳), 서춘군(西春君) 엽(燁), 능성위 구민화(具敏和), 행사직 정창순(鄭昌順)·정민시(鄭民始)·이문원(李文源), 판돈녕 이민보(李敏輔), 공조판서 변득양(邊得讓), 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형조판서 이치중(李致中), 행부사직 김지묵(金持默)·이경무(李敬懋), 훈련도정 조심태(趙心泰), 행부사직 이한풍(李漢豐), 한성좌윤 심환지(沈煥之), 부사직 윤행임(尹行任), 첨지 임희원(任希遠), 병조정랑 윤노동(尹魯東)·홍대협(洪大協), 형조정랑 이윤명(李潤明), 공조정랑 신택권(申宅權), 공조좌랑 이도익(李度翼), 선혜낭청 이정희(李廷恢)·이헌유(李憲儒)·이로수(李潞秀)·정국인(鄭國仁)·송지경(宋持敬), 증추도사 김택화(金宅和), 훈련도감 군색종사관 이상황(李相璜), 훈련도감 조충색 종사관 한광전(韓光傳), 훈련도감 화약색 종사관 이태준(李台峻), 훈련도감 군향색 파총 이후재(李厚在), 금위영 군색 종사관 정상우(鄭尙愚), 금위영 양향색 종사관 유화원(柳和源), 어영청 양향색 종사관 윤항검(尹恒儉), 비변랑 이성덕(李成德)·박정택(朴廷宅)·윤지겸(尹之謙)·백해진(白海鎭)·이덕순(李德純)·류춘원(柳春源)·윤익검(尹益儉)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이진택(李鎭宅)이 아뢰기를, “탐오한 자를 징계하는 법전은 실로 오늘 급한 업무입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허다한 죄범(罪犯)은 과연 강봉서(姜鳳瑞)의 상소와 같으니, 팽아(烹阿)의 법⁴²⁵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하건대 관장(官長)과 백성의 신분은 본래 말할 나위 없이 엄격한 것입

니다. 더구나 제주 지역은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임금의 위엄을 빌어 민심을 유지하는 것은 관장의 힘을 의뢰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철운(李喆運)이 장오(臧汚)의 법에 복종하더라도 강봉서에게는 이미 관장을 능범(凌犯)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글자의 패설(悖說)은 조사하여 신문해 보지 않더라도 벌써 임금을 속인 죄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 고장의 수령을 모함한 죄에는 본래 해당하는 법률이 있으니, 전 장령 강봉서에게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네 글자에 대한 말은 역시 한때의 망발에 불과하다. 그가 물음에 대한 아뢰에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니, 없는 사실을 만들어 모함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의 사건은 조사하라고 명하였으니 그 결말을 기다려서 처분할 것이다. 【거조(學條)를 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이철운.

425) 팽아(烹阿)의 법: 탐관(貪官)을 처벌하는 극형을 의미함. 전국시대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처음에 모든 지방 정치를 경대부(卿大夫)에게 위임하였는데, 여러 경대부 중 아 대부(阿大夫)가 정치를 가장 잘한다고 예찬의 소리가 날로 들리기에, 사람을 보내어 아(阿) 땅을 살펴보았더니, 실제로는 정치는 가장 못하고 왕의 좌우에 뇌물을 써서 칭찬을 구한 것이었음. 그리하여 당장 아 대부를 불러다 삶아 죽였다는 고사.

❖ 乾隆 五十八年 癸丑 十二月 十四日 癸酉

- 徐美修, 以兵曹言啓曰, 依下教, 臣進詣慕華館, 聚會一內禁軍等, 大張威儀, 罪人梁垓 · 李仁達 · 沈有祖拿入, 以傳教內辭意, 分付後, 各嚴棍三十度, 梁垓全羅道靈光郡楸子島充軍, 李仁達羅州牧黑山島充軍, 沈有祖濟州牧充軍, 而竝出付畿營, 使之定驛子, 押送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7년(1793) 계축년 12월 14일(계유)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충군 죄수에 관한 병조의 계

- 서미수(徐美修)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에 따라, 신(臣)이 모화관(慕華館)에 진예(進詣)하여, 취회(聚會)하여 일내금군(一內禁軍)⁴²⁶들을 크게 위의(威儀)를 베풀어서 죄인 양협(梁垓) · 이인달(李仁達) · 심유조(沈有祖)를 나입(拿入)하게 하고, 전교(傳教) 안의 사의(辭意)로써 분부한 뒤에, 각별히 엄하게 곤장 30대를 치고, 양협은 전라도 영광군 추자도(楸子島)에 충군(充軍)하고, 이인달은 나주목 흑산도에 충군하고, 심유조는 제주목(濟州牧)에 충군한 뒤에 모두 기영(畿營)에 내보내 붙이고, 그로 하여금 역자(驛子)를 정하여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심유조.

426) 일내금군(一內禁軍):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내금위(內禁衛)에 딸린 한 부대(部隊). 내금위 일번(內禁衛一番)에서 생긴 말.

1794年

(정조 18)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一月 一日 己丑

- 鄭大容, 以禮曹言啓曰, 今此正朝諸道方物中, 濟州牧使李喆運, 雖在拿命中, 以越海之地, 其前已爲封進上來矣, 依例看品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월 1일(기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이 보낸 정조방물(正朝方物)에 관한 예조의 계
- 정대용(鄭大容)이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이번 정조(正朝)의 여러 도(道) 방물(方物) 가운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은 비록 나명(拿命) 중에 있지만, 바다 건너의 땅에서 그 전에 이미 봉진하여 올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례에 따라 간품(看品)하여 봉입(捧入)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나명, 정조방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一月 八日 丙申

- 徐榮輔,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癸丑年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월 8일(병신)

□ 제주(濟州) 세 고을의 계축년(癸丑年) 백성 수에 관한 한성부의 계

- 서영보(徐榮輔)가 한성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의 계축년(1793) 백성 수에 대해서,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 입록(入錄)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계축년, 백성 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一日 己卯

- 李勉兢, 以謁聖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今日平明開場, 鐵箭應射學子, 自在字仍爲試敢之意, 敢啓. 傳曰, 儒武, 何異? 儒生之濟州人, 別爲考券, 武士, 亦當用此例, 今番諸所呈單之濟州武士爲幾人, 而入格爲幾人乎? 卽爲草記. 如有上來而未入格者, 兩科各試, 小布一巡, 柳葉箭一巡, 一中以上入格人, 草記,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1일(기묘)

- 알성무과에서 제주(濟州) 무거자(武舉子)의 입격(入格)에 관한 이면공(李勉兢)의 계
- 이면공(李勉兢)이 알성무(謁聖武)⁴²⁷의 이소(二所)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신(臣)은 오늘 해가 뜰 무렵에 개장(開場)하여 철전(鐵箭)⁴²⁸ 응사(應射) 거자(舉子)가 다스리는 데 있으면서 그대로 시취(試取)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무(儒武: 유생과 무인)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유생 가운데 제주인(濟州人)은 특별히 고권(考券)⁴²⁹하게 하고, 무사(武士)도 마땅히 이 예를 써서, 이번 제소(諸所)에서 정단(呈單)⁴³⁰한 것 가운데 제주(濟州) 무사는 몇 인인지, 그리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몇 인인지 즉시 초기(草記)를 작성하라. 만일 올라와서 아직 입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양과(兩科)의 각시(各試)인 소포(小布)에서 일순(一巡)⁴³¹하게 하고, 유엽전(柳葉箭)에서 일순하게 하여, 일중(一中)⁴³² 이상 입격한 사람은 초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알성무과, 제주, 무거자.

427) 알성무(謁聖武): 알성무과(謁聖武科). 조선시대에, 임금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한 뒤 보이던 무과.

428) 철전(鐵箭): 육량전(六兩箭)-아량전(亞兩箭)-장전(長箭) 등을 통틀어 일컬음.

429) 고권(考卷): 시권(試券)을 평가함.

430) 정단(呈單): ① 서류를 관아에 제출하던 일. ② 단자(單子)를 올림.

431) 일순(一巡): 일정한 순서나 경로를 한 번 돌. 또는 일정한 순서나 경로를 따라 한 번 돌림. 일정한 순서나 경로를 따라 한 번 돌면서 화살 따위를 쏘는 것.

432) 일중(一中): 국궁 따위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화살 한 개를 과녁에 맞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一日 己卯

- 李勉兢, 以謁聖武一所試官意啓曰, 以謁聖武二所平明開場, 鐵箭試取草記, 傳曰, 儒武, 何異? 儒生之濟州人, 別爲考券, 武士, 亦當用此例, 今番諸所呈單之濟州武士爲幾人, 而入格爲幾人乎? 卽爲草記. 如有上來而未入格者, 兩科各試, 小布一巡, 柳葉箭一巡, 一中以上入格人, 草記可也事, 命下矣. 臣所則初無濟州武士呈單之事, 亦無他所移來之人, 不得試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1일(기묘)

- 제주(濟州) 무거자(武擧子)의 시취(試取)에 관한 이면금(李勉兢)의 계

○ 이면금(李勉兢)이 알성무(謁聖武) 일소(一所)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알성무가 이소(二所)에서 해가 뜰 무렵에 개장(開場)하여, 철전(鐵箭)을 시취(試取)하여 초기(草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교하기를, ‘유생과 무사는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유생 가운데 제주인(濟州人)은 특별히 시권을 평가하게 하고, 무사(武士)도 마땅히 이 예를 써서, 이번에 제소(諸所)에서 단자를 올린 것 가운데 제주(濟州) 무사는 몇 인인지, 입격한 사람은 몇 인인지 즉시 초기(草記)하라. 만일 올라와서 아직 입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양과(兩科)의 각시(各試)인 소포(小布)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유엽전(柳葉箭)에서 일순하게 하여, 일중(一中) 이상 입격인(入格人)을 초기(草記)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신의 경우에는 처음에 제주 무사를 단자로 올린 일이 없고, 또한 다른 소에서 이래(移來)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취하게 하지 못한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一日 己卯

- 洪仁浩, 以謁聖武二所試官意啓曰, 今日平明開場, 鐵箭試取草記批旨內, 儒武, 何異? 儒生之濟州人, 別爲考券, 武士, 亦當用此例, 今番諸所呈單之濟州武士爲幾人, 而入格爲幾人乎? 卽爲草記. 如有上來而未入格者, 兩科各試, 小布一巡, 柳葉箭一巡, 一中以上入格人, 草記可也事, 命下矣. 本所初無一人之來呈單子者, 又無他所移來之人, 故不得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1일(기묘)

- 제주(濟州) 무거자(武擧子)의 입격(入格)에 관한 홍인호(洪仁浩)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알성무(謁聖武)의 이소(二所)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오늘 해가 뜰 무렵에 개장(開場)하여 철전(鐵箭) 시취(試取)의 초기(草記) 비지(批旨) 안에, ‘유생과 무사는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유생(儒生) 가운데 제주인(濟州人)은 특별히 시관을 평가하게 하고, 무사(武士)도 마땅히 이 예를 써서, 이번 제소(諸所)에서 단자를 올린 것 가운데 제주(濟州) 무사가 몇 인인지, 입격(入格)은 몇 인인지 즉시 초기(草記)를 작성하고 만일 올라와서 아직 입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양과(兩科) 각시(各試)인 소포(小布)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유엽전(柳葉箭)에서 일순하게 하여, 일중(一中) 이상 입격인(入格人)은 초기(草記)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본소(本所)에는 처음에 일인(一人)이 올라와서 단자(單子)를 올린 것이 있고, 또한 다른 소에서 이래(移來)한 사람은 없으므로, 시취하게 하지 못한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一日 己卯

- 李勉兢, 以庭試武一所試官意啓曰, 以謁聖武二所鐵箭試取草記, 傳曰, 儒武, 何異? 儒生之濟州人, 別爲考券, 武士, 亦當用此例, 今番諸所呈單之濟州武士爲幾人, 而入格爲幾人乎? 卽爲草記. 如有上來而未入格者, 兩科各試, 小布一巡, 柳葉箭一巡, 一中以上入格人, 草記可也事, 傳教矣. 臣所元無濟州武士掛單者, 不得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1일(기묘)

- 제주(濟州) 무거자(武擧子)의 입격(入格)에 관한 이면공(李勉兢)의 계
- 이면공(李勉兢)이 정시무(庭試武)⁴³³ 일소(一所)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알성무 이소(二所)의 철전(鐵箭) 시취(試取)를 초기(草記)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교하기를, ‘유생과 무사는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유생 가운데 제주인(濟州人)은 특별히 시관을 평가하게 하고, 무사(武士)도 마땅히 이 예를 써서 이번 에 제소(諸所)에서 올린 단자에, 제주(濟州) 무사는 몇 인인지, 입격은 몇 인인지 즉시 초기를 작성하라. 만일 올라와서 아직 입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양과(兩科)의 각시(各試)인 소포(小布)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유엽전(柳葉箭)에서 일순하게 하여, 일중(一中) 이상의 입격인은 초기(草記)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신의 경우에는 원래 제주 무사를 단망으로 건 것[掛單]이 없어서 시취하지 못한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거자.

433) 정시무(庭試武): 정시무과(庭試武科).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던 무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二日 庚辰

- 林蓍喆, 以庭試武一所試官意啓曰, 濟州閑良高宅信, 自謁聖二所, 移來臣所, 故依傳教柳葉箭貫革一巡, 小布一巡試射, 俱未得中矣. 還送謁聖二所之意, 敢啓. 傳曰, 二所如未入格, 更送庭試二所試取, 又或未入格, 問其地處, 差定禁旅, 期於明年慶科參榜事, 令兵判知悉,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2일(경진)

-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의 무거(武擧)에 관한 임시철(林蓍喆)의 계
- 임시철(林蓍喆)이 정시무(庭試武) 일소(一所)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은 알성(謁聖) 이소(二所)에서 신소(臣所)에 이래(移來)했으므로 전교(傳教)에 따라 유엽전(柳葉箭) 관혁(貫革)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소포(小布)에서 일순하게 하여 시사(試射)하였으나, 모두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알성 이소로 보내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소에서 만일 입격하지 못했다면 다시 정시 이소로 보내어 시취(試取)하게 하고, 또 혹 입격하지 못하면 그 지처(地處)를 묻고서 금여(禁旅)로 차정(差定)하게 하여, 기어이 내년에는 경과(慶科)⁴³⁴에서 참방(參榜)하는 일을 병판(兵判)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고택신, 무거.

434) 경과(慶科):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는 과거.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二日 庚辰

- 林蓍喆, 以謁聖武二所試官意啓曰, 濟州閑良高宅信, 今自庭試一所, 移送臣所, 故依傳教柳葉箭貫革一巡, 小布一巡試射, 而俱未得中矣. 移送庭試二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2일(경진)

-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의 정시(庭試) 이소(二所) 이송(移送)에 관한 임시철(林蓍喆)의 계
- 임시철(林蓍喆)이 알성무(謁聖武) 이소(二所)의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이 지금 정시(庭試) 일소(一所)에서 신소(臣所)로 이송(移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傳敎)에 따라 유엽전(柳葉箭) 관혁(貫革)에서 일순(一巡)으로, 소포(小布)에서 일순으로 시사(試射)하였으나, 모두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정시 이소로 이송(移送)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고택신, 정시, 이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二日 庚辰

- 李勉兢, 以庭試武二所試官意啓曰, 謁聖武二所濟州閑良高宅信, 柳葉箭小布, 俱未得中草記, 傳曰, 二所如未入格, 更送庭試二所試所, 又或未入格, 問其地處, 差定禁旅, 期於明年慶科參榜事, 令兵判知悉可也事, 命下矣. 依傳教, 自謁聖武二所, 移送臣所, 柳葉箭貫革一巡, 小布一巡, 更爲試取, 俱未得中, 故起送兵曹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2일(경진)

-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의 정시(庭試) 이소(二所)에서 시취(試取)하는 건에 대한 이면금(李勉兢)의 계
- 이면금(李勉兢)이 정시무(庭試武) 이소(二所) 시관(試官)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알성무(謁聖武) 이소에서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이 유엽전(柳葉箭)과 소포(小布)에서 아직 적중하지 못했다고 초기(草記)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소에서 만일 입격하지 못하면, 다시 정시(庭試) 이소의 시소(試所)로 보냈다. 또 혹 입격하지 못하면, 그 지처(地處)를 묻고서, 금여(禁旅)로 차정하고, 기어이 내년에는 경과(慶科)에서 참방(參榜)하게 할 일로 병판에서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전교(傳教)에 따라서 알성무(謁聖武) 이소에서 신소(臣所)로 이송(移送)하여 유엽전(柳葉箭) 관혁(貫革)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소포(小布)에서 일순하게 하여, 다시 시취(試取)했는데도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조(兵曹)로 기송(起送)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합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고택신, 정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二日 庚辰

- 李勉兢, 以兵曹言啓曰, 庭試武一所草記, 濟州閑良高宅信, 柳葉箭貫革一巡, 小布一巡, 俱未得中, 還送謁聖二所事, 傳曰, 二所又未入格, 更送庭試二所試取, 又或未入格, 問其地處, 差定禁旅, 期於明年慶科參榜事, 令兵判知悉可也事, 命下矣. 高宅信, 謁聖二所及庭試二所試取時, 俱未入格, 故招問地處, 則其父榮冠, 時帶御營哨官云. 既是將官子枝, 禁旅口傳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渠是重溟絕海之人, 卿於每朔朔試射或宣傳官射會時試, 小布及柳葉箭二中, 則草記付初試, 三中則直赴殿試之意, 草記捧承傳,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2일(경진)

-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의 시취(試取)하는 건에 대한 이면공(李勉兢)의 계
- 이면공(李勉兢)이 병조(兵曹)의 말로써 아뢰기를, “정시무(庭試武) 일소(一所)의 초기(草記)에서, 제주(濟州) 한량 고택신(高宅信)이 유엽전(柳葉箭) 관혁(貫革)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소포(小布)에서 일순하게 하고, 모두 적중하지 못하여, 도로 알성(謁聖) 이소(二所)로 보내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소에도 또 입격(入格)하지 못해서, 다시 정시(庭試) 이소에서 시취(試取)하게 해서, 또 혹 입격하지 못하면 그 지처(地處)를 묻고서 금여(禁旅)로 차정하게 하고, 기어이 내년에는 경과(慶科)에서 참방(參榜)하게 할 일을 병판에게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하였습니다. 고택신은 알성 이소와 정시 이소에서 시취했는데도 모두 입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처를 초문(招問)하니, 그의 아버지 영관(榮冠)은 당시 어영(御營) 초관(哨官) 직무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장관(將官)의 자손을 금여로 구전(口傳)하여 들이라는 뜻을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저 사람은 중명절해(重溟絕海)의 사람으로, 경(卿)은 매달 삭시사(朔試射)⁴³⁵⁾에서, 혹은 선전관사회(宣傳官射會)⁴³⁶⁾ 때 시험하여, 소포와 유엽전에서 이중(二中) 하면 초기(草記)에 초시(初試)로 덧붙이고, 삼중(三中) 하면 전시(殿試)

435) 삭시사(朔試射): 삭시(朔試). 조선시대에, 매달 초하룻날에 열었던 궁술 시험. 주로 당하(堂下)의 문관과 일반 무관이 궁술을 겨루었으며 이따금 당상(堂上)의 문관을 위한 시험도 열었음.

436) 선전관사회(宣傳官射會): 조선시대 선전관(宣傳官)에게 매달 활쏘기와 병서(兵書)를 시험하던 모임. 활쏘기는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舞)로써 행하고, 병서는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진도(陣圖)를 강(講)하여 시험하는데, 성적에 따라 상벌을 가하였음.

에 직부(直赴)하게 하는 뜻을 초기로 작성하여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고택신.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二月 二十六日 甲申

- 傳于徐榮輔曰, 昨日武舉子年八十七十人試取入格十九人, 八道皆爲之, 極爲奇喜, 何可例付於殿試試取乎? 直赴榜目之下, 八十者康載衡, 忠壯將單付, 七十人, 實僉知擬入. 如以偕老加資者, 同知擬入, 皆於再明日新恩政事舉行, 追後待令一人, 如或入格, 亦依此例爲之事, 分付. 下去時, 依北道·耽羅舉子例, 令沿路各邑, 給刷馬, 下去後, 令道臣給宴需, 使之張樂遊街事, 令廟堂行會.

❖ 정조 18년(1794) 갑인년 2월 26일(갑신)

- 탐라(耽羅) 거자(舉子)의 예(例)에 관한 서영보(徐榮輔)의 계

- 서영보(徐榮輔)에게 말하기를, “어제 무거자(武舉子)의 나이 80, 70인 사람들을 시취(試取)했더니, 입격한 사람 19인은 팔도(八道)에서 다 한 것이어서 매우 기쁜 일이다. 어떻게 전례에 따라 전시(殿試)에서 시취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직부(直赴)한 방목(榜目)을 내렸는데, 80인 중에는 강재형(康載衡)을 충장장(忠壯將)으로 단부(單付)하고, 70인 중에는 실첨지(實僉知)⁴³⁷⁾로 의입(擬入)⁴³⁸⁾하라. 만일 해로(偕老)하여 가자(加資)한 사람이 있다면, 동지(同知)⁴³⁹⁾로 의입하라. 모두 재명일(再明日) 신은정사(新恩政事)에서 거행하고, 추후에 1인을 대령(待令)하라. 만일 혹 입격하면 또 이 예에 따라 할 일로 분부하라. 하거(下去)할 때, 북도(北道)와 탐라(耽羅) 거자(舉子)의 예에 따라 연로 각 고을로 하여금 쇄마(刷馬)를 주게 하고, 하거(下去)한 뒤에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연수(宴需)를 주게 하고, 그로 하여금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누비게 할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행회(行會)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거자례.

437) 첨지(僉知): 명확한 위치가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실첨지(實僉知)는 실제로 일하는 명예직 같은 것으로 보임.

438) 의입(擬入): 후보자로 추천하여 올림.

439) 동지(同知): 조선시대에, 중추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一日 戊子

- 以濟州御史沈樂洙狀啓, 受宴老人開錄事, 傳于李鼎德曰, 老人受宴者, 依例加資, 今番壽職, 當爲加資者, 亦爲下批, 如是則八十以上, 當爲疊資, 依此知悉. 下批此意, 回諭于御史, 而如有未入於此狀本者, 卽爲修啓, 七十以上偕老者, 亦爲區別修啓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1일(무자)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노인 수연(受宴)에 관한 장계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연로인(宴老人)을 개록(開錄)한 일’에 대해서 받고서, 이정덕(李鼎德)에게 전교하기를, “노인을 수연(受宴)하는 것은 전례에 따라 가자(加資)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수직(壽職)하고 마땅히 가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비(下批)⁴⁴⁰하였다. 이와 같이 80 이상은 마땅히 중첩되게 가자해야 하니, 이에 따라 알게 하고 이러한 뜻을 하비하게 하고, 어사에게 회유(回諭)하라. 그리고 만일 이 장본(狀本)에 들어있지 않으면 즉시 수계(修啓)하고, 70 이상 해로(偕老)한 사람도 구별(區別)하여 수계하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수연.

440) 하비(下批): ① 임금이 신하의 올린 글이나 전조(銓曹)의 관리 임용에 대하여 그 비답(批答)을 내리던 일. ② 삼망(三望)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하던 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以濟州御史沈樂洙狀啓，綸音頒布，文武試才定行，諸般舉行形止，復命時當爲條列書啓事，傳于李勉兢曰，爾行利涉，民情恃以爲慰，大抵言語文字，猶能感人若是耶？諸般弊端，便宜釐革，俾島民得以樂生安業，設倉一款，許令廟堂稟處，雖非船粟，足可濟活，則陸民之賴而息肩，亦甚幸也。然此時守宰，若付生手，何以弛宵旰遠顧重溟之念乎？以爾陞拜牧使，除朝辭察任，政官卽爲牌招，開政下批，文試試券，待上來科次下送，而島中人士，咸願建閣妥奉御題，爾既不煩民力而營始云，入格試券魁作，令外閣印送，此意竝須知悉。今番慶科，以廣慶之意，問本島儒武上來者，欲爲別試矣。只有閑良一人，屢試未能入格，特付禁旅，輪直殿廊，量給料米，使之更觀來年慶科，武舉人賜第者與文試入格人趙明春上送，以爲同時唱名之地，爾今陞拜，所佩密符，以前牧使祇受者仍佩，俾除奉命使行往來廚傳之弊，前牧使罪狀，觀於爾之論列，益知其所不知，朝廷之差送牧守，撫摩民人，意在於分憂，則渠亦人耳，焉敢若是之不畏慎乎？調賑之政，無狀尤莫甚，爾所謂事事不誠，件件無實云者，誠着題，無論邂逅與否，捐瘠之夥然，看來驚心，又無論謬例有無，賑口之虛錄，是可忍乎？且況爲島民除弊條件中最先頒令者，卽御極初鑄貢事也。其中切大全鰓之永除，其時下教果何如，而渠敢托以用於京中求請，不但勒徵大品，乃求無穴之鰓，致此無告之籲天無從者，寧不痛惡？外此雜犯，猶屬餘事，前牧使李喆運，待其拿來，令該府，爲先除尋常嚴刑取招，期於照法嚴繩，島中校吏之助虐剝民之類，爾其大張威儀，會大小民人，事關軍政者，回示嚴棍，事關民情者，別般嚴刑，竝卽照法重治，爾將此意，宣布島中。梁哥士人事，雖曰稱冤，不爲無理，謀陷不可證成云，而與臺臣，既有隨問強答之，則不可以皆非虛言恕其罪，爾其更加嚴處，昨歲饑荒，殿屎如許，既聞之，其若諉罪於無狀之牧守，則其恥甚於罪歲，大抵牧守之不得其人，卽亦朝廷之責也。爾其就填壑最多處，聚集孤兒寡妻，設壇操文以酹之，舉行後形止狀聞，歲功之成，多在於人力之勤勵，見今土脈融解，東作將始，殫誠勸課，盡力畎畝，俾來牟有萬億及秭之喜事，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서계(書啓)에 대한 전교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윤음(綸音)을 반포(頒布)하고, 문무(文武) 시재(試才)를 정행(定行)하고, 제반(諸般)의 거행(舉行) 형지(形止)를 복명

(復命)할 때 마땅히 조례(條列)를 서계(書啓)한 일'에 대하여, 이면공(李勉兢)에게 전교하기를, “네가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 대체로 말과 글이 오히려 이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폐단은 편리한 대로 바로잡아서 섬에 사는 백성들이 삶을 즐기고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도록 하라. 창고를 옮기는 문제는 묘당이 품쳐할 것이다. 배로 실어 나르는 곡식이 아니더라도 구제하여 살릴 수만 있다면 육지의 백성들이 그에 힘입어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니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 수령을 만일 서툰 사람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멀리 큰 바다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밤낮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풀어 주겠는가. 너를 승진시켜 목사로 임명할 것이니 조정에 와서 행하는 사은(謝恩)은 그만두고 직무를 살피라. 문과의 시권(試券)은 올라오기를 기다려 성적 순위를 매겨서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전각(殿閣)을 지어서 어제(御題)를 봉안(奉安)하기를 원하고 네가 벌써 백성들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 집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니, 합격한 시권 가운데 장원한 것은 외각(外閣)에 명하여 인쇄해 보내도록 하겠다. 이 뜻을 모두 잘 알도록 하라. 이번 경과(慶科)에서는 경사를 널리 축하하는 의도에서 본도에서 올라온 선비와 무사가 있는지를 물어서 별시(別試)를 보이려고 하였는데 단지 한량(閑良) 한 사람만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금군(禁軍)으로 임명하여 돌려가며 전랑(殿廊)을 수직하게 하고 적당히 요미(料米)를 주며 내년의 경과를 다시 보게 하겠다. 무과에 응시한 사람으로서 급제를 받은 사람과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 봄에 시기를 맞추어 올려 보내서 동시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하라. 네가 이제 목사로 승진하여 임명되었으니 휴대하는 밀부(密符)는 전 목사가 받았던 것을 그대로 휴대하여, 왕명을 받들고 왕래하는 사행(使行)의 뒤치다꺼리에 의한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라. 전 목사의 죄상은 네가 열거하여 파진 것을 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조정에서 수령을 임명해 보내서 백성들을 무마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을 나누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거늘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이처럼 두려워하고 삼가지 않았는가. 기민을 먹이는 행정은 더더욱 형편없기 짝이 없다. 네가 이른바 일마다 성실하지 못하고 문제마다 진실이 없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꼭 맞는 죄목이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거나 논할 것 없이 굶어 죽은 사람이 그다지도 많다는 내용을 보고는 내심 깜짝 놀랐으며, 더욱이 잘못된 관례가 있거나 없거나는 따질 것 없이 기민을 먹인 숫자를 허위로 기록한 일을 차마 할 수가 있는가. 더구나 섬의 백성들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조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왕위에 오른 최초에 공물

(貢物)을 면제하는 일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아주 큰 전복을 영원히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하교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그가 감히 서울에서 요구하는 데 쓸 것이라고 핑계하고는 강제로 큰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전복까지도 요구하여, 이 호소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어찌 지극히 밋지 않겠는가. 이 밖의 잡다한 범죄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속한다. 전 목사 이철운(李喆運)은 잡아 오기를 기다려 해당 부로 하여금 우선 일반적인 범죄는 내버려 두고 엄하게 형벌하여 공초(供招)를 받아서 기필코 법을 따져 엄하게 처벌하겠다. 섬의 군교(軍校)와 아전으로서 포악한 짓을 도와 백성들을 들볶은 무리들은 네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대소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 군정(軍政)에 관련된 자는 엄하게 곤장을 쳐서 조리를 돌리고 민정(民情)에 관련된 자는 특별히 엄하게 형벌하여 모두 법을 따져 무겁게 다스리라. 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섬 안에 선포하라. 양가(梁哥) 사인(士人)에 관한 일은 ‘억울함은 말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모함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대신(臺臣)과 별써 질문에 따라 억지로 대답한 일이 있으니 모두 헛말이 아니라고 하여 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네가 다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처리하라. 작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저려하다는 것을 이미 들었는데 만일 그 죄를 형편없는 목사에게만 넘긴다면 흉년만을 죄로 여기는 것보다 더 심한 부끄러움이 된다. 대체로 목사를 책임자로 뽑지 못한 것도 곧 조정의 책임이다. 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곳에 가서 고아와 과부들을 모아서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제문(祭文)을 읽으면서 위령제를 지낸 다음 그 사실의 전말을 장문(狀聞)하라.⁴⁴¹⁾ 세공(歲功)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것이 인력(人力)의 근려(勤勵)에 있는 것이다. 지금 보건대, 토맥(土脈)이 점차 무너져 내려, 농사철[東作]이 시작되니, 정성을 다하여 농사를 권장하고, 견묘(畎畝: 農耕)에 진력(盡力)하도록 하라. 더하여 내모(來牟: 밀과 보리)는 억만년을 넘어 천억 년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441)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 3월 2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以濟州御史沈樂洙狀啓, 前濟州牧使李喆運, 諸船罪狀按覈馳啓事, 傳于洪仁浩曰, 無狀若此, 此狀本下廟堂, 時原任大臣輪示後, 仍下該府, 以爲發問目取招之地.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죄상 취초(取招)에 관한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전 제주목사 이철운(李喆運)의 제반(諸船) 죄상(罪狀)을 안핵(按覈)하여 치계(馳啓)한 일’에 대하여 홍인호(洪仁浩)에게 전교하기를, “죄상이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 장본(狀本)을 묘당에 내리고, 당시 원임대신(原任大臣)에게 윤시(輪示)한 뒤에, 그대로 해당 부에 내려, 문목(問目)을 내어 취초(取招)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제주목사, 이철운.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以濟州御史沈樂洙狀啓，設賑時監色等，待按覈並當捧供以聞事，傳于洪仁浩曰，此狀啓，一體輪示後，付之該府，發問目取招。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설진(設賑) 시 감색(監色) 안핵(按覈)과 문초(問招)하는 건에 대한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설진(設賑)시 감색(監色) 등은 안핵(按覈)을 기다렸다가 모두 마땅히 봉공(捧供)하여 보고한 일’에 대하여 홍인호(洪仁浩)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계 일체(一體)를 윤시(輪示)한 뒤에 해당 부에 붙여서, 문목(問目)을 내서 취초(取招)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설진, 감색.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以濟州御史沈樂洙狀啓, 武士試才入格者開錄馳啓事, 傳于李羽晉曰, 今番則卿既仍任爲牧使矣, 直赴會試之類, 何必上送, 以貽往來之弊乎? 以柳葉箭一巡, 更爲試取, 二分以上入格人, 一竝直赴殿試, 以其姓名後錄登聞事, 下諭于牧使.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무사(武士) 시재(試才)에 입격(入格)한 자의 개록(開錄)에 관한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무사(武士) 시재(試才)에 입격(入格)한 자를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한 일’에 대하여, 이우진(李羽晉)에게 전교하기를, “이번에 경(卿)을 그대로 목사를 맡게 하였도다. 곧바로 회시(會試)에 응하는 무리는 어떻게 반드시 올라오게 해서 그저 왕래하는 폐단만 끼칠 수 있겠는가? 유엽전(柳葉箭)에서 일순(一巡)하게 하고, 다시 시취(試取)하게 해서, 이분(二分)⁴⁴²⁾ 이상 입격인(入格人)은 한결같이 모두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고, 그 성명(姓名)을 후록(後錄)하여 등문(登聞)할 일을 목사에게 하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사, 시재, 입격, 개록.

442) 이분(二分): 시취(試取)에서 통(通)을 나누어 주는 것 가운데 하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以濟州御史沈樂洙狀啓, 三邑饑民接濟之策論理狀聞事, 傳于李勉兢曰, 爲島民之頷頤, 則陸民轉輸之勞, 有不暇顧恤, 今見爾狀本, 雖不船粟, 猶可排比云, 悉心接濟, 無負特畀之意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제주(濟州) 세 고을의 기민(饑民)을 접제(接濟)에 관한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세 고을의 기민(饑民)을 접제(接濟)⁴⁴³할 대책을 논리하여 장문(狀聞)한 일’에 대해, 이면금(李勉兢)에게 전교하기를, “도민(島民)들이 굶주리게 되었으니, 육민(陸民)의 전수(轉輸)하는 노고에도 불쌍히 여겨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이 장본(狀本)을 보니, 비록 배로 곡식을 실어 나르지 않더라도 배비(排比)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마음에 있는 대로 접제(接濟)하여, 특별히 제수하는 뜻에 부담을 지지 않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기민, 접제.

443) 접제(接濟):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차려서 살아갈 방도를 세움.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有政. 吏批, 判書金思穆, 參判黃昇源, 參議金履翼, 右副承旨李羽晉進. 啓曰, 濟州牧使沈樂洙, 今日政當爲下批, 而時無加資之命, 何以爲之? 敢稟. 傳曰, 依例加資,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가자(加資)를 논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서 판서 김사목(金思穆), 참판 황승원(黃昇源), 참의 김이익(金履翼), 우부승지 이우진(李羽晉)이 나와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는 오늘 정사에서 마땅히 하비(下批)해야 합니다. 당시 가자(加資)하라는 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례에 따라 가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가자.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再政. 吏批, 以俞漢雋爲金浦郡守, 林性運爲南平縣監, 顯隆園令金魯敬, 濟用主簿洪後榮相換, 濟州牧使單沈樂洙, 今加通政加資事承傳, 以申夔相爲宣陵直長.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심낙수(沈樂洙)를 단망(單望)함
- 다시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서, 유한준(兪漢雋)을 김포군수(金浦郡守)로 삼고, 임성운(林性運)을 남평현감(南平縣監)으로 삼고, 형릉원령(顯隆園令) 김노경(金魯敬)과 지영주부(濟用主簿) 홍후영(洪後榮)을 상환(相換)하고,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심낙수(沈樂洙)를 단망(單望)하고, 지금 통정(通政)에 가자하고 가자한 일을 승전(承傳)하고, 신기상(申夔相)을 선릉직장(宣陵直長)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단망.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日 己丑

- 甲寅三月初二日未時，上御重熙堂。軍士房承旨・同副承旨入侍時，左承旨李勉兢，同副承旨李鼎德，假注書李弘達，記注官金良倜・承膺祚，以次進伏訖。上曰，今番老人加資，寔出於廣慶尊年之義也。吏兵曹諸吏輩，以此酬應，不得少歇，日事督急，廣慶之意，不可如是迫促矣，加資下批，過科擧後爲之，使之少須休息，可也。上教鼎德，書濟州御史狀啓，判付後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일(기축)

-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장계에 관한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함

- 갑인년 3월 초2일 미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군사방(軍士房) 승지・동부승지가 입시(入侍)했을 때, 좌승지 이만공(李勉兢), 동부승지 이정덕(李鼎德), 가주서 이홍달(李弘達),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등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노인(老人) 가자(加資)는 실로 광경(廣慶)에서 나이를 높이는 도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조와 병조의 제이배(諸吏輩)들은 이에 응대하는 것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날로 일이 독급(督急)하여 광경의 뜻을 이와 같이 박촉(迫促)할 수 없다. 가자(加資)하고 하비(下批)하는 것은, 과거(科擧)가 지난 뒤에 하고, 그로 하여금 조금도 모름지기 휴식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정덕(鼎德)에게 교시하고, 제주어사(濟州御史) 장계(狀啓)를 쓰게 하고, 판부(判付) 한 뒤에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承史)가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어사, 장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三日 庚寅

- 甲寅三月初三日巳時，上御重熙堂。…… 勉兢曰，…… 上曰，依爲之。如濟州等別遣御史試取，直赴殿試者，亦爲成給帖文，可也。【出舉條】 仍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3일(경인)

□ 제주(濟州) 시취(試取)에 어사 파견을 논의함

- 갑인년 3월 초3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이면공(李勉兢)이 아뢰기를,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만일 제주(濟州) 등에 특별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시취(試取)하게 하면,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는 것도 체문[帖文]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舉條)를 냈】 그대로 물러나라고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시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六日 癸巳

- 李晉秀, 以司饗院監膳提調意啓曰, 濟州牧所封二月朔進上, 今日來到本院, 而開櫝看品, 則各殿所封物種中, 青橘元數五百十箇內, 腐傷至於一百二十箇之多, 雖是越海之物, 莫重進上, 循例捧入, 極涉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入.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6일(계사)

- 제주목(濟州牧)에서 소봉(所封)한 2월삭(二月朔) 청귤(靑橘) 진상(進上)에 관한 사옹원의 계
- 이진수(李晉秀)가 사옹원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소봉(所封)한 2월삭(二月朔) 진상(進上)이 오늘 사옹원에 올라와서, 궤를 열고 간품(看品)하니, 각전(各殿)에 소봉(所封)한 물종(物種) 가운데, 청귤(靑橘)의 원수(元數) 510개 안에, 썩고 상한 것이 120개가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비록 이것이 바다를 건너온 물종이라고 하더라도 막중한 진상이어서 순례(循例)로 봉입(捧入)하였는데, 매우 미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봉입(捧入)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소봉, 2월삭, 청귤, 진상.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七日 甲午

- 徐榮輔, 以備邊司言啓曰, 濟州御史沈樂洙狀啓, 設倉一款, 許令廟堂稟處事, 命下矣. 取見其狀本, 則以爲濟民倉, 如得移倉於康津·海南等地, 使島民往來受納, 各其官主管與受, 亦令道臣摠察, 或先納藿而受穀, 或先受穀而納藿, 則自朝天·禾北等浦, 至南塘·古達島等浦, 大洋船路, 一直相對, 往來之蒿水船人, 皆爲慣熟, 無致敗之慮, 有朝發夕至之喜, 而麥後預慮之事, 穀數不必多劃, 康津·海南兩邑中留庫穀折米, 限二千石, 許令濟州等三邑, 量其時緩急, 從多少受去, 仍爲納藿, 則似爲便當爲辭矣. 涼藿船運, 果是島民之苦瘼, 御史枚舉島情, 有此陳聞, 則固當依其請許施, 而第念當初設置羅倉於兩湖之交, 均俵於湖西·南諸邑者, 蓋爲發賣作穀之際, 商旅湊集, 區處不難之致也. 年前朝家, 曲軫島民涉險之苦, 移設羅州之後, 湖西諸州, 遠不得舉論, 只於羅州傍近, 竝皆分俵, 而諸邑多不願受, 且其程途稍遠, 商旅罕至, 畢竟處置, 比諸羅舖, 已不無難易之別. 今若更移於康津·海南, 則視諸羅州, 又加遠矣, 其所掣礙之端, 不言可想, 而遠外事情, 猶未知其如何, 令道臣詳細探問, 更爲登聞後, 稟處,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7일(갑오)

□ 제민창(濟民倉)의 이전(移轉)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서영보(徐榮輔)가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설창(設倉)을 일관(一款)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는 것을 허락한 일’을 명하였습시다. 그 장본(狀本)을 취해서 보니, 씨 제민창(濟民倉)으로, 만일 얻어서 강진(康津)·해남(海南) 등지로 이창(移倉)하면, 도민(島民)으로 하여금 와서 수납(受納)해 가서, 각기 관(官)에서 주관하여 주게 하는 것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통찰(摠察)하게 하고, 혹 먼저 납곽(納藿)하여 수곡(受穀)하거나, 혹 먼저 수곡하여 납곽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천포(朝天浦)나 화북포(禾北浦) 등에서부터 남당도(南塘島)나 고달도(古達島) 등의 포구까지는 큰 바다로 나가는 뱃길이 일직선으로 마주 대하고 있으므로 사공이나 뱃사람들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막론하고 모두 물길에 익숙하여, 침몰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곡식이 도착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의 곡식을 운송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를 건너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보리가 익은 뒤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일은 곡식의 수량을 많이 떼어 줄 필요

는 없습니다. 강진과 해남 두 고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곡식을 절반 정도인 2천 섬 가량을 떼어 제주 등 세 고을에 현재의 완급을 헤아려 적당히 나누어 받아 가게 하고 이어서 미역을 바치게 하면 편리할 듯합니다.⁴⁴⁴⁾ 양태와 미역[涼藳]을 배로 운반하는 것은 과히 도민의 고막(苦瘼)입니다. 어사(御史)가 매거(枚擧)에 도정(島情)을 이와 같이 진문(陳聞)한 것이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그 청에 따라 허시(許施)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하건대 당초에는 양호(兩湖)의 교차 지점에 나창(羅倉)을 설치하여 호서·호남 세 고을에 골고루 나누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곡(作穀)을 발매(發賣)할 때에 상려(商旅)가 모여들어서 구처(區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연전(年前)에 조가(朝家)에서 도민들이 험한 곳을 건너는 고통을 곡진(曲軫)하였습니다. 나주(羅州)에 이설한 뒤에 호서 제읍(諸邑)은 멀어서 거론(學論)하지 못했고, 다만 나주 방근(傍近)은 모두 다 골고루 나누어주어서 제읍(諸邑)이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길이 조금 멀어서, 상려가 드물게 옵니다. 결과적으로 조치한 것은 여러 나포(羅鋪)와 견주어, 이미 어렵고 쉬운 구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강진·해남으로 옮기면 여러 나주에서 볼 때 또 더 멀어집니다, 그 구애(掣礙)되는 바의 단서는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외방의 사정은 아직 그 여하(如何)를 알지 못한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탐문하게 하여 다시 등문(登聞)한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제민창.

444)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 3월 2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八日 乙未

○濟州御史沈樂洙疏曰，伏以，臣猥膺海外巡撫之命，恐負委寄，日夜兢慄，隨事啓聞，阻風久淹，識短見淺，只俟罪譴，而抑有愚意之不敢不一陳者。臣竊見湖南，國之根本，而耽羅一島，爲湖南蔽，島中之產馬貢橘，固爲利用，而有大於此者，南紀瀛海，東接大坂·江戶，西近福建·江南，島爲之介，而東西順風，不過一便[片]帆五六日之程，高麗三別抄，叛據島中，金方慶將兵來討，中洋遇風，仰天太息曰，國家安危，在此一舉，方慶間世名將，彈丸小島一時反賊，早晚可滅，而至謂安危一舉者，深謨遠略，蓋慮其不卽拔本，漸至盤固，捷通外國，駕泛嚮導，休卒調船，一帆直擣，則湖南非我有也。洪惟我朝惠澤威化，積洽島中，勝國時反側之憂，自底懷服，繕城修械，布置鎮堡，規模制度，肅然整暇，嘉靖間，海寇百餘艘侵掠，而全獲奏功，東來一船，不敢復近，國家宏遠之圖，收效於數百年之間，隱然爲湖南之一長城，壬辰之亂，數技賊兵，自嶺入湖，而烈將義旅，猶未收功，然國家之賴以中興，湖南一路之力，而湖南全安，賴此島幸無衝突也。朝廷知其然，擇置長吏，多用武臣之有謀略將才貯望之人，考見題名記，前後可數，不嫌險遠，爲官擇人，至先朝中年而皆然，邇來三四十年，常調武臣，每多充補，間除文吏，有不如武，前人之設施措置，方且纍然弊盡，島中官民之不相親，久矣。徵斂之門，名目漸繁，甚至於寸藁尺皮，賤賈貴賣，售利如商賈，民之視官長，常無愛畏之心，民不愛何以宣化，民不畏何以立威？陰雨之備，一置忘域，列鎮戰艦之載在邑誌者，今無片舸，器械之年久者，非但腐弊，吏校軍卒見其器，多有不知名者，一島軍摠，足爲一軍，而任其闕伍，充以老弱，金鼓坐作，渾然不省，此皆不擇吏之弊也。或謂環島石壁，天設險阻，船不利泊，毋患外寇，而禾北·朝天浦之外，水山·西歸·孳瑟·明月等浦，或有平港，或有沙州，容泊巨艦，非一二計，臣聞每歲風和，輒見龍驤大艦，掛着四五布帆，頻過南洋，或停纜汲水於牛島等數三里之間，過去未辨船，例報備局，而近寢不報，西歸·孳瑟外洋，卽大坂·福建互相通貨之要路，我國固邊之方，比西北尤重，臣嘗歷觀關北十州，會寧頗見修飭，亦少侵漁，蓋以地望頗重，顧念前途，稍重廉義，凡人常情，有必然者，此島之爲湖南要害，不啻重於平時互市之會寧，臣意濟州牧，擇遣武臣之以地望稱者，兩邑亦用有前程之年少武弁，懷民詰戎之方，庶幾得矣。先朝癸丑，御史沈聖希有啓，以濟州邈在海中，無所顧忌，多行不法，康津爲濟州門戶，請以侍從爲宰，常時廉察，許令直啓，其後五六年，相臣申奏施行，揭在康津衙閣，而因卽寢止，此則有拘體貌，事固難行，臣意該牧判官，擇送侍從之臣，營邑互有顧忌，亦尊體統，則宜有實效。聖朝之爲島民懷保，爲海防備禦者，未嘗不眷眷，哺以船粟，勸以騎射，繡衣按廉，釐弊開利者，前後非一，而凶年移粟，不足當於平歲之例懸，一番試藝，無所益於常時之拋棄，御史之

間, 有一二釐革, 歸帆纔發, 弊復如前, 所謂節目, 皆爲虛文, 一曝十寒, 未足爲喻, 朝廷之爲島民千百計, 皆不如選吏一事, 湖南藩蔽之爲國根本, 又非他州比也. 伏願勿以人廢言而採納焉. 臣不仕已十年, 中間西塞之赴官, 爲伸義分, 而屏廢之中, 忽承此命, 義在往役, 跼蹐冒膺, 本牧權察, 尤增惶懼, 越海之後, 刻日竣事, 而臣有宿病, 瘴濕爲祟, 外若肥健, 內實虛脫, 水陸驅馳, 精神消鑠, 海氣浸潤, 腳氣添症, 轉轉危劇, 已踰旬日, 島中多陰少晴, 陰霾則昏窒涔涔, 饑民呼訴, 糶倉簿記, 了無照察, 一直廢却, 身孤心弱, 念多自危, 孤燈聽潮, 歷數平生, 委身立朝, 無一報效, 忠孝全虧, 生不如死, 而誠恐千里海外, 生行死歸, 有累垂惻之聖念, 百回思念, 拭淚消腸. 伏乞聖明, 哀臣之情, 察臣之懇, 卽命差代, 俾臣歸死故山, 民邑之事, 亦無曠廢, 公私幸甚云云. 答曰, 省疏具悉. 苟欲擇倅, 爾當不讓於人, 言病雖如許, 眞所謂王事靡盬, 爾其努力按住, 疏中條件及狀本稟請, 令廟堂論理回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8일(을미)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상소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가 상소하기를, “엿드려서, 신(臣)이 외람되이 바다 밖을 순무(巡撫)하라는 명에 받아서, 말긴 뜻을 두려워하면서,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에 따라 계문(啓聞)하고 바람에 막힌 지가 오래되고, 또한 식단(識短)하고 견천(見淺)하여, 다만 죄를 기다리면서 우의(愚意)를 한 번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臣)이 가만히 보건대 호남(湖南)은 나라의 근본이고 탐라(耽羅) 한 섬은 호남의 방벽이 되고, 섬 안에서 생산되는 말과 공굴(貢橘)은 진실로 이롭게 쓰이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남쪽은 영해(瀛海)가 되고, 동쪽은 대판(大坂)과 접하고 서쪽은 복건(福建)·강남(江南)에 가까워, 섬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東風)이나 서풍(西風)이 순조로우면 한번 돛을 올리면 5, 6일의 노정에 불과합니다. 고려 때 삼별초(三別抄)가 반란을 일으켜 이 섬에 웅거하자 김방경(金方慶)이 토벌하러 가다가 바다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라의 안위(安危)가 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방경으로 말하면, 세상에 드문 명장(名將)이므로 작은 섬을 한때 웅거한 반적(反賊) 정도는 언제든지 멸할 수 있었으나, ‘나라의 안위가 이 한 번의 일에 달렸다.’라고 하였으니 깊고 원대한 책략은 대개 즉시 발본하지 않으면 점차 일반으로 단단해져서 문득 외국과 연통(連通)할 것

을 우려한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벼꾼 혜택이 누적되고 흡족하며 제도가 엄숙하였으므로 가정(嘉靖) 연간에 백여 척의 해구(海寇)가 침략하였으나 완전히 사로잡는 공을 세웠으며 동쪽에서 오는 배는 한 척도 다시는 가까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진왜란에 나라를 중흥(中興)한 것은 호남 지방의 힘이었으며 이 섬에는 다행스럽게도 충돌이 없었던 데에 힘을 입은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그러한 점을 알고 수령을 뽑는 데 있어 모략이 있는 무신(武臣)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래 30, 40년 동안 언제나 무신을 등용하여 매번 보충하는 때가 많았으며 간간이 문관을 임명하는 때도 있었으나 무신만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재물을 굶어 들이는 길의 명목이 점점 많아졌으며 심지어 한 치[寸] 정도의 미역이나 한 자[尺] 되는 가죽까지도 값이 쌀 때 샀다가 비싸게 팔아서 이문을 챙기는 행위가 마치 장사치와 같게 되니 백성들이 관장(官長) 보기를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없습니다. 비상시에 대한 대비는 한결같이 잊어버리니 온 섬 군사의 총수는 한 개 부대가 되기에 충분한데도 군사의 정원이 비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니, 이는 모두 수령을 책임자로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본래의 험한 석벽(石壁)이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외적의 침입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화북포(禾北浦)와 조천포(朝天浦) 이외 지역인 수산포(水山浦)·서귀포(西歸浦)·모슬포(募瑟浦)·명월포(明月浦) 등의 편편한 항구의 모래사장에는 큰 배를 정박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듣건대 해마다 바람이 잔잔할 때면 엄청나게 큰 배가 우도(牛島) 등 2, 3리(里) 사이에서 닻을 내리고 물을 길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분별할 수 없는 배가 나타나면 으레 비국에 보고하였으나 근래에는 중지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 관북(關北) 지방의 10주(州) 가운데 회령(會寧)이 제법 정사가 잘 되고 백성들의 재물을 굶어 들이는 행위도 적은데 이는 대체로 그 수령이 문벌과 인망(人望)이 자못 무거워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회령보다 더 중요한 요해지일 뿐만이 아니므로 신의 생각에는,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문벌과 명망이 알려진 무신(武臣)으로 뽑아 보내며 두 고을의 수령도 앞길이 환한 나이 젊은 무인을 임용하면 거의 잘될 것입니다. 선조(先朝) 계축년(1733)에 어사 심성희(沈聖希)가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는 관계로 불법(不法)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니 강진(康津)은 제주로 가는 문에 해당하는 만큼 시종(侍從)으로 수령을 삼아 언제나 염찰(廉察)하여 임금에게 직접 아뢰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으나, 그 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제주목의 판관(判官)을 시종신(侍從臣)으로 뽑아 보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거룩한 전하께서 섬의 백성들을 위하고 바다의 방어를 위하여 마음을 쓰지 않는 때가 없

어서 배로 곡식을 수송하여 먹여 주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장려하며 간혹 어사(御史)를 파견해 폐단을 바로 잡지만, 어사가 탄 배가 떠나자마자 폐단은 다시 종전과 같아지곤 합니다. 이른바 절목(節目)이라는 것도 모두 빈껍데기의 문서가 되고 마니, 섬 백성들을 위하는 계책으로는 수령을 제대로 뽑는 한 가지 일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여 그 말까지 폐하지 마십시오. 신이 쫓겨나 있던 중에 갑자기 이 명을 받고 의리에 따라 그곳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기에 조심스럽게 명을 받들었는데 본주의 목사로 발탁하여 임명한 데 대해서는 더욱 황송한 마음이 더하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뒤로 날짜를 한정하여 일을 마무리하였으나 전부터 앓던 병이 차츰 일어나고 각기병이 더 생겨나서 점점 심해진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을 호소하는데도 환곡을 저장한 창고의 문서를 전혀 살펴보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한 채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몸은 외롭고 마음은 약해져서 스스로 목숨에 대한 위태로운 마음이 많이 생겨나서 외로운 등불 아래에서 파도 소리를 듣노라면 진실로 살아서 왔다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신의 정상을 가엾게 여기어 곧바로 대신할 목사를 임명하여 신으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 죽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봐서 다 알고 있다. 진실로 수령을 가려 뽑으려 한다면 는 당연히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병이 이렇다고 말을 하지만 참으로 이른바 국가의 일을 위하여 실 겨를이 없는 것이니, 너는 노력하여 일을 살피도록 하라. 상소문에서 말한 문제와 장계(狀啓)에서 품청(稟請)한 내용은 묘당에게 사리를 따져 회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⁴⁴⁵⁾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445)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 3월 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十四日 辛丑

- 李益運,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沈樂洙疏本, 則以爲耽羅一島, 爲湖南藩蔽, 而邇來徵斂之間, 名目漸繁, 民視官長, 常無愛畏之心, 陰雨之備, 一置忘域, 此皆不擇吏之弊也. 臣意濟州牧, 擇遣武臣之以地望稱者, 兩邑亦用有前程之年少武弁, 懷民詰戎之方, 庶幾得矣. 該牧判官, 擇送侍從之臣, 營邑互有顧忌, 亦尊體統, 則宜有實效爲辭矣. 濟州一島, 遠在海外, 官不擇人, 民偏受害, 凡厥字牧之任, 尤宜慎簡, 而該牧之文武交差, 自有法意, 今不必專以武臣差遣, 且判官之得人與否, 亦不在於侍從, 官制有難隨時變通, 牧使則係是廟刻, 至於判官及兩邑守令, 此後勿拘顏私, 各別另擇事, 嚴飭銓曹, 何如? 傳曰, 牧使則廟刻, 其所擇差, 豈待更勉, 而判官, 間以侍從, 通融差遣, 無所不可, 兩邑守令, 有地處將來者, 時或擇差亦可, 提飭銓曹, 俾有實效, 今番回啓, 一竝後錄, 臚關下送繡衣處, 俾知用其言,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14일(신축)

□ 제주목사(濟州牧使)와 판관, 두 고을 수령 차견(差遣)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소본(疏本)을 즉시 보았더니, 곧 탐라(耽羅) 한 섬은 호남(湖南)의 울타리가 되는 데, 근래 재물을 굶어 들이는 길의 명목이 점점 많아졌으며, 백성들이 관장(官長) 보기를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없습니다. 비상시에 대한 대비는 한결같이 잊어버리니, 이는 모두 수령을 책임자로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제주목사를 문벌과 명망이 알려진 무신(武臣)으로 뽑아 보내고, 두 고을의 수령도 앞길이 환한 나이 젊은 무인을 임용하면 거의 잘될 것입니다. 제주목의 판관(判官)을 시종신(侍從臣)으로 뽑아 보내면 영읍(營邑)이 서로 고기(顧忌)하게 하는 것도 체통을 존중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주(濟州) 한 섬은 멀리 바다 밖에 있으니, 관원을 책임자로 뽑지 못하면 백성들이 두루 피해가 됩니다. 무릇 자목지임(字牧之任)⁴⁴⁶을 발굴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히 뽑아야 하고, 제주목사를 문무(文武)로 교차(交差)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뜻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다. 지금 오로지 무신을 차견하지 않으면

446) 자목지임(字牧之任): 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수령의 임무. 지방관의 임무. ② 수령 또는 지방관.

또한 판관을 적당한 사람을 얻느냐의 여부도 시종(侍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제(官制)는 수시로 변통(變通)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牧使)는 묘염(廟剡)⁴⁴⁷에 관계된 것이고, 판관과 두 고을 수령(守令)은 이후에 안면과 사정(私情)에 구애되지 말고, 각별하고 특별하게 택할 일로서 전조(銓曹)에 엄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목사는 묘염(廟剡)에서 그 소임에 맞게 택하여 차정하는 것이 어찌 더욱 힘쓴 것을 기다리겠는가? 또한 판관은 간혹 시종신으로 통융(通融)⁴⁴⁸하여 뽑아 보는 것도 할 수 없을 것이 없다. 두 고을 수령은 지체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더러 뽑아 임명하라고 명하는 것도 좋으니, 전조(銓曹)에 제척(提飭)하여, 실효가 있게 해야 한다. 이번에도 회계(回啓)하여, 한결같이 아울러 후록(後錄)하고, 등서(謄書)하여 보내어 수의(繡衣)에게 내려보내어, 알아서 그 말을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소본, 탐라, 제주.

447) 묘염(廟剡): 조선시대에, 벼슬에 알맞은 인재를 의정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이 모인 자리에서 추천하여 뽑던 일.

448) 통융(通融): 구별하지 않고 뒤섞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十四日 辛丑

○ 李益運,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沈樂洙狀啓, 則以爲場內禁耕, 設法甚嚴, 十所場之屯馬如雲吃草飲水, 蹄嚙馳逐, 無所防礙, 任其自在, 肥蕃又勝於飼養, 而中年以來, 農民以其糞踏之利於種穀, 間間耕播, 圍置木石, 以妨害穀, 故自官禁斷, 犯耕現發, 則從重徵穀, 以資監官之料, 乙未以後, 如法徵稅, 每年稅入, 通計十屯, 恰爲七八百石, 以此屬之官用, 而農民無田耕懇者, 已成恒業, 今若猝令嚴禁, 恐爲行不得之事, 所謂場稅穀, 竝給於各屯, 以資失馬代立之價, 優其給料, 專責牧馬, 羸縮亦令各其官檢察, 有妨於放馬處, 一切禁耕, 無所妨害之地, 竝與舊廢牧場, 略許耕懇, 則窮民耕業, 不至見失, 場馬牧養, 庶幾有益, 請令廟堂稟處矣. 牧場犯耕, 法禁本自至嚴, 則初不禁斷, 已極駭然. 徵稅官用, 尤不成說, 所當使之禁耕還牧, 而雖曰謬例, 行之已久, 猝令嚴禁, 恐爲行不得云者, 誠如御史狀啓, 其所論列, 允合兩便之道, 依狀請施行, 而更定界限, 嚴立節目, 使之報本司, 以爲永久遵行之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14일(신축)

□ 목장 안 경작 금지와 장세곡(場稅穀)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狀啓)를 즉시 보았더니, 목장 안에서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법으로 마련한 것이 매우 엄합니다. 십소장(十所場)의 둔마(屯馬)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드는데, 제설(蹄嚙)하고 치축(馳逐)하는 데 방해될 바가 없어서 자유롭게 그곳에 있으면서 비번(肥蕃)하고, 또 사양(飼養)하는데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년(中年) 이래 농민(農民)들이 그곳은 분답(糞踏)한 곳이니 씨를 뿌리면 이익이 난다고 하여, 간간히 경작하여 씨를 뿌리고 나무와 돌로 둘러 치고 곡식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관(官)에서 금단(禁斷)하고 범경(犯耕)한 것을 현발(現發)하면 중중(從重)하여 징곡(徵穀)하고 감관의糯米로 밀천을 삼았습니다. 을미년(1775) 이후 법대로 징세(徵稅)하여 매년 세입으로 십둔(十屯)을 통계하니, 거의 7, 8백 섬이 되어, 이것을 관용(官用)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밭도 없이 경작하여 개간하는 자가 이미 항업(恒業)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만약 갑자기 엄금의 령을 내리면 행동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소위 장세곡(場稅穀)⁴⁴⁹은 모두 각 둔(屯)에 주게 하고, 실마

(失馬)했을 때 대신 세우는 값의 물자로 쓰게 하고, 그 급료(給料)를 낮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목마(牧馬)를 책임 지우는 것입니다. 영축(贏縮)도 각기 관에서 검찰하게 하고, 방마처(放馬處)에 방애가 있으면 일체 금경(禁耕)하게 하는 것이 방해받는 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폐목장(舊廢牧場)과 더불어 경간(耕懇)을 약허(略許)하면 궁민(窮民)의 경업(耕業)을 잃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고, 장마(場馬)의 목양(牧養)에 거의 유익함이 있을 것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목장 범경(犯耕)은 법으로 금지되어 본래부터 지극히 엄격한 것인데, 처음에 금단(禁斷)하지 않은 것이 이미 매우 놀랍습니다. 징세(徵稅)하여 관용(官用)한 것도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로 하여금 금경하여 환목(還牧)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예라 할 것입니다.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엄금하는 영을 내리면 행하던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어사(御史)의 장계(狀啓)와 같다면 그 논열(論列)한 바를, 양쪽이 편해지는 방도를 율합(允洽)하여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다시 한계(限界)를 정하여서 절목(節目)을 엄하게 세우고, 그로 하여금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영구(永久)히 준행(遵行)하게 할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장세곡.

449) 장세곡(場稅穀): 제주도 목장을 갈아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곡식.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十七日 甲辰

- 甲寅三月十七日辰時, 上詣景慕宮. 展拜入侍時, 行都承旨洪明浩, 左承旨李勉兢, 右承旨洪仁浩, 左副承旨李益運, 右副承旨南公轍, 同副承旨尹致性, 假注書洪樂浚·李勉昇, 記注官安經心·金良倜, 一提學鄭民始, 檢校直提學徐有防·徐鼎修, 檢校直閣徐榮輔, 待教李存秀, 以次隨駕 上具翼善冠 袞龍袍, 乘輿出協陽門, 建陽門, 銅龍門, 駕至漏局前. …… 庠曰, 乃是癸巳年, 而伊時臣謫居濟州, 只聞駕臨之報, 未詳其實實矣. 上曰, 先朝有御製, 而予亦賡進, 寶帖尙在內閣, 當令閣臣謄送, 卿其板揭于亭上, 以爲傳後之道.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17일(갑진)

□ 제주(濟州)에 유배 중 가림(駕臨)에 대한 보고

- 갑인년 3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경모궁에 나아갔다. 전배(展拜)하러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홍명호(洪明浩), 좌승지 이면금(李勉兢), 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이익운(李益運), 우부승지 남공철(南公轍), 동부승지 윤치성(尹致性), 가주서 홍낙준(洪樂浚)·이면승(李勉昇), 기주관 안경심(安經心)·김양척(金良倜), 일제학 정민시(鄭民始),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서정수(徐鼎修), 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 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수가(隨駕)를 갖추었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여(輿)를 타고 협양문(協陽門), 건양문(建陽門), 동룡문(銅龍門)으로, 가마가 누국(漏局) 앞에 이르렀다. <중략> 구상(具庠)이 아뢰기를, “이에 계사년(1773) 이때 신이 제주(濟州)에 유배 중이었습니다. 다만 가림(駕臨)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실이 자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의 어제(御製)가 있어서야, 나도 갱진(賡進)⁴⁵⁰하였다. 보첩(寶帖)이 여전히 내각(內閣)에 있어서, 마땅히 각신(閣臣)에게 등송(謄送)하게 하여, 경(卿)이 그 판(板)을 정(亭) 위에 걸어서, 후세에 전하는 방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가림.

450) 갱진(賡進): 글에 화답하여 글을 지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十七日 甲寅

- 徐美修,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李喆運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矣. 禾毛色別單, 固當書入後, 內廐立養, 而李喆運, 方在嚴囚中, 有不敢循例舉行, 何以爲之? 敢啓. 傳曰. 莫曰應捧. 渠物陋矣, 無異於饑口作奸中物, 自本寺區處, 還錄該牧,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7일(갑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서미수(徐美修)의 보고
- 서미수(徐美修)가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색은 별단으로 당연히 써서 들인 뒤에 내구(內廐)에서 입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철운은 바야흐로 엄수(嚴囚) 중에 있으므로, 감히 관례에 따라 거행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응봉(應捧)⁴⁵¹하지 않도록 하라. 저 인물은 비루하다. 기구(饑口)에서 작간(作奸) 중인 인물과 다름이 없으니, 본시(本寺)에서 구처(區處)하고, 해목(該牧)에서 환록(還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체임진상마.

451) 응봉(應捧): 국가에 당연히 바쳐야 할 물건.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三月 二十七日 甲寅

- 李魯述, 以義禁府言啓曰, 保放罪人李文喆查啓, 既而啓下, 依例還囚後, 議處以入, 嚴囚罪人李喆運, 頃因濟州御史狀啓, 有嚴刑取招之命, 而適值齋戒, 今日坐起, 姑不得舉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3월 27일(갑인)

- 이철운(李喆運)의 금형(嚴刑)과 취초(取招)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이노술(李魯述)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보방죄인(保放罪人) 이문철(李文喆)에 관한 사계(查啓)가 이미 있었고, 계하(啓下)하여서 전례에 따라 환수(還囚)한 뒤에, 의논하여 처리해서 들이고, 엄수죄인(嚴囚罪人) 이철운(李喆運)은 지난번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장계로 인해, 금형(嚴刑)하여 취초(取招)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재계(齋戒)를 만나 오늘에야 좌기(坐起)하여 진실로 거행하지 못한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철운.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五日 辛酉

- 甲寅四月初五日辰時, 上御誠正閣. …… 泰賢退去, 克浩進前將奏. 上曰, 誰也? 美修曰, 洪克浩也. 上曰, 舉措甚駭怪. 如此之人, 誰爲通清, 而何年爲之乎? 美修曰, 甲辰年通清云矣. 上曰, 克浩舉措, 從前多萬萬駭痛者, 欲一處分而未果矣. 如此臺諫, 濟州島配, 可也. 注書, 速出傳命, 可也. 又教曰, 濟州則如何? 代以一律, 黑山島投界. 注書, 速出傳命舉行, 可也.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5일(신유)

- 홍극호(洪克浩)의 제주도(濟州島) 유배에 관해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함

- 갑인년 4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오태현(吳泰賢)이 물러가고, 홍극호(洪克浩)가 앞으로 나와서 이를 아뢰려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냐?”라고 하였다. 서미수(徐美修)가 아뢰기를, “홍극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조(舉措)가 매우 해괴(駭怪)하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와 통정(通淸)하고, 어느 해에 그랬다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서미수가 아뢰기를, “갑진년(1784)에 통정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극호의 거조는 종전(從前)에 많아서 매우 놀랍고 통분할 만한 것이니 한 번 처분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와 같은 대간(臺諫)은 제주도(濟州島)에 유배시키는 것이 좋겠다. 주서(注書)는 속히 전명(傳命)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전교하기를, “제주(濟州)는 어떠한가? 일률(一律)로써 대신하여, 흑산도(黑山島)로 쫓아내라. 주서는 속히 전명(傳命)을 내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극호, 제주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十九日 乙亥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 營建大一觀綸音諭書, 奉藏勤護事, 傳于林濟遠曰, 肅廟乙卯·丙申, 先朝癸丑·癸未綸音, 欲爲奉翫, 精書一冊, 別盛櫝子, 上送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19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의, ‘대일관(大一觀)에 관한 영건(營建) 윤음(綸音)과 유서(諭書)를 봉장(奉藏)하여 근호(勤護)하는 일’에 관하여, 임제원(林濟遠)에게 전교하기를, “숙묘(肅廟) 을묘년(1675)·병신년(1716)과 선조의 계축년(1733)·계미년(1763) 윤음을 내가 받들어 보고자 하니, 한 책으로 정서(精書)하여 별도로 상자에 넣어서 올려보낼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대일관, 윤음, 유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十九日 乙亥

- 以濟州牧使沈樂洙啓本，直赴會試之類，更爲試取，入格人開錄事，傳于林濟遠曰，直赴殿試事，捧承傳，帖文仍卽成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19일(을해)

-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직부(直赴) 회시(會試) 계본(啓本)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계본(啓本)에, ‘직부(直赴) 회시(會試) 따위를 다시 시취(試取)하게 하고, 입격인(入格人)을 개록(開錄)하는 일’에 대해 임제원(林濟遠)에게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일을 승전(承傳)을 받들어 첩문(帖文)으로 작성하게 하고 그대로 즉시 성송(成送)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직부 회시, 직부 전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十九日 乙亥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救恤饑民，不免顛連，惶恐待罪事，傳于林濟遠曰，更加着念接濟，無負特畀之意，卿則勿待罪事，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19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기민(饑民) 구휼(救恤)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의, ‘기민(饑民)을 구휼(救恤)하는 데 굶주려 쓰러지는 참담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황공하여 대죄하는 일’에 관하여 임제원(林濟遠)에게 전교하기를, “다시 더욱 염두에 두어서 접제(接濟)하고, 특별히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경(卿)은 대죄(待罪)하지 말 일이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기민, 구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十九日 乙亥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 定配罪人梁之蘊, 冒赴國試, 不能摘發, 惶恐待罪事, 傳于尹行元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19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정배죄인(定配罪人) 양지온(梁之蘊)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의, ‘정배죄인(定配罪人) 양지온(梁之蘊)이 거짓으로 국가시험을 본 것을 적발하지 못하여 황공스럽게 대죄(待罪)하는 일’에 관하여 윤행원(尹行元)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정배죄인, 양지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一日 丁丑

- 洪義浩啓曰, 科試事體, 何等嚴祕, 試券封上, 尤宜慎密, 而今此濟州儒生試取試券, 入盛櫃子, 封標雖完, 粧鐵多落, 到手自開, 殊無封鎖嚴密之義. 揆以事體, 極爲疎忽, 該牧使沈樂洙,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1일(정축)

-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한 시권(試券) 봉쇄(封鎖)에 관한 홍의호(洪義浩)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아뢰기를, “과시(科試)의 사체(事體)는 이 얼마나 엄중하고 비밀스러운 일입니까? 시권(試券)의 봉상(封上)은 더욱 마땅히 신밀(慎密)한 것인데도, 지금 이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試取) 시권(試券)을 입성(入盛)한 궤자(櫃子)를 봉표(封標)한 것은 비록 완전하지만, 장철(粧鐵)이 많이 떨어져서, 손을 대니 저절로 열려, 특별히 봉쇄(封鎖)하는 엄밀(嚴密)한 뜻이 없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 보건대 매우 소홀한 것입니다. 해당 목사 심낙수(沈樂洙)는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유생, 시취, 시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一日 丁丑

- 鄭大容啓曰, 濟州儒生試取試券, 今已上來矣. 大提學洪良浩, 卽爲牌招, 以爲科次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1일(정축)

-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試取) 시권(試券)에 관한 과차(科次)를 청하는 정대용(鄭大容)의 계
- 정대용(鄭大容)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생(儒生)의 시취(試取) 시권(試券)은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다. 대제학(大提學) 홍양호(洪良浩)를 즉시 패초(牌招)하여 과차(科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유생, 시취, 시권, 과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一日 丁丑

- 甲寅四月二十一日申時, 上御誠正閣. 科次入侍時, 行都承旨鄭大容, 假注書曹錫中, 記注官安經心, 記事官吳泰曾, 大提學洪良浩, 對讀官李存秀, 以次進伏訖. 上命良浩考券, 取邊景鵬等七人. 命書傳教曰, 濟州儒生試取科, 科次賜第, 例爲數人, 而今年卽推恩中外, 廣慶朝野之時也, 御史下往也. 齋送論策詩賦銘頌各題者, 已示多取之微意, 而用人之道日狹, 科目不及於遐方久矣. 矧伊千里重溟, 雖有抱才之人, 何以自達於朝廷乎? 諸體所對, 亦多合作, 益驗人才之不在遐邇論. 居首大靜幼學邊景鵬, 策居首旌義幼學夫宗仁, 詩居首旌義幼學高鳴鶴, 賦居首濟州幼學洪達勛, 銘居首濟州幼學李台祥, 頌居首濟州幼學鄭泰彥, 竝直赴殿試, 策之次大靜幼學金命獻, 前此別遣御史試取時, 以年近七十, 格外施賞矣. 今年又以八十一歲應試入格, 八路儒生, 來觀慶科之七八十歲老儒, 旣命別坐試取, 特爲拔例賜第, 其在同慶一視之意, 豈可使耽羅獨漏乎? 亦爲直赴殿試, 趁明年與武舉人, 同爲上送之意, 下諭于牧使, 直赴帖文, 亦卽成送事, 該房知悉. 雖無前例, 右文之舉, 豈讓於尙武? 武而有賞, 儒則勿論, 甚不可, 各體入格諸生, 依書下賞典, 令道伯, 備送紙筆墨, 到卽分給事, 下諭于道伯及牧使.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1일(정축)

□ 제주(濟州) 유생 시취(試取) 결과를 임금과 대신들의 논의함

- 갑인년 4월 21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과차(科次)로 입시(入侍)했을 때, 행도승지 정대용(鄭大容), 가주서 조석중(曹錫中), 기주관 안경심(安經心),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대제학 홍양호(洪良浩), 대독관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홍양호에게 고권(考券)하게 하고, 변경봉(邊景鵬) 등 7인을 취했다.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과(試取科)의 과차(科次)로 사제(賜第)⁴⁵²⁾한 예가 여러 사람이 된다. 그러나 올해는 중외(中外)로 추은(推恩)⁴⁵³⁾하여, 조야(朝野)로 광경(廣慶: 증광 경과)을 할 때 어사(御史)가 내려가라. 논(論)·책(策)·시(詩)·부(賦)·명(銘)·송(頌)의 각제(各題)를 갖추어 보내는 것은 이미 다취(多取)하는 징의(微意)이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도

452) 사제(賜第): 과거에 합격한 것과 같은 자격을 내려 줌.

453) 추은(推恩): 은혜를 남에게 미치게 함.

가 날로 좁아지는데, 과목(科目)은 먼 지방에 미치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하물며 천 리 밖의 먼 바닷길은 오죽하랴! 비록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조정에 절로 다다르게 할 것인가? 제체(諸體)를 봉(對)한 바도 많아서 합작(合作)하여, 더욱 증험된 인재가 하이(遐邇)에 사람이 있다고 논할 수 없다. 거수(居首: 수석을 차지한 사람) 대정(大靜) 유학(幼學) 변경봉(邊景鵬), 책거수(策居首: 책에서 1등 한 사람) 정의(旌義) 유학 부종인(夫宗仁), 시거수(詩居首: 시에서 1등 한 사람) 정의 유학 고명학(高鳴鶴), 부거수(賦居首:賦에서 1등 한 사람) 제주 유학 홍달훈(洪達勛), 명거수(銘居首: 銘에서 1등 한 사람) 제주 유학 이태상(李台祥)⁴⁵⁴, 송거수(頌居首: 頌에서 1등 한 사람) 제주 유학 정태언(鄭泰彦)을 모두 직부(直赴)에 전시(殿試)하게 하라, 책지차(策之次: 책에서 2등 한 사람) 대정 유학 김명헌(金命獻)은 이보다 먼저 별견어사(別遣御史)가 시취(試取)할 때, 나이가 거의 70에 이른 사람이 격외(格外)를 시상(施賞)하였다. 올해 또 81세에 응시하여 입격(入格)하였다. 팔도의 유생이 경과(慶科)에 내관(來觀)한 7, 80세 노유(老儒)가 이미 별도로 앉히고 시험 보여 특별히 뽑아서 사제(賜第)⁴⁵⁵하였다. 그것을 함께 경하(慶賀)하고 똑같이 보아야 할 뜻이 있으니, 어찌 탐라(耽羅)로 하여금 독루(獨漏)하게 하겠는가? 또한 직부(直赴)하여 전시(殿試)하게 하라. 내년(明年)에 무거인(武舉人)과 더불어서 함께 올려보내라는 뜻을 목사에게 하유하고, 직부하라는 체문도 즉시 성송(成送)할 일로 해방(該房)에 알리라. 비록 전례가 없더라도 우문(右文)의 과거는 어떻게 상무(尙武)에 양보했는가? 무(武)에는 상(賞)이 내리고, 유(儒)는 논하지 않은 것이 더욱 불가하다. 각체(各體)의 입격(入格) 제생(諸生)은 글에 따라서 상전(賞典)을 내리고,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지·필·묵(紙筆墨)을 갖추어 보내고, 도착하는 즉시 나누어 줄 일을 도백과 목사에게 하유하라.”라고 하였다. 그대로 물러가라고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정의. 대정. 변경봉, 부종인, 고명학, 홍달훈, 이태상, 정태언, 김명헌.

454) 이길상(李吉祥)으로 오독(誤讀)해서는 안 됨.

455) 사제(賜第):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二日 戊寅

- 李勉兢啓曰, 科試事體, 何等嚴祕, 試券封上, 尤宜慎密, 而今此濟州儒生試取試券, 入盛櫃子, 封標雖完, 粧鐵多落, 到手自開, 殊無封鎖嚴密之義. 揆以事體, 極爲疎忽, 該牧使沈樂洙,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2일(무인)

-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試取) 시권(試券)을 입성(入盛)하는 건에 관한 이면금(李勉兢)의 계
- 이면금(李勉兢)이 아뢰기를, “과시(科試)의 사체(事體)는 얼마나 엄중하고 비밀스러운 일입니까? 시권(試券)의 봉상(封上)은 더욱 마땅히 신밀(慎密)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주(濟州) 유생의 시취(試取) 시권(試券)을 입성(入盛)한 궤자(櫃子)의 봉표(封標)가 비록 완전하지만, 장철(粧鐵)이 많이 떨어져서, 손을 대도 절로 열려서, 특히 봉쇄(封鎖)가 엄밀(嚴密)해야 하는 뜻이 없습니다. 사체를 살피건대, 매우 소홀한 것입니다. 해당 목사 심낙수(沈樂洙)을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시취, 시권, 입성.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二日 戊寅

- 以濟州巡撫御史沈樂洙別單，傳于李勉兢曰，民隱邑弊諸條，卽令廟堂，逐條論理粘啓稟處。繡衣之差遣，豈特爲慰諭，亦豈特爲按覈與試才也？島中賢賢氓之蚩蚩，採聞節行，搜訪人才，以副九重諮諏之思，固其職之先務，此乃假之以巡撫之銜也。觀此繡單，有一二登聞者，豈令循例回啓，以忽勸聳之方乎？旌義故學生吳興泰之爲國忠義，濟州故孝子朴繼昆之感天孝誠，島以北諸路之所罕聞者，而興泰·繼昆，尙今蔑無旌異，實爲欠事。奇哉？繼昆之家，又有其女之爲烈婦，烈婦又有忠婢，孝烈忠共萃，而其孫重煥，能述祖戒續家業，不事科臼，潛心兵學云者，亦合一番收錄。令繡衣，就吳興泰之間，旌之曰義士，朴繼昆之間曰孝子烈女，低一行，扁以忠婢之名。仍令繡衣，各撰紀蹟之語，俾州人之過其間者，乘者必式，行者指點，爲百代樹風聲之一助。閑良朴重煥，今日政，部將單付啓下，使道伯，給馬起送。至於薦進人才中，旌義前佐郎康聖翊，操守聞來可感，騎郎見窠，今日政先爲甄用，如以親老爲難赴云爾，則重違其志，自有別岐收用，具由狀聞事，分付。其餘諸人，令吏兵曹，草記回啓事，分付。以此傳教，回諭繡衣。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2일(무인)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의 별단(別單) 내용을 처리하는 건에 대해 논의함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의 별단(別單)에 대하여, 이면공(李勉兢)에게 전교하기를, “백성의 고통과 고을의 폐단의 모든 조목은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점계(粘啓)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수의(繡衣)의 차견(差遣)으로 어떻게 특별히 위유(慰諭)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떻게 안핵(按覈)하게 하고 시재(試才)하게 하겠는가? 섬 안은 무식하고 뒤떨어지고,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절행(節行)을 채문(採聞)하고, 인재(人才)를 수방(搜訪)하여, 궁궐을 보좌하여 자추(諮諏)하는 것을 생각하여 진실로 그 직(職)의 선무(先務)는 너그러이 용서하여 선문(巡撫)하는 것이다. 이 수의의 별단을 보면, 한두 번 등문(登聞)한 것이 있는데, 어찌 순례(循例)대로 회계(回啓)하게 하였는데 홀연히 권용(勸聳)하는 방도가 있는가? 정의(旌義) 고학생(故學生) 오흥태(吳興泰)의 나라를 위한 충의(忠義)와, 제주(濟州) 고효자(故孝子) 박계곤(朴繼昆)의 하늘을 감화시킨 효성(孝誠)이야말로 제주도 이북의 여러 도에서는 듣기 어려운 일인데, 오흥태와 박계곤을 지금까지

특별히 정표한 것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결함된 전례라 하겠다. 기이하다! 박계곤의 집안에는 또 그의 딸이 열부가 되었고 그 열부에게는 또 충성스런 여종이 있어 효와 열과 충이 한 집에 모였는데, 그의 손자 박중환(朴重煥)도 능히 할아버지의 훈계를 받아 가업을 계승하여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병학(兵學)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한 번 거두어 녹용하기에 합당하겠다. 암행어사로 하여금 오흥태의 정문(旌門)에는 의사(義士)라 기록하고, 박계곤의 정문에는 효자열녀(孝子烈女)라 쓰고 한 줄을 낮추어 충비(忠婢)의 이름을 써넣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 어사로 하여금 그들의 사적에 대한 글을 각각 지어 전파해서, 그 고을 사람들이 그 정려를 지나갈 때에는 말을 탄 자는 반드시 경례를 표하게 하고 걸어가는 자들은 손으로 가리키며 경의를 표하도록 하여, 백대 후에까지 풍성을 수립하는 데에 일조가 되도록 하라. 한량 박중환은 오늘 정사에서 부장(部將)으로 단부(單付)하라고 계하(啓下)하고, 도백으로 하여금, 금마(給馬)하게 기송(起送)하라. 천진(薦進)한 인재(人才) 가운데 전 정의좌랑(旌義佐郎) 강성익(康聖翊)은 조수(操守)가 문래(聞來)하여 감탄할 만하여 기랑(騎郎)으로 현과(見窠)하고, 오늘 정사에서 먼저 등용하라. 만일 친로(親老)하여 부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거듭 그 뜻을 어기면 절로 별기(別岐)로 收用(수용)할 수 있으니, 말미를 갖춰서 장문(狀聞)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 그 나머지 여러 사람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회계(回啓)할 일로 분부하라. 이 전교(傳敎)로써 수의에게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심낙수, 정의현, 오흥태, 제주, 박계곤, 박중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二日 戊寅

- 甲寅四月二十三日辰時，上御重熙堂。右副承旨入侍時，右副承旨洪義浩，假注書曹錫中，記注官安經心，記事官吳泰曾，以次進伏訖。上曰，日次殿講，明日爲之，今番儒生，勸入後到記爲幾何，使大司成知入。賤臣承命出傳。上曰，濟州試券，既令印給矣。如瓊林聞喜錄例，以活字印出，頒給物力，則推來於戶曹，自內閣爲之，可也。上曰，李喆運，今方在囚耶？義浩曰，方囚南間矣。上曰，令禁堂，卽速收議，以爲決處之地，可也。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2일(무인)

□ 제주(濟州) 시권(試券) 인급(印給)에 관해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함

- 갑인년 4월 23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우부승지 홍의호(洪義浩), 가주서 조석중(曹錫中), 기주관 안경심(安經心), 기사관 오탈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아가서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차전강(日次殿講)은 내일 하자. 이번에 유생은 권입(勸入)한 뒤에 도기(到記)는 얼마나 되는가? 대사성(大司成)으로 하여금 지입(知入)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어서 전교를 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시권(試券)은 이미 인급(印給)하게 하였다. 만일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⁴⁵⁶의 예(例)로 활자(活字)로 인출(印出)하여 반급(頒給)하게 하고, 물력(物力)은 호조(戶曹)에서 추래(推來)하게 하여 내각(內閣)에서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철운(李喆運)은 지금 바야흐로 간혀 있는가?”라고 하였다. 홍의호가 아뢰기를, “바야흐로 남간(南間)에 간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당(禁堂)으로 하여금 즉시 신속하게 수의(收議)하게 하고, 써 처결(決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나라고 명했다.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시권, 인급.

456) 경림문희록(瓊林文喜錄): 조선시대에 여러 유생의 시권(試券)을 모아서 간행한 기록.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四日 庚辰

- 洪義榮, 以吏曹言啓曰, 因濟州巡撫御史沈樂洙別單, 令吏·兵曹, 草記回啓事, 命下矣. 取考別單, 則濟州生員吳霑, 頗有文識, 可謂島中之翹楚云, 而既非行誼之表著, 宜無甄用之可論. 濟州判官洪履祚, 醇謹可尚, 有欠振刷下語之間, 貶褒相錯. 大靜縣監鄭運躋, 去年大賑, 捐瘠甚少云, 則不可謂之純褒. 旌義縣監南涑, 出自侍從, 吏民拭目云, 則可知治績之未著, 而御史既陞牧使, 來頭考績, 另行黜陟之意, 嚴飭分付. 旌義前縣監許壑, 曾以公廨修繕之勞, 已蒙加資之典, 前牧使李鴻運, 雖云釐弊, 別無事爲之可稱, 竝置之,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4일(경진)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의 별단(別單)에 관한 이조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의 별단(別單)으로 인해서,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초기(草記)를 회계(回啓)하게 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별단을 취고해 보니, 제주(濟州) 생원(生員) 오점(吳霑)이 자못 문식(文識)이 있어서, 가히 섬 안의 교초(翹楚)⁴⁵⁷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행의(行誼)의 표저(表著)가 아니라, 마땅히 전용(甄用)을 논할 수가 없다. 제주판관(濟州判官) 홍이작(洪履祚)은 순근(醇謹)이 가상합니다. 진쇄(振刷)와 하어(下語) 사이에 흠이 있으니 포폄(貶褒)하는 데에 서로 어긋납니다.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는 지난해 대진(大賑)에, 연척(捐瘠: 방치되어 굶주리다가 쇠약해지는 것)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런즉 순포(純褒)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은 시종(侍從) 반열 출신으로, 이민(吏民)들이 눈을 씻고 자세히 봤다고 합니다. 그런즉 치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사는 이미 목사에 올라서 앞으로 근무 평정을 할 때 특별히 출척(黜陟)을 행하도록 하는 뜻을 엄칙하여 분부(分付)하십시오.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허서(許壑)은 일찍이 공해(公廨)를 수선(修繕)한 공로가 있어서 이미 가장(加資)의 은전을 입었습니다. 전 목사 이홍운(李鴻運)은 비록 이폐(釐弊)했

457) 교초(翹楚): ‘잡목(雜木) 무더기 속에 높이 자란 가시나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 뛰어난. 또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

다고 하지만, 따로 무사하게 했다고 칭할 수 있으니, 모두 두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심낙수, 제주, 오점, 제주판관, 홍이작, 대정현감, 정운제, 정의현감, 남속.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五日 辛巳

- 李勉兢, 以兵曹言啓曰, 濟州巡撫御史沈樂洙別單, 令吏·兵曹, 草記回啓事, 命下矣. 取考別單, 則大靜居前五衛將李亨秀, 曾爲募瑟鎮助防將時, 修築城堞, 公廨·軍器, 並爲修治云, 而書啓中雉堞之幾許, 公廨之幾間, 軍器之幾件, 並不條列, 只言略干, 則其不能準賞典之數可知, 論賞一款, 姑置之. 州校前僉使洪受寬, 募瑟鎮將出身金鍾輔, 泛稱爲人勤幹, 頗解軍務, 俱可任使云. 雖與論列才藝, 考據實蹟有異, 其在體聖朝柔遠人之德意, 不可無收用之舉, 待其前頭上京, 更觀其爲人, 相當職調用, 何如? 傳曰, 更以三人實蹟, 詳問該牧, 以加資除職, 本牧調用三岐分等論列, 指一狀聞後, 稟處,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5일(신사)

□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 별단(別單)에 관한 병조의 계

- 이면금(李勉兢)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순무어사(濟州巡撫御史) 심낙수(沈樂洙) 별단(別單)의 건으로,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초기(草記)하여 회계(回啓)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별단을 취고해보니, 대정(大靜)에 사는 전 오위장(五衛將) 이형수(李亨秀)가 일찍이 모슬진(募瑟鎭) 조방장(助防將)일 때, 성첩(城堞)을 수축(修築)하고, 공해(公廨)와 군기도 모두 수치(修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계(書啓) 안에 치첩(雉堞)이 얼마인지, 공해가 몇 칸인지, 군기가 몇 벌인지를 모두 조열(條列)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간을 말했으니, 능히 준해서 상전(賞典)한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논상(論賞)의 일관(一款)은 잠시 두십시오. 전 주교첨사 홍수관(洪受寬)은 모슬진장(募瑟鎭將) 출신(出身) 김종보(金鍾輔)를 범칭(泛稱)하여 사람됨이 부지런하다고 해서, 자못 군무(軍務)를 해이하게 했으니, 갖추어 임사(任使)할 만하다고 합니다. 비록 더불어 재예(才藝)를 논열(論列)하더라도 실적(實蹟)을 고거(考據)하니 다름이 있습니다. 사체에 있어서 성조(聖朝)가 유원(柔遠)한 사람의 덕의가 있으니, 수용해서 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두(前頭)가 상경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그 사람됨을 보고서 모두 상당직(相當職)에 조용(調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시 3인의 실적을 해목(該牧)에서 상문(詳問)하게 하여, 가자(加資)하고 제직(除職)하게 하고, 본목(本牧)에서 조용하여 삼지(三岐)로 분등하여 논열하고, 날날이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순무어사, 심낙수, 대정, 오위장, 이형수, 모슬진, 조방장, 홍수관, 모슬진장, 김종보.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七日 癸未

○義禁府啓目, 前牧使李喆運口招云云, 繡啓內辭意, 發問目嚴刑逐條盤覈, 則許多罪犯, 箇箇遲晚是白遣, 至於飢口死亡事段置, 渠亦不敢發明是白乎矣, 但繡啓中, 以實饑故爲三百四十餘口, 而渠則以一百三十餘口納招, 究厥情狀, 極爲痛惡. 加刑取服, 何如? 啓, 觀此其矣所供, 民口之顛壑, 無論因癘因饑, 分明有是事乙仍于, 渠亦百餘三百餘口之間, 執以爲相左之端, 而亦不敢以無是, 全然發明, 則渠之罪犯, 果何如? 設令箇箇患癘, 若能濟其飢而救其病, 闕數豈如彼夥然乎? 特遣御史, 涉海按查, 其所條列, 若是明白. 使辛勤船粟, 夙宵耿耿之爲民苦心, 畢竟不得下究者, 渠之罪, 可謂罔赦. 外此賑餘之移充於臭載, 及自備等種之法外冒禁, 猶屬於薄物. 至於蠲鰥之特恩, 曰以莫知全事剝割者, 節節痛惡. 一次例訊而止何以懲後而戢他乎? 況旣一邊設祭於顛壑之數, 一邊使李喆運, 脫出獄門, 揚揚如無故, 則亦可曰國有法乎? 待考訊限滿, 更加各別嚴刑, 絕島限己身減死定配, 以謝耽羅籲無從之情爲良如教.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7일(계미)

□ 이철운(李喆運)의 구초(口招)에 관한 의금부의 계목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제주목사 이철운(李喆運)의 구초(口招)로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수계(繡啓) 안의 사의(辭意)에, 문목(問目)을 내어 엄형(嚴刑)하고 조목에 따라 반핵(盤覈)하니, 허다한 죄범이 날날으로 지만(遲晚)하였고, 기구(飢口)가 사망(死亡)한 일에 이르러서도, 저놈이 감히 발명(發明)하지 않았사오되, 단지 수계 안에, 실제로 기고(饑故)한 사람은 340여 구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놈은 130여 구의 납초(納招)로 정상(情狀)을 구결(究厥)하니, 매우 통약스럽습니다. 가형(加刑)하여 취복(取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뢰기를, 공초(供招)한 바를 보건대, 백성들이 죽는 것이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인한 것을 막론하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100여 명, 3백여 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어긋나는 단서로 삼아 고집하면서도 역시 감히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발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니, 그의 죄범이 과연 어떠합니까? 설령 사람마다 전염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만일 기근을 구제하고 전염병을 치료해 주었다면 그 숫자가 어찌 저렇게까지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조사하게 한 결과 어사가 조목조목 열거한 것이 이와 같이 명백합니

다. 고생해 가며 쌀을 실어 나르고 밤낮으로 백성들을 위해 고심을 하였건만 끝내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만합니다. 이밖에 진흙하고 남은 곡식을 침몰한 쌀에 옮겨다 충당시킨 것과 스스로 마련한 것 등 각종 불법적인 범행은 오히려 사소한 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복(鰓)을 바치는 것을 특별히 견감해준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데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가증스럽습니다. 한 차례만 신문하고 그만둔다면 훗날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더구나 한편으로는 기근과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철운으로 하여금 옥문을 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다면 그러고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장 신문의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다시 각별히 엄한 형벌을 가하고 그 몸에 한하여 사형에서 한 등급 낮추어 외딴섬에 귀양을 보내서 호소할 데 없는 탐라(耽羅) 백성들에게 사례하십시오.”라고 하였다.⁴⁵⁸⁾ 〈하략〉.

△ 주제어: 이철운, 탐라.

458)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 4월 27일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七日 癸未

- 甲寅四月二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 上命義浩書傳教曰, 耽羅賓興錄二件內入, 西庫三件, 五處史庫各一件, 全羅監營, 全州鄉校, 濟州三邑及三邑鄉校各一件, 內閣·外閣·外奎章閣·玉堂·成均館各一件, 試官·對讀官·試所承旨·較正閣臣及抄啓文臣崔光泰·權俊·吳泰曾·趙萬元·徐俊輔·柳遠鳴·姜俊欽·黃聖天·李東萬, 監印抄啓文臣二人各一件, 完伯·濟州三邑守令各一件, 濟州文臣二人各一件, 入格儒生二十一人各一件賜給.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7일(계미)

□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 반급(頒給)하는 건에 대한 임금의 전교

- 갑인년 4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홍의호(洪義浩)에게 전교를 받아 쓰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 2벌을 궁궐 안으로 들고, 서고(西庫)에 3벌, 5곳의 사고(史庫)에 각 1벌, 전라감영·전주향교·제주 세 고을과 세 고을 향교에게 각 1벌, 내각(內閣)·외각(外閣)·외규장각(外奎章閣)·옥당(玉堂)·성균관에 각 1벌, 시관(試官)·대독관(對讀官)·시소승지(試所承旨)·교정각신(較正閣臣)과 사초문신(抄啓文臣) 최광태(崔光泰)·권준(權俊)·오태증(吳泰曾)·조만원(趙萬元)·서준보(徐俊輔)·유원명(柳遠鳴)·강준흠(姜俊欽)·황성천(黃聖天)·이동만(李東萬), 감인초계문신(監印抄啓文臣) 2인 각 1벌, 완백(完伯)·제주(濟州) 세 고을 수령 각 1벌, 제주문신(濟州文臣) 2인 각 1벌, 입격유생(入格儒生) 21인 각 1벌을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이어 물리나라고 명하였다.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리났다.

△ 주제어: 탐라빈흥록, 제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八日 甲申

- 傳于李勉兢曰, 今日三司事, 欲聲言, 則又將爲一番風波. 且觀諫長等所爲, 則無足責備, 只以許遞, 無痕彌縫之餘, 今忽以初未嘗分明, 發自其口, 眞箇徹于上聽之一張舉條曰, 以改措語之啓無批答書入, 又以一張, 稱以收禁事所懷, 無批答亦爲書入, 而瞰承宣之未及歸院, 潛納于四仙閣, 此非臺啓, 卽投書也. 往古來今, 寧有如許格例乎? 苟欲禁令無拘, 筵教不顧, 則豈有不可爲之事, 不可發之啓乎? 以不治治之, 筵席之着帽出去, 已可謂倖道, 則追後舉措, 不可以無足責, 又略其投其草之罪. 無簡通學條草, 潛投堂后之兩司諸臺, 濟州牧爲先勿限年投竄, 勿揀赦典. 今日事, 其間事勢, 承旨果曖昧, 而不能預禁於未然之罪, 焉敢免乎? 不可以自從下土, 未聞筵教, 有所屈法, 姑從末勘, 該房承旨, 湖沿定配. 試所進去及交遞外, 在院承旨等, 雖非該房, 熟知事實, 則若論不能檢飭, 罪浮於該房, 湖沿亦爲定配事, 分付.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8일(갑신)

- 찬(竄) 이경일(李敬一), 이정운(李貞運), 최수로(崔守魯)를 제주목(濟州牧)에 유배함
- 이면공(李勉兢)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삼사의 일에 대하여 이를 성언(聲言)하려고 들면 또 장차 한바탕 풍파가 일어날 것이다. 또 대사간 등의 하는 짓을 보니 족히 책망할 것도 없기에 다만 체직을 허락하여 아무 흔적 없이 미봉해 버리려고 했었다. 그러던 나머지 이제 갑자기 애당초 분명치 못한 일을 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말을 꺼내어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 그런데 그 한 장의 거조(擧條)에는 ‘조어(措語)를 고친 계사에 대하여 비답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였고, 또 한 장에는 ‘금령을 환수할 일에 대하여 소회를 올렸으나 비답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승지가 미처 승정원에 돌아가기 전에 틈을 엿보아 몰래 사선각(四仙閣)에다 그것을 바쳤으니, 이는 대간의 계사가 아니라 바로 투서(投書)인 것이다. 고금을 통틀어 보아도 어찌 이러한 격례가 있겠는가? 진실로 금령에 구애하지 않고 연석의 하교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찌하지 못할 일이나 발설하지 못할 계사가 있겠는가? 애당초 책망할 것도 못 되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연석에서 무사히 나가게 된 것만도 이미 요행으로 죄를 면했다고 이를 만이다. 그렇다면 추후의 거조에 대해서도 역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초안을 몰래 투납한 죄마저 또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서로 서면(書面)을 통하여 논의하지 않은 거조의 초안(草案)을 남몰래 사선각에 투납한 양사(兩司)의 여러 대간들에 대해서는 연한을 정하지 말고 제주목(濟州牧)으로 귀양보내되 사면령이 내려도 사면하지 말라. 오늘의 일에 대하여 그동안의 사세를 놓고 보면 승지는 과연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을 미연에 미리 방지하지 못한 죄야 어찌 감히 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신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도중이라 연석의 하교를 듣지 못했다고 해도 법을 굽혀 용서할 수는 없으니, 우선 말감(末勘)하는 쪽을 따라 해방의 승지를 호서의 바닷가에 귀양보내라. 그리고 승정원에 있던 승지들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 만일 잘 검척하지 못한 죄를 논한다면 해방의 승지보다 죄가 더 크다. 그들 역시 호서(湖西)의 바닷가에 귀양보내라고 하는 일로 분부한다.”라고 하였다.⁴⁵⁹⁾

△ 주제어: 제주목.

459)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 4월 28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四月 二十八日 甲申

- 李勉兢, 以義禁府言啓曰, 前大司諫李敬一, 前獻納李貞運, 前持平崔守魯, 濟州牧爲先勿限年投竄, 勿揀赦典事, 承傳啓下矣. 李敬一·李貞運·崔守魯等, 全羅道濟州牧, 勿限年投竄,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下教發遣一書吏,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4월 28일(갑신)

- 이경일(李敬一), 이정운(李貞運), 최수로(崔守魯)를 물한년(勿限年)으로 제주목(濟州牧)에 투찬(投竄)하기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면공(李勉兢)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사간 이경일(李敬一), 전 헌납 이정운(李貞運), 전 지평 최수로(崔守魯)를 제주목(濟州牧) 우선 물한년(勿限年)으로 투찬(投竄)하고, 물간사전(勿揀赦典)할 일을 승전(承傳)으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경일·이정운·최수로 등을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에 물한년으로 투찬하게 하고, 승전(承傳) 안의 사의(辭意)로써, 죄목(罪目)을 갖추어, 하교(下教)에 따라 서리(書吏) 한 사람을 보내어 즉시 배소로 압송하라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물한년, 제주목, 투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四日 庚戌[庚寅]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 本州李奉成等船隻漂流事, 傳于徐配修曰, 沿邊各邑, 着意搜訪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4일(경술[경인])

- 이봉성(李奉成) 등 선척(船隻)의 표류(漂流)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이 고을 이봉성(李奉成) 등 선척(船隻)이 표류(漂流)한 일에 관해서, 서배수(徐配修)에게 전교하기를, “연변(沿邊) 각 고을은 착의(着意)하여 수방(搜訪)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봉성, 선척, 표류, 제주목사, 심낙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四日 庚戌[庚寅]

- 以濟州防禦使沈樂洙啓本，定配罪人竝置仍秩事，傳于徐配修曰，竝依狀請施行，其中徐敬植放送事，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4일(경술[경인])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심낙수(沈樂洙) 계본(啓本)에 관한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심낙수(沈樂洙) 계본(啓本)에, 정배죄인(定配罪人)을 병치(竝置)하여 잉질(仍秩)할 일에 관하여 서배수(徐配修)에게 전교하기를, “모두 장청에 따라서 시행하게 하고, 그 가운데 서경식(徐敬植)을 방송할 일을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심낙수, 서경식.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四日 庚戌[庚寅]

- 甲寅五月初四日午時，上御重熙堂。左副承旨入侍時，左副承旨洪義浩，假注書李致祐，記注官曹亨壽·金良倜，以次進伏訖。上曰，禮曹判書入侍。賤臣承命出，與禮曹判書閔鍾顯，偕入進伏。……上教鍾顯曰，卿見濟州賓興錄乎？鍾顯曰，未得見之矣。上曰，各體能成樣，至於頌賦，則足可謂善作，海外儒生之能如此，還可嘉也。義浩曰，頌科作則非但頌禱之得體，文亦合作矣。上曰，果然矣。內下件一件，令內閣頒示禮判，可也。上教鍾顯曰，卿方帶禁府堂上姜鳳瑞議律，何不爲之？李喆運事，收殺後，草記決定，可也。仍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4일(경술[경인])

□ 《제주빈흥록(濟州賓興錄)》에 관한 평가

- 갑인년 5월 4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홍의호(洪義浩), 가주서 이치호(李致祐), 기주관 조형수(曹亨壽)·김양척(金良倜)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이르기를, “예조판서를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나가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과 함께 들어와서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민종현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경(卿)은 《제주빈흥록(濟州賓興錄)》을 봤는가?”라고 하였다. 민종현이 아뢰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체(各體)는 능히 모양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송(頌)·부(賦)에 이르러서는 족히 가히 선작(善作)이라 할 수 있다, 바다 밖 유생들의 능력이 이와 같으니, 도리어 가상하다.”라고 하였다. 홍의호가 아뢰기를, “송과작(頌科作)은 비단 송축(頌禱)하여 득체(得體)할 뿐만 아니라, 문(文) 또한 합작(合作)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옳다. 내하(內下)한 벌은 1벌이니,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예판(禮判)에게 반시(頒示)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민종현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경은 바야흐로 대금부(帶禁府) 당상(堂上) 강봉서(姜鳳瑞)를 의률(議律)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 철운(李喆運)의 일은 수살(收殺)한 뒤에 초기(草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빈흥록, 이철운.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七日 癸巳

- 李羽晉, 以義禁府言啓曰, 頃因濟州前牧使李喆運事, 姜鳳瑞事, 竝令收議大臣事, 命下矣. 領議政洪樂性以爲, 姜鳳瑞雖臺閣, 論劾城主, 大關風化, 況其言或爽實, 難免構誣, 則有不可以臺職, 有所饒恕, 而既是言官, 則又不可直以土民, 按法照律宜有參量輕重, 以敷敦俗之化於重溟之外, 而此則實非愚迷之見所可臆定者, 伏惟上裁云. 領中樞府事蔡濟恭以爲, 姜鳳瑞事, 臣之愚見, 與領相獻議, 無少異同, 不必架疊云矣. 姜鳳瑞身爲臺諫, 疏陳民隱, 固是職分內事, 觀其旨意, 專在臚列地主之罪, 而所謂悖說 月日既已相左, 至於諸般不法之事, 繡衣查啓事實 間或差違, 數爻雖多增衍, 而亦非專出搆捏, 李喆運罪犯狼藉, 既被重勘, 則鳳瑞不可直歸於構誣之科, 而第伏念官民之間, 名分自別, 絕海之隙, 風化尤重, 後弊所關, 不可只以臺言爽實, 有所寬恕, 姜鳳瑞拿問定罪,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7일(계사)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일과 강봉서(姜鳳瑞)의 일 처리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이우진(李羽晉)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의 일로 인해, 강봉서(姜鳳瑞)의 일을 모두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라고 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강봉서의 일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말하기를 ‘강봉서는 비록 대간이기는 하나 성주(城主)를 논핵한 것은 풍속과 교화에 크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말이 혹은 사실과 어긋난 것도 있어 허위로 날조한 죄명을 면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보면 그가 대간의 직에 있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연관(言官)이고 보면 또 곧장 일반 백성으로 간주하여 죄를 적용할 수도 없으니, 의당 잘 참작해서 돈후한 풍화를 먼바다 밖에까지 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로 어리석은 소견으로 억측하여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임금께서 결정하시기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강봉서의 일은 신의 우견(愚見)으로 영상과 헌의(獻議)하니 조금도 다름이 없이 같아서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강봉서는 비록 대간이기는 하나 성주(城主)를 논핵한 것은 풍속과 교화에 크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말이 혹은 사실

과 어긋난 것도 있습니다. 수효(數爻)는 비록 많이 증연(增衍)이 있으니, 또한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날조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철운의 죄범은 워낙 많아서 이미 중벌을 입었고 보면 강봉서를 곧장 허위 날조의 죄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관장과 백성 사이는 명분이 자별하고 외판섬의 풍화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 후일의 폐단에 관계가 되므로 대간의 말이 사실과 어긋난 것을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강봉서를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강봉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十一日 丁酉

- 南公轍,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姜鳳瑞原情公事判付內, 以草記議處照律事, 命下矣. 姜鳳瑞, 觀其爰辭, 移牟所剩之數爰, 雖爲質言, 繡啓既已詳查, 則多寡之稍違, 不必更問, 四字月日之相左 渠雖推諉於之蘊, 而當初傳說, 既無明證, 則今不可追覈, 而至於牧使之本無城化之分者, 全不成說. 諸道監司, 既兼府尹牧使, 則亦有城化之分, 況於濟州牧使而身居本牧地方者乎? 言既窘遁, 跡涉粧撰, 而疏中論列, 亦多差爽. 此路一開, 後弊難言, 以此照律, 罪取考律文, 則大明律訴訟條, 有曰, 若風憲官, 挾私彈事, 有不實者, 從上書以不實律論, 杖一百徒三年. 大典通編訴冤條, 有曰, 品官吏民告其守令者, 杖一百徒三年, 名例, 有二罪俱發, 罪各等者, 從一科. 斷推斷條, 有曰, 犯私罪, 杖一百以上之罪決杖, 告身盡行追奪. 雜令條, 有曰, 王府決杖者, 代以金贖矣. 姜鳳瑞, 從一科斷,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忠清道林川郡靈榆驛, 徒三年定配, 而以議啓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其言稍左, 其官臺官, 則無論牧使判官之孰爲別星, 孰爲城主? 直以品官吏民, 告官長之律勘斷者, 未知爲當, 至於四字云云. 卽不過形容之際, 下語錯誤, 亦非渠所自做, 但章疏體貌, 何等嚴重, 而多不審慎, 或致失實, 是豈特撥於遠地, 畀以耳目重任之意也? 先歸此罪, 畿沿投畀,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11일(정유)

□ 강봉서(姜鳳瑞)의 처치를 청하는 의금부의 계

- 남공철(南公轍)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당시 간혀 있는 죄인 강봉서(姜鳳瑞) 원정(原情)에 관한 공사(公事)의 판부(判付) 안에, 초기(草記)로 의처(議處)하여 조율(照律)할 일을 명하였습니다. 강봉서(姜鳳瑞)는 조목조목 변명한 그의 공초를 보니[觀其爰辭], 이모(移牟)의 남은 수효가 비록 질언(質言)할 수 있지만, 수계(繡啓)에 이미 상세하게 조사하였으니 다과(多寡)에서 조금 어긋날 뿐이니 반드시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四字) 월일(月日)이 서로 달라서, 저놈이 비록 양지온(梁之蘊)을 추위(推諉)하였더라도, 당초 전설(傳說)은 이미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것이니 지금 추복(追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본래 수령(守令)에 대한 백성의 분수가 없다는 데 이른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 도의 감사(監司)는 이미 부윤(府尹)과 목사(牧使)를 겸하고 있으니 또한 수령에 대한 백성의 분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있어서 몸이 본

목(本牧)의 지방에 있으면야! 말은 이미 군둔(窘遁)하고, 일이 장찬(粧撰)에 관계되어, 소 가운데 논열(論列)한 것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길이 한 번 열리면 폐단을 장차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로써 조율하여 죄를 올문에 따라 취고(取考)하였습니다. 그러니 《대명률(大明律)》 소송(訴訟) 조에는, 만일 풍헌관(風憲官)이 사정(私情)을 끼고 사건을 탄핵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서(上書)에 따라 부실률유(不實律諭)로 장 일백 도 삼년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대전통편(大典通編)》 소원(訴冤) 조에는, 품관 이민(吏民)으로서 수령을 고발한 자는 장 일백 대에 도 삼년으로 하고으로 한다고 하고, 각례(名例)에는, 두 가지를 아울러 저질러서 등급이 다른 죄가 있는 자는 첫째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단추단(斷推斷) 조에는, 사죄(私罪)를 범하면, 장 일백(杖一百) 이상의 죄로 결장(決杖)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잡령(雜令) 조에는 의금부에서 결장(決杖)한 자는 금(金)으로 대속(代贖)한다고 했습니다. 강봉서는 같은 죄목에 따라 과단(科斷)하고, 장 일백(杖一百)에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하니, 충청도(忠淸道) 임천군(林川郡) 영유역(靈楡驛)에 도 삼년(徒三年)으로 정배하였습니다. 그러니 의계(議啓) 안의 사의(辭意)는 죄목(罪目)을 갖추어, 전례에 따라 부에서 나장을 내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의 말은 조금 원편에 있고, 그의 관(官)은 대관(臺官)이니, 목사와 판관 가운데 누가 별서(別星)인지, 누가 성주(城主)인지를 논하지 말라. 바로 품관 이민으로서 관장의 율을 감단(勘斷)해야 한다고 고한 것은 아직 타당한지 모르겠는데 사자(四字)에 이르러서는 운운하였다. 즉시 형용(形容)하기가 지나치지 않을 때, 착오(錯誤)로 하어(下語)하고, 또한 저놈이 스스로 지은 것이다. 다만 장소(章疏)의 체모(體貌)가 어찌하든지 엄중한 것이지, 많이 살피고 삼가지 아니하고, 혹 사실을 잃는 데 이를까 하는데, 이것이 어찌 먼 지방에서 특별히 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목(耳目)의 무거운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먼저 이 죄로 돌아가서, 경기 연해변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강봉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十二日 戊戌

- 黃昇源啓曰, 卽見濟州牧使沈樂洙追報老人狀啓, 則旣曰, 冒年見拔, 又以寧失於過, 措辭修啓者, 揆以事面, 誠甚未安, 原狀啓雖不得不捧入, 而其在審慎之道, 不可無警, 推考, 何如? 傳曰, 狀辭卽實語, 此非請推之事, 勿推, 今日政下批.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12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후보노인장계(追報老人狀啓)에 관한 황승원(黃昇源)의 계
- 황승원(黃昇源)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후보노인장계(追報老人狀啓)를 즉시 보건대, 이미 나이를 속여서 현발(見拔)하고, 또 차라리 과중한 데에 실수를 한 것으로 문구의 배치로 수계(修啓)한 것은 사면(事面)으로 헤아려 보건대, 참으로 매우 미안한 것입니다. 원장계(原狀啓)를 비록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조심하고 삼가는 도리로 보아서 경고가 없을 수 없으니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장사(狀辭)는 곧 실어(實語)이더라도 이것은 청추(請推)한 일이 아니니 추문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정사에서 하비(下批)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후보노인장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十二日 戊戌

○ 南公轍,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御史沈樂洙狀啓, 則以爲本島今年牟麥, 雖不可謂大登, 免歉則優足, 而昨秋麥種絕貴, 空田廢種者十居一二. 今此麥還, 有不得如數盡捧, 而當捧還上折米九千二石內, 五分一, 待秋退捧, 則實捧爲七千二百石, 種子公料, 限二千石參量計除, 則秋熟之前還分, 不過五千二百石. 旌義一縣, 本不務麥農, 捧還尤難, 該邑則以三分一, 待秋退捧, 而秋成前艱食之患, 必有倍於他邑, 康津·海南兩邑中留庫穀, 母論牟米自本道區劃, 量其緩急, 三邑中從多少受來救急, 似合便宜云矣. 島中雖未大登, 優於免歉, 則庶可以弛聖上南顧之慮, 而今此該守臣, 枚舉饑餘民勢, 至請麥糴退捧, 則在朝家恤隱之政, 不可靳難. 濟州·大靜兩邑牟還五分一, 旌義牟還三分一, 竝依所請, 待秋退捧, 康津·海南兩邑牟米區劃事, 連牟轉粟, 雖甚重難, 三邑麥還, 不能繼巡, 若有阻飢之患, 則亦不可無別般軫念之道, 而兩邑之分餘實數, 既未的知, 島中之民情緩急, 亦難遙度. 此則令道臣, 往復該牧, 量宜許劃, 從便轉移, 無貽島陸之弊, 而請粟實數舉行形止, 劃卽狀問之意, 竝爲分付於本道道臣及該牧守臣,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12일(무술)

□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狀啓)에 관한 비변사의 계

○ 남공철(南公轍)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狀啓)에, 이 섬의 올해 보리가 비록 대등(大登)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흉년을 면하여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에 보리씨(麥種)가 매우 귀하어, 공전(空田)에 폐종(廢種)한 것이 10에 한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맥환(麥還)은 수에 맞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還上)의 절미(折米) 9,002섬 안에서 5분의 1이니, 추수 뒤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였으나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7,200섬입니다. 종자(種子)의 공료(公料)는 2천 섬을 한으로 하여 참량(參量)⁴⁶⁰하여 제제(計除)하니, 추숙(秋熟)하기 전 환분(還分)⁴⁶¹은 5,200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旌義) 한 현은 본래 보리농사에 힘쓰기 어려운 곳이라, 환자를 받아들이기에도 더욱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고을은 3분의 1로, 추수 뒤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였으나, 추수 전에 간식(艱食)할 어려

460) 참량(參量):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과 많고 적음을 참작함.

461) 환분(還分): 백성들에게 환곡(還穀)을 나누어 줌

움이 있는데, 필시 다른 고을의 배가 될 듯합니다. 강진(康津)·해남(海南) 두 고을 안의 유고곡(留庫穀)을, 보리와 쌀을 논하지 말고 본도(本道: 전라도)에서 구획(區劃)하게 하고,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서, 세 고을 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와서 구급(救急)하는 것을 편의(便宜)할 것 같다고 합니다. 섬 안은 아직 대등(大登)하지 않아서, 면겸(免歉)보다 조금 나으니, 거의 성상(聖上)께서 남쪽으로 돌아볼 근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해당 수신(守臣)이 기근이 든 백성들의 형편을 매거(枚擧)하여 맥적(麥糴)을 몰려 받아들일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조가(朝家)가 홀은(恤隱)하는 정사에 있어서 어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제주(濟州)·대정(大靜) 두 고을의 보리 환자 5분의 1, 정의 보리 환자 3분의 1 모두를 청한 바에 따라 추수를 기다려서 받아들이는 것을 물렸습니다. 강진·해남 두 고을의 보리와 쌀을 구획(區劃)하는 일은 잇달아 보리[牟]를 조[粟]로 전환하였으나, 비록 매우 중하고 어렵더라도 세 고을의 보리 환자는 능히 단순(繼巡)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굶주리는 환난이 있으면 또 별반으로 진념(軫念)하는 도리를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두 고을에 나누어주고 남은 실수(實數)는 이미 적히 알지 못하여, 섬 안의 민정(民情) 완급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도신(道臣)에게 영을 내려, 해목(該牧)에 왕복하여 헤아리고 마땅히 허획(許劃)하고 편의에 따라 전이(轉移)하여, 섬과 육지에 폐단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한 조의 실수를 거행(舉行)하고 형지(形止)는 장문(狀問)으로 획급하게 하는 뜻을 모두 본도 도신과 해당 목의 수신에게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어사, 심낙수, 유고곡, 제주, 대정, 보리 환자, 정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五月 二十二日 戊申

○ 甲寅五月二十二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時原任大臣·閣臣承候， 諸承旨持公事入侍時， 都提調洪樂性， 提調洪億， 行左承旨李集斗， 行右承旨李鼎運， 左副承旨韓晚裕， 右副承旨徐有秉， 同副承旨金載翼， 假注書吳泰曾·李存秀， 記注官金良倜·承膺祚， 領府事蔡濟恭， 判府事朴宗岳·金憲， 提學鄭民始， 檢校直提學徐有防·金載瓚， 原任直提學徐鼎修， 原任直閣徐龍輔·尹行任， 檢校直閣徐榮輔， 以次進伏訖。 …… 濟恭曰， 臺臣設有做錯之事， 至於濟州竄配， 豈不過中乎？ 上曰， 其人則雖不足深責， 顧其職則臺閣也。 名曰諫臣， 豈有如向日李敬一等之駭然之事乎？ 卿言雖如是， 而不可輕易放釋矣。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5월 22일(무신)

□ 대신(臺臣)의 제주(濟州) 찬배(竄配)에 관한 채제공(蔡濟恭)의 계

○ 갑인년 5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약방·시원임 대신·각신(閣臣) 승후(承候), 승지들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홍낙성(洪樂性), 제조 홍억(洪億), 행 좌승지 이집두(李集斗), 행 우승지 이정운(李鼎運), 좌부승지 한만유(韓晚裕), 우부승지 서유병(徐有秉), 동부승지 김재익(金載翼), 가주서 오태증(吳泰曾)·이존수(李存秀),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영부사 채제공(蔡濟恭),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김희(金憲), 제학 정민시(鄭民始), 검교직 제학 서유방(徐有防)·김재찬(金載瓚), 원임 직제학 서정수(徐鼎修), 원임 직각 서용보(徐龍輔)·윤행임(尹行任), 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제공이 아뢰기를, “대신(臺臣)이 설혹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주(濟州)에 찬배(竄配)하는 것은 어찌 과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비록 깊이 책망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을 돌아보니 대각(臺閣)에 있고, 명색이 간신(諫臣)이라고 하는데, 어찌 앞으로 이경일(李敬一) 등이 해연(駭然)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경(卿)의 말이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가볍고 쉽게 석방(放釋)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신, 제주, 찬배, 이경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六月 一日 丙辰

- 尹致性,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竄配罪人李敬一·李貞運·崔守魯, 義興縣定配罪人朴宗甲, 江東縣定配罪人洪受浩, 竝放送事, 承傳啓下矣. 李敬一·李貞運·崔守魯·朴宗甲·洪受浩, 竝卽放送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6월 1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찬배죄인(竄配罪人) 이경일(李敬一)·이정운(李貞運)·최수로(崔守魯)의 방송(放送)하는 건에 관한 윤치성(尹致性)의 계
- 윤치성(尹致性)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찬배죄인(竄配罪人) 이경일(李敬一)·이정운(李貞運)·최수로(崔守魯), 의흥현(義興縣) 정배죄인(定配罪人) 박종갑(朴宗甲), 강원현(江東縣) 정배죄인(定配罪人) 홍수호(洪受浩)를 모두 방송(放送)할 일을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경일·이정운·최수로·박종갑·홍수호를 모두 즉시 방송할 일을 각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찬배죄인, 이경일, 이정운, 최수로, 방송.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六月 一日 丙辰

- 甲寅六月初一日卯時，上御誠正閣。吏兵房承旨持歲抄入侍時，行都承旨洪明浩，左承旨李勉兢，記事官鄭文始，假注書李允謙，記注官承膺祚，記事官吳泰曾，以次進伏訖。…… 又命書傳教曰，值千載難逢之慶辰，此時祈祝，歡喜之心，其可容言？飾慶之道，推恩爲大，恩莫過於需典，今日，卽月初也，又當歲抄，雜犯諸罪，當咸宥，有國則有等威，一有干犯於此，豈或乍配旋宥，此果何時乎？長城府遠竄罪人金履素特放，仍施蕩滌之典，明其罪，暴其心，卽罪彼知彼之一拳肺石，不待本事之自暴疏，前一日筵奏，可謂證案矣。執其跡而論其罪，亟用加倍之律，以寓責備之意者，欲有今日之處分也。南海縣安置罪人金鍾秀，特爲放還鄉里，嚴法信令之意，雖有處分，若此則鼎席何時備員？苟使太阿在上，紛眙之帖然，亦豈難事乎？前右議政李秉模絅用，設法而禁之，特格例間可笑事，雖有李敬一輩百千輩，何可拘彼乎？顧其職則三司也，三司，卽公論所在，曰罷曰削云者，以其重惜職名，兼寄禮待之意，不然，一番責教足矣，何費辭教乎？至於舉措之貽辱，前未聞後未聞，以今大霑，不宜獨漏，濟州牧竄配罪人李敬一等放還，處分如是處分，言事如彼言事，固無不可，但以非涉禁，而甚於涉禁，有此嚴處，其人永棄，終有可惜，江華府逐送罪人李益運，特爲分揀上送事，分付。……

❖ 정조 18년(1794) 갑인년 6월 1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찬배죄인(竄配罪人) 이경일(李敬一)의 처분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갑인년 6월 초1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이방승지와 승지가 세초(歲抄)를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행 도승지 홍명호(洪明浩), 좌승지 이면공(李勉兢), 기사관 정문시(鄭文始),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한 전교를 쓰라고 말하기를, “천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경삿날인데 이러한 때에 축하하려는 기쁜 마음을 어찌 말로써 다 할 수 있겠는가. 경사를 빛내는 도리로는 은전을 베푸는 일이 가장 크므로 대사면령을 내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달로 보면 월초이고 또 세초(歲抄)가 다가왔으니 잡범인 모든 죄수들을 다 함께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국법이 있고 등위(等威)가 있는 만큼, 이것을 범한 자에 있어서야 어떻게 금방 유배시켰다가 금방 석방할 수 있겠는가. 이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장성부(長城府)에 유배한 죄인 김이소(金履素)를 특별히 석방하고 이어 죄를 깨끗

이 씻어주는 법률을 시행하라. 그의 죄를 밝히고 그의 마음을 폭로한 것은 곧 그에게 죄를 주고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덩어리의 폐석(肺石)으로서, 본 사건의 내용을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상소하기 하루 전날의 연주(筵奏)가 증안(證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적을 잡고서 그 죄를 논하여 서둘러 배가의 죄율을 적용하여,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뜻을 암시하고 오늘의 처분을 내리고 싶어하였다. 남해현(南海縣)에 안치한 죄인 김종수(金鍾秀)를 특별히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법령을 엄수하라는 뜻에서 내린 처분이기는 하나 이렇게만 한다면 의정의 자리를 어느 때에나 메우겠는가. 진실로 옛날 이윤(伊尹)과 같은 사람이 위에 있다면 분란을 가라앉히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는가? 전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를 서용하라. 법규를 설치하여 금지한다는 것은 격례로 볼 때 가소로운 일일 뿐이다. 이경일(李敬一)과 같은 자가 1백, 1천 무리가 있기로서니 어찌 저 격례로써 그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그의 관직을 생각하여 보면 삼사(三司)이다. 삼사란 곧 공론의 소재처이므로, 삭직이니 파직이니 하는 것은 그 직명을 중시하고 아낌과 동시에 예우의 뜻을 보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 한 번의 책교(責敎)로도 죽한데 무엇하러 많은 말을 허비하며 자꾸 교지를 내렸겠는가. 그의 거조가 모욕을 끼친 일만은 전무후무한 일이기는 하나 이것 역시 무어 책할 것이 있겠는가. 오늘날 대사면을 함에 있어 그들만 빼놓을 수는 없다. 제주목(濟州牧) 유배 죄인 이경일 등을 석방하여 돌려보내라. 처분(處分)은 이처럼 처분대로 내리고 언사(言事)는 저처럼 언사대로 하여도 굳이 안될 것은 없다. 다만 금지령을 범하지는 않았어도 그 행위가 금지령을 범한 자보다 더 심하게 하여 이처럼 엄중한 처분을 내렸으나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리는 것은 끝내는 애석한 노릇이다. 강화도(江華島)로 축출한 죄인 이익운(李益運)을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상송(上送)할 일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찬배죄인, 이경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六月 十日 乙丑

- 甲寅六月初十日卯時，上御熙政堂。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同爲引見入侍時，藥房都提調洪樂性，提調洪櫓，副提調黃昇源，左副承旨尹致性，假注書具得魯·李允謙，事變假注書申絢，記注官金良倜·承膺祚，待教李存秀，右議政李秉模，行司直鄭民始·李文源，判敦寧金持默，戶曹判書沈頤之，行副司直徐有防，吏曹判書閔鍾顯，行副司直李敬懋，禮曹判書金載瓚，行副司直徐有大·李漢豐，副司直尹行任，校理朴鍾淳，醫官金孝儉·金光國·周命新·李敬培·李周憲·安昌禧·卞瀍，以次進伏訖。…… 秉模曰，頃因濟州御史沈樂洙狀啓，則枚舉康津等列邑所報，以爲濟州移粟之規，本無自本倉儲穀發送之事，以列邑某樣穀，區劃入送後，待其涼藿出來，分俵屬邑，換作充數，則倉政舉行，專在屬邑，而康·海兩邑，僻在海陬，數三附近邑外，嶺上下州郡，道里無不遼闊，邑邑所報，舉稱不便，而至若濟民倉，則屬邑程道，比康·海稍近，漸河之洋，縱云艱涉，猶不至於七山之險，而昨冬一船臭載，特緣不審行船，則固不可因此而遽改已定之式，反貽陸民之弊，姑爲仍舊貫舉行事，請令廟堂稟處矣。當初該牧使之所請，蓋出於除島民遠輸之弊，而今以道啓所論觀之，則移捧於康津·海南之後，涼藿之分俵，甚難，穀物之換質又艱，而外此事勢，多有非便之端，俄於閤外，爛商于曾經道臣，則亦以爲，今難更爲變改云云，康津·海南設倉一款，置之，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정조 18년(1794) 갑인년 6월 10일(을축)

□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의 창고를 옮기는 문제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함

- 갑인년 6월 초10일 묘시에 임금이 회정당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이 함께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약방 도제조 홍낙성(洪樂性), 제조 홍억(洪億), 부제조 황승원(黃昇源), 좌부승지 윤치성(尹致性), 가주서 구득로(具得魯)·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신현(申絢),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대교 이존수(李存秀),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 사직 정민시(鄭民始)·이문원(李文源), 판돈녕부사 김지묵(金持默),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서유방(徐有防), 이조판서 민중현(閔鍾顯), 행 부사직 이경무(李敬懋), 예조판서 김재찬(金載瓚),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 부사직 윤행임(尹行任), 교리 박종순(朴鍾淳), 의관 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 주명신(周命新)·이경

배(李敬培)·이주헌(李周憲)·안창희(安昌禧)·변헌(卞憲)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난번 제주어사(濟州御史) 심낙수(沈樂洙)의 장계로 인하여, 나리포(羅里舖) 이설(移設)의 편부(便否)를 상탐(詳探)한 사정(事情)을 다시 등문(登聞)한 뜻을 복계(覆啓)하고 그렇게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서구(李書九)의 장계를 즉시 보니, 강진 등 열읍(康津等列邑)의 소보(所報)를 즉시 보니, 제주이속지규(濟州移粟之規)로써, 본래부터 본창(本倉: 나리포창) 저곡(儲穀)이 없다고 발송(發送)한 일은 열읍(列邑) 모양곡(某樣穀)으로써 구획(區劃)하여 들여보낸 뒤에, 양태와 미역[涼藷]이 출래(出來)한 것을 기다려서, 속읍(屬邑)에 분표(分俵)하여, 환작(換作)하여 충수(充數)하였습니다. 곧 창정(倉政)의 거행(舉行)은 오로지 속읍(屬邑)에 있는 것이어서, 강진과 해남도 고을은 멀리 바닷가에 있어서, 수삼(數三)의 부근에 있는 고을 외에, 영상(嶺上)과 영하(嶺下) 고을의 도리(道里)가 멀고 아득함이 없을 수 없어서 고을마다 알리는 바를 들어서 일꾼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만일 제민창(濟民倉)에 이르면 속읍의 정도(程道)가 강진과 해남에 비해서 조금 가깝고, 시하(澌河)의 바다가 비록 건너기 어렵다고 해도 칠산(七山)의 위험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겨울에 한 배가 취재(臭載: 짐을 실은 배가 얹어져 가라앉음)하였으니, 특별히 살피지 않고 배를 움직이게 하면, 진실로 이것으로 인해 이미 정해진 식을 고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육지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면, 잠시 옛 관습대로 거행하게 할 일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청하였습니다. 당초에 해당목사가 정한 것은 대개 섬 백성들이 멀리 운송하는 폐단을 없애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계(道啓)로 논한 바를 보건대, 강진·해남에 이봉(移捧)한 뒤에, 양태와 미역을 분표(分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곡물(穀物)을 환무(換貿)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어서 이 사세(事勢) 외로 편하지 않은 단서가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함문(閤門) 밖에서 일찍이 도신(道臣)을 지낸 사람들과 난상(爛商)하는 것도 해야 하니, 지금 다시 변경하여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운운(云云)하였습니다. 강진과 해남의 창고를 옮기는 문제는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아뢰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學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민창.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六月 二十日 乙亥

- 傳于俞漢寧曰, 濟州人文官則爲兩侍從, 一銓郎, 而武官則不爲收用, 向來特除之軍門哨官, 亦至今不爲入仕, 銓曹對揚之道, 固如是乎? 濟州人上來者之戍禁旅, 命直殿廊者, 其人如可堪, 今日政, 初仕擬入事, 分付兵曹.

❖ 정조 18년(1794) 갑인년 6월 20일(을해)

- 제주인(濟州人) 문관(文官)의 전랑(銓郎) 입사(入仕)에 관해 유한녕(俞漢寧)에게 전교함
- 유한녕(俞漢寧)에게 전교하기를, “제주인(濟州人) 문관(文官)은 두 명의 시종(侍從)인데, 한 사람은 전랑(銓郎)인데 무관(武官)은 수용(收用)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특별히 군문(軍門)의 초관(哨官)으로 제수하더라도 지금은 입사(入仕)할 수 없다. 전조(銓曹)에서 행하는 대양(對揚)⁴⁶²의 도리로 진실로 이러한 것인가? 제주인이 올라와서 금려(禁旅)로 수자리를 서는 것을 전랑을 수직하게 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다. 오늘 정사에서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해 들이도록 할 일을 병조에 분부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문관, 전랑, 입사.

462) 대양(對揚):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백성에게 널리 알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六月 二十日 乙亥

- 甲寅六月二十日辰時，上御重熙堂。…… 命書傳教曰，守令·邊將初仕擇擬，皇朝人孫忠臣子孫清白吏子孫戰亡人遺裔，西北·松都·耽羅人收用。上教泰曾曰，汝知下番翰林之參坐於政廳之意乎？泰曾曰，知之矣。上曰，汝往政廳，見政事得失，必直書於時政記，可也。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6월 20일(을해)

□ 탐라인(耽羅人) 수용(收用)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갑인년 6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중략>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수령(守令)·변장(邊將)이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해 책하도록 하고, 황조인(皇朝人), 손충신(孫忠臣)의 자손, 청백리(清白吏)의 자손(子孫), 전망인(戰亡人)의 후예(遺裔)는 서북(西北)과 송도(松都)에 탐라인(耽羅人)을 수용(收用)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오태증(吳泰曾)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자네는 하번한림(下番翰林)을 정청(政廳)에 참좌(參坐)하도록 한 뜻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오태증이 아뢰기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정청으로 가서,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살펴보고서, 반드시 시정기(時政記)에 직서(直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가 차례로 물러났다. <하략>.

△ 주제어: 탐라인, 수용.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一日 丙戌

- 閔昌爨, 以吏曹言啓曰, …… 濟州推恩老人三百七十三人, 偕老老人四十二人. ……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1일(병술)

- 제주(濟州) 추은노인(推恩老人)과 해로노인(偕老老人)에 관한 이조의 계
- 민창혁(閔昌爨)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 추은노인(推恩老人)⁴⁶³은 373인이고, 해로노인(偕老老人)은 42인입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추은노인, 해로노인.

463) 추은(推恩): 부조(父祖)나 자손(子孫)의 공로로 인하여 관작(官爵)을 제수하던 일을 말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十二日 丁酉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 大靜縣曾赴儒生八十一歲老人金命獻, 無以越海作行事, 傳于洪義榮曰, 明年唱榜時, 付之榜尾, 花牌下送牧使處, 使之客舍庭唱名 肅拜事, 回諭, 亦爲分付該曹.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12일(정유)

- 대정현(大靜縣) 유생 김명헌(金命獻)의 창방(唱榜)에 관해 논의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에, 대정현(大靜縣)에서 일찍이 과거를 볼 유생, 81세 노인 김명헌(金命獻)을 바다를 건너 와서 작행(作行)하지 않도록 할 일을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내년에 창방(唱榜)⁴⁶⁴할 때, 방목의 끝에 붙이게 하고, 화패(花牌)⁴⁶⁵를 목사에게 내려보내고, 그로 하여금 객사(客舍)의 뜰에서 이름을 부르게 한 뒤에 숙배(肅拜)하게 할 일을 회유(回諭)하고, 또 해조(該曹)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464) 창방(唱榜):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證書)를 주던 일. 문과무과는 붉은 종이에, 생원·진사는 흰 종이에 이름을 써 주었는데, 붉은 종이를 홍패(紅牌), 흰 종이를 백패(白牌)라 하였음. 반패(頒牌), 또는 창방(唱榜)이라고도 함.

465) 화패(花牌): 어사화(御賜花)와 홍패(紅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十二日 丁酉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 前五衛將李亨秀, 摹瑟鎮公廨, 軍器修舉數爻開錄事, 傳于尹行任曰, 前五衛將李亨秀, 因水原府使趙心泰狀聞, 曾有論賞之舉, 而又以摹瑟鎮修舉數爻觀之, 其所夥然, 卽京軍門之罕見, 令該曹拔例收用, 其餘二人, 卿其與道臣相議, 道內與島中間, 從便收用後狀聞事, 回諭, 亦爲下諭于道伯.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12일(정유)

- ☐ 전 오위장 이형수(李亨秀)의 모슬진(摹瑟鎭) 공해(公廨)와 군기(軍器) 수거(修舉)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전 오위장 이형수(李亨秀)가 모슬진(摹瑟鎭) 공해(公廨)와 군기(軍器)를 수거(修舉)한 수효(數爻)를 개록(開錄)할 일로 윤행임(尹行任)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전 오위장 이형수는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의 장문(狀聞)으로 인해 일찍이 논상(論賞)할 일이 있었다. 그러나 또 모슬진에서 수거(修舉)한 수효를 보건대, 많았으니 서울 군문(軍門)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니, 해조(該曹)에 영을 내려 특별히 거두어 등용하라. 그 나머지 2인은 경(卿)이 도신(道臣)과 더불어 상의하고, 도내 여러 섬과 더불어 편한 대로 수용(收用)한 뒤에 장문하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고, 또 도백(道伯)에게 하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형수, 모슬진 공해, 군기, 수거.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二十六日 辛亥

- 尹行任,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三匹船中故失, 二匹中路病留, 實納馬一百九十五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26일(신해)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先運)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행임(尹行任)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선운(先運) 세공마(歲貢馬) 2백 필 안에, 3필은 배 안에서 죽고, 2필은 중로(中路)에서 병으로 남아서, 실제 들어온 말은 195필인데, 나이와 털 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세공마.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二十六日 辛亥

- 尹行任,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合八十八匹內, 二匹中路病留, 實納馬八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前後申飭, 不審嚴明, 則年年封進, 每如是體小品劣, 揆以事體, 誠極未安, 當該封進牧使沈樂洙,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26일(신해)

-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연례진상마와 삼명일진상마, 홍구노태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행임(尹行任)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간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 60필, 홍구마노태마 20필을 합한 88필 안에, 2필은 중로(中路)에서 병으로 죽어서 실제로 들인 말 86필인데, 나이와 털 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후(前後)의 신칙(申飭)에 엄명(嚴明)하지 않으면, 해마다 봉진하는데, 이와 같이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합니다. 사체(事體)를 살펴보건대, 참으로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당 봉진(封進) 목사 심낙수(沈樂洙)를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출래, 후운, 연례진상마, 삼명일진상마, 홍구노태마.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二十六日 辛亥

- 尹行任, 以司僕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世珍, 癸丑·甲寅兩年條封進馬二匹, 今才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封進事體, 自來嚴重, 特教申飭, 何等截嚴, 而上送馬匹, 俱爲體小品劣, 又復如前, 事體所在, 極爲駭然. 當該監牧官金世珍, 分付該牧使, 從重決棍,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26일(신해)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의 봉진마(封進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행임(尹行任)이 사복시로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세진(金世珍)이 계축년(1793)·갑인년(1794) 두 해 조 봉진마(封進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는데, 나이와 털 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봉진(封進)한 사체(事體)는 예로부터 엄중(嚴重)한 것이어서 특교(特教)를 내려 신칙(申飭)하고, 그동안 얼마나 엄하게 신칙하였습니까? 그런데 올려보낸 마필은 모두 체구가 작고 품질이 열등합니다. 또한 올해도 다시 여전하오니, 사체에 있어서 매우 해괴합니다. 해당 감목관(監牧官) 김세진(金世珍)은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여 종중(從重)하여 결곤(決棍)하고, 후일에 징표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산마감목관, 김세진, 봉진마.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七月 二十九日 甲寅

- 尹行任, 以兵曹意啓曰, 去四月二十二日, 因傳教濟州人朴重煥, 南行部將加設單付下批, 而待上來草記事, 命下矣. 部將朴重煥上來, 今日肅謝敢啓. 傳曰, 與吏曹正郎康聖翊, 待下教, 待令,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7월 29일(갑인)

- 제주인(濟州人) 박중환(朴重煥)을 남행부장(南行部將)으로 단부(單付)함
- 윤행임(尹行任)이 병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 4월 22일에 제주인(濟州人) 박중환(朴重煥)을 남행부장(南行部將)으로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라고 하비(下批)할 것을 전교(傳敎)한 것으로 인해서 초기(草記)가 올라올 일을 기다릴 것으로 명하였습니다. 부장(部將) 박중환의 상례(上來)하였으니, 오늘 숙사(肅謝)할 것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조 정랑 강성익(康聖翊)과 함께 하교를 기다렸다가 대령(待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박중환, 남행부장, 단부.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八月 四日 戊午

○ 正言康聖翊疏曰, …… 且伏念, 臣之老父, 今年八十六, 疾病侵尋, 長委床褥, 一自離發之後, 旅店客館, 夢寐猶驚, 家素貧寒, 菽水關心, 區區私情, 實難按住. 以公以私, 見帶職名, 萬無虛糜久留之望. 伏乞天地父母, 特許遞改, 以重官方, 以便歸養焉. 臣於乞免之章, 不冥贅及他說, 而以濟州馬貢事, 不避猥越, 茲敢仰陳焉. 本州貢馬之法, 今不可容易變改. 而第伏念, 無論場山之畜, 其所蕃息, 大不如前之中, 逐年封進, 不滿定數, 則每以病疲殘劣之類, 苟充其匹, 莫重之貢, 徒存虛名者, 以爲寒心. 且數多馬匹牽上之際, 貽弊於沿路之邑, 害及於方農之民, 尤爲可悶. 以臣愚賤之見, 定爲三年一次, 則馬得益壯, 而弊亦可省焉. 伏乞下詢有司而處之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既命起送, 雖知篤老侍下, 欲一召見後下送, 附陳貢馬之弊, 令該司稟處. 爾其勿辭, 姑爲察職. 爾亦三司中一人, 況居在重溟之外, 庶獄, 能無枉乎? 幽鬱或未達歟? 苟有所知, 宜先應旨.

❖ 정조 18년(1794) 갑인년 8월 4일(무오)

□ 제주(濟州)의 마공(馬貢)에 관한 강성익(康聖翊)의 상소

○ 정언 강성익(康聖翊)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중략〉 또 삼가 생각건대, 신(臣)의 노부(老父)는 올해 나이 86세로, 바로 병이 났다는 이유로, 오래도록 상욕(床褥)에 누웠습니다. 한편으로 절로 떠난 뒤에 여점(旅店)과 객관(客館)에서 자나깨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본래 빈한(貧寒)하여, 숙수(菽水)에 관심을 두고, 구구한 사정으로 실로 안주(按住)하기가 어렵습니다. 공(公)으로 보나 사(私)로 보나 현재도 직명(職名)을 띠고 있으니, 헛되이 자리에 눌러 있어 오래 머무를 가망이 만무(萬無)합니다. 바라건대, 천지 부모께서는 특별히 체개(遞改)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관방(官方)을 중하게 하여 편히 귀양(歸養)하게 하십시오. 신은 사직을 청하는 글에서 다른 말을 쓸데없이 언급하는 것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濟州)의 마공(馬貢)의 일은 외람됨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었습니다. 본주의 공마(貢馬) 법(法)은 지금 쉽게 변개(變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드려 생각하건대 장산(場山)의 축산(畜産)은 논할 것도 없이 그 번식하는 바가 크게 전과 같지 않으니, 해마다 하는 봉진은 정수(定數)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번 병피(病疲)로 잔열(殘劣)하는 것이 있어서, 구차히 그 마필을 채웠습니

다. 막중한 공마는 헛된 명색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또한 수다(數多)한 마필을 견상(牽上)할 때 연로(沿路) 고을에 폐를 끼치고 한창 농사일에 바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니 더욱 민망스럽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3년에 1번으로 정하면 말은 더욱 장성하게 될 것이고, 폐(弊)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앞드리 건대. 유사(有司)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게 하십시오. 신은 무어라 아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를 자세히 보았다. 이미 명(旣)을 내어 기송(起送)하였으니, 비록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한번 불러서 본 뒤에 내려보내려고 했다. 공마의 폐단을 부진(附陳)하여, 해사(該司)에 품처(稟處)하라. 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진실로 직무를 살피라. 그대도 삼사(三司) 가운데 1인인데, 하물며 거듭되게 깊은 바다 밖에 있으니, 거의 옥(獄)에 있는 것과 같으니, 능히 억울함이 없을 것인지? 유울(幽鬱)이 혹 보고되지 않았는지? 구차히 아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먼저 응지(應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마공.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八月 九日 癸亥

- 甲寅八月初九日卯時，上御誠正閣。……上曰，濟州前正言康聖翊，部將朴重煥入侍。
【出榻教】 賤臣承命出傳，與聖翊等，偕入進伏。上曰，聞汝有老親，故特遞臺職下送矣。
何聞發程耶？聖翊曰，三四日內，當下往矣。上命仁浩曰，給馬下送也。命退，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8월 9일(계해)

- 제주(濟州) 전 정언(正言) 강성익(康聖翊)과 부장(部將) 박중환(朴重煥) 입시(入侍)하여 임금과 논의함
- 갑인년 8월 초9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전 정언(正言) 강성익(康聖翊)과 부장(部將) 박중환(朴重煥)을 들게 하라.”라고 하였다. 【榻교(榻敎)를 냄】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어 전교를 내었다. 강성익 등이 더불어 다 들어와서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노친(老親)에 대해 들었다. 그러므로 특별히 대직(臺職)으로 벼슬을 갈라 내어 하송(下送)하였다. 어떻게 발정(發程)하라고 들었는가?”라고 하였다. 강성익이 아뢰기를, “3, 4일 안에 당장 내려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홍인호(洪仁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말을 내어 내려보내라.”라고 하였다. 물러나라고 명하자.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강성익, 박중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八月 十一日 乙丑

- 以全羅監司李書九狀啓, 長興府漂還人等問情馳啓, 而濟州牧使沈樂洙, 初不詳審, 經先登聞, 令攸司稟處事, 傳于尹致性曰, 許久不還, 認生爲死, 是豈牧使之罪? 論罪一款, 分揀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8월 11일(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품처(稟處)에 관한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
-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 장흥부(長興府) 표환인(漂還人)들의 문정(問情)치계(馳啓), 그리고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가 처음에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먼저 등문(登聞)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한 일을 윤치성(尹致性)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것은 차마 살아서도 죽은 것이 이 어찌 목사의 죄이겠는가? 죄를 논하는 한 조항을 분간(分揀)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八月 十三日 丁卯

- 南公轍, 以吏兵曹言啓曰, …… 濟州推恩老人三百七十三, 偕老老人八十四. ……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8월 13일(정묘)

- 제주(濟州) 추은(推恩) 노인과 해로(偕老) 노인의 수에 관한 보고
- 남공철(南公轍)이 이조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제주(濟州) 추은(推恩) 노인(老人)은 373인이고, 해로(偕老) 노인은 84인입니다. 〈중략〉 감히 아뢴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추은 노인, 해로 노인.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八月 十七日 辛未

- 洪仁浩, 以兵曹言啓曰, …… 濟州閑良韓繼休, 遭故闕服, 而越海之際, 時日急迫, 不得赴試. …… 直赴殿試二十二人內, 韓道裕等二十一人遭故, 濟州韓繼休, 以越海之致, 未及上來, …… 初無會試・殿試之區別, 竝勿施,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8월 17일(신미)

- 제주(濟州) 한량(閑良) 한계휴(韓繼休)의 부시(赴試)에 관한 병조의 계
- 홍인호(洪仁浩)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제주(濟州) 한량(閑良) 한계휴(韓繼休)는 상(喪)을 만나 결복(闕服)하고, 바다를 건널 때 시일이 급박하여 부시(赴試)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는 22인 안에, 한도유(韓道裕) 등 21인은 상을 만났고, 제주 한계휴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략〉. 처음부터 회시(會試)와 전시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물시(勿施)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한량, 한계휴, 부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八月 二十三日 丁丑

- 李庚運, 以兵曹言啓曰, 部將朴重煥呈狀內, 素有風病, 而竭蹶上京之餘, 宿症添劇, 實難供職, 屢屢乞遞矣. 今此除職, 出於軫念濟州人之盛意, 而渠之實狀既如此, 則有難強令察任, 改差, 何如? 傳曰, 允. 分付給鋪馬下送,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8월 23일(정축)

□ 부장(部將) 박중환(朴重煥)의 정장(呈狀)에 관한 병조의 계

- 이경운(李庚運)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부장(部將) 박중환(朴重煥)의 정장(呈狀)안에, 본래 풍병(風病)이 있어서, 힘을 다하여 빨리 달려서 상경하는 말미에, 숙증(宿症)이 첨극(添劇)하여, 실로 직무를 보기 어려워서 누누이 갈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이 제직(除職)으로, 제주인(濟州人)을 진념(軫念)하신 성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놈의 실상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억지로 직임을 보살피게 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포마(鋪馬)를 내주어 내려가게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부장, 박중환, 정장, 제주인.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日 甲午

- 金啓洛啓曰, 卽見濟州牧使沈樂洙狀啓, 則跋辭末端, 添入病狀, 語涉屑越, 事極未安, 原狀啓, 係是邊情, 雖不得不捧入, 而該牧使不可無警, 從重推考, 何如? 傳曰, 狀語只陳舉行實狀, 亦不可謂屑越, 願入玉門之情, 昔人所道, 何靳於今? 差代交龜, 自致冬春之際, 亦未可謂乍往旋遞, 該牧使沈樂洙, 特爲許遞. 月前聞於筵臣, 萊伯之病亦然, 屢呈備局云, 而大臣則無論濟牧·萊伯, 尙無所奏. 近來廟務之積滯有如此, 問于廟堂, 如果然矣. 與濟牧竝令遞擬其代,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0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에 관한 김계락(金啓洛)의 계
- 김계락(金啓洛)의 계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를 즉시 보니, 발사(跋辭)의 말단에, 병상(病狀)을 첨입(添入)하여, 말이 설 만한 데 관계되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원장계(原狀啓)는 이것이 변정(邊情)에 관계된 것이라, 비록 봉입(捧入)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해당 목사는 경칙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장어(狀語)는 단지 거행한 실상을 아뢴 것이어서, 또 설월(屑越)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옥문(玉門)의 정(情)에 들이기를 원했는데, 옛 사람이 말한 바를 어찌 지금이라고 인식하겠는가? 차대(差代)⁴⁶⁶하여 교귀(交龜)⁴⁶⁷하고, 절로 동춘(冬春)에 이를 때, 또한 잠시 가서 바로 체직하였으니, 해당 목사 심낙수를 특별히 허체(許遞)하여 월전(月前)에 경연관에게 들으니, 내백(萊伯)의 병 또한 그리하니, 여러 번 비국(備局)에 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대신은 곧 제주목사·동래부사를 논하지 말고, 오히려 아뢴 것이 없다. 근래 묘무(廟務)가 적체(積滯)된 것이 이와 같으니, 묘당에 물어도 만약 그럴 것이다. 제주목사와 더불어 모두 그를 대신하여 체직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제목.

466) 차대(差代):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를 뽑아 채움.

467) 교귀(交龜):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겨 주고받고 하는 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一日 乙未

○ 備邊司薦望, 以曹命楫爲濟州牧使.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1일(을미)

□ 조명집(曹命楫)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에서 천망(薦望)하기를, 조명집(曹命楫)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고 하였다.

△ 주제어: 조명집, 제주목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一日 乙未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 琉球國漂海人, 問情馳啓事, 傳于金啓洛曰, 觀此狀辭, 不待稟處, 旱路順付, 可知其無例. 然十一人之漂流, 而生存者四人, 雖欲覓舡裝送, 其能生還, 未可必到此, 前例有無, 不足說, 人命所關, 果何等至重乎? 藉使生存者只是一二人, 則亦可給船放海乎? 具由事狀, 別定齎官, 入送北京, 指路福州, 似合交隣國重人命之義. 況今使行不遠, 若能星火知委, 及期押來, 亦或順付於使行, 使行入去時率去, 則抵彼綽可周旋, 勿論如此如彼, 從旱路依願還送爲好, 令承文院問于在城內都提舉及原任大臣草記, 待批下三懸鈴, 分付道臣及牧使處.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1일(을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관해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유구국(琉球國) 표해인(漂海人)의 문정(問情)을 치계(馳啓)한 일에 대하여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이 장사(狀辭)를 보건대, 품처(稟處)를 기다릴 것도 없다. 육로로 돌아가는 인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11인이 표류하다가 생존한 자가 다만 4인인데, 비록 배를 구해 실어 보내더라도, 능히 생환(生還)하여 반드시 이곳에 도착할지 모른다. 전례가 없지 않아 족히 말할 수가 없다. 인명에 관계되는 것은 과히 어떻든 지극히 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령 생존한 자가 다만 한두 사람인데 또 배를 주어 바다에 내칠 수 있겠는가? 일의 상황을 갖추어 쓰고 공문을 가지고 갈 관원을 따로 정하여 북경(北京)에 들여보내어 복주(福州)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웃 나라를 사귀고 인명을 중히 여기는 의리에 합당할 듯하다. 더구나 지금 사행(使行)이 멀지 않았으니, 만약 빨리 통지하여 제때 압송해 와 사신이 가는 편에 따라가게 한다면 저곳에 이르러 넉넉히 주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한로(旱路)를 따라 원하는 대로 환송(還送)하는 것이 좋겠다. 승문원에 명하여 성안에 있는 도제거(都提舉)와 원임 대신들에게 물어보게 하여 초기(草記)하고 비하(批下)한 세 현령(懸鈴)을 기다려서, 도신(道臣)과 목사에게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유구국, 표해인.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一日 乙未

○ 沈晉賢, 以承文院公事提調意啓曰, 濟州牧使沈樂洙狀啓, 琉球國漂海人問情馳啓事, 傳曰, 觀此狀辭, 不待稟處, 旱路順付, 可知其無例. 然十一人之漂流, 而生存者四人, 雖欲覓舡裝送, 其能生還, 未可必到此, 前例有無, 不足說, 人命所關, 果何等至重乎? 藉使生存者只是一二人, 則亦可給舡放海乎? 具由事狀, 別定齋官, 入送北京, 指路福州, 似合交隣國重人命之義. 況今使行不遠, 若能星火知委, 及期押來, 亦或順付於使行, 使行入去時率去, 則抵彼綽可周旋, 勿論如此如彼, 從旱路依願還送爲好, 令承文院問于在城內都提舉及原任大臣草記, 待批下三懸鈴, 分付道臣及牧使處, 命下矣. 依下教問議于在城內都提舉及原任大臣, 則都提調臣洪樂性以爲, 琉球漂人之從其願陸路還送事, 聖教至當. 好生之大德, 恤遠之盛念, 遍及於海外殊邦, 雙擎莊誦, 伏不勝欽仰攢頌之至. 至於順付節使之行, 事勢尤極便當, 依下教即速舉行, 實合事宜云. 領中樞府事臣蔡濟恭以爲, 天地之大德曰生, 既知其從水路則必死, 從旱路則可生, 而特以區區前例之無以考據, 勒令驅送於有死無生之地者, 是豈天地之德乎? 狀啓判付, 與天地同其仁, 欽頌之外, 寧容他議? 使行未發之前, 能及與未及, 難以預定, 及則事尤便順, 不及則別遣齋官之外, 似無他道云. 行判中樞府事臣朴宗岳以爲, 臣伏讀判付, 交隣國重人命之德意, 與天地同其大, 區區前例有無, 不足論也. 但使行之期, 只隔一朔, 一朔之內, 候風率來, 有未可知. 若不及, 則別定齋官入送, 恐合似宜云. 行判中樞府事臣金憲以爲, 臣只仰交隣國重人命之聖意, 出尋常萬萬, 不敢更容他議云. 都提調臣李秉模以爲, 漂人由陸之願, 諒非獲已, 情甚可矜, 而遍考謄錄, 既無可據之例, 在下舉行, 只當諭以事理, 候風發送, 而伏奉狀啓判付, 德音曠蕩, 與天同大, 欽仰感頌之外, 更何敢容議? 雖以大國言之, 琉球同在執壤之列, 似不以無於例之例, 有所持疑, 若及使行, 則實爲渠輩萬幸, 如其不然, 則定齋官入送, 恐合事宜云矣, 敢啓. 傳曰, 知道. 自本院星火知委, 期於兩使行渡江前, 順付. 十月舶, 趕其往當如還, 嚴飭道伯, 勿使踰期, 如或過時, 定齋官押付於使行所到處, 可也. 【止】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1일(을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狀啓)에 관한 승문원의 계

○ 심진현(沈晉賢)이 승문원 공사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狀啓)에, 유구국(琉球國) 표해인(漂海人) 문정(問情) 치계(馳啓)

의 일로 전교하기를, ‘이 장사(狀辭)를 보건대, 품처(稟處)를 기다릴 것도 없다. 육로로 돌아가는 인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11인이 표류하다가 생존한 자가 다만 4인인데, 비록 배를 구해 실어 보내더라도, 능히 생환하여 반드시 이곳에 도착할지 모른다. 전례가 없지 않아 족히 말할 수가 없다. 인명에 관계되는 것은 과히 어떻든 지극히 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령 생존한 자가 다만 한두 사람인데 또 배를 주어 바다에 내칠 수 있겠는가? 일의 상황을 갖추어 쓰고 공문을 가지고 갈 관원을 따로 정하여 북경(北京)에 들여보내어 복주(福州)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이웃 나라를 사귀고 인명을 중히 여기는 의리에 합당할 듯하다. 더구나 지금 사행(使行)이 멀지 않았으니, 만약 빨리 통지하여 제때에 압송해 와 사신이 가는 편에 따라가게 한다면 저곳에 이르러 넉넉히 주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쿵 저러쿵할 것 없이 한로(旱路)를 따라 원하는 대로 환송하는 것이 좋겠다. 승문원에 명하여 성안에 있는 도제거(都提舉)와 원임 대신들에게 물어보게 하여 초기(草記)하고 비하(批下)한 세 현령(懸鈴)을 기다려서, 도신과 목사에게 분부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도제거와 원임 대신들에게 물어보니, 도제거 신 홍낙성(洪樂性)은 말하기를 ‘유구국에서 표류하여 온 사람들의 소원대로 육로로 돌려보내는 것은 전하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과 먼 곳의 사람들도 구출해 주는 전하의 훌륭한 생각에는 흠모하고 우러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절을 축하하러 가는 사신 편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신 채제공(蔡濟恭)이 하기를, ‘천지의 큰 덕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며, 이미 뱃길을 따르면 반드시 죽고 한로(旱路)를 따르면 반드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구하게 전례에 없는 것을 구구(考據)하니, 능력(勅令)으로 죽음만이 있고 살길이 없는 처지로 내쫓아 보낸 것은 이 어찌 천지의 덕이겠습니까? 장계의 판부(判付)와 천지의 어짊과 같은 것으로 여겨, 흠송(欽頌)하는 외로 어찌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행(使行)이 아직 떠나기 전이니, 능히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미리 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미치면 일이 더욱 편순(便順)해지고, 미치지 않으면 재궁(齎官) 밖으로 따로 보내는 것이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행 판충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이 말하기를, ‘신이 판부를 읽건대, 이웃 나라를 사귀고 인명을 중히 여기는 덕의가 천지의 덕의와 그 크기가 같을 것이니, 구구히 전례도 다름이 없을 것으로 족히 놀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행하는 기회가 한 달이 떨어져 있으니, 한 달 안에 후풍(候風)해서 솔래(率來)하는 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치지 않았으면 따로 재자관(賚咨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두렵게도 마땅할 것 같다.’라고 하였

습니다. 행 판중추부사 신 김희(金喜)가 아뢰기를, ‘신은 단지 이웃 나라를 사귀고 인명을 중히 여기는 성의(聖意)를 우리르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감히 다시 다른 의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도제조 신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표인(漂人)이 육로를 경유하기를 원하여, 진실로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사정이 매우 가금(可矜)합니다. 그러나 등록(謄錄)을 두루 살펴보니, 이미 증거할 만한 예가 없으므로, 아래에서 거행한다면 단지 마땅히 사리에 의거 개유하여, 후충(候風)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계 판부(判付)를 받드니, 덕음(德音)이 광탕(曠蕩)이 하늘처럼 커서, 흠억덕송(欽仰感頌)하는 것 외에, 다시 어찌 감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대국(大國)을 말하자면, 유구는 집양(執壤)의 예로 같이 있고, 전례에 없지 않은 것이기에, 망설일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사행(使行)에 미쳐서는 실로 저들은 만행(萬幸)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재관(齎官)을 정해서 들여보내야 하니, 상의 합당한 것인지 두렵다고 하여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본원에서 빨리 통지하여 두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편에 따라가게 하도록 하라. 10월에는 박초풍(舶趠風)이 부니, 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도백에게 엄히 신칙하여 기일을 넘기지 말도록 하되 만약 기일을 넘기게 되면 공문을 가지고 갈 관원을 정하여 사행이 도착한 곳에 압송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유구국, 표해인.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二日 丙申

○ 備邊司薦望, 以李禹鉉爲濟州牧使.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2일(병신)

□ 이우현(李禹鉉)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 천망(薦望)에, 이우현(李禹鉉)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는다고 하였다.

△ 주제어: 이우현, 제주목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二日 丙申

- 有政. 吏批, 判書李致中進, 參判洪明浩進, 參議未差, 行左承旨沈晉賢進. 以沈煥之 · 金履成 · 尹致性爲承旨, 以李顯默爲副校理, 以白仁煥爲敦寧都正, 兼養賢庫主簿單, 鄭晚錫, 兼執義李顯默減下, 濟州牧使單, 李禹鉉.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2일(병신)

- 이우현(李禹鉉)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단부(單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判書)에 이치중(李致中)을 나아가게 하고, 참판(參判)에 홍명호(洪明浩)를 나아가게 하고, 참의(參議)는 차정하지 않았다. 행좌승지(左承旨)에 심진현(沈晉賢)을 나아가게 하고, 심환지(沈煥之) · 김이성(金履成) · 윤치성(尹致性)을 승지로 삼았다. 이현묵(李顯默)을 부교리(副校理)로 삼고, 백인환(白仁煥)을 돈녕도정(敦寧都正)으로 삼고, 겸 양현고(養賢庫) 주부(主簿)로 정만석(鄭晚錫)을 단부(單付)하고, 겸 집의(執義) 이현묵을 감하(減下)하고,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이우현(李禹鉉)으로 단부(單付)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단부.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二日 丙申

○ 傳于金啓洛曰, 新除授濟州牧使, 催促下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2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하송(下送)에 관해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함

○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새로 제수한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최촉(催促)하여 하송(下送)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二日 丙申

- 領議政洪樂性筭曰, 伏以臣伏見濟州牧使望簡所下傳教, 伏不勝悚惶萬萬, 靡所容措, 臣衰聵日甚, 事事顛錯, 廟薦事體何等審慎, 而尹範紱之方在拿命中者, 全未覺察, 昧然檢擬, 致勤聖教, 臣之昏謬之失, 至此益著, 無所逃罪. 伏乞聖明, 亟降威罰, 治臣不審之罪, 以嚴公格, 以安賤分焉, 取進止. 答曰省筭具悉卿懇勿辭, 安心視事. 仍傳曰, 此批答, 遣史官傳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2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망통(望筒) 전교(傳敎)에 관한 홍낙성(洪樂性)의 계
-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엿드려서 신(臣)이 제주목사(濟州牧使) 망통(望筒)을 내린 전교(傳敎)를 즉시 보니, 황송하기가 그지없고 용신(容身)할 데가 없습니다. 신의 쇠외(衰賸)가 날로 심해져서, 일하는 것마다 전착(顛錯)되어, 묘당에서 추천한 사체(事體)가 어찌하였든 살피고 삼갔으나, 윤범서(尹範紱)는 바야흐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매연(昧然)하게 검의(檢擬)하여, 엄절한 성교(聖敎)를 내리게 하는 노고를 끼쳐드렸습니다. 신이 혼미하여 그르쳐서 이에 이르러 더욱 나타났으니 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엿드리건대, 성명(聖命)께서는 빨리 위벌(威罰)을 내려 신이 살피지 못한 죄를 다스리십시오. 공격(公格)을 엄하게 하여, 천한 분수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경(卿)은 간절히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일을 보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여 말하기를, “이 비답(批答)을 사관(史官)에게 남기고 전유(傳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망통, 전교.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五日 己亥

- 甲寅九月十五日卯時，上御誠正閣. …… 秉模曰，廟薦法意甚重，而今番濟州牧使·東萊府使議薦時，諸堂中不薦者甚多，竝推考。東萊府使議薦中，以時在罪謫之人，混入薦記，尤是不察，該堂從重推考，何如？上曰，依爲之。【出學條】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5일(기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의천(議薦)에 관해 논의함

- 갑인년 9월 1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묘천(廟薦)의 범의(法意)는 매우 중한 것인데, 이번 제주목사(濟州牧使)·동래부사(東萊府使)를 의천(議薦)할 때, 여러 당상 가운데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으니, 모두 추고(推考)해야 합니다. 동래부사의 의천 중에, 당시 죄적지인(罪謫之人)이 있는 사람을 혼입(混入)하여 천기(薦記)한 것은 더욱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해당 당상을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의천.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七日 辛丑

- 沈煥之啓曰, 卽見濟州牧使沈樂洙狀啓, 則首尾言病, 極爲猥屑, 萬萬未妥. 原狀啓係是民事, 雖不得不捧入, 而該牧使不可無警,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7일(신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狀啓)에 관한 심환지(沈煥之)의 계
- 심환지(沈煥之)가 계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장계(狀啓)를 즉시 보니, 수미(首尾)에 언병(言病)하여, 지극히 외설스러워서 만만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장계(原狀啓)는 민사(民事)와 관계된 것이라, 비록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해당 목사는 경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종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七日 辛丑

- 備忘記, 濟州牧使李禹鉉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7일(신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하직(下直)함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하직(下直)하자,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통아(筒兒) 1개(箇)를 사급(賜給)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하직.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七日 辛丑

○ 甲寅九月十七日卯時，上御誠正閣。大臣·備局有司堂上，濟州牧使同爲入侍時，行左承旨沈晉賢，假注書申星模，記注官金良倜·承膺祚，領中樞府事蔡濟恭，右議政李秉模，有司堂上沈頤之尹行恁，濟州牧使李禹鉉，以次進伏訖。濟恭等曰近則夜氣寒涼，聖體若何。上曰，一樣矣。濟恭等曰，王大妃殿氣候，何如？上曰，近則差勝矣。濟恭等曰，惠慶宮氣候，何如？上曰，一樣矣。上曰，以濟州民事，昨欲詢問，而夜深未果，今始召接也。濟恭曰，昨見狀本，甚驚矣。上曰，全羅一道，皆是歉荒，而沿海諸邑，尤甚云，島民陸民，無兩便之道，將奈何。濟恭曰，輸送之路，臣雖未見其形止，而羅里鋪濟民倉穀物之近萬輸送時，萬軍之勞動已悶，而畢竟穀縮，又徵於陸民者，尤豈不難乎？上曰，右相之意，何如？秉模曰，島中穡事之悶，已無可言，而以狀本見之，十月前以麥爲糧，其後則與不農同，穀物不可不許，而非穀爲難，輸送爲難。上曰，島民若不往哺，則此何異於推而納之大洋之中乎？秉模曰，二去癸巳年已例冊，在閣外。上曰，兼春秋出去持來，可也。良倜承命出，持年例冊跪進。上命晉賢讀，晉賢伏讀訖。上曰，濟州則以皮牟代錢，自是國典，不用折米，雖以癸巳已例見之，前後往哺，幾近二萬石，則豈皆折米乎？上曰，湖南穀簿，大凡幾何，而盡在何處？頤之曰，麥則二十萬石，而布在於沿海列邑矣。上曰，近來穀簿，何以知之？秉模曰，種子亦不可不給矣。上曰，大風之餘，百穀披靡，民情遑遑，而反風之後，或有一分回蘇之道乎？此則倖望也。上曰，癸巳已例，亦與今年同，其時沿海邑，亦皆設賑矣。秉模曰，如此歉歲，雖一包，極艱矣。爲新牧者，亦必盡心，而渠或不然，陸民之受困，固不暇言，而重溟之外，其害尤重，將嚴飭下送矣。上曰，新牧使足可堪任，若不善治，豈敢越海而還乎？濟恭曰，俄聞戶判言，則新牧得人云矣。上曰，其爲金海·蔚山也，或爲善治云矣。濟恭曰，島中之民，當癸巳大無，仰哺朝廷，得以生活，至今仰頌先朝爲民之聖德矣。上曰，古則往往逢歉，今則年年爲歉，古則或爲設賑，近則無歲無賑，上天警告，已極忱畏，而生民濟活，豈不悶迫乎？上曰，近來或以爲，明年卽慶年不可設賑云，是豈成說乎？慶禮則待麥秋或待秋設行亦無妨，而以慶停賑，斷無是理矣。秉模曰，此濟州牧使沈樂洙狀啓也，以爲島中穡事，大有豐登之望矣。不意八月二十七、八日，東風大作，禾穀之爲風披離之外，海沫鹹水，如鹽沈菹，八九十歲老人，皆言二去癸巳年，有此災，今年又有此災云云。卽今民食，以夏間牟麥之稍登，姑無飢餒，而十月以後，勢將望哺於朝廷。若非折米二萬餘石船運，則無以排比還賑，卽令廟堂及時措畫，十月內限六七千石，先爲入送，其餘萬餘石，自正月連續到迫，然後庶不至盡劉爲辭矣。本島荇歉之餘，幸有豐登之望矣。意外被災，若是孔酷，言念民事，誠爲切悶。而今年湖南穡事，到處告歉，沿海諸邑，尤爲甚焉。許多運穀，實是沿民海夫不忍

之政，且以狀辭觀之，則差過數十日，可以收穫，而忽被此災云，其爲過半成實，可以推知。鹹沫飄灑，雖曰遍境，亦豈至於全無一粒之所收乎？二萬石請穀，遍考久近謄錄，非但無其例，雖以二去癸巳拔例優恤之德意，其所區劃，亦不過萬石。今此狀請，似由於病未巡野，不能詳審之致。該牧使推考狀本來到後，聖念憧憧，丙枕靡安，未明求衣，待曙召對，前席詢諮，既勤且摯，其在對揚之宜用優例。一依二去癸巳劃給之數，米牟租合一萬石，特爲區劃，分付道臣，以沿海有裕邑留庫中，從便裝載，五千石則趁十月內入送，餘數則限春初陸續運送，而新牧使今方下去，五千石先運時，不必別定差員，使新牧使領運入去，其餘船運定差員，依近例舉行，候風慎涉等節，各別嚴飭，發送及還泊形止，使之隨即狀聞，何如？上曰，領府事之意，何如？濟恭曰，耽羅全一道告歉，實爲可驚可矜，以聖上不欲使一夫不獲之盛德，必用拯溺救焚之政，臣固仰揣，而但念本道沿邑之被災，與耽羅別無異同，設有留儲穀物，便是飢民口吻中物，奪此與彼，既甚重難。且況穀物，非無胥而至者，必使衆民，擔負輸致，然後可以裝載，可以運送。如是之際，民亦勞止，曷可勝言？念島民之仰哺，則不遑他恤，顧陸民之困悴，則亦係不忍，天下事無兩美俱便，有如是矣。況請穀二萬，考之謄錄，前所未有的，右揆之警責牧使，烏能不然？雖然以狀啓觀之，則島民之得之則生，不得則死，可以遙度。依二去癸巳劃給之數，分冬春量宜船運，使新牧使盡心於還賑之間，仰體九重如傷若保之聖意，恐爲得宜矣。上曰，依爲之。湖南沿邑之旱災風損，爲害最甚，民情遑汲，如在目中，懸懸一念，寤寐如結。昨夜見濟州請穀之狀，島中災損，豈勝矜惻？數萬生靈之濟活，係此船粟一款，領府所奏中得之則生，不得則死云者，誠切實。陸民則猶有移轉之路，島民則無此，何以生乎？然則救島民爲尤急，依右相所奏，卽爲分付道伯，先劃穀物，付之新牧使，領運入去。各年前例，雖無二萬石劃給之時云，而觀於狀辭，似非過實之請，剋減折半，有所不忍。且況明年何年？濟活之政，尤合飾慶之道，初欲下送內帑錢椒，而聞新牧言，島中難以質遷云。其言亦然，本道常賦公貨，除留準五千包之數，特爲加劃名之曰內下賑需，以示朝家別給濟活之需者，出於爲明年所重之至意。令該牧使開春後應式後，別設一巡厚饋之。仍又宣諭朝家本意，使偃僂頷頤之類，北望鼓腹，知是殿宮恩澤。今則船粟之計已決，而如噎在喉，耿耿不置者，沿民之輸穀，船夫之運粟，而其所軫恤，若無拔例，豈可曰一視島陸乎？將此批答，另飭道伯，所以樂趨爭趨於運輸之際者，竭誠便宜舉行，具由狀聞。言念島氓之困苦，玉食何甘？常供雖重，宜有闊狹，本島獻御之物及凡係納于京司者，無論出於官出於民者，薦新所用外，一竝限明年麥秋蕩減，殿宮所進，既奉慈教，一體停免，越海之時，以祈利涉，亦出於爲民之苦心血誠。今番亦依年前已例，齋送香祝於牧使之行，行祭後發船，海於天地間，爲物最鉅，而自昔尤重於南海，爵次最貴，苟能牲肥酒香，齋誠虔祈，則不但一帆穩往，其還如往，將使歲歲豐和，多賴祝融之助。祭文當製下，嚴飭

牧使, 另加潔齋將事事, 行會, 可也. 【出學條】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7일(신축)

□ 탐라(耽羅)의 흉경(凶歉)과 구휼(救恤)에 관해 임금이 대신들과 논의함

○ 갑인년 9월 7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비국 유사 당상,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같이 입시했을 때, 행좌승지 심진현(沈晉賢), 가주서 신성모(申星模), 기주관 김양척(金良僔)·승응조(承膺祚),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유사 당상 심이지(沈頤之)·윤행임(尹行愐),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채제공(濟恭) 등이 아뢰기를, “근래에 밤기운이 차고 서늘한데 성체(聖體)는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채제공 등이 아뢰기를, “왕대비전(王大妃殿)의 기후(氣候)는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조금 나아졌도다.”라고 하였다. 채제공 등이 아뢰기를, “혜경궁(惠慶宮)의 기후는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민사(民事)에 대해 어제 물어보려고 했으나, 밤이 깊어서 물어보지 못했다. 지금 비로소 불러서 접했다.”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어제 장본(狀本)을 보고서 매우 놀랐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 한 도[全羅一道]가 모두 이와 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연해(沿海) 여러 고을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섬 사람이나 육지 사람이나 양쪽을 모두 편리하게 하는 방도가 없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말하기를, “수송(輸送)하는 길에 있어서, 신이 비록 아직 그 형지(形止)를 보지 못했으나, 나리포(羅里鋪) 제민창(濟民倉)의 곡물(穀物)을 근래에 만행으로 수송(輸送)할 때, 만군(萬軍)의 노동은 이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필경 곡축(穀縮)이 되고, 또한 물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이는 것도 더욱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右相)의 뜻은 어떤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섬 안 농사에 대한 걱정은 이미 이를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본을 보건대, 10월 전에는 보릿고개에 양식으로 삼았으나, 그 뒤에는 더불어 농사지는 것과 같지 않아서, 곡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곡식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고 수송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사람들이 만일 보내어 구제하지 않으면 이 어찌 큰바다 가운데에 밀어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병모가 아뢰기를, “전전 계사년(1713)에 이미 성책한 예가 합외(閣外)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겸춘추(兼春秋)가 나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양척(金良弼)이 명을 받고 나가서 연례책(年例冊)을 가지고서 꿰어앉아 올렸다. 임금이 민진현(閔晉賢)에게 명하여 읽으라고 하니, 진현이 엎드려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는 곁보리[皮牟]로 대전(代錢)하는 것이 국전(國典)이니, 절미(折米)⁴⁶⁸를 쓰지 말고, 비록 계사년(1713)에 이미 있는 예를 보건대, 앞뒤로 보내어 구제한 것이 거의 2만 섬이 되니 어찌 모두 절미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湖南)의 곡부(穀簿)는 크기가 무릇 얼마나 되고 다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보리는 20만 섬이고, 연해 여러 고을에 널리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의 곡부는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종자(種子)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큰바람이 분 나머지 백곡(百穀)이 마구 쓰러져서, 민정(民情)이 황황(遑遑)한데, 도리어 바람이 지나간 뒤에 혹 한 푼이라고 회소(回蘇)할 도리가 있겠는가? 이는 곧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사년(1713)의 이례(已例)도 더불어 올해와 같았다. 그때 연해 고을도 다 설진(設賑)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이와 같은 겸세(歉歲)에는, 비록 한 포대의 쌀이라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새 목사가 된 자도 반드시 마음을 다해야 하나, 저곳은 혹 육지 백성의 수곤(受困)과 같지 않으니, 참으로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밖은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니 장차 엄한 칙교를 내려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새 목사는 족히 임무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찌 감히 바다를 건너서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갑자기 호판(戶判)의 말을 들으니, 새 목사를 득인(得人)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김해(金海)와 울산(蔚山)에 주임해서는 혹 잘 다스렸다고 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섬 안 백성들은 당연히 계사년(1713)에 크게 양포(仰哺)하지 않았다면 조정에서 구제하여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선조(先朝)가 백성에게 베푼 성덕(聖德)을 앙송(仰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왕왕(往往) 흉년을 만났으나, 요즘에는 해마다 흉년을 만나고 있다. 예전에는 혹 설진하였으나, 근래에는 재앙이 없고 진휼하지 않는 해가 없도다. 임금이 하늘에 경고(警告)했으나, 이미 매우 두려워서, 생민(生民)을 제활(濟活)하는 것이

468) 절미(折米): 조선 시대에, 공물 따위를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어찌 민망하고 절박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혹 했는데, 명년(明年)에는 경사스러운 해라 설진(設賑)할 수가 없다고 하니, 이
 것이 어찌 말이 되는 것이겠는가? 경례(慶禮)는 맥추(麥秋)를 기다려서, 혹 가을
 을 기다려서 설행하는 것도 무방하도다. 그러니 경사(慶事)로 정진(停賑)하는 것
 은 단연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의 장계(狀啓)입니다. 섬 안의 색사 농사를 생각하자면,
 크게 풍년이 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 27일과 28일에 동
 풍이 강하게 불어서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가 나무끼는 것이 마치 나뭇잎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이 짓밟히고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바다
 의 잔물에 마치 김치를 담근 것같이 절여졌습니다. 80, 90세 되는 노인들도 모
 두 이르기, ‘전전 계사년에 이런 재해가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런 재해가 있
 다.’라고들 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식량은 여름철에 보리가 조금 풍년이 들
 어 우선 굶주림은 면할 수 있으나 10월 이후에는 형세가 장차 조정에 먹을 것
 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쌀로 쳐서 2만여 섬을 배로 실어 보내지 않는
 다면 백성들이 장차 다 죽을 것입니다. 곧바로 묘당에 명하여 제때에 조처하게
 하여 10월 안으로 6, 7천 섬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 나머지 1만여 섬은 정월부
 터 계속 도착하게 한 연후에야 죽는 것을 서서 바라보는 데 이르지 않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이 섬이 흉년이 든 나머지 다행히 풍등(豐登)할 가망이 있었습니
 다. 경외(意外)와 재해를 입은 것이 이와 같이 매우 혹독하니, 백성의 일을 생각
 하노라면 진실로 절박하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올해 호남의 색사(穡事)가 도처
 (到處)에서 고점(告歉)하는데 연해 여러 고을이 더욱 심합니다. 허다한 운곡(運
 穀)은 실로 연민(沿民)과 해주(海夫)가 차마 못하는 정사입니다. 또한 장사(狀辭)
 를 보니, 수십일을 어긋나고 잘못되어, 수확(收穫)할 수 있었는데, 홀연히 이런
 재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의 과반이 성실(成實)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
 다. 함말(鹹沫)과 표쇄(飄灑)가 비록 두루 경내에 미쳤다고 해도 어찌 일립(一粒)
 을 수확하는 바가 전무하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2만 섬의 곡식을 청한 것은
 멀고 가까운 등록(騰錄)을 두루 살펴봐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비
 록 전전 계사년에 특례로 넉넉하게 구휼해 준 덕의로써 보더라도 그때에 나누어
 준 것도 1만 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장청(狀請)은 병이 들어서 아진 전야(田
 野)를 돌지 못하고 잘 살피지 못한 정사에서 말미암은 것 같습니다. 해당 목사
 를 추고(推考)한 장본이 내도(來到)한 뒤에, 성념(聖念)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잠
 자리가 편하지 않고 새벽에 옷을 찾아 입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소대(召對)
 하니, 전석(前席)에서 순자(詢諮)하니, 이미 나와서 극진하였으니, 대양(對揚)을

선양하는 데 있어 우례(優例)로 쓸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전전 계사년에 나누어 준 수량에 따라 쌀과 보리를 합하여 1만 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도백에게 명하여 연해의 넉넉한 고을의 창고 속에 남아 있는 것을 편의대로 배에 실어 보내되 5천 섬은 10월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나머지 수량은 초봄까지 계속 실어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목사가 이제 막 내려가니, 5천 섬을 선운(先運)할 때, 반드시 특별히 차원(差員)을 정하지 않고, 새 목사로 하여금 배를 통솔하여 들어가게 하고, 그 나머지 배로 운반하는 것은 차원(差員)을 정하여 근례(近例)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순풍을 기다려서 조심하여 건너가도록 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떠나보내도록 하며, 도착한 뒤에는 일의 전말을 그로 하여금 도착하는 즉시 장계로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탐라(耽羅) 온 섬의 흉년을 고하자면 실로 놀랍고도 괴로워할 만합니다. 성상(聖上)이 일부(一夫)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 하려는 성덕으로 반드시 구분증닉(救焚拯溺)하는 정사를 써야 합니다. 신이 물론 짐작합니다만, 다만 본도(本道)의 연해 고을들의 피해도 제주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설사 창고에 곡물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곧 굶주린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인데 여기 있는 것을 빼앗아 저기에 준다는 것은 이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곡물은 반드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등에 저서 나르게 한 뒤에야 배에 실을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백성들 또한 수고로움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섬 백성들이 먹을 것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돌볼 겨를이 없으나 육지의 백성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면 또한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일은 두 아름다운 일을 다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곡식을 청한 것이 2만 섬인데 등록을 상고하여 보아도 전에 없는 숫자입니다. 우의정이 목사를 경책하였으니, 어찌 능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장계를 보건대 그러하더라도 섬 백성은 얻게 되면 살 것이고, 얻지 못하게 되면 죽을 것이니, 가히 멀리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전 계사년(1713)에 나누어 준 수량에 따라 겨울과 봄철로 나누어 적당하게 헤아려서 배로 실어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목사로 하여금 환자 곡식을 내주어 진흙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마치 자식처럼 정성껏 보살펴 주는 성상의 뜻을 우리러 체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대로 하라. 호남의 연안 고을들이 가뭄과 강풍의 재변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하다. 백성들의 황급함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하고 오로지 이 생각이 마음에 걸려 자나 깨나 맺혀 있는 듯하다. 어젯밤에 제주목사가 곡식을 청한

장계를 보았는데 섬 안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어찌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주는 것이 이 배로 곡식을 실어다 주는 한 가지 일에 달려있는 것이다. 영부사가 상주한 ‘이것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한 것이 진실로 절실한 말이다. 육지의 백성들은 그래도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섬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하니 섬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욱 급하다. 우상이 아뢴 대로 곧 도백에게 분부하여 먼저 곡식을 나누어 새 목사에게 주어 운반선을 통솔하고 들어가게 하라. 각 년의 전례에 비록 2만 섬을 나누어 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계의 내용을 보면 사실보다 지나치게 청한 것은 아닌 듯하니, 각박하게 절반을 줄인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바가 있다. 더구나 내년은 어떤 해인가. 구제하여 살려주는 정사가 더욱 경사를 장식하는 도에 부합될 것이다. 처음에는 내탕(內帑)의 돈과 호초(胡椒)를 내려주고자 하였으나 새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 섬 안에서는 그것으로 곡식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 말하는 것도 그러하니, 본도의 정해진 부세와 공화(公貨)에서 5천 포대의 수량을 덜어 두었다가 거기에 특별히 어느 정도 수량을 보탠 뒤 대궐에서 내려주는 구제 물품이라고 하여 조정에서 특별히 주는 구제 물품이 내년에 있을 경사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목사에게 명하여 봄이 온 뒤에 정해진 법식 외에 별도로 한 번 순행하여 후하게 음식을 먹이면서 조정의 본의가 허리 굽고 부황 든 무리들로 하여금 북쪽으로 대궐을 향하여 배를 두드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선유하고, 이것이 자전과 자궁의 은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배에 곡식을 실어 보내는 데 대한 계획이 이미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목이 메인 듯이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한 것은 연안 백성들이 곡식을 나르고 뱃사람들이 곡식을 운반하는 것이니, 진흙하는 데에 특례가 없다면 어찌 섬과 육지를 한결같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장차 이러한 비답을 가지고 특별히 도백에게 신칙하여 운반할 때에 기꺼이 달려 나가고 앞을 다투어 나서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정성을 다하여 편의대로 거행하고 사유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라. 섬 백성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흰 쌀밥이 어떻게 입에 달 수가 있겠는가. 상례로 바치는 공물이 비록 중 하나 마땅히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본 섬에서 상에게 바치는 물건 및 경사(京司)에 바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관청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나 막론하고 천신(薦新)하는 데 쓰는 것 외에는 일체 내년에 보리가 익을 때까지 탕감해 주도록 하라. 자전과 자궁에 바치는 것도 이미 하교를 받았으니, 일체 모두 정지시키고 면제하도록 하라. 바다를 건널 때에 잘 건너도록 비는 것도 백성을 위한 고심과 혈

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에도 연전의 전례에 따라 향과 축문을 목사가 가는 편에 보내어 제사를 지낸 뒤에 배를 띄우도록 하라. 바다는 천지 사이에서 가장 크며 예로부터 남해를 더욱 소중히 여겨왔다. 벼슬의 등급이 가장 귀한 사람이 만약 살찐 희생과 향기로운 술을 가지고 재계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히 빌면 비단 한 척의 배가 무사히 갈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도 갈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해마다 풍요롭고 화락하게 함에 있어서도 축융(祝融)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 제문을 마땅히 지어서 내려보내고 목사에게 엄히 신칙하여 특별히 정결하게 재계하고 나서 제사를 받들도록 하라고 한 일을 행회(行會)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탐라, 제주, 제주목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十七日 辛丑

○ 甲寅九月十七日午時，上御重熙堂。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南公轍，記事官鄭文始，記注官金良倜·承膺祚，檢校直提學徐有防，以次進伏訖。上命書傳教曰，民事不可緩，則況近日憧憧之時乎？昨日濟州民事狀啓，爲其不緊請推，不但無端遲滯，付之無識中官入啓，更鼓遲滯，幾至於明發待朝，政院事極爲駭然，坐直下位承旨遞差，近日則一番狀啓，一番請推，便成謬例，如是之際，承傳色持來淹滯，當該承旨，一竝查出遞差，已遞職者，爲先從重推考。此後設有問備之事，狀啓付司謁，措辭先入，請推從後爲之事，載之該房故事。上教有防曰，有何可達之事乎？有防曰，御衣褂事體莫重，故凡造成之時，筵桌出舉條例也。而近來則入侍時，只爲提稟，不出文跡者，事體未安。至於進御耳掩與衣褂，亦無異同，此後則一依古規，恐合事宜。遠遊冠耳掩之昨年新造者，纔經今番夏潦，已多有頽處，臣職在提舉，不善董飭，其典守之罪，誠不勝惶恐，而今則十月在近，不可不趁卽新造，以此分付戶曹，使之依例進排，何如？上曰，依爲之。自今蠹損處，庫庫修補，而係是令前，今番則不謹典護之郎官，一竝推考，此後當年內蠹損，當該夏節入直官員，其冬殿最，以下考施行，可也【出舉條】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17일(신축)

□ 제주(濟州)의 농사에 관해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함

○ 갑인년 9월 17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동부승지 남공철(南公轍), 기사관 정문시(鄭文始),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검교 직제학 서유방(徐有防)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농사일은 늦출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근일(近日)에 동동(憧憧: 빈번)할 때는 오죽하랴? 어제 제주(濟州) 민사(民事)에 대한 장계(狀啓)에, 그것이 긴급하지 않은데도 청추(請推)한 것은 비단 무단(無端)으로 지체(遲滯)할 수 없는 것이다. 불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중관(中官)이 입계(入啓)하였으나, 경고(更鼓)⁴⁶⁹가 지체(遲滯)되어, 거의 날이 밝아서 조회를 기다리는 때에 이르렀는데도, 승정원의 처사는 매우 놀랍도다. 좌직(坐直) 하위(下位)가 승지를 체차(遞差)할 때, 근일에는 1번으로 장계하고, 1번으로 청추하였으니, 잘못된 전례가 생

469) 경고(更鼓): 밤의 시각을 알리기 위해서 치는 북. 하룻밤을 5경(更)으로 구분하여 초경(初更)·2경·3경·4경·5경이라고 하고, 이 때가 바뀔 적마다 북을 쳐서 알림.

겨서 이와 같은 때에 승전색(承傳色)이 가지고 와서 엄체(淹滯)하였으니, 당연히 해당 승지를 모두 사출(查出)하여 체차(遞差)한 것을 이미 체직(遞職)한 자는 우선 중중(從重)하여 추고(推考)하라. 이후에 설령 문비(問備)할 일이 있더라도, 장계를 사알(司謁)에 붙이고, 조사(措辭)를 먼저 들이고, 청추한 것을 나중에 한 것을 좇아서 이를 해방(該房)의 고사(故事)에 기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유방(有防)에게 전교하기를, “무엇을 가달(可達)할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유방이 아뢰기를, “어의대(御衣櫛)는 사체(事體)가 막중(莫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조성(造成)할 때에, 연품(筵稟)으로 거조(擧條)의 예를 내었는데, 근래에는 입시했을 때 단지 제품(提稟)하고, 문적(文跡)에 내지 않은 것은 사체가 미안(未安)한 것입니다. 이엄(耳掩)과 의대(衣櫛)를 진어(進御)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고 같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한결같이 옛 규례대로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원류관(遠遊冠)과 이엄(耳掩)을 작년에 신조(新造)한 것은 겨우 이번 여름 장마철이 지나서, 이미 여러 곳에 탈이 났습니다. 신의 직(職)이 제거(提擧)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수(典守)하는 것을 잘 신칙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참으로 하여 참으로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10월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진즉(趁卽)에 신조(新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호조에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진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지금부터 좀 먹은 곳 곳곳을 수보(修補)하게 하라. 그러나 이 영(令)이 있기 전인, 이번에는 전호(典護)에 힘쓰지 못한 낭관(郎官)을 한결같이 모두 추고하고, 이후에는 당년(當年)에 좀 먹으면 당해(當該) 하절(夏節)에 입직(入直)한 관원을 그 겨울의 전최(殿最)에 하고(下考)로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민사.

❖ 乾隆 五十九年 甲寅 九月 二十五日 己酉

- 以鄭取善囚單子，傳于洪義浩曰，鄭取善事，多有莫曉者，製雖不工，講亦如許者，萬萬痛駭。冬節不遠，冷獄非可論，府內保囚，限三冬四書三經中一書式能講後，姑放應試，如不純通，更囚，雖至來年純通前勿放，以懲渠處事甚礙眼之習，如是下教之後，又不知懼依舊不悛，則當奪其紅牌，削其科第，濟州牧水軍充定，令牧使捧講純通，然後狀聞，給其牌復其榜，命令當信，此豈一時飭勵之教乎？以此分付，近日所謂經學不爲留意之輩，觀勢亦當用此律，俾各知畏，無敢放心。

❖ 정조 18년(1794) 갑인년 9월 25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수군(水軍) 충정(充定)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정취선(鄭取善)을 가둔 단자(單子)로서 홍의호(洪義浩)에게 전교하기를, “정취선의 일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점이 있다. 글을 지었으나 비록 공교하지 못하고, 강(講)도 이와 같은 점은 만만으로 통해(痛駭)하다. 추운 겨울이 머지 않았는데, 냉옥(冷獄)은 논할 바가 못 된다. 부내(府內) 보수(保囚)는 세 겨울을 기한으로 하여 사서삼경(四書三經) 가운데 한 서식을 능히 강하게 한 뒤에, 잠시 석방하여 응시하게 하였는데 마치 순통(純通)⁴⁷⁰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갱수(更囚)가 비록 내년(來年)에 이르도록 순통하기 전에는 물방(勿放)해야 한다. 저놈을 징계하여 처리하는 일은 매우 애안(礙眼)하는 습속이니, 이와 같이 하교한 뒤에, 또한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옛날처럼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 홍패(紅牌)를 빼앗고, 그 과제(科第)에서 빼버리고, 제주목(濟州牧)의 수군(水軍)으로 충정(充定)하게 하고, 목사가 봉강(捧講)하게 하여 순통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여, 그 패(牌)를 주고 그 방(榜)을 복원하게 하라. 명령은 신용이 있어야 하니, 이 어찌 일시에 칙려(飭勵)하는 교시를 내리겠는가? 이것으로써 분부하여 근일(近日)에 소위 경학(經學)을 유의(留意)하지 않는 무리배들의 세를 보고도 당연히 이 율을 써야 한다. 더하여 각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감히 방심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수군, 충정.

470) 순통(純通): 1) 거를 보거나 서당에서 글을 외울 때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純)·통(通)·약(略)·조(粗)·불(不)의 다섯 등급에서 최우등의 점수를 말함. 2)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一日 乙卯

- 傳于洪大協曰, 近以耽羅船粟事, 夙宵一念耿耿, 而該道尙無一言皁白, 道伯睡耶, 醉耶? 此時民事, 所委畀道伯, 則卿之舉行, 節節駭悖, 方命之律未勘, 緩事之罪又發, 以若所爲, 畀若一方, 其何以弛九重之思乎, 何間裝穀, 何間發船, 而新牧使果已接面乎? 亦或別遣偏裨, 送于島中, 詳探民情事勢乎? 況有禱海神之命, 祝文當親撰, 則領運日期, 不爲枚舉狀聞者, 亦豈成說乎? 以此意下諭于完伯, 使之一一條對.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1일(을묘)

□ 탐라(耽羅)의 선속(船粟)에 관한 임금의 전교

- 홍대협(洪大協)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탐라(耽羅)의 선속(船粟)에 관한 일을 밤낮으로 자나 깨나 생각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도(該道)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는데 도백(道伯)은 줄고만 있단 말인가? 취해 있는 것인가? 이때의 민사(民事)는 도백에게 위임한 바이니, 경(卿)이 거행한 것은 일마다 해괴하다. 바야흐로 사형에 처하는 형률이 끝나지 않았고, 일을 늦춘 죄가 또 일어났으니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만약 일방(一方)으로 주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여 구중(九重)의 생각을 풀어헤칠 것인가? 어느 때 장곡(裝穀)하고, 어느 때 발선(發船)했는지, 새 목사는 과연 이미 접면(接面)했는가? 또한 혹 특별히 편비(偏裨)를 보내어, 섬 안으로 보내어, 민정(民情)을 자세하게 살피니 사세(事勢)가 어떤가? 하물며 해신(海神)에 기도하라는 명이 있고 축문(祝文)도 당연히 친찬(親撰)하니, 영운일(領運日)을 기약하고, 매거(枚舉)하여 장문(狀聞)하지 않은 것도 어찌 말이 되는가? 이런 뜻을 완백(完伯)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일일이 조목조목 대답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선속.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日 丙辰

- 以全羅監司李書九狀啓, 濟州移轉各穀, 罔夜裝發事, 傳于洪義浩曰, 觀此完伯狀本, 船粟之期已定, 登海之日亦選, 卜吉於旬三而分排整待云. 自今至還泊, 無非宵衣旰食之時, 此時爲船民島民, 何以表此心而寓此誠乎? 祝幣香封, 當趁期下送, 而初欲使新牧使, 行祭發船矣. 更思似涉取便, 近侍中有因事行遣於裝發地方者, 渠罪雖無狀, 使渠戴罪贖罪, 則其所盡心, 必有勝於牧守. 前承旨兼檢校直閣徐榮輔投畀, 特爲分揀, 卽令遍行裝載地方, 察其民瘼, 審其穀物, 領至船所發運. 仍又駕海至祭海之所, 爲獻官齋沐將事然後, 知一帆穩行, 旋即還朝後, 命所過沿邑, 慰諭民人, 細詢民隱以來事, 令廟堂, 星火分付道臣, 亦令政院, 下諭于獻官處, 而祭海及發船日期, 更令雲觀提舉, 看詳下送事, 分付.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일(병진)

□ 제주(濟州) 이전곡(移轉穀)에 관해 임금이 전교함

-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狀啓)에 있는, 제주(濟州) 이전(移轉) 각곡(各穀)은 주야를 가리지 말고 장발(裝發)하는 일에 대해 홍의호(洪義浩)에게 전교하기를, “이것에 대한 완백(完伯)의 장본(狀本)을 보니, 선속(船粟) 기일은 이미 정해지고, 등해(登海)하는 날도 잡아서, 순삼(旬三)에 복길(卜吉)하여 분배(分排)하여 정대(整待)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환박(還泊)할 때까지 소의한식(宵衣旰食)⁴⁷¹할 때가 없지 않아서 배에 곡식을 싣는 날을 이미 정하였고 바다에 제사 지내는 날도 길일을 가려서 13일로 정하였으며 모든 것을 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배가 정박할 때까지 한동안 염려하지 않을 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때 바닷가 백성들과 섬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 마음을 나타내고 이 정성을 담아야 하겠는가. 축문과 폐백과 향을 봉하여 마땅히 기한에 맞춰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애초에는 새 목사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고 배를 출발시키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편리한 대로만 하려고 한 듯하다. 근시의 신하 중에 일로 인하여 쌀을 실어 내는 지방에 보낼 자가 있으니, 그로 하여금 죄를 진 채로 속죄하게 한다면 그 마음을 다하는 바가 반드시 목사보다 나은 점이

471) 소의한식(宵衣旰食): 소한(宵旰).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 후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비유.

있을 것이다. 전 승지 겸 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를 귀양보내는 것을 특별히 분간하여서 즉시 쌀을 실어 내는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의 폐단을 살피고 곡물을 조사한 뒤 배가 떠나는 곳까지 운반을 감독하게 하라. 이어서 또 바다를 건너가 바다에 제사 지낼 곳에 이르러 헌관이 되어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받든 연후에 뱃길이 내내 편안하거든 즉시 조정으로 돌아와 복명하되, 지나온 연해 고을의 백성들을 위유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상세히 물어 오도록 하라고 한 일⁴⁷²)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도신(道臣)에게 분부하고 또한 정원(政院)에게 영을 내려 헌관(獻官)이 있는 곳에 하유하고, 제해(祭海)하고 발선(發船) 일기(日期)는 다시 운관제거(雲觀提舉)에게 영을 내려, 간상(看詳)하여 하송(下送)할 일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전곡.

472)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1794) 10월 2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三日 丁巳

○ 兵曹啓目, 粘連巨濟州等邑軍器修補沈鎭等論賞, 自下不敢擅便, 上裁教是白乎旆, 帥臣之羅將防給, 至於登聞, 雖出於不欲掩其勞之意, 而事體所在, 未免屑越. 該帥臣申大顯, 推考, 何如? 判付啓, 回啓得體, 依此施行爲旆, 請賞之狀, 署經於大臣, 自是格例, 則廟堂之見此猥雜之陳聞, 無所可否者, 甚爲訝惑. 除良, 因民訴請褒於臨歸之時者, 不但駭然, 防役名色, 尤何敢無端登徹? 戎垣新名, 屬耳乙仍于, 姑爲十分參酌, 當該帥臣, 爲先拿問處之, 以礪國綱. 兩鎭論賞一款段置, 亦爲勿施爲良如教.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3일(정사)

□ 제주(濟州)의 군기 수보에 관한 병조의 계목

○ 병조의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거제(巨濟)와 제주(濟州) 등 고을의 군기(軍器)를 수보(修補)한 심인(沈鎭) 등을 논상(論賞)하는 것은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상께서 재결하시어 수신(帥臣)의 나장(羅將)이 방급(防給)하여, 등문(登聞)하는 것이 비록 그 노고를 가리려는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의 체모로 볼때 경솔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해당 수신인 신대현(申大顯)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자, 판부하기를 “회계(回啓)는 체모를 얻었으니 이에 따라 시행하며, 청상(請賞)하는 장계는 대신(大臣)에게 서경(署經)하게 하는 것이 원래의 규례이니, 묘당(廟堂)이 이 난잡한 내용의 진문(陳聞)을 보며 가타부타하지 않는 것이 매우 괴이하고 의심스러울 뿐더러 백성들의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통해 백성들의 청송을 호소하는 것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방역(防役)⁴⁷³의 명색(名色)이 더욱 어찌 감히 아무런 까닭 없이 올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겠는가? 용원(戎垣)의 신명(新名)이 속이(屬耳)⁴⁷⁴한 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심분(十分) 참작(參酌)하여, 마땅히 해당 수신을 우선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고, 나라의 기강(國綱) 날카롭게 세워서 두 진을 논상하는 일관(一款)도 또한 시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다.

△ 주제어: 제주, 군기 수보.

473) 방역(防役): 백성들이 부역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立役)을 면제받는 일.

474) 속이(屬耳): 귀를 기울여 정성스럽게 들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三日 丁巳

○ 甲寅十月初三日卯時, 上御誠正閣. 大臣·有司堂上·觀象監提調入侍時, 行都承旨趙尙鎮, 右承旨尹致性, 右副承旨洪大協, 假注書具得魯, 記注官承膺祚, 記事官吳泰曾, 判府事朴宗岳, 有司堂上沈頤之, 觀象監提調閔鍾顯, 以次進伏訖. 上敎鍾顯等曰, 近以沿民事, 一念憧憧, 明發不寐, 特召卿等矣. 輸粟濟州, 行將發船, 但設祭日子太近, 未知十三日外, 更無吉日耶? 鍾顯曰, 更爲推擇, 則十七日十九日俱吉於行祭發船矣. 上曰, 然則兩日間, 使獻官從便設行事, 行會, 可也. 命頤之讀親製祭文訖. 上曰, 日字甚忙, 便同口呼, 卿等之所見, 何如? 宗岳曰, 韓愈以其文章, 能致鱗魚之徙海, 雲漢之章, 豈敢與比於此而殿下至誠之德意, 謁然溢於文外, 必致船運之利涉矣. 上曰, 如能利涉, 可謂萬幸, 文章何論? 惟以方寸之誠, 庶望有助矣. 宗岳曰, 燕行雇車之弊, 反有甚於從前雇馬之弊, 臣欲行到義州, 爛熳商議, 從長狀聞矣.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3일(정사)

□ 제주(濟州)의 수속(輸粟)에 관해 임금이 전교함

○ 갑인년 10월 초3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유사당상·관상감 제조가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조상진(趙尙鎭), 우승지 윤치성(尹致性), 우부승지 홍대협(洪大協), 가주서 구득로(具得魯),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판부사 박종악(朴宗岳), 유사당상 심이지(沈頤之), 관상감 제조 민종현(閔鍾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민종현 등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연민(沿民)의 일로써 마음속에 한결같이 근심이 되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이워서, 특별히 경들을 불렀다. 제주(濟州) 수속(輸粟)에서, 가는데 장차 발선(發船)할 때, 단지 설제(設祭)하여 일자(日子)가 거의 가까이 되었으니, 13일 외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다시 길일(吉日)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종현(鍾顯)이 아뢰기를, “다시 추택(推擇)하니 17일, 19일이 다 길일이어서 행제하여 발선하였 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즉 양일 사이에 헌관(獻官)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설행할 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심이 지에게 명하여 친제(親製)한 제문(祭文)을 읽으라고 하고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일자가 매우 바쁘니, 편한 대로 함께 구호(口呼)하니, 경들의 소견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박종악이 아뢰기를, “한유(韓愈)는 그 문장(文章)으로서, 능히

악어(鰐魚)가 바다로 옮기는 것에 이른 것이고, 운한(雲漢)의 장(章)⁴⁷⁵에서 어찌 감히 더불어 이것과 비유하고 전하의 지극한 정성의 덕의 애연(謁然)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문외(文外)에 차서 반드시 선운(船運)이 이섭(利涉)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능히 이섭하게 되면 만행(萬幸)이라 할만하니, 문장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마음의 정성으로 거의 도울 가망이 있겠도다.”라고 하였다. 박종악이 아뢰기를, “연행(燕行)하는 고거(雇車)의 폐는 도리어 종전에 고마(雇馬)하는 폐단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신이 의주(義州)에 가려고 하면, 난만(爛熳)하게 상의(商議)하여 긴 장문(狀聞)을 따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수속.

475) 운한(雲漢):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여왕(厲王)의 난정(亂政)의 뒤를 이어 잘 다스리려는 뜻을 품고 재변(災變)을 당해서 두렵게 여겨,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아서 재변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였다는 시(詩)로서, 《시경(詩經)》〈대아(大雅)〉〈탕지습(蕩之什)〉 ‘운한장(雲漢章)’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음.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十一日 乙丑

- 洪大協, 以兵曹言啓曰, 去二月二十三日日本曹草記, 濟州閑良高宅信, 禁旅口傳以入事, 批旨內, 知道. 渠是重溟絕海之人, 卿於每朔朔試射或宣傳官射會時, 試小布及柳葉箭, 二中則草記付初試, 三中則直付殿試之意, 草記奉承傳可也事, 命下矣. 高宅信, 今日慕華館堂下武臣朔試射時, 使之赴試, 而柳葉箭邊二中, 小布二中入格, 依傳教付初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 初試帖文, 卽令政院成給, 後次連爲更試, 三中然後, 卽爲草記,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11일(을축)

□ 제주(濟州) 한량(閑良) 고택신(高宅信)의 사시(射試)에 관한 병조의 계

- 홍대협(洪大協)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 2월 23일 본조(本曹) 초기(草記)에, 제주(濟州) 한량(閑良) 고택신(高宅信)이 금려(禁旅)의 구전(口傳)으로 들어오게 할 일을 담은 비지(批旨) 안에,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본시 증명절해(重溟絕海)의 사람으로, 경(卿)이 매달 삭시사(朔試射)⁴⁷⁶에서, 혹 선전관(宣傳官) 사회(射會) 때에, 천으로 만든 과녁을 쏘는 것과 유엽전(柳葉箭)에서 이중(二中)하면 초기에 초시(初試)를 덧붙이고, 삼중(三中)하면 전시(殿試)에 직부(直付)하게 할 뜻으로, 초기에 승전(承傳)을 받드는 것이 좋겠다는 일을 명하였습니다. 고택신은 오늘 모화관(慕華館) 당하(堂下)에서 무신(武臣) 삭시사(朔試射) 때, 그로 하여금 부시(赴試)하게 하였으나, 유엽전은 변이중(邊二中)하고, 소포(小布)는 이중하여 입격하여, 전교(傳教)에 따라 초시에 부치게 할 뜻으로 감히 아뢴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초시의 첩문(帖文)은 즉시 정원(政院)에게 성급(成給)하게 하고, 후차(後次)에 연이어 갱시(更試)하게 하고, 삼중한 뒤에는 즉시 초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한량, 고택신.

476) 삭시사(朔試射): 매월 초하루에 실시하던 궁술 시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十二日 丙寅

- 傳于洪大協曰, 朝廷有筵教, 使之行會, 已爲消詳措辭乎? 候風發船, 意或在於所安或楸子島. 向於監發之教, 雖有駕海等句語, 今聞當於古達島發船云. 然則於發船所行祭後, 待其發船復路, 以此分付檢校直閣徐榮輔處. 而近於湖南沿邊民事, 最所寤寐耿耿, 閣臣旣銜命在沿邑, 方其所宣諭念念之意, 詳探莫達之情, 其敢一毫泛忽乎? 仍將見聞後, 還朝後一一敷奏. 而古人猶有發倉矯制者, 況惶急處民情之鎮安乎? 昨下傳教之施惠於三南者, 果已見之而到處曉諭乎? 如有當施未施而有難遲待還朝者, 須以意見論理, 星大登聞. 行過雖似迂路, 被災若云最甚, 除騶率周行巡視, 備說安集之策, 細諭蠲免之利, 無使一民轉而之他事, 更令廟堂, 三懸鈴一體分付.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12일(병인)

□ 추자도(楸子島) 발선에 관해 임금이 홍대협(洪大協)에게 전교함

- 홍대협(洪大協)에게 전교하기를, “조연(朝廷)에서 연교(筵敎)⁴⁷⁷가 있었는데, 그로 하여금 행회(行會)하여, 이미 소상(消詳)히 조사하였는가? 후풍(候風)하고 발선(發船)할 곳으로는 생각에 혹 소안(所安)에 있거나, 혹 추자도(楸子島)에 있거나 할 것이니, 지난번 출발을 감독하라는 전교에서 비록 바다를 건너가라는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다. 지금 들으니, 마땅히 고달도(古達島)에서 배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배에서 제사를 행한 뒤에 그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려 돌아오도록 하라. 이것을 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에게 분부하라. 그리고 근래 바닷가 백성들의 일에 대해서 자나 깨나 가장 근심하고 있다. 각신이 이미 명을 받고 연로의 고을에 있으니, 그가 나의 근심 걱정하는 뜻을 선유하고 진달되지 못한 민정(民情)을 상세히 탐문하는 데에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조정에 돌아온 후에 일일이 아뢰도록 하라. 옛사람은 오히려 황제의 명을 사칭하면서까지 창고를 열어 기민을 구제해준 자도 있었는데, 하물며 황급히 민정을 진무하여 안정시킴에 있어서랴. 어제 전교하여 삼남에 은택을 시행한 것을 과연 이미 보고 곳곳마다 효유하였는가? 예컨대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늦추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모쪼록 자신의 의견을 사리에 맞게 논하여 성화같이 아뢰도록

477) 연교(筵敎): 임금이 연석(筵席)에서 내린 교지(敎旨).

하고, 지나는 길이 비록 멀리 돌러오는 길인 듯하여도 재해를 만약 가장 심하게 입었다고 하면 추솔(騶率)들을 놔두고 두루 다니면서 순시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백성들을 반드시 안집시킬 대책을 갖추어 말하고, 견감해 줄 이익을 상세히 효유하여 한 사람이라도 전전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한 일을 다시 묘당에 영을 내려 삼현령(三懸鈴)⁴⁷⁸에게 모두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478) 삼현령(三懸鈴): 급한 공문(公文)을 보낼 때 피대(皮袋)에 방울 셋을 다는 것.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五日 己巳

- 傳于南公轍曰， 以檢校直閣徐榮輔， 爲全羅道康津·海南·長興·靈巖·興陽·珍島等邑慰諭使，耽羅船粟祭神日也。監視領運，於其還路，往之諸邑，慰諭民衆曰，此去南溟，千里以遙，耿耿一念，來往周復者，誠以滌場後災形，道啓或欠挈領，臺疏猶近隔鞞，里里村村之民情物色，終無以得其詳，予寢之不安于枕者久矣。是月十三日，卽耽羅運穀祭神汎舟之日，齋誠默禱，惟去利涉。…….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15일(기사)

- 탐라(耽羅)의 선속(船粟)과 제신일(祭神日)에 관한 임금의 전교

- 남공철(南公轍)에게 전교하기를, “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를 전라도 강진·해남·장흥·영암·홍양·진도 등 고을의 위유사(慰諭使)로 삼는다. 탐라(耽羅)로 가는 배에 곡식을 싣고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에 운반하는 것을 감시한 뒤 그 돌아오는 길에 여러 고을에 가서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위유하라. ‘천 리나 떨어진 이 남쪽 바다에 대해 아득히 잊지 못하는 일념으로 왕래하며 구휼하는 것은, 진실로 바람이 쓸고 간 뒤의 재해를 입은 정상에 대해 감사의 장계로는 혹 요점을 알 수 없고 대간의 상소도 오히려 헛다리를 짚는 듯하므로, 마을과 동네마다 민정과 물색에 대해 끝내 그 상세한 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니, 내 잠을 자도 편치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달 13일은 바로 탐라로 곡식을 운반하기 위해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배를 띄우는 날이다. 정성껏 재계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은 오직 바다를 무사히 잘 건너는 것에 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 선속, 제신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一日 乙亥

- 以濟州移轉穀發運時，海神祭獻官徐榮輔狀啓，海南縣所載移轉各穀看審馳啓事，傳于李儒慶曰，船隻齊到，趁期裝載，爲耽羅望哺之民情，何等多幸？其間已爲發船，亦已行祭，還到沿邑慰諭乎？待其慰諭，每邑各以形止及民情登聞事，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1일(을해)

- 제주(濟州) 이전곡(移轉穀)의 발운(發運)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제주(濟州) 이전곡(移轉穀)을 발운(發運)할 때 해신제(海神祭)의 헌관(獻官) 서영보(徐榮輔)의 장계(狀啓)에, 해남현(海南縣)에서 배에 실은 이전 각곡(各穀)을 간심(看審)하여 치계(馳啓)한 일에 대해, 이유경(李儒慶)에게 전교하기를, “선척(船隻)이 재도(齊到)하여, 기일 전에 장재(裝載)하게 하여, 탐라(耽羅)가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되니 어떻든 다행인 것인가? 그 사이에 이미 발선하고, 또 이미 행제했으니, 도로 연읍(沿邑)에 이르러 위유(慰諭)했는가? 그 위유하는 것을 기다려서, 매 고을에서 각기 형지(形止)와 민정(民情)에 대해 등문(登聞)하게 할 일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이전곡, 발운.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一日 乙亥

- 以全羅監司李書九狀啓，琉球國漂人問情事，傳于李儒慶曰，琉球國漂人之無事渡海可幸。島中適有解語之通事，能爲問情，此後次次訓誨，別設料窠，各別勸課之意，分付牧使事，回諭。當該通事李益青，待其上來，令該曹別爲施賞。昔則琉球人，往來於我國，我國亦知彼音矣。近來不然，所謂濟州入去之譯學，爲無用之物。今番則令譯院，另定年少聰敏之人，領至灣上，或彼中學其言語，如有未盡條件，琉球朝貢之年，更爲入送，翻解音韻事，令都提學知悉。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1일(을해)

□ 제주(濟州)의 유구국(琉球國) 표인(漂人) 문정(問情)에 관한 임금의 전교

-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에, 유구국(琉球國) 표인(漂人) 문정(問情)의 일에 대해 이유경(李儒慶)에게 전교하기를, “유구국 표인이 무사하게 바다를 건넌으니 다행이라 할만하다. 섬 안에 마침 해어(解語)하는 통사(通事)가 있어서, 능히 문정하고, 이후에 차차 훈회(訓誨)하게 하고, 특별히 요과(料窠)를 내어, 각별하게 권과(勸課)할 뜻을 목사에게 분부할 일을 회유(回諭)하라. 당연히 해당 통사 이익청(李益靑)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서, 해조(該曹)에서 특별히 시상하게 하라. 예전에 류구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고 가고, 우리나라도 저들의 말을 알고 있다. 근래에 그렇지 않아도, 제주(濟州)에 들어간 역학(譯學)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었고도다. 이번에는 역원(譯院)에 특별히 나이가 젊고 총민(聰敏)한 사람을 정하여 그들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게 하라. 혹 저들 속에 있게 하면 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진한 것이 있으면 유구에서 조공을 바치는 해에 다시 들여보내어 그 말의 음운을 번역하여 알게 할 일을 도제거(都提擧)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역학.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二日 丙子

- 以濟州牧使沈樂洙狀啓，三邑面里分等捧糶，分數停退，還分白給，限明年麥登，排巡磨鍊，不待回下，一邊發令，事涉擅便，惶恐待罪事，傳于洪義浩曰，判付內啓下備邊司爲旡，勿待罪事，令政院回諭。觀於狀辭，益知滌場後民情之一倍頓頷。嚴飭新牧使，船運穀物及已區劃外，更有不足者，往復道臣，加請事，行會爲良如教。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2일(병자)

- 제주(濟州) 세 고을 면리(面里)의 분등(分等) 봉적(捧糶) 정퇴(停退)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장계에, 세 고을 면리(面里)에서 분등(分等)한 봉적(捧糶)의 분수(分數)를 정퇴(停退)하고, 환곡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내년 보리농사철까지 순차(巡次)를 분배하여 마련하게 하되, 기다리지 말고, 한편으로는 명령을 내리면, 일이 제멋대로 처리될 것이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하는 일에 대해 홍의호(洪義浩)에게 전교하기를, “판부(判付) 내용을 비변사에 계하(啓下)하며, 대죄(待罪)하지 말 일을 정원으로 하여금 회유(回諭)하게 하라. 장계의 내용을 보건대, 바람이 쓸고 간 뒤로 백성들의 사정이 한층 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새 목사를 엄하게 신칙하여 배로 운송하는 곡물 및 이미 구획한 것 외에도 다시 부족한 것이 있거든 도신에게 연락하여 더 청하라고 한 일을 행회(行會)하도록 알리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세 고을, 분등 봉적.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二日 丙子

- 洪義浩,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濟州狀啓持來人五名, 各米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2일(병자)

- 제주장계(濟州狀啓)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쌀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진휼청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진휼청(賑恤廳)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에 따라서 제주장계(濟州狀啓)를 가지고 온 5명에게 각기 쌀 3말씩을 전례에 따라 나눠줄 뜻으로 감히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장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二日 丙子

- 甲寅十月二十二日辰時，上御重熙堂。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李儒慶，假注書韓致重，記注官金錫泰，記事官吳泰曾，以次進伏訖。上教儒慶曰，往畿營，勞問琉球國漂人也。命書傳教曰，濟州子弟之上來者，亦有承旨宣諭之舉，況異國漂人之生還者乎？至於琉球國人，昔有供職於我國者，而特授摠管，以寶劍差備近侍，此不過二百年前事。今來漂人，其在懷柔之意，別示顧恤，於義爲可。承旨一員，待其住接館所，往至畿營，與道臣眼同慰問，饋以酒食，優給底身之物。仍命書判付訖。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2일(병자)

□ 유구국(琉球國) 표인(漂人)의 위문에 관해 임금과 대신들이 논의함

- 갑인년 10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동부승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한치중(韓致重), 기주관 김석태(金錫泰), 기사관 오테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이유경에게 전교하기를, “경기감영[畿營]에 가서, 유구국 표인(漂人)을 위문하라.”라고 하였다.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자제들이 올라올 때도 승지가 나가서 선유(宣諭)를 거행하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이 오는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유구국 사람들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벼슬을 한 사람도 있었다. 특별히 총관(摠管)의 벼슬을 주어 보검직(寶劍職)과 차비직(差備職)으로 근시하게 하였으니, 이는 불과 2백 년 전의 일이다. 이번에 오는 표류하여 온 사람들에게도 회유하는 뜻에서 특별히 돌봐 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의리에 가할 것이다. 승지 한 명은 그들이 관소에 머물게 되기를 기다려 경기감영에 가서 감사와 함께 위로하여 주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몸을 가릴 물건을 넉넉하게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⁴⁷⁹⁾ 임금이 명하여 판부(判付)를 쓰게 하는 것이 끝났다. 물리나라고 하자, 승사(承史)가 차례로 물리났다.

△ 주제어: 유구국, 표인, 제주.

⁴⁷⁹⁾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1794) 9월 11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三日 丁丑

- 以濟州牧移轉穀發運時海神祭獻官徐榮輔狀啓, 長興等四邑移轉穀所載船領發事, 傳于李儒慶曰, 觀此狀辭, 可謂祥飈送颿, 利泊越岸, 可以推知. 爲水陸之民, 萬萬欽幸, 計其程道, 爾之紙[祇]受別諭及綸音, 當在復路之後, 依別諭還途, 遍審遍諭乎? 勿以復命濡滯爲念. 益殫靡監之義, 期令實惠下究, 諸島難以遍察處必有之. 爾之帶去軍官訓練副正具絳, 特差宣傳官, 爾其知悉. 使渠遍諭諸島, 而爾於上來之時, 沿路詳察民情, 一一慰諭. 至湖沿逶迤內外浦, 一體慰諭以來, 若於足未遍踏處, 分送宣傳官慰諭, 依湖南例爲之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3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이전곡(移轉穀)을 발운(發運)에 관해 임금이 전교함
- 제주목(濟州牧) 이전곡(移轉穀)을 발운(發運)할 때 해신제(海神祭) 헌관(獻官) 서영보(徐榮輔)의 장계로, 장흥(長興) 등 네 고을 이전곡을 실은 배를 영발(領發)하는 일 등에 대해 이유경(李儒慶)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계의 말을 보건대, ‘상서로운 바람이 돛을 보내어 저 너머 해안까지 옮겨가 닿게 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바다와 육지의 백성들을 위하여 천만으로 다행스럽다. 그 여정을 헤아려 보니, 네가 별도로 유지한 것과 윤음을 받는 것이 당연히 길을 떠난 뒤 일 것이다. 별도로 유지한 것에 의하여 돌아오는 길에 두루 살펴보고 위유할 수 있겠는가. 복명이 지체될까 염려하지 말고 더욱 나랏일을 굳건히 살피는 의리를 다하여 기어이 실제적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라. 여러 섬들 중 두루 살펴보기 어려운 곳이 반드시 있을 텐데, 네가 데리고 간 군관 훈련원 부정(訓練院副正)인 구강(具絳)이 특별히 선전관으로 차임되었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그로 하여금 여러 섬을 두루 위유하게 하고 너는 올라 올 때에 연로의 백성들의 사정을 상세히 살펴서 일일이 위유하고, 호서 연해 지방의 구불구불한 내포와 외포에 이르기까지 일체 위유하고 오도록 하라. 만약 직접 두루 가보지 못하는 곳에는 호남의 예에 따라 선전관을 나누어 보내어 위유하라.⁴⁸⁰⁾’라고 한 일을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전곡, 발운.

480)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1794) 10월 23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三日 丁丑

○ 李儒慶,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沈樂洙災實分等狀啓, 則備陳三邑穡事歉荒之狀, 仍以爲通一島分爲三等, 則本州七十八里內, 稍實爲二十里, 之次爲二十六里, 尤甚三十二里, 大靜二十里旌義三十八里, 竝爲尤甚. 當捧新還中, 尤甚里, 十分九, 之次里, 三分二, 稍實里, 折半停退, 除番軍官身役, 折半停退, 奴婢貢米, 男丁大同米, 折半蕩減, 軍兵操鍊停止, 推奴徵債防塞, 營邑需米, 略略收捧, 抄其無依之類, 留接於各其邑公廨及或土窟, 以春間白給餘穀一百五十石及從他區劃百餘石, 分授各邑, 使之饋粥. 尤甚丐乞中, 有家戶不入於抄飢者, 以春間還分餘穀二百餘石及麥還餘穀二千餘石, 自今月計口還分, 先爲救活, 而各里饒民, 或有舊穀及貿米者, 計口繼糧外, 錄出餘穀, 分授各其統長, 爲補給之資, 而通三邑當爲付還者, 壯爲三萬七千九百十八口, 弱爲二萬四千七百八十口, 自十月限明年麥登, 先從丐乞之戶, 次次加付, 月三排巡, 則容入米當爲二萬二千二百餘石, 而本土穀留在者二千餘石, 新還當捧二千餘石, 當於種子公料, 狀請移轉穀限二萬石, 次次入來, 一島之民, 日日顚望. 而還上停退等事, 所當待狀請回下舉行, 海路漠無期限, 一邊舉行, 一邊狀聞, 事涉擅便, 惶恐待罪爲辭矣. 先舉行後狀聞, 自是本州之例, 所陳一併依狀請施行, 而不爲邑分等, 只爲里分等, 蓋由於俱爲尤甚之致, 而始稱分, 分爲三等, 有若邑分等而末乃只舉里分等者, 殊欠別白, 該牧使推考. 飢民之留接於公廨土窟者, 一處多聚, 則易生薰染之氣, 此是賑政之所戒, 使之切勿任置, 善爲分處. 饒民餘貯之分授統長, 雖似勸分, 本島事勢, 不可與陸地比論, 亦令從便接濟, 無論饒乏, 期於全保事, 嚴飭分付. 穀物之加請與否, 旣捧別下判付, 各別詳審, 俾無過不及之意, 一體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3일(정축)

□ 제주목(濟州牧)의 재실분등(災實分等)에 관한 이유경(李儒慶)의 계

○ 이유경(李儒慶)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즉시 보니, 세 고을 농사의 겸황(歉荒)의 상태를 갖춰 진달했는데, 한 섬을 통틀어 나누어 3등(三等)으로 삼았습니다. 곧 본주(本州) 78리 안에, 초실(稍實)은 20리이고, 지차(之次)가 26리이고, 우심(尤甚)이 32리입니다. 대정(大靜) 20리와 정의(旌義) 38리는 모두 우심이 됩니다. 당장 받아 들여야 할 신환(新還) 가운데 우심 마을이 10분의 9, 지차 마을이 3분의 2, 초

실 마을 절반(折半)을 정퇴(停退)해 주고, 제번(除番) 군관(軍官) 신역(身役) 절반(折半)을 정퇴해 주고, 노비(奴婢) 공미(貢米)와 남정(男丁) 대동미(大同米) 절반을 탕감해 주고, 군변(軍兵) 조련(操鍊)을 정지(停止)해 주고, 추노(推奴) 징채(徵債)를 방색(防塞)해 주고, 군영과 고을의 수미(需米)를 대략 받아들였습니다. 그 의지할 데 없는 무리를 뽑아 공해(公廩)나 토굴에 머무르게 해놓고 있으며 봄 사이에 그냥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 1백 50석과 다른 데서 떼어온 1백여 석을 가지고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죽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피해가 아주 심하여 빌어먹는데도 가호(家戶)가 있어서 기민을 뽑는 데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봄 동안에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곡식 2백여 석과 보리 환곡의 남은 곡식 2천여 석으로 올 10월 초부터 인구를 계산하여 환자로 나누어주어 우선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의 요민(饒民) 가운데 혹 구곡(舊穀)과 무미(貿米)가 있는 자는 계구(計口)하고 계량(繼糧)하는 것 외에, 나머지 곡식을 녹출(錄出)하여 각기 통장에게 나누어 주어, 보급(補給)하는 물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고을을 통틀어 환자를 주어야 할 자가 장정 37,918명이고, 노약자가 24,780명입니다. 10월부터 내년 보리가 익을 때까지 우선 빌어먹고 있는 가호부터 차차로 더 주어 한 달에 세 번씩 돌려가면서 배정할 경우에 들여와야 할 쌀이 2만 2천 2백여 석입니다. 본토의 곡식은 남아 있는 것이 2천여 석이고, 새로 받아들인 환곡이 2천여 석인데, 이것은 종자(種子)와 공미(公米)로 돌려야 합니다. 장계에서 옮겨줄 것을 청한 2만 석이 차차 들어오기를 온 섬의 백성들이 날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還上)를 정퇴(停退) 하는 등의 일은 마땅히 장청(狀請)을 가지고 회하(回下)하여 바로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 바닷길 아득하여 기한이 없으니, 한편으로는 거행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장문하게 해서, 제멋대로 처리될 일이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거행하고 나중에 장문(狀聞)하게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이 고을의 전례로, 일병(一併)으로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한 것을 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을을 분등하지 않고 단지 마을을 분등한 것은, 대개 갖추어 우심에 이른 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분등을 핑계로 나누어 3등(三等)으로 한 것은 고을 분등을 한 것과 같은 것이고, 끝에 단지 마을 분등을 든 것은 별도로 아뢴 것은 해당 목사를 추고해야 합니다. 기민(飢民)을 공해(公廩)와 토굴(土窟)에 유접(留接)하게 한 것은 한 곳에 많이 모이게 한 것이니, 전염병에 걸리기 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賑政)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니, 그로 하여금 절대로 맡겨 주지 말게 하고, 잘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요민(饒民)의 여저(餘貯)는 통장(統長)에게 분수(分授)해 주게 하는 것이 비록 권분(勸分)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섬의 사세

(事勢)가 육지와 더불어 비론(比論)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편한 대로 접제(接濟)하게 영을 내려, 요핍(饒乏)을 논하지 말고, 기어이 전보(全保)하게 할 일을 엄직하게 분부(分付)해야 합니다. 곡물(穀物)을 가청(加請)할지의 여부(與否)는 이미 별하(別下)한 판부(判付)를 받아들여, 각별하게 상심(詳審)하게 하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뜻으로 일체를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 정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三日 丁丑

- 甲寅十月二十三日辰時，上御重熙堂。同副承旨入侍時，同副承旨李儒慶，假注書洪樂浚，記注官金錫泰，記事官吳泰曾，以次進伏訖。上命書公事判付。上曰，昨見琉球國漂人乎？儒慶曰，臣出與畿伯，偕往新營，招致漂人三名于庭下，宣上德意，勞問漂泊遠來之狀，仍賜以衣袴，饋以酒饌。言語雖不能詳通，歡忻舞蹈，有感祝之意。因通事問王宮所在，通事指北而示曰，在此矣。漂人等，北望稽首合掌，如僧膜拜者四矣。上曰，濟州通事能通言語乎？儒慶曰，猶未能詳通矣。蓋其言語，多用倭語，而間雜漢語云矣。或書示文字，則其中一人，稍解平易字，而二人則蠢蠢無識，蓋其狀貌，頗似我國浦漢，在彼必是應役下賤矣。賜饌之時，偏食魚鮮，可知其海國之習性也。至於運匙游箸，無異我國人矣。上曰，椎髻乎？儒慶曰，髻如我國之制，而用錫長四五寸，直貫而少斜矣。額上若有綱巾之痕，故問其所以，則常用布帛裹頭，故然云矣。髻後髻鬆，而略用倭脂以塗貼矣。上曰，然則梳髮云乎？儒慶曰，臣未及問，而髮既不剃，則似當用梳矣。上曰，衣制，何如？儒慶曰，竝服我國所賜之衣，而外則著其國之服，用斑布作挾袖單衫，而其長曳地矣。聞其國袴制，至膝而止。故始著我國長脰之制，甚有喜悅之色。仍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3일(정축)

□ 유구국(琉球國) 표인(漂人)에 관해 임금이 신하들과 논의함

- 갑인년 10월 23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했을 때, 동부승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홍낙준(洪樂浚), 기주관 김석태(金錫泰), 기사관 오택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공사(公事)의 판부(判付)를 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유구국(琉球國) 표인(漂人)을 보았는가?”라고 하였다. 이유경이 아뢰기를, “신이 나가서, 기백(畿伯)과 더불어 함께 신영(新營)에 가서, 표인 3명을 정하(庭下)에 초치(招致)하고, 임금의 덕의(德意)을 베풀고, 표박(漂泊)하여 멀리 온 상황을 노문(勞問)하고, 이어서 의고(衣袴)를 주고, 주찬(酒饌)을 먹였습니다. 언어가 비록 상통(詳通)할 수는 없었지만, 무도(舞蹈)로 기쁘게 하고, 감축(感祝)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통사(通事)를 통해 왕궁(王宮)이 있는 곳을 물으니, 통사가 북쪽을 가리켜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표인들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보아서, 마치

합장하여 중이 막배(膜拜)⁴⁸¹를 하듯이 네 번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통사는 언어가 능히 통했는가?”라고 하였다. 이유경이 아뢰기를, “아직 능히 상통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그 언어가 왜어(倭語)를 많이 써서 간간이 한어(漢語)를 섞어 썼다고 합니다. 간혹 문자를 써서 보이니, 그 가운데 1인이 평이자(平易字)를 조금 이해하고, 2인은 미련한 무식자였습니다. 대개 그 상모(狀貌)는 자못 우리나라의 포한(浦漢)⁴⁸²과 같아서, 저들은 필시 역에 응한 하천(下賤)인 듯합니다. 사천(賜饌) 때, 어선(魚鮮)을 편식(偏食)하는 것으로 보아 해국(海國)의 습성(習性)일 듯합니다. 운시유저(運匙游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계(椎髻: 방망이 모양의 상투)를 했는가?”라고 하였다. 이유경이 아뢰기를, “상투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같으나, 주석을 쓰는데 길이가 4, 5마디가 됩니다. 바로 꿰어서 조금 빳깁니다. 이마 위는 망건(綱巾)의 흔적이 있으므로, 그 까닭은 물으니 늘 포백(布帛)으로 머리를 싸매서 그렇다고 합니다. 상투를 튼 뒤에 머리가 더부룩하여 간략히 왜지(倭脂)를 써서 칠하여 붙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니 소발(梳髮)라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유경이 아뢰기를, “신(臣)은 물어보지 않았으나 머리는 이미 깎지 않았으니, 당연히 빗을 쓰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옷 제도는 어떤가?”라고 하였다. 이유경이 아뢰기를, “모두의 옷은 우리나라에서 하사한 옷이어서, 밖으로는 그 나라의 옷을 입었으나 반포(斑布)를 써서 협수(挾袖)를 만든 단삼(單衫)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는 땅에 끌리게 합니다. 그 나라의 고제(袴制)를 들으니, 무릎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나라 장경지제(長脛之制)를 드러내어, 매우 기뻐하는 기색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승사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유구국, 표인, 제주.

481) 막배(膜拜): 남방 사람들이 절을 말할.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482) 포한(浦漢): 갯가에 살면서 고기잡이 따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月 二十四日 戊寅

- 甲寅十月二十四日午時, 上御誠正閣. 都承旨·戶·禮判·備局堂上入侍時, 行都承旨沈煥之, 假注書洪樂浚, 記注官金良倜, 記事官吳泰曾, 戶曹判書沈頤之, 禮曹判書閔鍾顯, 備局堂上趙鎮寬, 以次進伏訖. …… 上教頤之曰, 昨見濟州牧前牧使狀啓, 則有以賑恤事, 付之各其面里統長, 使之抄飢云云, 此似有見, 而未知如何. 頤之曰, 此似曾有之例矣. 日前見北伯金華鎮私書, 則亦以列邑統長抄戶之事, 有所議問, 臣亦以爲法甚便好, 而每事皆在於得人, 揀其統長, 亦當精詳任之之意, 答之矣. 上教鎮寬曰, 所輯冊子, 今幾成就, 而凡例猶未詳備, 卿其更詳訂定以入. 又以一件留置廟堂, 日後救荒之政, 使之按以行之, 可也.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0월 24일(무인)

□ 제주목(濟州牧)의 진휼(賑恤)에 관해 임금이 심이지(沈履之)에게 전교함

- 갑인년 10월 24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도승지·호조·예조판서·비국 당상이 입시했을 때 행 도승지 심환지(沈煥之), 가주서 홍낙준(洪樂浚), 기주관 김양척(金良倜),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비국당상 조진관(趙鎭寬)이 차례로 나와 앞드렸다. <중략> 임금이 심이지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제주목(濟州牧) 전 목사의 장계를 보니, 진휼(賑恤)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각기 면리(面里)의 통장(統長)에 붙이어, 그로 하여금 굶주리는 사람들을 초록(抄錄)했다고 한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듯하나 아직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이것은 일찍이 전례가 있습니다. 일전(日前) 북백(北伯) 김화진(金華鎭)의 사서(私書)를 보니, 또 열읍(列邑)의 통장(統長)이 초호(抄戶)한 일이 있는데, 의문(議問)한 바가 있어서, 신(臣)도 또한 법(法)이 매우 편호(便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每事)가 다 사람을 얻음에 있으니, 그 통장을 택해서, 또 마땅히 정상(精詳)하여 맡기는 뜻으로 답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조진관에게 전교하기를, “모은 바의 책자(冊子)는 지금 거의 성취되었으나, 범례(凡例)는 아직 상비(詳備)되지 않았다. 경(卿)은 그것을 다시 자세하게 정정(訂定)하여 들이라. 또한 일건(一件)은 묘당(廟堂)에 유치하고, 일후(日後)에 구황(救荒)하는 정사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살

펴서 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리가라고 명하자, 모든 신하들이 차례로 물리났다.

△ 주제어: 제주목, 진휼.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十五日 己亥

- 李晩秀,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教, 濟州狀啓持來將校一人米三斗, 使令一名米二斗, 合米五斗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15일(기해)

- ☐ 제주장계(濟州狀啓)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쌀 지급하는 건에 대한 이만수(李晩秀)의 계
- 이만수(李晩秀)가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제주장계(濟州狀啓)를 가지고 온 장교(將校) 1인에게 쌀 3말, 사령 1명에게 쌀 2말을 합하여 쌀 5말을 나누어 줄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장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十五日 己亥

○ 甲寅十一月十五日巳時，上御重熙堂。都承旨·同副承旨入侍時，行都承旨黃昇源，同副承旨金啓洛，假注書李允謙，記注官金良倜·承膺祚，以次進伏訖。……命書傳教曰，五千包十二隻船穀，鷄初鳴發運，午時量齊泊，重溟之如是利涉，是豈始料所及？風勢之如是助順，實亦神庥所庇，自此庶緩宵旰一分之思，而船穀以後事，惟在牧守之殫誠接濟，毋曰京闕夔越，益加慥慥，俾無一夫一婦之顛壑。今番則領運之勞，委之於卿行，而穩穩輸去，卿亦不爲無功，所當論賞，而欲觀來頭賑政勤慢，姑置之，卿其知悉事，回諭于該州新牧使李禹鉉處。空船之還泊，亦所關念聞其還稅，然後予心則降，令廟堂關飭完伯，以其緣由，隨聞狀聞。濟州狀本齎來人等，依日前舉行例，入侍承旨，招問於敦化門外。民品疾苦則書入，渠等分給襦衣。米斗下送，今年貢獻既停免，果品橘柚亦然，在前既有只取黃字之義，代頒黃杏之例，過齋後當親臨試取館學儒生，而頒柑代以頒杏，預令成均館知悉。書此之際，聞筵臣言，還泊空船，亦皆一時齊到於古達云，而今來濟人之所騎，卽運穀回船云，可知其分明，尤何等奇幸萬萬。慰諭使，待慰諭竣事，卽爲復路事，令廟堂分付。上曰，濟州將校幾人上來，而待令與否，知入也。賤臣承命出傳，回奏曰，將校一人，從人一人上來云矣。上教啓洛曰，招問於敦化門外，頒給襦衣米斗，可也。命退，承史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15일(기해)

□ 제주(濟州) 진휼곡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갑인년 11월 15일 사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도승지와 동부승지가 입시할 때 행 도승지 황승원(黃昇源), 동부승지 김계락(金啓洛),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전교를 받아 쓰라고 하기를, “5천 포의 곡식을 실은 12척의 배가 첫닭이 울 때 출발하여 오시에 일제히 정박하였다. 바다가 이처럼 건너기 쉬울 줄 이 어찌 처음에 생각이나 했던 것이겠는가. 바람이 이처럼 순하게 도와주니 실로 신이 도와준 것이다. 이로부터 밤낮 염려하던 생각이 조금이나마 떨어지게 되었다. 배로 곡식을 실어다 준 이후의 일은 오직 목수(牧守)가 정성을 다해 구제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경사의 대궐이 아득히 멀다고 하지 말고 더욱 착실히 하여 한 사람도 굶주려 죽는 일이 없게 하라. ‘이번에 윤반을 감독하는 노고를 경에게 말

졌는데 편안하게 실어 갔으니 경 또한 공이 없지 않다. 마땅히 논상해야 하나 앞으로 진흥하는 정사의 근만(勤慢)을 살피고자 하여 우선 놔두는 것이니 알고 있도록 하라.’고 신 목사에게 회유하라. 빈 배가 돌아와 정박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바이니, 돌아왔다는 것을 들은 뒤에야 내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러니 완백(完伯)에게 관문으로 칙유하여 듣는 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제주(濟州)의 장본을 가져온 사람들은, 입시한 승지가 돈화문 밖에서 불러서 민간의 고통에 대해 물어보고 써서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유의(襦衣)와 쌀을 나누어 주어 내려보내라. 올해의 공헌을 이미 정지하여 굴과 유자도 정지하도록 하였다. 전에도 단지 ‘황(黃)’자의 뜻만을 취하여 황대구를 대신 나누어 준 예가 있었다. 재계가 지난 뒤에 마땅히 직접 임하여 시험을 보여서 관학 유생을 뽑을 것인데, 황감 대신 황대구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을 미리 성균관으로 하여금 알고 있게 하라.”⁴⁸³⁾라고 하였다. “이것을 쓸 때 연신(筵臣)의 말을 듣건대, 환박(還泊)한 공선(空船)도 다 일시에 고달도(古達島)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제인(濟人)이 말을 타고 오니, 곧 운곡(運穀)도 회선(回船)했다고 하니,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니, 더욱 어떠한 기행(奇幸) 만만(萬萬)이다. 위유사(慰諭使)가 위유준사(慰諭竣事)를 기다렸다가, 즉시 복로(復路)하게 한 일을 묘당에게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 장교 몇 사람이 올라오고, 명령 여부를 기다려서 들인 것을 알겠다.”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고 전교를 내었다. 회주(回奏)하기를, “장교 1인, 종인(從人) 1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하기를, “돈화문(敦化門) 밖에 초문(招問)하여 유의와 미두(米斗)를 반급(頒給)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명이 끝나자 승사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483)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1794) 11월 15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十五日 己亥

- 甲寅十一月十五日午時, 上御重熙堂. 右承旨與同成均入侍時, 右承旨李晚秀,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良倜·承膺祚, 同成均徐有防, 以次進伏訖. 上曰, 以大口魚代柑設製, 今始初爲也. 俄下傳教卿果見之否? 有防曰, 姑未伏見矣. 上曰, 太學成典及謄錄之可考者, 搜送于政院, 可也. 上曰, 濟州船穀事, 鷄鳴發運, 午時齊泊云, 豈不萬萬奇幸乎? 有防曰, 此實聖念所暨也. 命晚秀書傳教曰, 故相文肅公贈諡, 當於三明祗受云, 而其家聞甚窘乏云, 米綿令該曹輸送.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15일(기해)

□ 제주(濟州)의 선곡(船穀)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갑인년 11월 15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우승지와 동성균(同成均)이 입시했을 때, 우승지 이만수(李晚秀),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양척(金良倜)·승응조(承膺祚), 동성균 서유방(徐有防)이 차례로 나와서 앞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구어(大口魚)로 감설제(柑設製)를 대신하는 것은 지금 비로소 처음이다. 잠시 전교(傳敎)를 내리는 것을 경(卿)은 과연 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하였다. 서유방이 아뢰기를, “잠시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학(太學) 성전(成典)과 등록(謄錄)을 고구할 만한 것을 찾아서 정원(政院)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선곡(船穀)의 일을 닭이 울 때 발운(發運)하여 오시에 제박(齊泊)했다고 하는데, 어찌 만만 기행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유방이 아뢰기를, “이러한 사실은 성념(聖念)으로 우러르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만수에게 전교를 쓰라고 말하기를, “고상(故相) 문숙공(文肅公) 증시(贈諡)는 마땅히 삼명(三明)을 지수(祗受)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매우 군핍(窘乏)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였다. 미면(米綿)은 해조로 하여금 수송하라고 하였다. 명이 끝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선곡.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十八日 壬寅

- 甲寅十一月十八日辰時，上御誠正閣。……上曰，濟州船運穀之利泊，此是天佑神助，自此少紓南顧之憂也。履素曰，此實聖念所暨，爲濟民誠極萬幸矣。上曰，臺諫進前。…….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18일(임인)

□ 제주(濟州) 선운곡(船運穀)에 관한 임금의 전교

- 갑인년 11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선운곡(船運穀)이 이박(利泊)한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와 관계된 것이니, 이로부터 남쪽 지방을 돌아보는 근심을 조금은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이 사실은 성념(聖念)이 미친 바이니, 제주 민은 참으로 매우 만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선운곡.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二十二日 丙午

- 金啓洛啓曰，密符親納，自是前例，而前濟州牧使沈樂殊[沈樂洙]，謂有身病，使其褊裨替納，事甚未安，依定式推考警責何如？傳曰，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22일(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의 추고에 관한 김계락(金啓洛)의 계
- 김계락(金啓洛)이 아뢰기를, “밀부(密符)를 친납(親納)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 온 예이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가 신병(身病)이 있다고 하고, 그 편비(褊裨)로 하여금 체납(替納)하게 한 일은 매우 미안한 것입니다. 정식(定式)에 따라 추고(推考)하고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심낙수.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二十三日 丁未

○ 副司直沈樂洙疏曰，伏以，臣生渡重溟，實賴洪造，誦念恩音，銘心鏤肺。情急歸死，擔曳登程，幾至數旬，纔到城外，而行路添症，冷疝衝心，作一籬籬，無以運身，瞻望象魏，替人納符，惶隕蹢躅，無所自容。臣始因奉使，仍忝守土，誠不孚感，遇災非常，請穀之狀，上貽宵旰之憂，重煩沿民之弊，咎則由民，罪如不容。移粟之及期利涉，實由宸心之格天，船泊之後，臣候風在北浦，見父老人民，有過峙穀之下，輒皆攢手。昔宋湖州大饑，民受移粟，與長吏焚香祝天，千載想像，有足感人，而臣親見之，情弱易感，見輒出涕。臣放船之日，衆民之環擁齊訴者，皆言聖恩，至有內下，死固無憾，豈敢復要煩徹，而惟言以目見之狀，仰奏宸極，一島喁喁，將死之命，或庶幾可續，聲咽啁啾，其言切悲。臣諭以沿邊凶歉，無異島中，萬斛轉輸，實出於爲島民切至之聖念，內下五千之穀，特恩迺絕，尤是陸民所未得，爾等雖死，有何加望？申復明諭，而概以人口，與穀數較量，則六萬餘口以萬五千之穀數分排，七朔調賑，鱗次加等，雖非自初盡付，而終始當付者，要不下數萬，移粟之外，斷無粒補給之策，其勢則島民太半，必至填壑。臣在候風館數十日，聞旗義縣[旌義縣]一月所報，死亡甚多，以本縣尤甚之故，白給分糴，比他優數，今無瘠氣，而死亡如此，從後可知。臣登陸，歷見沿邊凶荒，在在慘目，誠使島民死者太半，更無移粟加數之望，今其勢雖無以全活，苟使一有不死，此亦聖恩攸及。臣始以島中事受命，當此萬民濱死之時，苟有一分利益於民，不可以遞職，而不陳愚見。臣見島民舉多畜馬，私屯之馬多者，或近百匹，有戶無田，亦不下十數匹。今以百般求生之計，船馬渡海，欲爲換穀，而不馴之馬，其價甚少，一馬換穀，未滿一斛，涉險謀生，其計又左。島中之行地有用，服習善步，牝馬爲良，而自古立法，牝馬不許越海，蓋以字息爲重也，牝馬出陸，一匹售價，不啻十倍於生馬，自前設禁，雖是美法，爲萬命求死，人畜貴賤，今無可論，弛禁許賣。或慮因此有國屯偷竊，而國屯則新鑄烙印，標以分牌，私出之馬，別有烙標，則此無可慮。臣意自今至明年麥前，許以牝馬出陸，則人人之各自謀生，以馬換穀，似不下屢千餘包。此路一開，亦慮尋常凶歲，援以爲例，有違法意，而今年大無，卽是百餘年一有之大災，此不宜援引爲例，申嚴法禁，則一時求急，亦害法意也。臣於今年，見板賣[販賣]米舶，前後陸續於春夏者，殆爲五六千石，島民賴活，半在於此，嶺南·熊川·泗川·晉州等地，亦有爲採大鰻，裝船載米而來者甚多，蓋以售利島中，有倍於他地故也。明年無論某道，遍多凶荒，米商之來，比於今春，必至全減，而商販亦不必永絕。臣意則三南沿海商船載穀入島中者，使各其邑考察，別施蠲役之典，以開趨赴之門，則必有其效，有勝於累千石移粟之加給矣。臣仰念宸心，爲島民至誠惻怛，移粟內下之特教，有感豚魚，一夫填壑，惟恨恩澤之未究，妄陳愚見，冀有一分之效，惟聖明裁處。

焉。臣於春間奏狀，妄陳移倉事，臣之愚意，只以島陸轉輸之勞，冀爲便利之方，而實不知設施規模，舉行便否矣。今於歷路，見沿邑守宰，語及移轉，悉聞其弊，雖非日下救急，亦不敢不陳，羅里浦始設，亦有各邑分俵之名。而羅浦，卽衆商輻湊都會之地，多少移穀之以涼藿償納者，該縣主管，收捧涼藿，詳定折價，比穀數不啻優厚，則雖有耗費，換貿充穀，綽有餘裕。各邑分俵之數，皆自該縣區處，貿穀出納，民則不知自己丑以後，始自巡營主管，每當涼藿收捧監色，來到監捧，乙巳以後，仍爲移設於羅州。所謂濟民倉，常爲枵然之一空舍，元無一包貯穀，而列邑區劃移轉之穀，方當輸送，勞苦已極。及其涼藿分俵列邑，裝船受來於羅州，量民戶口分給，則所謂藿物，一耗於營監色，再耗於邑監色，一束之藿，分裂散縮，一戶所受，不過爲一時羹具，而及秋徵穀，爲數十倍。藉令衆民所受之藿物，初無耗費，畎畝之民，不習販賣，藿物自歸銷耗，穀包無異空納。況其所謂藿物，初不相當，畢竟則白地納穀，移轉簸揚，見縮之數，亦爲加徵，沿邊之民，聞移轉二字，舉皆失心。聖朝爲島民優恤之政，爲弊至此，營裨捧藿，號稱腴任。此等之弊，何事不有，而移穀捧藿，弊至於此，則尤爲痛心。古人爲法，周便完厚，量度地利，斟酌物情，非不知移轉程途之頗遠，而羅浦設倉，爲其捧藿，易於貿遷，不撓民而充穀有餘也，非不知巡營管攝，稍重事面，而的知其中間耗費之難防，專責該縣之主管出納，但使島民，仰哺凶歲，而詳定之法，穀價不踴，又使該倉收藿，常有餘於充穀，島陸俱便，無害於民。臣之始請移倉，只爲轉輸，而轉輸之弊，猶是餘事。仍襲近弊，竟不改施，則島中凶歉，比年間有，十年之內，移穀不下三四遭，則沿邊陸民，勢將弊盡，羅州空倉，誠無義意。移倉之議，每患遠近邑分俵之爲難，而一邑分俵，爲一邑民弊，二邑分俵，爲二邑民弊。羅里浦則以七山之險，雖不得復設，無論某邑，量其地勢，商販輻湊，易於貿遷之地。專責移穀捧藿之事，設倉出納，貿遷換易，勿使營裨監捧，則守令之畏憚巡營，有勝於偏裨之私昵。字牧之官，亦異於卑類，永絕民戶分授納穀之規，使沿民相忘於移穀之役，亦使島民，隨便往來，受穀納藿，如陸地外倉，則濟民之倉，名實始可以相符，島陸之弊，庶可少息。自今萬斛，捧藿時量宜改施，令道臣・廟堂反復爛商，以爲救弊開利之地焉。臣千里歸來，疾病爲祟，有違反面之禮，竟失復命之義，行且尋鄉，回瞻雲闕，不勝隕越。乞被逋慢之罪，以肅朝綱，以安私分焉。臣無任云云。答曰，省疏具悉。今見爾疏，島中民勢，可謂不見如見。諸般條件，許令廟堂草記稟處。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23일(정미)

□ 부사직 심낙수(沈樂洙)의 장계

○ 부사직 심낙수(沈樂洙)의 상소에, “엿드리옵건대, 신이 태어나서 증명(重溟)을 건너는 것은 실로 홍조(洪造: 큰 조화. 즉 하늘의 은혜)에 의뢰해서, 은음(恩音)을 읽고 외워, 폐부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여 돌아가 죽고 싶어 들것에 실려 등정(登程)한 지 수십 일이 지나서야 겨우 성밖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로(行路)에서 병을 얻어, 냉산(冷疰: 음양의 냉통이 주증인 병증)이 심장부에 부딪쳐, 한 거저(簾篠)가 되어서, 써 운신(運身)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궐을 우러러볼 때, 체인(替人)이 납부(納符)하여, 황공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몸 둘 바가 없었습니다. 신은 본시 봉사(奉使)로 인해, 수토(守土)하는 신하의 임무가 주어졌으니, 참으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재해를 만나서 상시와 달리 곡식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으니, 임금께서 주야로 걱정하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민(沿民)의 폐단으로 거듭 번거롭게 하였으니, 과오[咎]는 백성을 거치면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속(移粟)하는 것과 기어이 이섭(利涉)하는 것은 실로 신심(宸心)이 격천(格天)하는 것에 말미암는 것이니, 배가 이박한 뒤에 신은 북포(北浦)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부로인민(父老人民)을 보면서 지나치게 곡식을 저축하게 하면, 갑자기 다 두 손을 모아 짹짹 빌게 됩니다. 예전 송나라 송호주(宋湖州)에 크게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속을 받고, 더불어 장리(長吏)가 분향(焚香)하여 축천(祝天)하고, 천년 전의 그 기상을 상상해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몸소 그것을 살펴보니, 인정이 쇠약하면 감동받기가 쉬우니, 보는 대로 눈물이 났습니다. 신이 방선(放船)하는 날에 여러 백성들[衆民]이 둘러싸서 일제히 호소하였는데, 다 성은(聖恩)이라 말하면서, 내사(內賜)가 내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죽더라도 참으로 감격함이 없으니, 어찌 감히 다시 번거롭게 돌아올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목견한 상황으로써, 신극(宸極)을 앙주(仰奏)하니, 한 섬이 옹용거렸습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혹 거의 이어갈 수 있으니, 목이 메여서 시끄럽게 지껄이는 그 말이 매우 애처롭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연변(沿邊)의 흉경(凶歉)이 섬 안과 다름이 없으니, 만곡(萬斛)을 전수(轉輸)하는 것은 실로 섬 백성을 위한 절지(切至)의 성념(聖念)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사하여 내린 5천의 곡식은 특별한 은혜로 아주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육지 백성들이 아직 얻지 못한 것으로, 그 대들이 비록 죽더라도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복(申復)하고 명유(明諭)하였으나, 대개의 인구(人口)가 곡수(穀數)와 더불어서 교량(較量)하니, 6만여 구(六萬

餘口)에 1만 5천의 곡식의 수로 분배하니, 일곱 달(七朔)을 조진(調賑)하여, 차례로 가등(加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 교부하지 않았지만 종시(終始)당부(當付)한 것은 요컨대 수만 섬을 밀돌지 않을 것이니, 이속한 것 외에 단연코 식량을 보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형세는 섬 백성 태반(太半)을 반드시 구령에 덩굴게 할 것입니다. 신이 후풍관(候風館)에 수십 일을 머물고 있었는데, 정의현(旌義縣) 1월 소보(所報)에 대해 들었는데, 사망(死亡)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이 현[本縣]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분조(分糶)를 백급(白給)해 주고, 다른 우수(優數)에 전줄 만합니다. 지금은 여기(瘴氣)가 없었으나 사망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신이 등륙(登陸)하여 지나면서 연변(沿邊)의 흥경을 보니, 가는 곳마다 참혹한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참으로 섬 백성들을 죽게 하는 것이 태반인데, 다시 이속 가수(加數)할 가망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형세가 비록 전부 살게 할 수는 없더라도, 구차하게 하나라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성은이 미치게 하는 바와 같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섬 안[島中]의 일에 대해 수명(受命)하고, 당연히 만민(萬民)이 빈사(濱死)할 때에 구차하게 백성들에게 한 톨의 이익이라도 있다면 체직(遞職)할 수가 없어서 우견(愚見)을 부진(不陳)하였습니다. 신이 보건대, 섬 백성들의 거다(舉多)하게 축마(畜馬)하는데, 사둔(私屯)의 말이 많아서 혹 거의 100필에 이르고, 집은 있으면서 밭이 없는 것도 십수 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백반(百般)으로 구생(求生)할 계책으로 선마(船馬)를 바다를 건너게 해서 환곡(換穀)하려고 하나, 훈련되지 않은 말의 값이 매우 적어서 말 1필을 곡식과 바꾸면 곡식 1휘가 차지 않습니다. 험난한 곳을 건너서 삶을 도모하려는 그 계책도 어긋났습니다. 섬 안의 행지(行地)에 유용(有用)한 것은 선보(善步)를 복습(服習)하게 하고, 빈마(牝馬)를 잘 길렀습니다. 그러나 자고(自古)로 입법(立法)한 것은 빈마가 바다를 건너는 것을 불허하여, 대개 자식을 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빈마가 출륙(出陸)하면 1필을 파는 값은 생말에 10배만이 아니어서, 전부터 설금(設禁)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미법(美法)이라 하더라도 만명(萬命)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고, 인축(人畜)의 귀천(貴賤)은 지금 논할 수가 없으니, 금령을 완화하여 파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혹 이것이 국둔(國屯)에 있는 것을 투절(偷竊)하게 될 것이 염려되나, 국둔은 낙인(烙印)을 신주(新鑄)하여, 표(標)로 분패(分牌)하고, 사출(私出)한 말은 특별히 낙표(烙標)를 하였으니, 이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의 뜻은 지금부터 내년 보리농사 전까지 빈마를 육지로 내보는 것을 허락한 것이니, 사람마다 각자 삶을 도모하고자 말로 환곡하게 하여 누천(屢千)여 포(包)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을 한번 여는 것도 심상(尋常)한 흉세(凶歲)를

염려해서 한 것입니다. 이를 끌어대어 예를 삼은 것이니, 위법(違法)할 뜻이 있더라도 올해에 크게 없을 것입니다. 곧 이것은 백여 년에 한 번 있는 큰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이 일을 끌어대며 관례로 삼으려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니, 금법(禁法)을 거듭 엄하게 계칙해야 합니다. 곧 한때 구급(求急)하더라도 법의(法意)를 해치는 것입니다. 신은 올해 판매(販賣) 미박(米舶)을 보건대, 앞뒤로 봄과 가을에 육지와 이어진 것은 거의 5, 6천 섬이 되니, 섬 백성이 삶을 의지하였는데, 반(半)이 이에 있습니다. 영남(嶺南)·웅천(熊川)·사천(泗川)·진주(晉州) 등지에서도 대복(大鰓)을 채취하고, 장선(裝船)하여 재미(載米)해서 온 것이 매우 많은데, 대개 섬 안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배가 되는 까닭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도(道) 할 것 없이 두루 흉황(凶荒)이 많아서, 미상(米商)이 오는 것이 올봄에 비해 반드시 전감(全減)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상판(商販)도 반드시 영절(永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삼남(三南) 연해(沿海) 상선(商船)이 재곡(載穀)하여 입도(入島)한 것 가운데는 각기 고을에서 고찰하게 했으나 특별히 견역(鑄役)하는 은전을 베풀어서, 추부(趨赴)의 문을 열었으니, 곧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누천 섬의 이속을 가급(加給)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신이 신심(宸心)을 앙염(仰念)하여, 섬 백성들을 위해 지성으로 측달(惻怛)하고, 이속을 내하(內下)하는 특교(特敎)를 내리면, 만약 돈어(豚魚)를 감동시키는 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지아비가 굶어 죽을 경우에는 오직 은택이 구해되지 않은 것 원망하게 됩니다. 망령되이 어리석은 견해를 진달하자면, 일분(一分)의 효험이라도 있을 것을 바란다면, 오직 성명께서 재처(裁處: 헤아려 처리함)하기 바랍니다. 신이 춘간(春間)에 상주한 장계에, 망령되이 이창(移倉)을 진언한 일이 있는데, 신의 우의(愚意)는 다만 도륙(島陸)이 전수(轉輸)하는 노고로, 편리(便利)하는 방책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설시(設施)할 규모(規模)와 거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아니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역로(歷路)에, 연읍(沿邑)의 수재(守宰)를 보니, 이전(移轉)에 대해 말을 해서, 그 폐단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구급(救急)해야 할 것은 아니더라도 감히 부진(不陳)하지 않았습니다. 나리포(羅里浦) 시설(始設)도 각 고을에서 분표(分俵)하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리포는 곧 중상(衆商)이 몰려드는 도회(都會)의 땅이어서, 다소(多少)의 이곡(移穀)을 양곽(涼藿)으로 상납(償納)하는 것은 해당 현에 주관하고, 수봉(收捧)하는 양곽은 절가(折價)를 상정하니, 곡수(穀數)에 비해 우후(優厚)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곧 비록 모비(耗費)가 있더라도 환무(換貿)하여 충곡(充穀)하면 여유가 작작하겠습니다. 각 고을이 분표한 수는 다 해당 현에서 구처(區處)하고, 무곡(貿穀)하여 출납(出納)하였는데, 백성들은,

곧 기축년(1769) 이후부터, 비로소 순영(巡營)에서 주관하여 매년 해당 양곽을 수봉하는 감색(監色)이 내도하여 감봉(監捧)하고, 끝내는 을사년(1785) 이후에 그대로 나주(羅州)로 이설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소위 제민창(濟民倉)은 늘 빈 껍데기의 한 공사(空舍)가 되어, 원래 한 포의 저곡(貯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읍(列邑)이 구획(區劃)하여 이전(移轉)한 곡식은 바야흐로 마땅히 수송(輸送)해야 하니, 노고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그 양곽을 열읍(列邑)에 분표(分俵)하는 것에 미쳐서, 나주(羅州)에서 장선(裝船)하여 수래(受來)하고, 백성들의 호구(戶口)를 헤아려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위 곡물(藿物)은 영감색(營監色)에서 한 번 소모하고, 읍감색(邑監色)에서 다시 소모하니, 한 묶음의 미역이 분열(分裂)하고 산축(散縮)하고, 한 호에서 받은 것은 所受, 한때 국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징곡(秋徵穀)에 미쳐서 수가 열 배가 됩니다. 중민(衆民)이 받은 곡물(藿物)은 처음에 모비가 없어서, 시골 백성이 판매(販賣)에 불습(不習)하니, 곡물이 절로 소모(銷耗)되니, 곡포(穀包)도 공납(空納)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 소위 곡물은 처음에 상당(相當)하지 않아서, 필경(畢竟) 백지납곡(白地納穀)으로 이전(移轉)을 파양(簸揚)한 것이고, 견축(見縮)한 수도 가징(加徵)하여, 연변 백성들이 이전(移轉) 두 자를 듣고서, 거개(擧皆)가 실심(失心)하였습니다. 성조(聖朝)께서 섬 백성에서 우홀(優恤)하는 정책을 펼치면, 폐단이 되어 이에 이를 것이니, 영비(營裨)가 봉곽(捧藿)하는 것을 유임(腴任)이라 호칭(號稱)합니다. 이들의 폐단은 어느 일엔들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곡 봉곽의 폐단도 이에 이른 것이니, 곧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옛사람이 법으로 삼았다면, 주편(周便)하여 완후(完厚)한 것이고, 양탁(量度)하여 지리(地利)한 것이니, 물정(物情)을 짐작(斟酌)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도(程途)가 파원(頗遠)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닌데, 나포(羅浦)에 설창(設倉)한 것은 그 봉곽하여, 무천(貿遷)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백성들을 동요시키지 않고서 충곡(充穀)하는 데 여유가 있다면, 순영이 관섭(管攝)을 알지 못할 수가 없어서, 일의 면모가 조금 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모비를 막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현이 주관하여 출납하게 하는 것을 전책(專責)하고, 단지 섬 백성으로 하여금 흉세(凶歲)에 양포(仰哺)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정(詳定)한 법은 곡가(穀價)가 춤추지 않고, 또 해당 창(倉)에서 수곽(收藿)하게 하여, 늘 충곡(充穀)하는 데 여유가 있게 하면, 섬과 육지가 다 편하고 백성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처음에 이창(移倉)을 청한 것은 단지 전수(轉輸)하기 위한 것이고, 전수(轉輸)의 폐단은 오히려 여사(餘事)와 같습니다. 근폐(近弊)를 잉습(仍襲)하여, 마침내 고쳐 시행하지 않으면, 섬안의 흉점이 연간(年間)에 비해서 10년 안에 이곡(移穀)을 3, 4번 불하하면 연변

(沿邊)의 육민(陸民)의 세(勢)는 장차 폐가 다하고, 나주공창(羅州空倉)은 참으로 의의(義意)가 없습니다. 이창(移倉)에 대한 논의는 매 환(患)에 원근(遠近) 고을에 분표(分俵)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고을의 분표는 한 고을의 민폐가 되고, 두 고을의 분표는 두 고을의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나리포(羅里浦)는 칠산(七山)의 험난한 뱃길이니, 비록 다시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고을 할 것 없이 그 지세(地勢)를 헤아려서, 상판(商販)이 폭주(輻湊)하여, 무천(貿遷)하기가 쉬운 땅입니다. 이곡(移穀) 봉곽(捧藳)을 전책(專責)하는 일은 설창(設倉)하여 출납(出納)하고, 무천(貿遷)하여 천이(換易)하는 것입니다. 영비(營裨)로 하여금 감봉(監捧)하지 못하게 하면 수령(守令)이 순영(巡營)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편비(偏裨)가 사닐(私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목민관도 비류(卑類)와 다름이 없었으니, 민호(民戶)에 분수(分授)하여 납곡(納穀)하는 규칙을 영원히 끊는 것입니다. 연민으로 하여금 이곡하는 역(役)을 서로 잊게 하는 것도 섬 백성으로 하여금 편한 대로 왕래하여 수곡(受穀)하고 납곽(納藳)하는 것은 육지 외창(外倉)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민창은 명색이 실로 비로소 상부(相符)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과 육지의 폐단은 조금은 그치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만곡(萬斛)을 봉곽(捧藳)할 때는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고쳐서 시행하고, 도신·묘당으로 하여금 반복되는 난상(爛商)은 폐단을 구제하고 이득을 여는 것이 됩니다. 신은 천릿길을 돌아오느라, 질병이 빌미가 되어, 돌아와서 알리는 예를 어긴 것이니, 마침내 복명하는 의리를 잃은 것입니다. 행(行)하고 또 시골로 향하니, 운궐(雲闕)을 돌아보니, 운월(隕越)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함께 포만(逋慢)한 죄를 받고자 하오니,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고, 신의 본분을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은 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소를 자세히 보았다. 지금 너의 소를 보니, 섬 안의 민세는 보지 않아도 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조건은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제민창.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一月 二十四日 戊申

○ 甲寅十一月二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副承旨洪仁浩， 右副承旨金啓洛， 同副承旨李儒慶， 假注書柳遠鳴， 事變假注書韓耆裕， 記注官金良倜， 記事官吳泰曾， 左議政金履素， 右議政李秉模， 左參贊洪秀輔， 戶曹判書沈頤之， 行副司直趙宗鉉， 吏曹判書李致中， 禮曹判書閔鍾顯， 行副司直李秉鼎·李得臣·李敬懋， 工曹判書徐鼎修， 刑曹判書李在學， 漢城判尹李時秀， 行副司直申大顯·李漢豐， 吏曹參判沈煥之， 刑曹參判趙鎮寬， 副司直尹行恁， 副校理尹益烈， 以次進伏訖。 …… 履素曰， 濟州前牧使沈樂洙上疏回啓， 草記爲之事下教， 故草記今方修正以待矣。 上曰， 入之。 上曰， 羅里浦倉之移設於羅州， 在何年乎？ 戶判曾經道伯， 似當知之矣。 頤之曰， 臣於待罪完伯時， 因島民上言， 以七山險洋之難於船運之故， 果爲移設於羅州矣。 今見前濟牧之疏， 則以羅州設倉， 反有弊端爲言， 未知近來生弊之如何矣。 上曰， 其疏專以營裨之主管涼藿， 爲弊端多端云， 而設倉則不爲的指某處。 且其疏句語， 頗似古文， 無以領解， 卿等則果詳閱乎？ 營裨之主管涼藿， 誠有弊端， 則付之本邑， 獨無生弊之慮乎？ 移倉後形止及近來涼藿之如何區處委折， 竝即詳問於道伯， 從長稟處， 可也。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1월 24일(무신)

□ 나리포창(羅里浦倉) 이설과 양곽(涼藿)의 폐단에 관한 김이소(金履素)의 계

○ 갑인년 11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 좌부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김계락(金啓洛), 동부승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유원명(柳遠鳴), 사변가주서 한기유(韓耆裕), 기주관 김양척(金良倜),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좌참찬 홍수보(洪秀輔),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 행 부사직 조종현(趙宗鉉), 이조판서 이치중(李致中), 예조판서 민중현(閔鍾顯), 행 부사직 이병정(李秉鼎)·이득신(李得臣)·이경무(李敬懋), 공조판서 서정수(徐鼎修), 형조판서 이재학(李在學), 한성부 판윤 이시수(李時秀), 행 부사직 신대현(申大顯)·이한풍(李漢豐), 이조참판 심환지(沈煥之), 형조참판 조진관(趙鎮寬), 부사직 윤행임(尹行恁), 부교리 윤익렬(尹益烈)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이소가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상소에 대한 회계(回啓)에, 초기(草記)는 일을 하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草記)는 지금 바야흐로 수정(修正)하

여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이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리포창(羅里浦倉)은 나주(羅州)로 이설한 것이 어느 해인가? 호판(戶判)이 일찍이 도백(道伯)을 거쳤으니, 마땅히 알 것 같다.”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신(臣)이 대죄(待罪)하여 완백(完伯)으로 있을 때, 섬사람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칠산(七山) 험양(險洋)이 선운(船運)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연 나주(羅州)로 이설했습니다. 지금 전 제주(濟牧)의 소를 보니, 나주 설창(設倉)은 도리어 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근래에 생겨난 폐단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소(疏)는 오로지 영비(營裨)가 양곽(涼藿)을 주관하여, 폐단이 되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설창(設倉)은 모처에 적지(的指)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소(疏)의 구어(句語)는 자못 고문(古文)과 비슷하여 영해(領解)하지 못하여, 경들이 즉시 상열(詳閱)할 수 있었는가? 영비(營裨)가 양곽을 주관한 것은 참으로 폐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본 고을에 붙이면 특히 폐단이 생겨날 우려가 없겠는가? 이창(移倉)한 뒤에 형지(形止)와 근래의 양곽이 어떻게 구처(區處)했는지 위절(委折)을 모두 즉시 도백에게 상문(詳問)하여 크기에 따라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나리포창, 양곽.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九日 壬戌

- 南公轍,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李書九狀啓, 則以爲濟州牧使李禹鉉牒呈內, 本島丐乞尤甚之次, 壯弱六萬九十口, 磨鍊付還, 若至歲後, 斷當絕巡, 米牟太限一萬二千石, 劃下之意, 又爲仰請云, 而濟州三邑災形民勢, 別遣幕屬, 詳探以來, 則合三邑丐乞尤甚飢口, 當爲三萬四千一百餘口, 之次貧民之追後付還者, 當爲二萬五千一百餘口, 三邑夏秋穀及移轉穀一萬石, 別下穀五千石, 合折米當爲一萬三千餘石. 飢口中丐乞則自十一月排巡, 尤甚則自十二月排巡, 限以明年三月磨鍊, 則穀物所餘, 猶近千石, 若有如干添數, 則之次戶之分還, 亦可排比, 商船之貿穀, 絡續入去, 則亦爲從便賴活之道, 而今以所報觀之, 其所加請, 大違始料. 沿邑慘歉, 無異島中, 賑資種糧, 方議轉輸, 本道目下事情, 除前已劃下者外, 一萬二千石穀物之加劃, 實無其路, 莫如就其已劃之穀, 從長磨鍊, 別下賑資皮牟五千石, 待正月先卽入送, 移轉穀五千石優劃米條, 陸續輸運, 則雖不加劃, 庶可以略綽分排,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沿邑穀之難於加劃, 雖以前牧使爲島民之心亦旣云, 然於疏中道臣所論, 不是過語. 且於追後入去之穀, 優劃米邊, 則雖無加劃之名, 便有加劃之實, 依此舉行之意, 分付, 而本島民事, 有不可一日弛心, 亦令道臣絡續往復於該牧還賑外, 廣開貿遷之路, 以爲島陸相資之地, 而卽見該牧使所報, 則本島商舶, 請令三南沿邑, 勿爲防禁矣. 前此以此事, 關飭諸道, 不啻申嚴, 則沿邑守令, 焉敢乃爾? 當該不飭之三南道臣, 竝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望哺之民情, 不可不念, 令道伯往復守臣, 期於量宜如劃之地, 而待停當, 以其緣由, 狀聞事, 分付, 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9일(임술)

□ 제주(濟州)의 이전곡에 관한 비변사의 계

- 남공철(南公轍)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를 즉견하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첩정(牒呈) 안에, 이 섬의 개걸이 더욱 심해지던 차에, 장약(壯弱) 6만 90구인데, 부환(付還)을 마련(磨鍊)하였는데, 세후(歲後)에 이르기까지, 단당(斷當)으로 순시하지 않으면, 미모태(米牟太: 쌀과 보리, 콩)가 1만 2천 섬을 한정하여 획하(劃下)하는 뜻으로 또한 양청(仰請)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濟州) 세 고을의 재형(災形)과 민세(民勢)는 따로 막속(幕屬)을 보내어, 상탐(詳探)한 이래, 곧 제 고을을 합하여 개걸(丐乞)이 더욱 심하여 기구(飢口)는 마땅히 34,100여 구에 이르고, 지차(之次)한 빈민(貧民)은 추후에 환자에 붙인 자는 마땅히 25,100여 구에 이릅니다. 세 고을의 하추곡(夏秋穀)과 이전곡(移轉穀) 1만 섬, 따로 내려보낸 곡식 5천 섬을 합하여 절미(折米)

가 마땅히 1만 삼천여 섬입니다. 기구(飢口) 가운데 개걸은 11월부터 배순(排巡)하고, 우심(尤甚)은 12월부터 배순하고, 내년 3월을 한정하여 마련하니 곡물이 남은 바가 큰 1천 섬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여간한 첨수(添數)가 있는 것은 지차호(之次戶)에 분환(分還)하는 것도 배비(排比)할 수 있습니다. 상선(商船)의 무곡(貿穀)이 연이어 들어가니, 또 편한 대로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지금 보고한 바를 보건대, 그 가청(加請)한 바도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판판입니다. 연읍의 참검(慘歉)은 섬 안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자(賑資)의 종량(種糧)은 바야흐로 전수(轉輸)하여 의논해야 합니다. 이 도는 목하(目下) 사정(事情)이 전에 이미 획하(劃下)한 것을 제외하고, 1만 2천섬의 곡물을 가획(加劃)하는 것은 실로 그 길이 없습니다. 그 이미 획급한 곡식을 취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좋은 쪽으로 마련하여 특별히 진자(賑資) 피모(皮牟) 5천 섬을 내리고, 정월을 기다려서 먼저 즉시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전곡(移轉穀) 5천 섬을 획미(劃米) 조로 넉넉하게 하고, 육지에서 연이어 수운(輸運)하니, 비록 가획하지 않더라도, 거의 조금 분배할 수 있으니 묘당에 영을 내려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합니다. 연읍(沿邑)의 곡식은 가획하기가 어려우니, 비록 전 목사로서 섬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 안에 도신이 논한 바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들여보내는 곡식은 미변(米邊)으로 넉넉하게 획급하니, 모를 지기 가획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편하게 가획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거행하는 뜻을 분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사람의 민사(民事)는 하루라도 이심(弛心)하게 할 수 없으니, 또 도신에게 영을 내려 연이어 해당 목의 환진(還賑)을 왕복하게 하는 것 외에, 무천(貿遷)할 길을 널리 열어서, 섬과 물이 상자(相資)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목사가 보고한 바를 즉시 보니 이 섬의 상박(商舶)을 삼남의 연읍에 영을 내려 방금(防禁)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청합니다. 이보다 먼저 이 일로 여러 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신칙하고 엄하게 할 뿐만 아닌 것입니다. 곧 연읍 수령을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마땅히 해당 불식(不飭)한 삼남의 도신(道臣)을 모두 중한 바에 따라 추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 먹여 주기를 바라는 민정(民情)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도백에게 영을 내려 수신(守臣)을 왕복하게 하여, 기어이 획급할 것이 있으면 적당히 헤아리게 하고 정당(停當)을 기다려서, 그 연유를 장문하게 할 일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목사, 이우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九日 壬戌

○ 甲寅十二月初九日辰時，上御誠正閣。…… 秉模曰，今日次對，別無可稟之事，而只有全羅監司李書九，濟州牧使李禹鉉狀啓而已矣。竝當回啓以奏，而海外民情，不能的知，先使道伯備置數千穀包於沿邑，詳知濟民實狀，然後可以措置，而此非行會先布者矣。上曰，卽爲回啓，而依筵奏從長區劃，可也。…… 秉模曰，此濟州牧使李禹鉉狀啓也。以爲已劃穀一萬石，別下賑需五千石，本土留儲穀二千八百餘石，折米計之，則僅爲萬餘石，而就其中尤爲最急切者，已爲還分，去月三巡，今月初巡條計除，則實在折米，不過八千餘石。若以前牧使在任時，分等民口磨鍊，則不足之數，殆近三分之二。限麥秋十七排巡節略磨鍊，雖有折米七千餘石，尙有不敷之慮，米牟太三色穀，限一萬二千石劃下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島中民勢，非不遑急，而道臣論啓，亦非懸空之度，裨校摘奸，自不無依據，故加劃一款，依道啓置之之意，纔已草記，此狀啓亦爲置之，使之從長排比，期於均濟事，嚴飭分付，何如？上曰，依草記批答，分付，可也。……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9일(임술)

□ 제주(濟州) 이전곡의 획급에 관한 이병모(李秉模)의 계

○ 갑인년 12월 초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중략>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오늘 차대(次對)⁴⁸⁴는 특별히 품(稟)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狀啓)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모두 마땅히 회계(回啓)하여 상주하였습시다. 바다 밖의 민정(民情)은 적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먼저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연읍(沿邑)에 수천곡포(數千穀包)를 비치하게 하여, 제주 백성들의 실상을 자세하게 알린 연후에 가히 조치할 수 있으나, 이것은 행회(行會)하여 선포(先布)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즉시 회계(回啓)하여 연주(筵奏)에 따라 좋은 계책에 따라 구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이것이 제주목사 이우현의 장계입니다. 이미 1만 섬의 곡식을 획급하였는데, 따로 5천 섬을 진수(賑需)하였습니다. 이 땅에 남아 있는 저곡(儲穀) 2천8백여 섬을 절미(折米)하여 계산하니, 거의 만여 섬이 되니, 그 가운데 심한 곳을

484) 차대(次對):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취해서 가장 급하고 절반한 곳은 이미 환분(還分)하였습니다. 지난달 삼순(三巡)과 이번 달 초순(初巡) 조(條)를 계산하여 제할 것은 제하니, 실제로 절미(折米)한 것은 불과(不過) 8천여 섬이었습니다. 만약 전 목사가 재임할 때, 분등(分等)할 민구(民口)를 마련하니 부족한 수가 거의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맥추(麥秋)를 기한으로 하여 17배순(排巡)을 절약(節略)하여 마련하여, 비록 절미 7천여 섬이 있으면 오히려 넉넉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쌀·보리·콩 삼색곡(三色穀)은 1만2천 섬을 한도로 하여 획하(劃下)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섬 안의 민세(民勢)는 황급(惶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신(道臣)의 논계(論啓)도 현공(懸空)의 법도가 아닙니다. 비교(裨校)가 적간(摘奸)하니, 본래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획급할 일관(一款)은 도계(道啓)에 따라 처리하게 할 뜻으로 이미 초기(草記)하였으니, 이 장계도 처리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좋은 점에 따라 배비(排比)하게 하고, 기어이 균제(均濟)하게 할 일을 엄하게 신칙하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초기(草記)에 따라 비답(批答)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제주목사, 이우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十一日 甲子

- 甲寅十二月十一日申時, 上御重熙堂. 左副承旨·慰諭使入侍時, 左副承旨李相璜, 假注書曹錫中, 記注官承膺祚, 記事官吳泰曾, 慰諭使徐榮輔, 以次進伏訖. 上曰, 年事所見, 比所聞, 何如? 榮輔曰, 初秋則不無遑急之狀, 抄戶停退之綸旨, 諸般蠲惠之特恩, 既下於道啓分等之前, 故民皆安堵奠接, 而道伯邑宰, 亦皆仰體德意, 誠心調恤矣. 上曰, 耽羅運穀, 亦得無事到泊, 爲民事誠萬萬多幸矣.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11일(갑자)

□ 탐라(耽羅)의 운곡(運穀)에 관해 임금과 대신들의 의논함

- 갑인년 12월 11일 신시에, 임금이 중희당에 나아갔다. 좌부승지·위유사가 입시했을 때, 좌부승지 이상황(李相璜), 가주서 조석중(曹錫中),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오탈증(吳泰曾), 위유사 서영보(徐榮輔)가 차례로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사(年事)를 본 바, 소문(所聞)과 견주어서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서영보가 아뢰기를, “초가을에는 황급한 상황이 없지 않아서, 민호를 뽑은 것과 정퇴(停退)한 것을 윤지(綸旨)를 내렸습니다. 제반(諸般) 세금을 경감하는 특별한 은택이 이미 도계(道啓)에 따라 분등(分等)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모두 안도(安堵)하며 전접(奠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백(道伯)과 읍재(邑宰)가 또 모두 우러러 덕의(德意)를 몸 받아서, 성의를 다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耽羅)의 운곡(運穀)도 무사하게 배를 댔으니, 민사(民事)가 참으로 만만(萬萬) 다행(多幸)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탐라, 운곡.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十四日 丁卯

- 以濟州防禦使李禹鉉狀啓, 薦新唐金橘, 數既不準, 品亦劣小, 惶恐待罪事, 傳于李祉永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14일(정묘)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우현(李禹鉉)의 당금귤(唐金橘) 천신(薦新)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狀啓)에, 천신(薦新)한 당금귤(唐金橘)이 수가 이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 또한 열소(劣小)하여, 황공(惶恐)스럽게도 대죄(待罪)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지영(李祉永)에게 전교하여, 대죄하지 말 일이라고 회유(回諭)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이우현, 당금귤, 천신.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十四日 丁卯

- 李祉永,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禹鉉貢果薦新狀啓,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柑子・唐金橘, 依例封進, 而至於唐金橘, 則不足之數, 爲一百八十九箇, 自禮曹稟旨封進云矣. 在前如此之時, 多有減數薦進之規, 今亦依前例, 推移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14일(정묘)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공과(貢果) 천신(薦新)에 관한 예조의 계

- 이지영(李祉永)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공과(貢果) 천신(薦新) 장계를 엮드려서 즉시 보니, 지난 10월령의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 천신(薦新)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을 전례에 따라 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금귤은 부족(不足)한 수인 189개가, 예조에서 품지하여 봉진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감수(減數)를 천진(薦進)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례에 따라 추이(推移)하여 당일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공과, 천신.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十六日 己巳

○ 有政. 吏批, …… 大靜縣監鄭運躋仍任事, 承傳,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16일(기사)

□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잉임(仍任)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잉임(仍任)하는 일을 승전(承傳)하였다. 〈중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정운제, 잉임.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二十五日 戊寅

○ 蔡弘遠, 以備邊司言啓曰, …… 其一, 濟州三邑守令及使客往來時, 康津·海南·靈巖三邑, 分定都會, 各一年輪回舉行, 而使客每於靈巖古達島候風, 故雖非本邑都會之年, 島民受弊, 此後則靈巖都會之年, 依從前古達島候風, 康津都會之年, 從南塘浦候風, 海南都會之年, 從館頭浦候風, 依此定式事也. 海路便順, 則各從都會之年, 自其邑浦口候風, 實爲便好, 依此定式之意, 分付道臣, 而候風所之或便或否, 亦不可不更爲詳探, 以此意一體, 分付, 如有一分未審之端, 則使之具由報來, 更爲稟處爲宜. 其一, 濟州移轉穀入送時, 各其都會官候風處所, 設置祭壇, 待穀船畢到, 卜日行祭, 發船事也. 神之格思, 如水在地, 以理以勢, 所論甚當, 此後則依此舉行爲宜. …… 其一, 沿海諸邑及濟州甘藷, 廣種之始來也. 議者或以爲此若成俗, 穀賤如土, 而今見書啓辭意, 則樹藝之漸不如初, 專由於營邑之求索云, 審如是也, 則誠不可使聞於鄰國, 爲先分付兩南道臣及濟州, 自官侵索之弊, 自今痛革, 多種而多收者, 減其煙役, 俾知所勸, 一成俗之後, 自當不令而行, 遍於國中, 姑先以此興勸爲宜. …… 傳曰, 允.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25일(무인)

□ 제주(濟州) 왕래선의 도회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채홍원(蔡弘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하나. 제주(濟州) 세 읍의 수령 및 사신들이 왕래할 때에 강진·해남·영암 세 읍이 도회를 나누어 정하는 데에 관한 일입니다. 바닷길이 편하고 순조롭다면 각기 도회를 맡은 해에 따라 그 읍의 포구에서 바람을 기다리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법식을 정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곳의 편부도 다시 상세하게 탐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뜻을 일체 분부하여서 만일 조금이라도 살피지 못한 단서가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해서 다시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 제주도로 옮겨가는 곡식을 들여 보낼 때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에다가 제단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령이 이르는 것은 물에서나 땅에서나 마찬가지로 보나 형세로 보나 논한 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이후로는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략〉 하나. 연해 지역 고을과 제주도에 고구마를 널리 심을 것에 관한 일입니다. 고구마가 처음 전해졌을 때에 의논하는 자들이 더러 말하기를 ‘이것이 만약 풍속이 된다면 곡

식이 흙처럼 천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서계의 내용을 보니 심고 가꾸는 것이 점점 처음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영읍의 가렴주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웃 나라가 듣게 해서는 안 되니, 양남의 도신 및 제주(濟州)에 분부하여 관에서 침탈하고 토색질하는 폐단을 지금부터 통렬히 개혁하고, 많이 심고 많이 수확한 자는 연역(烟役)을 감해주어 권면할 바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일단 풍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져서 나라 안에 두루 퍼질 것이니, 우선 이로써 흥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⁴⁸⁵⁾ 〈하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485)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1794) 12월 25일자 기사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확인됨.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二十九日 壬午

- 全羅道 …… 顯廟八年, 漂海人鄭喜·曾勝等, 來自福建, 泊于耽羅, 髮猶不薙, 衣尙華制, 將押赴北地, 馨遠, 往見中路, 以漢語酬酢, 仍問弘光以後消息, 則喜等, 出示一曆, 乃永曆二十一年紀元也, 馨遠, 汪然出涕, 作詩贈之, 喜等亦大泣而去, 湖南人士, 至今傳其事. …….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29일(임오)

□ 복건인(福建人)의 탐라(耽羅) 정박에 관한 보고

- 전라도 <중략> 현묘[顯廟: 현종] 8년(1667)에 표해인(漂海人) 정희(鄭喜)·승등(曾勝) 등이 복건(福建)에서 와서, 탐라(耽羅)에 정박하였다. 머리털은 깎지 않은 것 같고, 옷은 오히려 중국 제도이고, 장차 북쪽 땅으로 압부(押赴)할 때, 이형원(李馨遠)이 중로(中路)에 가서 보고서, 한어(漢語)로 수작(酬酢)하고, 이어서 홍광[弘光, 중국 남경(南京)의 연호] 이후의 소식을 물으니, 정희 등이 일력(一曆)을 내 보였다. 영력[永曆, 남명 영력제의 연호 21년(1667) 기원이었다. 이형원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시(詩)를 지어 주니, 희(喜) 등도 크게 울면서 갔다. 호남(湖南) 인사(人士)가 지금까지도 그 일을 전하고 있다. <하략>.

△ 주제어: 탐라, 복건인.

❖ 乾隆 五十九年 甲寅 十二月 三十日 癸未

- 禮曹啓曰, 粘連濟州移轉穀, 候風處所, 設置祭壇, 待穀船畢到, 行祭事, 纔已啓下矣, 分付道臣, 使之依此舉行, 何如? 判付啓, 依允. 香祝, 今日下送爲良如教.

❖ 정조 18년(1794) 갑인년 12월 30일(계미)

□ 제주(濟州) 이전곡(移轉穀)에 관한 예조의 계목

- 예조의 계목, 점련(粘連)한 제주(濟州) 이전곡(移轉穀)에 대한 것은 처소(處所)에서 후풍(候風)하고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곡선(穀船)의 필도(畢到)를 기다리고, 행제(行祭)하는 일은 겨우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도신(道臣)에게 분부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따라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판부(判付)를 아뢰고 윤허한 대로 향축(香祝)을 오늘 내려보내라 하셨습니다.

△ 주제어: 제주, 이전곡.

역주

문숙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췌

고수미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노우정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교정·교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양미혜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제주역사 자료총서 30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VIII

- 正祖代(1787~1794) (下) -

발행인 김완병

발행일 2025년 9월 일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기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작 제주콤

ISBN : 979-11-994020-0-3 (9390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